



발 간 등 록 번 호

11-1620000-000708-01

2018년도 장애인 인권증진 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장애인권리협약 이행에 관한 실태조사

장애인권리협약 이행에 관한 실태조사

2018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18. 11. 8.

연구수행기관 : 사단법인 두루

연구책임자 : 임성택

공동연구원 : 김이안

마한얼

신혜주

윤재영

윤재훈

이광원

이주언

이채린

이태영

정진

최초록

이 보고서는 연구용역 수행기관의 결과물로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연구요약

I. 서론

-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이하 ‘장애인권리위원회’)는 2014년 9월 30일 우리나라 정부에 대한 권고를 담은 최종견해를 채택하였다. 우리 정부는 2019년 1월 11일 까지 최종견해에 대한 이행 여부를 담은 제2·3차 병합 국가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국가인권위원회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이하 ‘CRPD’ 또는 ‘협약’) 및 최종견해의 이행 여부를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CRPD 및 최종견해 이행상황을 모니터링 하기 위한 평가지표 개발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기초로 CRPD의 국내적 이행 상황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 이 연구의 목적은 대한민국의 CRPD 이행 상황에 관한 현황조사 및 평가를 통해 CRPD 이행 강화를 위한 정책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 이 연구에서는 최종견해와 쟁점목록, 국내 주요 이슈를 분석하여 62개의 핵심 쟁점을 추출한 다음 이에 관한 국가기관 등의 이행 상황을 점검, 평가하였다.
- CRPD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인권지표에 대한 이해와 원칙을 기초로 자체적인 지표를 개발하였다. 위 개발된 지표를 활용하여 장애인단체들을 대상으로 정부의 CRPD 이행에 관한 평가를 구하는 설문조사 및 집단심층면접(Focus Group Interview, 이하 ‘FGI’)을 실시하고,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정책 제언을 마련하였다. 또한 장애인 및 장애인단체의 참여를 보장하는 법률개정안을 포함하여 CRPD 이행을 강화하는 방안을 연구하였다.

II. CRPD에 대한 이해

1. CRPD 개요

- CRPD는 2006년 12월 13일 제6제1차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었고, 2008년 5월 3일부터 발효되었다. 우리나라는 2007년 3월 30일에 가입하여 2008년 12월 2일 국회에서 이 협약의 비준동의안이 통과되었으며, 2009년 1월 10일부터 국내에 발효되었다. 협약의 제25조 마항은 유보된 채 비준되었고, 선택의정서는 비준되지 않았다.

2. 최종견해 및 쟁점목록 개요

- 최종견해는 장애인권리위원회가 제출된 국가보고서들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문건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이상 대부분의 권고 사항들은 당사국이 수용함으로써, 자국의 장애인 권리증진과 권리보호 정책에 반영하게 되며, 차기 국가보고서 제출 시에는 전기 국가보고서에 대한 장애인권리위원회 최종견해에 따라 취한 조치 내용들을 포함시켜서, 당기 국가보고서를 제출하게 된다.
- 우리 정부에 대한 최종견해는 총 66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실질적인 권고 내용을 담은 제6항부터 제62항까지 부분은 대부분은 우려사항 및 권고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 쟁점목록은 CRPD 제35조에 따라 장애인권리위원회가 국가보고서 심사에 앞서 필요한 추가적 정보나, 종전 국가보고서 제출 이후 변화된 관심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질의서를 만든 후, 심사 대상 당사국 정부에게 송부하는 문서다. 장애인권리위원회는 2018년 3월 ‘대한민국 정부 제2·3차 병합 국가보고서 제출에 대한 사전 쟁점목록’을 채택하였다. 위 쟁점목록은 34개의 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부분의 내용은 최종견해와 비슷하나, 일부 최종견해보다 구체적이거나 새로운 내용을 추가한 질문이 포함되어 있다.

III. CRPD 이행 모니터링 평가지표 개발

1. CRPD 이행 모니터링 평가지표 개발

- 인권지표란 인권규범과 기준에 해당하는 국가에 관한 그리고 어떤 대상의 상태, 사건, 활동 혹은 성과에 대한 특정한 정보로, 인권의 원칙과 관심을 반영하며 인권의 진전과 이행을 평가하고 점검하는 데 활용된다. CRPD 이행을 통한 인권

진전의 정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지표는 개념적 접근과 방법론적 접근 모두에 있어서 탁월해야 하나 이번에는 조사 실시의 어려움으로 개념적 접근에 치중하였다.

- CRPD 제3조가 제시한 일반 원칙에 기반한 인권지표는 의무자의 공약-노력-결과에 따라 구조-과정-성과 지표로 개념화된다.
- 지표의 자료원은 사건 기반 데이터, 사회·경제 및 행정 통계, 인식과 의견 조사 그리고 전문가의 판단 등 대략 4가지 범주로, 이를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할 때 보다 포괄적이고 신뢰할 만한 이행 모니터링 성과 포착이 이루어진다.
- CRPD 위원회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과 일반 논평의 논의에 근거하여 모니터링 평가지표는 다음과 같은 원칙과 단계(속성 찾아내기, 지표 선택하기, 맥락 맞춰 주기 단계)에 따른다.

1. 장애인의 인권 상황을 반영하되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이고 정기적으로 수집한 통계일 필요가 있으며 성별, 연령별, 장애종별, 그리고 지역별 기초값과 수준점(benchmark)이 있어야 한다(Guidelines 35, 37f).
2. 최신의 장애 인권 모델 개념을 기반으로 작성된 지표이어야 한다(Guidelines 23).
3. 2030 지속가능 발전 의제(2030 Sustainable Development Agenda & Goals)와 연결될 필요가 있다(Guidelines 34, 37a).
4. UN 기구가 개발한 인권지표와 친화적(human rights disability friendly indicators)이어야 할 필요가 있다(Guideline 34).
5. 통계청, 전담부서(focal points), 조정기구(coordination mechanism), UN 기구, 국제적 협력과 지역(regional) 조직, 독립적인 감독 체제(monitors framework), 시민단체, 장애인과 이들을 대표하는 단체 등이 함께 노력하여 개발하여야 한다(Guideline 36).
6. 구조지표와 성과지표를 모두 포함하되 국가인권위원회의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유엔 인권 고등판무관 사무소(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of Human Rights)가 개발한 지표 가이드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Guideline 38g, 39).

- 이 연구에서는 해외 CRPD 관련 평가지표 개발 사례로 핵심 성과 중심 지표에 해당하는 덴마크 인권 연구소의 「The Gold Indicators」, 핵심 속성 중심 지표에 해당하는 유럽연합의 국가간 비교 보고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의 후속 조치 및 프레임워크, 기능·장애·건강분류(ICF), 삶의 질(QoL)을 반영한 지표를 개발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 이 연구에서 개발된 평가 지표(안)은 통계 구축 가능성, 국제적 맥락 고려 그리고 국내 여건 반영 등과 같은 세 가지 측면을 염두에 두고 제시되었다(평가 지표

는 38-50쪽 참고).

2. 최종견해 및 쟁점목록 이행 모니터링 평가지표 개발

- 최종견해의 내용들을 보면, 그 권고 사항들이 대부분 계량화시키기 어려운 포괄적이고도 추상적인 내용들로 기술되어 있다. 이에 대한민국 정부 제1차 국가보고서에 관한 최종견해 및 쟁점목록의 이행 정도를 평가하는 평가지표도, 극소수의 정량평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정성평가의 지표로 개발하게 되었다.
- 연구기간과 연구비 등 본 연구가 가진 한계 내에서, 최대한으로 질 높은 연구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CRPD에 대한 이해가 높고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CRPD의 성안 과정과 협약 발효 후 모니터링 과정에 깊이 관여한 사회복지학 박사 2명과, 장애 인권 분야를 담당하는 공익 변호사 1명)을, 개발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시켰다. 연구진 초안을 마련하여 외부 자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따라, 이를 수정·보완하는 과정을 거쳐서, 본 연구의 최종견해 및 쟁점목록 이행 모니터링 평가지표가 개발되었다.
- 개발된 CRPD 최종견해 이행 모니터링 평가지표는 모두 221개로, 이중 168개는 쟁점목록과 같은 내용의 지표이고, 최종견해만의 고유지표는 53개이다. 한편 CRPD 쟁점목록 이행 모니터링 평가지표의 경우에는 총 248개가 개발되었는데, 이중 역시 168개는 최종견해와 같은 내용의 지표이고, 쟁점목록만의 고유지표는 80개이다. 따라서 최종견해와 쟁점목록의 같은 내용 지표들을 중복된 동일 지표로 계산할 경우, 전체 지표의 개수는 301개가 된다.
- 개발된 최종견해 이행 모니터링 평가지표는 쟁점목록의 평가지표와 동일한 지표가 많아서, 최종견해와 쟁점목록의 이행 모니터링 평가지표를 하나로 통합하여 제시하였다(통합 평가지표는 56-88쪽 참고).

IV. 정부의 CRPD 이행 상황에 대한 민간 평가 조사 결과

1. 조사개요

- 본 연구에서는 평가에 대한 접근 방식에 있어서 평가 내용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가 취한 조치의 ‘산출물’과 ‘조치로 인해 일어난 변화의 성과’ 두 가지를 적절하

- 게 선택하여 진행하였다. 평가를 위한 조사설계는, ‘원시실험 설계’ 중 ‘일회사례 연구’의 방법론으로 하되, 이 연구방법론에서 오는 인과관계 요건 충족의 부족함을 어느 정도 보완해줄 수 있는, 수준 높은 피조사자를 섭외하여 조사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일부의 특정적 또는 특이한 내용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한 가지 이슈 당 세 가지 측면, ① 장애인권리위원회가 권고한 조치의 이행 여부, ② 조치의 적절성, ③ 조치의 충분성에 대한 평가가 진행되었다.

2. 조사 참여 단체 및 자료 수집

- ①은 정량평가로서, 대부분 조사에 따른 회신자료를 연구진 내부 연구원들이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②, ③ 평가는 정성평가로서, 외부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 높은 장애인 당사자 혹은 장애인단체 등이 평가자로 참여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 평가자를 결정할 때, ‘평가를 위한 해당 분야 전문성 보유자’라는, 모집단을 가장 잘 대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사람들을, 연구진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작위적으로 의도적 표집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유형의 다양성과 대표성을 감안하고, 장애인 당사자와 비장애인 전문가의 참여 비율을 감안하였다.
- 그 결과 총 43곳의 장애인단체 유형 대표(35%), 인권 단체(22.5%), 기타(20%), 여성 단체(12.5%), 협의체(10%)에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최종견해와 쟁점목록 이행 평가에 관한 설문지」를 발송하였다. 그 중 40곳이 수신하였는데, 회신된 설문지는 23 사례(응답률 57.5%)이다.

3. 분석방법

- 각 문항(변수)의 변수값은 7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 일부를 묶어 새로운 변수값을 만들고 기술통계를 실시하여 그래프로 나타내었다.

4. 조사결과는 99-150쪽 참조.

5. 함의

- 본 민간 평가 조사결과, 정부의 CRPD 이행의 정도에 대해 장애관련 단체들은 상당히 저조한 평가를 내리고 있으며 특히, 여성 및 아동과 같은 이중적 어려움

에 놓은 장애인, 인천전략 및 SDGs를 연계한 국제협력에 대한 정부의 조치, 사회적 이슈를 다루는 문항이 상당 부분 낮게 평가되었다. 가장 저조한 평가를 받은 조항은 제33조(국내적 이행 및 감독)로 이에 대한 근본적인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V. CRPD 국내 이행실태 조사연구

1. 서설

- 연구기간의 한계 때문에 CRPD 이행 모니터링을 위한 평가지표 개발, 이에 기초한 문헌조사, 설문조사, FGI 실시 및 이를 종합한 정부의 이행 현황 평가 순으로 실태조사가 진행되지 못하였다. 연구원들은 62개 쟁점을 뽑아 이에 대한 CRPD 이행 여부를 문항 순서대로 검토하였다. FGI 내용을 평가 및 정책 제언에 일부 반영하였다.

2. 제5조 평등 및 비차별

- 장애인권리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인력 확충 및 독립성을 강화하고, 차별구제소송의 소송비용을 면제 또는 감경하며 이에 대한 소송구조 통계를 제시하고, 법무부의 시정명령 요건을 완화하고, 법관을 대상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8조의 적극적 조치의 행사 권한에 대해 교육할 것을 권고했다.
- 정부는 최종견해 중 국가인권위원회의 인력확충 및 독립성 강화에 대해 수용의사를 밝히면서 헌법기관화와 규칙제정권을 마련하겠다고 하였다. 소송비용 감면은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을 이유로 들면서 입법안이 나오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하며 일부수용의사를 밝혔고, 시정명령 요건 완화도 일부수용하면서 시정명령요건 완화가 필요한지 검토해보겠다고 하였다. 법관대상교육은 수용의사를 밝히면서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 그러나 여전히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은 요원하고, 소송비용 감면의 입법계획이 불투명하다. 시정명령완화를 위한 입법안이 제출되었지만, 이 법이 통과되더라도 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 개최 주기가 1년에 1회 정도로 지속성과 적시성이 떨어진다. 법관 대상 교육이 장애인식개선의 수준에 머무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 정부는 당장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적 재정과 인사권한을 부여하고, 차별구제소송의 소송비용 감면제도를 도입하여 그 통계를 작성하며, 시정명령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요건을 완화하도록 법을 개정하고, 차별시정심의위원회를 상설화하며, 법관을 대상으로 차별구제소송에서 명령권한을 인지하도록 하는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3. 제6조 장애여성

- 장애인권리위원회는 장애 관련 법률과 정책이 성인지적 관점을 포함할 것과, 장애여성에 대한 가정폭력과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할 것,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장려하고 임신 및 출산기간 동안 장애여성에게 충분한 지원을 제공할 것을 권고하였다.
- 정부는 최종견해에 대해 수용의사를 밝히면서, 산후조리도우미 지원, 출산비 지원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성인지 예산을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수용의 근거로 들었다. 또한 장애여성에 대한 학대를 예방하고 피해 장애여성을 구제하며 피해여성에 대한 사후보호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입장이다. 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관리 대책이 필요하고, 2017. 9. 마련된 “장애인 안전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장애인평생교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 그러나 현재 성인지적 예산 및 정책이 과거에 비해 양적으로는 증가한 사실이 인정되나, 충분한 질적 성장을 이뤘다고 보기 어렵다는 분석이 있다. 따라서 정책 및 예산 담당자들이 ‘성인지적’의 개념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상사업 선정 및 성과목표 설정이 적절히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여성장애인정책에 대해 접근할 때 “여성정책”이라는 점에 더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장애여성에 대한 폭력을 “사전예방”하기 위한 조치는 전무하며, 일상적으로 성인지 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전혀 없다는 비판도 있다. 장애여성을 위한 쉼터의 수 자체가 부족할 뿐 아니라, 접근성 또한 없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모성권과 관련하여서는, 장애여성에 특화된 지원은 장애여성이 출산할 경우 100만 원을 추가 지원하고 있다는 것뿐이다.
- 정부는 장애여성들이 자신들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많이 제공하고, 성폭력 예방 교육 및 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쉼터의 숫자

를 늘림과 더불어, 편의시설을 확보하거나, 최소한 개조비용을 지원해야 한다. 장애여성에게 초점을 맞춘 직업훈련 및 장애여성에 특화된 교육프로그램 개발 또한 필요하다. 여성장애인에 특화된 모성보호 및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모성권이라는 ‘권리’ 차원의 문제이므로,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장애여성에 대한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출산 이후의 “양육”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4. 제7조 장애아동

- 위 조항에 대한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최종견해 및 정부의 이행 계획, 정부 답변은 없다.
- 쟁점목록에서는 법령 제정, 개정시 장애아동 및 그 가족들의 참여수준을 극대화하기 위해 조치를 취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 관련법을 살펴보면 「장애인복지법」과 「아동복지법」에서 참여에 관하여 일부 규정하고 있으나, 선언적 규정에 그치고 있을 뿐이다. 법률의 제정, 개정시 당사자와 가족의 참여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참여 보장 및 그 절차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 그 외 장애아동과 관련해 문제가 되는 쟁점은 장애아동의 자기결정권과, 특수교육법 개정 문제이다. 장애아동을 배제한 채 부모나 의료진의 선택에 의해 정체성을 결정할 수 있는 수술 등이 이뤄지지 않도록, 장애아동의 욕구를 확인하고, 이에 따라 치료와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지원 기관이 필요하다. 아동의 의사와 고유성 존중에 대한 부모 교육도 이루어져야 하고, 장애아동이 어렸을 때부터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 한편 장애아동은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에도 논의 자체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문제제기의 측면에서도 소외당하고 있다. 따라서 장애아동에 대한 지원 및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크며, 현재 수면 위로 불거진 특수교육법 개정 또한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5. 제8조 인식제고

- 장애인권리위원회는 장애인의 긍정적 이미지 제고를 위한 인식개선캠페인과, 협약의 내용을 홍보할 것을 권고했다.
- 정부는 최종견해에 대해 모두 수용의사를 밝히면서, 장애인식개선교육의 대상을

확대하고, 협약에 대해서는 협약 국가보고서 작성과정의 회의나 공청회 등을 통해 홍보하겠다는 입장이다.

- 2018년에 장애인식개선교육의 대상은 확대되었으나 강제성이 약하고 내용도 장애를 극복, 연민, 공포의 대상으로 보는 등 부적절한 면이 있었고, 협약 내용에 대해서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홍보가 없었다. 그리고 권고는 아니었으나 장애인에 대한 혐오 선동에 대해 대책을 제시하지 못했다.
- 정부는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이행의무를 강화하고, 교육내용인 긍정적 이미지가 무엇인지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인식개선 캠페인의 매체를 다양화하고, 협약과 장애에 대한 교육이 인식개선 교육 또는 캠페인에 포함되도록 하며, 동시에 협약을 알기 쉬운 언어나 수어로 공표해야 한다. 끝으로 혐오선동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교육을 통해 시민들이 자정능력을 기르도록 해야 한다.

6. 제9조 접근성

- 장애인권리위원회는 대중교통 정책을 검토하여 장애인이 모든 종류의 대중교통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모든 공공시설에 접근성 기준을 적용하고, 모든 장애인이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하라고 권고하였다.
- 정부는 최종견해에 대해 수용의사를 밝히면서,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2017~2021)」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있고, 공공건물에 대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웹접근성 품질인증제도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접근성을 제고하겠다는 입장이다.
- 여객선과 버스정류장의 이동편의시설 설치율이 다른 교통수단이나 여객시설에 비해 현저히 낮은 점, 특별교통수단의 운영기준이 지자체마다 상이한 점, 장애인의 시외이동권 보장이 특히 미흡한 점, BF인증의 실효성이 부족한 점, 모바일보다 웹사이트 정보 접근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그마저도 강제성이 미비한 점 등이 지적되었다.
- 정부는 각종 이동편의시설 설치율의 목표를 상향 조정하고, 저상버스의 보급률을 확대하고, 장애인의 시외이동권을 보장하려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또한 모든 공공시설 및 작업장에 접근성 기준을 적용하기 위하여 장애인등편의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 다양한 정보제공매체에 대한 접근성 보장을 위하여 기존 법령을 재정비하고 강제성을 부여하여야 한다.

7. 제11조 위험상황과 인도적 차원의 긴급 사태

- 장애인권리위원회는 자연재해를 포함한 위급상황에서 장애의 특성을 고려한 장애인 보호 및 안전을 보장하고, 재난위험감소 대책 및 그 이행의 모든 단계와 단위에서 보편적인 접근권 및 장애포괄성이 더욱 보장될 수 있는 포괄적인 계획을 채택하고 시행하라고 권고하였다.
- 정부는 최종견해에 대해 수용의사를 밝히면서, 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관리 대책이 필요하고, 2017. 9. 마련된 “장애인 안전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 정부는 장애인 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장애인 단체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장애인 맞춤형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범정부 안전대책이 수립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재난 취약계층의 특수성을 고려한 위기관리 대책이 실제로 준수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적 견해도 있었다.
- 정부는 장애유형과 특수성을 고려한 재난안전 행동 매뉴얼 개발 및 개선, 재난 관련 장애인 전담 조직의 설립, 재난취약계층의 재난안전을 담당할 전문인력 양성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8. 제12조 법 앞의 동등한 인정

- 장애인권리위원회는 조력의사결정제도로의 이행과 성년후견제도의 폐지, 공무원에 대한 조력의사결정 메커니즘 훈련을 권고했다.
- 정부는 최종견해 중 훈련부분에 대해서만 일부수용의사를 밝히면서, 대한민국의 성년후견제도가 조력의사결정제도에 해당하여 더 이상 이행할 것이 없다고 하였다. 한편 훈련에 대해서는 검찰을 포함한 법무부직원들은 장애인대상 수사기법 등을 교육받고 있으며, 교육 내용의 특징으로 인해 장애인의 교육 참여가 부적절하다고 답하였다.
- 현행 성년후견제도는 후견인의 포괄적 대리권을 원칙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조력의사결정제도의 이행으로 볼 수 없다. 또 오직 법무부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하여 진술조력인 교육이나 수사기법을 배우는 것은 진술이나 조사의 조력일 뿐 의사결정의 조력을 위한 훈련이라고 볼 수 없고, 이러한 교육에 장애인과 장애단체의 경험과 감수성을 반영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 정부는 현행 성년후견제도를 폐지하고 조력의사결정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법무

부뿐 아니라 전 공무원과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의사결정을 조력하는 메커니즘을 훈련시켜야하고 이러한 훈련과 교육과정 개발에는 장애인 또는 장애단체가 참여해야 한다.

9. 제13조 사법에 대한 접근

- 장애인권리위원회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의 실효적 보장, 사법기관의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법원의 장애인 사법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의 구속력 부여를 권고하였다.
- 정부는 최종견해 중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의 실효적 보장에 대해서는 일부·조건부 수용의사를 밝히면서, 교정시설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인권침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답했다. 훈련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수용의사를 밝히고, 가이드라인의 법적구속력 부여에 대해서는 최근에 규범화를 연구하고 있다.
- 실태조사나 인권침해센터는 장애인을 특정하여 지원하거나 옹호하는 제도가 아니다. 사법기관의 교육훈련의 내용의 적정성이 담보되지 않고, 가이드라인은 최근에 들어 겨우 논의가 개시된 정도에 불과하다.
- 정부는 우선 장애인 수용자에 대한 실태조사부터 제대로 실시해야 하고, 법무부 공무원 뿐 아니라 경찰과 법관, 변호사를 대상으로 한 훈련과 교육을 강화해야 하고, 조속히 가이드라인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해야 한다.

10. 제14조 신체의 자유 및 안전

- 장애인권리위원회는 「정신보건법」상 장애를 근거로 장애인의 자유 박탈을 허용하는 조항을 철폐하고, 공정한 재판과 적법절차를 보장하는 편의를 제공해 줄 것 등을 권고하였다.
- 정부는 최종견해에 대해 일부·조건부 수용의사를 밝히면서,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면개정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자의입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 실제로 비자의 입원율이 대폭 감소하였다는 입장이다.
- 개정법 하에서도 의학적 의미의 정신질환자가 아님에도 「정신건강복지법」상 정신질환자에 포함되는 다수의 사람들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병원 등에 수용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나아가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심사, 「인신보호법」에 따른 구제

절차 외에 병원·특수시설 내에서 자유박탈에 대한 정기적·전범위적인 실태조사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정부에 의하면,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에는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는 등 공정한 재판과 적법절차를 보장해주는 절차적인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장애 유형에 따른 사법지원이 필요하고, 체포·구속단계, 경찰·검찰 수사단계, 공판단계 등에서 장애인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고, 법률적 지원체계 및 편의시설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11. 제15조 고문 또는 잔혹한,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로부터의 자유

- 장애인권리위원회는 장애인에 대한 강제치료를 폐지하고, 시설수용이 지속되는 한 장애인단체의 참여를 보장하는 외부의 독립적인 모니터링 메커니즘을 구축할 것을 권고하였다.
- 정부는 강제치료에 대해서는 의사능력이 없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의 필요성을 이유로 일부·조건부 수용의사를 밝혔다. 외부의 독립적인 모니터링 메커니즘 구축에 대해서는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 최근까지 시설 수용자에 대한 강제치료가 문제가 되었음에도 정부는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외에 가혹행위 금지, 특수치료 제한 조항이 실효적으로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았다. 현재 정신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상시적·전범위적 모니터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정부는 모니터링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모니터링 대상 기관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방문조사 형태의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한다.

12. 제16조 착취, 폭력 및 학대로부터의 자유

- 장애인권리위원회는 거주시설 내·외부 폭력 등 사건 조사, 가해자 처벌, 피해자 보상 보장, 쉼터 제공과 강제노역 피해자에 대한 효과적인 보호 조치를 권고하였다.
- 정부는 인권침해 피해 장애인의 치료 및 사회복지를 지원하고, 장애인 근로자의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지도·감독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최종견해에 대한 수용의사를 밝혔다.
- 장애인학대 실태를 전체적으로, 또 학대 유형에 따라 체계적으로 조사·분석한

자료는 없다. 장애인 학대의 경우, 가해자가 보호자라는 이유만으로 형이 경감되는 경우가 많다. 피해장애인 쉼터의 양적 증가와 함께 역할 정립과 이에 따른 운영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으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설립·운영되고, 장애인의 노동력 착취를 근절·처벌하기 위한 형법 및 관련 법이 개정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학대 및 노동력 착취 가해자 처벌 수준을 강화하고, 장애인 노동력 착취 실태 전수조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13. 제17조 개인의 완전함 보호

- 장애인권리위원회는 여성 장애인의 강제불임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현재 진행 중인 강제불임 사건을 조사할 것을 권고하였다.
- 정부는 여성 장애인에 대한 강제불임 수술은 현재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례조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이유를 근거로 최종견해에 대해 일부·조건부 수용의사를 밝혔다.
- 강제불임의 법적 근거가 되었던 구 「모자보건법」 제15조는 삭제되었지만 여전히 시설 내에서 강제시술이 이루어지고 있다.
- 정부는 성별 및 장애유형을 고려한 장애인 성교육과 강제불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탈시설과 자활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14. 제18조 이주 및 국적의 자유

- 장애인권리위원회는 장애를 근거로 대한민국에 입국할 권리를 박탈당하지 않도록 보장하고, 이주민이 기본적인 장애 서비스를 제공받는데 제한이 없도록 「출입국관리법」 제11조와 「장애인복지법」 제32조를 철회하도록 권고하였다.
- 정부는 최종견해에 대해 일부·조건부 수용의사를 밝히면서, 「출입국관리법」 제11조의 입법 취지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정이고, 「장애인복지법」 제32조를 개정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하였다는 입장이다.
- 「출입국관리법」 제11조는 개정되거나 폐지되지 않았는데, 여전히 주관적인 판단에 근거하여 정신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남아있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역시 다소 간의 개정은 있었으나 난민이 대상 외국인에 포함된 것에 불과하다.

- 정부는 정신장애인이라는 요건이 아닌, 구체적인 상황을 토대로 한 입국 제한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적이 아닌 거주지 기준의 장애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15. 제19조 자립적 생활 및 지역사회에의 동참

- 장애인권리위원회는 효과적인 탈시설 전략을 개발하고, 지역사회 내 활동보조서비스를 포함한 지원서비스를 대폭 증가하며, 사회부조 프로그램들이 충분하고 공정한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도록 보장하고, 특히 “손상의 정도”가 아닌 장애인의 특성과 상황, 욕구와 가족의 소득이 아닌 장애인당사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활동보조서비스 이용금액을 산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 정부는 효과적인 탈시설 전략을 개발하라는 최종견해를 수용하면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에 대한 국고 지원을 계속하고, 기존 시설 소규모화 및 4인 이하 소규모 공동생활가정체험홈 설치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며, 「장애인거주시설 설치운영기준 등 개정안 마련」 연구용역을 진행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시설 이용 장애인의 지역사회 복귀 및 자립생활 지원강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탈시설 및 주거자원 강화를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중점과제 및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관련하여 「장애인복지법」 개정, 탈시설 지원센터 설치, 탈시설 장애인들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제공 및 정착금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정부는 활동지원급여 등 다양한 지역 내 지원서비스를 강화하라는 위원회의 최종견해를 조건부로 수용하면서, 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 급여량 확대와 관련하여 지자체에 자율권을 부여하고, 주간활동서비스를 제도화하여 신규 활동지원급여 유형으로 추가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라 답변하였으나, 중앙정부차원의 급여량 확대는 이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지역사회에 기반한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소득보장을 제공하라는 위원회의 최종견해를 수용하면서,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등 소득보장 수준 향상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활동지원급여 인정조사 내용을 개선하라는 위원회 최종견해를 수용하면서,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신청인의 신체, 정신, 기능, 상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 욕구, 주거특성 또는 사회참여 정도 등 사회적 환경을 조사하여 활동지원급여를 산정하겠다고 답변하였으나, 부양의무자 기준은 가족 부양책

임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재정적 영향을 감안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현 시점에서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 정부가 제시한 기존 탈시설 정책은 모두 시설 거주 장애인들이 시설을 나와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직접적인 정책이라 볼 수 없다는 점, 탈시설 및 주거지원 강화를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중점과제 및 정책목표로 설정한 것 자체는 커다란 진전이나 아직 평가할만한 구체적인 정책이 발표되지 않았다는 점, 중앙정부 차원의 활동지원급여 인상 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 장애인연금 수준이 중증장애인의 생활 보장에 충분하지 않을 뿐 아니라 장애등급제로 인해 실질적으로 소득생활이 어려운 경증장애인들이 장애인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 인정점수 산정 개정안 역시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 정부는 시설 거주 장애인의 시설 퇴소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자립생활 지원을 확대하며, 장애인 소득보장 자체에 대한 개념을 재정의하고 그에 기반한 정책을 수립하며, 중증장애인 당사자의 총체적 상황을 고려한 활동지원급여 산정 기준을 마련하고, 활동지원급여 산정시 부양의무자 소득을 배제하도록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

16. 제20조 개인의 이동성

- 이 부분에 관한 장애인권리위원회의 권고 의견은 없으나, 대중교통, 시설물, 정보 접근권과 별개로 장애인이 보도에서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이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아 문제가 된다는 지적이 있다.
- 정부가 발표한 이동편의시설 설치현황과 달리 장애인의 이동편의시설 만족도는 매우 낮고,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지원도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한편 이동기술 훈련과 관련한 법령, 정책, 프로그램은 전무하다.
- 정부는 보행환경 기준적합평가에 질적 기준을 포함시켜야 하고, 장애인 보조기의 급여를 현실화하여야 한다.

17. 제21조 의사 및 표현의 자유와 정보접근권

- 장애인권리위원회는 「한국수화언어법」 및 「점자법」의 제정과 적절하고 접근가능한 정보에 관한 기준을 포함한 방송 접근권의 보장을 권고하였다.

- 정부는 최종견해에 대해 수용의사를 밝히면서, 「한국수화언어법」과 「점자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고, 방송접근권에 관해서도 2012년부터 장애인방송 의무화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 대부분의 시각장애인이 점자 해독을 하지 못하고, 대부분의 청각장애인이 수어 사용이 불가능하며, 장애인방송 의무화제도 역시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 정부는 「한국수화언어법」과 「점자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하여야 하고, 점자나 수어를 사용하지 않는 장애인의 의사소통 방식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또한 방송접근권 관련 질적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장애인 방송이 제공되는 매체를 확대하여야 한다.

18. 제22조 사생활의 존중

- 이 부분에 관한 장애인권리위원회의 권고 의견은 없으나, 시설에서의 사생활 보장 및 장애인 개인정보 보호가 주요 쟁점이 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사생활 보호를 포함한 장애인거주시설에서의 서비스 최저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나, 기준 위반시 처벌 규정이 모호하고, 주요한 사항이 노력의무로 되어 있다는 점,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포괄적인 법률이 제정되었고, 상세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심각한 개인정보유출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지는 않으나, 구체적인 상황에서 담당자들의 인식이나 그들에 대한 교육이 부족하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 정부는 사생활 보호 관련 서비스 최저기준 위반 시 처벌을 구체화하고, 주요 사항을 강행 의무로 규정하여 실질적인 기준 준수를 강제하며,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보완해야 한다.

19. 제23조 가정과 가족에 대한 존중

- 장애인권리위원회는 장애아동의 부모들이 가정 내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다른 아동과 동등하게 장애아동의 가족에 대한 권리와 지역사회에서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포괄적인 정책을 시행할 것을 권고하였다.
- 정부는 장애아동의 부모들이 가정 내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보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포괄적인 정책을 시행하라는 위원회 최종견해를 수용하면서, 성장기 장애아동에게 적절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아동 가족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발달장애인법」 하위법령 시행, 발달장애인 맞춤형 지원 등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정부는 장애아동이 가정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권리와 지역사회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정책을 이행하라는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최종견해를 수용하면서, 장애아동에 대한 발달재활서비스사업,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장애아동에 대한 재활치료를 통해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을 주며, 「발달장애인법」 하위법령 시행 및 발달장애인 맞춤형 지원 등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하였다.

- 장애아동을 둔 가정은 장애아동에게 특화된 양육지원서비스와 성인에게도 제공되는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나, 양육지원서비스의 경우 일정 소득 이상인 가정에서는 이용할 수 없고, 제공 기관이나 인력의 수가 부족하여 접근성이 떨어지고, 활동지원서비스의 경우 서비스 내용이 성인에게 초점을 두고 있어 장애아동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 한편, 「발달장애인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본격적으로 발달장애인들만을 위한 서비스가 개발되지 않고 있다는 점, 장애인의 결혼할 권리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 정부는 장애아동의 특성을 반영한 양육지원제도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결혼 및 자녀양육에 필요한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20. 제24조 교육

- 장애인권리위원회는 통합교육의 실효성에 대한 연구를 주문하면서, 정당한 편의 제공, 교직원 대상 교육의 실시, 학교폭력에 대한 무관용 정책을 권고했고, 특수학교를 계속 설치하는 이유에 대한 질의를 하였다.
- 정부는 최종견해에 대해 수용의사를 밝히면서, 통합교육 실효성 연구를 완료한 후 통합교육의 실효성 증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여 실시 중이라고 답하였다. 접근성 향상을 위한 보조기기·교육자료·교과과정을 제공하며, 교직원 교육을 강화하고,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장애인인식개선 교육을 연2회 실시한다고 답하였다. 질의에 대하여는 특수학교는 과밀화 해소를 위해 설치가 필요하다고 답하였다.
- 통합교육 실효성 연구의 결론에서 제안한 개별화된 평가방법 개발은 충분히 반

영되지 않고 있고, 실효성 연구의 궁극적 목적인 통합교육으로의 이행도 불투명하다. 접근성 향상을 위한 설비와 자료가 실제 사용자의 입장에서 불편하고 적절하지 못한 것이 있었다. 교직원을 위한 각종 특수교육 연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실 인력이 부족하고, 연수에 대한 평가도 미흡하다. 장애아동 대상 학교폭력에 관해서는, 처분에 관한 통계도 없고 구제조치가 장애아동에게 유리하지 않으며, 교육현장 자체가 비인권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특수학교를 계속 설치하는 이유를 묻는 것은 분리교육이 협약의 취지에 반한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과밀화 해소를 위해서 특수학교가 필요하다고 답변하는 것은 위원회의 질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권고에는 없었지만, 장애영유아는 통합유치원과 특수교사의 부족으로 유아교육에서 차별을 받고 있고, 장애여성에 대한 평생교육 지원이 부족하다.

- 정부는 통합교육 실효성 연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통합교육 정책에 결과를 반영하며, 장기적으로 통합교육을 원칙으로 삼고 분리교육을 축소해야 한다. 교육접근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설비와 기기, 자료가 실질적으로 접근성 향상에 도움을 주는 적절한 것인지 평가하고 개선해야 한다. 교직원 연수에 대한 평가와 의견을 수렴하는 체계를 갖추고, 우수 교원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연수 내용과 방식을 개발해야 한다. 장애아동 대상 학교폭력 실태를 파악하고, 무관용 정책을 도입하며 인권친화적인 교육현장을 조성해야 한다. 「특수교육법」을 개정하여 장애영유아가 유아교육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하고, 장애여성에 특화된 평생교육을 개발하고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21. 제25조 건강

- 장애인권리위원회는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험가입을 인정하는 「상법」 제732조를 삭제하고, 생명보험에 관한 CRPD의 유보를 철회할 것을 권고하였다.
- 정부는 2014년 정신장애인의 생명보험 가입을 전면 금지한 「상법」 제732조를 개정하여, 의사능력이 있는 정신장애인은 생명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상법」 제732조의 전면삭제는 CRPD의 취지를 오해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생명보험에 관한 CRPD의 철회는 관계기관과 논의하여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 장애인권리위원회는 의사능력 유무에 기반한 보험가입 거부는 차별임을 밝혔다. 따라서, 개정 「상법」이 실질적으로 장애인의 보험 가입을 차별하고 있는 수단이

되고 있지 않은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정부는 생명보험에 관한 CRPD 가입 유보를 철회하는데 신중한 입장이지만, 개정 「상법」이 정부의 입장대로 장애인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면 CRPD를 유보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 따라서, 「상법」 제732조는 CRPD의 취지와 의사능력에 관한 다른 법과의 검토를 통해 개정 또는 삭제될 필요가 있고, 생명보험에 관한 CRPD 유보도 철회할 필요가 있다.

22. 제26조 가활 및 재활

- 이 부분에 관한 장애인권리위원회의 권고 의견은 없으나, 재활에서 가활로의 패러다임 전환 및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가 주요 쟁점이 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재활에서 가활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반영된 중앙정부의 정책이 존재하지는 않고, 서울시에서 최초로 가활센터 설립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계획 중인 사업 내용인 정보의 수집이나 배포 등은 아직 가활 패러다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 관련하여 정부가 민간과 협의를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커다란 진전이나, 아직 구체적인 정책 방향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 정부는 가활로의 패러다임 전환이나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가 장애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민간과 협력하여 적절한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

23. 제27조 근로 및 고용

- 장애인권리위원회는 (i) 지적, 정신장애인의 노동시장 참여를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차별적 법령을 철폐하고, (ii) 최저임금법상의 급여에서 배제된 장애인들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고, (iii)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대안적 방식으로 전환하고, (iv) 실업률 격차 해소를 위한 조치, 특히 장애여성에 대한 고용격차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하며, (v) 장애인 의무고용할당제를 실효적으로 이행한 후 성과 및 결과에 대한 관련 통계자료를 발간할 것을 권고하였다.
- 정부는 최종견해 중 (i) 지적,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법령 철폐에 대해서는 불수용 의사를 밝히며, 이들에 대한 노동시장 참여를 배제하는 차별적 법률이 존

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ii) 보충급여제의 도입에 대해서는 일부·조건부 수용의사를 밝히며,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제도를 엄격히 운영할 것임을 밝혔다. (iii) 장애인 보호작업장 폐쇄에 대해서는 불수용의사를 밝히면서, 중증장애인이 근로 및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대안이 없음을 근거로 제시하였다. (iv) 실업률 격차 해소를 위한 조치 및 장애 여성 고용 관련 권고에 대해서는 수용의사를 밝히며, 각종 취업지원 강화책 및 장애 여성을 위한 적합 직무 발굴 등을 하고 있다고 하였다. (v) 장애인의무고용제도의 시행 보장 및 관련 통계 발간 권고에 대해서는 수용 의사를 밝히며, 의무고용률 상향 조정 및 통계 발간 등의 조치를 취하였음을 제시하였다.

- (i) 지적, 정신장애인의 노동시장 참여를 배제하는 차별적 법률은 다수 존재함이 밝혀졌다. 이러한 법률을 개정하는 한편, 결격사유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ii)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제도를 엄격히 운영하는 것만으로는 보충급여제를 도입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최저임금 적용제외제도의 폐지 및 보충급여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 (iii) 장애인 보호작업장의 경우 장애인들을 사회로부터 격리시켜 합법적으로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하는 기구로 전락하였다고 비판하는 입장과, 그나마 고용의 기회를 제공하는 시설로서의 의의에 주목하는 입장이 대립한다. 궁극적으로는 장애인 보호작업장이라는 틀을 벗어난 대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iv) 실업률 격차 해소를 위한 조치 및 장애 여성 고용 관련해서는 정부가 유형별 특화훈련, 적합 직무 발굴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관련 통계도 나아진 수치를 보이고 있다. 다만, 수치상으로 고용률이 올라갔을 뿐 고용의 질이나 고용 실태가 개선되지는 않았다는 비판적 견해도 있었다. (v) 장애인고용의무제도의 시행에 따라 의무고용률이 5년 연속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통계의 정확성 및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24. 제28조 적절한 생활수준과 사회적 보호

- 장애인권리위원회는 장애등급제와 가족의 소득 및 재산이 아닌, 장애인당사자의 특성, 상황 및 필요에 따라 최저생계비를 지원할 것을 권고하였다.
- 정부는 최종견해에 대해 불수용의사를 밝히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이므로 장애인에게만 지원 체계를 달리 하기 곤란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이 가구 단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장애등급

제와 무관한 것이며, 장애당사자의 특성, 상황, 욕구 등에 대해서는 장애인 연금·장애수당 등을 지급하고 있음을 그 근거로 들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전 국민을 한 것으로 특정 계층에게만 지원 체계를 달리하기 어렵다는 점에는 동의할 수 있다. 하지만, 현행 생계급여제도의 틀 안에서 장애 관련 추가 비용을 반영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i) 장애인 추가비용을 장애인 가구의 생계급여 선정기준에 포함시키거나 (ii) 수급대상자 선정기준 중 부양의무자의 소득평가액을 산정할 때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을 반영한 금액에 장애 관련 추가 비용 전체를 반영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25. 제29조 정치 및 공적 생활에 대한 참여

- 장애인권리위원회는 모든 장애 유형을 고려한 선거권, 피선거권과 선거정보접근권의 보장, 선출기구에 대한 장애인의 참여 증진, 투표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조항의 철회 등을 권고하였다.
- 정부는 최종견해에 대해 수용의사를 밝히면서, 구체적인 이행 내역으로 1층 투표소 마련,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한 접자형 선거공보 작성 의무화, 일정비율 이상의 장애인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대한 보조금 지급 제도 마련, 「민법」 제9조의 개정 등을 들었다.
- 장애인 투표권 보장 규정은 재량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고, 투표권의 질적 측면은 고려되고 있지 않다. 현행 접자형 선거공보물 규정이나 2인 동반투표 규정 등은 여전히 투표권을 제한하고 있다. 장애인 추천 보조금 제도는 장애인의 실질적인 선거 참여를 보장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성년후견인의 선거권은 여전히 제한되어 있다.
- 관련 투표권 보장 규정을 의무화하여야 하고, 정당한 편의제공의 질적 측면을 고려하여 접자형 선거공보물 면수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2인 동반 투표 규정도 개정하여야 한다. 실질적인 피선거권 보장을 위하여 선거운동 제한을 완화하여야 한다.

26. 제30조 문화생활, 레크리에이션, 여가생활 및 체육활동에 대한 참여

- 장애인권리위원회는 마라케시 조약의 비준과 이행, 스포츠 행사에서 장애인의 접근성 보장 등을 권고하였다.

- 정부는 최종견해에 대해 수용의사를 밝히면서, 마라케시 조약에 가입하고 공포된 모든 저작물에 대하여 시각장애인을 위한 복제를 허용하는 규정을 두고, 2018 평창 패럴림픽에서도 충분한 편의제공을 하였다는 입장이다.
- 마라케시 조약을 비준하고, 「저작권법」에서 장애인을 위한 복제권 및 배포권을 규정한 것은 정부의 노력이라 할 만하다. 그러나 체육활동 참여나 문화생활 향유 등에 관한 정부의 노력과 사회인식 수준은 여전히 낮다.
- 정부는 장애인의 체육활동이나 문화생활 참여를 위하여 접근성을 개선하고, 관련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27. 제31조 통계와 자료 수집

- 장애인권리위원회는 워싱턴 그룹의 방법론에 따라 데이터를 수집 및 배포하고, 접근 가능한 통계를 대중에게 공개하라고 권고하였다.
- 정부는 최종견해에 대해 수용의사를 밝히면서,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시 워싱턴 그룹의 방법론에 따른 장애인 유형 문항을 추가하였고, 통계청 홈페이지 및 국가통계포털에 웹 표준을 적용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국제 표준안을 준수하고 장애인 관련 통계 요구 사항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 대부분의 국가승인통계는 여전히 장애 항목을 포함하지 않고 있고, 장애 항목을 포함한 경우에도 단순한 데이터 수집에 불과한 경우가 많다.
- 정부는 국가통계 전반에 워싱턴그룹의 방법론을 도입하고, 「통계법」에 근거 조항을 마련하여야 한다.

28. 제32조 국제협력

- 장애인권리위원회는 정부에게 CRPD의 효과적 이행과 아태 장애인의 “권리 실현”을 위한 인천전략과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2030의제의 연계를 고려한 정부의 국제협력 노력을 설명할 것을 요구하였다.
- 정부는 현재 유엔에스캅(UNESCAP)의 장애통계구축 사업 지원, 몽골과 라오스, 인도네시아의 장애인지원 사업, 인천전략기금운영사무국 및 인천전략국제협력추진단 운영, 2016년과 2017년 장애분야 국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국제포럼 개최 및 인천전략 공모사업 진행,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장애포괄적 개발협력사업 시행 노력, 장애 분과 전문위원 위촉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 인천전략과 관련하여, 국내 이행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는 SDGs 이행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정부 차원의 로드맵이나 컨트롤타워가 없고, 관련 예산은 현재 연 7억원 수준에 불과하며 장애계 참여가 보장되지 않는다.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언급된 인천전략과 관련된 이행 계획은 실효성이 낮고, SDGs는 언급조차 되어 있지 않다.
- 정부가 인천전략이나 SDGs의 국내 이행조차 미흡하다는 점에서 인천전략과 SDGs의 연계를 고려한 국제협력은 더욱 기대하기 어렵다. 정부가 2015. 11. 발표한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에 장애인과 관련된 내용이 없다.
- 따라서 정부는 수용하였다는 취지로 답변하였지만, 이행이 미흡하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 우선 인천전략과 SDGs의 국내 이행을 강화하여야 한다. 인천전략에 관한 정부 차원의 로드맵이나 컨트롤타워 구축을 신속히 진행하고, 예산을 늘려야 한다. 이와 동시에 국제협력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로드맵과 컨트롤타워가 구축되면 국제개발프로그램과 활동이 더 체계적으로 이행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2021년부터 적용될 제3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중점 지원분야로 장애를 적극 고려하여야 한다.

VI. CRPD 이행 강화를 위한 개선 방안

1. 서설

- 개별적 쟁점을 살펴보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협약을 실질적으로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관련하여 CRPD는 제4조 제3항과 제33조에서 국내적 이행 및 감독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특히 CRPD는 이행과 감독의 과정에 장애인 및 장애인단체의 참여를 강조한다.
- 최근에 채택된 일반논평 제7호는 협약의 이행과 감독에 관하여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2. CRPD의 법률규범력 확보

- CRPD의 이행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CRPD의 법적 규범력을

인정하는 것이다. 행정기관 또는 사법부, 나아가 국민이 CRPD를 국내법과 동일한 법률규범으로 인식하고 있지 못하고 있고, 장애인 차별 등 장애인의 권리와 관련된 소송에서 CRPD를 법률규범으로 원용한 사례는 거의 찾기 어렵다.

- CRPD를 포함한 국제인권조약의 법적 효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통상조약이행법과 같은 이행법률을 별도로 제정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

3. 정부의 CRPD 이행체계 구축

- 나아가 정부의 CRPD 이행체계가 보완되어야 한다. CRPD는 근본적으로 복지 담론이 아니라 인권 담론에 의한 조약이므로 장기적으로 법무부의 인권기능과 조직을 강화하여 인권조약을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 다양한 부처에 흩어져 있는 장애인정책과 법률이 CRPD에 부합하는지 평가하고, 조정하며 강화하는 역할을 하려면 국무총리의 역할이 높아져야 한다.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여 장애 담당 국무조정실장을 두거나 적어도 인권정책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인권담당 국무조정실장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 또한 최종견해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역할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소집을 정례화하여 현안을 파악하고 거시적인 정책의 방향을 미리 정하여야 하며, 대통령, 국회, 법원,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적극적인 정책자문, 조언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위원들을 위촉할 때 전문성을 가진 장애인 당사자들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CRPD와 연동시키면, 그 이행여부를 점검함으로써 CRPD의 이행과 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다.

4. 국가인권위원회의 모니터링 등 역할 강화

- CRPD 제33조 제2호, 「국가인권위원회법」 각종 규정과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9조 등에 기초하여, CRPD 모니터링을 위한 독립적인 기구로서 국가인권위원회는 협약의 국내적 이행을 증진 보호 감독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 기존 국가인권위원회의 모니터링 관련 활동 계획이 최종견해에 집중되어 있는 점, 독립기구이자 준사법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 정책 전반을 점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점, 위 계획에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대해 전혀 언급이 없다는 점 등이 문제라는 지적이 있다.

- 모니터링을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 내 배정된 인력이 부족하고, 예산은 일부 증가하였지만 모니터링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러한 인적, 예산상 한계로 인하여 본 연구용역 발주를 제외하고 모니터링과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가 적극적으로 개선한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
- 모니터링 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에 CRPD 이행을 모니터링하는 전담직원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정부는 국가인권위원회 외에도 CRPD 이행 및 감독에 관여하는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국무총리실을 포함하여 CRPD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모니터링 방법과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인권실태조사, 「장애인복지법」, 사회복지법에 따른 실태조사가 CRPD 모니터링의 관점에서 설계되고 이를 반영하여야 하고, 장애인 권리의 향상이 다른 사회적 약자의 인권 개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도 모니터링에 포함시켜야 한다.

5. 장애인과 장애인단체의 참여 보장

- CRPD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당사자 또는 관련 단체의 역할을 높여야 한다.
- 절차와 내용에서 장애인 참여가 보장되어야 하고, 장애인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능력 향상이 필요하다.
- 앞서 살펴본 여러 모니터링 활동에서 장애인 및 장애인단체의 참여를 법적으로 보장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심의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위 계획의 추진성과를 평가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단체들이 포함된 위촉위원들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도록 규정을 강화하는 것을 고려해보아야 한다.
-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개정하여 CRPD 모니터링 체계에는 장애유형과 장애 정도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장애인당사자 참여를 보장하고, 남녀의 비율은 각 50%로 맞추어야 하며, 예산과 관련한 부분을 명시하여 각 모니터링 메커니즘의 운영과 임무수행에 적절한 인적 물적 지원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 이러한 내용을 반영한 모니터링과 관련한 법률개정안은 595쪽 참조.

VII. 결 론

1. 의의 및 한계

- 문헌연구 방식의 실태조사를 통하여 현재 시행 중인 장애인에 관한 정책, 제도를 살펴보고, 설문조사 및 FGI 방식의 실태조사를 통해 다양한 법령과 제도가 장애인 및 관련자들에게 실제로, 제대로 작동하는 것인지 살펴보는 기회가 되었다.
- 이 과정에서 연구팀은 장애인에 관한 법령과 제도를 만들고 집행하는 정부기관과 장애인, 장애인단체 사이에 인식의 차이가 크다는 점을 새삼 알게 되었다.
- CRPD는 모니터링의 필요성과 모니터링 과정에서의 장애인, 장애인단체의 참여를 강조한다. 이번 연구는 CRPD 이행에 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기 위하여 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최초로 활용하여 장애인단체를 대상으로 평가조사를 시행한 것에 의미가 있다.
- 특히 평가조사는 장애인단체들이 CRPD 이행에 관한 모니터링 과정에 직접 참여하였다는 점, 장애인단체들은 평가조사 참여를 통해 최종견해와 쟁점목록을 알게 되고, 정부는 장애계의 인식과 문제를 점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연구기간과 예산의 한계상 정부의 답변을 기초로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연구가 이루어졌고, 제언은 기존의 문제제기나 개선방안을 정리하는 수준으로 이루어졌다.
- CRPD에 관한 지표와 최종견해, 쟁점목록 지표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에 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고, 협약에 대한 지표를 확정하여 이를 활용한 평가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연구결과의 활용방안

- 이번 연구를 통해 개발된 평가지표는 향후 CRPD 이행에 관한 모니터링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연구과정 후반기에 제2·3차 병합 국가보고서 초안을 최대한 평가대상으로 삼아서 검토하였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가 향후 장애인권리위원회에 모니터링기구로서 독자적인 의견서를 제출할 경우 의견서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이번 장애인에 관한 주요 정책을 망라하여 점검하면서 제시한 개선방안은 향

후 관련 주제의 정책권고시에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장애인정책종합계획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추진성과를 평가하고,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가 사전심의를 할 때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향후 장애인에 관한 법률이나 정책을 만들거나 수정할 때 관련 쟁점의 최신 국내외 주요 내용이 포함된 이 연구결과가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장애인단체들이 장애인권리위원회에 제출할 민간보고서를 작성할 때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고, 독자적인 모니터링을 할 때 평가지표를 활용할 수 있다.

목 차

I. 서 론	1
1. 연구의 배경	3
2. 연구의 목적	4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4. 연구의 개요	7
II. CRPD에 대한 이해	11
1. CRPD 개요	13
2. 최종견해 및 쟁점목록 개요	14
III. CRPD 이행 모니터링 평가지표 개발	19
1. CRPD 이행 모니터링 평가지표 개발	21
2. 최종견해 이행 모니터링 평가지표 개발	50
3. 쟁점목록 이행 모니터링 평가지표 개발	56
IV. 정부의 CRPD 이행 상황에 대한 민간 평가 조사 결과	89
1. 조사개요	91
2. 조사 참여 단체 및 자료 수집	95
3. 분석방법	98
4. 조사결과	99
5. 함의	151
V. CRPD 국내 이행실태 조사연구	153
1. 서설	155
2. 제5조 평등 및 비차별	155

3. 제6조 장애여성	175
4. 제7조 장애아동	199
5. 제8조 인식제고	204
6. 제9조 접근성	219
7. 제11조 위험상황과 인도적 차원의 긴급 사태	248
8. 제12조 법 앞의 동등한 인정 관련	255
9. 제13조 사법에 대한 접근	271
10. 제14조 신체의 자유 및 안전	286
11. 제15조 고문 또는 잔혹한,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차별로부터의 자유	308
12. 제16조 착취, 폭력 및 확대로부터의 자유	317
13. 제17조 개인의 완전함 보호	332
14. 제18조 이주 및 국적의 자유	336
15. 제19조 자립적 생활 및 지역사회에의 동참	346
16. 제20조 개인의 이동	381
17. 제21조 의사 및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권	385
18. 제22조 사생활의 존중	391
19. 제23조 가정과 가족에 대한 존중	404
20. 제24조 교육	420
21. 제25조 건강	457
22. 제26조 가할 및 재할	466
23. 제27조 근로 및 고용	473
24. 제28조 적절한 생활수준과 사회적 보호	509
25. 제29조 정치 및 공적생활에 대한 참여	517
26. 제30조 문화생활, 레크리에이션, 여가생활 및 체육활동에 대한 참여	535
27. 제31조 통계와 자료 수집	544
28. 제32조 국제협력	548
29. 결 론	556

VI. CRPD 이행 강화를 위한 개선 방안	567
1. CRPD 관련 규정	569
2. CRPD 이행 및 모니터링 관련 최종견해 및 쟁점목록	571
3. CRPD의 법률규범력 확보	572
4. 정부의 CRPD 이행체계 구축	574
5. 국가인권위원회의 모니터링 등 역할 강화	580
6. 장애인과 장애인단체의 참여 보장	592
VII. 결 론	597
1. 의의 및 한계	599
2. 연구결과의 활용방안	601
■ 참고문헌	603
■ 부 록	623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최종견해와 쟁점목록 이행 평가에 관한 조사 설문지	625

표 목 차

[표-1]	협약 조항 대비 쟁점목록의 개수 현황	17
[표-2]	인권지표의 범주	22
[표-3]	자료원의 특성	25
[표-4]	Gold Indicators의 구성	30
[표-5]	장애인의 삶의 질 지표	37
[표-6]	CRPD과 QoL 지표	37
[표-7]	최종견해와 쟁점목록 평가지표의 수	55
[표-8]	최종견해와 쟁점목록의 통합 평가지표	56
[표-9]	설립 근거법에 따른 국가 분류	160
[표-10]	2012년~2016년 소송구조 현황	164
[표-11]	국가인권위원회 장애분야 사건접수 현황	166
[표-12]	장애차별 진정 사건 권고 내역 및 이행현황(2008.4.11.~2018.3.31.)	167
[표-13]	최근 5년간 진정·상당·민원·안내 등 접수·처리 현황	167
[표-14]	최근 5년간 사유별 차별행위 진정사건 접수 현황	168
[표-15]	차별구제소송 사례	173
[표-16]	2018년도 성인지 예산서 현황	178
[표-17]	서울시 정신적 장애여성 학대피해 방지 정책 과제	187
[표-18]	인공임신 중절인 경우 본인의 의사 여부	189
[표-19]	출산 후 산후조리의 충분도	190
[표-20]	여성장애인의 가장 필요한 서비스(1순위)	191
[표-21]	본인의 장애로 인한 자녀 양육시 애로사항	194
[표-22]	2011년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 여부	208
[표-23]	지역별·시설별 최종 차등목표치	224
[표-24]	버스정류장 이동편의시설 설치현황	225
[표-25]	저상버스 목표치	226
[표-26]	특별교통수단 목표치	227

[표-27]	시설 주체별 편의시설 설치 현황	238
[표-28]	건물 유형별 편의시설 설치현황	240
[표-29]	장애인 안전 종합 대책 개요	251
[표-30]	후견유형별 연간 접수 건수	259
[표-31]	인구 100,000명당 후견 하에 있는 성인의 수의 각국 비교	260
[표-32]	개정법에 따른 입·퇴원제도 개요	290
[표-33]	법 시행 전후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 현황	291
[표-34]	유럽연합 회원국(총 27개국)의 강제입원 제도 비교	295
[표-35]	연도별, 유형별 장애인 학대 현황	322
[표-36]	장애인복지사업의 예결산 추이	352
[표-37]	2018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지침 보도자료	368
[표-38]	기본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	380
[표-39]	추가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	380
[표-40]	보행환경 이동편의시설 설치 현황	382
[표-41]	교통약자의 보행환경 만족도	383
[표-42]	특수학급 현황	425
[표-43]	일반학급(전일제 통합학급) 현황	425
[표-44]	연구요약 : 통합교육 정책의 효과와 발전방안 연구	427
[표-45]	통합학급 담당 교사의 특수교육 관련 연수 과정 이수 현황	438
[표-46]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보조인력 연수현황	439
[표-47]	국립특수교육원 원격연수	440
[표-48]	장애영유아 기관 배치 현황	445
[표-49]	장애인의 성별 교육정도	448
[표-50]	전체국민 교육정도	448
[표-51]	재가 여성장애인 교육정도	449
[표-52]	여성가족부 수행 수행기관 이용자 수	452
[표-53]	보건복지부 사업 수행기관 이용자 수	453
[표-54]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정도 및 성별에 따른 훈련 현황	454
[표-55]	통합사업의 기본원칙	455
[표-56]	2012~2017년 연도별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근로자 인가 현황	485

[표-57] 2012~2017년 연도별 최저시급 및 최저시급 적용제외 장애인근로자 평균시급 현황	485
[표-58] 개정안 주요 내용	490
[표-59] 2018년도 생계급여 선정기준 및 급여기준	513

그림 목 차

[그림-1]	인권지표의 개념틀	23
[그림-2]	인권지표의 자료원	24
[그림-3]	속성 찾기 단계	27
[그림-4]	지표 선택 단계	28
[그림-5]	맥락 맞춤 단계	29
[그림-6]	인간 기능과 연관된 활동의 상호작용	35
[그림-7]	평가지표 개발 수행 과정	55
[그림-8]	“발달장애 부모들 청와대 앞 농성 68일 만에 종료” (연합뉴스 2018. 6. 8.) 기사의 댓글	216
[그림-9]	“장애인 지하철 이동권 보장하라 68일간 투쟁 돌입” (2018. 8. 14 17:34) 기사의 댓글	217
[그림-10]	“보호 시설 장애 여성 ‘강제 피임 시술’ 의혹” (2018. 9. 21. 22:11) 기사의 댓글	217
[그림-11]	남녀 장애인과 남녀 비장애인의 교육기회 충족도 비교	450

I

서론

1. 연구의 배경	3
2. 연구의 목적	4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4. 연구의 개요	7

1. 연구의 배경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United Nations Committee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이하 “장애인권리위원회”)는 2014년 9월 17일과 18일에 개최된 제147차, 148차 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최초보고서(Initial Report)를 심의하고, 2014년 9월 30일에 개최된 제165차 회의에서 최종견해(Concluding observations on the initial report of the Republic of Korea, 이하 “최종견해”)를 채택하였다. 위 최종견해는 모두 66항으로 대한민국에 대한 다양한 권고를 담고 있다. 대한민국은 2019년 1월 11일까지 제2·3차 병합 국가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여기에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이하 “CRPD” 또는 “협약”) 및 최종견해에 대한 이행 여부가 포함되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CRPD 제33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CRPD 이행을 증진, 보호 및 감독, 즉 모니터링하기 위한 독립기구’이다. CRPD 제33조 제3항에 따라 시민단체, 특히 장애인과 이들을 대표하는 단체들은 모니터링 절차에 충분히 개입하고 참여할 수 있다.

제33조 국내적 이행 및 감독

1. (생략)
2. 당사국은 자국의 입법과 행정 체계에 따라 이 협약의 이행을 증진, 보호 및 감독하기 위하여 적절한 경우 당사국 내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독립적 기구를 포함한 체제를 유지, 강화, 지정 또는 설치한다. 이러한 체제를 지정 또는 설치할 경우, 당사국은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한 국가기구의 지위 및 역할과 관련된 원칙을 고려한다.
3. 시민단체, 특히 장애인과 이들을 대표하는 단체들은 감독 절차에 충분히 개입하고 참여한다.

최종견해에서 장애인권리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다(제62항).

국가인권위원회가 협약의 이행을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인적·재정적 자원을 제공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위원회는 당사국이 협약 이행 모니터링에 있어서, 장애인 및 그들을 대표하는 단체의 완전한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법률 조항을 채택할 것을 권고한다.

이처럼 국가인권위원회는 CRPD 및 최종견해의 이행 여부를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CRPD 및 최종견해 이행상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평가지표 개발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기초로 CRPD의 국내적 이행 상황에 대한 평가도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CRPD의 이행강화를 위한 정책을 검토하고, CRPD 이행 모니터링에 장애인 및 장애인 단체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될 필요가 있다.

2. 연구의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대한민국의 CRPD 이행 상황에 관한 현황조사 및 평가를 통해 CRPD 이행 강화를 위한 정책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① CRPD 이행 모니터링을 위한 최종견해 및 쟁점목록에 대한 평가지표 개발, ② 국내적 이행 상황에 대한 현황조사 및 평가(실태조사), ③ CRPD의 국내적 이행강화를 위한 개선방안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은 2007년 CRPD에 서명하였고 2008년 비준동의를 거쳤다. 관련하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비롯하여 장애인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여러 법률을 제정하고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그럼에도 장애인에 관한 법률이나 정책들이 CRPD의 취지를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다른 법률들과 서로 상충하는 경우도 있다. 여러 법률과 정책이 마련된 경우에도 실효성이 낮거나 실질적 이행이 부족하여 장애인들은 여전히 차별의 해소와 인간다운 삶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법과 정책을 잘 만드는 것만큼, 만들어진 법과 정책이 장애인들의 삶에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가인권위원회는 CRPD의 국내적 이행을 증진·보호·감독하기 위한 모니터링 기구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모니터링 절차에는 장애인과 장애인단체들이 충분히 개입하고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최종견해에서도 국가인권위원회의 모니터링에 장애인 및 장애인단체가 참여하도록 법제화할 것을 촉구하였다. 최종견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관련 법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이번 연구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이다.

장애인권리위원회는 우리나라 국가보고서에 대한 심의를 통해 CRPD 전반에

대해 다양한 권고를 하였다. 그리고 최근 위 권고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쟁점목록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는 내년 초 위 권고사항 및 쟁점목록에 대한 답변을 담은 제2·3차 병합 국가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모니터링 결과를 기초로 하여 CRPD 이행에 관한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하여 국가보고서 및 답변서를 점검하고 장애인의 권리를 증진시킬 수 있는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이행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CRPD가 장애인의 권리 전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CRPD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의 권리에 관련된 법률과 정책 전반에 대한 깊고 넓은 이해를 필요로 한다.

참고로 지금까지 CRPD 이행과 관련된 기존 연구가 몇 차례 수행되었다. 한편 장애인단체의 지속적인 장애인 권리 강화를 위한 입법운동의 결과 「장애인복지법」 등 장애인 관련 많은 법률의 제·개정 이 있었다. 또한 최근에는 제5차 장애인 정책종합계획이 확정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진들은 최근 상황을 반영하여 기존 연구 결과를 검토하고, 추가적인 실태조사와 해외사례 분석 및 법률과 제도 분석을 통해 CRPD의 이행 상황을 평가하고 이행 강화 방안을 검토하였다.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가. 연구 범위

(1) 개괄

본 연구는 크게 CRPD 이행 모니터링을 위한 평가지표 개발, 주요 분야별 CRPD 이행에 관한 실태조사, CRPD 이행 강화 및 모니터링 개선방안으로 구분되고, 각각 기초자료 분석, 조사 및 의견 수렴, 법률 및 정책 개선 방안 제안 총 3단계로 구성된다.

(2) CRPD 이행 모니터링을 위한 평가지표 개발

CRPD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행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가 개발되어야 한다. 지표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인권지표

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하고, 인권지표 개발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기존에 개발된 지표도 살펴보지만, 이 연구용역에서는 자체적으로 지표를 개발하여 최종견해와 쟁점목록의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하는데 적용하고자 한다(다만 용역기간이 부족하여 개발된 이행지표 개발을 적용하는데 일정한 한계가 있었음을 밝히고자 한다).

(3) 주요 분야별 CRPD 이행에 관한 실태조사

CRPD는 장애인의 권리 전반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포괄적이고 광범위하다. 이 연구용역에서는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최종견해와 쟁점목록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법령과 정책에 대한 핵심 쟁점 62개를 추출하였다. 그리고 이 쟁점에 대한 국가기관 및 관련기관들의 이행상황을 점검, 평가하였다. 이 과정에서 선례가 되는 해외의 CRPD 이행 관련 법령과 정책을 비교, 분석하고 전문가 자문 및 장애인단체와의 간담회 등을 통하여 CRPD 이행 여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4) CRPD 이행 강화 및 모니터링 개선 관련

CRPD 이행 강화를 위해 CRPD의 법률규범력 확보 방안, 정부의 CRPD 이행 체계 구축 방안, 국가인권위원회의 모니터링 등 역할 강화 방안을 살펴본다. 또한 CRPD 이행 모니터링과 관련하여 장애인 및 장애인 단체 참여 보장 실태를 파악하고, 이와 관련된 국내 법률 현황을 살펴본다. 나아가 전문가, 장애인 및 장애인단체의 의견 수렴을 거쳐 CRPD의 이행 모니터링에 장애인 및 장애인단체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법률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나. 연구 방법

이 연구용역에서는 각 쟁점별 CRPD 이행상황 점검 및 평가 과정에서 문헌조사와 관계기관의 협조를 통한 조사 등이 주된 연구방법이 되었고, 모니터링 개선과 관련하여서는 개발된 지표에 기초한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 등이 이루어졌다. 이와 함께 전문가 및 장애인, 장애인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실태조사, 인터뷰, 자문 등을 병행하였다.

4. 연구의 개요

가. 개괄

본 연구용역은 CRPD 및 최종견해, 쟁점목록의 평가지표를 개발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평가지표는 연구진 내부의 평가지표 초안 개발 TF팀에서 초안을 도출하고, 내부 공동연구원들의 상호 검토를 거쳐 연구진 초안을 완성한 후 외부 자문위원들의 검토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개발된 평가지표를 기반으로 설문조사와 집단심층면접(Focus Group Interview, 이하 “FGI”)을 진행하여 CRPD 이행상황에 대한 민간 평가를 진행하였다.

CRPD 이행 상황에 대해서는 해당 조문에 대한 핵심 쟁점을 먼저 선정하고, 관련 쟁점에 대해 문헌 연구(관계기관 자료, 선행연구, 관련 보도 등 조사, 국내외 기준, 해외 사례 검토) 등을 통해 대한민국 정부의 ‘조치’에 대한 ‘이행 여부’, 해당 조치를 이행한 경우의 그 적절성 및 충분성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해당 쟁점 사항에 대한 연구진의 정책제안을 담았다. 마지막으로 CRPD 이행 강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였다.

나. 평가지표 개발

(1) CRPD 이행 모니터링 평가지표 개발

CRPD 이행 모니터링 평가지표를 개발하기 위해 인권 관련 평가지표에 대한 선행 검토를 거쳐 국외 CRPD 관련 평가지표 개발 사례를 살펴보았다. 통계 구축 가능성, 국제적 맥락 고려, 국내 여건 반영 등 세 가지 측면을 염두에 두고 평가지표를 개발하였다.

(2) 최종견해 및 쟁점목록 이행 모니터링 평가지표 개발

최종견해 이행 모니터링의 평가지표와 쟁점목록 이행 모니터링 평가지표는 동일한 지표가 많아서, 최종견해와 쟁점목록의 이행 모니터링 평가지표를 하나로 통합하여 개발하였다. 연구진 초안에 대한 외부 자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따라, 이를 수정·보완하는 과정을 거쳐서, 본 연구의 최종견해 이행 모니터링 평가지표가 개발되었다.

다. CRPD 이행 현황에 대한 민간 평가 조사

(1) 설문조사

개발된 평가지표를 기초로 주요 장애인 단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가 실시되었다. 설문조사 문항은 정부의 이행 여부 및 정부 이행 현황의 충분성, 적절성 등을 평가할 수 있도록 객관식 문항과 서술형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총 43개 단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최종 22개 단체가 설문조사 결과를 회신하였다.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는 SPSS 통계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종합·분석하였다.

(2) FGI

국내 주요 장애인 단체 및 장애인 관련 전문가에 대한 면접조사를 통해 CRPD 이행 현황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였다. 장애인단체로 시각장애인연합회, 장애물 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장애부모연대, 장애여성네트워크, 장애여성공감, 장애인학생지원네트워크, 한국농아인협회,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회, 한국장애인연맹,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등 총 11개 단체가 참여하였다. 장애인 관련 전문 법률가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임형국 변호사, 희망을 만드는 법 김재왕 변호사 등이 참여하였다.

라. CRPD 이행 현황에 대한 문헌 조사 및 정책 제언

연구용역팀은 CRPD 이행 현황을 쟁점별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CRPD, 최종전해, 쟁점목록에서 62개의 핵심쟁점을 추출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이행현황을 파악하였다. 이 핵심쟁점을 ① 교육 및 이행 강화, ② 접근권 및 프라이버시, ③ 개인 및 가족, 주거, ④ 생명 및 신체 등 4개의 큰 주제로 분류하여 해당 쟁점을 집중적으로 검토하였다.

세부 핵심쟁점은 아래 표와 같다.

<p><교육 및 이행강화>(17)</p> <p>제5조 평등 및 차별(5)</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원 구제 조치 권한 인식 2. 위원회 독립성 강화 3. 차별구제 소송 비용 면제 또는 경감 4. 법무부장관 시정명령 요건 완화 5. 「장애인차별금지법」 판사 인식 제고 <p>제8조 인식 제고(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6.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p>제12조 법 앞의 동등한 인정(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7. 조력사결정체계 전환 8. 조력사결정체계 교육 <p>제13조 사법에 대한 접근(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9.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 이행 10. 사법접근보장 교육 프로그램 11. 사법지원 가이드라인 구속력 부여 <p>제24조 교육(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2. 통합교육정책 효과성 연구 13. 학교 및 학습기관에서 통합교육 및 합리적 편의제공 노력 확대 14. 교육 담당자 훈련 강화 <p>제32조 국제협력(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5. 국제개발 프로그램 및 활동 <p>제33조 국내적 이행 및 감독(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6.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정책 개발 및 이행 보장 17. 국가인권위원회 모니터링 지원 	<p><접근권>(13)</p> <p>제9조 접근성(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8. 모든 종류의 대중교통 이용 19. 공공시설 및 작업장 접근성 강화 20. 인터넷 웹사이트, 스마트폰 정보 접근성 강화 <p>제18조 이주 및 국적의 자유(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21.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철회 22.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철회 <p>제20조 개인의 이동성(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23. 보도에서의 이동 <p>제21조 의사 및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권(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24. 수화 및 점자 공식 인정 25. 장애인 방송자료 접근성 강화 <p>제29조 정치 및 공적 생활 참여(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26. 선거정보접근권 강화 27. 선출기구 장애인 참여 증진 28. 투표권 및 피선거권 보장 <p>제30조 문화생활, 레크리에이션, 여가생활 및 체육 활동에 대한 참여(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29. 마라케쉬 조약 비준 및 이행 <p>제31조 통계와 자료 수집(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30. 통계자료 수집 및 접근가능 정보 제공
<p><개인 및 가족, 주거>(20)</p> <p>제6조 장애여성(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31. 장애여성에 특화된 정책 개발 32. 거주시설 내/외 장애여성 폭력 해결 33. 장애여성 평생교육장애여성 34. 임신/출산기간 지원 강화 <p>제7조 장애아동(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35. 법령 제/개정시 아동 및 가족 참여 <p>제19조 자립적 생활 및 지역사회에의 동참(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36. 탈시설 전략 개발 37. 지역 내 지원서비스 강화 38. 사회부조 프로그램 지원 39. 활동보조서비스 이용금액 기준 수정 	<p><생명 및 신체>(12)</p> <p>제11조 위험상황과 인도적 차원의 긴급사태(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51. 위급상황시 장애인 보호 및 안전 보장 및 재난 위험감소 정책 <p>제14조 신체의 자유 및 안전(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52. 자유박탈 허용 조항 철폐 53. 보건의서비스 등의 제공 보장 54. 공정재판 및 적법절차 등 편의 구축 55. 재판 부적합 판정 폐지 <p>제15조 고문 또는 잔혹한,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로부터의 자유(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56. 강제치료 폐지 57. 독립적 모니터링 메커니즘 구축

<p>제22조 사생활의 존중(2)</p> <p>40. 시설거주 장애인의 사생활 보장</p> <p>41. 사회복지시설 개인정보보호</p> <p>제23조 가정과 가족에 대한 존중(1)</p> <p>42. 장애아동 부모 권리 강화</p> <p>제26조 가활 및 재활(2)</p> <p>43. 자활에서 가활로의 전환</p> <p>44.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p> <p>제27조 근로 및 고용(5)</p> <p>45. 장애인 급여 보장</p> <p>46. 보호작업장 운영 중단</p> <p>47. 장애인 고용 촉진 대안 마련</p> <p>48. 장애여성 고용격차 해소</p> <p>49. 고용할당제 실효적 이행 및 통계자료 발간</p> <p>제28조 적절한 생활수준과 사회적 보호(1)</p> <p>50. 최저생계비 지원 체계 변경</p>	<p>제16조 착취, 폭력 및 학대로부터의 자유(2)</p> <p>58. 거주시설 내/외부 폭력 등 사건 조사, 가해자 처벌, 피해자 보상 보장 및 쉼터 제공</p> <p>59. 강제노역 사건 조사 강화 및 보호 제공</p> <p>제17조 개인의 완전함 보호(1)</p> <p>60. 강제불임 근절 및 조사</p> <p>제25조 건강(2)</p> <p>61. 「상」법 제732조 삭제</p> <p>62. 생명보험에 관한 협약 제25조 마항 유보 철회</p>
---	---

위 핵심쟁점에는 최종견해 및 쟁점목록에는 제시되어 있지 않으나, 최근의 중요한 이슈나 쟁점사항(도보에서의 이동, 가활에서 자활로 전환, 시설거주 장애인의 사생활 보장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핵심쟁점에 대해서는 정부의 이행 현황 및 이행계획, 정부 이행 방안 및 이행현황에 대한 평가, 해외 사례, 결론 및 정책 제언을 나누어 검토하였다.

마. CRPD 이행 강화를 위한 개선 방안 연구

CRPD 이행 강화를 위해 CRPD의 법률규범력 확보를 위한 방안과 정부의 CRPD 이행체계 구축방안,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모니터링 강화방안, 장애인과 장애인단체의 참여 보장 방안을 담은 법률개선방안을 연구하였다.

II

CRPD에 대한 이해

- | | |
|-------------------|----|
| 1. CRPD 개요 | 13 |
| 2. 최종견해 및 쟁점목록 개요 | 14 |

1. CRPD 개요

CRPD는 모든 장애인의 인권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인권조약이다. CRPD를 유엔에서 공식적으로 다루기 시작한 것은, 멕시코 Vincent Fox 대통령이 2001년 9월 제56차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CRPD 초안 작성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립 제안서를 제출하면서부터다. 이 제안은 2001년 12월 유엔총회에서 채택되었고,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성의 보호 및 증진에 관한 포괄적이고도 종합적인 국제조약에 관한 특별위원회(the Ad Hoc Committee on a Comprehensive and Integral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the Rights and Dignity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설립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2002년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개최된 제1차 CRPD 특별위원회를 시작으로 하여 2006년 8월에 열린 제8차 특별위원회까지, 모두 여덟 차례에 걸친 치열한 논의 과정을 마친 후, CRPD는 2006년 12월 13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최된 제61차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었고, 2008년 5월 3일부터 발효되었다.

우리나라는 2007년 3월 30일에 개최된 CRPD 서명 개방식 때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서명하였고, 2008년 4월 22일 개최된 제17회 국무회의를 거쳐 2008년 6월 16일에 대통령 재가를 받았으며, 2008년 12월 2일 열린 제278회 국회 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이 협약의 비준동의안이 통과되었다.¹⁾ 비준서 기탁을 거쳐 국내에서 협약이 발효된 것은, 2009년 1월 10일부터이다.

CRPD에 가입한 국가들은 정기적으로, 당사국의 국가보고서를 장애인권리위원회에 제출할 의무가 있다. CRPD 제35조에 따라, 가입국들은 제1차 국가보고서를 협약의 국내 발효 후 2년 이내에, 그리고 제2차 보고서부터는 매 4년마다 당사국 국가보고서를 장애인권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우리나라의 경우, 협약의 제25조 마항이 유보된 채 비준되었고, 선택의정서는 비준되지 않았다.

2. 최종견해 및 쟁점목록 개요

가. 최종견해

장애인권리위원회가 제출된 국가보고서들을 심사한 후, 그 결과 문건으로 제시하는 것이 바로 ‘최종견해’이다. 이 최종견해에는 국가보고서에 기술된 내용과 심사회의 시 해당 당사국 정부 대표단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확인된 정보, 당사국의 관련 비정부 조직(Non-Governmental Organization) 등으로부터 입수한 ‘병행보고서(parallel report)’²⁾ 및 관련 유엔기구나 국제 인권단체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들, 여러 관계자들과의 면담 내용들을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장애인권리위원들이 합의하여 도출해낸 권고 사항들이 포함된다.

만약 장애인권리위원회가 제시한 최종견해의 내용 중, 사실과 다른 정보를 바탕으로 부적절하게 권고된 내용이 있다거나, 당사국이 수용하기 어려워 이의 제기가 필요한 경우, 당사국은 그런 내용을 담은 이의제기 문건을 위원회로 송부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권고 사항들은 당사국이 수용함으로써, 자국의 장애인 권리증진과 권리보호 정책에 반영하게 되며, 차기 국가보고서 제출 시에는 전기 국가보고서에 대한 장애인권리위원회 최종견해에 따라 취한 조치 내용들을 포함시켜서, 당기 국가보고서를 제출하게 된다.

대한민국은 제1차 국가보고서를 2011년 6월 22일 제출하였다. 이 보고서는 2014년 9월 17일과 9월 18일 양일간 개최된 제147차 및 제148차 장애인권리위원회 회의에서 심사되었다. 그 결과 2014년 9월 30일에 열린 제165차 장애인권리위원회 회의에서 ‘대한민국 정부 제1차 국가보고서에 관한 최종견해’가 채택되어, 2014년 10월 3일에 발표되었다.

‘대한민국 정부 최초보고서에 관한 최종견해’의 구성을 살펴보면, ‘서론(Introduction)’, ‘긍정적 측면(Positive aspects)’, ‘주요 우려 및 권고 사항(Principal areas of concern and recommendations)’, ‘후속조치 및 전파(Follow-up and dissemination)’, ‘차기 보고서(Next report)’ 등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총 66개의 조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실질적인 조항별 권고 내용을 다루고 있는 부분은,

2) 이는 다른 표현으로, ‘대안 보고서(alternative report)’, ‘보충적 보고서(supplementary report)’, ‘새도우 보고서(shadow report)’, ‘비정부조직 보고서(NGO report)’ 등으로 지칭되기도 한다.

제6항부터 제62항까지로, ‘선택의정서(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의 비준을 권고한 제10항 하나만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우려 사항’을 언급한 후 그 다음 조항에 그에 대응하는 ‘권고 사항’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작성되어 있다.

나. 쟁점목록

CRPD 제35조에 따라 장애인권리위원회는 국가보고서 심사에 앞서 필요한 추가적 정보나, 종전 국가보고서 제출 이후 변화된 관심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질의서를 만든 후, 심사 대상 당사국 정부에게 송부하게 되는데 이 문서를 ‘이슈 리스트(List of issues)’라고 한다. 이 이슈 리스트를 흔히 ‘현안목록’, ‘질의목록’, ‘쟁점목록’ 등으로 번역하고 있는데, 본 연구의 보고서에서는 그 번역어를 연구용역 공고문의 번역에 맞춰서 ‘쟁점목록’으로 통일하여 사용하였다.

장애인권리위원회는 2014년 9월 17일과 9월 18일 양일간 실시된 대한민국 정부의 제1차 국가보고서 심사를 앞두고, 이에 대한 쟁점목록(List of issues in relation to the initial report of the Republic of Korea)을 2014년 4월 14일부터 4월 17일까지 개최된 회의에서 채택하였다. 이 쟁점목록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는 공식 답변서(Replies of the Republic of Korea to the list of issues)를 2014년 6월 20일에 제출했다.³⁾

한편 장애인권리위원회가 2014년 9월 30일에 채택한 ‘최종견해’의 제66항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는 제2·3차 병합 국가보고서를 2019년 1월 11일까지 제출하게 되어있다. 또한 최종견해 제66항의 내용에는, 이 국가보고서 제출 기한으로부터 최소 1년 전에 장애인권리위원회가 쟁점목록을 준비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장애인권리위원회는 2018년 2월 14일부터 3월 9일까지 진행된 제19차 장애인권리위원회 회의에서, ‘대한민국 정부 제2·3차 병합 국가보고서 제출에 대한 사전 쟁점목록(List of issues prior to submission of the combined second and third periodic of the Republic of Korea)’을 채택하였다. 본 연구가 다루는 ‘쟁점목록’

3) 이 때의 쟁점목록은 대한민국 정부의 제1차 국가보고서 심사와 관련된 것으로 본 연구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본 연구에서 거론하는 쟁점목록은 이 당시의 쟁점목록, 다시 말해서 ‘대한민국 정부 제1차 국가보고서에 관한 쟁점목록’과는 무관한 것임을 밝혀둔다.

은, 이 ‘대한민국 정부 제2·3차 병합 국가보고서 제출에 대한 사전 쟁점목록’(이하 “쟁점목록”)에 한정되어 있다.

‘쟁점목록’은, 조항별로 나열된 34개의 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조항의 성격에 따라,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A. 목적 및 일반적 의무(Purpose and general obligations)’로, 제5조부터는 ‘B. 구체적 권리(Specific rights)’로 구분되어 있다. 이전의 최종견해에서는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를 ‘C. 구체적 의무(Specific obligations)’로 추가 구분하였고, 이번 쟁점목록에서도 그렇게 세 부분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할 텐데, 장애인권리위원회가 제시한 쟁점목록의 원문에는 이 세 가지 구분 중에서 ‘A. 목적 및 일반적 의무’와 ‘B. 구체적 권리’만 있고, ‘C. 구체적 의무’가 빠진 채 제30조 다음에 바로 제31조가 기술되어 있다.⁴⁾

쟁점목록의 내용들은, 이전의 최종견해의 내용과 비슷한 경우가 많았고, 최종견해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질문하거나 최종견해에는 없었던 이슈를 새로이 추가한 경우도 있었다.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4개의 조항을 ‘A. 목적 및 일반적 의무’로 묶어서 3개 조항의 쟁점목록을 제시하고 있고, 협약 조항 당 각각 2개 조항의 쟁점목록을 제시하고 있는 조항은, 제8조, 제9조, 제16조, 제19조, 제23조 및 제24조로 모두 6개 조항이다. 한 개의 협약 조항마다 한 개의 쟁점목록을 제시하는 조항은, 제5조, 제6조, 제7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21조, 제25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32조 및 제33조로 19개 조항이며, 쟁점목록이 없는 조항은, 제10조, 제20조, 제22조 및 제26조로 4개 조항이 됨에 따라, 쟁점목록은 전체 34개의 조항으로 구성된다. 각 협약 조항 대비 쟁점목록의 개수를 구분하여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4) 이는 장애인권리위원회가 쟁점목록을 내놓으면서, 최종 정리 작업자의 단순 실수로 이 부분을 기재하지 않아, ‘A’와 ‘B’는 있는데 ‘C’가 없는 문서가 되어 버렸고, 장애인권리위원회의 공식 홈페이지 업로드 전 최종 검토자 역시, 이 실수를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된다.

[표-1] 협약 조항 대비 쟁점목록의 개수 현황

구분	해당 협약 조항	협약 조항 수	쟁점목록 조항 수
협약 네 조항 당 3개의 쟁점목록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4	3
협약 한 조항 당 2개의 쟁점목록	제8조, 제9조, 제16조, 제19조, 제23조, 제24조	6	12
협약 한 조항 당 1개의 쟁점목록	제5조, 제6조, 제7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21조, 제25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33조	19	19
쟁점목록이 없는 조항	제10조, 제20조, 제22조, 제26조	4	0
합계		33	34

III

CRPD 이행 모니터링 평가지표 개발

- | | |
|-------------------------|----|
| 1. CRPD 이행 모니터링 평가지표 개발 | 21 |
| 2. 최종견해 이행 모니터링 평가지표 개발 | 50 |
| 3. 쟁점목록 이행 모니터링 평가지표 개발 | 56 |

1. CRPD 이행 모니터링 평가지표 개발

가. 인권관련 평가지표에 대한 이해

(1) 배경과 필요성

인권지표를 개발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인권의 주체가 누리는 인권의 정도를 측정하려는 데 있다. 다시 말해,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지는 국가가 수행한 인권 정책의 성과를 포착(capturing outcomes)하려는 목적으로 인권지표를 개발한다. 가능하다면 이를 통해, 인권 보장의무가 수행한 의무 이행의 진전을 시간 순으로 측정하여 비교할 수 있어야 한다.

CRPD의 경우, 지표 개발은 이행 및 감독(제33조)뿐만 아니라 통계와 자료 수집을 규정하는 제31조와도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사실상, 정책의 운영은 인권 그리고 통계 체계와 밀접히 상호 연관되어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지표를 통해 우리는 CRPD 이행에 따른 인권 상황의 진전(progress)을 조사 및 평가(assessment)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표를 통한 통계는 인권과 정책 담론 간의 가교가 될 잠재성을 갖고 있다. CRPD 이행의 객관적이고 포괄적인 평가를 위해서는 심도 있는 질적 조사 및 법률 조사와 함께 지표를 통한 통계적 분석이 요구된다. 정책과 제도는 바람직한 성과(outcome)로 이어져야 하며 잘 구성된 지표는 이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의사소통을 효율적이며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한다.

이러한 역할을 보다 더 적절히 수행할 수 있는 지표는 개념적으로 견실(soundness)하며 경험적으로 타당(validity)해야 한다. 개념적 견실성은 인권의 규범적 준거들과의 연관성을 의미하며 경험적 타당성은 데이터 수집의 과정과 결과에 대한 신뢰 가능성을 말한다. 그러므로 실현가능성(feasibility)이 매우 중요하다. CRPD 이행을 통한 인권 진전의 정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지표는 개념적 접근과 방법론적 접근 모두에 있어서 탁월해야 하나 이번에는 조사(survey) 실시의 어려움으로 개념적 접근에 치중한다.

(2) 지표의 범주

인권지표(human rights indicator)란 인권규범과 기준에 해당하는 국가에 관한

그리고 어떤 대상의 상태, 사건, 활동 혹은 성과(outcome)에 대한 특정한 정보로, 인권의 원칙과 관심을 반영하며 인권의 진전(promotion)과 이행(implementation)을 평가(assess)하고 점검(monitor)하는 데 활용된다(UN OHCHR, 2012: 16). 이러한 정보는 다양한 형태를 가지며 질적 및 양적 데이터를 망라한다.

[표-2] 인권지표의 범주

	객관적 사실(fact) 기반	주관적 판단(judgement) 기반
양적	발생률, 사람의 수	인지한 사람의 비율, 판단된 사람의 비율
질적	직접적으로 관찰한 사실 기술	인식과 의견 그리고 평가에 대한 기술

※ 성과(performance) 지표와 준수(compliance) 지표 : 성과 지표는 투입-산출-결과-영향 요소에 따른 지표 구성을 말하며 준수 지표는 인권의 기준에 부합되는지에 따라 구성된 지표를 의미한다.
 ※ 수준점(benchmark) : 규범적으로 또는 경험적으로 지표에 대해 이미 정해져 있는 값을 말한다.

(3) 지표의 개념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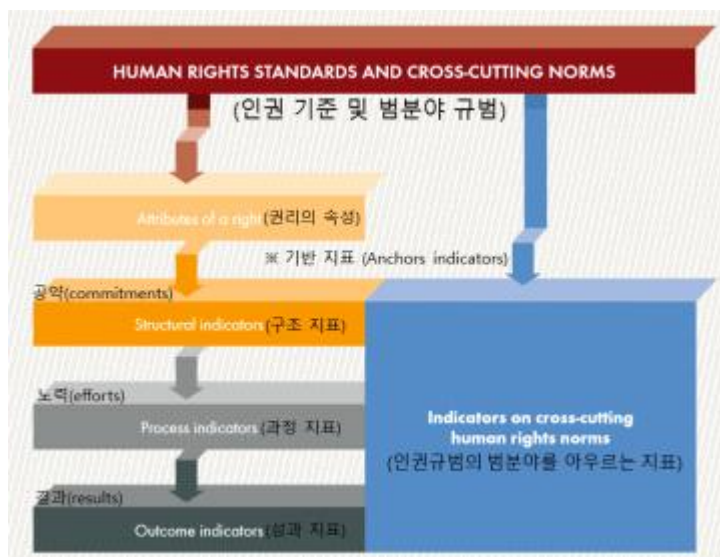
인권지표를 개념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인권 기준이나 규범(인권 도구 혹은 CRPD)이 최종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성과(outcomes)를 규정하고 이러한 성과를 결정짓는 요인을 분석하여야 한다.

인권 기준과 규범에 근거가 인권의 속성으로 OHCHR(2012)은 충분성(adequacy), 접근성(accessibility), 활용가능성(availability), 적용가능성(adaptability), 수용가능성(acceptability), 그리고 양질성(quality)을 제시하고, 범분야를 아우르는 인권지표로 반차별(Non-discrimination), 참여(Participation), 책무성(Accountability), 효과적 조치(Effective remedies)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CRPD 제3조가 제시한 일반 원칙(가. 개인의 자율과 자립에 대한 존중, 나. 비차별, 다. 사회 참여 및 통합, 라. 인간 다양성의 존중, 마. 기회의 균등, 바. 접근성, 사. 남녀의 평등, 아. 장애아동의 존중)에 기반하여 속성을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비롯된 지표를 기반 지표(anchor indicator)라 해야 할 것이다.

기반 지표에 닿을 내린 인권지표는 의무자의 공약(commitments)-노력(efforts)-결과(results)에 따라 아래의 설명과 같이 구조(structural)-과정(process)-성과(outcome) 지표로 개념화된다.

- 구조 지표 : 국가가 의무를 감당하기 위해 행하는 수용, 의도, 그리고 공약을 포착한다. (선택의정서의 비준, 정책과 전략 그리고 제도나 계획의 구체화, 조사나 감독의 시행 등)
- 과정 지표 : 공약을 인권 신장으로 전환하고자 국가가 기울이는 과정상의 노력을 측정한다. (배정된 예산의 양, 제도의 혜택을 받은 사람의 비율, 접수된 인권 침해 사례의 수, 정책과 제도에 의한 조치 등)
- 성과 지표 : 인권 주체(수혜 당사자)가 인권을 향유하는 정도를 평가한다. (유급 노동 참여 비율, 일정 시간 내에 구제 받은 사람의 수,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의 비율 등)



출처: OHCHR(2012), 39쪽.

[그림-1] 인권지표의 개념틀

(4) 지표의 자료원

개념화를 통해 얻은 인권지표가 현실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해당하는 데이터가 수집 가능(feasible)해야 한다. 인권지표에 일반적으로 필요한 데이터를 생산할 수 있는 메커니즘은 사건 기반 데이터, 사회·경제 및 행정 통계, 인식과 의견 조사 그리고 전문가의 판단 등 대략 4가지 범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자료원을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할 때 보다 포괄적이고 신뢰할만한 이행 모니터링과 성과 포착이 이루어진다.



출처: OHCHR(2012), 52쪽.

[그림-2] 인권지표의 자료원

(가) 사건에 기반한 데이터

인권 침해가 발생한 사건에 대한 질적 및 양적 데이터를 말한다. 이는 인권 침해의 실제적인 행위를 기술한 정보로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규명을 포함한다. 인권의 규범적 준거틀을 활용하여 사건을 정의하고 분류하는 등의 정보가 생산된다. 희생자나 증인의 진술, 미디어의 보도, 정부 혹은 시민단체의 보고서 등과 같은 자료원을 통해 희생자의 수, 신상정보, 발생 건수, 침해된 인권의 특정, 원인 등의 데이터를 수집하게 되며 표준화된 기록 양식을 사용할 수도 있다.

(나) 사회·경제 및 행정 통계

사회·경제 및 행정 통계는 객관적인 질적 및 양적 정보로 대개 행정적 필요로 인해 통계청의 지원을 받아 국가 차원에서 수집하고 보급하는 총합 데이터 셋을 말한다.

- ① 행정 데이터 : 주민등록제도 등과 같은 시스템을 통해 정부 부처가 생산하

- 고 수집한 정보를 말한다. (출생률, 사망률, 예방접종비율, 범죄율, 선거참여율 등)
- ② 통계 서베이 : 특정 인구 집단에 대해 직접적으로 질적 및 양적 정보를 수집할 때 활용된다. 대체로 행정 기록의 정확도를 보완하기 위해 이루어지며 확률 표집과 추론 통계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모집단을 전수 조사하는 센서스보다 효율적이다.
 - ③ 인구 센서스 : 그 복잡성과 고비용으로 보통 10년을 주기로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정보 수집을 말한다.

[표-3] 자료원의 특성

	행정 데이터	통계 서베이	인구 센서스
대상범주	정책적 관심을 반영한 모든 사건	확률 표집된 특정 인구	모든 인구
비용	낮음	중간	높음
빈도	상시	3-5년	10년
편향성	기록의 부정확	측정과 표집의 오류	이론적으로 무오류
활용도	매우 좋음	좋음	좋음 (기간의 문제)

(다) 인식과 의견 조사

인식과 의견 조사는 해당 쟁점에 대해 특정 집단을 대표할 만한 개인의 여론을 직접 알아볼 요량으로 이루어진다. 당사자의 목소리를 반영하지만 사실 매우 주관적이며, 수집된 자료에 대해 서열을 매길 수는 있으나 충분히 양화시키기는 어렵다. 조사 결과에 대한 신뢰도와 타당도는 설문지의 설계, 개별 질문의 구성 그리고 면접 조사자의 역량에 의해 판가름 난다. 이러한 한계로 인해 다른 정보를 보충하는 정도로 활용된다.

(라) 전문가의 판단

데이터에 기반한 전문가의 판단은 제한된 수의 정통한 전문가에 의해 ‘국가의 이행에 대한 평가(scoring)’ 형태로 이루어진다. 이 역시 본질적으로 주관적이며 데이터를 변환해 수치로 표현할 수는 있다. 또한 복잡한 쟁점을 집약해서 답해야

하기에 체계적 오류가 발생할 여지가 있고 다른 평가 결과를 정당화 하는 데 이
용될 수 있다.

나. 인권 관련 평가지표 개발의 원칙과 단계

CRPD 위원회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⁵⁾과 일반 논평⁶⁾의 논의에 근거하여 모
니터링 평가지표는 다음과 같은 원칙이 요구된다.

(1) 원칙

1. 장애인의 인권 상황을 반영하되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이고 정기적으로 수집한 통계일 필요가 있으며 성별, 연령별, 장애종별, 그리고 지역별 기초값과 수준점(benchmark)이 있어야 한다(Guidelines 35, 37f).
2. 최신의 장애 인권 모델 개념을 기반으로 작성된 지표이어야 한다(Guidelines 23).
3. 2030 지속가능 발전 의제(2030 Sustainable Development Agenda & Goals)와 연결될 필요가 있다(Guidelines 34, 37a).
4. UN 기구가 개발한 인권지표와 친화적(human rights disability friendly indicators)이어야 할 필요가 있다(Guideline 34).
5. 통계청, 전담부서(focal points), 조정기구(coordination mechanism), UN 기구, 국제적 협력과 지역(regional) 조직, 독립적인 감독 체제(monitors framework), 시민단체, 장애인과 이들을 대표하는 단체 등이 함께 노력하여 개발하여야 한다(Guideline 36).
6. 구조지표와 성과지표를 모두 포함하되 국가인권위원회의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유엔 인권 고등판무관 사무소(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of Human Rights)가 개발한 지표 가이드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Guideline 38g, 39).

(2) 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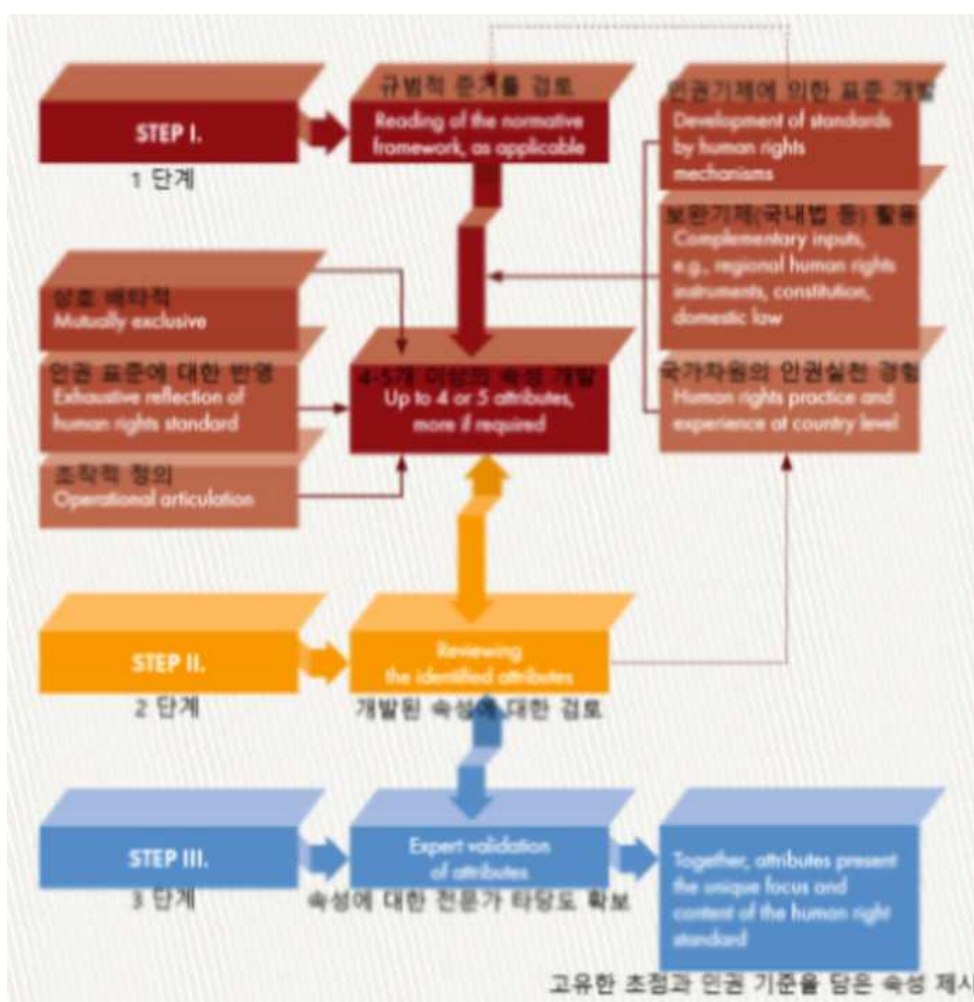
(가) 속성 찾아내기(Identifying attributes)

속성(attributes)은 어떤 것의 질(quality)이나 특성(characteristics)을 말한다. 지표 개발의 첫 단계는 각각의 인권 항목에 대해 분명한 규범적 내용을 파악하는 일이다. 이는 인권의 법적 기준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각 항목의 속성은 상호 배타적으로 규정되어야 한다(OHCHR, 2012: 76).

5) “Guidelines on Independent Monitoring Frameworks and their Participation in the Work of the Committee”, UN CRPD, (2016).

6) “General Comments No.7”, UN CRPD, CRPD/C/GC/7, Supp, No. 7. (2018).

각각의 조항이 내포하고 있는 핵심 주제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전반적인 인권 개념과 기준의 맥락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전문가에 의해 그 타당성이 확인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이러한 과정 속에서 속성은 국내 및 국제적인 인권 기준에 현실적으로 부합되어야 할 필요도 있다. 속성에 대한 이러한 토착화 과정 없이 선정되는 지표는 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OHCHR, 2012: 77). 속성을 찾아내는 단계는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그림-3] 속성 찾기 단계

(나) 지표 선택하기(Selecting indicators)>



[그림-4] 지표 선택 단계

(다) 맥락 맞춰주기(Putting indicators into context)>



[그림-5] 맥락 맞춤 단계

다. 국외 CRPD 관련 평가지표 개발 사례

(1) 핵심 성과 중심 지표 개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인권지표는 의무자(당사자)의 공약-노력-결과에 따라 구조-과정-성과 지표로 개념화될 수 있는데, 최근 장애인 권리의 선진국인 유럽에서는 성과 중심의 지표개발을 선보이고 있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가 덴마크

인권 연구소(The Danish Institute for Human Rights)의 「The Gold Indicators」이다.⁷⁾

「The Gold Indicators」는 CRPD가 인권 주체(수혜 당사자)를 통해 궁극적으로 달성해야 할 성과지표를 10개(평등과 비차별, 다양성과 인식제고, 접근성과 이동성, 자유와 개인 존엄성, 자립생활과 공동체 포괄, 교육, 건강, 고용, 사회적 보호, 시민생활)로 요약하고 장애인 당사자의 인식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질문을 구성하였다. 각 지표의 측정은 공히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에게 적용되고 비장애인의 값을 기준으로 장애인의 인권 진전도를 상대적으로 점검하는 방식이다. 다음 표는 10개의 지표가 각각 포함하고 있는 CRPD의 조항을 정리한 것이다.

[표-4] Gold Indicators의 구성

	1. 평등과 비차별	2. 다양성과 인식제고	3. 접근성과 이동성	4. 자유와 개인 존엄성	5. 자립생활과 공동체 포괄	6. 교육	7. 건강	8. 고용	9. 사회적 보호	10. 시민생활
5. 평등 및 비차별	1							5_b		
6. 장애여성	(성으로 분할)	(성으로 분할)	(성으로 분할)	(성으로 분할)	(성으로 분할)	(성으로 분할)	(성으로 분할)	(성으로 분할)	(성으로 분할)	(성으로 분할)
7. 장애아동		2_b				6_a				
8. 인식제고	1_c	2								
9. 접근성			3							
10. 생명권							7			
11. 위험상황과 인도적 차원의 긴급사태										
12. 법 앞의 평등	1			4_a, b						
13. 사법에 대한 접근										
14. 신체의 자유 및 안전				4						
15. 고문 처벌로부터의 자유				4_c						
16. 착취, 폭력 및 학대로부터의 자유	1									
17. 개인의 존엄성 보호				4						

7) Larsen, G. and Marie, F., “The Gold Indicators : Measuring the Progress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as with Disabilities”, The Danish Institutes for Human Rights (2015).

	1. 평등과 비차별	2. 다양성과 인식제고	3. 접근성과 이동성	4. 자유와 개인 존엄성	5. 자립 생활과 공동체 포괄	6. 교육	7. 건강	8. 고용	9. 사회적 보호	10. 시민 생활
18. 이주 및 국적의 자유										
19. 자립적 생활 및 지역사회에의 동참					5					10
20. 개인의 이동성			3							
21. 의사 및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권										10
22. 사생활의 존중	1									
23. 가정과 가족에 대한 존중	1									
24. 교육						6				
25. 건강							7			
26. 훈련 및 재활					5					
27. 근로 및 고용								8		
28. 적절한 생활수준과 사회적 보호									9	
29. 정치 및 공적 생활에 대한 참여					5					10
30. 문화 여가 참여					5_a					10

CRPD를 통해, 권리의 의무자가 인권주체(수혜 당사자)를 통해 궁극적으로 달성해야 할 10개 영역과 각 영역을 측정하기 위한 기본 사항은 다음과 같다.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평등과 비차별 : 차별 경험 비율(장애인, 비장애인, 최근 1년) 2. 다양성과 인식제고 : 장애인의 자기주장 혹은 매체 노출에 대한 인지 비율(장애인, 비장애인, 최근 1주) 3. 접근성과 이동성 : 대중교통 접근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던 경험 비율(장애인, 비장애인, 최근 1주) 4. 자유와 개인 존엄성 : 사법기관 감금 혹은 의료 및 재활 기관 수용 비율(30대 이하 장애인, 비장애인) 5. 자립생활과 공동체 포괄 : 자기 삶에 대한 영향력이 있다고 느끼는 비율(장애인, 비장애인) 6. 교육 : 초·중·고·대학교를 중간에 포기한 경험 비율(25세 이하 장애인, 비장애인) 7. 건강 : 신체 및 정신 건강이 좋다고 말하는 비율(장애인, 비장애인, 현재) 8. 고용 : 일주일에 3-4 시간 이상 유급 노동을 해본 비율(장애인, 비장애인, 과거 언제라도) 9. 사회적 보호 : 경제적인 이유로 일반적인 사람들의 평균 생활에도 미치지 못한 경험 비율(장애인, 비장애인, 최근 3년) 10. 시민생활 : 전국 단위의 선거에 투표한 비율(장애인, 비장애인, 최근 선거) |
|--|

(2) 핵심 속성 중심 지표 개발

유럽연합 역시도 CRPD의 핵심 속성을 파악해 지표를 개발하고자 노력하였으며 그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최근에는 각국에서 수집된 자료를 장애인(persons with limitation)과 비장애인(persons without limitation) 간의 차이를 중심으로 국가 간 비교하는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Priestley, M. and Anna Lawson. 2009). 이들이 집약한 핵심 속성은 5가지(생활, 선택, 향유, 배움, 벌이)로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 1. 개인과 가족의 삶(생활) :
 - 23. 가정과 가족에 대한 존중 (10. 생명권, 12. 법 앞의 평등, 16. 착취, 폭력 및 학대로부터의 자유, 18. 이주 및 국적의 자유)
- 2. 선택과 통제(선택) :
 - 19. 자립적 생활 및 지역사회에의 동참 (29. 정치 및 공적 생활에 대한 참여)
- 3. 재화에의 접근성(향유) :
 - 9. 접근성, 21. 의사 및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권 (13. 사법에 대한 접근)
- 4. 교육과 평생학습(배움) :
 - 24. 교육
- 5. 소득과 빈곤(벌이) :
 - 28. 사회적 보호(12. 법 앞의 평등, 20. 개인의 이동성, 26. 훈련 및 재할, 32. 국제협력)

기본적인 지표의 형태를 권리⁸⁾지표, 접근지표 그리고 참여지표로 개념화 하였다. 여기서 권리지표는 법과 정책에 의해 부여된 권리에 관한 지표(Rights)를 말하며, 접근지표는 접근성이나 환경 상의 장벽에 관한 지표(Access)를, 참여지표는 참여와 평등에 관한 지표(Participation)로 모든 양적 및 질적 지표로 구성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들은 또한 각 조항을 가로질러 중점적으로 부각시켜야 할 속성을 가진 조항으로 제5조(평등과 비차별), 제6조(장애여성), 제7조(장애아동)를 선정하였다. 즉, 제5조(평등과 비차별)는 법 앞의 평등을 가늠할 수 있는 전형적인 인권지표임과 동시에 정당한 편의 제공을 의미하는 접근 지표로 다른 조항이나 지표와 교차하는(cross-cutting) 공통 관심사가 된다고 이해한다. 제6조(장애여성)는 젠더를 포함한 다중 차별에 강조점을 두고 성과 영역의 참여 지표들을 이와 연결시키고자

8) 문도운외 5, “알기 쉬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 (2016).

하였다. 제7조(장애아동)는 세대 간 차이 및 교육 지표와 연결된다.

(3)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를 반영한 지표 개발

2015년 9월 UN총회에서는 세계 모든 국가가 협력하여 2030년까지 달성할 정책목표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SDGs)를 채택하였다. 이는 5P 즉, People(인류), Prosperity(번영), Planet(지구), Peace(평화), Partnership(파트너십)을 중심으로 17개 목표와 179개의 세부목표로 구성되어 있다. 목표와 세부목표의 후속 조치 및 프레임워크는 Inter Agency and Expert Groups on SDG Indicators(IAEG-SDGs)가 개발하고 개발된 지표는 UN 통계위원회에 의해 합의, 경제사회이사회와 총회에서 채택되었다.⁹⁾ 이러한 국제적 합의가 모아진 SDGs는 CRPD의 조항들과도 연관되어 있다.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CRPD(CRPD)
1. 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 종식	빈곤 종식은 협약의 모든 조항에 적용됨.
2. 기아 종식, 식량 안보 달성, 개선된 영양상태의 달성, 지속 가능한 농업 강화	제28조 적절한 생활수준과 사회적 보호
3. 모두를 위한 전 연령층의 건강한 삶 보장과 웰빙 증진	제10조 생명권, 제11조 위험상황과 인도적 차원의 긴급 사태, 제23조 가정과 가족에 대한 존중, 제25조 건강, 제26조 가활과 재활
4.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 및 평생학습 기회 증진	제24조 교육
5. 성평등 달성과 모든 여성 및 여아의 자력화	성평등은 협약의 모든 조항에 적용됨.
6. 모두를 위한 물과 위생설비에 대해 가용성과 지속 가능한 유지관리 보장	제28조 적절한 생활수준과 사회적 보호
7. 모두를 위한 적정가격의 신뢰할 수 있고 지속 가능하며 현대적인 에너지에의 접근 보장	제28조 적절한 생활수준과 사회적 보호
8. 모두를 위한 지속적, 포용적,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 생산적인 완전고용과 양질의 일자리 증진	제27조 노동과 고용
9. 복원력 높은 사회기반시설을 구축하고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산업화 증진 및 혁신 장려	제9조 생명권, 제20조 개인의 이동성, 제21조 의사 및 표현이 자유와 정보 접근권
10. 국내 및 국가 간 불평등 감소	제5조 평등과 비차별

9) 문도운외 5, 앞의 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CRPD(CRPD)
11. 도시와 주거지를 포용적이며 안전하고 복원력 있고 지속 가능하게 보장	제9조 접근성, 제11조 위험상황과 인도적 차원의 긴급 사태, 제19조 자립적 생활 및 지역사회에의 동참, 제28조, 적절한 생활수준과 사회적 보호, 제30조 문화 생활, 레크리에이션, 여가생활 및 체육활동에 대한 참여
12. 지속 가능한 소비와 생산 양식 보장	-
13. 기후변화와 그로 인한 영향에 맞서기 위한 긴급 대응	제21조 의사 및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권, 제25조 건강
14.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대양, 바다, 해양자원의 보존과 지속 가능한 사용	-
15. 지속 가능한 육상생태계 이용을 보호·복원·증진, 삼림을 지속 가능하게 관리, 사막화 방지, 토지 황폐화 중지 및 복구, 생물 다양성 손실 중단	-
16.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증진, 모두를 위한 정의에의 접근제공,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이고 책임성 있고 포용적인 제도 구축	제4조 일반 의무, 제10조 생명권, 제13조 사법에 대한 접근, 제15조 고문 또는 잔혹한,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로부터의 자유, 제16조 착취, 폭력 및 학대로부터의 자유, 제18조 이주 및 국적의 자유, 제29조 정치 및 공적 생활에 대한 참여
17. 이행수단 강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활성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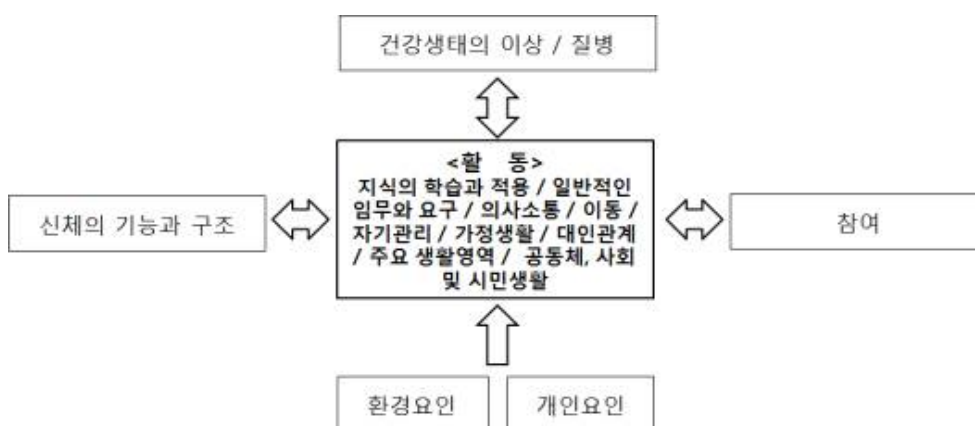
국제적인 총의와 역량이 집중되고 있는 SDGs의 프레임워크에 맞추어 CRPD의 이행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CRPD의 이행을 감독하는 지표와 자료 수집은 SDGs의 통계 거버넌스와의 연결고리를 찾을 필요가 있다. SDGs 역시 이행의 진전도를 측정하고 ‘어느 누구도 뒤쳐지지 않게 하기(No one is left behind)’ 위해서 양질의 세분화된(disaggregated) 데이터를 필요로 한다. SDGs 17.18과 17.19에서는 세분화된 통계 생산을 뛰어 넘어 새롭게 통합된 통계 개발을 주문하고 있으며 이의 책임을 IAEG-SDGs에 두고 있다.

글로벌 수준의 자료 제출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원칙이 제시된다. 첫째, 하나의 지표는 단일의 국제기구에 의해 수집된다. 둘째, 표준화된 국가공식통계자료를 기초로 하되, 셋째, 다른 방법론이 사용될 경우 국가 통계청의 검토와 합의를 거쳐 국가와 국제기구 사이의 데이터 불일치 이슈가 설명되도록 한다. 셋째, 데이터와 메타 데이터는 품질담보와 함께 투명한 방법으로 배포되도록 한다.¹⁰⁾

10) 박영실외 2, “SDGs 통계 거버넌스 연구”, 통계개발원 (2017).

(4) 기능·장애·건강분류(ICF)를 반영한 지표 개발

인간 생활영역의 전체를 포괄하는 ICF의 ‘활동 구성요소의 영역’을 수행이라는 평가치로 규정한다면, 개개인들이 처한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경험, 즉 실제적인 개개인의 기능을 환경 요인이 포괄된 정황 속에서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다음과 같이 9개의 활동 영역이 구성된다.



출처: WHO(2001)의 “<그림 1> ICF 구성요소들 간의 상호관계”를 일부 변경하여 제시함.

[그림-6] 인간 기능과 연관된 활동의 상호작용

Bickenbach(2011)는 이러한 ICF의 활동영역을 준거로 다음과 같이 CRPD의 조항을 재구성하여 분석하였다.¹¹⁾ 이는 CRPD의 추상적인 조항이 결국 환경 속에서 개인이 활동을 통해 자신의 기능을 구체적으로 수행하는 일과 무관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11) Bickenbach, Jerome E. “Monitoring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data, and the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 and Health”, BMC Public Health (2011).

CRPD	ICF
9. 자립생활	5장 자기케어, 9장 의사소통, 사회 및 시민 생활
20. 개인의 이동성	4장 이동성
21. 표현의 자유 정보접근	3장 의사소통
23. 가정과 가족에 대한 존중	7장 상호적인 관계
24. 교육	8장 주요 생활 영역 : 교육
25. 건강	6장 가정 생활
26. 훈련 및 재활	6장 가정 생활
27. 근로와 고용	8장 주요 생활 영역 : 근로와 고용
28. 생활수준과 사회적 보호	8장 주요 생활 영역 : 경제 생활
29. 정치 및 공적 생활에 대한 참여	9장 공동체, 사회 및 시민 생활
30. 문화, 여가, 체육에 대한 참여	9장 공동체, 사회 및 시민 생활

(5) 삶의 질(QoL)을 반영한 지표 개발

사실, 장애인 권리 보장의 궁극적인 목적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함이다. Schalock과 Keith(2016)에 따르면, 장애인의 삶의 질을 개념화 하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원칙이 있다. 첫째, 삶의 질은 다차원적이며 개인과 환경 요인 그리고 이들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받는다. 둘째, 삶의 질은 모든 사람들과 동일한 요소(components)로 구성된다. 셋째, 삶의 질은 주관적이며 동시에 객관적인 요소를 갖는다. 넷째, 삶의 질은 자기결정, 자원, 삶의 목적, 그리고 소속감에 의해 높아진다.¹²⁾

이러한 원칙에 따라 삶의 질의 개념은 1996년 Hughes와 Keith에 의해 8개 영역으로 구조화 되었으며 이후 Schalock과 Verdugo(2002)는 이러한 개념 모델을 분석틀로 하여 (특수)교육, 정신 및 행동 건강, 지적장애, 노인 분야의 897개 (1985-1999) 논문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영역으로 지표의 예시를 추가하였다.¹³⁾

12) Schalock, R. L, and Keith, K. D., “The evolution of the quality-of-life concept” pp. 3-12. in Cross-cultural quality of life: Enhancing the lives of people with intellectual disability. edited by R. L. Schalock and K. D. Keith. (2th ed.) Washington, DC: AAIDD (2016).

13) Schalock, R. L, and Verdugo, M. A., Handbook on quality of life for human service practitioners. Washington, DC: American Association on Mental Retardation (2002).

[표-5] 장애인의 삶의 질 지표

요인	영역	개념/ 지표의 예
자립	1. 인적 개발 (personal development)	교육(성취, 지위), 유능감(competence: 인지, 사회, 생활), 성과(performance: 성공, 성취, 생산성)
	2. 자기결정 (self-determination)	자율성, 통제감, 개인 목적(바람, 기대), 선택(기획, 옵션, 선호)
사회 참여	3. 대인관계 (interpersonal relations)	상호작용(사회적 관계, 사회적 접촉), 관계(가족, 친구, 동료), 지지(정서적, 신체적, 재정적), 레크리에이션
	4. 사회통합 (social inclusion)	지역공동체 통합과 참여, 역할(사회적 기여, 자원봉사), 사회적지지(서포트 네트워크, 서비스)
	5. 권리(rights)	법(시민권, 접근권, 정당한 절차), 인간(존중, 위엄, 평등)
웰빙	6. 정서적 안녕 (emotional well-being)	삶의 행복(만족도, 감정, 즐거움), 자아 개념(정체성, 자기 가치, 자존감), 스트레스(예측가능성, 통제감)
	7. 신체적 안녕 (physical well-being)	건강(기능, 증상, 피트니스, 영양), 의료, ADL(자기 케어, 이동), 신체적 활동과 레저
	8. 물질적 안녕 (material well-being)	재정상태(수입, 재정지원), 고용(지위, 노동 환경), 주택(주거환경, 소유 형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한 나라의 장애 정책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에서도 장애인의 삶의 질에 대한 지표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특히, CRPD의 조항은 다음과 같이 QoL 영역으로 분류됨에 따라 발달장애인에 대한 이들 지표를 정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표-6] CRPD과 QoL 지표

조항	QoL 영역	지표	조항	QoL 영역	지표
24. 교육	인적 개발	개별 기술, 교육 환경, 평생 학습	7. 장애아동	권리	적절한 의료, 교육 지원, 가족 및 공동체 포용
14. 신체의 자유 및 안전	자기 결정	이동과 선택의 자유, 개인 자율, 안전한 환경	10. 생명권	권리	피임에 대한 선택권
21. 의사표현의 자유와 정보접근권	자기 결정	정보이해의 수준, 정보 접근성, 의사표현의 기회	11. 위험상황과 인도적 차원의 긴급사태	권리	장애인의 이민에 대한 법적, 재정적, 사회적 지원, 의료 접근성

조항	QoL 영역	지표	조항	QoL 영역	지표
23. 가정과 가족에 대한 존중	대인 관계	가족을 이룰 권리, 부모가 될 권리	12. 법 앞의 동등한 인정	권리	사법서비스 접근성, 적법절차 혜택
30. 문화, 레크리에이션, 여가생활 및 체육활동 참여	대인 관계	문화행사 참여 여가행사 참여	13. 사법에 대한 접근	권리	변호사 활용, 정식 재판, 공정한 선고
8. 인식제고	사회 통합	인식개선 활동	15. 고문 및 잔혹한 처벌로부터의 자유	권리	일반인과 상응한 처벌, 다른 요인에 의한 상해
9. 접근성	사회 통합	문화, 여가, 레크리에이션 행사 참석	22. 사생활의 존중	권리	자기 공간의 통제, 소통(전화, 편지) 접근성
18. 이주의 자유	사회 통합	지역사회 및 대중교통의 물리적 접근성	16. 착취, 폭력 및 학대로부터의 자유	정서적 안녕	안전한 환경, (신체, 성, 재무, 사회적) 착취나 학대
19. 자립적 생활 및 지역사회에의 동참	사회 통합	타인의 개입이 최소화된 가정생활	17. 개인의 완전함 보호	정서적 안녕	존경, 존엄, 평등의 경험
20. 개인의 이동성	사회 통합	보장구 및 이동 수단 사용 방식	25. 건강	신체적 안녕	신체 및 영양 상태, 만성 질환
29. 정치 및 공적 생활에 대한 참여	사회 통합	위원회의 구성, 관공서의 운영	26. 가할 및 재활	신체적 안녕	필요시 의료적, 정서적 개입
30. 문화생활에 대한 참여	사회 통합	콘서트, 영화관, 박물관 참석/방문	27. 근로 및 고용	물질적 안녕	상근직 및 시간제 고용
5. 평등 및 비차별	권리	지역사회 참여, 공개 고용	28. 적절한 생활수준과 사회적 보호	물질적 안녕	연간 수입, 자유재량지출, 적절한 주택, 실업급여, 공적부조
6. 장애여성	권리	지역사회생활참여 개별화 지원			

출처: UN Convention Articles, QOL Domains, and Indicators (Claes, C. H. Vandenbussche, and M. Lombardi. 2016).

라. 국내 평가 지표(안)

본 평가 지표(안)는 통계 구축 가능성, 국제적 맥락 고려 그리고 국내 여건 반영 등과 같은 세 가지 측면을 염두에 두고 제시되었다.

첫째, 통계 구축이 가능해야 한다. 본 협약의 제31조(통계와 자료 수집)에서는 이행을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될 수 있는 통계 자료를 수집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특히, 구성요소별 분류된(disaggregated) 정보를 통해 장애인의 권리 행사를 막고 있는 원인을 찾아낼 수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이에 따라, 본 평가 지표 중 성과지표는 인권의 주체(수혜 당사자)가 인권을 어느 정도 누리고 있는지 상대적인 정도를 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나아가 단면적인 실태조사를 넘어, 구체적인 변수의 분류와 시계열적인 비교를 통해 원인에 접근할 수 있도록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사회조사와 연결하고자 하였다. 이로써, 지속적인 데이터의 수집이 합리적인 정책 수립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장애 개념의 측정이 단순해야 한다. 이를 위해 워싱턴 그룹의 장애 측정 도구¹⁴⁾ 사용이 중요해진다.

둘째, 국제적인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 본 지표는 국제적인 비교가 가능하도록 설정하였다. 이 또한 앞에서 언급한 워싱턴 그룹의 장애 측정 도구 활용과 결부되어 있다. 국제사회가 합의¹⁵⁾하고 우리나라의 쟁점목록에서도 요구되어지는 위

-
- 14) 그룹 6개 문항을 통해 장애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이를 통해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한 통계 데이터 수집이 가능하다. 그 6개 문항은 다음과 같다; 다음은 건강상의 이유로 활동에 어려움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1. Do you have difficulty seeing, even if wearing glasses? 2. Do you have difficulty hearing, even if using a hearing aid? 3. Do you have difficulty walking or climbing steps? 4. Do you have difficulty remembering or concentrating? 5. Do you have difficulty (with self-care such as) washing all over or dressing? 6. Using your usual (customary) language, do you have difficulty communicating, (for example, understanding or being understood by others? (각 문항의 척도는: ① No, no difficulty, ② Yes, some difficulty, ③ Yes, a lot of difficulty, ④ Cannot do it at all)
- 15) CRPD 제31조에서는 협약 이행을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해 통계 데이터를 수집하도록 명시하였으며 2항에서는 이러한 데이터가 당사국의 의무 이행을 평가할 수 있도록 적절히 세분화(disaggregation)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사국의 의무 이행에 대한 평가는 상대적인 기준에 의해 평가될 수밖에 없으며, 그 기준점은 비장애인이나 다른 나라의 수준이 될 것이므로 일차적으로 모든 당사국의 인구센서스에서 장애를 분해할 수 있도록 조치되어야 한다.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17.18에서는 소득, 성별, 연령, 인종, 민족, 이주상태, 장애여부, 지리적 위치 등에 의해 데이터가 세분화되어야 함을 언급하고 있다. 국가 인구센서스에서 국가 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장애를 세분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워싱턴 그룹(www.washingtongroup-disability.com)의 6개 문항(Washington Group short set of questions)이 국제사회에서 추천되고 있으며 인천전략의 지표 역시 이를 활용하고 있다. Inter-agency and Expert Group on SDG Indicators(IAEG-SDGs)는 지난 2016년 11월 제네바에서 이를 지지하는 성명서

싱턴 그룹의 장애 측정 도구의 활용은 국제사회와 상호 교환 가능한 통계 거버넌스 구축의 실마리가 될 것이다. 또한 SDGs의 17개 목표와도 상호 효과적으로 연결되는 평가지표가 만들어져야 한다. 본 지표는 이를 고려하여 제안되었으며, 필요할 경우, 각각의 항목에 명시하였다.

셋째, 국내 상황을 반영해야 한다. 본 CRPD의 범위는 장애인의 인권 수준이 높은 선진국과 그렇지 못한 개발도상 국가 전반의 이해를 담고 있으므로, 우리는 국내의 여건과 상황에 가장 밀접한 내용을 주요 속성으로 파악하여 지표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지표는 2015년에 장애인권 단체가 제안한 이행 모니터링 지표¹⁶⁾를 참고하고 가능한 반영하고자 하였으며 필요할 경우 항목에 명시하였다. 이는 당사자로 구성된 인권단체(DPDs)의 의견을 중심으로 이행 감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본 CRPD의 정신과 닿아있다.

(1) 전문 (마) 장애의 개념 / 제31조 통계와 자료 수집

속성	개념화 및 조작화	자료원
개인의 손상과 환경의 장벽 간의 상호 작용으로부터 기인되는 모든 유형의 장애를 가진 모든 사람에 대한 적절한 통계 데이터 수집이 약속됨. ¹⁷⁾	[구조지표] 워싱턴의 방법론에 따른 세분화된 데이터의 수집, 분석 및 배포의 체계화 정도	국가통계에서 장애를 세분화한 조사

(2) 제5조 평등 및 비차별

속성	개념화 및 조작화	자료원
대한민국 법률이 우리 사회에서 함께 살고 있는 장애인을 다른 시민과 같은 수준으로 보호해주어야 함. ¹⁸⁾	[성과지표] 최근 1년 동안, 성별, 연령, 지위 혹은 장애로 인해 차별을 경험한 장애인의 비율 ¹⁹⁾ (비장애인과의 비교)	통계청 「사회조사」의 문항 조정 및 장애인 세분화

(Disability Data Disaggregation Joint Statement by the Disability Sector)를 발표한 바 있다.

- 16) 권오용외 12,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모니터링 지표(안)”,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모니터링 지표(안) 개발 공청회 (2015).
- 17) SDGs 목표17.18 (데이터, 모니터링 및 책무성)에서는 소득, 성별, 연령, 인종, 민족, 이주상태, 장애여부, 지리적 위치 및 기타 국별 맥락에 따라 데이터를 세분화하여 가용성을 대폭 향상시키도록 명시하고 있다[문도운외 5, 앞의 글].
- 18) SDGs 목표10 (불평등 감소)과 10.2에서, 2030년까지 연령, 성별, 장애여부, 인종, 민족,

(3) 제6조 장애여성

속성	개념화 및 조작화	자료원
장애 여성도 일반 남성과 같이 수준으로 법에서 정한 자신의 모든 권리를 향유하여야 함.	[과정지표] 여성가족부 예산 중 장애 여성 지원 예산의 비율 ²⁰⁾ [성과지표] 최근 1년 동안, 성별, 연령, 지위 혹은 장애로 인해 차별을 경험한 장애 여성의 비율 ²¹⁾ ((비)장애 남성 혹은 비장애 여성과 비교)	여성가족부 예산자료 통계청 「사회조사」의 문항 조정, 장애 및 성별 세분화

(4) 제7조 장애아동

속성	개념화 및 조작화	자료원
장애아동이 다른 아동과 동등하게 모든 법적 권리를 완전히 향유함.	[성과지표] 최근 1년 동안, 주위 사람들로부터 차별을 경험한 장애 아동의 비율 ²²⁾ (비장애아동과 비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조사」에서 장애아동 세분화 ²³⁾

(5) 제8조 인식 제고

속성	개념화 및 조작화	자료원
장애인 역시 자율적인 존재임을 모든 사회구성원들이 인식할 수 있어야 함.	[구조지표] 장애인종합계획에 효과적인 대중인식 캠페인 사업 포함 ²⁴⁾	통계청 「사회조사」의 문항 조정 및 장애인 세분화

출신, 종교, 경제 및 기타 지위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 포용을 증진하고 확대한다고 언급하였다[문도운외 5, 앞의 글].

- 19) Danish Institute for Human Rights에서 개발한 The Gold Indicators의 첫 번째 지표이며, 장애인권 단체의 UNCRPD 이행 모니터링 지표(2015)에서도 장애인실태조사 자료를 자료원으로 유사한 지표를 제시하였다[Gaare Larsen, Freja Marie, 앞의 글].
- 20) 장애인권 단체의 UN CRPD 이행 모니터링 지표(2015)를 반영하였다[권오용외 12, 앞의 글].
- 21) Danish Institute for Human Rights에서 개발한 The Gold Indicators의 첫 번째 지표에 속한 하위 지표(1d)이며, 장애인권 단체의 UNCRPD 이행 모니터링 지표(2015)에서도 장애인실태조사를 자료원으로 유사한 지표를 제시하였다[Gaare Larsen, Freja Marie, 앞의 글].
- 22)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17년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조사」(초등학생용) 37번 문항(차별 당한 경험)을 활용하였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7년 아동청소년인권실태 조사” (2017)].
- 23)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조사」 설문지에 와싱턴 그룹 6개 문항만 추가한다면 장애아동을 세분화할 수 있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앞의 글].

속성	개념화 및 조작화	자료원
	[성과지표] 지난 1주일 동안, 한 사람의 장애인이라도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혹은 대중 매체를 통해 경험한 사람의 비율 (장애인의 경험 비율과 비교) ²⁵⁾	

(6) 제9조 접근성 / 제20조 개인의 이동성

속성	개념화 및 조작화	자료원
물리적 공간 및 ICT의 접근에 있어서 장애로 인한 어려움을 겪지 않아야 함 ²⁶⁾	<p>[구조지표]</p> <p>ITU-T Recommendation F.790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통신 접근성에 관한 가이드라인”²⁷⁾에 준한²⁸⁾ ICT 접근성 표준화 계획 수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안전부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에 “ISO/IEC 40500 : 2012”²⁹⁾ 충족 명문화 • [과정지표] 공공시설 중 장애물 없는(Barrier Free) 생활환경 인증 시설의 비율³⁰⁾ • 교통수단의 이동편의시설 설치 비율³¹⁾ • 정부의 ICT 신규 기술 개발 예산 중 장애인 접근성 촉진 관련 예산의 비율³²⁾ • 특별교통 수단 이용 장애인의 평균 대기시간³³⁾ • 이동보조기기 및 보조기술의 산업화에 투입되는 예산의 증가율³⁴⁾ (전년도 대비) 	<p>보건복지부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른 편의시설 저수조사 보고서</p> <p>국토교통부 이동편의시설 실태조사</p> <p>국토교통부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통계</p> <p>보건복지부 예산 자료</p>

24) 장애인권 단체의 UNCRPD 이행 모니터링 지표(2015)를 반영하였다[권오용외 12, 앞의 글].

25) Danish Institute for Human Rights에서 개발한 The Gold Indicators의 두 번째 지표이다[Gaare Larsen, Freja Marie, 앞의 글].

26) 이는 SDGs 목표9(산업, 혁신, 사회기반 시설) 및 11(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27) Telecommunications accessibility guidelines for older persons and persons with disabilities (ITU-T recommendation F.790)와 더불어 ITU-T는 Telecommunications Accessibility Checklist for standardization activities (2006)도 권고하고 있다.

28) 이는 장애인권리위원회 일반논평 제2호 제9조 접근성(2014)에 근거한다[“General

속성	개념화 및 조작화	자료원
	<p>[성과지표]</p> <p>장애인의 인터넷 이용자 비율 (비장애 인과의 비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 일주일 동안 대중교통(혹은 특별교통) 수단을 이용하는데 접근 상의 어려움을 경험한 장애인의 비 율 (비장애인과 비교)³⁵⁾ 	<p>ITU의 「ICT 발전지수」 지표 중 ‘인터넷 이용자 비율’ 지 표의 장애인 세분화 통계청 「사회조사」의 문항 조정 및 장애인 세분화</p>

(7) 제10조 생명권

속성	개념화 및 조작화	자료원
<p>모든 인간은 어떠한 장애를 가졌다 하더라도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생명에 대한 권리를 타고 났음.³⁶⁾</p>	<p>[구조지표] 장애로 인한 인공임신중절 수술의 제한³⁷⁾</p> <p>[성과지표] 5세 이하 장애 아동의 사망률 (비장애 아동과의 비교)</p>	<p>「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5조(2)³⁸⁾의 개정 여부</p> <p>「통계법」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망신고서와 사망진단서 작성에 장애인 세분화³⁹⁾</p>

Comments No.2”, UN CRPD, CRPD/C/GC/2, Supp, No. 2. (2014)].

- 29) 혹은 Web Content Accessibility Guidelines (WCAG) 2.1(2018) 충족 명문화[W3C, “Web Content Accessibility Guidelines (WCAG) 2.1” (2018)].
- 30) 장애인권 단체의 UNCRPD 이행 모니터링 지표(2015)를 반영하였다[권오용외 12, 앞의 글].
- 31) 장애인권 단체의 UNCRPD 이행 모니터링 지표(2015)를 반영하고 있으나, 국제적인 비교를 위해서는 ISO 21542:2011의 기준을 고려해야할 필요가 있다[권오용외 12, 앞의 글].
- 32) 장애인권 단체의 UNCRPD 이행 모니터링 지표(2015)를 반영하였다[권오용외 12, 앞의 글].
- 33) 장애인권 단체의 UNCRPD 이행 모니터링 지표(2015)를 반영하였다[권오용외 12, 앞의 글].
- 34) 장애인권 단체의 UNCRPD 이행 모니터링 지표(2015)를 수정하여 반영하였다[권오용외 12, 앞의 글].
- 35) Danish Institute for Human Rights에서 개발한 The Gold Indicators의 세 번째 지표이다[Gaare Larsen, Freja Marie, 앞의 글].
- 36) 이러한 권리는 SDGs 목표3(건강과 웰빙)과 16(정의, 평화, 효과적인 제도)에 연관되어 있다.
- 37) 장애인권 단체의 UNCRPD 이행 모니터링 지표(2015)를 반영하였다[권오용외 12, 앞의 글].
- 38) ② 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은 연골무형성증, 낭성섬유증 및 그 밖의 유전성 질환으로서 그 질환이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질환으로 한다.
- 39) United Nations Inter-agency Group for Child Mortality Estimation (UN IGME), ‘Levels & Trends in Child Mortality: Report 2018, Estimates developed by the United Nations Inter-agency Group for Child Mortality Estimation’, United Nations

(8) 제11조 위험상황과 인도적 차원의 긴급사태

속성	개념화 및 조작화	자료원
언제라도 발발할 수 있는 테러와 자연 재난 속에서 장애인의 생명권과 생존권이 다른 시민들의 수준으로 보장되어야 함. ⁴⁰⁾	[구조지표] 샌다이 프레임워크에 따라 재난 취약 계층에 형평성 있는 규정 마련 [과정지표] 재난 대응 한국훈련에서 장애인 대상 훈련 실시 ⁴¹⁾ [성과지표] 한해 재난으로 사망한 장애인의 비율 ⁴²⁾ (전인구 중 장애인의 비율과 비교)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9)에 따른 재난안전통계에서 장애인 세분화

(9) 제12조 법 앞의 평등

속성	개념화 및 조작화	자료원
어떤 상황에서도 예외 없이 자신의 의도 아래 법적 권리와 의무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함.	[구조지표] 성년후견제(민법 제9조)의 폐지와 장애인의 법적 능력을 인정하는 조력의사결정제로의 전환 [과정지표] 공무원, 법조인, 사회복지사 등 모든 관련 행위자들을 대상으로 조력의사결정에 대한 교육	

(10) 제13조 사법에 대한 접근

속성	개념화 및 조작화	자료원
모든 사법 절차 속에서 장애인의 효과적인 이용이 보장됨. ⁴³⁾	[구조지표] 「장애인 사법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의 법적 구속력 강화 [과정지표] 사법 행정 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정당한 편의제공에 대한 교육 실적 [성과지표] 사법기관을 이용한 장애인의 만족도	별도 조사 실시

Children's Fund, New York, 2018.

40) SDGs 목표3 (건강과 웰빙)과 11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에 연관되어 있다.

41) 장애인권 단체의 UNCRPD 이행 모니터링 지표(2015)를 반영하였다[권오용의 12, 앞의 글].

42) SDGs 목표11.5에 근거해, IDA에서 제안한 지표임[International Disability Alliance, www.internationaldisabilityalliance.org].

43) SDGs 목표16 (정의, 평화, 효과적인 제도)과 연관되어 있다.

44 장애인권리협약 이행에 관한 실태조사

(11) 제14조 신체의 자유 및 안전, 제15조 고문, 굴욕적 대우나 처벌로부터의 자유, 16조 착취, 폭력 및 학대로부터의 자유, 제17조 개인의 존엄성 보호

속성	개념화 및 조작화	자료원
장애인 개인에 대한 불법적 임의적 자유의 박탈, 안전의 위협, 그리고 고문, 굴욕적 대우, 처벌, 착취, 폭력, 학대가 일어나지 않도록 개인의 존엄성이 보장됨. ⁴⁴⁾	[구조지표] 「정신건강복지법」(제43조)에 따른 정신장애인의 강제입원에 대한 외부 감시 기구의 지속적인 조사 [과정지표] 장애인학대 의무신고자 교육 실적 • 장애인학대 의무신고자 만족도 • 범죄 피해자 지원 예산 중 장애인 관련 예산의 비율 ⁴⁵⁾ [성과지표] 교도소 및 구치소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 중 장애인의 비율 ⁴⁶⁾ (비장애인과의 비교)	국가인권위원회의 정보통신시설에 대한 별도의 추적조사 장애인인권상담네트워크 실적 보고 대법원, 법무부, 경찰청 자료 법무부 교정시설수용현황에서 장애 세분화

(12) 제18조 이주 및 국적의 자유

속성	개념화 및 조작화	자료원
국적의 취득과 이민 절차에서 동등한 자격이 보장됨. ⁴⁷⁾	[구조지표] 「출입국관리법」 제11조 ⁴⁸⁾ 및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 ⁴⁹⁾ 의 차별 조문 삭제	

44) SDGs 목표16 (정의, 평화, 효과적인 제도)에 연관되어 있다.

45) 장애인권 단체의 UNCRPD 이행 모니터링 지표(2015)를 반영하였다[권오용외 12, 앞의 글].

46) Danish Institute for Human Rights에서 개발한 The Gold Indicators의 네 번째 지표이다. 미국의 탈시설 정책을 비판하는 Paul S. Appelbaum(1987)에 따르면, 정부의 탈시설 실적과 함께 노숙인과 교도소 수감자 중 장애인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본 지표는 이러한 차원에서 충분한 사회적 지원 시스템이 없는 가운데 장애로 인해 자유가 제한되는 차별적 현상을 가늠하기 위함이다[Gaare Larsen, Freja Marie, 앞의 글].

47) SDGs 목표16 (정의, 평화, 효과적인 제도)에 연관되어 있다.

48) 제11조(입국의 금지 등)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5. 사리 분별력이 없고 국내에서 체류활동을 보조할 사람이 없는 정신장애인, 국내체류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사람, 그 밖에 구호(救護)가 필요한 사람

49) 제32조의2(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 ① 재외동포 및 외국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다. 1.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한 사람 2. 「주민등록법」 제6조에 따라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을 한 사람 3.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 중 대한민국

(13) 제19조 자립적 생활 및 지역사회에의 동참, 제26조 가활 및 재활

속성	개념화 및 조작화	자료원
가활 및 재활에 의한 생활 기술의 습득 그리고 개인별 지원 서비스의 이용을 통해 지역사회에 통합되어 살아 가도록 보장함 ⁵⁰⁾	[구조지표] 국가 차원의 탈시설 전략 계획 수립 [과정지표] 활동지원 기본 및 추가 급여의 시간당 1인 평균 • 본인 부담금의 감소율 (전년도 대비) • 효과적인 자립생활기술훈련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성과지표] 16인 이상 장애인 거주시설 성 인 이용 인원의 감소율 (전년도 대비)	보건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 통계 별도 조사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시설 통계

(14) 제21조 의사 및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권

속성	개념화 및 조작화	자료원
공공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됨 ⁵¹⁾	[구조지표] 읽고 이해하기 쉬운 공공정보 제작 기준 마련 및 제도화 • 보안대체 의사소통(AAC) 중재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방안 마련 및 제도화 [과정지표] 자막, 수화, 화면해설 방송물 보급비율 (지상파, 종편, 위성 등 전체 방송물 편수 대비) [성과지표] 장애인의 SNS 이용률 (비장애 인과의 비교)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계 자료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보호실태 조사」에서 장애 세분화

(15) 제22조 사생활의 존중

속성	개념화 및 조작화	자료원
사생활 특히 사회서비스 이용 과정에서의 개인정보가 철저히 보호됨.	[과정지표] 사물인터넷 시대에 맞는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개인정보 보호 및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 가이드라인 개발 및 교육	

국에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 4.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5. 「난민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난민인정자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에 대하여는 예산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복지사업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50) SDGs 목표11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에 연관되어 있다.

51) SDGs 목표9 (산업, 혁신, 사회기반 시설)에 연관되어 있다.

(16) 제23조 가정과 가족에 대한 존중

속성	개념화 및 조작화	자료원
장애인의 생식능력의 유지, 결혼과 가족의 구성, 나아가 장애 아동의 최상의 이익이 가능한 부모와 분리되지 않고 보장되어야 함. ⁵²⁾	<p>[구조지표] 장애인 강제불임에 대한 명시적 금지</p> <p>[과정지표] 장애인가족지원 예산의 증가율 (직전 연도와 비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 장애인 임신·출산관련 교육 및 정보 지원 예산의 증가율 (직전 연도와 비교) <p>[성과지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18-48세)의 유배우 비율 (비장애인과의 비교) 결혼한 장애인의 유자녀비율 (비장애인과 비교) 	<p>보건복지부 예산 자료</p> <p>보건복지부 장애인실태조사</p>

(17) 제24조 교육

속성	개념화 및 조작화	자료원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초·중·고등 교육 및 평생교육 과정에 대한 접근이 보장됨. ⁵³⁾	<p>[구조지표] 일반논평 4호(2016)에 따른 통합 교육 개선안 마련</p> <p>[과정지표] 장애인식교육에 참여한 시도교육청 행정가의 비율⁵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학생 1인당 보조인력 배치 비율 청각장애인 1인당 수화통역사의 비율⁵⁵⁾ 학생 및 학부모의 개별화교육계획 만족도⁵⁶⁾ <p>[성과지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의 학업중단률⁵⁷⁾ (비장애인과 비교) 성인 평생학습 참여율 (비장애인과 비교) 	<p>교육부 통계 자료</p> <p>교육부 통계 자료 별도 조사</p> <p>「교육통계연보」 학업중단학생현황에서 장애 세분화</p> <p>「한국교육개발원 「한국 성인의 평생학습 실태」 평생학습참여율 지표에서 장애 세분화</p>

52) SDGs 목표3 (건강과 웰빙)에 연관되어 있다.

53) SDGs 목표4 (양질의 교육)에 연관되어 있다.

54) 장애인권 단체의 UNCRPD 이행 모니터링 지표(2015)를 반영하였다[권오용외 12, 앞의 글].

55) 장애인권 단체의 UNCRPD 이행 모니터링 지표(2015)를 반영하였다[권오용외 12, 앞의 글].

56) 장애인권 단체의 UNCRPD 이행 모니터링 지표(2015)를 반영하였다[권오용외 12, 앞의 글].

57) ANED 통계 지표[The Academic Network of Europe Disability Experts(ANED) www.disability-europe.net]의 경우, 18-24세에 해당하는 성인을 대상으로 조기 이학자(early school leavers)에 대한 비율을 장애인(persons with limitations)과 비장애인(persons without limitations)간 비교하였다.

(18) 제25조 건강

속성	개념화 및 조작화	자료원
의료서비스에 대한 장애인의 차별 없는 접근을 통해 최고 수준의 건강을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함. ⁵⁸⁾	<p>[구조지표] 상법 제732조⁵⁹⁾의 차별 조문 삭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RPD 제25조 마항⁶⁰⁾에 대한 유보 철회 <p>[과정지표] 의료서비스 이용률⁶¹⁾ (비장애인과 비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검진 수검률⁶²⁾ (비장애인과 비교) • 장애 인식 교육을 받은 의료인의 비율 <p>[성과지표] 건강하다고 인식하는 장애인의 비율⁶³⁾ (비장애인과 비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특히, 지적 및 정신 장애인의 기대 수명 (비장애인과 비교) • 비만(BMI > 25)이 있는 장애인의 비율 (비장애인과 비교) 	<p>「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p> <p>건강보험공단 통계</p> <p>별도 조사</p> <p>「건강통계연보」, 장애 세분화 혹은 「장애인실태조사」와 비교</p> <p>「건강통계연보」, 장애 세분화 혹은 「장애인실태조사」와 비교</p> <p>「건강통계연보」, 장애 세분화 혹은 「장애인실태조사」와 비교</p>

(19) 제27조 근로 및 고용

속성	개념화 및 조작화	자료원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아 분리되지 않는 사업장에서 차별 당하지 않고 근로와 고용이 보장됨. ⁶⁴⁾	<p>[구조지표] 최저임금 미적용 장애인에 대한 보충급여제 도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작업장의 폐쇄와 대안 마련 <p>[과정지표] 전체 직업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예산 대비 장애인 직업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예산 비율⁶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노동조합 조직대상 근로 장애인 중 장애인 조합원의 비율⁶⁶⁾ (비장애인의 노동조합 조직률과 비교) 	<p>고용노동부 및 교육부 예산 자료</p> <p>고용노동부 「전국노동조합 조직현황」에서 장애인 및 성별 세분화</p>

- 58) SDGs 목표3 (건강과 웰빙)과 목표13 (기후변화와 대응)에 연관되어 있다.
- 59) 제732조(15세미만자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 다만, 심신박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제735조의3에 따른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60) 공평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제공되는 건강보험 및 국내법에 따라 허용되는 생명보험의 제공 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한다.
- 61) 장애인권 단체의 UNCRPD 이행 모니터링 지표(2015)를 반영하였다[권오용외 12, 앞의 글].
- 62) 장애인권 단체의 UNCRPD 이행 모니터링 지표(2015)를 반영하였다[권오용외 12, 앞의 글].
- 63) 장애인권 단체의 UNCRPD 이행 모니터링 지표(2015)를 반영하였다[권오용외 12, 앞의 글].
- 64) SDGs 목표8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 성장)에 연관되어 있다.
- 65) 장애인권 단체의 UNCRPD 이행 모니터링 지표(2015)를 반영하였다[권오용외 12, 앞의 글].

속성	개념화 및 조작화	자료원
	[성과지표] 공공부문 장애인 고용률 (장애인 출현율과 비교) ⁶⁷⁾ • 장애인 실업률과 취업률 ⁶⁸⁾ (비장애인과의 비교)	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통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와 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의 비교(교육수준, 연령대, 장애정도, 성별에 의한 세분화)

(20) 제28조 적절한 생활수준과 사회적 보호

속성	개념화 및 조작화	자료원
사회보장 및 보호 프로그램을 통해 차별 없이 적절한 생활수준이 확보될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개선되도록 함 ⁶⁹⁾	[구조지표] 장애수당 및 연금의 증액을 위한 계획 수립 [과정지표]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의 비율 (비장애인 수급자 비율과의 비교) [성과지표] 장애인(18세 이상) 가구 중 기본중위소득(사회보장급여 포함) 60% 미만자의 비율 ⁷⁰⁾ (비장애인과 비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11)에 따른 조사에서 장애인 가구 세분화

(21) 제29조 정치 및 공적 생활에 대한 참여

속성	개념화 및 조작화	자료원
효과적으로 정치활동에 참여하고 아무런 차별 없이 선출직 공무원이 될 수 있음 ⁷¹⁾	[과정지표] 투표소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 투표 절차에서 요구되는 편의 제공 지원 투표소 비율 ⁷²⁾	

- 66) 장애인권 단체의 UNCRPD 이행 모니터링 지표(2015)를 수정 반영하였다[권오용외 12, 앞의 글].
- 67) 장애인권 단체의 UNCRPD 이행 모니터링 지표(2015)를 수정 반영하였다[권오용외 12, 앞의 글].
- 68) ANED의 통계 지표[The Academic Network of Europe Disability Experts(ANED) www.disability-europe.net]의 경우,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20-64세를 대상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청년실업률의 경우도 우리(15-29세)와 달리 20-29세로 하고 있다.
- 69) SDGs 목표1 (빈곤퇴치), 목표2 (기아종식), 목표6 (깨끗한 물과 위생), 목표7 (모두를 위한 깨끗한 에너지) 그리고 목표11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등과 연관되어 있다.
- 70) SDGs 목표1.3과 10.4에 근거해 IDA에서 제안한 지표(www.internationaldisabilityalliance.org 참조)를, ANED의 통계 지표[The Academic Network of Europe Disability Experts(ANED) www.disability-europe.net]와 비교 가능하게 수정하였다.

속성	개념화 및 조작화	자료원
	[성과지표] 정당의 당원 중 장애인의 비율 • 국회, 광역의회 그리고 기초의회 의원 중 장애인의 비율 • 최근 선거에서 장애인의 투표율 (비장애인과의 비교)	별도 조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통계 자료

(22) 제30조 문화생활, 레크리에이션, 여가생활 및 체육활동에 대한 참여

속성	개념화 및 조작화	자료원
지역사회에서 문화생활에 참여하고 예술 활동의 기회를 갖도록 보장함. ⁷³⁾	[구조지표] 장애아동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 정책 수립 ⁷⁴⁾ • 마라케시 조약 ⁷⁵⁾ 의 효과적 이행 보장을 위한 조치 [과정지표] 예술인 지원 예산 중 장애 예술인 지원 비율 ⁷⁶⁾ [성과지표] • 독서, 취미, 문화예술관람, 국내관광, 해외여행 등의 장애인 참여 정도 (비장애인과의 비교)	문화체육관광부 예산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에서 장애인 세분화

2. 최종견해 이행 모니터링 평가지표 개발

가. 평가지표 개발 방법

최종견해의 내용들을 보면, 그 권고 사항들이 대부분 계량화시키기 어려운 포괄적이고도 추상적인 내용들로 기술되어 있다. 이는 장애인권리위원회가 제시하는 최종견해만의 특성이 아니라, 대부분의 유엔 조약기구들(UN Treaty

71) SDGs 목표16 (정의, 평화, 효과적인 제도)과 연관되어 있다.

72) 장애인권 단체의 UNCRPD 이행 모니터링 지표(2015)를 반영하였다[권오용외 12, 앞의 글].

73) SDGs 목표11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와 연관되어 있다.

74) 장애인권 단체의 UNCRPD 이행 모니터링 지표(2015)를 반영한 것으로, ‘놀 권리’는 아동권리협약 제31조에 근거해서 언급되었다[권오용외 12, 앞의 글].

75) Marrakesh Treaty to Facilitate Access to Published Works by Persons Who Are Blind, Visually Impaired or Otherwise Print Disabled.

76) 장애인권 단체의 UNCRPD 이행 모니터링 지표(2015)를 반영하였다[권오용외 12, 앞의 글].

Monitoring Bodies)이 최종견해를 작성하는 공통적인 방식이기도 하다. 유엔 조약기구들의 최종견해가 포괄적·추상적 내용들로 기술되는 이유는, 분량의 제한이 있기에 당사국의 모든 이슈들을 담을 수 없는 물리적인 한계 때문이기도 하지만, 보다 광범위한 이슈들이 많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전략적인 기술 방법 선택의 결과이기도 하다.

이에 대한민국 정부 제1차 국가보고서에 관한 최종견해의 이행 정도를 평가하는 평가지표도, 극소수의 정량평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정성평가의 지표로 개발하게 되었다. 물론 포괄적이고도 추상적인 내용을 구체화시켜가면서 세부 이슈별로 정량평가의 지표들을 만들 수는 있겠지만, 그러다보면 도출된 정량평가지표들이 포괄적 내용을 담은 권고 사항의 일부분들만을 평가하게 되며, 그 정량 지표 평가 영역들의 합이 권고 사항 전체 영역을 포괄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누락 영역’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

이로 인해 ‘나무만 보다 숲을 보지 못하게 되는 우(愚)’를 범할 위험성이 생기게 된다. 그런 문제를 최소화시키면서 정량평가 지표들을 개발하려면, 많은 예산을 투입하며 장기간에 걸쳐 심도 깊은 연구를 진행하여야 할 텐데, 본 연구에서는 연구기간과 연구비 등의 한계로 인해, 그런 연구를 진행할 수는 없었다. 이에 본 연구가 가진 한계 내에서, 최대한으로 질 높은 연구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CRPD에 대한 이해가 높고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을, 개발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시키는 게 중요했다.

본 연구를 담당하는 연구진 12명 중, 평가지표 초안 개발 TF(Task Force)팀에는 3명이 참여하였는바, 그 3명은 CRPD의 성안 과정과 협약 발효 후 모니터링 과정에 깊이 관여함으로써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사회복지학 박사 2명과, 장애 인권 분야를 담당하는 공익 변호사 1명으로 구성되었다.

사회복지학 박사 2명 중 한 명은, 유엔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협약 초안 마련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던 초창기인 2003년부터, 국내 장애인 당사자 NGO들을 주축으로 구성된 ‘국제장애인권리조약 한국추진연대’⁷⁷⁾의 초안위원으로 활

77) 한국 장애인 당사자들의 의견들을 모아서 CRPD에 들어가야 할 내용들로 제시하기 위해, 국내 민간 장애인 당사자 단체들이 연합하여 만든 연대 단체로, 사랑사랑양천자립생활센터, 열린네트워크, 장애인지역공동체, 장애인편의시설축진시민연대, 전지대연인

동하기 시작하여, 대한민국 초안을 만드는 과정 뿐 아니라, 2004년 1월 유엔본부의 ‘CRPD 워킹그룹(Working Group)’⁷⁸⁾에 전달된 아시아·태평양 지역 초안인 ‘방콕 초안(Bangkok Draft)’ 성안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⁷⁹⁾했으며, 워킹그룹 중

권포럼, 한국교통장애인협회, 한국농아인협회, 한국소아마비협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자립생활네트워크,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연맹, 한국장애인인권포럼, 한국지체장애인협회로 구성되었다.

78) 2003년 6월 16일부터 27일까지 열린 제2차 유엔 특별위원회에서는, 제3차 유엔 특별위원회 회의에 제시할 CRPD 초안 작성을 위한 워킹그룹(Working Group)을 만들기 합의하였다.

이 워킹그룹은, 각 지역별 국가의 대표자 27명(아시아·태평양 지역 7개국, 아프리카 지역 7개국,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그룹 지역 5개국, 서유럽과 기타그룹 지역 5개국, 동유럽 지역 3개국), 장애인 관련 NGO 출신 대표자 12명, 국가인권기구 대표자 1명 등, 총 40명의 멤버로 구성되었다. 이 가운데 아시아·태평양의 7개국 중에 대한민국이 포함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 NGO 출신(당시 한국장애인연맹 회장)이며 시각장애인 당사자인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익섭교수를, 대한민국 정부대표의 자격으로 선발하여 파견하였다.

워킹그룹 구성원 40명에는, 지역별 국가로 카메룬(Mr. Rodolphe Soh), 캐나다(Mr. David Sproule), 중국(Mr. Xie Bohua), 콜롬비아(Ms. Beatriz Londo), 코모로스(Mr. Mohamed El-Marouf), 에콰도르(Mr. Miguel Carbo), 독일(Ms. Theresia Degener), 인도(Ms. Rajwant Sandhu), 아일랜드(Mr. John Biggar), 자메이카(Mr. Floyd Morris), 일본(Ms. Shikegi Sumi), 레바논(Ms. Nehmat Kanaan), 말리(Mr. Issa Konfourou), 멕시코(Mr. Luis Alfonso de Alba), 모로코(Mr. Mohamed Bennouna), 뉴질랜드(Ms. Jan Scown), 필리핀(Mr. Lauro L. Baja), 대한민국(Mr. Ick Seop Lee), 러시아(Mr. Sergey Tolkalin), 사르비아 몬테네그로(Mr. Damjan Tatic), 시에라리온(Mr. Sylvester E. Rowe), 슬로베니아(Ms. Aleksandra Tabaj), 남아프리카공화국(Ms. Sebenzile Matsebula), 스웨덴(Ms. Carina Mtensson), 태국(Mr. Montien Buntan), 우간다(Ms. Florence Naviga Sekabira), 베네수엘라(Mr. Lenin Molina Pelosa)가, 장애인 관련 NGO로는 아시아·태평양장애포럼(Ms. Anuradha Mohit), 국제장애인연맹(Ms. Venus Ilagan), 아프리카장애인연맹(Mr. Shuaib Chalklen), 유럽장애포럼(Mr. Yannis Vardakastanis), 국제장애인협의체(Mr. Robert Martin), 범아메리카장애포럼(Mr. Luis Fernando Astorga Gatjens), 지뢰사고생존자네트워크(Mr. Adnan al Aboudi), 국제재활협회(Mr. Gerard Quinn), 국제시각장애인연합(Ms. Kicki Nordstr), 국제시·청각장애인연합(Mr. Lex Grandia), 국제농아인연맹(Ms. Liisa Kauppinen), 세계정신보건서비스이용자및피해자네트워크(Ms. Tina Minkowitz)가, 국가인권기구로 남아프리카인권위원회(Ms. Charlotte McClain)가 각각 참여하였다.

79) 태국의 방콕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유엔의 지역기구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UN ESCAP: 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이하 “유엔 에스컴”)에서는, 2003년 한 해 동안 CRPD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초안을 만들기 위한 전문가 회의를 여러 차례 개최하였다.

미국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2003년 6월 16일부터 27일까지 개최된 CRPD의 제2차 유엔 특별위원회의 개최를 며칠 앞둔 시점인, 2003년 6월 2일부터 4일까지 방콕의 유엔 에스컴 빌딩에서 열린 전문가 회의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국제조약에 관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전문가 회의 및 세미나(the Asian and Pacific

료 직후인 2004년 5월 24일부터 6월 4일까지 유엔본부에서 개최된 제3차 특별위원회에 대한민국 NGO 대표단의 일원으로 참여하여 활동하기도 했다. 이러한 협약 성안과정에서의 기여도를 인정받아, 2006년 12월 13일 CRPD가 통과되던 제6제1차 유엔총회 회의장에, 대한민국 NGO 축하사절단의 일원으로서 초대되기도 하였다.

또한 협약의 유엔총회 통과 후에도, 국내의 ‘CRPD 모니터링연대’의 NGO 보고서 전문위원(2012년)이나 ‘CRPD NGO보고서 연대’의 운영위원 및 제6워킹그룹 의장(2013년)으로 활동하였으며,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한 유엔인권최고대표

Regional Expert Group Meeting and Seminar on an International Convention to Protect and Promote the Rights and Dignity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에서는 회의의 결과 문서로,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성을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한 국제조약의 상세화에 관한 방콕 권고안(Bangkok Recommendations on the Elaboration of a Comprehensive and Integral International Convention to Promote and Protect the Rights and Dignity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이 나왔다.

또, 같은 해 10월 14일부터 17일까지 열린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성의 보호 및 증진에 관한 포괄적이고도 종합적인 국제조약을 향한 지역 워크숍(Regional Workshop towards a Comprehensive and Integral International Convention on Protection and Promotion of the Rights and Dignity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의 결과 문서로 도출된 것이, 바로 ‘방콕 초안: 장애인 권리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포괄적이고도 종합적인 국제조약의 제안 자료(Bangkok Draft: Proposed Elements of a Comprehensive and Integral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이다.

그리고 그 다음 달인 2003년 11월 4일부터 11월 7일까지는 중국의 베이징에서 ‘중국장애인연합(CDPF: China Disabled Persons’ Federation)’과 유엔 에스캅이 공동주최한,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성 보호 및 증진에 관한 국제조약 UN ESCAP/CDPF 지역 회의 (UN ESCAP/CDPF Regional Meeting on an International Convention on Protection and Promotion of the Rights and Dignity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4-7 November 2003, Beijing, China)’가 개최되면서, 2004년 1월 5일부터 16일까지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워킹그룹 회의를 앞두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협약 초안 의견을 마지막 조율하였다. 이 회의의 결과로,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성의 증진 및 보호를 위한 국제조약 상세화에 대한 베이징 선언(Beijing Declaration on Elaboration of an International Convention to Promote and Protect the Rights and Dignity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이 발표되었다.

내부 연구진 12명 중, 평가지표 초안 개발 TF팀에 참가한 사회복지학 박사 1명은, 이 회의들 중, 10월의 방콕회의와 11월의 베이징 회의에 대한민국 NGO 대표단 일원의 자격으로 참가하였다. 이 두 번의 대한민국 NGO 대표단 단장은 이후 2004년 1월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최된 워킹그룹 회의에 대한민국 정부 대표로 참가한 故 이익섭교수가 맡았던바, 본 연구의 내부 연구원과 故 이익섭교수가 긴밀한 협조 하에 활동함으로써, 대한민국 장애인 NGO의 의견이 협약에 반영되는데 많은 영향을 미치는 계기가 되었다.

사무소(UN OHCHR: United Nations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회의장인 팔레 윌송(Palais Wilson)에서 2012년과 2013년 9월에 각각 개최된 장애인권리위원회 국가보고서 심사회에도 두 차례나 참가한바 있어, CRPD 분야의 심도 깊은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다른 한 명은, 2012년 국내의 'CRPD 모니터링연대' NGO 보고서 집필위원으로 활동하였고, 제네바에서 개최된 장애인권리위원회 국가보고서 심사회에도 참가하였다. 2015년에는 'CRPD 최종견해 이행 방안 연구'에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한 바 있었다. 더불어, 2010년 유엔 에스캅(ESCAP) 아·태 장애인 10년 전략 연구와 이를 바탕으로 한 '인천전략' 지표의 메타데이터시트 연구(2013)를 수행하였다.

한편, 변호사 1명은, 장애인권 관련 사건 및 자문을 담당하며 공익활동을 하는 변호사로, 이렇게 3명이 본 연구진 내부의 평가지표 초안 개발 TF팀으로 구성되었다.

연구진 내부의 평가지표 초안 개발 TF팀에서 TF팀의 초안을 도출한 이후에는, 그 평가지표 초안 개발 TF팀 초안을 국내외 변호사로 구성된 연구진 내부 공동연구원들의 상호 검토(peer review)를 거쳐 수정·보완함으로써, 연구진 초안을 완성하였다.

이렇게 도출된 연구진 초안은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거쳤는데, 외부 전문가는 2018년 3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CRPD 제19차 세션에서 CRPD NGO연대 보고서위원장으로 국가보고서 쟁점목록 채택을 위한 브리핑을 한 전지혜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이다.

연구진 초안에 대한 외부 자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따라, 이를 수정·보완하는 과정을 거쳐서, 본 연구의 최종견해 이행 모니터링 평가지표가 개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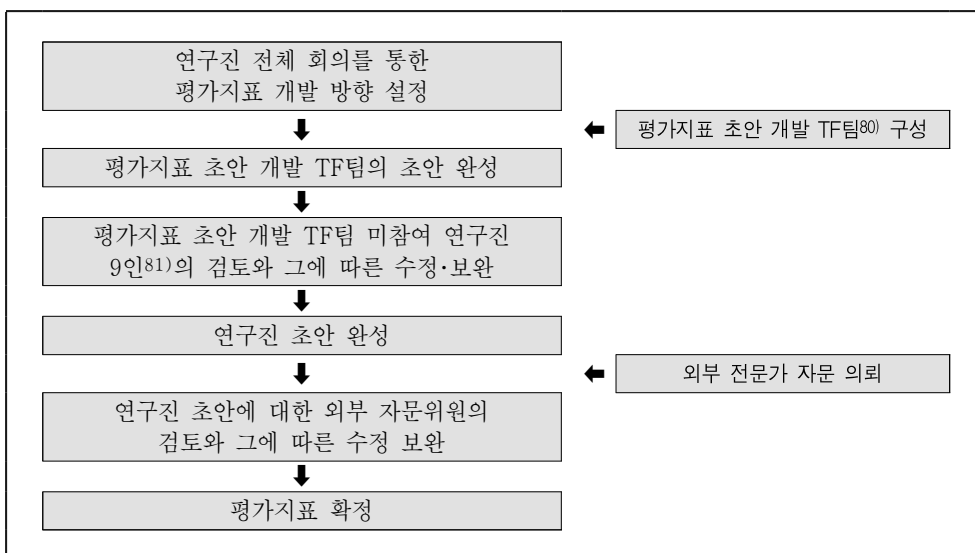
개발된 CRPD 최종견해 이행 모니터링 평가지표는 모두 221개로, 이중 168개는 쟁점목록과 같은 내용의 지표이고, 최종견해만의 고유지표는 53개이다. 한편 CRPD 쟁점목록 이행 모니터링 평가지표의 경우에는 총 248개가 개발되었는데, 이중 역시 168개는 최종견해와 같은 내용의 지표이고, 쟁점목록만의 고유지표는 80개이다. 따라서 최종견해와 쟁점목록의 같은 내용 지표들을 중복된 동일 지표로 계산할 경우, 전체 지표의 개수는 301개가 된다.

아래 <표 7>은 최종견해와 쟁점목록 평가지표 개수의 현황을 정리한 것이다.

[표-7] 최종견해와 쟁점목록 평가지표의 수

구분	개수(개)
CRPD 최종견해 이행 모니터링 평가지표와 CRPD 쟁점목록 이행 모니터링 평가지표의 공통지표	168
CRPD 최종견해 이행 모니터링 평가만의 고유지표	53
CRPD 쟁점목록 이행 모니터링 평가만의 고유지표	80
합계	301

아래 [그림 7]은 그 평가지표 개발 수행 과정을 도식화한 것이다.



[그림-7] 평가지표 개발 수행 과정

나. 개발된 평가지표의 내용

개발된 최종견해 이행 모니터링 평가지표는 쟁점목록의 평가지표와 동일한 지표가 많아서, 최종견해와 쟁점목록의 이행 모니터링 평가지표를 하나로 통합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이에 개발된 최종견해 이행 모니터링 평가지표는 쟁점목록

80) 연구진 내부 인원 중, 사회복지학 박사 2인, 변호사 1인의 총 3인으로 구성.

81) 변호사 9인으로 구성.

이행 평가지표와 통합하여, ‘최종견해와 쟁점목록의 통합 평가지표’로 뒤에 제시되어 있다.

3. 쟁점목록 이행 모니터링 평가지표 개발

가. 평가지표 개발 방법

최종견해 이행 모니터링 평가지표 개발의 방법과 동일하다.

나. 개발된 평가지표의 내용

개발된 쟁점목록 이행 모니터링 평가지표는 최종견해의 평가지표와 동일한 지표가 많아서, 최종견해와 쟁점목록의 이행 모니터링 평가지표를 하나로 통합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이에 개발된 쟁점목록 이행 모니터링 평가지표는 최종견해 이행 평가지표와 통합하여, ‘최종견해와 쟁점목록의 통합 평가지표’로 다음에 제시되어 있다.

[표-8] 최종견해와 쟁점목록의 통합 평가지표

연번	조항	관련근거	지표유형	지표	산식	평가방법
1	1-4조	최-782/ 쟁-183	구조지표 (정량)	「장애인복지법」이 협약에서 주장하는 장애에 대한 인권적 접근과 조화를 이루도록 한 개정 여부	인권적 접근과의 조화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개정 여부	「장애인복지법」 개정 현황 분석
2	1-4조	최-7/ 쟁-1	구조지표 (정성)	「장애인복지법」 개정의 인권적 접근 조화 방향에 대한 부합성	「장애인복지법」 개정의 인권적 접근 조화 방향에 대한 부합률 정도	유관 당사자(단체) 및 전문가(집단) 설문(혹은 FGI)

82) 관련 근거에 ‘최-7’로 표기된 것의 의미는 ‘최종견해 제7항’을 뜻하는 것으로, 지면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이렇게 간략 표기하였음(이하 같음).

83) 관련 근거에 ‘쟁-1’로 표기된 것의 의미는 ‘쟁점목록 제1항’을 뜻하는 것으로, 지면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이렇게 간략 표기하였음(이하 같음).

연번	조항	관련근거	지표유형	지표	산식	평가방법
3	1-4조	최-7/ 쟁-1	구조지표 (정성)	「장애인복지법」 개정의 인권적 접근 조화 충분성	「장애인복지법」 개정 의 인권적 접근 조화 충분성 정도	유관 당사자(단체) 및 전문가(집단) 설문(혹은 FGI)
4	1-4조	최-9/ 쟁-2	구조지표 (정량)	장애인의 특성·상황· 욕구에 부합하도록 하 는 장애등급·판정제도 의 수정 여부	장애등급·판정제도 수 정 여부	장애등급·판정제도 개 선 현황 분석
5	1-4조	최-9/ 쟁-1	과정지표 (정량)	복지서비스 및 활동지 원서비스의 정신장애 인을 포함한 모든 장애 인에게로 확대 여부	복지서비스 및 활동지 원서비스의 정신장애 인을 포함한 모든 장애 인에게로 확대 여부	복지서비스 및 활동지 원서비스 변동 현황 분석
6	1-4조	최-9/ 쟁-1	성과지표 (정성)	복지서비스 및 활동지 원서비스의 정신장애 인을 포함한 모든 장애 인에게로 확대 조치의 적절성	복지서비스 및 활동지 원서비스의 정신장애 인을 포함한 모든 장애 인에게로 확대 조치의 적절성 정도	유관 당사자(단체) 및 전문가(집단) 설문(혹은 FGI)
7	1-4조	최-9/ 쟁-1	성과지표 (정성)	복지서비스 및 활동지 원서비스의 정신장애 인을 포함한 모든 장애 인에게로 확대 조치의 충분성	복지서비스 및 활동지 원서비스의 정신장애 인을 포함한 모든 장애 인에게로 확대 조치의 충분성 정도	유관 당사자(단체) 및 전문가(집단) 설문(혹은 FGI)
8	1-4조	최-10/ 쟁-3	구조지표 (정량)	선택의정서 비준 여부	선택의정서 비준 여부	비준/미비준 선택 명기
9	5조	최-12/ 쟁-4(a)	과정지표 (정량)	국가인권위원회의 인 력 확충과 독립성 향상 을 위한 조치 여부	인권위의 인력 확충과 독립성 향상을 위한 조 치 여부	인권위 최신 자료 분석
10	5조	최-12/ 쟁-4(a)	성과지표 (정성)	국가인권위원회의 인 력 확충과 독립성 향상 을 위한 조치의 적절성	인권위의 인력 확충과 독립성 향상을 위한 조 치의 적절성 정도	인권위에 평가 요청
11	5조	최-12/ 쟁-4(a)	성과지표 (정성)	국가인권위원회의 인 력 확충과 독립성 향상 을 위한 조치의 충분성	인권위의 인력 확충과 독립성 향상을 위한 조 치의 충분성 정도	인권위에 평가 요청
12	5조	최-12/ 쟁-4(b)	성과지표 (정성)	장애로 인한 차별 피해 자의 소송비 감면제도의 적절성	장애 차별 피해자의 소 송비 감면제도의 적절 성 정도	유관 당사자(단체) 및 전문가(집단) 설문(혹은 FGI)
13	5조	최-12/ 쟁-4(b)	성과지표 (정성)	장애로 인한 차별 피해 자의 소송비 감면제도의 충분성	장애 차별 피해자의 소 송비 감면제도의 충분 성 정도	유관 당사자(단체) 및 전문가(집단) 설문(혹은 FGI)
14	5조	최-12/ 쟁-4(b)	과정지표 (정량)	「장차법」 ⁸⁴⁾ 제43조의 법무부 장관 시정명령 요건 완화 여부	법무부 장관 시정명령 요건 완화 여부	「장차법」 개정 현황 분석

84)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말함(이하 이 표에서 같음).

연번	조항	관련근거	지표유형	지표	산식	평가방법
15	5조	최-12/ 쟁-4(b)	성과지표 (정성)	「장차법」 제43조의 법무부 장관 시정명령 요건 완화의 적절성	법무부 장관 시정명령 요건 완화 조치의 적절성 정도	유관 당사자(단체) 및 전문가(집단) 설문(혹은 FGI)
16	5조	최-12/ 쟁-4(b)	성과지표 (정성)	「장차법」 제43조의 법무부 장관 시정명령 요건 완화의 충분성	법무부 장관 시정명령 요건 완화 조치의 충분성 정도	유관 당사자(단체) 및 전문가(집단) 설문(혹은 FGI)
17	5조	최-12/ 쟁-4(c)	과정지표 (정량)	법관 인식제고를 위한 조치 여부	법관 인식제고를 위한 조치 여부	정부 회신 자료 분석
18	5조	최-12/ 쟁-4(c)	성과지표 (정성)	법관 인식제고를 위한 조치의 적절성	법관 인식제고를 위한 조치의 적절성 정도	유관 당사자(단체) 및 전문가(집단) 설문(혹은 FGI)
19	5조	최-12/ 쟁-4(c)	성과지표 (정성)	법관 인식제고를 위한 조치의 충분성	법관 인식제고를 위한 조치의 충분성 정도	유관 당사자(단체) 및 전문가(집단) 설문(혹은 FGI)
20	5조	최-12/ 쟁-4(d)	과정지표 (정량)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법무부에게 통보된 모든 진정 사건 수 중,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법무부에게 통보된 장애 관련 진정 사건 수가 차지하는 비율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법무부에게 통보된 장애 관련 진정 사건 중 시정명령이 내려진 건수의 비율	정부 회신 자료 분석
21	5조	최-12/ 쟁-4(d)	성과지표 (정성)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법무부에게 통보된 모든 진정 사건 수 중,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법무부에게 통보된 장애 관련 진정 사건 수가 차지하는 비율의 적절성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법무부에게 통보된 장애 관련 진정 사건 중 시정명령이 내려진 건수의 비율의 적절성 정도	인권위에 평가 요청
22	5조	최-12/ 쟁-4(e)	과정지표 (정량)	소송과 관련된 법률구조 건수 중, 「장차법」 위반에 근거한 소송과 관련된 법률구조 건수의 비율	(「장차법」 위반에 근거한 소송과 관련된 법률구조 건수 / 소송과 관련된 전체 법률구조 건수) × 100	정부 회신 자료 분석
23	5조	최-12/ 쟁-4(e)	성과지표 (정성)	소송과 관련된 법률구조 건수 중, 「장차법」 위반에 근거한 소송과 관련된 법률구조 건수 비율의 적절성	소송과 관련된 법률구조 건수 중, 「장차법」 위반에 근거한 소송과 관련된 법률구조 건수 비율의 적절성 정도	법률구조 관련 기관 회신 자료 분석
24	6조	최-14/ 쟁-5(a)	구조지표 (정량)	법률과 정책에서의 성인 지적 관점 주류화 여부	법률과 정책에서의 성인 지적 관점 주류화 여부	정부 회신 자료 분석

연번	조항	관련근거	지표유형	지표	산식	평가방법
25	6조	최-14/ 쟁-5(a)	성과지표 (정성)	법률과 정책에서의 성 인지적 관점 주류화 적 절성	법률과 정책에서의 성 인지적 관점 주류화 적 절성 정도	유관 당사자(단체) 및 전문가(집단) 설문(혹은 FGI)
26	6조	최-14/ 쟁-5(a)	성과지표 (정성)	법률과 정책에서의 성 인지적 관점 주류화 충 분성	법률과 정책에서의 성 인지적 관점 주류화 충 분성 정도	유관 당사자(단체) 및 전문가(집단) 설문(혹은 FGI)
27	6조	최-14/ 쟁-5(a)	구조지표 (정량)	다중적 차별, 복합적 차 별 해소 조치가 포함된 장애여성만을 위해 특 화된 정책의 개발 여부	다중적 차별, 복합적 차 별 해소 조치가 포함된 장애여성만을 위해 특 화된 정책의 개발 여부	정부 회신 자료 분석
28	6조	최-14/ 쟁-5(a)	성과지표 (정성)	다중적 차별, 복합적 차별 해소 조치가 포함 된 장애여성만을 위해 특화된 정책의 적절성	다중적 차별, 복합적 차별 해소 조치가 포함 된 장애여성만을 위해 특화된 정책의 적절성 정도	유관 당사자(단체) 및 전문가(집단) 설문(혹은 FGI)
29	6조	최-14/ 쟁-5(a)	성과지표 (정성)	다중적 차별, 복합적 차별 해소 조치가 포함 된 장애여성만을 위해 특화된 정책의 충분성	다중적 차별, 복합적 차별 해소 조치가 포함 된 장애여성만을 위해 특화된 정책의 충분성 정도	유관 당사자(단체) 및 전문가(집단) 설문(혹은 FGI)
30	6조	최-14/ 쟁-5(b)	과정지표 (정량)	가족 내 정신적, 신체 적 폭력을 포함하여 거 주시설 내외부 장애여 성 폭력 해결에 대한 조치 여부	가족 내 정신적, 신체 적 폭력을 포함하여 거 주시설 내외부 장애여 성 폭력 해결에 대한 조치 여부	정부 회신 자료 분석
31	6조	최-14/ 쟁-5(b)	성과지표 (정성)	가족 내 정신적, 신체 적 폭력을 포함하여 거 주시설 내외부 장애여 성 폭력 해결에 대한 조치의 적절성	가족 내 정신적, 신체 적 폭력을 포함하여 거 주시설 내외부 장애여 성 폭력 해결에 대한 조치의 적절성 정도	유관 당사자(단체) 및 전문가(집단) 설문(혹은 FGI)
32	6조	최-14/ 쟁-5(b)	성과지표 (정성)	가족 내 정신적, 신체 적 폭력을 포함하여 거 주시설 내외부 장애여 성 폭력 해결에 대한 조치의 충분성	가족 내 정신적, 신체 적 폭력을 포함하여 거 주시설 내외부 장애여 성 폭력 해결에 대한 조치의 충분성 정도	유관 당사자(단체) 및 전문가(집단) 설문(혹은 FGI)
33	6조	최-14/ 쟁-5(b)	구조지표 (정량)	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 방프로그램의 장애인 지적관점 도입 여부	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 방프로그램의 장애인 지적관점 도입 여부	정부 회신 자료 분석
34	6조	최-14/ 쟁-5(b)	성과지표 (정성)	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 방프로그램의 장애인지 적관점 도입의 적절성	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 방프로그램의 장애인 지적관점 도입의 적절 성 정도	유관 당사자(단체) 및 전문가(집단) 설문(혹은 FGI)

연번	조항	관련근거	지표유형	지표	산식	평가방법
35	6조	최-14/ 쟁-5(b)	성과지표 (정성)	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프로그램의 장애인 지적관점 도입의 충분성	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프로그램의 장애인 지적관점 도입의 충분성 정도	유관 당사자(단체) 및 전문가(집단) 설문(혹은 FGI)
36	6조	최-14/ 쟁-5(c)	구조지표 (정량)	장애여성의 적절한 평생교육을 받을 권리 보장 정책 존재 여부	장애여성의 적절한 평생교육을 받을 권리 보장 정책 존재 여부	정부 회신 자료 분석
37	6조	최-14/ 쟁-5(c)	성과지표 (정성)	장애여성의 적절한 평생교육을 받을 권리 보장 정책의 적절성	장애여성의 적절한 평생교육을 받을 권리 보장 정책의 적절성 정도	유관 당사자(단체) 및 전문가(집단) 설문(혹은 FGI)
38	6조	최-14/ 쟁-5(c)	성과지표 (정성)	장애여성의 적절한 평생교육을 받을 권리 보장 정책의 충분성	장애여성의 적절한 평생교육을 받을 권리 보장 정책의 충분성 정도	유관 당사자(단체) 및 전문가(집단) 설문(혹은 FGI)
39	6조	최-14/ 쟁-5(c)	구조지표 (정량)	장애여성 평생교육을 위한 재정적 지원 정책 존재 여부	장애여성 평생교육을 위한 재정적 지원 정책 존재 여부	정부 회신 자료 분석
40	6조	최-14/ 쟁-5(c)	성과지표 (정성)	장애여성 평생교육을 위한 재정적 지원 정책의 적절성	장애여성 평생교육을 위한 재정적 지원 정책의 적절성 정도	유관 당사자(단체) 및 전문가(집단) 설문(혹은 FGI)
41	6조	최-14/ 쟁-5(c)	성과지표 (정성)	장애여성 평생교육을 위한 재정적 지원 정책의 충분성	장애여성 평생교육을 위한 재정적 지원 정책의 충분성 정도	유관 당사자(단체) 및 전문가(집단) 설문(혹은 FGI)
42	6조	최-14/ 쟁-5(d)	과정지표 (정량)	임신출산 지원확대 여부	임신출산 지원확대 여부	정부 회신 자료 분석
43	6조	최-14/ 쟁-5(d)	성과지표 (정성)	임신출산 지원확대 정책의 적절성	임신출산 지원확대 정책의 적절성 정도	유관 당사자(단체) 및 전문가(집단) 설문(혹은 FGI)
44	6조	최-14/ 쟁-5(d)	성과지표 (정성)	임신출산 지원확대 정책의 충분성	임신출산 지원확대 정책의 충분성 정도	유관 당사자(단체) 및 전문가(집단) 설문(혹은 FGI)
45	6조	최-14/ 쟁-5(d)	구조지표 (정량)	강제불임, 낙태 또는 친권박탈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장치 마련 여부	강제불임, 낙태 또는 친권박탈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장치 마련 여부	정부 회신 자료 분석
46	6조	최-14/ 쟁-5(d)	성과지표 (정성)	강제불임, 낙태 또는 친권박탈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장치의 적절성	강제불임, 낙태 또는 친권박탈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장치의 적절성 정도	유관 당사자(단체) 및 전문가(집단) 설문(혹은 FGI)
47	6조	최-14/ 쟁-5(d)	성과지표 (정성)	강제불임, 낙태 또는 친권박탈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장치의 충분성	강제불임, 낙태 또는 친권박탈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장치의 충분성 정도	유관 당사자(단체) 및 전문가(집단) 설문(혹은 FGI)

연번	조항	관련근거	지표유형	지표	산식	평가방법
48	7조	쟁-6	구조지표 (정량)	완전한 통합을 보장하기 위한 아동 관련 법령의 제·개정이나 정책 수립 시에, 대표단체를 통한 장애아동 및 그 가족들의 참여 수준을 극대화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 존재 여부	완전한 통합을 보장하기 위한 아동 관련 법령의 제·개정이나 정책 수립 시에, 대표단체를 통한 장애아동 및 그 가족들의 참여 수준을 극대화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 존재 여부	정부 회신 자료 분석
49	7조	쟁-6	성과지표 (정성)	완전한 통합을 보장하기 위한 아동 관련 법령의 제·개정이나 정책 수립 시에, 대표단체를 통한 장애아동 및 그 가족들의 참여 수준을 극대화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의 적절성	완전한 통합을 보장하기 위한 아동 관련 법령의 제·개정이나 정책 수립 시에, 대표단체를 통한 장애아동 및 그 가족들의 참여 수준을 극대화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의 적절성 정도	유관 당사자(단체) 및 전문가(집단) 설문(혹은 FGI)
50	7조	쟁-6	성과지표 (정성)	완전한 통합을 보장하기 위한 아동 관련 법령의 제·개정이나 정책 수립 시에, 대표단체를 통한 장애아동 및 그 가족들의 참여 수준을 극대화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의 충분성	완전한 통합을 보장하기 위한 아동 관련 법령의 제·개정이나 정책 수립 시에, 대표단체를 통한 장애아동 및 그 가족들의 참여 수준을 극대화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의 충분성 정도	유관 당사자(단체) 및 전문가(집단) 설문(혹은 FGI)
51	8조	최-16/ 쟁-7	과정지표 (정량)	인식제고 캠페인 강화 여부	인식제고 캠페인 강화 여부	정부 회신 자료 분석
52	8조	최-16/ 쟁-7	성과지표 (정성)	인식제고 캠페인 강화 조치의 적절성	인식제고 캠페인 강화 조치의 적절성 정도	유관 당사자(단체) 및 전문가(집단) 설문(혹은 FGI)
53	8조	최-16/ 쟁-7	성과지표 (정성)	인식제고 캠페인 강화 조치의 충분성	인식제고 캠페인 강화 조치의 충분성 정도	유관 당사자(단체) 및 전문가(집단) 설문(혹은 FGI)
54	8조	최-16/ 쟁-8	과정지표 (정량)	공무원, 국회의원, 언론 및 일반 대중 등에 대한 협약의 내용과 목적 교육 제공 여부	공무원, 국회의원, 언론 및 일반 대중 등에 대한 협약의 내용과 목적 교육 제공 여부	정부 회신 자료 분석
55	8조	최-16/ 쟁-8	성과지표 (정성)	공무원, 국회의원, 언론 및 일반 대중 등에 대한 협약의 내용과 목적 교육 제공의 적절성	공무원, 국회의원, 언론 및 일반 대중 등에 대한 협약의 내용과 목적 교육 제공의 적절성 정도	유관 당사자(단체) 및 전문가(집단) 설문(혹은 FGI)

연번	조항	관련근거	지표유형	지표	산식	평가방법
56	8조	최-16/ 쟁-8	성과지표 (정성)	공무원, 국회의원, 언론 및 일반 대중 등에 대한 협약의 내용과 목적 교육 제공의 충분성	공무원, 국회의원, 언론 및 일반 대중 등에 대한 협약의 내용과 목적 교육 제공의 충분성 정도	유관 당사자(단체) 및 전문가(집단) 설문(혹은 FGI)
57	9조	최-18/ 쟁-9(a)	과정지표 (정량)	(도시 간 교통을 포함) 모든 형태의 대중교통 정책을 장애인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정책 검토 여부	(도시 간 교통을 포함) 모든 형태의 대중교통 정책을 장애인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정책 검토 여부	정부 회신 자료 분석
58	9조	최-18/ 쟁-9(a)	성과지표 (정성)	(도시 간 교통을 포함) 모든 형태의 대중교통 정책을 장애인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정책 검토의 적절성	(도시 간 교통을 포함) 모든 형태의 대중교통 정책을 장애인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정책 검토의 적절성 정도	유관 당사자(단체) 및 전문가(집단) 설문(혹은 FGI)
59	9조	최-18/ 쟁-9(a)	성과지표 (정성)	(도시 간 교통을 포함) 모든 형태의 대중교통 정책을 장애인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정책 검토의 충분성	(도시 간 교통을 포함) 모든 형태의 대중교통 정책을 장애인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정책 검토의 충분성 정도	유관 당사자(단체) 및 전문가(집단) 설문(혹은 FGI)
60	9조	최-18/ 쟁-9(b)	과정지표 (정량)	소규모 시설에의 접근성 기준 적용 여부	소규모 시설에의 접근성 기준 적용 여부	기존 정책 자료와 정부 회신 자료 분석
61	9조	최-18/ 쟁-9(b)	성과지표 (정성)	소규모 시설에의 접근성 기준 적용의 적절성	소규모 시설에의 접근성 기준 적용의 적절성 정도	유관 당사자(단체) 및 전문가(집단) 설문(혹은 FGI)
62	9조	최-18/ 쟁-9(b)	성과지표 (정성)	소규모 시설에의 접근성 기준 적용의 충분성	소규모 시설에의 접근성 기준 적용의 충분성 정도	유관 당사자(단체) 및 전문가(집단) 설문(혹은 FGI)
63	9조	최-18/ 쟁-9(b)	과정지표 (정량)	건축일자와 무관한 시설 접근성 기준 적용 여부	건축일자와 무관한 시설 접근성 기준 적용 여부	기존 정책 자료와 정부 회신 자료 분석
64	9조	최-18/ 쟁-9(b)	성과지표 (정성)	건축일자와 무관한 시설 접근성 기준 적용의 적절성	건축일자와 무관한 시설 접근성 기준 적용의 적절성 정도	유관 당사자(단체) 및 전문가(집단) 설문(혹은 FGI)
65	9조	최-18/ 쟁-9(b)	성과지표 (정성)	건축일자와 무관한 시설 접근성 기준 적용의 충분성	건축일자와 무관한 시설 접근성 기준 적용의 충분성 정도	유관 당사자(단체) 및 전문가(집단) 설문(혹은 FGI)

연번	조항	관련근거	지표유형	지표	산식	평가방법
66	9조	최-18/ 쟁-9(c)	구조지표 (정량)	인터넷, 스마트폰 및 소비자 전자제품 등 각각에 대한 접근성 개선을 위한 법령 개정 여부	인터넷, 스마트폰 및 소비자용 전자제품 등 각각에 대한 접근성 개선을 위한 법령 개정 여부	기존 정책 자료와 정부 회신 자료 분석
67	9조	최-18/ 쟁-9(c)	성과지표 (정성)	인터넷, 스마트폰 및 소비자 전자제품 등 각각에 대한 접근성 개선을 위한 법령 개정의 적절성	인터넷, 스마트폰 및 소비자용 전자제품 등 각각에 대한 접근성 개선을 위한 법령 개정의 적절성 정도	유관 당사자(단체) 및 전문가(집단) 설문(혹은 FGI)
68	9조	최-18/ 쟁-9(c)	성과지표 (정성)	인터넷, 스마트폰 및 소비자 전자제품 등 각각에 대한 접근성 개선을 위한 법령 개정의 충분성	인터넷, 스마트폰 및 소비자용 전자제품 등 각각에 대한 접근성 개선을 위한 법령 개정의 충분성 정도	유관 당사자(단체) 및 전문가(집단) 설문(혹은 FGI)
69	9조	쟁-10	성과지표 (정성)	공공 및 민간시설과 관련된 배리어프리 인증 시스템의 효과성	공공 및 민간시설과 관련된 배리어프리 인증제도의 실효성 향상 정도	유관 당사자(단체) 및 전문가(집단) 설문(혹은 FGI)
70	9조	쟁-10	과정지표 (정량)	민간시설의 배리어프리 인증시스템 참여 증진 조치 여부	민간시설의 배리어프리 인증제도 참여 증진 조치 여부	기존 정책 자료와 정부 회신 자료 분석
71	9조	쟁-10	성과지표 (정성)	민간시설의 배리어프리 인증시스템 참여 증진 조치의 적절성	민간시설의 배리어프리 인증제도 참여 증진 조치의 적절성 정도	유관 당사자(단체) 및 전문가(집단) 설문(혹은 FGI)
72	9조	쟁-10	성과지표 (정성)	민간시설의 배리어프리 인증시스템 참여 증진 조치의 충분성	민간시설의 배리어프리 인증제도 참여 증진 조치의 충분성 정도	유관 당사자(단체) 및 전문가(집단) 설문(혹은 FGI)
73	11조	최-20	구조지표 (정량)	자연재해를 포함한 위험에서 장애인을 보호하고, 재난 등에서 보편적 접근성 및 장애포괄성을 확보하기 위한 종합적 계획 채택과 이행 여부	자연재해를 포함한 위험에서 장애인을 보호하고, 재난 등에서 보편적 접근성 및 장애포괄성을 확보하기 위한 종합적 계획 채택과 이행 여부	정부 회신 자료 분석
74	11조	최-20	성과지표 (정성)	자연재해를 포함한 위험에서 장애인을 보호하고, 재난 등에서 보편적 접근성 및 장애포괄성을 확보하기 위한 종합적 계획의 적절성	자연재해를 포함한 위험에서 장애인을 보호하고, 재난 등에서 보편적 접근성 및 장애포괄성을 확보하기 위한 종합적 계획의 적절성 정도	유관 당사자(단체) 및 전문가(집단) 설문(혹은 FGI)

연번	조항	관련근거	지표유형	지표	산식	평가방법
75	11조	최-20	성과지표 (정성)	자연재해를 포함한 위험에서 장애인을 보호하고, 재난 등에서 보편적 접근성 및 장애포괄성을 확보하기 위한 종합적 계획의 충분성	자연재해를 포함한 위험에서 장애인을 보호하고, 재난 등에서 보편적 접근성 및 장애포괄성을 확보하기 위한 종합적 계획의 충분성 정도	유관 당사자(단체) 및 전문가(집단) 설문(혹은 FGI)
76	11조	쟁-11	과정지표 (정량)	'센다이 프레임워크'에 따라, 국가 및 지역 수준에서의 재난위험 감소계획 및 전략에 모든 위험 상황에서의 장애인의 접근 및 통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 여부	'센다이 프레임워크'에 따라, 국가 및 지역 수준에서의 재난위험 감소계획 및 전략에 모든 위험 상황에서의 장애인의 접근 및 통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 여부	정부 회신 자료 분석
77	11조	쟁-11	성과지표 (정성)	'센다이 프레임워크'에 따라, 국가 및 지역 수준에서의 재난위험 감소계획 및 전략에 모든 위험 상황에서의 장애인의 접근 및 통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의 적절성	'센다이 프레임워크'에 따라, 국가 및 지역 수준에서의 재난위험 감소계획 및 전략에 모든 위험 상황에서의 장애인의 접근 및 통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의 적절성 정도	유관 당사자(단체) 및 전문가(집단) 설문(혹은 FGI)
78	11조	쟁-11	성과지표 (정성)	'센다이 프레임워크'에 따라, 국가 및 지역 수준에서의 재난위험 감소계획 및 전략에 모든 위험 상황에서의 장애인의 접근 및 통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의 충분성	'센다이 프레임워크'에 따라, 국가 및 지역 수준에서의 재난위험 감소계획 및 전략에 모든 위험 상황에서의 장애인의 접근 및 통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의 충분성 정도	유관 당사자(단체) 및 전문가(집단) 설문(혹은 FGI)
79	11조	쟁-11	과정지표 (정량)	'인천전략 목표 7'에 따라, 국가 및 지역 수준에서의 재난위험 감소계획 및 전략에 모든 위험 상황에서의 장애인의 접근 및 통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 여부	'인천전략 목표 7'에 따라, 국가 및 지역 수준에서의 재난위험 감소계획 및 전략에 모든 위험 상황에서의 장애인의 접근 및 통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 여부	정부 회신 자료 분석

연번	조항	관련근거	지표유형	지표	산식	평가방법
80	11조	쟁-11	성과지표 (정성)	'인천전략 목표 7'에 따라, 국가 및 지역 수준에서의 재난위험 감소 계획 및 전략에 모든 위험 상황에서의 장애인 접근 및 통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의 적절성	'인천전략 목표 7'에 따라, 국가 및 지역 수준에서의 재난위험 감소 계획 및 전략에 모든 위험 상황에서의 장애인 접근 및 통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의 적절성 정도	유관 당사자(단체) 및 전문가(집단) 설문(혹은 FGI)
81	11조	쟁-11	성과지표 (정성)	'인천전략 목표 7'에 따라, 국가 및 지역 수준에서의 재난위험 감소 계획 및 전략에 모든 위험 상황에서의 장애인 접근 및 통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의 충분성	'인천전략 목표 7'에 따라, 국가 및 지역 수준에서의 재난위험 감소 계획 및 전략에 모든 위험 상황에서의 장애인 접근 및 통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의 충분성 정도	유관 당사자(단체) 및 전문가(집단) 설문(혹은 FGI)
82	12조	최-22/ 쟁-12(a)	과정지표 (정량)	'대리의사결정'에서 '조력'의사결정'으로의 전환에 대한 진전 여부	'대리의사결정'에서 '조력'의사결정'으로의 전환에 대한 진전 여부	정부 회신 자료 분석
83	12조	최-22/ 쟁-12(a)	성과지표 (정성)	'대리의사결정'에서 '조력'의사결정'으로의 전환에 대한 진전의 적절성	'대리의사결정'에서 '조력'의사결정'으로의 전환에 대한 진전의 적절성 정도	유관 당사자(단체) 및 전문가(집단) 설문(혹은 FGI)
84	12조	최-22/ 쟁-12(a)	성과지표 (정성)	'대리의사결정'에서 '조력'의사결정'으로의 전환에 대한 진전의 충분성	'대리의사결정'에서 '조력'의사결정'으로의 전환에 대한 진전의 충분성 정도	유관 당사자(단체) 및 전문가(집단) 설문(혹은 FGI)
85	12조	쟁-12(a)	과정지표 (정량)	성년후견제 폐지에 대한 진전 여부	성년후견제 폐지에 대한 진전 여부	정부 회신 자료 분석
86	12조	최-22/ 쟁-12(b)	과정지표 (정량)	대표단체를 통한 장애인들과의 협의 및 협력에 따라 국가, 지방, 지역 수준에서 공무원, 판사 및 사회복지사를 포함한 모든 행위자들을 대상으로 한, 법적 능력과 조력'의사결정' 메커니즘에 대한 교육 제공 여부	대표단체를 통한 장애인들과의 협의 및 협력에 따라 국가, 지방, 지역 수준에서 공무원, 판사 및 사회복지사를 포함한 모든 행위자들을 대상으로 한, 법적 능력과 조력'의사결정' 메커니즘에 대한 교육 제공 여부	정부 회신 자료 분석

연번	조항	관련근거	지표유형	지표	산식	평가방법
87	12조	최-22/ 쟁-12(b)	성과지표 (정성)	대표단체를 통한 장애인들과의 협의 및 협력에 따라 국가, 지방, 지역 수준에서 공무원, 판사 및 사회복지사를 포함한 모든 행위자들을 대상으로 한, 법적 능력과 조력 의사결정 메커니즘에 대한 교육의 적절성	대표단체를 통한 장애인들과의 협의 및 협력에 따라 국가, 지방, 지역 수준에서 공무원, 판사 및 사회복지사를 포함한 모든 행위자들을 대상으로 한, 법적 능력과 조력 의사결정 메커니즘에 대한 교육의 적절성 정도	유관 당사자(단체) 및 전문가(집단) 설문(혹은 FGI)
88	12조	최-22/ 쟁-12(b)	성과지표 (정성)	대표단체를 통한 장애인들과의 협의 및 협력에 따라 국가, 지방, 지역 수준에서 공무원, 판사 및 사회복지사를 포함한 모든 행위자들을 대상으로 한, 법적 능력과 조력 의사결정 메커니즘에 대한 교육의 충분성	대표단체를 통한 장애인들과의 협의 및 협력에 따라 국가, 지방, 지역 수준에서 공무원, 판사 및 사회복지사를 포함한 모든 행위자들을 대상으로 한, 법적 능력과 조력 의사결정 메커니즘에 대한 교육의 충분성 정도	유관 당사자(단체) 및 전문가(집단) 설문(혹은 FGI)
89	13조	최-24/ 쟁-13(a)	과정지표 (정량)	「장차법」 제26조(사법 행정절차 등) 이행 노력 여부	「장차법」 제26조(사법 행정절차 등) 이행 노력 여부	정부 회신 자료 분석
90	13조	최-24/ 쟁-13(a)	성과지표 (정성)	「장차법」 제26조(사법 행정절차 등) 이행의 효과성	「장차법」 제26조(사법 행정절차 등) 이행의 효과성 정도	유관 당사자(단체) 및 전문가(집단) 설문(혹은 FGI)
91	13조	최-24/ 쟁-13(a)	성과지표 (정성)	「장차법」 제26조(사법 행정절차 등) 이행 노력의 충분성	「장차법」 제26조(사법 행정절차 등) 이행 노력의 충분성 정도	유관 당사자(단체) 및 전문가(집단) 설문(혹은 FGI)
92	13조	최-24/ 쟁-13(b)	과정지표 (정량)	경찰.법조인 등에 대한 훈련에 장애인 업무에 관한 표준 모듈, 절차상에서 연령에 적합하고 성 인지적인 정당한 편의제공, 사법접근성 보장 등의 포함 여부	경찰.법조인 등에 대한 훈련에 장애인 업무에 관한 표준 모듈, 절차상에서 연령에 적합하고 성 인지적인 정당한 편의제공, 사법접근성 보장 등의 포함 여부	정부 회신 자료 분석
93	13조	최-24/ 쟁-13(b)	성과지표 (정성)	경찰.법조인 등에 대한 훈련에 포함된 장애인 업무에 관한 표준 모듈, 절차상에서 연령에 적합하고 성 인지적인 정당한 편의제공, 사법접근성 보장 등의 적절성	경찰.법조인 등에 대한 훈련에 포함된 장애인 업무에 관한 표준 모듈, 절차상에서 연령에 적합하고 성 인지적인 정당한 편의제공, 사법접근성 보장 등의 적절성 정도	유관 당사자(단체) 및 전문가(집단) 설문(혹은 FGI)

연번	조항	관련근거	지표유형	지표	산식	평가방법
94	13조	최-24/ 쟁-13(b)	성과지표 (정성)	경찰.법조인 등에 대한 훈련에 포함된 장애인 업무에 관한 표준 모듈, 절차상에서 연령에 적합하고 성 인지적인 정당한 편의제공, 사법접근성 보장 등의 충분성	경찰.법조인 등에 대한 훈련에 포함된 장애인 업무에 관한 표준 모듈, 절차상에서 연령에 적합하고 성 인지적인 정당한 편의제공, 사법접근성 보장 등의 충분성 정도	유관 당사자(단체) 및 전문가(집단) 설문(혹은 FGI)
95	13조	최-24/ 쟁-13(c)	구조지표 (정량)	대법원이 발간한 '장애인 사법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의 법적 구속력 여부	대법원이 발간한 '장애인 사법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의 법적 구속력 여부	정부 회신 자료 분석
96	13조	최-24/ 쟁-13(c)	성과지표 (정성)	대법원이 발간한 '장애인 사법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 이행의 효과성	대법원이 발간한 '장애인 사법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 이행의 효과성 정도	유관 당사자(단체) 및 전문가(집단) 설문(혹은 FGI)
97	13조	최-24/ 쟁-13(c)	성과지표 (정성)	대법원이 발간한 '장애인 사법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 이행의 충분성	대법원이 발간한 '장애인 사법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 이행의 충분성 정도	유관 당사자(단체) 및 전문가(집단) 설문(혹은 FGI)
98	13조	쟁-13(d)	과정지표 (정량)	수감자 뿐 아니라 사법 및 공증 절차의 모든 단계에 있어서, 절차적 편의의 제공 여부	수감자 뿐 아니라 사법 및 공증 절차의 모든 단계에 있어서, 절차적 편의의 제공 여부	정부 회신 자료 분석
99	13조	쟁-13(d)	성과지표 (정성)	수감자 뿐 아니라 사법 및 공증 절차의 모든 단계에 있어서, 절차적 편의의 제공의 적절성	수감자 뿐 아니라 사법 및 공증 절차의 모든 단계에 있어서, 절차적 편의의 제공의 적절성 정도	유관 당사자(단체) 및 전문가(집단) 설문(혹은 FGI)
100	13조	쟁-13(d)	성과지표 (정성)	수감자 뿐 아니라 사법 및 공증 절차의 모든 단계에 있어서, 절차적 편의의 제공의 충분성	수감자 뿐 아니라 사법 및 공증 절차의 모든 단계에 있어서, 절차적 편의의 제공의 충분성 정도	유관 당사자(단체) 및 전문가(집단) 설문(혹은 FGI)
101	13조	쟁-13(d)	과정지표 (정량)	유관 전문가 집단들을 대상으로 한, 수감자 뿐 아니라 사법 및 공증 절차의 모든 단계에 있어서 절차적 편의의 제공과 관련된 훈련(교육) 제공 여부	유관 전문가 집단들을 대상으로 한, 수감자 뿐 아니라 사법 및 공증 절차의 모든 단계에 있어서 절차적 편의의 제공과 관련된 훈련(교육) 제공 여부	정부 회신 자료 분석

연번	조항	관련근거	지표유형	지표	산식	평가방법
102	13조	쟁-13(d)	성과지표 (정성)	유관 전문가 집단들을 대상으로 한, 수감자 뿐 아니라 사법 및 공증 절차의 모든 단계에 있어서 절차적 편의의 제공과 관련된 훈련(교육)의 적절성	유관 전문가 집단들을 대상으로 한, 수감자 뿐 아니라 사법 및 공증 절차의 모든 단계에 있어서 절차적 편의의 제공과 관련된 훈련(교육)의 적절성 정도	유관 당사자(단체) 및 전문가(집단) 설문(혹은 FGI)
103	13조	쟁-13(d)	성과지표 (정성)	유관 전문가 집단들을 대상으로 한, 수감자 뿐 아니라 사법 및 공증 절차의 모든 단계에 있어서 절차적 편의의 제공과 관련된 훈련(교육)의 충분성	유관 전문가 집단들을 대상으로 한, 수감자 뿐 아니라 사법 및 공증 절차의 모든 단계에 있어서 절차적 편의의 제공과 관련된 훈련(교육)의 충분성 정도	유관 당사자(단체) 및 전문가(집단) 설문(혹은 FGI)
104	13조	쟁-13(e)	과정지표 (정량)	장애인이 판사, 검사 및 변호사로서 일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정당한 편의 제공을 포함하여 취한 정부의 조치 여부	장애인이 판사, 검사 및 변호사로서 일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정당한 편의 제공을 포함하여 취한 정부의 조치 여부	정부 회신 자료 분석
105	13조	쟁-13(e)	성과지표 (정성)	장애인이 판사, 검사 및 변호사로서 일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정당한 편의 제공을 포함하여 취한 정부 조치의 적절성	장애인이 판사, 검사 및 변호사로서 일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정당한 편의 제공을 포함하여 취한 정부 조치의 적절성 정도	유관 당사자(단체) 및 전문가(집단) 설문(혹은 FGI)
106	13조	쟁-13(e)	성과지표 (정성)	장애인이 판사, 검사 및 변호사로서 일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정당한 편의 제공을 포함하여 취한 정부 조치의 충분성	장애인이 판사, 검사 및 변호사로서 일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정당한 편의 제공을 포함하여 취한 정부 조치의 충분성 정도	유관 당사자(단체) 및 전문가(집단) 설문(혹은 FGI)
107	14조	최-26/ 쟁-14(a)	구조지표 (정량)	최종견해 이후 폐지된 자유박탈 법조항의 비율	(자유박탈의 내용을 담고 있었으나 최종견해 이후 폐지된 법조항의 수 / 자유박탈의 내용을 담고 있는 법 조항 수) X 100	기존 정책 자료와 정부 회신 자료 분석
108	14조	최-26/ 쟁-14(b)	과정지표 (정량)	보건서비스의 사전 동의 개선 여부	보건서비스의 사전 동의 개선 여부	기존 정책 자료와 정부 회신 자료 분석

연번	조항	관련근거	지표유형	지표	산식	평가방법
109	14조	최-26/ 쟁-14(b)	성과지표 (정성)	보건서비스의 사전 동 의 개선의 적절성	보건서비스의 사전 동 의 개선의 적절성 정도	유관 당사자(단체) 및 전문가(집단) 설문(혹은 FGI)
110	14조	최-26/ 쟁-14(b)	성과지표 (정성)	보건서비스의 사전 동 의 개선의 충분성	보건서비스의 사전 동 의 개선의 충분성 정도	유관 당사자(단체) 및 전문가(집단) 설문(혹은 FGI)
111	14조	최-26/ 쟁-14(c)	과정지표 (정량)	병원 등의 자유 박탈 전수 점검 여부	병원 등의 자유 박탈 전수 점검 여부	정부 회신 자료 분석
112	14조	최-26/ 쟁-14(c)	성과지표 (정성)	병원 등의 자유 박탈 전수 점검의 적절성	병원 등의 자유 박탈 전 수 점검의 적절성 정도	유관 당사자(단체) 및 전문가(집단) 설문(혹은 FGI)
113	14조	최-26/ 쟁-14(c)	성과지표 (정성)	병원 등의 자유 박탈 전수 점검의 충분성	병원 등의 자유 박탈 전 수 점검의 충분성 정도	유관 당사자(단체) 및 전문가(집단) 설문(혹은 FGI)
114	14조	최-28/ 쟁-14(d)	구조지표 (정량)	장애인에 대해 공정한 재판과 적법절차를 보 장하는 절차적 편의 확 립 여부	장애인에 대해 공정한 재판과 적법절차를 보 장하는 절차적 편의 확 립 여부	정부 회신 자료 분석
115	14조	최-28/ 쟁-14(d)	성과지표 (정성)	장애인에 대해 공정한 재판과 적법절차를 보 장하는 절차적 편의 확 립의 적절성	장애인에 대해 공정한 재판과 적법절차를 보 장하는 절차적 편의 확 립의 적절성 정도	유관 당사자(단체) 및 전문가(집단) 설문(혹은 FGI)
116	14조	최-28/ 쟁-14(d)	성과지표 (정성)	장애인에 대해 공정한 재판과 적법절차를 보 장하는 절차적 편의 확 립의 충분성	장애인에 대해 공정한 재판과 적법절차를 보 장하는 절차적 편의 확 립의 충분성 정도	유관 당사자(단체) 및 전문가(집단) 설문(혹은 FGI)
117	14조	최-28/ 쟁-14(e)	구조지표 (정량)	형사사법 제도 상에서 의 재판부적합 판정 금 지 여부	형사사법 제도 상에서 의 재판부적합 판정 금 지 여부	기존 정책 자료와 정부 회신 자료 분석
118	15조	최-30/ 쟁-15(a)	과정지표 (정량)	장애인으로 하여금 잔 혹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대우 및 처벌 을 받도록 하는 강제치 료 폐지 여부	장애인으로 하여금 잔 혹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대우 및 처벌 을 받도록 하는 강제치 료 폐지 여부	기존 정책 자료와 정부 회신 자료 분석
119	15조	최-30/ 쟁-15(b)	과정지표 (정량)	시설 퇴소 전까지, 정 신병원에 있는 장애인 들을 대상으로 한, 모 든 형태의 고문을 비롯 하여 잔혹하고 비인도 적이거나 굴욕적인 취 급으로부터의 효과적 인 보호장치 강구 여부	시설 퇴소 전까지, 정 신병원에 있는 장애인 들을 대상으로 한, 모 든 형태의 고문을 비롯 하여 잔혹하고 비인도 적이거나 굴욕적인 취 급으로부터의 효과적 인 보호장치 강구 여부	정부 회신 자료 분석

연번	조항	관련근거	지표유형	지표	산식	평가방법
120	15조	최-30/ 쟁-15(b)	성과지표 (정성)	시설 퇴소 전까지, 정신병원에 있는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모든 형태의 고문을 비롯하여 잔혹하고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취급으로부터의 효과적인 보호장치의 적절성	시설 퇴소 전까지, 정신병원에 있는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모든 형태의 고문을 비롯하여 잔혹하고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취급으로부터의 효과적인 보호장치의 적절성 정도	유관 당사자(단체) 및 전문가(집단) 설문(혹은 FGI)
121	15조	최-30/ 쟁-15(b)	성과지표 (정성)	시설 퇴소 전까지, 정신병원에 있는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모든 형태의 고문을 비롯하여 잔혹하고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취급으로부터의 효과적인 보호장치의 충분성	시설 퇴소 전까지, 정신병원에 있는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모든 형태의 고문을 비롯하여 잔혹하고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취급으로부터의 효과적인 보호장치의 충분성 정도	유관 당사자(단체) 및 전문가(집단) 설문(혹은 FGI)
122	15조	최-30/ 쟁-15(b)	구조지표 (정량)	정신병원의 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하여 장애인 단체의 참여를 보장하는 독립적이고 실효성 있는 외부 감시 기구 구성 여부	정신병원의 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하여 장애인 단체의 참여를 보장하는 독립적이고 실효성 있는 외부 감시 기구 구성 여부	정부 회신 자료 분석
123	15조	최-30/ 쟁-15(b)	성과지표 (정성)	정신병원의 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하여 장애인 단체의 참여를 보장하는 독립적이고 실효성 있는 외부 감시 기구 구성의 적절성	정신병원의 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하여 장애인 단체의 참여를 보장하는 독립적이고 실효성 있는 외부 감시 기구 구성의 적절성 정도	유관 당사자(단체) 및 전문가(집단) 설문(혹은 FGI)
124	15조	최-30/ 쟁-15(b)	성과지표 (정성)	정신병원의 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하여 장애인 단체의 참여를 보장하는 독립적이고 실효성 있는 외부 감시 기구 구성의 충분성	정신병원의 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하여 장애인 단체의 참여를 보장하는 독립적이고 실효성 있는 외부 감시 기구 구성의 충분성 정도	유관 당사자(단체) 및 전문가(집단) 설문(혹은 FGI)
125	16조	최-32/ 쟁-16	구조지표 (정량)	거주시설 내외부 장애인에 대한 확대 조사, 가해자 처벌, 피해자 배상, 접근 가능한 쉼터 제공 여부	거주시설 내외부 장애인에 대한 확대 조사, 가해자 처벌, 피해자 배상, 접근 가능한 쉼터 제공 여부	정부 회신 자료 분석

연번	조항	관련근거	지표유형	지표	산식	평가방법
126	16조	최-32/ 쟁-16	성과지표 (정성)	거주시설 내외부 장애인에 대한 학대 조사, 가해자 처벌, 피해자 배상, 접근 가능한 쉼터 제공의 적절성	거주시설 내외부 장애인에 대한 학대 조사, 가해자 처벌, 피해자 배상, 접근 가능한 쉼터 제공의 적절성 정도	유관 당사자(단체) 및 전문가(집단) 설문(혹은 FGI)
127	16조	최-32/ 쟁-16	성과지표 (정성)	거주시설 내외부 장애인에 대한 학대 조사, 가해자 처벌, 피해자 배상, 접근 가능한 쉼터 제공의 충분성	거주시설 내외부 장애인에 대한 학대 조사, 가해자 처벌, 피해자 배상, 접근 가능한 쉼터 제공의 충분성 정도	유관 당사자(단체) 및 전문가(집단) 설문(혹은 FGI)
128	16조	최-32/ 쟁-17	과정지표 (정량)	장애인 강제노역사건 조사 강화 여부	장애인 강제노역사건 조사 강화 여부	정부 회신 자료 분석
129	16조	최-32/ 쟁-17	성과지표 (정성)	장애인 강제노역사건 조사 강화의 적절성	장애인 강제노역사건 피해자 조사 강화의 적절성 정도	유관 당사자(단체) 및 전문가(집단) 설문(혹은 FGI)
130	16조	최-32/ 쟁-17	성과지표 (정성)	장애인 강제노역사건 조사 강화의 충분성	장애인 강제노역사건 피해자 조사 강화의 충분성 정도	유관 당사자(단체) 및 전문가(집단) 설문(혹은 FGI)
131	16조	최-32/ 쟁-17	과정지표 (정량)	장애인 강제노역사건 피해자 보호 제공 여부	장애인 강제노역사건 피해자 보호 제공 여부	정부 회신 자료 분석
132	16조	최-32/ 쟁-17	성과지표 (정성)	장애인 강제노역사건 피해자 보호 제공의 적절성	장애인 강제노역사건 피해자 보호 제공의 적절성 정도	유관 당사자(단체) 및 전문가(집단) 설문(혹은 FGI)
133	16조	최-32/ 쟁-17	성과지표 (정성)	장애인 강제노역사건 피해자 보호 제공의 충분성	장애인 강제노역사건 피해자 보호 제공의 충분성 정도	유관 당사자(단체) 및 전문가(집단) 설문(혹은 FGI)
134	16조	최-32/ 쟁-17	과정지표 (정량)	확정된 장애인 강제노역사건 피해자 보호를 위한 효과적인 장기 보호조치 여부	확정된 장애인 강제노역사건 피해자 보호를 위한 효과적인 장기 보호조치 여부	정부 회신 자료 분석
135	16조	최-32/ 쟁-17	성과지표 (정성)	확정된 장애인 강제노역사건 피해자 보호를 위한 효과적인 장기 보호조치의 적절성	확정된 장애인 강제노역사건 피해자 보호를 위한 효과적인 장기 보호조치의 적절성 정도	유관 당사자(단체) 및 전문가(집단) 설문(혹은 FGI)
136	16조	최-32/ 쟁-17	성과지표 (정성)	확정된 장애인 강제노역사건 피해자 보호를 위한 효과적인 장기 보호조치 충분성	확정된 장애인 강제노역사건 피해자 보호를 위한 효과적인 장기 보호조치 충분성 정도	유관 당사자(단체) 및 전문가(집단) 설문(혹은 FGI)
137	17조	최-34	과정지표 (정량)	장애여성 및 장애소녀의 권리에 대한 인식제고 조치 여부	장애여성 및 장애소녀의 권리에 대한 인식제고 조치 여부	정부 회신 자료 분석

연번	조항	관련근거	지표유형	지표	산식	평가방법
138	17조	최-34	성과지표 (정성)	장애여성 및 장애소녀의 권리에 대한 인식제고 조치의 적절성	장애여성 및 장애소녀의 권리에 대한 인식제고 조치의 적절성 정도	유관 당사자(단체) 및 전문가(집단) 설문(혹은 FGI)
139	17조	최-34	성과지표 (정성)	장애여성 및 장애소녀의 권리에 대한 인식제고 조치의 충분성	장애여성 및 장애소녀의 권리에 대한 인식제고 조치의 충분성 정도	유관 당사자(단체) 및 전문가(집단) 설문(혹은 FGI)
140	17조	최-34/ 쟁-18	과정지표 (정량)	강제불임 보호 메커니즘의 효과성과 접근성 보장 등의 근절 및 인식제고 활동 여부	강제불임 보호 메커니즘의 효과성과 접근성 보장 등의 근절 및 인식제고 활동 여부	정부 회신 자료 분석
141	17조	최-34/ 쟁-18	성과지표 (정성)	강제불임 보호 메커니즘의 효과성과 접근성 보장 등의 근절 및 인식제고 활동의 적절성	강제불임 보호 메커니즘의 효과성과 접근성 보장 등의 근절 및 인식제고 활동의 적절성 정도	유관 당사자(단체) 및 전문가(집단) 설문(혹은 FGI)
142	17조	최-34/ 쟁-18	성과지표 (정성)	강제불임 보호 메커니즘의 효과성과 접근성 보장 등의 근절 및 인식제고 활동의 충분성	강제불임 보호 메커니즘의 효과성과 접근성 보장 등의 근절 및 인식제고 활동의 충분성 정도	유관 당사자(단체) 및 전문가(집단) 설문(혹은 FGI)
143	17조	최-34	과정지표 (정량)	강제불임 사례에 대한 조사 이행 여부	강제불임 사례에 대한 조사 이행 여부	정부 회신 자료 분석
144	17조	쟁-18	과정지표 (정량)	강제불임의 명시적 금지 여부	강제불임의 명시적 금지 여부	정부 회신 자료 분석
145	18조	최-36/ 쟁-19	구조지표 (정량)	「출입국관리법」 제11조의 폐지 여부	「출입국관리법」 제11조의 폐지 여부	기존 정책 자료와 정부 회신 자료 분석
146	18조	최-36/ 쟁-19	구조지표 (정량)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폐지 여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폐지 여부	기존 정책 자료와 정부 회신 자료 분석
147	19조	최-38	구조지표 (정량)	탈시설화 전략 개발 여부	탈시설화 전략 개발 여부	기존 정책 자료와 정부 회신 자료 분석
148	19조	쟁-20	과정지표 (정량)	탈시설화 전략 착수 여부	탈시설화 전략 착수 여부	기존 정책 자료와 정부 회신 자료 분석
149	19조	최-38/ 쟁-20	성과지표 (정성)	탈시설화 전략의 효과성	탈시설화 전략의 효과성 정도	유관 당사자(단체) 및 전문가(집단) 설문(혹은 FGI)
150	19조	최-38/ 쟁-20	구조지표 (정성)	탈시설화 전략의 장애에 대한 인권적 모델 부합성	탈시설화 전략의 장애에 대한 인권적 모델 부합성 정도	유관 당사자(단체) 및 전문가(집단) 설문(혹은 FGI)

연번	조항	관련근거	지표유형	지표	산식	평가방법
151	19조	최-38	과정지표 (정량)	활동보조서비스를 포함한 지원서비스의 대 폭 확대 여부	활동보조서비스를 포함한 지원서비스의 대 폭 확대 여부	기존 정책 자료와 정부 회신 자료 분석
152	19조	최-38	성과지표 (정성)	활동보조서비스를 포함한 지원서비스 확대의 적절성	활동보조서비스를 포함한 지원서비스 확대의 적절성 정도	유관 당사자(단체) 및 전문가(집단) 설문(혹은 FGI)
153	19조	최-38	성과지표 (정성)	활동보조서비스를 포함한 지원서비스 확대의 충분성	활동보조서비스를 포함한 지원서비스 확대의 충분성 정도	유관 당사자(단체) 및 전문가(집단) 설문(혹은 FGI)
154	19조	최-40	성과지표 (정성)	사회부조프로그램 재정지원의 충분성	사회부조프로그램 재정지원의 충분성 정도	유관 당사자(단체) 및 전문가(집단) 설문(혹은 FGI)
155	19조	최-40	성과지표 (정성)	사회부조프로그램 재정지원의 공정성	사회부조프로그램 재정지원의 공정성 정도	유관 당사자(단체) 및 전문가(집단) 설문(혹은 FGI)
156	19조	쟁-20	과정지표 (정량)	일반논평 제5호에 따른 효과적인 탈시설 달성을 위한 조치 착수 여부	일반논평 제5호에 따른 효과적인 탈시설 달성을 위한 조치 착수 여부	정부 회신 자료 분석
157	19조	쟁-20	성과지표 (정성)	일반논평 제5호에 따른 효과적인 탈시설 달성을 위한 조치의 적절성	일반논평 제5호에 따른 효과적인 탈시설 달성을 위한 조치의 적절성 정도	유관 당사자(단체) 및 전문가(집단) 설문(혹은 FGI)
158	19조	쟁-20	성과지표 (정성)	일반논평 제5호에 따른 효과적인 탈시설 달성을 위한 조치의 충분성	일반논평 제5호에 따른 효과적인 탈시설 달성을 위한 조치의 충분성 정도	유관 당사자(단체) 및 전문가(집단) 설문(혹은 FGI)
159	19조	쟁-20	성과지표 (정량)	협약 국내발효 이후 현재까지 탈시설한 장애인의 비율	(2009년 초부터 2017년 말까지의 기간 동안 연도별로 매년 탈시설한 장애인의 수/ 연도별로 매년 초 현재 시설 장애인 수) × 100	정부 회신 자료 분석
160	19조	최-40/ 쟁-21	구조지표 (정량)	활보 이용료 산정 근거를, 장애등급에서 장애인의 특성·상황·육구 등으로 전환했는지의 여부	활보 이용료 산정 근거를, 장애등급에서 장애인의 특성·상황·육구 등으로 전환했는지의 여부	정부 회신 자료 분석

연번	조항	관련근거	지표유형	지표	산식	평가방법
161	19조	최-40/ 쟁-21	성과지표 (정성)	활보 이용료 산정 근거를, 장애등급에서 장애인의 특성·상황·육구 등으로 전환한 것에 대한 적절성	활보 이용료 산정 근거를, 장애등급에서 장애인의 특성·상황·육구 등으로 전환한 것에 대한 적절성 정도	유관 당사자(단체) 및 전문가(집단) 설문(혹은 FGI)
162	19조	최-40/ 쟁-21	성과지표 (정성)	활보 이용료 산정 근거를, 장애등급에서 장애인의 특성·상황·육구 등으로 전환한 것에 대한 충분성	활보 이용료 산정 근거를, 장애등급에서 장애인의 특성·상황·육구 등으로 전환한 것에 대한 충분성 정도	유관 당사자(단체) 및 전문가(집단) 설문(혹은 FGI)
163	19조	최-40/ 쟁-21	구조지표 (정량)	활보 이용료 산정 근거를, 가족소득에서 본인 소득으로 전환했는지의 여부	활보 이용료 산정 근거를, 가족소득에서 본인 소득으로 전환했는지의 여부	정부 회신 자료 분석
164	19조	최-40/ 쟁-21	성과지표 (정성)	활보 이용료 산정 근거를, 가족소득에서 본인 소득으로 전환한 것에 대한 적절성	활보 이용료 산정 근거를, 가족소득에서 본인 소득으로 전환한 것에 대한 적절성 정도	유관 당사자(단체) 및 전문가(집단) 설문(혹은 FGI)
165	19조	최-40/ 쟁-21	성과지표 (정성)	활보 이용료 산정 근거를, 가족소득에서 본인 소득으로 전환한 것에 대한 충분성	활보 이용료 산정 근거를, 가족소득에서 본인 소득으로 전환한 것에 대한 충분성 정도	유관 당사자(단체) 및 전문가(집단) 설문(혹은 FGI)
166	19조	쟁-21	구조지표 (정량)	손상의 정도나 가족의 수입이 아니라, 육구 등에 기반하여, 활동보조서비스 및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를 포함하여 지역사회에서 제공되는 장애 관련 지원 서비스를 증가시키기 위한 정책 또는 그에 대한 계획의 유무	손상의 정도나 가족의 수입이 아니라, 육구 등에 기반하여, 활동보조서비스 및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를 포함하여 지역사회에서 제공되는 장애 관련 지원 서비스를 증가시키기 위한 정책 또는 그에 대한 계획의 유무	정부 회신 자료 분석
167	19조	쟁-21	성과지표 (정성)	손상의 정도나 가족의 수입이 아니라, 육구 등에 기반하여, 활동보조서비스 및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를 포함하여 지역사회에서 제공되는 장애 관련 지원 서비스를 증가시키기 위한 정책 또는 그에 대한 계획의 적절성	손상의 정도나 가족의 수입이 아니라, 육구 등에 기반하여, 활동보조서비스 및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를 포함하여 지역사회에서 제공되는 장애 관련 지원 서비스를 증가시키기 위한 정책 또는 그에 대한 계획의 적절성 정도	유관 당사자(단체) 및 전문가(집단) 설문(혹은 FGI)

연번	조항	관련근거	지표유형	지표	산식	평가방법
168	19조	쟁-21	성과지표 (정성)	손상의 정도나 가족의 수입이 아니라, 육구 등에 기반하여, 활동보조서비스 및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를 포함하여 지역사회에서 제공되는 장애 관련 지원 서비스를 증가시키기 위한 정책 또는 그에 대한 계획의 충분성	손상의 정도나 가족의 수입이 아니라, 육구 등에 기반하여, 활동보조서비스 및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를 포함하여 지역사회에서 제공되는 장애 관련 지원 서비스를 증가시키기 위한 정책 또는 그에 대한 계획의 충분성 정도	유관 당사자(단체) 및 전문가(집단) 설문(혹은 FGI)
169	21조	최-42	구조지표 (정량)	「수어법」 ⁸⁵⁾ 채택 여부	「수어법」 채택 여부	현행 법률 확인
170	21조	쟁-22(a)	성과지표 (정성)	「수어법」 시행의 적절성	「수어법」 시행의 적절성 정도	유관 당사자(단체) 및 전문가(집단) 설문(혹은 FGI)
171	21조	최-42	구조지표 (정량)	「점자법」 채택 여부	「점자법」 채택 여부	현행 법률 확인
172	21조	쟁-22(a)	성과지표 (정성)	「점자법」 시행의 적절성	「점자법」 시행의 적절성 정도	유관 당사자(단체) 및 전문가(집단) 설문(혹은 FGI)
173	21조	최-42	구조지표 (정량)	방송물 접근성 보장규정의 프로그램의 질에 관한 기준 포함 여부	방송물 접근성 보장규정의 프로그램의 질에 관한 기준 포함 여부	기존 정책 자료와 정부 회신 자료 분석
174	21조	최-42	성과지표 (정성)	방송물 접근성 보장규정에 포함된 프로그램의 질에 관한 기준의 적절성	방송물 접근성 보장규정에 포함된 프로그램의 질에 관한 기준의 적절성 정도	유관 당사자(단체) 및 전문가(집단) 설문(혹은 FGI)
175	21조	최-42	성과지표 (정성)	방송물 접근성 보장규정에 포함된 프로그램의 질에 관한 기준의 충분성	방송물 접근성 보장규정에 포함된 프로그램의 질에 관한 기준의 충분성 정도	유관 당사자(단체) 및 전문가(집단) 설문(혹은 FGI)
176	21조	최-42/ 쟁-22(b)	구조지표 (정량)	방송물 접근성 보장규정의 접근성 정보 제공 기준 포함 여부	방송물 접근성 보장규정의 접근성 정보 제공 기준 포함 여부	기존 정책 자료와 정부 회신 자료 분석
177	21조	최-42/ 쟁-22(b)	성과지표 (정성)	방송물 접근성 보장규정에 포함된 접근성 정보 제공 기준의 적절성	방송물 접근성 보장규정에 포함된 접근성 정보 제공 기준의 적절성 정도	유관 당사자(단체) 및 전문가(집단) 설문(혹은 FGI)
178	21조	최-42/ 쟁-22(b)	성과지표 (정성)	방송물 접근성 보장규정에 포함된 접근성 정보 제공 기준의 충분성	방송물 접근성 보장규정에 포함된 접근성 정보 제공 기준의 충분성 정도	유관 당사자(단체) 및 전문가(집단) 설문(혹은 FGI)

85) 「한국수화언어법」을 말함(이하 이 표에서 같음).

연번	조항	관련근거	지표유형	지표	산식	평가방법
179	21조	쟁-22(c)	구조지표 (정량)	읽기 쉽고(Easy Read) 접근 가능한 형식으로 제공되는 공공 정보의 유무	읽기 쉽고(Easy Read) 접근 가능한 형식으로 제공되는 공공 정보의 유무	기존 정책 자료와 정부 회신 자료 분석
180	21조	쟁-22(c)	성과지표 (정성)	읽기 쉽고(Easy Read) 접근 가능한 형식으로 제공되는 공공 정보의 적절성	읽기 쉽고(Easy Read) 접근 가능한 형식으로 제공되는 공공 정보의 적절성 정도	유관 당사자(단체) 및 전문가(집단) 설문(혹은 FGI)
181	21조	쟁-22(c)	성과지표 (정성)	읽기 쉽고(Easy Read) 접근 가능한 형식으로 제공되는 공공 정보의 충분성	읽기 쉽고(Easy Read) 접근 가능한 형식으로 제공되는 공공 정보의 충분성 정도	유관 당사자(단체) 및 전문가(집단) 설문(혹은 FGI)
182	23조	최-44/ 쟁-23	구조지표 (정량)	미혼모가 장애아동을 가족 안에서 양육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근거 제공 여부	미혼모가 장애아동을 가족 안에서 양육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근거 제공 여부	기존 정책 자료와 정부 회신 자료 분석
183	23조	최-44/ 쟁-23	성과지표 (정성)	미혼모가 장애아동을 가족 안에서 양육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근거의 적절성	미혼모가 장애아동을 가족 안에서 양육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근거의 적절성 정도	유관 당사자(단체) 및 전문가(집단) 설문(혹은 FGI)
184	23조	최-44/ 쟁-23	성과지표 (정성)	미혼모가 장애아동을 가족 안에서 양육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근거의 충분성	미혼모가 장애아동을 가족 안에서 양육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근거의 충분성 정도	유관 당사자(단체) 및 전문가(집단) 설문(혹은 FGI)
185	23조	최-44/ 쟁-23	구조지표 (정량)	장애아 부모가 장애아동을 가족 안에서 양육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근거 제공 여부	장애아 부모가 장애아동을 가족 안에서 양육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근거 제공 여부	기존 정책 자료와 정부 회신 자료 분석
186	23조	최-44/ 쟁-23	성과지표 (정성)	장애아 부모가 장애아동을 가족 안에서 양육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근거의 적절성	장애아 부모가 장애아동을 가족 안에서 양육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근거의 적절성 정도	유관 당사자(단체) 및 전문가(집단) 설문(혹은 FGI)
187	23조	최-44/ 쟁-23	성과지표 (정성)	장애아 부모가 장애아동을 가족 안에서 양육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근거의 충분성	장애아 부모가 장애아동을 가족 안에서 양육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근거의 충분성 정도	유관 당사자(단체) 및 전문가(집단) 설문(혹은 FGI)
188	23조	최-44/ 쟁-23	구조지표 (정량)	장애아동의 가족에 대한 권리와 지역사회에 참여할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적근거 제공 여부	장애아동의 가족에 대한 권리와 지역사회에 참여할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적근거 제공 여부	기존 정책 자료와 정부 회신 자료 분석

연번	조항	관련근거	지표유형	지표	산식	평가방법
189	23조	최-44/ 쟁-23	성과지표 (정성)	장애아동의 가족에 대한 권리와 지역사회에 참여할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적근거의 적절성	장애아동의 가족에 대한 권리와 지역사회에 참여할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적근거의 적절성 정도	유관 당사자(단체) 및 전문가(집단) 설문(혹은 FGI)
190	23조	최-44/ 쟁-23	성과지표 (정성)	장애아동의 가족에 대한 권리와 지역사회에 참여할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적근거의 충분성	장애아동의 가족에 대한 권리와 지역사회에 참여할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적근거의 충분성 정도	유관 당사자(단체) 및 전문가(집단) 설문(혹은 FGI)
191	23조	최-44/ 쟁-23	과정지표 (정량)	미혼모가 장애아동을 가족 안에서 양육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의 이행 여부	미혼모가 장애아동을 가족 안에서 양육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의 이행 여부	기존 정책 자료와 정부 회신 자료 분석
192	23조	최-44/ 쟁-23	성과지표 (정성)	미혼모가 장애아동을 가족 안에서 양육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이행의 적절성	미혼모가 장애아동을 가족 안에서 양육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이행의 적절성 정도	유관 당사자(단체) 및 전문가(집단) 설문(혹은 FGI)
193	23조	최-44/ 쟁-23	성과지표 (정성)	미혼모가 장애아동을 가족 안에서 양육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이행의 충분성	미혼모가 장애아동을 가족 안에서 양육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이행의 충분성 정도	유관 당사자(단체) 및 전문가(집단) 설문(혹은 FGI)
194	23조	최-44/ 쟁-23	과정지표 (정량)	장애아 부모가 장애아동을 가족 안에서 양육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의 이행 여부	장애아 부모가 장애아동을 가족 안에서 양육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의 이행 여부	기존 정책 자료와 정부 회신 자료 분석
195	23조	최-44/ 쟁-23	성과지표 (정성)	장애아 부모가 장애아동을 가족 안에서 양육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이행의 적절성	장애아 부모가 장애아동을 가족 안에서 양육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이행의 적절성 정도	유관 당사자(단체) 및 전문가(집단) 설문(혹은 FGI)
196	23조	최-44/ 쟁-23	성과지표 (정성)	장애아 부모가 장애아동을 가족 안에서 양육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이행의 충분성	장애아 부모가 장애아동을 가족 안에서 양육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이행의 충분성 정도	유관 당사자(단체) 및 전문가(집단) 설문(혹은 FGI)
197	23조	최-44/ 쟁-23	과정지표 (정량)	장애아동의 가족에 대한 권리와 지역사회에 참여할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의 이행 여부	장애아동의 가족에 대한 권리와 지역사회에 참여할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의 이행 여부	기존 정책 자료와 정부 회신 자료 분석

연번	조항	관련근거	지표유형	지표	산식	평가방법
198	23조	최-44/ 쟁-23	성과지표 (정성)	장애아동의 가족에 대한 권리와 지역사회에 참여할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 이행의 적절성	장애아동의 가족에 대한 권리와 지역사회에 참여할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 이행의 적절성 정도	유관 당사자(단체) 및 전문가(집단) 설문(혹은 FGI)
199	23조	최-44/ 쟁-23	성과지표 (정성)	장애아동의 가족에 대한 권리와 지역사회에 참여할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 이행의 충분성	장애아동의 가족에 대한 권리와 지역사회에 참여할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 이행의 충분성 정도	유관 당사자(단체) 및 전문가(집단) 설문(혹은 FGI)
200	23조	쟁-23	구조지표 (정량)	장애아동의 친부모와 입양부모를 공평하게 대우하기 위한 계획의 유무	장애아동의 친부모와 입양부모를 공평하게 대우하기 위한 계획의 유무	정부 회신 자료 분석
201	23조	쟁-23	성과지표 (정성)	장애아동의 친부모와 입양부모를 공평하게 대우하기 위한 계획의 적절성	장애아동의 친부모와 입양부모를 공평하게 대우하기 위한 계획의 적절성 정도	유관 당사자(단체) 및 전문가(집단) 설문(혹은 FGI)
202	23조	쟁-23	성과지표 (정성)	장애아동의 친부모와 입양부모를 공평하게 대우하기 위한 계획의 충분성	장애아동의 친부모와 입양부모를 공평하게 대우하기 위한 계획의 충분성 정도	유관 당사자(단체) 및 전문가(집단) 설문(혹은 FGI)
203	23조	쟁-24	과정지표 (정량)	장애인이 결혼할 수 있는 권리와 가족을 구성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의 유무	장애인이 결혼할 수 있는 권리와 가족을 구성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의 유무	정부 회신 자료 분석
204	23조	쟁-24	성과지표 (정성)	장애인이 결혼할 수 있는 권리와 가족을 구성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의 적절성	장애인이 결혼할 수 있는 권리와 가족을 구성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의 적절성 정도	유관 당사자(단체) 및 전문가(집단) 설문(혹은 FGI)
205	23조	쟁-24	성과지표 (정성)	장애인이 결혼할 수 있는 권리와 가족을 구성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의 충분성	장애인이 결혼할 수 있는 권리와 가족을 구성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의 충분성 정도	유관 당사자(단체) 및 전문가(집단) 설문(혹은 FGI)
206	24조	최-46(a)/ 쟁-25(a)	과정지표 (정량)	(시청각장애 학생 사례 포함) 통합교육 효과성 및 개선방안 연구 시행 여부	통합교육 효과성 및 개선방안 연구 시행 여부	정부 회신 자료 분석

연번	조항	관련근거	지표유형	지표	산식	평가방법
207	24조	최-46(a)/ 쟁-25(a)	성과지표 (정성)	(시청각장애학생 사례 포함) 통합교육 효과성 및 개선방안 연구의 적절성	통합교육 효과성 및 개선방안 연구의 적절성 정도	유관 당사자(단체) 및 전문가(집단) 설문(혹은 FGI)
208	24조	최-46(a)/ 쟁-25(a)	성과지표 (정성)	(시청각장애학생 사례 포함) 통합교육 효과성 및 개선방안 연구의 충분성	통합교육 효과성 및 개선방안 연구의 충분성 정도	유관 당사자(단체) 및 전문가(집단) 설문(혹은 FGI)
209	24조	최-46(b)/ 쟁-25(b)	과정지표 (정량)	접근가능한 학교 환경, 교육자료 및 교육과정, 보조기기 등 통합교육 정당한 편의 제공 노력 여부	접근가능한 학교 환경, 교육자료 및 교육과정, 보조기기 등 통합교육 정당한 편의 제공 노력 여부	정부 회신 자료 분석
210	24조	최-46(b)/ 쟁-25(b)	성과지표 (정성)	접근가능한 학교 환경, 교육자료 및 교육과정, 보조기기 등 통합교육 정당한 편의 제공 노력의 적절성	접근가능한 학교 환경, 교육자료 및 교육과정, 보조기기 등 통합교육 정당한 편의 제공 노력의 적절성 정도	유관 당사자(단체) 및 전문가(집단) 설문(혹은 FGI)
211	24조	최-46(b)/ 쟁-25(b)	성과지표 (정성)	접근가능한 학교 환경, 교육자료 및 교육과정, 보조기기 등 통합교육 정당한 편의 제공 노력의 충분성	접근가능한 학교 환경, 교육자료 및 교육과정, 보조기기 등 통합교육 정당한 편의 제공 노력의 충분성 정도	유관 당사자(단체) 및 전문가(집단) 설문(혹은 FGI)
212	24조	최-46(c)/ 쟁-25(c)	과정지표 (정량)	교직원 연수 강화 여부	교직원 연수 강화 여부	정부 회신 자료 분석
213	24조	최-46(c)/ 쟁-25(c)	성과지표 (정성)	교직원 연수 강화의 적절성	교직원 연수 강화의 적절성 정도	유관 당사자(단체) 및 전문가(집단) 설문(혹은 FGI)
214	24조	최-46(c)/ 쟁-25(c)	성과지표 (정성)	교직원 연수 강화의 충분성	교직원 연수 강화의 충분성 정도	유관 당사자(단체) 및 전문가(집단) 설문(혹은 FGI)
215	24조	쟁-25(d)	과정지표 (정량)	학생 및 학교 교직원 사이에 장애학생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적극적인 인식제고 조치 추진 여부	학생 및 학교 교직원 사이에 장애학생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적극적인 인식제고 조치 추진 여부	정부 회신 자료 분석
216	24조	쟁-25(d)	성과지표 (정성)	학생 및 학교 교직원 사이에 장애학생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적극적인 인식제고 조치의 적절성	학생 및 학교 교직원 사이에 장애학생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적극적인 인식제고 조치의 적절성 정도	유관 당사자(단체) 및 전문가(집단) 설문(혹은 FGI)

연번	조항	관련근거	지표유형	지표	산식	평가방법
217	24조	쟁-25(d)	성과지표 (정성)	학생 및 학교 교직원 사이에 장애학생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적극적인 인식제고 조치의 충분성	학생 및 학교 교직원 사이에 장애학생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적극적인 인식제고 조치의 충분성 정도	유관 당사자(단체) 및 전문가(집단) 설문(혹은 FGI)
218	24조	쟁-25(d)	과정지표 (정량)	장애학생에 대한 괴롭힘 및/혹은 신체적 폭력 사건에서 무관용 정책 시행 여부	장애학생에 대한 괴롭힘 및/혹은 신체적 폭력 사건에서 무관용 정책 시행 여부	정부 회신 자료 분석
219	24조	쟁-25(d)	성과지표 (정성)	장애학생에 대한 괴롭힘 및/혹은 신체적 폭력 사건에서 무관용 정책의 적절성	장애학생에 대한 괴롭힘 및/혹은 신체적 폭력 사건에서 무관용 정책의 적절성 정도	유관 당사자(단체) 및 전문가(집단) 설문(혹은 FGI)
220	24조	쟁-25(d)	성과지표 (정성)	장애학생에 대한 괴롭힘 및/혹은 신체적 폭력 사건에서 무관용 정책의 충분성	장애학생에 대한 괴롭힘 및/혹은 신체적 폭력 사건에서 무관용 정책의 충분성 정도	유관 당사자(단체) 및 전문가(집단) 설문(혹은 FGI)
221	24조	쟁-26	구조지표 (정량)	특수학교 추가 설립의 근거 유무	특수학교 추가 설립의 근거 유무	정부 회신 자료 분석
222	24조	쟁-26	성과지표 (정성)	특수학교 추가 설립의 근거의 적절성	특수학교 추가 설립의 근거의 적절성 정도	유관 당사자(단체) 및 전문가(집단) 설문(혹은 FGI)
223	25조	최-48/ 쟁-27	구조지표 (정량)	「상법」 제732조의 삭제 여부	「상법」 제732조의 삭제 여부	현행 법률 확인
224	25조	최-48/ 쟁-27	구조지표 (정량)	협약 제25조 마항에 대한 유보 철회 여부	협약 제25조 마항에 대한 유보 철회 여부	기존 정책 자료와 정부 회신 자료 분석
225	25조	쟁-27	과정지표 (정량)	의료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취해진 조치의 유무	의료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취해진 조치의 유무	정부 회신 자료 분석
226	25조	쟁-27	성과지표 (정성)	의료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취해진 조치의 적절성	의료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취해진 조치의 적절성 정도	유관 당사자(단체) 및 전문가(집단) 설문(혹은 FGI)
227	25조	쟁-27	성과지표 (정성)	의료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취해진 조치의 충분성	의료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취해진 조치의 충분성 정도	유관 당사자(단체) 및 전문가(집단) 설문(혹은 FGI)
228	25조	쟁-27	구조지표 (정량)	장애인 의료서비스에 대한 보조나 보장 계획의 유무	장애인 의료서비스에 대한 보조나 보장 계획의 유무	정부 회신 자료 분석

연번	조항	관련근거	지표유형	지표	산식	평가방법
229	25조	쟁-27	성과지표 (정성)	장애인 의료서비스에 대한 보조나 보장 계획의 적절성	장애인 의료서비스에 대한 보조나 보장 계획의 적절성 정도	유관 당사자(단체) 및 전문가(집단) 설문(혹은 FGI)
230	25조	쟁-27	성과지표 (정성)	장애인 의료서비스에 대한 보조나 보장 계획의 충분성	장애인 의료서비스에 대한 보조나 보장 계획의 충분성 정도	유관 당사자(단체) 및 전문가(집단) 설문(혹은 FGI)
231	27조	쟁-28(a)	구조지표 (정량)	지적 및/혹은 정신장애인의 노동시장 참여를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차별적 법령의 철폐 여부	지적 및/혹은 정신장애인의 노동시장 참여를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차별적 법령의 철폐 여부	정부 회신 자료 분석
232	27조	쟁-28(a)	과정지표 (정량)	지적 및/혹은 정신장애인의 노동시장 참여를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차별적 법령의 철폐 비율	(협약 비준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기간 동안 철폐된, 지적 및/혹은 정신장애인의 노동시장 참여를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차별적 법령의 수 / 협약 비준 시점 당시 지적 및/혹은 정신장애인의 노동시장 참여를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차별적 법령의 수) X 100	정부 회신 자료 분석
233	27조	최-50/ 쟁-28(b)	과정지표 (정량)	보충급여제 도입을 통한 최저임금 미적용 장애인 보상 여부	보충급여제 도입을 통한 최저임금 미적용 장애인 보상 여부	정부 회신 자료 분석
234	27조	최-50	과정지표 (정량)	보호작업장 폐쇄 여부	보호작업장 폐쇄 여부	정부 회신 자료 분석
235	27조	최-50/ 쟁-28(c)	과정지표 (정량)	보호작업장 폐쇄에 따른 대안 모색 조치 여부	보호작업장 폐쇄에 따른 대안 모색 조치 여부	정부 회신 자료 분석
236	27조	최-50/ 쟁-28(c)	성과지표 (정성)	보호작업장 폐쇄에 따른 대안 모색 조치의 적절성	보호작업장 폐쇄에 따른 대안 모색 조치의 적절성 정도	유관 당사자(단체) 및 전문가(집단) 설문(혹은 FGI)
237	27조	최-50/ 쟁-28(c)	성과지표 (정성)	보호작업장 폐쇄에 따른 대안 모색 조치의 충분성	보호작업장 폐쇄에 따른 대안 모색 조치의 충분성 정도	유관 당사자(단체) 및 전문가(집단) 설문(혹은 FGI)
238	27조	최-52	과정지표 (정량)	고용격차 감소 조치 여부	고용격차 감소 조치 여부	정부 회신 자료 분석
239	27조	최-52	성과지표 (정성)	고용격차 감소 조치 여부의 적절성	고용격차 감소 조치의 적절성 정도	유관 당사자(단체) 및 전문가(집단) 설문(혹은 FGI)

연번	조항	관련근거	지표유형	지표	산식	평가방법
240	27조	최-52	성과지표 (정성)	고용격차 감소 조치 여부의 충분성	고용격차 감소 조치의 충분성 정도	유관 당사자(단체) 및 전문가(집단) 설문(혹은 FGI)
241	27조	최-52	과정지표 (정량)	고용격차 감소 조치에서의 장애여성 고려 여부	고용격차 감소 조치에서의 장애여성 고려 여부	기존 정책 자료와 정부 회신 자료 분석
242	27조	최-52	성과지표 (정성)	고용격차 감소 조치에서 장애여성 고려의 적절성	고용격차 감소 조치에서 장애여성 고려의 적절성 정도	유관 당사자(단체) 및 전문가(집단) 설문(혹은 FGI)
243	27조	최-52	성과지표 (정성)	고용격차 감소 조치에서 장애여성 고려의 충분성	고용격차 감소 조치에서 장애여성 고려의 충분성 정도	유관 당사자(단체) 및 전문가(집단) 설문(혹은 FGI)
244	27조	최-52	과정지표 (정량)	의무고용제의 효과적 시행 여부	의무고용제의 효과적 시행 여부	유관 당사자(단체) 및 전문가(집단) 설문(혹은 FGI)
245	27조	최-52	구조지표 (정량)	의무고용제 성과 및 결과에 대한 통계 발간 여부	의무고용제 성과 및 결과에 대한 통계 발간 여부	정부 회신 자료 확인
246	27조	최-52	성과지표 (정성)	의무고용제 성과 및 결과에 대한 통계의 적절성	의무고용제 성과 및 결과에 대한 통계의 적절성 정도	유관 당사자(단체) 및 전문가(집단) 설문(혹은 FGI)
247	27조	최-52	성과지표 (정성)	의무고용제 성과 및 결과에 대한 통계의 충분성	의무고용제 성과 및 결과에 대한 통계의 충분성 정도	유관 당사자(단체) 및 전문가(집단) 설문(혹은 FGI)
248	27조	최-50/ 쟁-28(d)	과정지표 (정량)	장애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와 의무고용 할당제도의 효과성 보장 조치 여부	장애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와 의무고용 할당제도의 효과성 보장 조치 여부	정부 회신 자료 분석
249	27조	최-50/ 쟁-28(d)	성과지표 (정성)	장애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와 의무고용 할당제도의 효과성 보장 조치의 적절성	장애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와 의무고용 할당제도의 효과성 보장 조치의 적절성 정도	유관 당사자(단체) 및 전문가(집단) 설문(혹은 FGI)
250	27조	최-50/ 쟁-28(d)	성과지표 (정성)	장애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와 의무고용 할당제도의 효과성 보장 조치의 충분성	장애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와 의무고용 할당제도의 효과성 보장 조치의 충분성 정도	유관 당사자(단체) 및 전문가(집단) 설문(혹은 FGI)
251	27조	쟁-28(e)	구조지표 (정량)	장애인들이 공공부문에 고용될 수 있도록 보장 여부	장애인들이 공공부문에 고용될 수 있도록 보장 여부	정부 회신 자료 분석

연번	조항	관련근거	지표유형	지표	산식	평가방법
252	28조	최-54	과정지표 (정량)	장애등급이나 가족 구성원의 소득 및 재산으로부터, 장애당사자의 특성·상황·욕구로, 최저생계비 지원 기준을 변경했는지의 여부	장애등급이나 가족 구성원의 소득 및 재산으로부터, 장애당사자의 특성·상황·욕구로, 최저생계비 지원 기준을 변경했는지의 여부	정부 회신 자료 분석
253	28조	최-54	성과지표 (정성)	장애등급이나 가족 구성원의 소득 및 재산으로부터, 장애당사자의 특성·상황·욕구로, 최저생계비 지원 기준을 변경한 조치의 적절성	장애등급이나 가족 구성원의 소득 및 재산으로부터, 장애당사자의 특성·상황·욕구로, 최저생계비 지원 기준을 변경한 조치의 적절성 정도	유관 당사자(단체) 및 전문가(집단) 설문(혹은 FGI)
254	28조	최-54	성과지표 (정성)	장애등급이나 가족 구성원의 소득 및 재산으로부터, 장애당사자의 특성·상황·욕구로, 최저생계비 지원 기준을 변경한 조치의 충분성	장애등급이나 가족 구성원의 소득 및 재산으로부터, 장애당사자의 특성·상황·욕구로, 최저생계비 지원 기준을 변경한 조치의 충분성 정도	유관 당사자(단체) 및 전문가(집단) 설문(혹은 FGI)
255	29조	최-56	구조지표 (정성)	장애인 선거 참여 가능 여부	장애인 선거 참여 가능 여부	유관 당사자(단체) 및 전문가(집단) 설문(혹은 FGI)
256	29조	최-56	성과지표 (정성)	장애인 선거 참여 가능 조치의 적절성	장애인 선거 참여 가능 조치의 적절성 정도	유관 당사자(단체) 및 전문가(집단) 설문(혹은 FGI)
257	29조	최-56	성과지표 (정성)	장애인 선거 참여 가능 조치의 충분성	장애인 선거 참여 가능 조치의 충분성 정도	유관 당사자(단체) 및 전문가(집단) 설문(혹은 FGI)
258	29조	최-56	과정지표 (정량)	접근가능한 선거정보 제공 여부	접근가능한 선거정보 제공 여부	정부 회신 자료 분석
259	29조	최-56	성과지표 (정성)	접근가능한 선거정보 제공 조치의 적절성	접근가능한 선거정보 제공 조치의 적절성 정도	유관 당사자(단체) 및 전문가(집단) 설문(혹은 FGI)
260	29조	최-56	성과지표 (정성)	접근가능한 선거정보 제공 조치의 충분성	접근가능한 선거정보 제공 조치의 충분성 정도	유관 당사자(단체) 및 전문가(집단) 설문(혹은 FGI)
261	29조	최-56	과정지표 (정량)	선출직 장애인 참여 증진 조치 여부	선출직 장애인 참여 증진 조치 여부	정부 회신 자료 분석
262	29조	최-56	성과지표 (정성)	선출직 장애인 참여 증진 조치의 적절성	선출직 장애인 참여 증진 조치의 적절성 정도	유관 당사자(단체) 및 전문가(집단) 설문(혹은 FGI)

연번	조항	관련근거	지표유형	지표	산식	평가방법
263	29조	최-56	성과지표 (정성)	선출직 장애인 참여 증 진 조치의 충분성	선출직 장애인 참여 증 진 조치의 충분성 정도	유관 당사자(단체) 및 전문가(집단) 설문(혹은 FGI)
264	29조	최-56	구조지표 (정량)	장애인의 투표권 및 피 선거권 제한 조항 폐지 여부	장애인의 투표권 및 피 선거권 제한 조항 폐지 여부	정부 회신 자료 분석
265	29조	쟁-30	과정지표 (정량)	투표 시설에 대한 모든 유형 장애인의 완전한 접근성 보장을 위해 취 한 정부의 조치 유무	투표 시설에 대한 모든 유형 장애인의 완전한 접근성 보장을 위해 취 한 정부의 조치 유무	정부 회신 자료 분석
266	29조	쟁-30	성과지표 (정성)	투표 시설에 대한 모든 유형 장애인의 완전한 접 근성 보장을 위해 취한 정부의 조치의 적절성	투표 시설에 대한 모든 유형 장애인의 완전한 접근성 보장을 위해 취 한 정부의 조치의 적절 성 정도	유관 당사자(단체) 및 전문가(집단) 설문(혹은 FGI)
267	29조	쟁-30	성과지표 (정성)	투표 시설에 대한 모든 유형 장애인의 완전한 접 근성 보장을 위해 취한 정부의 조치의 충분성	투표 시설에 대한 모든 유형 장애인의 완전한 접근성 보장을 위해 취 한 정부의 조치의 충분 성 정도	유관 당사자(단체) 및 전문가(집단) 설문(혹은 FGI)
268	29조	쟁-30	과정지표 (정량)	정보 캠페인에 대한 완 전한 접근성 보장을 위 하여 취한 정부 조치의 유무	정보 캠페인에 대한 완 전한 접근성 보장을 위 하여 취한 정부 조치의 유무	정부 회신 자료 분석
269	29조	쟁-30	성과지표 (정성)	정보 캠페인에 대한 완 전한 접근성 보장을 위 하여 취한 정부 조치의 적절성	정보 캠페인에 대한 완 전한 접근성 보장을 위 하여 취한 정부 조치의 적절성 정도	유관 당사자(단체) 및 전문가(집단) 설문(혹은 FGI)
270	29조	쟁-30	성과지표 (정성)	정보 캠페인에 대한 완 전한 접근성 보장을 위 하여 취한 정부 조치의 충분성	정보 캠페인에 대한 완 전한 접근성 보장을 위 하여 취한 정부 조치의 충분성 정도	유관 당사자(단체) 및 전문가(집단) 설문(혹은 FGI)
271	29조	쟁-30	과정지표 (정량)	장애인이 투표를 위한 보조인을 선택할 수 있 도록 보장하기 위해 취 한 정부의 조치 유무	장애인이 투표를 위한 보조인을 선택할 수 있 도록 보장하기 위해 취 한 정부의 조치 유무	정부 회신 자료 분석
272	29조	쟁-30	성과지표 (정성)	장애인이 투표를 위한 보조인을 선택할 수 있 도록 보장하기 위해 취 한 정부 조치의 적절성	장애인이 투표를 위한 보조인을 선택할 수 있 도록 보장하기 위해 취 한 정부 조치의 적절성 정도	유관 당사자(단체) 및 전문가(집단) 설문(혹은 FGI)

연번	조항	관련근거	지표유형	지표	산식	평가방법
273	29조	쟁-30	성과지표 (정성)	장애인이 투표를 위한 보조인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취한 정부 조치의 충분성	장애인이 투표를 위한 보조인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취한 정부 조치의 충분성 정도	유관 당사자(단체) 및 전문가(집단) 설문(혹은 FGI)
274	30조	최-58	구조지표 (정량)	마라케시조약 ⁸⁶⁾ 비준 여부	마라케시조약 비준 여부	기존 정책 자료 확인
275	30조	최-58/ 쟁-31	과정지표 (정성)	마라케시조약에 따른 조치 유무	마라케시조약에 따른 조치 유무	유관 당사자(단체) 및 전문가(집단) 설문(혹은 FGI)
276	30조	최-58/ 쟁-31	성과지표 (정성)	마라케시조약에 따른 조치의 적절성	마라케시조약에 따른 조치의 적절성 정도	유관 당사자(단체) 및 전문가(집단) 설문(혹은 FGI)
277	30조	최-58/ 쟁-31	성과지표 (정성)	마라케시조약에 따른 조치의 충분성	마라케시조약에 따른 조치의 충분성 정도	유관 당사자(단체) 및 전문가(집단) 설문(혹은 FGI)
278	30조	쟁-31	과정지표 (정량)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 및 기타 스포츠 이벤트가, 장애인들을 완전히 통합하고 그들에게 접근 가능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정부가 취한 조치 유무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 및 기타 스포츠 이벤트가, 장애인들을 완전히 통합하고 그들에게 접근 가능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정부가 취한 조치 유무	정부 회신 자료 분석
279	30조	쟁-31	성과지표 (정성)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 및 기타 스포츠 이벤트가, 장애인들을 완전히 통합하고 그들에게 접근 가능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정부가 취한 조치의 적절성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 및 기타 스포츠 이벤트가, 장애인들을 완전히 통합하고 그들에게 접근 가능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정부가 취한 조치의 적절성 정도	유관 당사자(단체) 및 전문가(집단) 설문(혹은 FGI)
280	30조	쟁-31	성과지표 (정성)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 및 기타 스포츠 이벤트가, 장애인들을 완전히 통합하고 그들에게 접근 가능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정부가 취한 조치의 충분성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 및 기타 스포츠 이벤트가, 장애인들을 완전히 통합하고 그들에게 접근 가능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정부가 취한 조치의 충분성 정도	유관 당사자(단체) 및 전문가(집단) 설문(혹은 FGI)
281	31조	최-60	과정지표 (정량)	분리통계 자료 수집·분석·배포의 체계화 여부	분리통계 자료 수집·분석·배포의 체계화 여부	정부 회신 자료 분석

86) ‘맹인, 시각 손상인 또는 그 밖의 독서 장애인의 발행 저작물 접근 촉진을 위한 마라케시 조약(Marrakesh Treaty to Facilitate Access to Published Works for Persons Who Are Blind, Visually Impaired, or Otherwise Print Disabled)’을 말함(이하 이 표에서 같음).

연번	조항	관련근거	지표유형	지표	산식	평가방법
282	31조	최-60	성과지표 (정성)	분리통계 자료 수집·분석·배포 체계화의 적절성	분리통계 자료 수집·분석·배포 체계화의 적절성 정도	유관 당사자(단체) 및 전문가(집단) 설문(혹은 FGI)
283	31조	최-60	성과지표 (정성)	분리통계 자료 수집·분석·배포 체계화의 충분성	분리통계 자료 수집·분석·배포 체계화의 충분성 정도	유관 당사자(단체) 및 전문가(집단) 설문(혹은 FGI)
284	31조	최-60	과정지표 (정량)	통계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 강화 여부	통계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 강화 여부	정부 회신 자료 분석
285	31조	최-60	성과지표 (정성)	통계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 강화의 적절성	통계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 강화의 적절성 정도	유관 당사자(단체) 및 전문가(집단) 설문(혹은 FGI)
286	31조	최-60	성과지표 (정성)	통계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 강화의 충분성	통계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 강화의 충분성 정도	유관 당사자(단체) 및 전문가(집단) 설문(혹은 FGI)
287	31조	쟁-32	과정지표 (정량)	장애 통계에 관한 워싱턴 그룹 방법론에 따라 데이터의 수집, 분석 및 배포를 체계화하기 위해 정부가 취한 조치의 유무	장애 통계에 관한 워싱턴 그룹 방법론에 따라 데이터의 수집, 분석 및 배포를 체계화하기 위해 정부가 취한 조치의 유무	정부 회신 자료 분석
288	31조	쟁-32	성과지표 (정성)	장애 통계에 관한 워싱턴 그룹 방법론에 따라 데이터의 수집, 분석 및 배포를 체계화하기 위해 정부가 취한 조치의 적절성	장애 통계에 관한 워싱턴 그룹 방법론에 따라 데이터의 수집, 분석 및 배포를 체계화하기 위해 정부가 취한 조치의 적절성 정도	유관 당사자(단체) 및 전문가(집단) 설문(혹은 FGI)
289	31조	쟁-32	성과지표 (정성)	장애 통계에 관한 워싱턴 그룹 방법론에 따라 데이터의 수집, 분석 및 배포를 체계화하기 위해 정부가 취한 조치의 충분성	장애 통계에 관한 워싱턴 그룹 방법론에 따라 데이터의 수집, 분석 및 배포를 체계화하기 위해 정부가 취한 조치의 충분성 정도	유관 당사자(단체) 및 전문가(집단) 설문(혹은 FGI)
290	32조	쟁-33	과정지표 (정량)	본 협약, 인천전략 및 SDGs의 효과적 이행에 주의를 기울이며, 정부의 모든 국제 개발 프로그램 및 활동이 모든 장애인들에게 통합적이고 접근 가능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정부가 취한 조치의 유무	본 협약, 인천전략 및 SDGs의 효과적 이행에 주의를 기울이며, 정부의 모든 국제 개발 프로그램 및 활동이 모든 장애인들에게 통합적이고 접근 가능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정부가 취한 조치의 유무	정부 회신 자료 분석

연번	조항	관련근거	지표유형	지표	산식	평가방법
291	32조	쟁-33	성과지표 (정성)	본 협약, 인천전략 및 SDGs의 효과적 이행에 주의를 기울이며, 정부의 모든 국제 개발 프로그램 및 활동이 모든 장애인들에게 통합적이고 접근 가능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정부가 취한 조치의 적절성	본 협약, 인천전략 및 SDGs의 효과적 이행에 주의를 기울이며, 정부의 모든 국제 개발 프로그램 및 활동이 모든 장애인들에게 통합적이고 접근 가능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정부가 취한 조치의 적절성 정도	유관 당사자(단체) 및 전문가(집단) 설문(혹은 FGI)
292	32조	쟁-33	성과지표 (정성)	본 협약, 인천전략 및 SDGs의 효과적 이행에 주의를 기울이며, 정부의 모든 국제 개발 프로그램 및 활동이 모든 장애인들에게 통합적이고 접근 가능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정부가 취한 조치의 충분성	본 협약, 인천전략 및 SDGs의 효과적 이행에 주의를 기울이며, 정부의 모든 국제 개발 프로그램 및 활동이 모든 장애인들에게 통합적이고 접근 가능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정부가 취한 조치의 충분성 정도	유관 당사자(단체) 및 전문가(집단) 설문(혹은 FGI)
293	33조	최-62/ 쟁-34(a)	과정지표 (정량)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장애인 관련 정책의 효과적인 개발 및 이행 역할 수행 여부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장애인 관련 정책의 효과적인 개발 및 이행 역할 수행 여부	정부 회신 자료 분석
294	33조	최-62/ 쟁-34(a)	과정지표 (정량)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장애인 관련 정책의 효과적인 개발 및 이행 역할 수행의 적절성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장애인 관련 정책의 효과적인 개발 및 이행 역할 수행의 적절성 정도	유관 당사자(단체) 및 전문가(집단) 설문(혹은 FGI)
295	33조	최-62/ 쟁-34(a)	과정지표 (정량)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장애인 관련 정책의 효과적인 개발 및 이행 역할 수행의 충분성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장애인 관련 정책의 효과적인 개발 및 이행 역할 수행의 충분성 정도	유관 당사자(단체) 및 전문가(집단) 설문(혹은 FGI)
296	33조	최-62/ 쟁-34(b)	과정지표 (정량)	국가인권위원회 인력과 재정 제공의 개선 여부	국가인권위원회 인력과 재정 제공의 개선 여부	인권위 회신 자료 분석
297	33조	최-62/ 쟁-34(b)	성과지표 (정성)	국가인권위원회 인력과 재정 제공 개선 조치의 적절성	국가인권위원회 인력과 재정 제공 개선 조치의 적절성 정도	인권위에 평가 요청
298	33조	최-62/ 쟁-34(b)	성과지표 (정성)	국가인권위원회 인력과 재정 제공 개선 조치의 충분성	국가인권위원회 인력과 재정 제공 개선 조치의 충분성 정도	인권위에 평가 요청

연번	조항	관련근거	지표유형	지표	산식	평가방법
299	33조	최-62/ 쟁-34(c)	구조지표 (정량)	협약 모니터링에의 장애인 참여를 위한 법 개정 여부	협약 모니터링에의 장애인 참여를 위한 법 개정 여부	정부 회신 자료 분석
300	33조	최-62/ 쟁-34(c)	성과지표 (정성)	협약 모니터링에의 장애인 참여를 위한 법 개정의 적절성	협약 모니터링에의 장애인 참여를 위한 법 개정의 적절성 정도	유관 당사자(단체) 및 전문가(집단) 설문(혹은 FGI)
301	33조	최-62/ 쟁-34(c)	성과지표 (정성)	협약 모니터링에의 장애인 참여를 위한 법 개정의 충분성	협약 모니터링에의 장애인 참여를 위한 법 개정의 충분성 정도	유관 당사자(단체) 및 전문가(집단) 설문(혹은 FGI)

IV

정부의 CRPD 이행 상황에 대한 민간 평가 조사 결과

1. 조사개요	91
2. 조사 참여 단체 및 자료 수집	95
3. 분석방법	98
4. 조사결과	99
5. 함의	151

1. 조사개요

본 연구의 주요 목적 중 하나는, CRPD와 최종견해 및 쟁점목록의 내용들을 이행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어떠한 조치를 얼마만큼 잘 취하였는가를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평가를 접근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대한민국 정부가 취한 조치의 ‘산출물(output)’에 초점을 맞추는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다. 이런 접근 방식으로 평가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CRPD와 최종견해 및 쟁점목록이 준 영향에 의해서, 법령의 제·개정이나 제도 및 정책의 발전적 변화 등의 형태로, 대한민국 정부가 취한 조치의 ‘산출물’들에 대해 평가해야 할 것이다.

둘째, 대한민국 정부가 취한 조치의 ‘산출물(output)’이 독립변인으로 작용하여, 국내 장애인들의 삶의 질이나 인권 보호의 수준 등의 종속변인이, 얼마나 어떻게 변화되었는가에 대한 ‘성과(outcome)’에 초점을 맞추는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다.

조사설계는 ‘비실험설계’⁸⁷⁾와 ‘실험설계’로 구분할 수 있다. 본 연구는 ‘CRPD와 최종견해 및 쟁점목록이 준 영향’이라는 독립변인의 투입에 의한 변화를 파악하기 때문에, ‘비실험설계’의 방법론은 배제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실험설계’를 하는 방법은 크게, ‘순수실험 설계’⁸⁸⁾, ‘유사실험 설계’⁸⁹⁾ 및 ‘원시실험 설계’⁹⁰⁾로 나눌 수 있다.

우선 평가 조사의 시기를 놓고 봤을 때, 본 연구만을 위해 개발된 지표로 조사를 별도로 실시한다고 가정한다면, CRPD와 최종견해 및 쟁점목록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가 조치를 취하기 이전 시기에 별도의 조사를 실시한 적이 없었고, 홀

87) 이는 ‘횡단적 조사설계’와 ‘종단적 조사설계’로 나눌 수 있으며, ‘횡단적 조사설계’는 다시 ‘일원적 설계’와 ‘상관관계 설계’로 구분된다.

88) 이는 다시, ‘통제집단 사전사후검사 설계’, ‘통제집단 사후검사 설계’, ‘솔로몬 4집단 설계’, ‘요인 설계’, ‘플라시보 통제집단 설계’로 나눌 수 있다.

89) 이는 다시, ‘비동일 통제집단 설계’, ‘시계열 설계’, ‘분리표본 사전사후검사 설계’로 나눌 수 있다.

90) 이는 다시, ‘일회사례연구’, ‘단일집단 사전사후검사 설계’, ‘정태집단 비교 설계’로 나눌 수 있다.

러간 시간은 되돌릴 수 없기에, 사후 조사만 하는 것이나 사후에 다회(多回)의 시계열 조사를 하는 것만이 가능해진다.

하나의 가정으로, 본 연구만을 위해 개발된 지표가 아닌, 기(既)개발된 지표를 이용하여 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만약 그렇게 하려면, CRPD와 최종견해 및 쟁점목록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가 조치를 취하기 이전 시기에, 본 연구의 피조사자와 같은 특성을 지닌 유사 피조사자 군(群)을 대상으로 조사되어 있던 데이터를 사전조사의 데이터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때의 사후조사는, 그 사전조사가 정기적으로 반복되는 조사인 경우에는 연구에서 의도하는 사후조사 시기와 유사한 시기의 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대체하거나, 동일한 지표와 동일한 조사방식으로 별도의 당 연구만을 위한 사후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설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는 기(既)개발된 지표들의 일부분이, 본 연구에 필요한 CRPD와 최종견해 및 쟁점목록의 지표들과 일치해야 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가능한 방식인데, 그런 지표는 기존에 존재하는 것이 없기에, 이 가정은 시행 불가능한 것이다.

이와 같은 검토를 바탕으로 하여, 본 연구에 적용 가능한 실험설계의 세 가지 방법들을 논해볼 때, 우선 실험 참여 지원자를 대상으로 외생변인을 통제하여 실험의 효과를 검증하는 방식의 ‘순수실험 설계’는 이 연구에 적용할 수 없다. 또한, ‘유사실험 설계’의 세 가지 방법, 즉 ‘비동일 통제집단 설계’, ‘시계열 설계’ 및 ‘분리표본 사전사후검사 설계’는, 세 가지 모두 다 독립변인 투입 전 시기의 사전조사가 있어야 하기에, 이 역시 본 연구에서는 적용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남은 ‘원시실험 설계’의 경우, ‘일회사례연구’, ‘단일집단 사전사후검사 설계’ 및 ‘정태집단 비교 설계’ 중, 사전검사가 필수인 ‘단일집단 사전사후검사 설계’를 상기(上記) 언급된바와 같이 사전검사가 불가능한 이유에서 제외하고 나면, ‘일회사례연구’와 ‘정태집단 비교 설계’만 남게 된다.

먼저 ‘정태집단 비교 설계’의 적용을 검토해보자면, 본 연구 상 ‘정태집단’은 ‘비장애인 집단⁹¹⁾’으로, 그리고 ‘실험집단’은 ‘장애인 집단’으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실험집단’인 ‘장애인 집단’에 ‘CRPD와 최종견해 및 쟁점목록들을

91) 여기서의 ‘정태집단’은, 연구자의 의도에 따라 ‘비장애인만의 집단’으로 조작적 정의할 수도 있고,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모두 포함된 일반 국민들의 집단’으로 정의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행하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가 취한 조치'라는 독립변인을 개입시켰을 때 나타나는 변화 후의 값이, '정태집단'인 '비장애인 집단'의 변수 값과 비교해봤을 때, 어떤 '격차(隔差, gap)'를 나타내는지 보고, 더 나아가서 이를 시계열적으로 반복 조사해가며 변화의 추이를 분석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 때 '실험집단'인 '장애인 집단'과의 비교 대상이 될 '정태집단'인, '비장애인 집단'이 기준집단(規準集團, norm group)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인 바, 이 '정태집단'의 특정 변수 값이 기준(規準, norm)이 되고, '실험집단'인 '장애인 집단'의 해당 변수 값이 비교 값이 됨으로써, 장애인의 특정 상태가 비장애인과 비교하여 몇 % 정도의 수준을 보이고 있는지를 가늠하는 식으로, 평가를 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방법론을 적용하려면, 우선 정교하게 개발되어 기(既)검증된 정량평가 지표들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기준(規準, norm)으로 삼을 만큼의 '정태집단' 데이터가 확보되려면 '과도한 일반화의 오류'를 막을 수 있을 정도의 대표성 있는 표본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고, 이와 함께 '실험집단'인 '장애인 집단' 표본의 확보 또한 마찬가지이다. 이 때 '정태집단'과 '실험집단', 즉 '비장애인 집단'과 '장애인 집단'을 특정할 수 있어야 할 텐데, 연구진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며 합법적으로 장애인 집단과 비장애인 집단의 표본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따라서 이 방법론도 본 연구에서는 배제할 수밖에 없었다.

마지막으로 '일회사례연구'의 적용을 검토해볼 때, 이 조사를 시행한다면 '실험집단'인 '장애인 집단'에 'CRPD와 최종견해 및 쟁점목록들을 이행하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가 취한 조치'라는 독립변인을 개입시켰을 때 나타나는 변화 후의 값을 측정하게 될 것이다. 이 조사 방법론은 본 연구가 가진 한계⁹²⁾ 내에서 현실적으로 가장 적합한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방법론의 경우에는, 인과관계의 세 가지 요건인 '공변성(共變性)', '시간적 우선성' 및 '외생변인의 통제'에 있어서, '시간적 우선성' 외의 요건들이 충족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이 방법론을 채택할 경우에는, 가능하다면 그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보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 있어서

92) '연구기간의 한계'와 '연구비의 한계'를 의미한다.

적용 가능한 그런 노력을 들자면, ‘공변성(共變性)’과 관련하여 독립변인 개입 이전의 상태를 기억할 수 있어서 독립변인 개입 이후와 비교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피조사자를 표집함으로써, 사전조사가 없는 한계를 일부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외생변인의 통제’와 관련해서는, 가급적 피조사자의 주관적 정신능력으로 종속변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다른 변인들을 제외한 채 독립변인만의 영향력을 감안하며 조사에 응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사람을 제외함으로써, 일부나마 보완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평가에 있어서, 첫 번째 제시한 접근 방식, 즉 대한민국 정부가 취한 조치의 ‘산출물(output)’에 초점을 맞추면서, 두 번째 제시한 ‘조치로 인해 일어난 변화의 성과(outcome)’에 초점을 맞추는 평가를 위한 조사설계는, ‘원시실험 설계’ 중 ‘일회사례연구’를 통하여 조사설계를 하되, 위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연구방법론에서 오는 인과관계의 요건 충족의 부족함들을 어느 정도 보완해줄 수 있는, 수준 높은 피조사자를 제외하여 조사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법론이 되었다.

본 연구의 조사에 대한 평가는, 일부의 특징적 또는 특이한 내용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한 가지 이슈 당 세 가지 측면의 평가가 진행되었다.

그 첫 번째 측면은, 장애인권리위원회가 권고한 대한민국의 ‘조치’에 대한 ‘이행 여부’이다. ‘어떤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했을 때, ‘대한민국 정부가 그 조치를 취했는지의 여부’가 제1차적 평가지표인바, 이는 ‘조치를 취한 경우’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 정량평가할 수 있다. 당 측면에 있어서 도출될 수 있는 2차적 평가지표로 ‘조치의 횟수’가 있을 수 있다. ‘어떤 조치를 취하라.’는 권고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가 그 조치를 취할 때, 한 번의 조치가 있었을 수도 있지만, 여러 번의 조치가 취해졌을 수도 있다. 따라서 ‘몇 회의 조치를 취했는가’에 대한 값인 ‘횟수’가 하나의 변수로 평가될 수 있다. 다만, ‘횟수가 많다’는 것과 ‘장애인권리위원회의 권고에 대한 이행 수준이 높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조치의 횟수’에 대한 정량평가는 그 자체가 장애인권리위원회의 권고에 대한 이행 수준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두 번째 측면은, 장애인권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가 ‘조치’를 취한 경우에, 그 적절성 정도를 평가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

하긴 했는데, 그것이 장애인권리위원회의 권고에 적절히 부합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평가를 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장애인권리위원회 권고의 의미를 해당 부처에서 잘못 이해하거나, 이해는 제대로 하고 있더라도 현실적인 어떤 여건, 혹은 정치적 압력 등의 환경적이거나 외부적인 요인들에 의해, 적절성이 떨어지는 조치를 작위적으로 취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조치의 의무는 다했다고 주장할 수는 있겠으나, 그 조치가 장애인권리위원회가 권고한 조치에 ‘적절히 부합’되지 않는 수 있기에, 조치 여부만 평가해서는 안 될 것이고, 조치의 적절성 정도를 평가해야 할 것이다.

세 번째 측면은, 장애인권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가 ‘조치’를 취한 경우에, 그 충분성 정도를 평가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가 장애인권리위원회의 권고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장애인권리위원회 권고의 취지에 부합할 수 있는 ‘충분한 조치’인지에 대해서도 평가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장애인권리위원회 권고에 따라 조치는 취해야 되겠는데, 그에 따른 충분한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는 경우 등의 현실적 한계 때문에, 조치는 취했고 그 조치가 적절한 조치이기는 하지만 적은 예산이나 다른 사유들로 인해서, ‘생색만 내는’ 불충분한 소규모의 조치가 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런 경우에는 그 조치가 장애인권리위원회가 권고한 조치에 ‘적절한 방향성’은 갖고 있지만 ‘충분한 대응’이 되지 않을 수 있기에, 조치 여부만 평가하거나 그 조치의 적절성만 평가해서는 안 되고, 그 조치에 대한 충분성 정도도 평가해야 할 것이다.

2. 조사 참여 단체 및 자료 수집

위의 첫 번째 측면의 평가는 정량평가로서, 대부분 조사에 따른 회신자료를 연구진 내부 연구원들이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두 번째와 세 번째 측면의 평가는 정성평가로서, 외부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 높은 장애인 관련 단체, 유관 기관, 장애인 당사자 혹은 관련 전문가 등이 평가자로 참여할 필요성이 크다고 하겠다.

그런데 이러한 평가를 맡게 될 평가자에게는, 해당 이슈에 대한 고도의 전문적 식견과 함께, 유관된 사항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 보유 능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그 분야에 있어서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와, 유관 장애유형의

장애인을 대표할 수 있는 주요 장애인 단체 관계자 등이, 평가를 맡아야할 당위성이 생기게 된다.

예를 들어 전체의 일반 장애인 당사자들의 평가 의견을 조사하기 위한 표집방법이라면 확률 표집(probability sampling)이 필요할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적절한 피조사자를 표집하여 조사를 실시하여야 할 텐데, 이를 본 연구의 조사와 비교해보면, 일반 장애인 당사자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CRPD와 최종견해 및 쟁점목록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이행 상황 실태’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 더구나 CRPD 자체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장애인도 많지 않다. 따라서 그들이 정부의 이행 여부, 정부 조치의 적절성 및 정부 조치의 충분성에 대해 정확하게 평가해줄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에 장애인 전체 모집단을 대표하는 표본을 추출하여 조사를 하는 확률 표집의 방법으로, 본 연구의 평가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것은 적절한 방법이 아니다.

또한, 만약 일반 장애인을 대상으로 확률 표집을 하는 방법이 적절한 평가 의견 조사방법이라고 하더라도, 본 연구에 있어서는 그 방법을 합법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야 한다면, ‘누가 장애인인지’를 알아야 피조사자가 특정될 수 있을 텐데,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⁹³⁾에 따른 ‘민감정보’에 해당하는 ‘장애여부’ 관련 개인 정보는, 동법 제2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허용 대상에 본 연구진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에 정보를 입수할 수 없으며, 동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동의를 받으려고 해도, 장애인 명단 자체를 합법적으로 입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에, 그러한 조사는 불가능한 일이 된다.

Allen Rubin과 Earl R. Babbie(2008)는, 연구자가 모집단과 모집단 요소에 대

93)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민감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해서, 자신이 가진 지식이나 연구 목적의 특성에 기초하여 표본을 추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가 있는데, 이 때 그 검증의 결과가 특정 모집단을 대표할 수는 없다고 해도, 그 검증을 통해서 알고자 하는 구체적인 문제점을 효과적으로 찾아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 적합한 방식을 의도적 표집(purposive sampling) 혹은 판단표집(judgement sampling)으로 제시했다.

한편 (주)생각의 마을 기획팀(2017)은, ‘의도적 표집’을 적용해야 할 대표적인 사례 세 가지 중의 가장 첫 사례로, ‘지역의 문제를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지역 유지나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통반장 등을 조사하는 경우’를 제시했다. 본 연구에서 평가를 위한 조사의 경우에도, 이와 유사한 ‘의도적 표집’을 적용해야 할 사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본 연구를 위하여 평가자를 특정하는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표본추출 방법은 비확률 표집(non-probability sampling) 중 Allen Rubin과 Earl R. Babbie(2011)가 제시한 ‘의도적 표집’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위의 두 번째와 세 번째 측면의 평가를 맡을 평가자를 결정할 때, ‘평가를 위한 해당 분야 전문성 보유자’라는, 모집단을 가장 잘 대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사람들을, 연구진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작위적으로 의도적 표집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유형의 다양성과 대표성을 감안하고, 장애인 당사자와 비장애인 전문가의 참여 비율을 감안하였다.

조사에 참여한 단체는 장애 유형을 대표하는 단체, 장애인 관련 기관의 협의체 성격을 갖는 단체, 장애인권운동을 위해 조직된 단체, 여성 장애인의 단체, 그리고 기타로 나누어볼 수 있다. 이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단체는 유형 대표(35%)이며, 인권 단체(22.5%), 기타(20%), 여성 단체(12.5%), 협의체(10%) 순이다.

분류	참여 단체 (40곳)
유형 대표 (35%)	지체장애인협회, 신체장애인복지회, 뇌성마미복지회, 척수장애인협회, 근육장애인협회, 농아인협회, 시각장애인연합회, 신장장애인협회, 장루장애인협회, 한센총연합회, 장애인부모회, 장애인부모연대, 자폐인사랑협회, 정신장애인인권연대 (14곳)
협의체 (10%)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장애인단체총연맹, 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자립생활센터협의회 (4곳)
인권 단체 (22.5%)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인권포럼, 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장애와 인권 발바닥 행동,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장애물 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장애인학생지원네트워크 (9곳)

분류	참여 단체 (40곳)
여성 단체 (12.5%)	장애여성공감, 시각장애인여성회, 여성장애인연합, 장애와 여성 마실, 장애여성네트워크 (5곳)
기타 (20%)	장애인연맹, 장애인재활협회, 장애인고용안정협회, 장애인문화협회, 장애인기업협회, 장애인정보화협회, 세이브더칠드런, 전국장애영유아학부모회 (8곳)

연구팀은 이러한 고려를 통해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최종견해와 쟁점목록 이행 평가에 관한 설문지」를 43곳의 장애인단체에게 2018년 10월 1일 국가인권위원회의 협조를 받아 온라인으로 발송하였다. 발송 이후 각 단체의 담당자와 전화 통화를 통해 수신을 확인하였다. 3곳의 기관은 전화 연결이 이루어지지 않아 최종적으로 총 40 사례에 대해 설문지가 배포되었다.

본 설문지의 내용이 포괄적이고 세세하여 비록 관련단체라 하더라도 응답자들의 부담이 크며 수집된 자료의 신뢰도가 낮을 것을 우려하여 ‘답변이 어려운 문항은 생략하여도 된다.’고 안내하였으며, 응답자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2주일 간격으로 전화 통화를 통해 응답을 독려했다. 최종적으로 회신 된 설문지 23 사례(응답률 57.5%)를 분석하였다.

3. 분석방법

각 문항(변수)의 변수값은 7개⁹⁴⁾로 구성되어 있다. 그중 ①~⑤는 ‘충분·부합·적절의 정도’에 대한 리커트 척도이며, ⑥번과 ⑦번은 ‘모르겠다’와 ‘없다’로 명목 변수이다. 우선, 각 문항의 리커트 척도는 연속변수로 간주하여 문항별로 평균을 구해 그 정도를 분석할 수 있었다. 그리고 ①번에서 ⑤번 사이에 응답한 모든 변수 값을 묶어 ‘있다’라는 새로운 변수값을 만들고, 각 문항에 대해서 ‘있다’, ‘없다’ 그리고 ‘모르겠다’라는 명목 변수값에 대해 기술통계를 실시하여 그래프로 나타내었다.

각 문항을 분석한 첫 번째 가로 막대 그래프에서는 해당 CRPD 조항에 대한

94) ① 전혀 적절(부합, 충분)하지 않았다 ② 별로 적절(부합, 충분)하지 않았다 ③ 그저 그렇다 ④ 약간 적절(부합, 충분)했다 ⑤ 매우 적절(부합, 충분)했다 ⑥ 정보가 없어서 모르겠다 ⑦ 그런 조치(법 개정, 노력, 계획, 정책)은 없었다.

정부의 조치가 있었다고 생각하는지 혹은 없었다고 생각하는지의 여부를 알 수 있으며, 이어지는 세로 막대 그래프를 통해서는 있다면 얼마나 충분, 부합 혹은 적절한지를 5점 만점을 기준으로 파악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관련 단체들이 판단하는 각 조항별 이행실태의 정도를 비교할 수 있도록 26개 조항에 대한 평균을 비교할 수 있는 그래프를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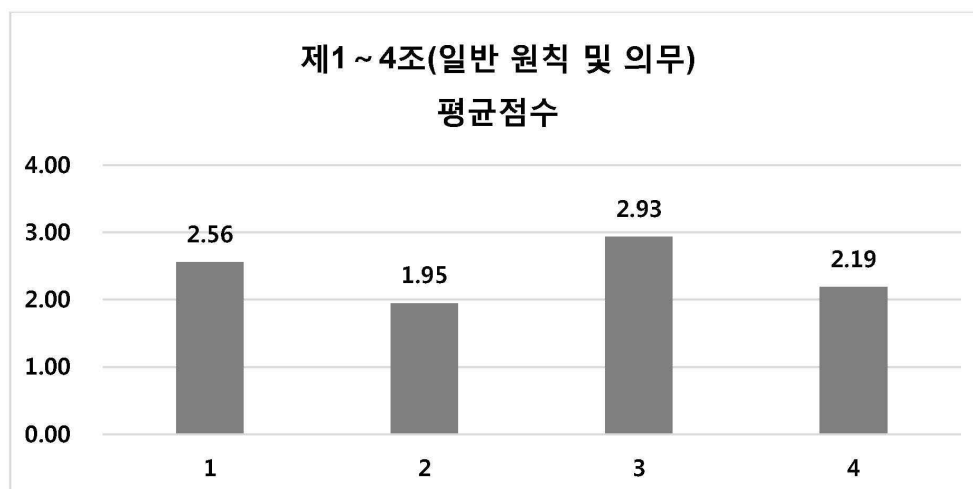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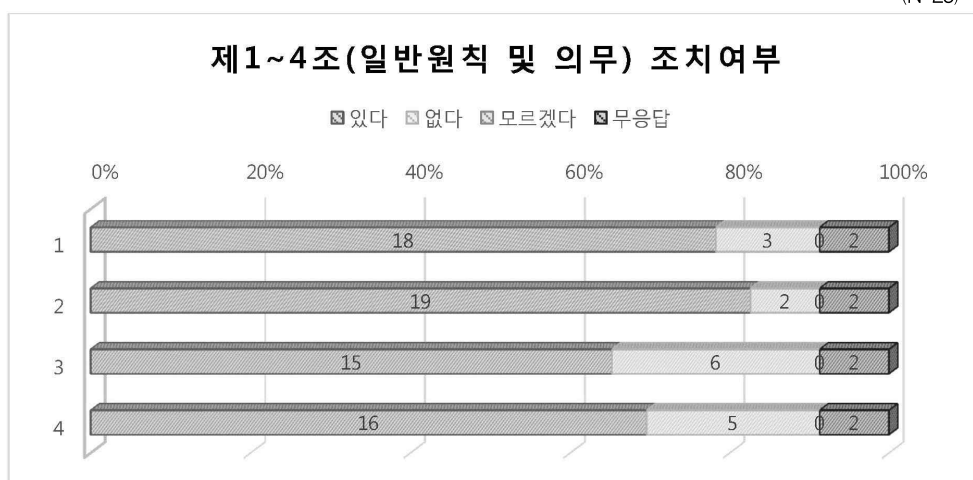
4. 조사결과

가. 제1~4조(일반원칙 및 의무)

※ 제1~4조(일반원칙 및 의무) 설문 문항

- 1-1. 협약에서 주장하는 '장애에 대한 인권적 접근(human rights-based approach to disability)'과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법]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만약 한국 정부가 법 개정을 위한 조치를 취했다면, 그 방향이 협약과 부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1-2. 협약에서 주장하는 '장애에 대한 인권적 접근(human rights-based approach to disability)'과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법]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만약 한국 정부가 법 개정을 위한 조치를 취했다면, 그 조치가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1-3. 장애인의 요구에 따라, 복지서비스 및 활동지원 서비스가 정신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유형의 장애인에게로 확대되었다면, 그 확대 조치가 적절하였습니까?
- 1-4. 장애인의 요구에 따라, 복지서비스 및 활동지원 서비스가 정신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유형의 장애인에게로 확대되었다면, 그 확대 조치가 충분하였습니까?

(N=23)95



문항번호	1	2	3	4
표준편차	2.02	1.70	2.38	2.46

(막대그래프 상단에 있는 숫자는 응답의 평균점수이고, 하단의 표는 각 문항별 해당 표준편차의 값임. 이하 같음.)

95) 이하 모든 문항 동일함.

제1~4조(일반원칙 및 의무)에 관한 조치의 부합성, 적절성, 충분성 등을 평가한 결과 ‘장애인의 요구에 따라, 복지서비스가 정신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유형의 장애인에게 확대되었다면, 그 확대 조치가 적절하였습니까?’에 대한 응답이 2.93/5점이었으며, ‘그저 그렇다(3점)’와 ‘별로 적절하지 않았다(2점)’ 사이 수준으로 가장 높았다.

반면, ‘협약에서 주장하는 “장애에 대한 인권적 접근(human rights-based approach to disability)”과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법」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만약 한국 정부가 법 개정을 위한 조치를 취했다면, 그 조치가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은 1.95/5점이었으며, ‘전혀 충분하지 않다(1점)’와 ‘별로 충분하지 않다(2점)’ 사이 수준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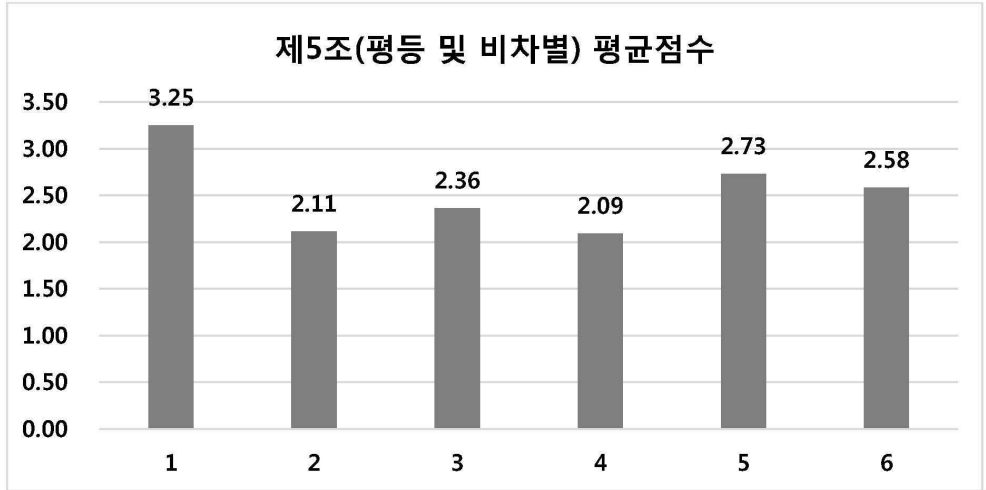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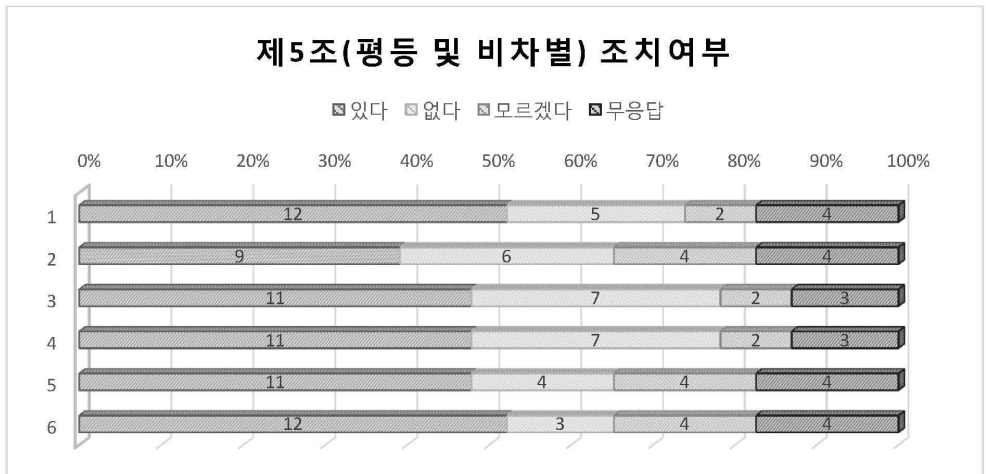
또한, ‘협약에서 주장하는 “장애에 대한 인권적 접근(human rights-based approach to disability)”과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법」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만약 한국 정부가 법 개정을 위한 조치를 취했다면, 그 조치가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의 경우 장애인권리협약 제1~4조 설문 응답자 중 가장 많은 19명(82.6%)이 인지를 하고 있었으나, 평가 점수는 가장 낮았다.

나. 제5조(평등 및 비차별)

※ 제5조(평등 및 비차별) 설문 문항

- 2-1. 장애인 차별 피해자들이 법원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소송비용을 면제 또는 경감하기 위한 현행 제도가 있다면, 그 제도는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2-2. 장애인 차별 피해자들이 법원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소송비용을 면제 또는 경감하기 위한 현행 제도가 있다면, 그 제도는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2-3. 위원회는 현행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3조의 법무부 장관 시정명령 요건이 너무 제한적이니, 이를 완화하여 시정명령이 더 많이 나올 수 있게 함으로써, 이 법을 더 강화시킬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만약 이에 따라 한국 정부가 취한 조치가 있었다면, 그 조치는 적절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 2-4. 위원회는 현행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3조의 법무부 장관 시정명령 요건이 너무 제한적이니, 이를 완화하여 시정명령이 더 많이 나올 수 있게 함으로써, 이 법을 더 강화시킬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만약 이에 따라 한국 정부가 취한 조치가 있었다면, 그 조치는 충분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 2-5. 위원회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효과적인 이행 필요성 및 법관에게 부여된 명령 권한을 제대로 인식할 필요성에 대해, 법관들의 인식을 제고할 것을 권고한 바 있었습니다. 만약 이에 따라 한국 정부가 취한 조치가 있었다면, 그 조치는 적절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2-6. 위원회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효과적인 이행 필요성 및 법관에게 부여된 명령 권한을 제대로 인식할 필요성에 대해, 법관들의 인식을 제고할 것을 권고한 바 있었습니다. 만약 이에 따라 한국 정부가 취한 조치가 있었다면, 그 조치는 충분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항번호	1	2	3	4	5	6
표준편차	2.70	2.82	2.73	2.74	2.54	2.46

제5조(평등 및 비차별)에 관한 지원 및 조치의 적절성, 충분성을 평가한 결과, ‘장애인 차별 피해자들이 법원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소송비용을 면제 또는 경감하기 위한 현행 제도가 있다면, 그 제도는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평균점수는 3.25/5점이었으며, ‘그저 그렇다(3점)’와 ‘약간 적절했다(4점)’ 사이로 가장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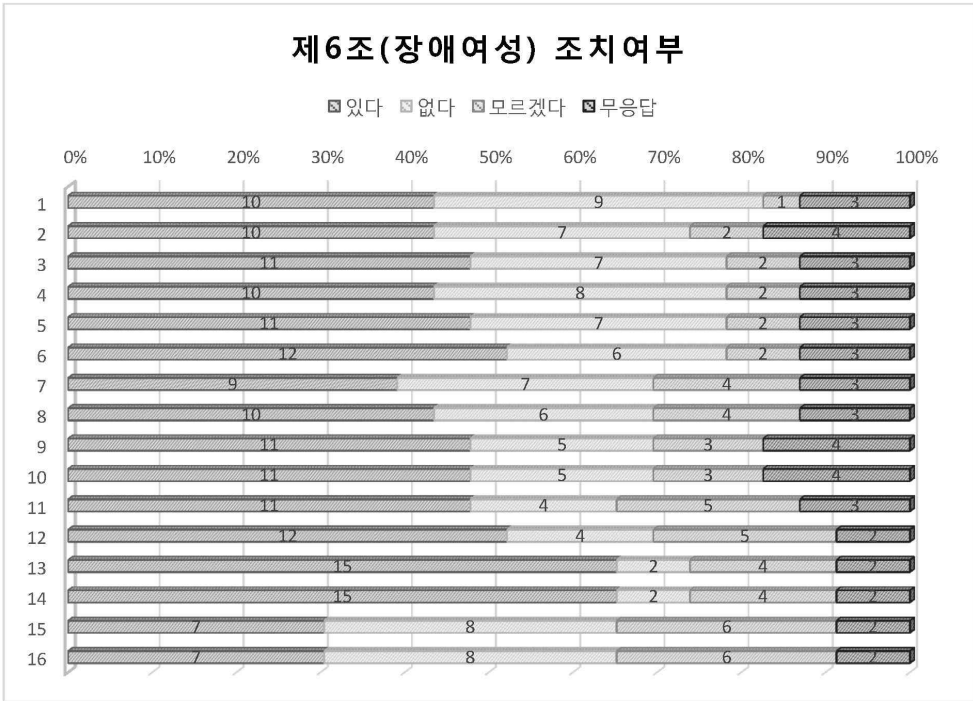
반면, ‘위원회는 현행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3조의 법무부 장관 시정명령 요건이 너무 제한적이니, 이를 완화하여 시정명령이 더 많이 나올 수 있게 함으로써, 이 법을 더 강화시킬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만약 이에 따라 한국 정부가 취한 조치가 있었다면, 그 조치는 충분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평균점수는 2.09/5점이었으며, ‘별로 충분하지 않았다(2점)’ 수준으로 가장 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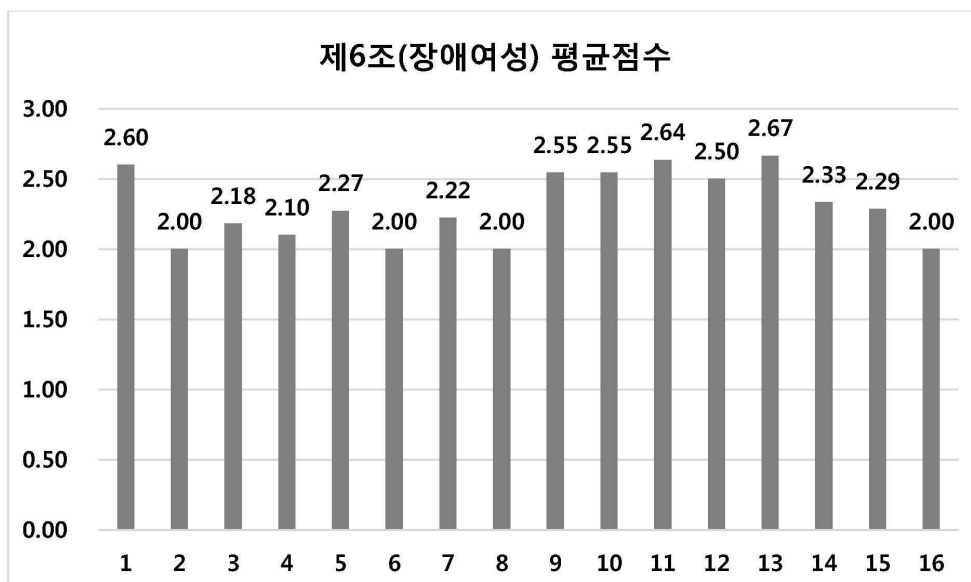
다. 제6조(장애여성)

※ 제6조(장애여성) 설문 문항

- 3-1. 만약 한국 정부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장애 관련 법률 및 정책에서 성 인지적 관점을 주류화하는 조치를 취한 게 있다면, 그 조치는 적절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 3-2. 만약 한국 정부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장애 관련 법률 및 정책에서 성 인지적 관점을 주류화하는 조치를 취한 게 있다면, 그 조치는 충분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 3-3. 만약 한국 정부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다중적 차별, 복합적 차별 해소 조치가 포함된 장애여성만을 위해 특화된 정책을 실시한 게 있다면, 그 정책은 적절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 3-4. 만약 한국 정부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다중적 차별, 복합적 차별 해소 조치가 포함된 장애여성만을 위해 특화된 정책을 실시한 게 있다면, 그 정책은 충분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 3-5. 만약 한국 정부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가족 내 정신적·신체적 폭력을 포함하여 거주시설 내·외부 장애 여성 폭력 해결에 대한 조치를 취한 게 있다면, 그 조치는 적절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 3-6. 만약 한국 정부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가족 내 정신적·신체적 폭력을 포함하여 거주시설 내·외부 장애 여성 폭력 해결에 대한 조치를 취한 게 있다면, 그 조치는 충분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 3-7. 만약 한국 정부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프로그램에의 장애인지적관점 도입을 위해 조치를 취한 게 있다면, 그 조치는 적절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 3-8. 만약 한국 정부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프로그램에의 장애인지적관점 도입을 위해 조치를 취한 게 있다면, 그 조치는 충분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 3-9. 만약 한국 정부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장애여성이 적절한 평생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정책을 펼친 게 있다면, 그 정책은 적절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 3-10. 만약 한국 정부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장애여성이 적절한 평생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정책을 펼친 게 있다면, 그 정책은 충분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 3-11. 만약 한국 정부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장애여성 평생교육을 위한 재정적 지원 정책을 펼친 게 있다면, 그 정책은 적절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 3-12. 만약 한국 정부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장애여성 평생교육을 위한 재정적 지원 정책을 펼친 게 있다면, 그 정책은 충분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 3-13. 만약 한국 정부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장애여성 임신출산 지원 확대 정책을 펼친 게 있다면, 그 정책은 적절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 3-14. 만약 한국 정부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장애여성 임신출산 지원 확대 정책을 펼친 게 있다면, 그 정책은 충분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 3-15. 만약 한국 정부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장애여성 강제불임, 낙태 또는 친권박탈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장치를 만든 게 있다면, 그 보호장치는 적절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 3-16. 만약 한국 정부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장애여성 강제불임, 낙태 또는 친권박탈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장치를 만든 게 있다면, 그 보호장치는 충분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항번호	1	2	3	4	5	6	7	8
표준편차	2.72	2.84	2.69	2.79	2.68	2.71	2.72	2.73
문항번호	9	10	11	12	13	14	15	16
표준편차	2.63	2.61	2.49	2.41	2.15	2.17	2.57	2.64

제6조(장애여성)에 관한 지원, 조치, 보장, 보호장치의 적절성과 충분성을 평가한 결과 ‘만약 한국 정부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장애여성 임신출산 지원 확대 정책을 펼친 게 있다면, 그 정책은 적절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평균점수는 2.67/5점이었으며, ‘그렇다(3점)’와 ‘별로 적절하지 않았다(2점)’사이로 가장 높았다.

반면, ‘만약 한국 정부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장애 관련 법률 및 정책에서 성 인지적 관점을 주류화하는 조치를 취한 게 있다면, 그 조치는 충분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한국 정부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가족 내 정신적·신체적 폭력을 포함하여 거주시설 내·외부 장애여성 폭력 해결에 대한 조치를 취한 게 있다면, 그 조치는 충분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한국 정부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프로그램에의 장애인지적관점 도입을 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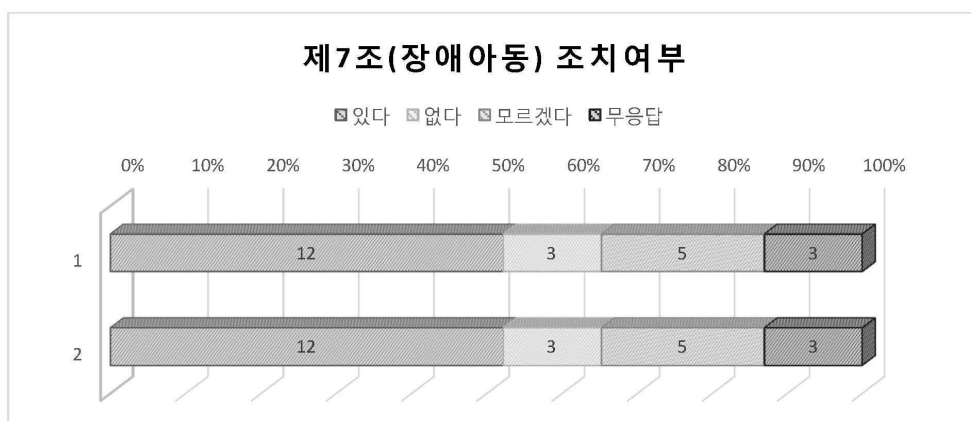
해 조치를 취한 게 있다면, 그 조치는 충분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한국 정부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장애여성 강제불임, 낙태 또는 친권박탈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장치를 만든 게 있다면, 그 보호장치는 충분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상 4개 문항에 대한 평균점수는 2.00/5점이었으며, 이는 ‘별로 충분하지 않았다(2점)’ 수준으로 가장 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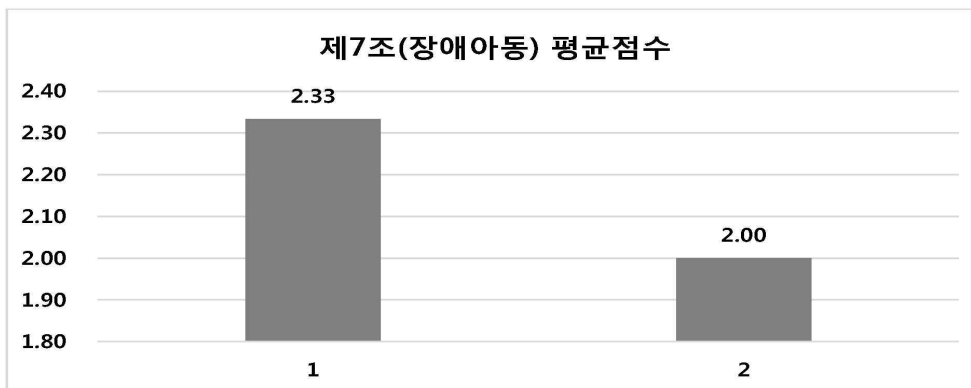
또한, ‘만약 한국 정부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장애여성 강제불임, 낙태 또는 친권박탈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장치를 만든 게 있다면, 그 보호장치의 적절/충분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2개 문항을 통해서 장애여성의 보호장치에 대한 인지 수준이 23명 중 7명(30.43%)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라. 제7조(장애아동)

※ 제7조(장애아동) 설문 문항

- 4-1. 만약 한국 정부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완전한 통합을 보장하기 위한 아동 관련 법령의 제·개정이나 정책 수립 시에, 대표단체를 통한 장애아동 및 그 가족들의 참여 수준을 극대화하기 위해 취한 조치가 있다면, 그 조치는 적절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 4-2. 만약 한국 정부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완전한 통합을 보장하기 위한 아동 관련 법령의 제·개정이나 정책 수립 시에, 대표단체를 통한 장애아동 및 그 가족들의 참여 수준을 극대화하기 위해 취한 조치가 있다면, 그 조치는 충분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항번호	1	2
표준편차	2.47	2.56

제7조(장애아동)에 관한 조치의 적절성과 충분성을 평가한 결과 ‘만약 한국 정부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완전한 통합을 보장하기 위한 아동 관련 법령의 제·개정이나 정책 수립 시에, 대표단체를 통한 장애아동 및 그 가족들의 참여 수준을 극대화하기 위해 취한 조치가 있다면, 그 조치는 적절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평균점수는 2.33/5점, ‘만약 한국 정부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완전한 통합을 보장하기 위한 아동 관련 법령의 제·개정이나 정책 수립 시에, 대표단체를 통한 장애아동 및 그 가족들의 참여 수준을 극대화하기 위해 취한 조치가 있다면, 그 조치는 충분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평균점수는 2.00/5점으로 적절성은 ‘그저 그렇다(3점)’와 ‘별로 적절(충분)하지 않았다(2점)’ 사이, 충분성은 ‘별로 적절(충분)하지 않았다(2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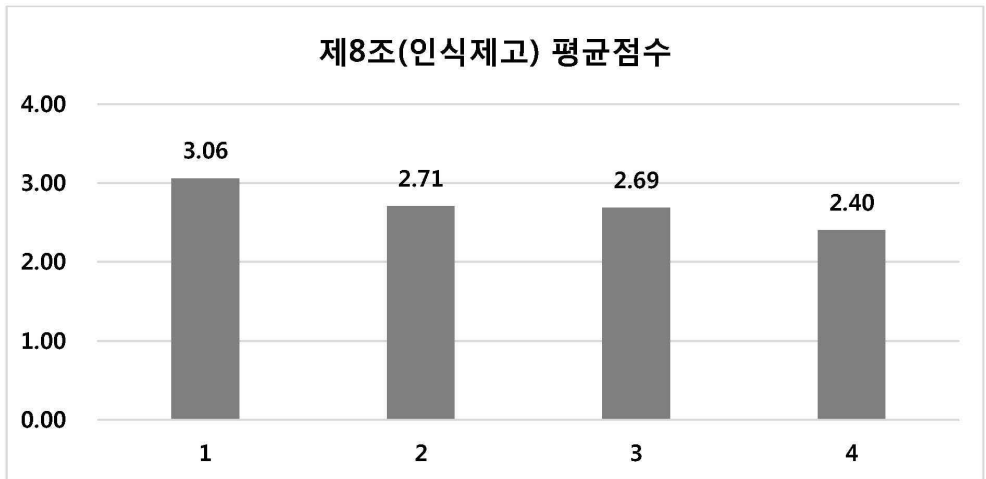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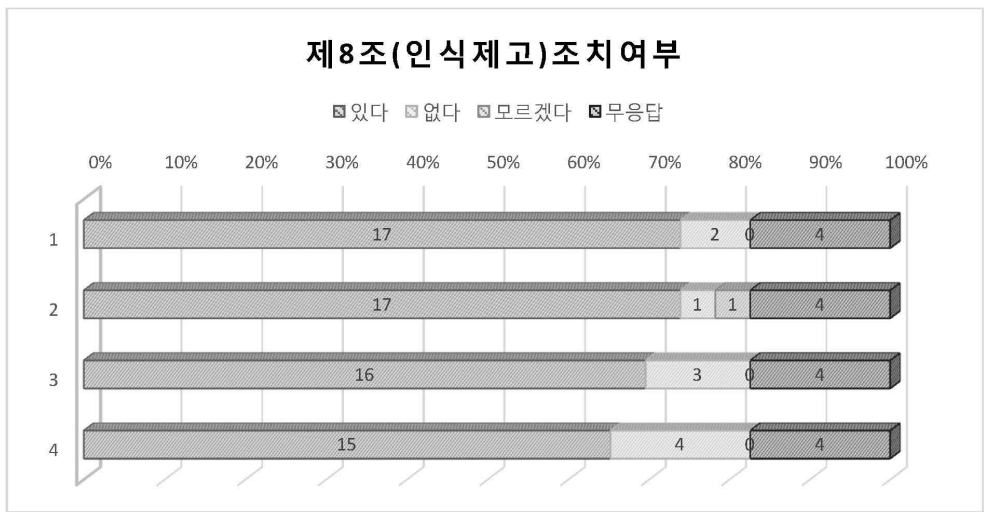
마. 제8조(인식제고)

※ 제8조(인식 제고) 설문 문항

- 5-1. 만약 한국 정부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장애인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확대하기 위해 인식제고 캠페인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한 게 있다면, 그 조치는 적절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 5-2. 만약 한국 정부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장애인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확대하기 위해 인식제고 캠페인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한 게 있다면, 그 조치는 충분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5-3. 만약 한국 정부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공무원, 국회의원, 언론 및 일반 대중 등에 대한 협약의 내용과 목적 교육을 제공하는 조치를 취한 게 있다면, 그 조치는 적절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5-4. 만약 한국 정부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공무원, 국회의원, 언론 및 일반 대중 등에 대한 협약의 내용과 목적 교육을 제공하는 조치를 취한 게 있다면, 그 조치는 충분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항번호	1	2	3	4
표준편차	1.94	1.83	2.15	2.28

제8조(인식제고)에 관한 조치의 적절성과 충분성을 평가한 결과 ‘만약 한국 정부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장애인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확대하기 위해 인식제고 캠페인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한 게 있다면, 그 조치는 적절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평균점수가 3.06/5점이었으며, ‘그저 그렇다(3점)’와 ‘약간 적절했다(4점)’ 사이로 가장 높았다.

반면, ‘만약 한국 정부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공무원, 국회의원, 언론 및 일반 대중 등에 대한 협약의 내용과 목적 교육을 제공하는 조치를 취한 게 있다면, 그 조치는 충분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평균점수는 2.40/5점이었으며, ‘그저 그렇다(3점)’와 ‘별로 충분하지 않았다(2점)’ 수준으로 가장 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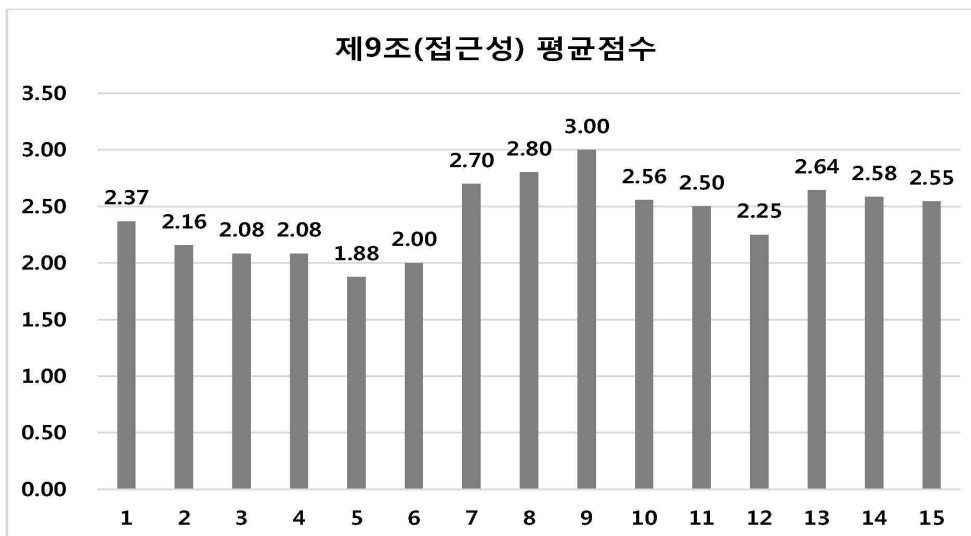
바. 제9조(접근성)

※ 제9조(접근성) 설문 문항

- 6-1. 만약 한국 정부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도시 간 교통을 포함하여 모든 형태의 대중교통 정책을 장애인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펼친 게 있다면, 그 정책은 적절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 6-2. 만약 한국 정부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도시 간 교통을 포함하여 모든 형태의 대중교통 정책을 장애인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펼친 게 있다면, 그 정책은 충분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 6-3. 만약 한국 정부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소규모 시설에 접근성 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게 있다면, 그 조치는 적절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 6-4. 만약 한국 정부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소규모 시설에 접근성 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게 있다면, 그 조치는 충분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 6-5. 만약 한국 정부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건축일자와 무관한 시설 접근성 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게 있다면, 그 조치는 적절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 6-6. 만약 한국 정부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건축일자와 무관한 시설 접근성 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게 있다면, 그 조치는 충분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 6-7. 만약 한국 정부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인터넷에 대한 접근성 개선을 위한 법령을 개정한 게 있다면, 그 개정은 적절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 6-8. 만약 한국 정부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인터넷에 대한 접근성 개선을 위한 법령을 개정한 게 있다면, 그 개정은 충분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 6-9. 만약 한국 정부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스마트폰에 대한 접근성 개선을 위한 법령을 개정한 게 있다면, 그 개정은 적절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 6-10. 만약 한국 정부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스마트폰에 대한 접근성 개선을 위한 법령을 개정한 게 있다면, 그 개정은 충분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 6-11. 만약 한국 정부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소비자용 전자제품에 대한 접근성 개선을 위한 법령을 개정한 게 있다면, 그 개정은 적절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 6-12. 만약 한국 정부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소비자용 전자제품에 대한 접근성 개선을 위한 법령을 개정한 게 있다면, 그 개정은 충분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 6-13. 만약 한국 정부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공공 및 민간시설과 관련된 장애물없는생활환경인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조치를 취한 게 있다면, 그에 따라 실효성이 높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 6-14. 만약 한국 정부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민간시설의 장애물없는생활환경인증제도 참여 증진 조치를 취한 게 있다면, 그 조치는 적절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 6-15. 만약 한국 정부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민간시설의 장애물없는생활환경인증제도 참여 증진 조치를 취한 게 있다면, 그 조치는 충분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항번호	1	2	3	4	5	6	7	8
표준편차	1.22	1.20	2.70	2.70	2.99	2.93	2.55	2.55
문항번호	9	10	11	12	13	14	15	
표준편차	2.60	2.70	2.87	2.89	2.15	2.48	2.65	

제9조(접근성)에 관한 정책, 법령, 조치의 적절성과 충분성을 평가한 결과 ‘만약 한국 정부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스마트폰에 대한 접근성 개선을 위한 법령을 개정한 게 있다면, 그 개정은 적절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평균점수는 3.00/5점 이었으며, ‘그저 그렇다(3점)’ 수준으로 가장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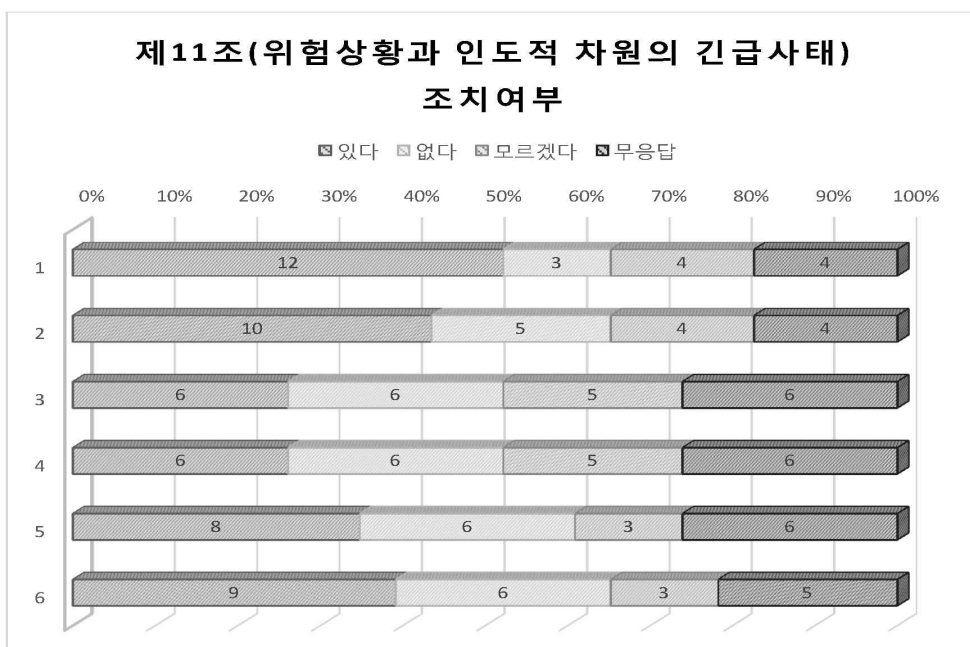
반면, ‘만약 한국 정부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건축일자와 무관한 시설 접근성 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게 있다면, 그 조치는 적절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평균점수는 1.88/5점이었으며, ‘별로 적절/충분하지 않았다(2점)’와 ‘전혀 적절/충분하지 않았다(1점)’ 수준으로 가장 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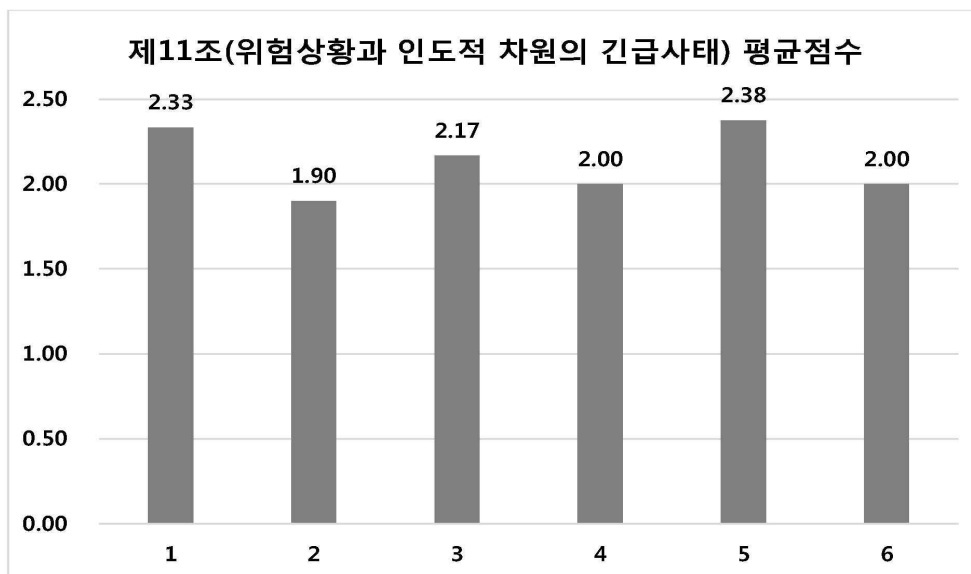
한편, ‘만약 한국 정부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도시 간 교통을 포함하여 모든 형태의 대중교통 정책을 장애인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펼친 게 있다면, 그 정책은 적절/충분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의 문항 응답자 23명 중 19명(82.6%)이 장애인 대중교통 정책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 제11조(위험상황과 인도적 차원의 긴급사태)

※ 제11조(위험상황과 인도적 차원의 긴급사태) 설문 문항

- 7-1. 만약 한국 정부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자연재해를 포함한 위험에서 장애인을 보호하고, 재난 등에서 보편적 접근성 및 장애포괄성을 확보하기 위한 종합적 계획을 채택하고 이행한 게 있다면, 그 계획과 그 이행은 적절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 7-2. 만약 한국 정부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자연재해를 포함한 위험에서 장애인을 보호하고, 재난 등에서 보편적 접근성 및 장애포괄성을 확보하기 위한 종합적 계획을 채택하고 이행한 게 있다면, 그 계획과 그 이행은 충분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 7-3. 만약 한국 정부가 '센다이 프레임워크'에 따라, 국가 및 지역 수준에서의 재난위험 감소계획 및 전략에, 모든 위험 상황에서의 장애인의 접근 및 통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취한 조치가 있다면, 그 조치는 적절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 7-4. 만약 한국 정부가 '센다이 프레임워크'에 따라, 국가 및 지역 수준에서의 재난위험 감소계획 및 전략에, 모든 위험 상황에서의 장애인의 접근 및 통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취한 조치가 있다면, 그 조치는 충분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 7-5. 만약 한국 정부가 '인천전략 목표 7'에 따라, 국가 및 지역 수준에서의 재난위험 감소계획 및 전략에, 모든 위험 상황에서의 장애인의 접근 및 통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취한 조치가 있다면, 그 조치는 적절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 7-6. 만약 한국 정부가 '인천전략 목표 7'에 따라, 국가 및 지역 수준에서의 재난위험 감소계획 및 전략에, 모든 위험 상황에서의 장애인의 접근 및 통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취한 조치가 있다면, 그 조치는 충분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항번호	1	2	3	4	5	6
표준편차	2.68	2.97	2.98	2.99	2.87	2.87

제11조(위험상황과 인도적 차원의 긴급사태)에 관한 계획과 이행, 조치의 적절성과 충분성을 평가한 결과 만약 한국 정부가 ‘인천전략 목표 7’에 따라, 국가 및 지역 수준에서의 재난위험 감소계획 및 전략에, 모든 위험 상황에서의 장애인의 접근 및 통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취한 조치가 있다면, 그 조치는 적절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평균점수는 2.38/5점이었으며, ‘그저 그렇다(3점)’와 ‘별로 적절하지 않았다(2점)’ 사이로 가장 높았다.

반면, ‘만약 한국 정부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자연재해를 포함한 위험에서 장애인을 보호하고, 재난 등에서 보편적 접근성 및 장애포괄성을 확보하기 위한 종합적 계획을 채택하고 이행한 게 있다면, 그 계획과 그 이행은 충분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평균점수는 1.90/5점이었으며, ‘별로 충분하지 않았다(2점)’와 ‘전혀 충분하지 않았다(1점)’ 수준으로 가장 낮았다.

또한, 만약 한국 정부가 ‘센다이 프레임워크’에 따라, 국가 및 지역 수준에서의 재난위험 감소계획 및 전략에, 모든 위험 상황에서의 장애인의 접근 및 통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취한 조치가 있다면, 그 조치는 적절/충분

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의 문항 응답자 23명 중 6명(26.08%)이 센다이 프레임 워크에 따른 장애인 접근, 통합 보장 조치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 제12조(법 앞의 동등한 인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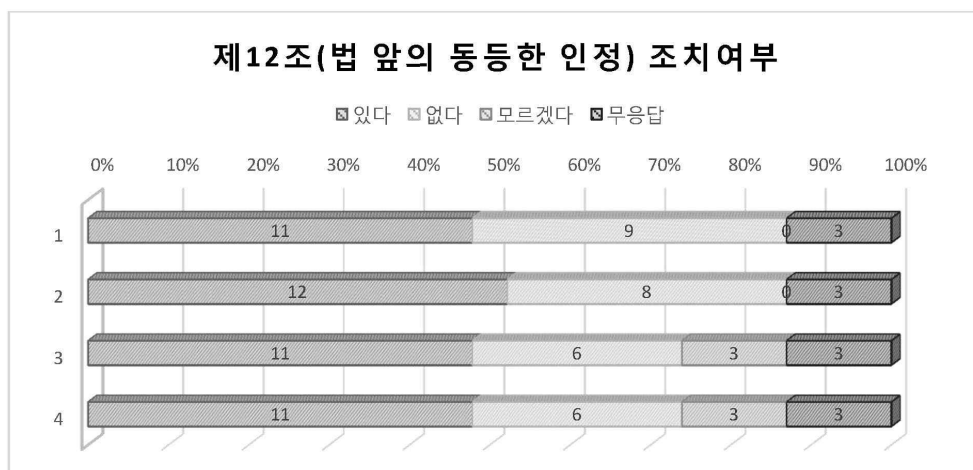
※ 제12조(법 앞의 동등한 인정) 설문 문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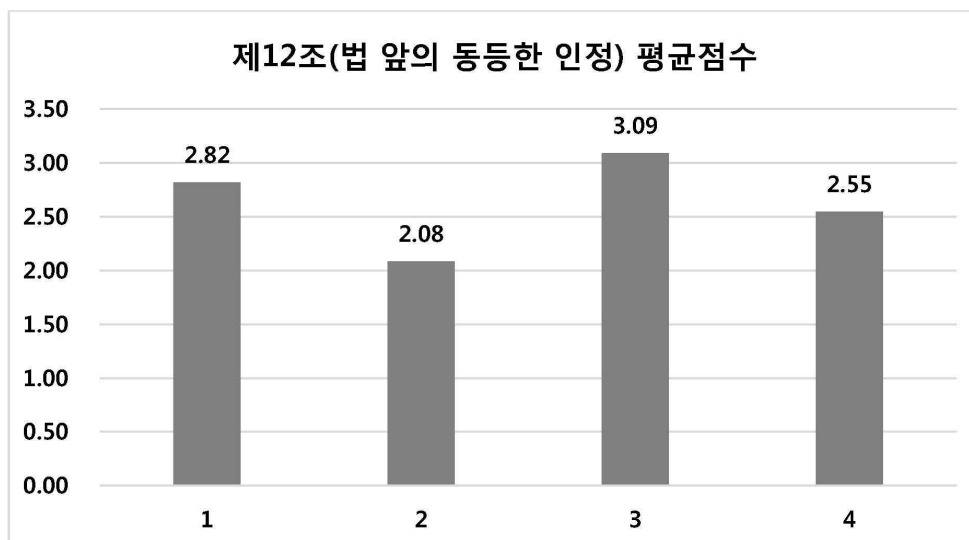
8-1. 만약 한국 정부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대리의사결정’에서 ‘조력의사결정’으로 전환하는데 있어서 진전된 부분이 있었다면, 그 진전은 적절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8-2. 만약 한국 정부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대리의사결정’에서 ‘조력의사결정’으로 전환하는데 있어서 진전된 부분이 있었다면, 그 진전은 충분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8-3. 만약 한국 정부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대표단체를 통한 장애인들과의 협의 및 협력을 바탕으로, 국가, 지방, 지역 수준에서 공무원, 판사 및 사회복지사를 포함한 모든 행위자들을 대상으로 한, 법적 능력과 조력의사결정 메커니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면, 그 교육은 적절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8-4. 만약 한국 정부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대표단체를 통한 장애인들과의 협의 및 협력을 바탕으로, 국가, 지방, 지역 수준에서 공무원, 판사 및 사회복지사를 포함한 모든 행위자들을 대상으로 한, 법적 능력과 조력의사결정 메커니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면, 그 교육은 충분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항번호	1	2	3	4
표준편차	2.68	2.76	2.49	2.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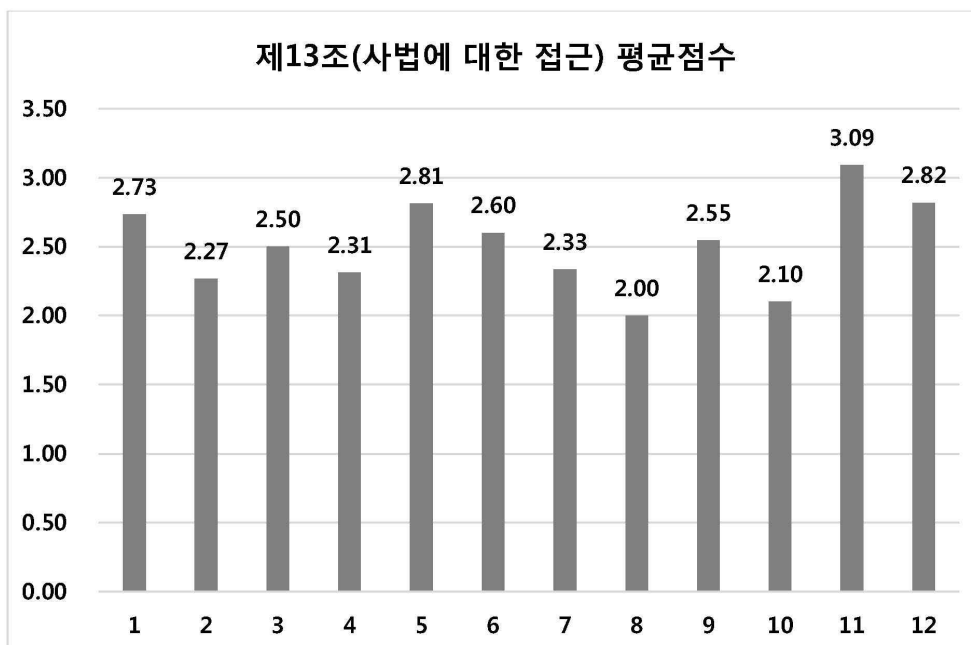
제12조(법 앞의 동등한 인정)에 관한 전환과 교육의 적절성과 충분성을 평가한 결과 ‘만약 한국 정부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대표단체를 통한 장애인들과의 협의 및 협력을 바탕으로, 국가, 지방, 지역 수준에서 공무원, 판사 및 사회복지사를 포함한 모든 행위자들을 대상으로 한, 법적 능력과 조력 의사결정 메커니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면, 그 교육은 적절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평균점수는 3.09/5점이었으며, ‘그저 그렇다(3점)’ 수준으로 가장 높았다.

반면, ‘만약 한국 정부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대리의사결정’에서 ‘조력 의사결정’으로 전환하는데 있어서 진전된 부분이 있었다면, 그 진전은 충분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평균점수는 2.08/5점이었으며, ‘별로 충분하지 않았다(2점)’ 수준으로 가장 낮았다.

자. 제13조(사법에 대한 접근)

※ 제13조(사법에 대한 접근) 설문 문항

- 9-1. 한국 정부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의 이행을 위해 한 노력은 효과성이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9-2. 한국 정부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의 이행을 위해 한 노력은 충분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 9-3. 한국 정부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경찰·법조인 등에 대한 훈련에 포함된 장애인 업무에 관한 표준 모듈, 절차상에서 연령에 적합하고 성 인지적인 정당한 편의제공, 사법접근성 보장 등을 적절하게 실시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9-4. 한국 정부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경찰·법조인 등에 대한 훈련에 포함된 장애인 업무에 관한 표준 모듈, 절차상에서 연령에 적합하고 성 인지적인 정당한 편의제공, 사법접근성 보장 등을 충분히 실시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9-5. 한국 정부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대법원이 발간한 '장애인 사법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 이행을 위해 한 노력은 효과성이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9-6. 한국 정부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대법원이 발간한 '장애인 사법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 이행을 위해 한 노력은 충분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 9-7. 한국 정부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수감자 뿐 아니라 사법 및 공증 절차의 모든 단계에 있어서, 절차적 편의를 제공한 것은 적절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 9-8. 한국 정부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수감자 뿐 아니라 사법 및 공증 절차의 모든 단계에 있어서, 절차적 편의를 제공한 것은 충분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 9-9. 만약 한국 정부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유관 전문가 집단들을 대상으로 한, 수감자 뿐 아니라 사법 및 공증 절차의 모든 단계에 있어서 절차적 편의의 제공과 관련된 훈련이나 교육 등을 실시한 적이 있다면, 그 훈련이나 교육 등은 적절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 9-10. 만약 한국 정부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유관 전문가 집단들을 대상으로 한, 수감자 뿐 아니라 사법 및 공증 절차의 모든 단계에 있어서 절차적 편의의 제공과 관련된 훈련이나 교육 등을 실시한 적이 있다면, 그 훈련이나 교육 등은 충분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 9-11. 만약 한국 정부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장애인이 판사, 검사 및 변호사로서 일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정당한 편의 제공을 포함하여 취한 조치가 있다면, 그 조치는 적절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 9-12. 만약 한국 정부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장애인이 판사, 검사 및 변호사로서 일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정당한 편의 제공을 포함하여 취한 조치가 있다면, 그 조치는 충분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항번호	1	2	3	4	5	6
표준편차	1.92	1.89	1.57	1.55	1.68	1.64
문항번호	7	8	9	10	11	12
표준편차	2.35	1.75	2.44	2.52	2.33	2.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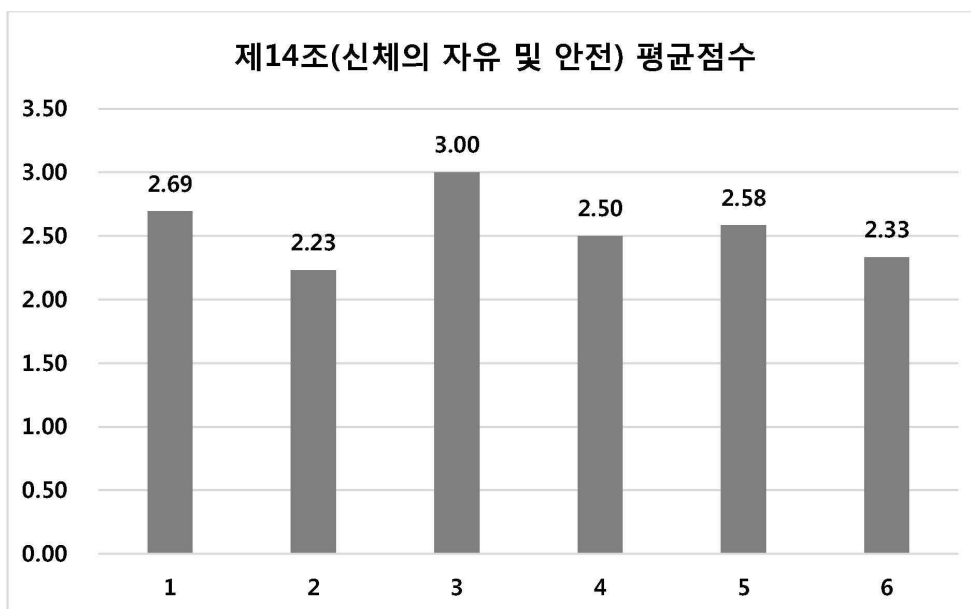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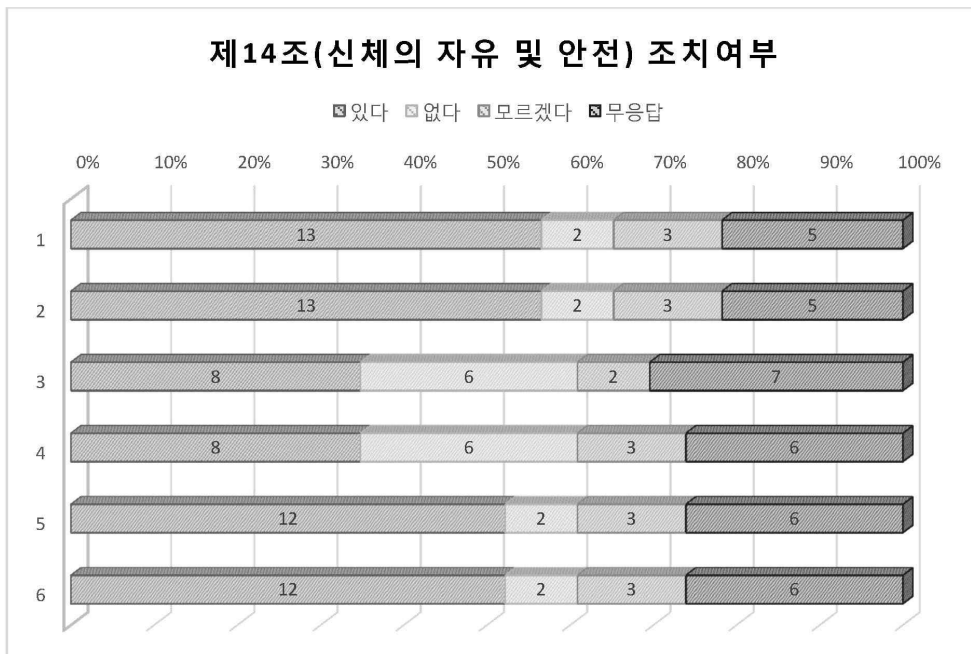
제13조(사법에 대한 접근)에 관한 이행노력과 실시, 제공, 조치 등의 효과성, 적절성, 충분성을 평가한 결과 ‘만약 한국 정부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장애인이 판사, 검사 및 변호사로서 일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정당한 편의 제공을 포함하여 취한 조치가 있다면, 그 조치는 적절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평균점수는 3.09/5점이었으며, ‘그저 그렇다(3점)’ 수준으로 가장 높았다.

반면, ‘한국 정부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수감자 뿐 아니라 사법 및 공중 절차의 모든 단계에 있어서, 절차적 편의를 제공한 것은 충분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평균점수는 2.00/3점이었으며, ‘별로 충분하지 않았다(2점)’ 수준으로 가장 낮았다.

차. 제14조(신체의 자유 및 안전)

※ 제14조(신체의 자유 및 안전) 설문 문항

- 10-1. 만약 한국 정부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모든 유형의 정신보건 서비스를 포함하여 보건서비스가 당사자의 자유로운 사전 동의에 근거하도록 취한 조치가 있다면, 그 조치는 적절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 10-2. 만약 한국 정부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모든 유형의 정신보건 서비스를 포함하여 보건서비스가 당사자의 자유로운 사전 동의에 근거하도록 취한 조치가 있다면, 그 조치는 충분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 10-3. 만약 한국 정부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병원 및 전문기관에서 벌어지는 장애인 자유 박탈 사례를 전수 점검한 적이 있다면, 그 점검은 적절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 10-4. 만약 한국 정부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병원 및 전문기관에서 벌어지는 장애인 자유 박탈 사례를 전수 점검한 적이 있다면, 그 점검은 충분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 10-5. 만약 한국 정부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장애인에 대해 공정한 재판과 적법절차를 보장하는 절차적 편의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적이 있다면, 그 조치는 적절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 10-6. 만약 한국 정부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장애인에 대해 공정한 재판과 적법절차를 보장하는 절차적 편의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적이 있다면, 그 조치는 충분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항번호	1	2	3	4	5	6
표준편차	2.37	2.39	2.90	2.89	2.44	2.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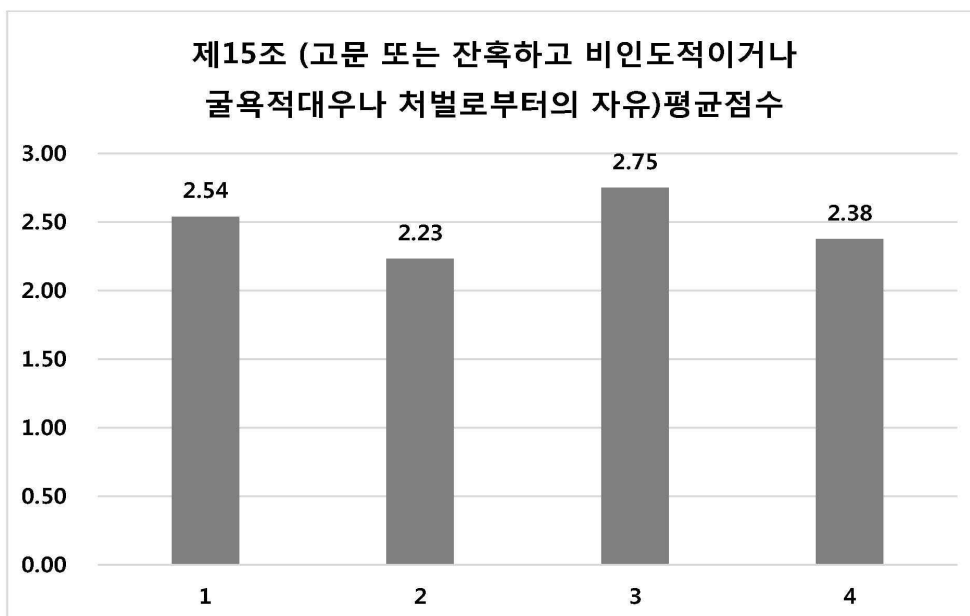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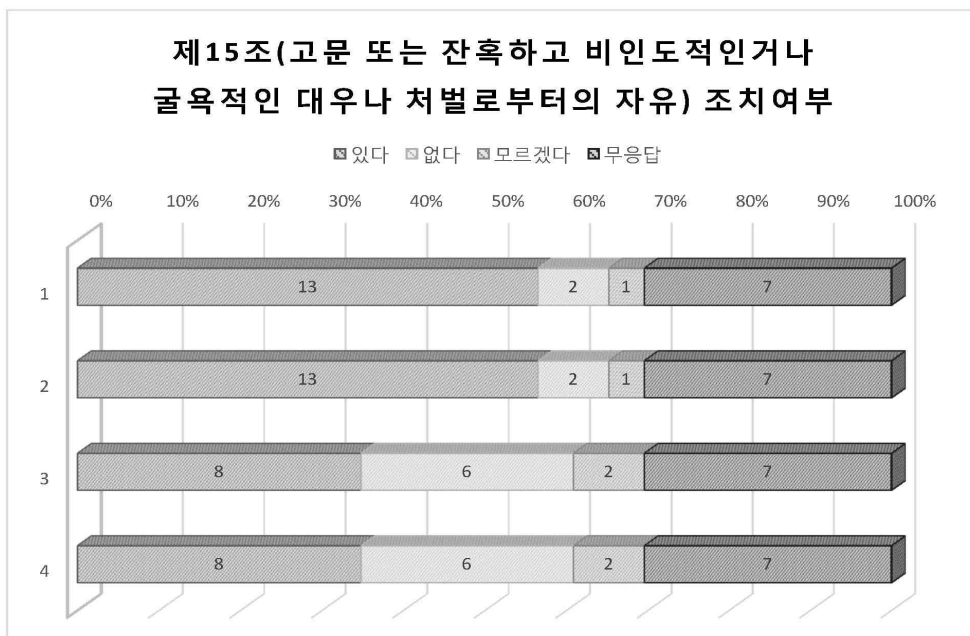
제14조(신체의 자유 및 안전)에 관한 조치, 점검의 적절성, 충분성을 평가한 결과 ‘만약 한국 정부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병원 및 전문기관에서 벌어지는 장애인 자유 박탈 사례를 전수 점검한 적이 있었다면, 그 점검은 적절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평균점수는 3.00/5점이었으며, ‘그저 그렇다(3점)’ 수준으로 가장 높았다.

반면, ‘만약 한국 정부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모든 유형의 정신보건 서비스를 포함하여 보건서비스가 당사자의 자유로운 사전 동의에 근거하도록 취한 조치가 있다면, 그 조치는 충분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평균점수는 2.23/5점이었으며, 이는 ‘그저 그렇다(3점)’와 ‘별로 충분하지 않았다(2점)’ 사이로 가장 낮았다.

카. 제15조 (고문 또는 잔혹하고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로부터의 자유)

※ 제15조(고문, 잔혹하고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 처벌로부터의 자유) 설문 문항

- 11-1. 만약 한국 정부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시설 퇴소 전까지 정신병원에 있는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모든 형태의 고문을 비롯하여 잔혹하고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취급으로부터의 효과적인 보호 조치를 강구한 적이 있었다면, 그 조치는 적절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 11-2. 만약 한국 정부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시설 퇴소 전까지 정신병원에 있는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모든 형태의 고문을 비롯하여 잔혹하고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취급으로부터의 효과적인 보호 조치를 강구한 적이 있었다면, 그 조치는 충분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 11-3. 만약 한국 정부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정신병원의 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하여 장애인 단체의 참여를 보장하는 독립적이고 실효성 있는 외부 감시 기구를 구성하는 조치를 취하였다면, 그 조치는 적절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 11-4. 만약 한국 정부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정신병원의 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하여 장애인 단체의 참여를 보장하는 독립적이고 실효성 있는 외부 감시 기구를 구성하는 조치를 취하였다면, 그 조치는 충분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항번호	1	2	3	4
표준편차	2.32	2.24	2.98	2.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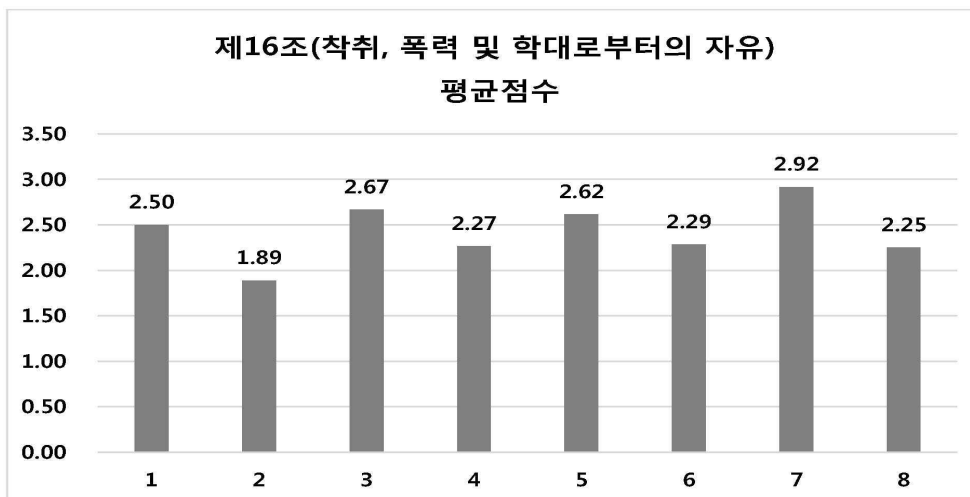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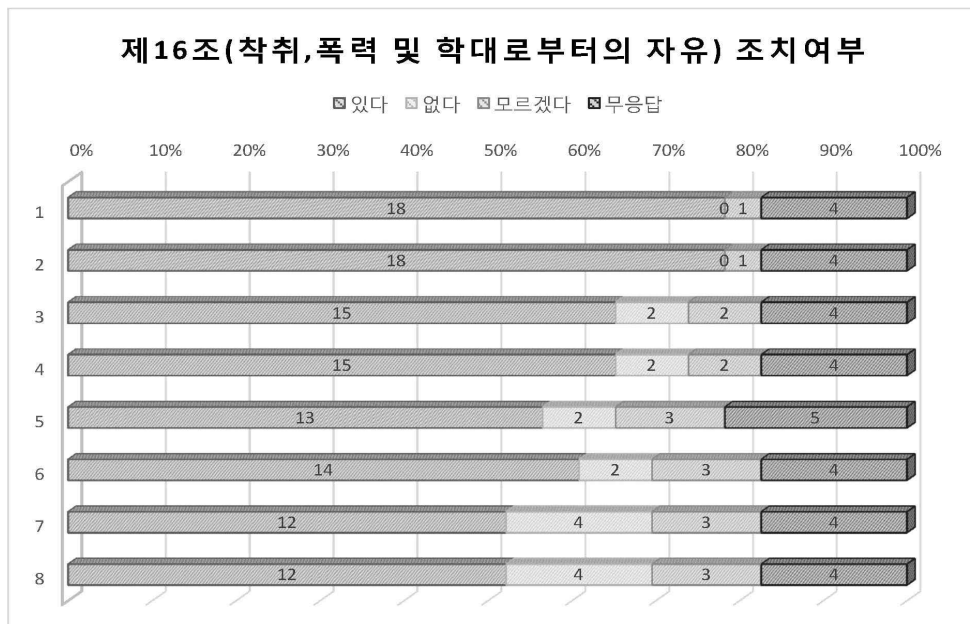
제15조(고문 또는 잔혹하고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로부터의 자유)에 관한 조치의 적절성과 충분성을 평가한 결과 ‘만약 한국 정부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정신병원의 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하여 장애인 단체의 참여를 보장하는 독립적이고 실효성 있는 외부 감시 기구를 구성하는 조치를 취하였다면, 그 조치는 적절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평균점수는 2.75/5점이었으며, 이는 ‘그저 그렇다(3점)’와 ‘별로 적절하지 않았다(2점)’ 사이로 가장 높았다.

반면, ‘만약 한국 정부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시설 퇴소 전까지 정신병원에 있는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모든 형태의 고문을 비롯하여 잔혹하고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취급으로부터의 효과적인 보호 조치를 강구한 적이 있었다면, 그 조치는 충분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평균점수는 2.23/5점으로 ‘별로 충분하지 않았다(2점)’에 가까워 가장 낮았다.

타. 제16조(착취, 폭력 및 학대로부터의 자유)

※ 제16조(착취, 폭력 및 학대로부터의 자유) 설문 문항

- 12-1. 만약 한국 정부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거주시설 내·외부 장애인에 대한 학대를 조사하고,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배상을 하며, 접근 가능한 쉼터를 제공하는 조치를 취하였다면, 그 조치는 적절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 12-2. 만약 한국 정부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거주시설 내·외부 장애인에 대한 학대를 조사하고,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배상을 하며, 접근 가능한 쉼터를 제공하는 조치를 취하였다면, 그 조치는 충분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 12-3. 만약 한국 정부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장애인 강제노역사건 피해자 조사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였다면, 그 조치는 적절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 12-4. 만약 한국 정부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장애인 강제노역사건 피해자 조사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였다면, 그 조치는 충분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 12-5. 만약 한국 정부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장애인 강제노역사건 피해자에게 보호를 제공하는 조치를 취하였다면, 그 조치는 적절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 12-6. 만약 한국 정부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장애인 강제노역사건 피해자에게 보호를 제공하는 조치를 취하였다면, 그 조치는 충분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 12-7. 만약 한국 정부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확정된 장애인 강제노역사건 피해자 보호를 위한 효과적인 장기 보호 조치를 취하였다면, 그 조치는 적절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 12-8. 만약 한국 정부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확정된 장애인 강제노역사건 피해자 보호를 위한 효과적인 장기 보호 조치를 취하였다면, 그 조치는 충분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항번호	1	2	3	4	5	6	7	8
표준편차	1.70	1.48	2.26	2.27	2.40	2.32	2.52	2.57

제16조(착취, 폭력 및 학대로부터의 자유)에 관한 조치의 적절성, 충분성을 평가한 결과 ‘만약 한국 정부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확정된 장애인 강제노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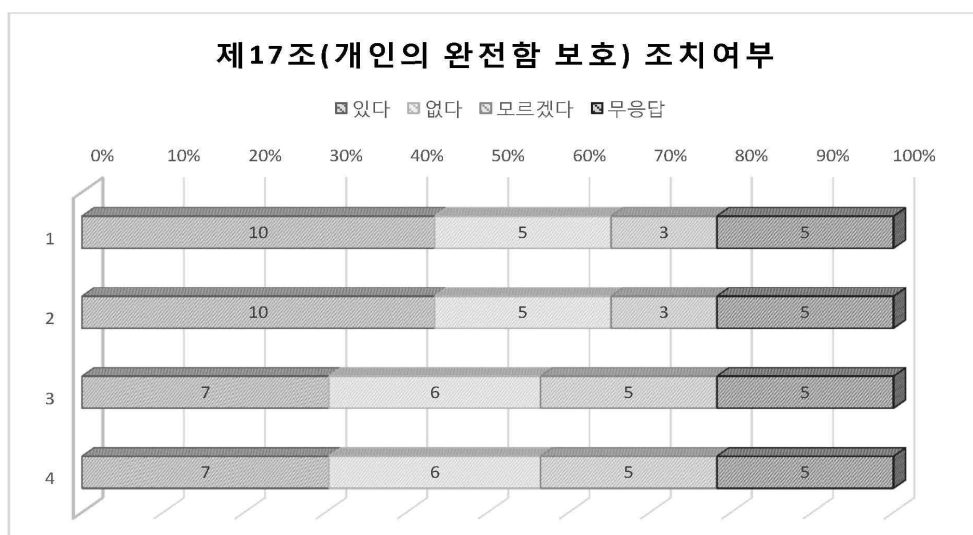
건 피해자 보호를 위한 효과적인 장기 보호 조치를 취하였다면, 그 조치는 적절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평균점수는 2.92/5점이었으며, 이는 ‘그저 그렇다(3점)’에 가까운 점수로 가장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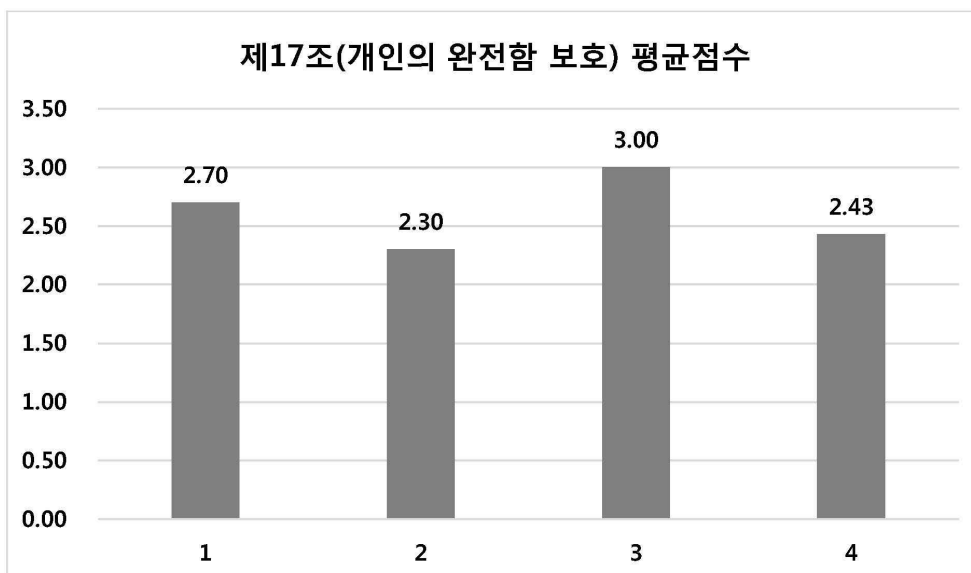
반면, ‘만약 한국 정부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거주시설 내·외부 장애인에 대한 학대를 조사하고,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배상을 하며, 접근 가능한 쉼터를 제공하는 조치를 취하였다면, 그 조치는 충분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평균점수는 1.89/5점이었으며, 이는 ‘별로 충분하지 않았다(2점)’에 가까운 점수로 가장 낮았다.

파. 제17조(개인의 완전함 보호)

※ 제17조(개인의 완전함 보호) 설문 문항

- 13-1. 만약 한국 정부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장애여성 및 장애소녀의 권리에 대한 인식제고 조치를 취하였다면, 그 조치는 적절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 13-2. 만약 한국 정부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장애여성 및 장애소녀의 권리에 대한 인식제고 조치를 취하였다면, 그 조치는 충분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 13-3. 만약 한국 정부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강제불임 보호 메커니즘의 효과성과 접근성 보장 등의 근절 및 인식제고 활동을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면, 그 조치는 적절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 13-4. 만약 한국 정부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강제불임 보호 메커니즘의 효과성과 접근성 보장 등의 근절 및 인식제고 활동을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면, 그 조치는 충분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항번호	1	2	3	4
표준편차	2.75	2.75	2.82	2.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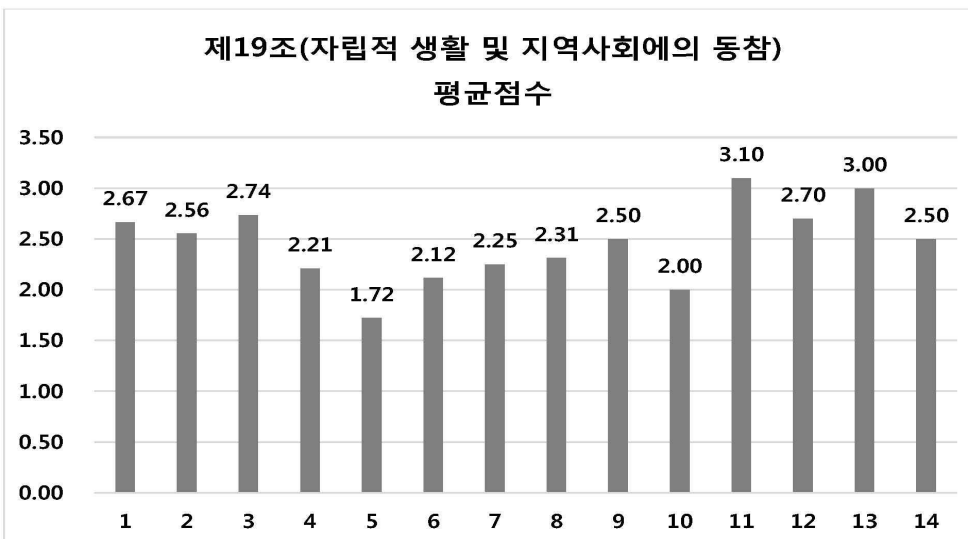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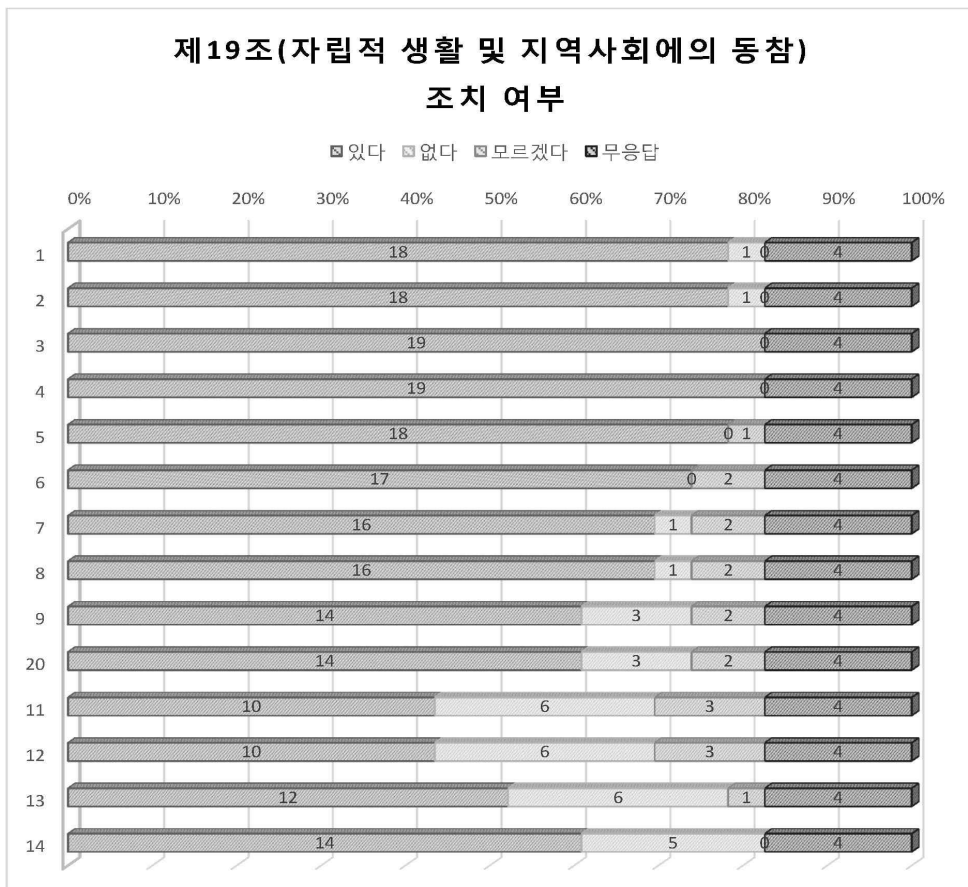
제17조(개인의 완전함 보호)에 관한 조치의 적절성, 충분성을 평가한 결과 ‘만약 한국 정부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강제불임 보호 메커니즘의 효과성과 접근성 보장 등의 근절 및 인식제고 활동을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면, 그 조치는 적절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평균점수는 3.00/5점이었으며, 이는 ‘그저 그렇다(3점)’ 수준으로 가장 높았다.

반면, ‘만약 한국 정부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장애여성 및 장애소녀의 권리에 대한 인식제고 조치를 취하였다면, 그 조치는 충분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점수는 2.30/5점이었으며, 이는 ‘별로 충분하지 않았다(2점)’에 가까운 점수로 가장 낮았다.

하. 제19조(자립적 생활 및 지역사회에의 동참)

※ 제19조(자립적 생활 및 지역사회에의 동참) 설문 문항

- 14-1. 만약 한국 정부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탈시설화 전략을 세우고 이행하였다면, 그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14-2. 만약 한국 정부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탈시설화 전략을 세우고 이행하였다면, 그 전략이 장애에 대한 인권적 모델에 얼마나 부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14-3. 만약 한국 정부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활동보조서비스를 포함한 지원서비스를 확대하는 조치를 취하였다면, 그 조치는 적절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 14-4. 만약 한국 정부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활동보조서비스를 포함한 지원서비스를 확대하는 조치를 취하였다면, 그 조치는 충분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 14-5.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에 대한 사회부조 프로그램(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의 재정지원은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14-6.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에 대한 사회부조 프로그램(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의 재정지원은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14-7. 만약 한국 정부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일반논평 제5호에 따른 효과적인 탈시설 달성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면, 그 조치는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14-8. 만약 한국 정부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일반논평 제5호에 따른 효과적인 탈시설 달성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면, 그 조치는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14-9. 만약 한국 정부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활동보조서비스 이용료 산정 근거를 장애등급에서 장애인의 특성·상황·욕구 등으로 전환하였다면, 그 조치는 적절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 14-10. 만약 한국 정부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활동보조서비스 이용료 산정 근거를 장애등급에서 장애인의 특성·상황·욕구 등으로 전환하였다면, 그 조치는 충분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 14-11. 만약 한국 정부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활동보조서비스 이용료 산정 근거를 가족소득 기준에서 본인 소득 기준으로 전환하였다면, 그 조치는 적절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 14-12. 만약 한국 정부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활동보조서비스 이용료 산정 근거를 가족소득 기준에서 본인 소득 기준으로 전환하였다면, 그 조치는 충분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 14-13. 만약 한국 정부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손상의 정도나 가족의 수입이 아니라 욕구 등에 기반하여, 활동보조서비스 및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를 포함하여 지역사회에서 제공되는 장애 관련 지원 서비스를 증가시키기 위한 정책 또는 그에 대한 계획을 이행하였다면, 그 조치는 적절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 14-14. 만약 한국 정부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손상의 정도나 가족의 수입이 아니라 욕구 등에 기반하여, 활동보조서비스 및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를 포함하여 지역사회에서 제공되는 장애 관련 지원 서비스를 증가시키기 위한 정책 또는 그에 대한 계획을 이행하였다면, 그 조치는 충분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항번호	1	2	3	4	5	6	7
표준편차	1.70	1.66	1.54	1.30	1.37	1.68	1.97
문항번호	8	9	10	11	12	13	14
표준편차	2.00	2.42	2.37	2.62	2.66	2.59	2.51

제19조(자립적 생활 및 지역사회에의 동참)의 효과성, 부합성, 적절성, 충분성 등을 평가한 결과 ‘만약 한국 정부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활동보조서비스 이용료 산정 근거를 가족소득 기준에서 본인 소득 기준으로 전환하였다면, 그 조치는 적절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평균점수는 3.10/5점이었으며, ‘그저 그렇다(3점)’ 수준으로 가장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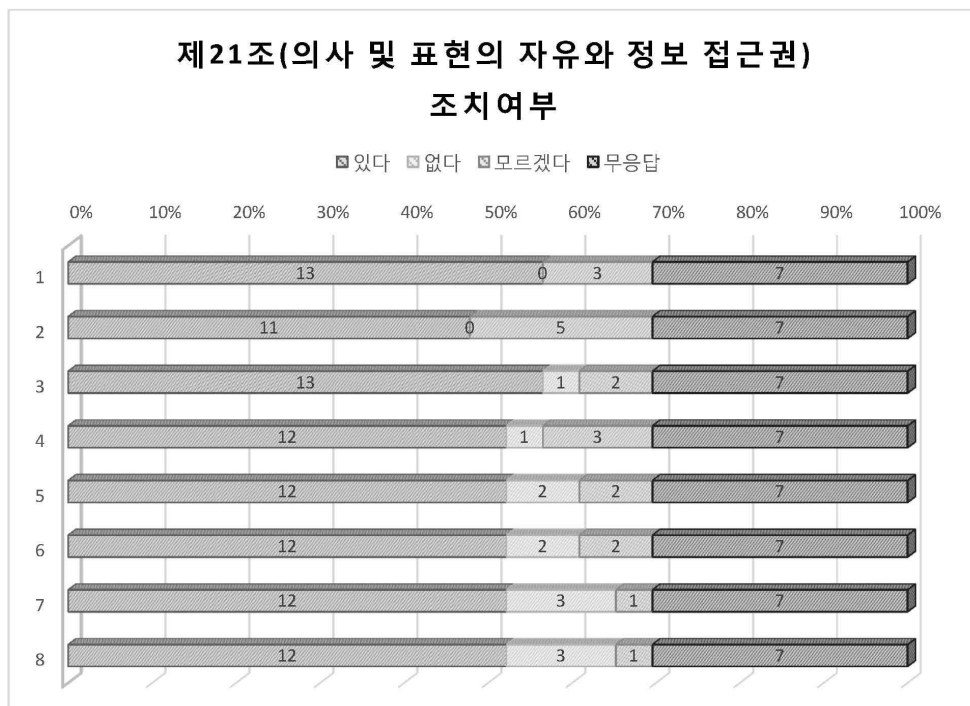
반면,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에 대한 사회부조 프로그램(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의 재정지원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평균점수는 1.72/5점이었으며, 이는 ‘전혀 충분하지 않다(1점)’와 ‘별로 충분하지 않다(2점)’ 사이 수준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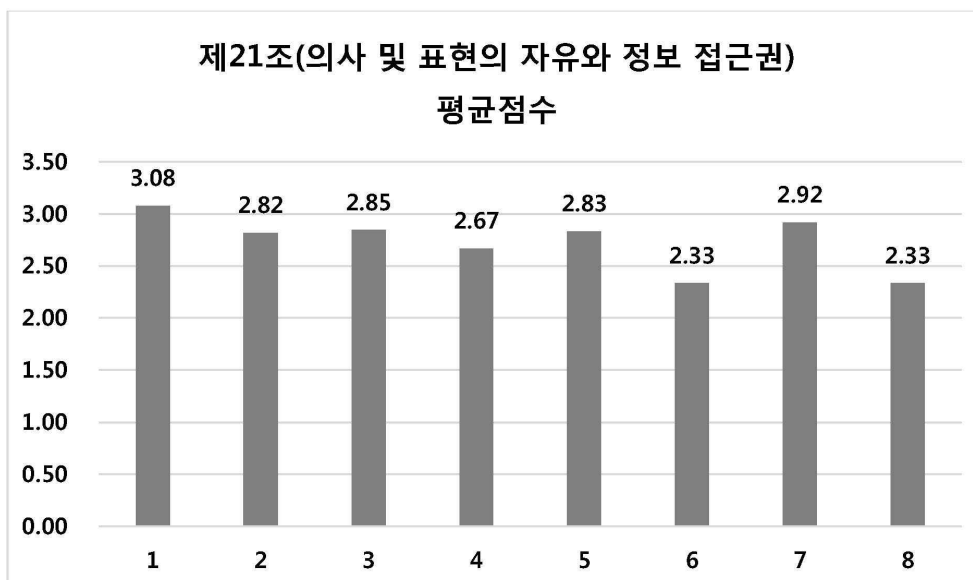
한편, ‘만약 한국 정부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활동보조서비스 이용료 산정 근거를 가족소득 기준에서 본인 소득 기준으로 전환하였다면, 그 조치는 적절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한국 정부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활동보조서비스 이용료 산정 근거를 가족소득 기준에서 본인 소득 기준으로 전환하였다면, 그 조치는 충분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해서 관련 조치를 인지하고 있는 응답자는 23명 중 10명(43.47%)으로 인지도가 낮았다. 그러나 인지도에 대비하여 적절성과 충분성에 대한 평균점수는 각각 3.10/5점, 2.70/5점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 제21조(의사 및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권)

※ 제21조(의사 및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권) 설문 문항

- 16-1. 한국수화언어법은 적절하게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16-2. 점자법은 적절하게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16-3. 만약 한국 정부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방송물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 보장 규정에 프로그램의 질에 관한 기준을 포함하여 시행하고 있다면, 그 기준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16-4. 만약 한국 정부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방송물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 보장 규정에 프로그램의 질에 관한 기준을 포함하여 시행하고 있다면, 그 기준은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16-5. 만약 한국 정부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방송물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 보장 규정에 정보 제공 기준을 포함하여 시행하고 있다면, 그 기준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16-6. 만약 한국 정부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방송물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 보장 규정에 정보 제공 기준을 포함하여 시행하고 있다면, 그 기준은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16-7. 만약 한국 정부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공공 정보를 읽기 쉽고(Easy Read) 접근 가능한 형식으로 제공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면, 그 조치는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16-8. 만약 한국 정부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공공 정보를 읽기 쉽고(Easy Read) 접근 가능한 형식으로 제공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면, 그 조치는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항번호	1	2	3	4	5	6	7	8
표준편차	2.23	2.37	2.21	2.31	2.39	2.40	2.51	2.48

제21조(의사 및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권)에 관한 적절성 충분성 등을 평가한 결과 ‘한국수화언어법은 적절하게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평균점수는 3.08/5점이었으며, 이는 ‘그저 그렇다(3점)’ 수준으로 가장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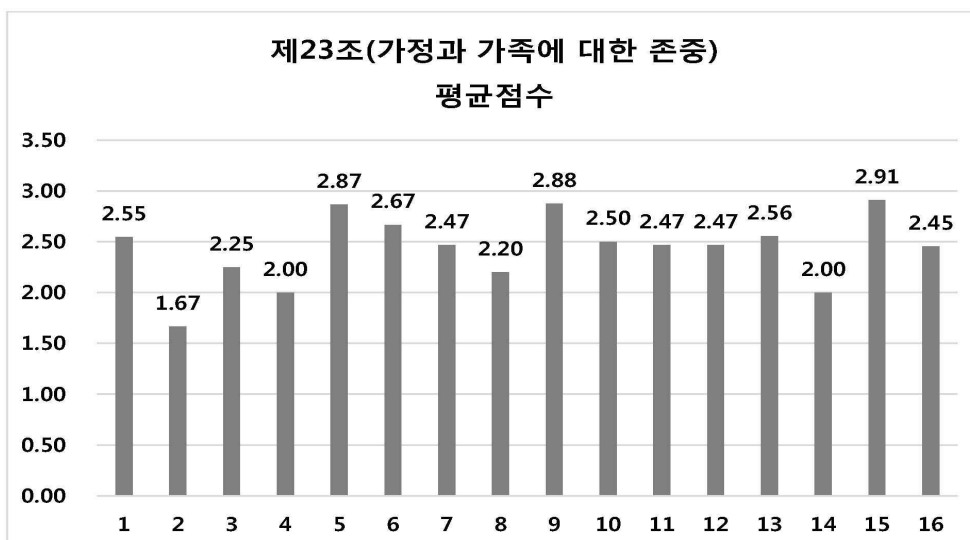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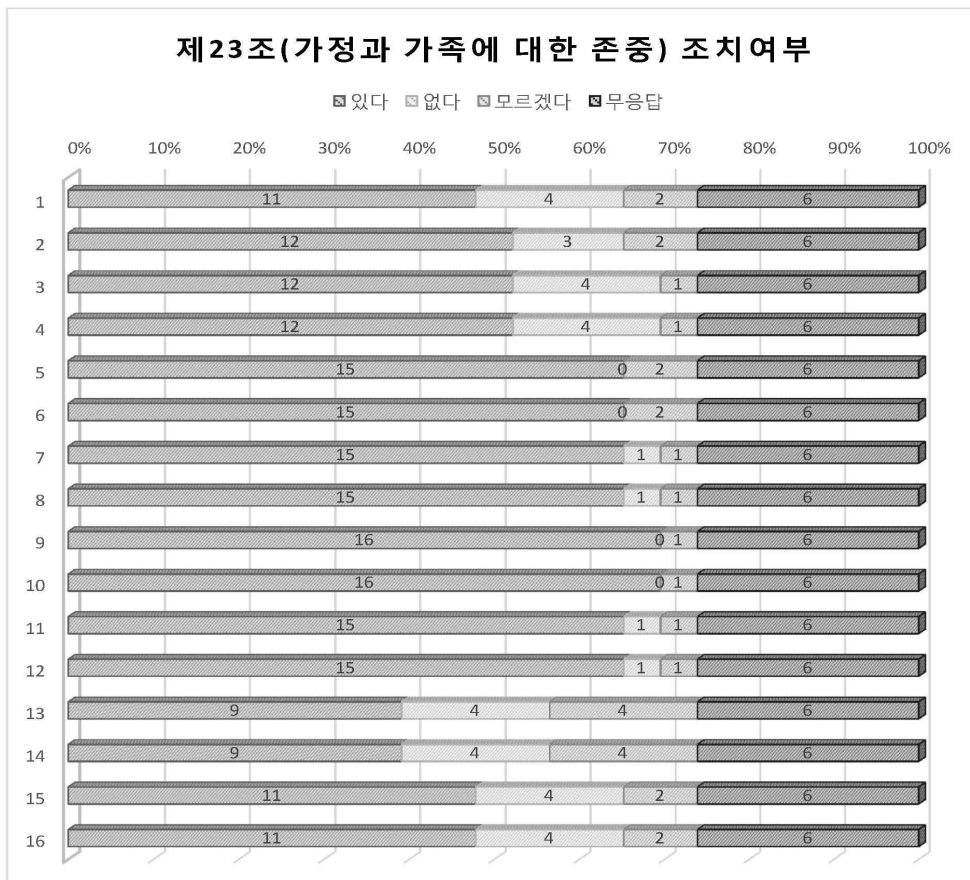
반면, ‘만약 한국 정부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방송물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 보장 규정에 정보 제공 기준을 포함하여 시행하고 있다면, 그 기준은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한국 정부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공공 정보를 읽기 쉽고(Easy Read) 접근 가능한 형식으로 제공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면, 그 조치는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평균점수는 각각 2.33/5점이었으며, 이는 ‘별로 충분하지 않다(2점)’에 가까운 수준으로 가장 낮았다.

또한, 가장 높은 평균점수를 나타낸 ‘한국수화언어법은 적절하게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항의 경우 응답자 23명 중 3명이 ‘모르겠다’고 응답하여 그 비율이 13.04%로 ‘접자법은 적절하게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항에 대한 ‘모르겠다’ 응답(21.07%)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

너. 제23조(가정과 가족에 대한 존중)

※ 제23조(가정과 가족에 대한 존중) 설문 문항

- 17-1. 우리나라에 미혼모가 장애아동을 가족 안에서 양육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있다면, 그 법적 근거는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17-2. 우리나라에 미혼모가 장애아동을 가족 안에서 양육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있다면, 그 법적 근거는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17-3. 우리나라에 미혼모가 장애아동을 가족 안에서 양육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 있다면, 그 정책의 이행 정도는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17-4. 우리나라에 미혼모가 장애아동을 가족 안에서 양육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 있다면, 그 정책의 이행 정도는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17-5. 우리나라에 장애아 부모가 장애아동을 가족 안에서 양육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있다면, 그 법적 근거는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17-6. 우리나라에 장애아 부모가 장애아동을 가족 안에서 양육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있다면, 그 법적 근거는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17-7. 우리나라에 장애아 부모가 장애아동을 가족 안에서 양육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 있다면, 그 정책의 이행 정도는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17-8. 우리나라에 장애아 부모가 장애아동을 가족 안에서 양육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 있다면, 그 정책의 이행 정도는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17-9. 우리나라에 장애아동의 가족에 대한 권리와 지역사회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있다면, 그 법적 근거는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17-10. 우리나라에 장애아동의 가족에 대한 권리와 지역사회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있다면, 그 법적 근거는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17-11. 우리나라에 장애아동의 가족에 대한 권리와 지역사회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이 있다면, 그 정책의 이행 정도는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17-12. 우리나라에 장애아동의 가족에 대한 권리와 지역사회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이 있다면, 그 정책의 이행 정도는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17-13. 우리나라에 장애아동의 친부모와 입양부모를 공평하게 대우하기 위한 계획이 있다면, 그 계획의 이행 정도는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17-14. 우리나라에 장애아동의 친부모와 입양부모를 공평하게 대우하기 위한 계획이 있다면, 그 계획의 이행 정도는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17-15. 만약 한국 정부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장애인이 결혼할 수 있는 권리와 가족을 구성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면, 그 조치는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17-16. 만약 한국 정부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장애인이 결혼할 수 있는 권리와 가족을 구성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면, 그 조치는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항번호	1	2	3	4	5	6	7	8
표준편차	2.60	2.48	2.50	2.56	1.88	1.86	1.88	1.88
문항번호	9	10	11	12	13	14	15	16
표준편차	1.71	1.62	1.88	1.85	2.72	2.79	2.56	2.59

제23조(가정과 가족에 대한 존중)에 관한 적절성, 충분성을 평가한 결과 ‘만약 한국 정부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장애인이 결혼할 수 있는 권리와 가족을 구성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면, 그 조치는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평균점수는 2.91/5점이었으며, 이는 ‘그저 그렇다(3점)’에 가까운 수준으로 가장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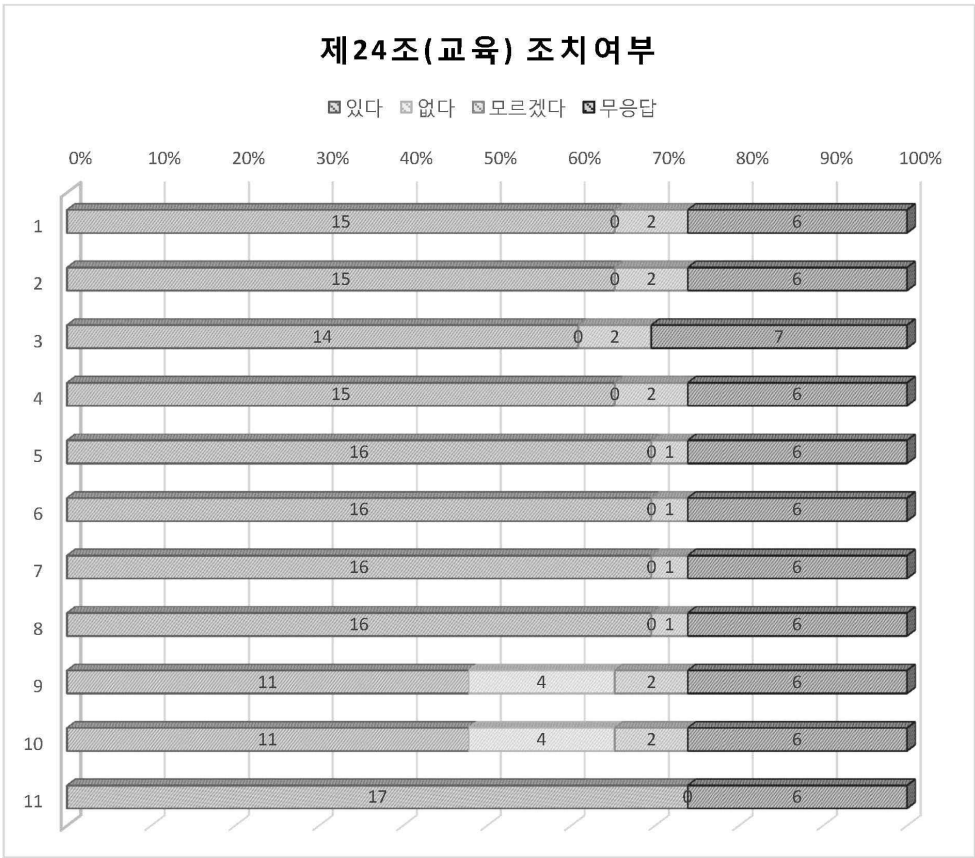
반면, ‘우리나라에 미혼모가 장애아동을 가족 안에서 양육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있다면, 그 법적 근거는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평균점수는 1.67/5점으로 ‘별로 충분하지 않다(2점)’와 ‘전혀 충분하지 않았다(1점)’ 사이 수준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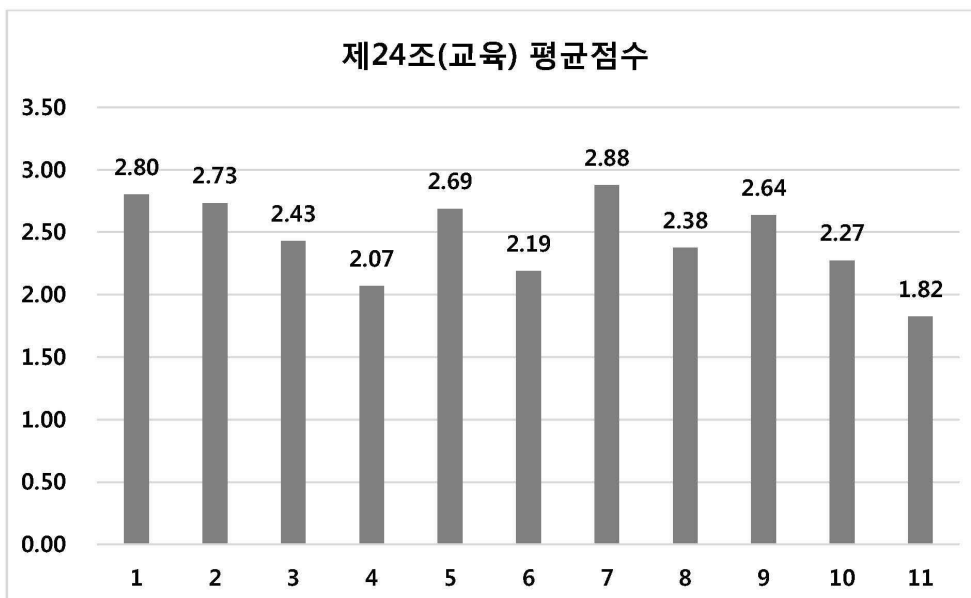
더. 제24조(교육)

※ 제24조(교육) 설문 문항

- 18-1. 만약 한국 정부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통합교육 효과성 및 개선방안 연구를 실시하여 결과물이 나왔다면, 그 연구는 적절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18-3. 만약 한국 정부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접근가능한 학교 환경, 교육자료 및 교육과정, 보조기기 등 통합교육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을 위해 노력하였다면, 그 노력은 적절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18-4. 만약 한국 정부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접근가능한 학교 환경, 교육자료 및 교육과정, 보조기기 등 통합교육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을 위해 노력하였다면, 그 노력은 충분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18-5. 만약 한국 정부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일반학교의 교사와 관리자를 포함한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하여 장애통합이나 장애인식 등의 교육을 강화하였다면, 그 조치는 적절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18-6. 만약 한국 정부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일반학교의 교사와 관리자를 포함한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하여 장애통합이나 장애인식 등의 교육을 강화하였다면, 그 조치는 충분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18-7. 만약 한국 정부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학생 및 학교 교직원 사이에 장애학생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적극적인 인식제고 조치를 취했다면, 그 조치는 적절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18-8. 만약 한국 정부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학생 및 학교 교직원 사이에 장애학생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적극적인 인식제고 조치를 취했다면, 그 조치는 충분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18-9. 만약 한국 정부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장애학생에 대한 괴롭힘 및/혹은 신체적 폭력 사건에서 무관용 정책을 시행했다면, 그 정책은 적절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18-10. 만약 한국 정부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장애학생에 대한 괴롭힘 및/혹은 신체적 폭력 사건에서 무관용 정책을 시행했다면, 그 정책은 충분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18-11. 한국 정부가 통합학교를 늘리면서 특수학교를 점차 줄여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특수학교들을 늘려가고 있는 것이, 적절한 정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항번호	1	2	3	4	5	6	7	8	9	10	11
표준편차	1.92	1.87	1.91	1.84	1.87	1.65	1.82	1.62	2.68	2.69	1.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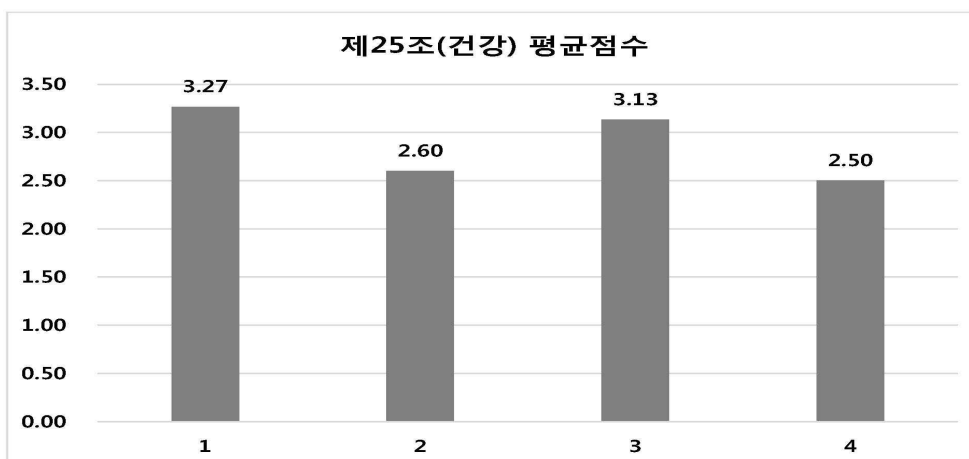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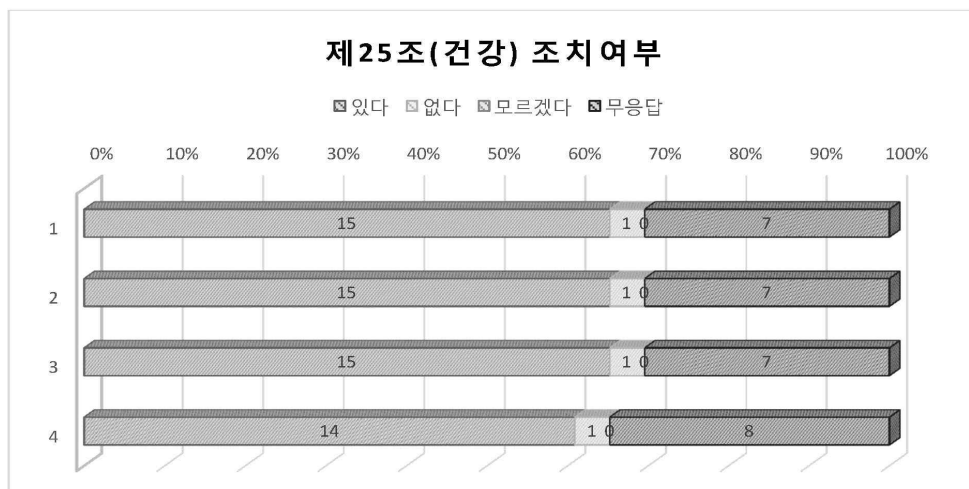
제24조(교육)에 관한 적절성, 충분성을 평가한 결과 ‘만약 한국 정부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학생 및 학교 교직원 사이에 장애학생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적극적인 인식제고 조치를 취했다면, 그 조치는 적절했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평균점수는 2.88/5점으로 ‘그저 그렇다(3점)’에 조금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가장 높았다.

반면, ‘한국 정부가 통합학교를 늘려가면서 특수학교를 점차 줄여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특수학교들을 늘려가고 있는 것이, 적절한 정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평균점수는 1.82/5점이었으며, ‘별로 적절하지 않았다(2점)’와 ‘전혀 적절하지 않았다(1점)’ 사이로 가장 낮았다.

러. 제25조(건강)

※ 제25조(건강) 설문 문항

- 19-1. 만약 한국 정부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의료시설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취한 조치가 있다면, 그 조치는 적절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19-2. 만약 한국 정부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의료시설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취한 조치가 있다면, 그 조치는 충분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19-3. 만약 한국 정부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장애인 의료서비스에 대한 보조나 보장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했다면, 그 계획은 적절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19-4. 만약 한국 정부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장애인 의료서비스에 대한 보조나 보장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했다면, 그 계획은 충분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항번호	1	2	3	4
표준편차	2.06	1.83	1.97	1.85

제25조(건강)에 관한 의료시설 및 의료서비스의 적절성, 충분성을 평가한 결과 ‘만약 한국 정부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의료시설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취한 조치가 있다면, 그 조치는 적절했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평균점수는 3.27/5점이었으며, 이는 ‘그저 그렇다(3점)’와 ‘약간 적절했다(4점)’ 사이로 가장 높았다.

반면, ‘만약 한국 정부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장애인 의료서비스에 대한 보조나 보장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했다면, 그 계획은 충분했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평균점수는 2.50/5점이었으며, 이는 ‘그저 그렇다(3점)’와 ‘별로 충분하지 않았다(2점)’ 사이 수준으로 가장 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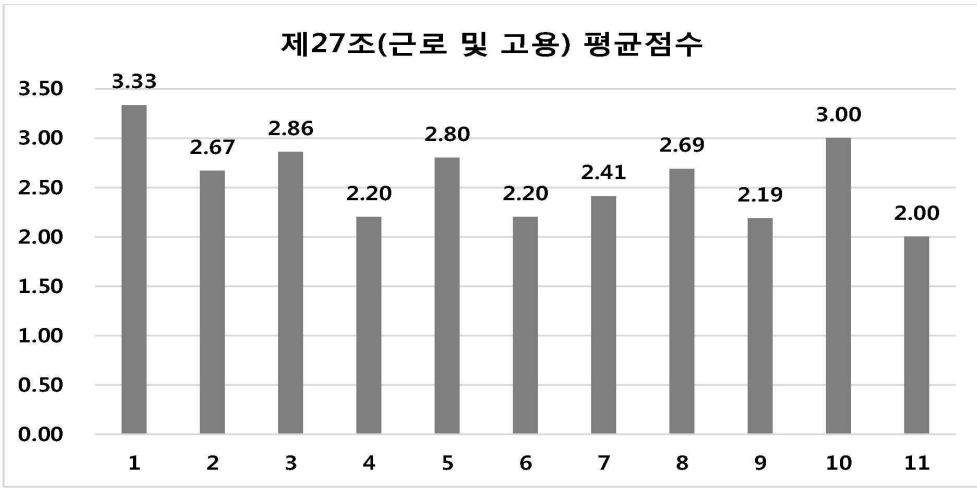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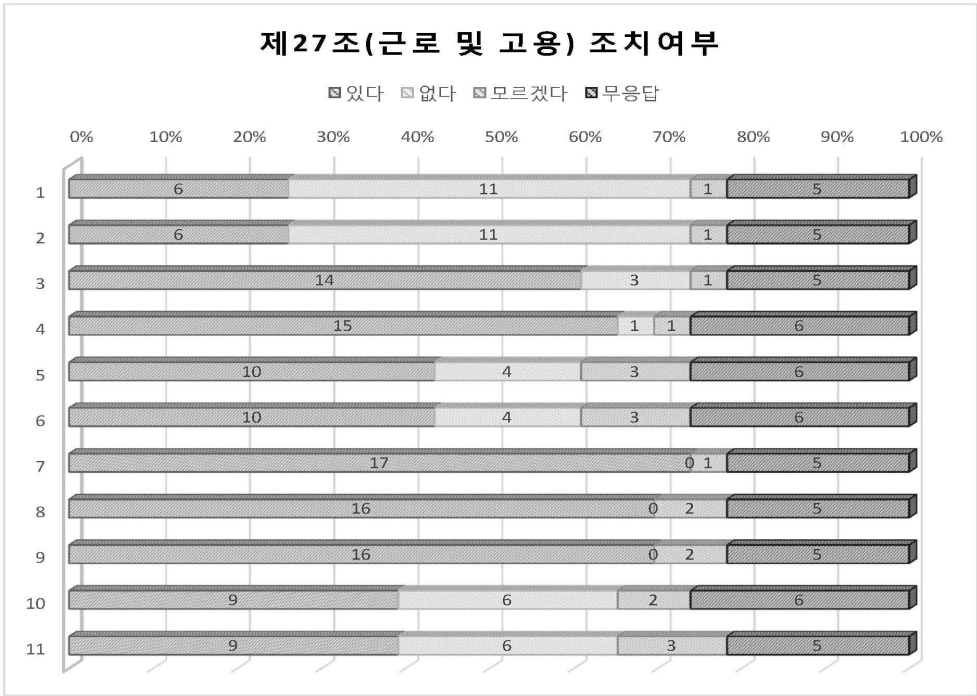
며. 제27조(근로 및 고용)

※ 제27조(근로 및 고용) 설문 문항

- 20-1. 만약 한국 정부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보호작업장 폐쇄에 따른 대안을 모색하는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면, 그 조치는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20-2. 만약 한국 정부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보호작업장 폐쇄에 따른 대안을 모색하는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면, 그 조치는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20-3. 만약 한국 정부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고용 격차를 감소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면, 그 조치는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20-4. 만약 한국 정부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고용 격차를 감소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면, 그 조치는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20-5. 만약 한국 정부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고용 격차를 감소시키기 위한 조치가 있어서 장애여성을 고려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면, 그 조치는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20-6. 만약 한국 정부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고용 격차를 감소시키기 위한 조치가 있어서 장애여성을 고려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면, 그 조치는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20-7. 한국정부는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효과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20-8. 한국정부의 장애인 의무고용제 성과 및 결과에 대한 통계는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20-9. 한국정부의 장애인 의무고용제 성과 및 결과에 대한 통계는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0-10. 만약 한국 정부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장애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와 의무고용할당제도의 효과성 보장 조치를 취하고 있다면, 그 조치는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0-11. 만약 한국 정부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장애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와 의무고용할당제도의 효과성 보장 조치를 취하고 있다면, 그 조치는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항번호	1	2	3	4	5	6	7	8	9	10	11
표준편차	2.91	2.99	2.33	1.93	2.70	2.74	1.61	1.85	1.69	2.78	2.84

제27조(근로 및 고용)에 대한 적절성, 충분성을 평가한 결과 ‘만약 한국 정부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보호작업장 폐쇄에 따른 대안을 모색하는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면, 그 조치는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평균점수는 3.33/5점이었으며, 이는 ‘그저 그렇다(3점)’와 ‘약간 적절했다(4점)’ 사이로 가장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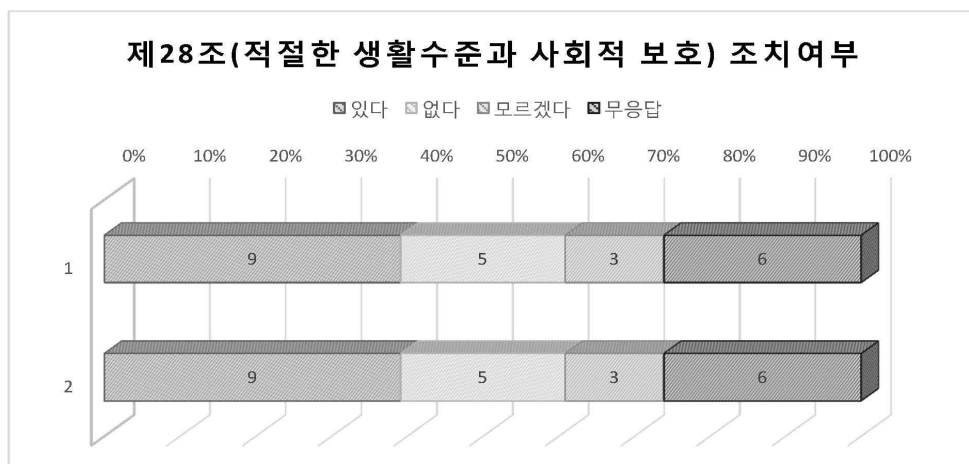
반면 ‘만약 한국 정부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장애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와 의무고용할당제도의 효과성 보장 조치를 취하고 있다면, 그 조치는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평균점수는 2.00/5점이며 ‘별로 충분하지 않았다(2점)’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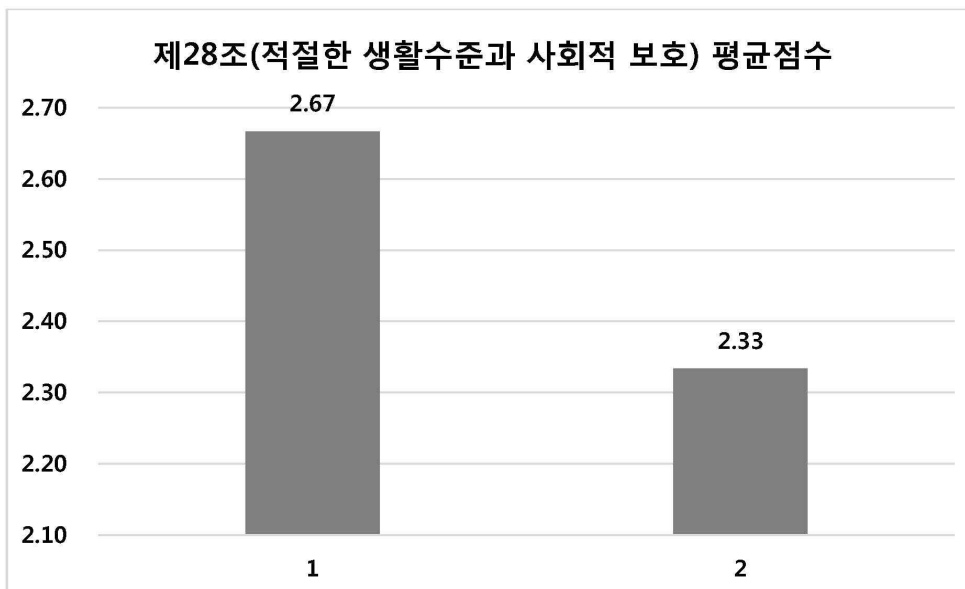
버. 제28조(적절한 생활수준과 사회적 보호)

※ 제28조(적절한 생활수준과 사회적 보호) 설문 문항

21-1. 만약 한국 정부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장애등급이나 가족 구성원의 소득 및 재산으로부터, 장애당사자의 특성·상황·욕구 등으로, 최저생계비 지원 기준을 변경한 조치를 취했다면, 그 조치는 적절했다고 생각하십니까?

21-2. 만약 한국 정부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장애등급이나 가족 구성원의 소득 및 재산으로부터, 장애당사자의 특성·상황·욕구 등으로, 최저생계비 지원 기준을 변경한 조치를 취했다면, 그 조치는 충분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항번호	1	2
표준편차	2.77	2.80

제28조(적절한 생활수준과 사회적 보호)에 관한 한국 정부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장애등급이나 가족 구성원의 소득 및 재산으로부터, 장애당사자의 특성·상황·육구 등으로 최저생계비 지원기준을 변경한 조치의 적절성, 충분성을 평가한 결과 두 질문 모두 ‘별로 충분하지 않았다(2점)’와 ‘그저 그렇다(3점)’ 사이의 결과를 보여주었으나, 적절성의 대한 평균점수가 충분성의 평균점수보다 높은 결과가 나타났다.

서. 제29조(정치 및 공적 생활에 대한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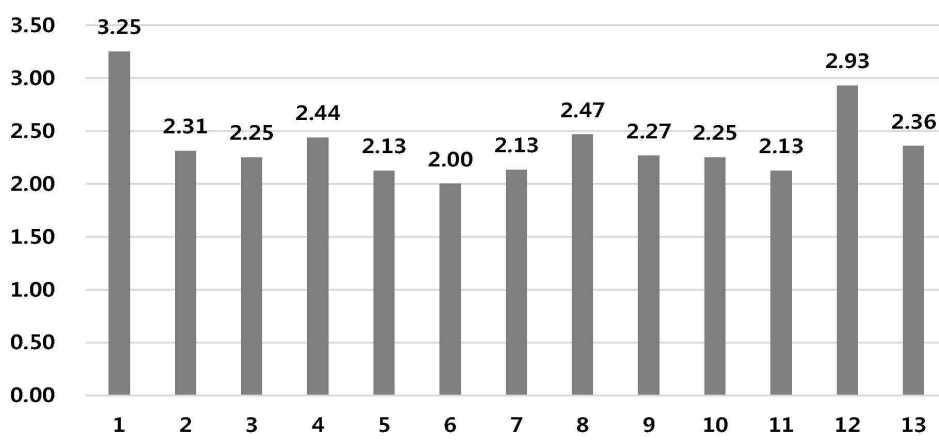
※ 제29조(정치 및 공적 생활에 대한 참여) 설문 문항

- 22-1. 현재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이 선거에 참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22-2. 한국정부가 장애인의 선거 참여를 가능하도록 하는 조치들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22-3. 한국정부가 장애인의 선거 참여를 가능하도록 하는 조치들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22-4. 한국정부가 장애인의 선거 참여와 관련하여 제공하는 접근가능한 선거정보의 조치들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22-5. 한국정부가 장애인의 선거 참여와 관련하여 제공하는 접근가능한 선거정보의 조치들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22-6. 한국정부가 선거에 있어서 선출직 장애인의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해 취하고 있는 조치들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22-7. 한국정부가 선거에 있어서 선출직 장애인의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해 취하고 있는 조치들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22-8. 한국정부가 선거에 있어서 투표 시설에 대한 모든 유형 장애인들의 완전한 접근성 보장을 위해 취하고 있는 조치들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22-9. 한국정부가 선거에 있어서 투표 시설에 대한 모든 유형 장애인들의 완전한 접근성 보장을 위해 취하고 있는 조치들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22-10. 한국정부가 선거와 관련된 정보 캠페인에 대한 완전한 접근성 보장을 위하여 취한 조치들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22-11. 한국정부가 선거와 관련된 정보 캠페인에 대한 완전한 접근성 보장을 위하여 취한 조치들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22-12. 한국정부가 장애인이 투표를 위한 보조인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취한 조치들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22-13. 한국정부가 장애인이 투표를 위한 보조인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취한 조치들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29조(정치 및 공적 생활에 대한 참여) 조치여부



제29조(정치 및 공적 생활에 대한 참여) 평균점수



문항번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표준편차	1.82	1.47	1.44	1.46	1.34	1.62	1.64	1.50	1.44	1.24	1.20	2.19	2.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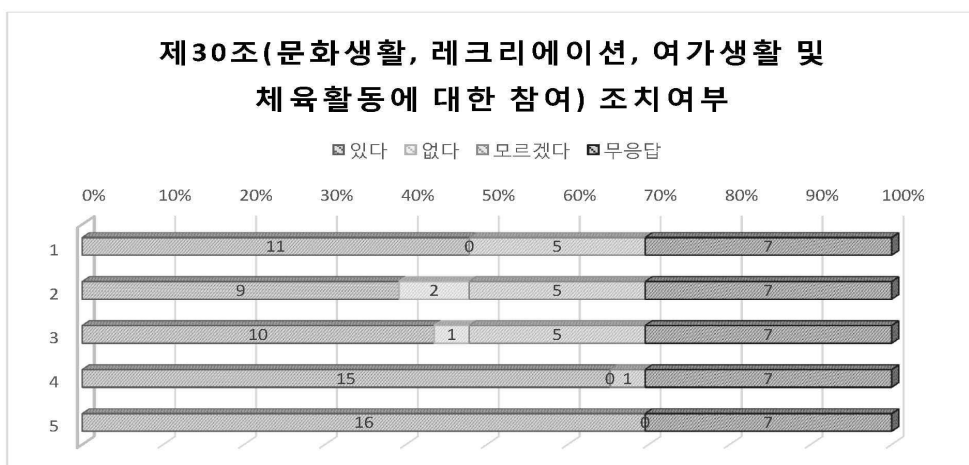
제29조(정치 및 공적 생활에 대한 참여)에 관한 참여가능성, 적절성, 충분성을 평가한 결과 ‘현재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이 선거에 참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평균점수가 3.25/5점이며, 이는 ‘그저 그렇다(3점)’와 ‘약간 가능하다(4점)’ 사이로 가장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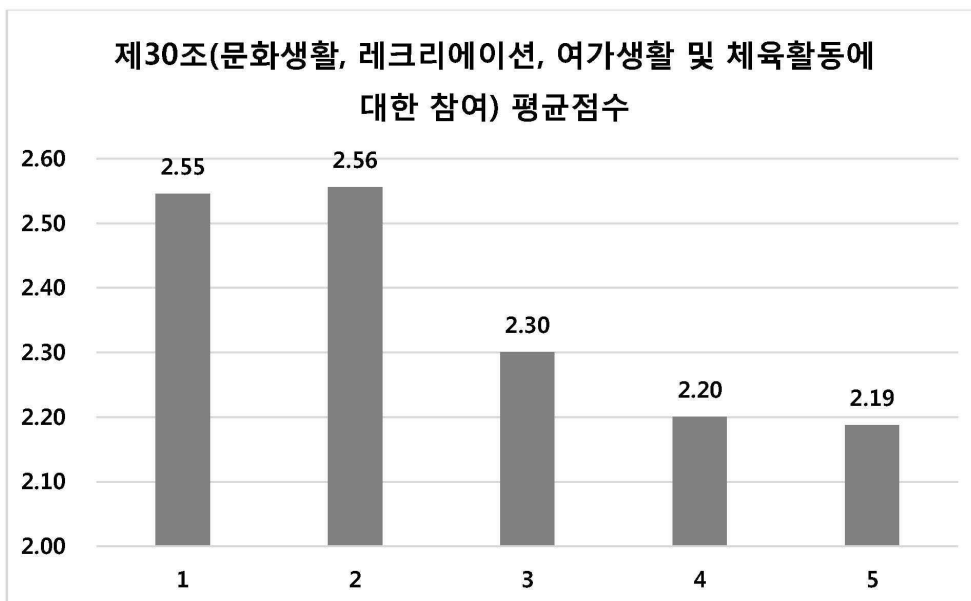
반면, ‘한국정부가 선거에 있어서 선출직 장애인의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해 취하고 있는 조치들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평균점수는 2.00/5점으로 이는 ‘별로 적절하지 않았다(2점)’로 가장 낮았다.

어. 제30조(문화생활, 레크리에이션, 여가생활 및 체육활동에 대한 참여)

※ 제30조(문화생활, 레크리에이션, 여가생활 및 체육활동에 대한 참여) 설문 문항

- 23-1. 한국정부가 시각장애인 저작물 접근권 개선을 위한 ‘마라케시 조약’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23-2. 한국정부가 시각장애인 저작물 접근권 개선을 위한 ‘마라케시 조약’에 따라 취하고 있는 조치들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23-3. 한국정부가 시각장애인 저작물 접근권 개선을 위한 ‘마라케시 조약’에 따라 취하고 있는 조치들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23-4.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 및 기타 스포츠 이벤트가 장애인들을 완전히 통합하고 그들에게 접근 가능하게 보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한국 정부가 취한 조치들이 적절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23-5.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 및 기타 스포츠 이벤트가 장애인들을 완전히 통합하고 그들에게 접근 가능하게 보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한국 정부가 취한 조치들이 충분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항번호	1	2	3	4	5
표준편차	2.31	2.64	2.46	1.64	1.34

제30조(문화생활, 레크리에이션, 여가생활 및 체육활동에 대한 참여)에 관한 개선초치, 적절성, 충분성을 평가한 결과 ‘한국정부가 시각장애인 저작물 접근권 개선을 위한 마라케시 조약’에 따라 취하고 있는 조치들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평균점수가 2.56/5점이며, 이는 ‘별로 취하고 있지 않다(2점)’와 ‘그저 그렇다(3점)’ 사이로 다른 평균점수보다 근소한 차이로 가장 높았다.

반면,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 및 기타 스포츠 이벤트가 장애인들을 완전히 통합하고 그들에게 접근 가능하게 보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한국 정부가 취한 조치들이 충분했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평균점수는 2.19/5점으로 이는 ‘별로 충분하지 않았다(2점)’와 가까운 수준으로 가장 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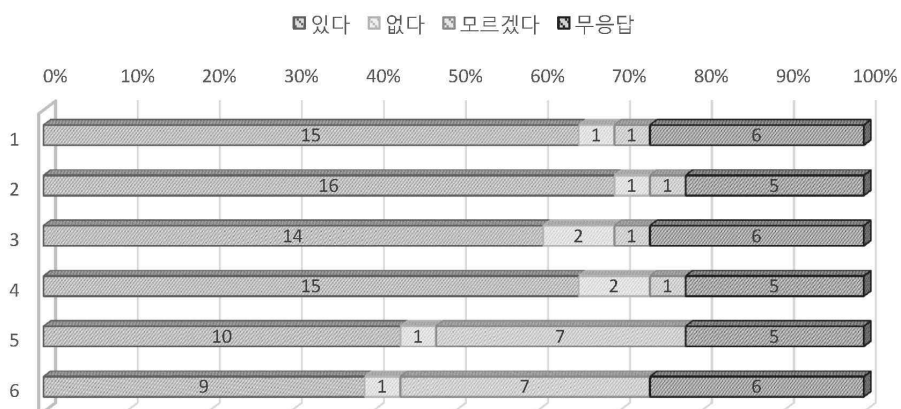
또한,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 및 기타 스포츠 이벤트가 장애인들을 완전히 통합하고 그들에게 접근 가능하게 보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한국 정부가 취한 조치들이 충분했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항목은 설문 응답자중 가장 많은 16명의 인지를 하고 있었으나, 평가 점수는 가장 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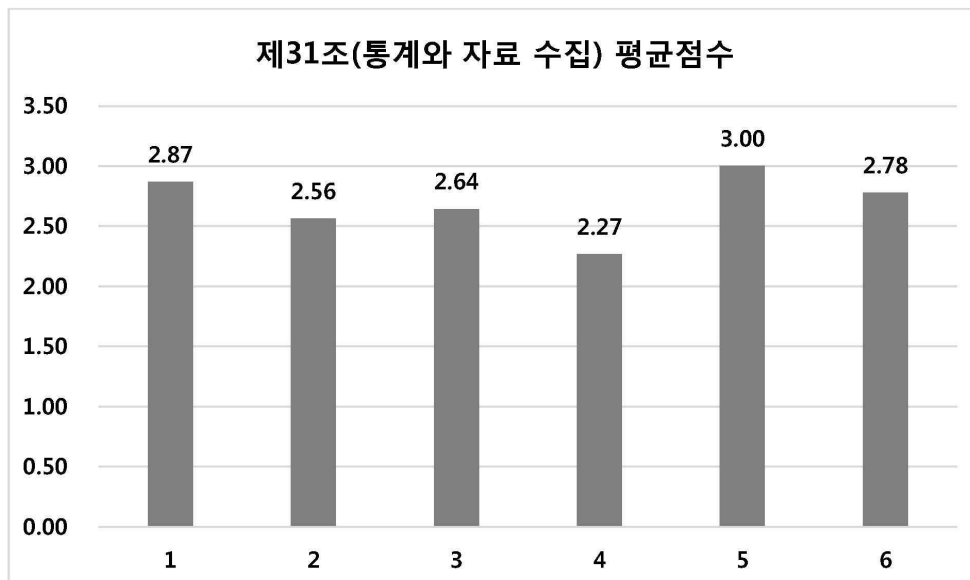
저. 제31조(통계와 자료 수집)

※ 제31조(통계와 자료 수집) 설문 문항

- 24-1. 만약 한국 정부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성별·연령·장애·거주지·지리적 지역·정책 수혜자를 기준으로 세분화된 자료의 수집·분석·배포를 체계화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면, 그 조치는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24-2. 만약 한국 정부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성별·연령·장애·거주지·지리적 지역·정책 수혜자를 기준으로 세분화된 자료의 수집·분석·배포를 체계화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면, 그 조치는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24-3. 만약 한국 정부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통계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면, 그 조치는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24-4. 만약 한국 정부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통계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면, 그 조치는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24-5. 만약 한국 정부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장애 통계에 관한 워싱턴 그룹 방법론에 따라 데이터의 수집, 분석 및 배포를 체계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면, 그 조치는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24-6. 만약 한국 정부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장애 통계에 관한 워싱턴 그룹 방법론에 따라 데이터의 수집, 분석 및 배포를 체계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면, 그 조치는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31조(통계와 자료수집) 조치여부





문항번호	1	2	3	4	5	6
표준편차	2.06	1.92	2.21	2.12	2.52	2.56

제31조(통계와 자료 수집)에 관한 적절성, 충분성을 평가한 결과 ‘만약 한국 정부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장애 통계에 관한 워싱턴 그룹 방법론에 따라 데이터의 수집, 분석 및 배포를 체계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면, 그 조치는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평균점수가 3.00/5점이며, 이는 ‘그저 그렇다(3점)’으로 가장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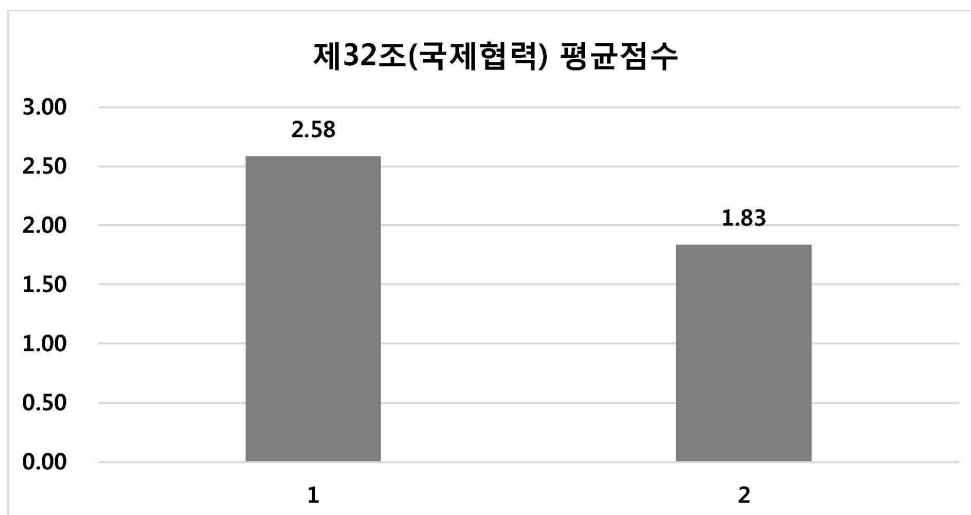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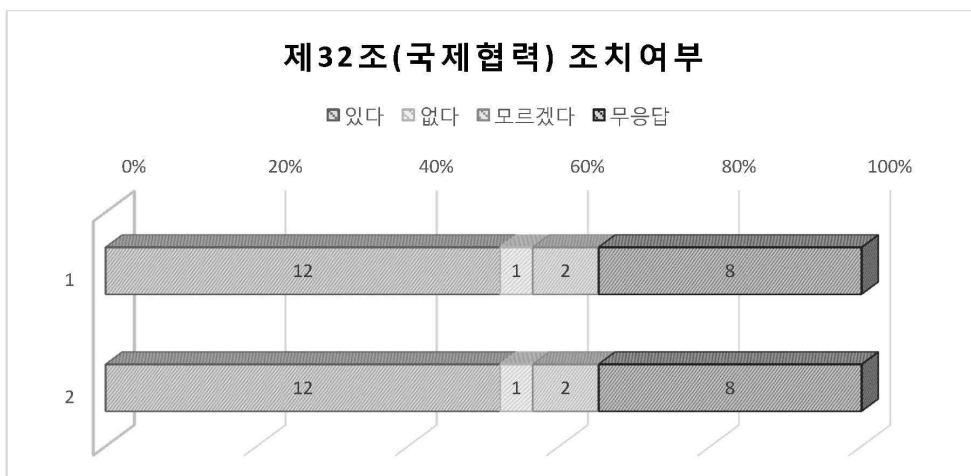
반면 ‘만약 한국 정부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통계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면, 그 조치는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평균점수는 2.27/5점으로 ‘별로 충분하지 않았다(2점)’와 ‘그저 그렇다(3점)’ 사이 수준으로 가장 낮았다.

※ 제32조(국제협력) 설문 문항

25-1. 만약 한국 정부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본 협약, 인천전략 및 SDGs의 효과적 이행에 주의를 기울이며, 정부의 모든 국제 개발 프로그램 및 활동이 모든 장애인들에게 통합적이고 접근 가능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들이 있다면, 그 조치들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5-2. 만약 한국 정부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본 협약, 인천전략 및 SDGs의 효과적 이행에 주의를 기울이며, 정부의 모든 국제 개발 프로그램 및 활동이 모든 장애인들에게 통합적이고 접근 가능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들이 있다면, 그 조치들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 제32조(국제협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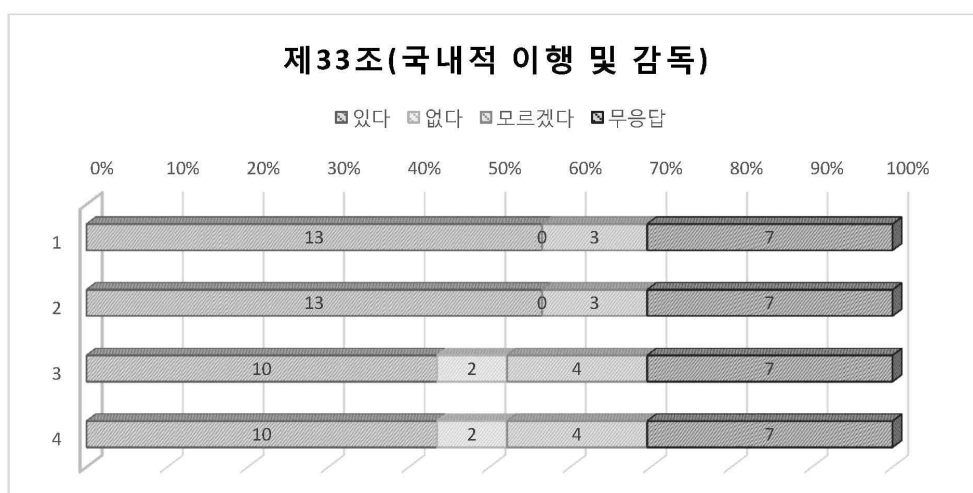
문항번호	1	2
표준편차	2.29	2.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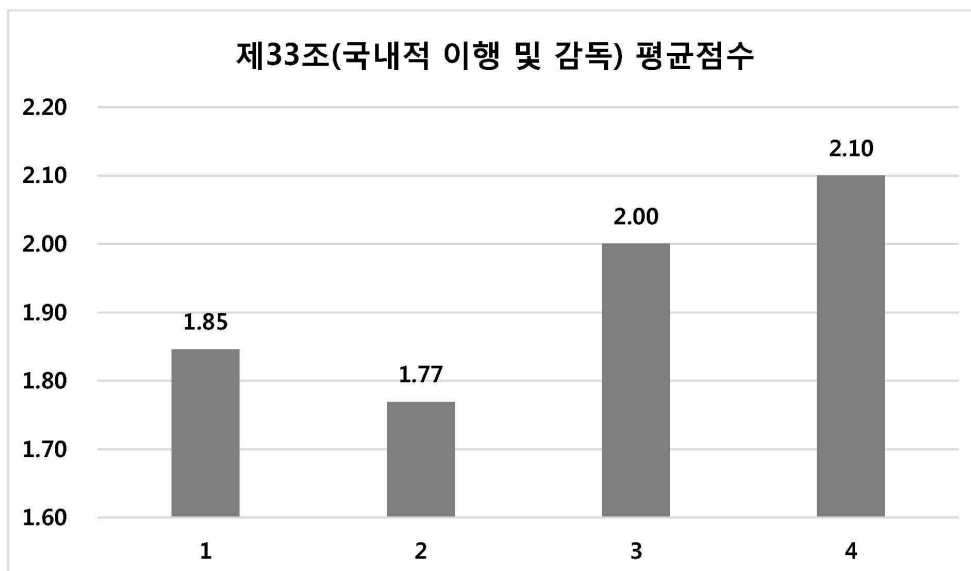
제32조(국제협력)에 대한 본 협약, 인천전략 및 SDGs의 효과적 이행에 주의를 기울이며 정부의 모든 국제 개발 프로그램 및 활동이 모든 장애인들에게 통합적이고 접근 가능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조치의 적절성과 충분성의 대한 평가 결과는 적절성(2.58/5점) 측면이 충분성(1.83/5점) 보다 ‘그저 그렇다(3점)’와 ‘별로 적절하지 않았다(2점)’ 사이로 높게 나타났다.

커. 제33조(국내적 이행 및 감독)

※ 제33조(국내적 이행 및 감독) 설문 문항

- 26-1. 한국정부의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가 장애인 관련 정책의 효과적인 개발 및 이행이라는 역할을 적절히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26-2. 한국정부의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가 장애인 관련 정책의 효과적인 개발 및 이행이라는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26-3. 한국정부가 협약 모니터링에 장애인 참여를 위해서 관련법을 적절히 개정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 26-4. 한국정부가 협약 모니터링에 장애인 참여를 위해서 관련법을 충분히 개정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항번호	1	2	3	4
표준편차	2.06	2.04	2.56	2.56

CRPD 제33조(국내적 이행 및 감독)에 대한 적절성, 충분성을 평가한 결과 ‘한국정부가 협약 모니터링에의 장애인 참여를 위해서 관련법 개정의 충분히 개정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평균점수가 2.10/5점이며 ‘별로 충분하지 않았다(2점)’와 ‘그저 그렇다(3점)’ 사이 수준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한국정부의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가 장애인 관련 정책의 효과적인 개발 및 이행이라는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평균점수는 1.77/5점으로 ‘별로 충분하지 않았다(2점)’와 ‘전혀 충분하지 않았다(1점)’ 사이로 가장 낮았다.

터. 전체 항목의 대한 평균점수



위 그래프는 각 25가지 조항에 해당되는 전체 질문들의 설문평균점수의 평균을 나타내는 자료로 전체 조항 중 ‘제33조(국내적 이행 및 감독)’의 평균점수가 1.93/5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제25조(건강)’의 평균점수가 2.88/5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체 평균점수는 1.93점에 해당되는 ‘제33조(국내적 이행 및 감독)’을 제외한다면 모든 항목의 평균 점수가 2점과 3점 사이로 나타났다.

5. 합의

민간 평가 조사 결과를 통해 정부의 CRPD 이행의 정도에 대해 장애인 관련 단체들은 상당히 저조한 평가를 내리고 있으며 특히, 여성 및 아동과 같은 이중적 어려움에 놓인 장애인에 대한 조치가 매우 미약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인천전략 및 SDGs를 연계한 국제협력에 대한 정부의 조치 또한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으며, 사회적 이슈를 다루는 문항 역시 상당 부분 낮게 평가되었다. 무엇보다, 가장 저조한 평가를 받은 조항은 제33조(국내적 이행 및 감독)로 이에 대한 근본적인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행 정도에 대한 장애인 관련 단체들의 평정 결과는 대체로 저조하다.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제25조(건강)의 경우라 하더라도 5점 만점을 기준으로 2.88점에 머무르고 있으며 가장 낮은 점수는 제33조(국내적 이행 및 감독)로 1.93점까지 떨어진다. ‘그저 그렇다’를 3점으로 놓고 볼 때, 장애인 관련 단체들이 정부의 CRPD 이행 수준에 대해 모든 조항에 있어서 ‘그저 그렇다’ 이하로 인식하며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둘째, 제33조(국내적 이행 및 감독)는 1점대(1.93)로 ‘적혀 적절하지 않는’ 수준으로 평가받았다. 조사대상으로 삼은 26개 조항 중 유일하게 1점대의 이행 정도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가 장애인 관련 정책의 효과적인 개발 및 이행이라는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단체들의 평가는 1.77점으로 조항 내 질문 중에 가장 저조하다.

셋째, 제32조(국제협력)에 근거한, 인천전략 및 SDGs와의 연계에 있어서도 조치가 전혀 충분하지 않는 것(1.83)으로 평가되었다. 더불어 인천전략 7번 목표에서 강조하고 있는 위험상황에서 장애인 접근 통합 명시 규정과 보장을 위한 조치의 충분성 또한 CRPD 제11조와 연관되어 저조하게 평가(2.00)되었다.

넷째, 장애아동(7조) 및 장애여성(6조)에 대한 조치 역시 충분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장애여성 강제불임 및 낙태 친권박탈 방지 보호 장치의 충분성’은 2.00점으로 이중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여성에 대한 세세한 조치가 매우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는 제27조(근로 및 고용)의 ‘장애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와 의무고용할당제도의 효과성 보장조치의 충분성’(2.00)과 맥을 같이 한다. 더불어 제23조(가정과 가족에 대한 존중)에서 이슈가 되는 ‘미혼모 양

육지원의 충분성'(1.67) 또한 거의 최저점의 수준을 보였다.

끝으로, 사회적으로 알려진 이슈에 대해서는 대체로 낮은 평가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제24조(교육)과 관련하여 '특수학교를 늘려가고 있는 정책의 적절성'(1.82) 그리고 제19조(자립적 생활 및 지역사회에의 통합)와 관련한 활동보조 서비스 이용료 산정 근거의 충분성(2.00), 사회부조 프로그램의 재원지원 충분성(1.72) 등이 낮게 평가되었다.

V

CRPD 국내 이행실태 조사연구

1. 서설	155
2. 제5조 평등 및 비차별	155
3. 제6조 장애여성	175
4. 제7조 장애아동	199
5. 제8조 인식제고	204
6. 제9조 접근성	219
7. 제11조 위험상황과 인도적 차원의 긴급 사태	248
8. 제12조 법 앞의 동등한 인정 관련	255
9. 제13조 사법에 대한 접근	271
10. 제14조 신체의 자유 및 안전	286
11. 제15조 고문 또는 잔혹한,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로부터의 자유	308
12. 제16조 착취, 폭력 및 확대로부터의 자유	317
13. 제17조 개인의 완전함 보호	332
14. 제18조 이주 및 국적의 자유	336
15. 제19조 자립적 생활 및 지역사회에의 동참	346
16. 제20조 개인의 이동	381
17. 제21조 의사 및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권	385
18. 제22조 사생활의 존중	391
19. 제23조 가정과 가족에 대한 존중	404
20. 제24조 교육	420
21. 제25조 건강	457
22. 제26조 가할 및 재할	466
23. 제27조 근로 및 고용	473
24. 제28조 적절한 생활수준과 사회적 보호	509
25. 제29조 정치 및 공적생활에 대한 참여	517
26. 제30조 문화생활, 레크리에이션, 여가생활 및 체육활동에 대한 참여	535
27. 제31조 통계와 자료 수집	544
28. 제32조 국제협력	548
29. 결 론	556

1. 서설

이제까지 CRPD 이행 모니터링을 위한 평가지표 개발과 지표에 기초한 민간 단체 평가조사 결과를 살펴보았다. 이제부터는 연구원들이 선정한 62개 쟁점에 대한 CRPD 이행 여부를 문항 순서대로 검토할 것이다. 쟁점별로 정부의 이행 현황을 검토하고 이를 평가하였으며, 필요한 경우 해외 사례를 검토한 뒤에 결론 및 정책 제언을 도출하였다.

이번 연구는 원래 CRPD 이행 모니터링을 위한 평가지표를 개발한 다음, 이에 입각하여 문헌조사, 설문조사, FGI를 실시하고, 위 내용을 종합하여 정부의 이행 현황을 평가하는 순으로 실태조사가 진행되었어야 한다. 그런데 실제 연구기간이 짧아서 CRPD 이행 모니터링을 위한 평가지표 개발과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한 정부의 이행 현황에 대한 평가 작업이 별개로 진행되었다.

이에 III.은 CRPD 이행 모니터링을 위한 평가지표 개발, IV.은 위 평가지표에 기초한 설문조사 내용을 담았고, VI.에서는 위 평가지표와 별개로 주요 쟁점을 조항순서대로 검토하면서 FGI 내용을 일부 반영하여 평가 및 정책 제언을 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2. 제5조 평등 및 비차별

가. CRPD 제5조

제5조 평등 및 비차별

1. 당사국은 모든 인간은 법 앞에서 그리고 법 아래 평등하며, 법이 인정한 동등한 보호 및 동등한 혜택을 차별 없이 받을 자격이 있음을 인정한다.
2. 당사국은 장애를 이유로 한 모든 차별을 금지하고, 모든 이유에 근거한 차별에 대하여 장애인에게 평등하고 효과적인 법적 보호를 보장한다.
3. 당사국은 평등을 증진하고 차별을 철폐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편의 제공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절차를 취한다.
4. 장애인의 사실상 평등을 촉진하고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조치는 이 협약의 조건 하에서 차별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일반논평 6호는 포괄적인 평등(inclusive equality)을 제안하면서, 평등과 비차별은 국제협약의 대원칙으로 점진적 실현의 대상이 아니라 즉각적인 실현의 대상이라고 선언한다(11 및 12 단락).

제1항의 “법 앞의 평등”은 법 적용에 평등한 대우를 받는다는 의미로 많은 국제인권조약에서 사용하는 표현이다. 한편 “법 아래 평등”은 CRPD의 고유한 표현으로, 사법절차에서 권리구제를 위해 다룰 수 있다는 뜻이다(14 단락).

제2항은 장애인이 동등한 권리를 누리기 위한 법적요구를 담고 있다. 이 때 모든 차별은 직접차별, 간접차별,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 괴롭힘을 포함한다(15 및 16 단락).

제3항은 정당한 편의시설은 차별 없애기 위해 즉시 적용 가능한 행동으로, 본질적인 부분이라고 강조한다(23 단락).

제4항에서 차별로 간주되지 않는 구체적 조치는 평등을 가속화하거나 달성하기 위한 긍정적 조치로, 홍보, 지원, 자원재분배, 고용할당, 승진할당 등이 있다(28 단락).

이러한 평등과 비차별을 누리기 위해서, ① 인식을 개선하고 차별을 사법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조치, ② 국내 법원에서 CRPD를 적용하고 차별을 경험한 모든 사람에게 사법접근권을 보장하는 조치, ③ 보복으로부터 보호, ④ 이해관계 있는 단체를 통해 소송을 제기할 법적 권리, ⑤ 증거 또는 입증관련 특별 규칙, ⑥ 평등권 침해시 효과적이면 비례적인 구제 방법, ⑦ 사법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지원과 같은 조치의 적용이 필요하다(31 단락).

나. 최종견해와 쟁점목록

(1) 최종견해

제5조 평등과 비차별

11. 위원회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이행이 실효적이지 않은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위원회는 특히 구제를 요청한 진정의 대부분이 해결되지 않았음에 우려를 표한다. 위원회는 법원이 자신에게 부여된 금지명령 권한을 인지해야 함에 주목한다.

12. 위원회는 당사국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인적 자원을 증가하고 독립성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법원을 통한 권리구제에 대한 접근이 확보될 수 있도록 장애에 기반한 차별 피해자들의 소송비용을 면제 또는 경감시켜 줄 것과, 법무부 장관의 시정명령 요건(「장애인차별금지법」 제43조)을 낮추어 줄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또한 당사국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적 이행의 필요성에 대해 판사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자신들에게 부여된 금지명령 권한을 인지하도록 할 것을 권장한다.

(2) 쟁점목록

제5조 평등과 비차별

4-1.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의 인력 확충과 독립성 강화를 위한 조치 및 방안에 대해 제시하시오.

4-2. 장애인 차별 피해자들이 법원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소송비용을 면제 또는 경감하기 위한 방안, 그리고 법무부의 시정명령 발부 요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제시하시오.

4-3.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효과적 이행의 필요성 및 법원에 부여된 중지명령권 행사의 필요성에 대한 법원의 인식 제고 사업과 활동에 대해 제시하시오.

4-4. 법무부가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통보 받은 진정 사건 중, 기타 진정 사건의 비율과 비교하여 장애 관련 진정 사건 비율 및 진정 사유를 제시하시오.

4-5.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소송과 관련한 법률구조(legal aid) 통계를 제시하시오.

(3) 실태조사의 대상 쟁점

CRPD 제5조 평등과 비차별에 관하여는 ① 국가인권위원회의 인력확충과 독립성 강화 ② 소송비용의 면제 또는 감경과 법률구조 통계 ③ 시정명령 요건의 완화와 법무부 통보비율 ④ 중지명령권 행사에 관한 인식제고에 대하여 이하와 같이 검토한다.

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인력확충과 독립성 강화

(1) 정부의 이행현황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차별 진정사건 조사관 인력부족으로 진정사건처리의 지연이 심화된다고 권고를 수용한다고 표시하였다. 그 근거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규칙」 제4조(사건처리기한)에 ‘진정은 이를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

구하고, 2016년 1월 기준으로 진정사건 470건 중 276건(58.7%)이 처리기한인 90일을 경과했고, 148건(31.5%)이 6개월을 경과한 점을 들었다. 2015년에는 진정사건 1건 처리에 평균 156일이 소요되었다.

또한 CRPD 제2·3차 병합 국가보고서(초안)에 의하면, 현재 장애정책업무 담당 인원은 20~21명으로 매년 5명 정도의 증원을 요청하였으나 3년동안 1명만 증원된 것을 문제로 지적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로부터 인력과 독립성을 충분하게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헌법기구화와 규칙제정권을 신설을 해결방안으로 제시했다.

(2) 정부의 이행에 대한 평가

국가인권위원회는 매년 4천 건 전후의 장애 관련 진정을 접수 받고 있는데, 이를 수행하는 인원은 20~21명에 불과하여 1인당 1년에 200건 가량을 소화하고 있다. 현재의 인원으로는 각 진정사건에 대한 조사만 하기에 빠듯하고, 그 외의 세미나나 토론회, 이행상황관리, 모니터링까지 하기에는 더더욱 부족하다.⁹⁶⁾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8조는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의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로 조직이나 인사, 재정에 있어서 행정안전부나 기획재정부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지난 정부에서는 다양성과 독립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가 국가인권위원회의 등급 결정을 3차례 보류하기도 했다.⁹⁷⁾ 결국 2016년 A등급을 받긴 하였으나,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확보는 매우 시급한 과제이다.

헌법기관화를 달성하기 위한 개헌절차와 요건은 까다로울 뿐 아니라, 개헌과정은 정치적이고 지난하므로 외부적 요인으로 개헌에 이르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실제로 2017. 6. 26. 국가인권위원회는 자체적으로 개헌안을 제시하고 헌법기관화를 추진했고,⁹⁸⁾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⁹⁹⁾ 국회 헌법개정특

96)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인력확보를 권고로 받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견해도 있었음.

97) 연합뉴스,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국제 사회에서 ‘등급보류’ 판정, 다음뉴스 (2014. 4. 5. 10:16). <https://news.v.daum.net/v/20140405101606117>

한겨레 “‘헌법철의 국가인권위원회’ 또 등급 보류”, 다음뉴스, (2014. 11. 10. 23:50).

<https://news.v.daum.net/v/20141110235005301>

한겨레, “ICC, 국가인권위원회에 3번째 등급 판정 보류 결정”, 다음뉴스 (2015.3.27. 22:40). <https://news.v.daum.net/v/20150327194010764>.

별위원회 보고서,¹⁰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제안한 개헌안¹⁰¹⁾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헌법기구화를 제안하였다. 그러나 막상 문재인정부에서 발의한 「대한민국헌법」(이하 “헌법”) 개정안¹⁰²⁾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헌법기구화에 대한 개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이처럼 국가인권위원회의 헌법기구화는 정치적 리더의 결심이나 의사, 우선순위에 따라서 좌우될 우려가 있다. 헌법기관화는 장기적 이행방향 및 국제기구의 권고 요청으로는 타당하지만 불가피하게 실현성이 불확실하다. 따라서 보충적으로 법률이나 정책으로 당장 인력을 확충하고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방안은 없는지 검토할 필요도 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인정한다는 의미는 있지만 강제성이 없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의 동기와 유인을 약화한다는 평가도 있었다.¹⁰³⁾

(3) 해외사례

국가인권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A등급을 획득한 국가 67개국 중 절반이상인 36개국에서 국가인권위원회를 헌법에 기초하여 설립하고 있다.

98) 국가인권위원회, “기본권보장강화 헌법개정안(연구포럼안)” (2017).

99) 조규범, “국가인권위원회의 헌법기관화 필요성과 방향”, 이슈와 논점 제1319호, 국회입법조사처, (2017).

100)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보고서” (2018), 123-124.

101)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개헌특별위원회 “헌법개정리포트 2018” (2018), 147-148.

102) “대한민국헌법 개정안 공고(대통령공고 제278호)”, (2018. 3. 26.).

103) 2018. 10. 23. 제2차 FGI에서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김훈 정책연구원 의견.

[표-9] 설립 근거법에 따른 국가 분류¹⁰⁴⁾

근거법	국가수	국가명
헌법	36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아이티, 멕시코, 파나마, 페루, 베네수엘라, 아프가니스탄, 동티모르, 필리핀, 알바니아, 크로아티아, 핀란드, 조지아, 포르투갈, 세르비아, 우크라이나, 폴란드, 스페인, 이집트, 케냐, 말라위, 모리타니, 모로코, 르완다, 남아프리카, 토고, 가나, 탄자니아, 우간다, 잠비아
인권위법	26	칠레, 니카라과, 캐나다, 네팔, 몽골, 뉴질랜드, 카타르, 요르단, 인도네시아, 호주, 인도, 말레이시아,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라트비아, 네덜란드, 스코틀랜드, 룩셈부르크, 프랑스, 덴마크, 독일, 부룬디, 카메룬, 시에라리온, 나이지리아
기타	5	팔레스타인, 북아일랜드, 러시아, 모리셔스, 영국

독일의 연방차별금지청은 독일의 「차별금지기본법」에 근거하여 설립되었지만 독립적으로 지시를 받지 않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¹⁰⁵⁾

남아프리카공화국 「헌법」 제184조는 아래와 같이 인권위원회의 역할과 권한에 대해 정하고 있다.¹⁰⁶⁾

1. 남아프리카공화국 인권위원회는
 - a. 인권 및 인권 문화에 대한 존중을 증진해야 한다.
 - b. 인권의 보호, 발전 및 달성을 증진해야 한다.
 - c. 공화국 내 인권 준수 상황을 감시 및 평가해야 한다.
2. 남아프리카공화국 인권위원회는 다음의 권한을 포함해, 국법에 규정된 바와 같이 동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권한을 가진다.
 - a. 인권 준수 상황을 조사 및 보고할 권한
 - b. 인권이 침해된 경우, 그에 적합한 보상을 보증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권한
 - c. 연구를 실시할 권한
 - d. 교육을 실시할 권한
3. 남아프리카공화국 인권위원회는 주거, 보건, 음식, 물, 사회보장, 교육 및 환경에 관한 권리장전의 권리를 실현한다는 목표 하에 관련 국가기관이 취해 온 조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매년 해당 국가기관에게 요구해야 한다.
4. 남아프리카공화국 인권위원회는 국법에서 정한 별도의 권한 및 기능을 추가로 담당한다.

104) 국가인권위원회, “세계 각국의 국가인권기구 설립 및 운영현황 연구” (2016), 1218.

105) 이해경외 4,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최종견해 이행방안 연구”, 한국장애개발원 (2015). 25-35.

106)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연구자료집 6 헌법개정 조문별 참고사항(그 밖의 사항)” (2018). 60.

(4) 소결 및 제언

국가인권위원회의 인력확충은 진정사건에 대한 양질의 조사와 권고를 위해서 절실한 과제이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확보는 정권의 교체에 따라 지원과 존중이 달라지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 이를 위해 장기적으로 개헌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를 헌법기구화 하여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으나, 당장 시급하게는 국가인권위원회에 독립적인 재정과 인사 권한을 부여하고, 이를 존중하는 관행이 정착되도록 법률과 정책을 정비해야 할 필요도 있다.

라. 소송비용의 면제 또는 감경과 법률구조 통계

(1) 정부의 이행현황

법원행정처는 이미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대상자에게 소송구조제도(「민사소송법」 제128조)를 운영하고 있고, 소송비용의 면제·경감 규정이 입법된다면 면제나 경감도 가능하다는 일부 조건부 수용을 표시하였다. 이를 위해 소송구조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국회에서 소송비용 관련 법률안 개정 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하였고, 2018년 1월에는 소송구조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방안을 추가하였다. 한편, CRPD 제2·3차 병합 국가보고서(초안)에서는 최근 3년간(2015~2017) 장애인 차별금지법 위반 관련 소송으로 법률구조를 받은 사례는 1건으로, 국가인권위원회나 법무부 시정명령 등 비사법적 구제수단이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2) 소송비용 면제 또는 감경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차별구제소송은 손해의 입증이 어려운 경우 상대방의 이익을 손해로 추정하거나(「장애인차별금지법」 제46조 제2항), 증거조사와 변론의 전 취지를 통해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게 하는 등(「장애인차별금지법」 제46조 제3항) 차별 구제를 구하는 당사자의 입증책임을 상당부분 경감하여 주었다. 그러나 여전히 차별로 인한 상대방의 이익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내는 것이나,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받기 위한 입증계획을 세우는 데에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다.

반면에 차별적인 조치를 취한 상대방은 주로 고용주나 서비스나 재화의 제공자인 기업 또는 정부가 되므로, 정보의 양과 흐름, 비용과 시간의 투입 등에서 큰 격차가 있을 수밖에 없다. 즉 차별구제소송은 난이도가 매우 높은 소송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높은 난이도의 소송을 외부의 지원 없이 홀로 수행하거나 모든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비법률가는 많지 않다.

또한 차별구제청구 자체가 대한민국에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법리이므로, 이를 이해하고 활용하여 정착시키는 데에 법률가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최근의 차별구제 소송은 리딩케이스가 많고, 다른 소송에 비해 장기간 계속되는 경우도 있다.¹⁰⁷⁾ 또한 법리 정립의 초기 단계이므로 패소의 위험도 상당하여, 패소 위험을 부담하고 소를 제기해야 하는데, 패소 시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과 같은 소송비용 부담이 소제기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차별구제 소송에서 소송비용의 면제 또는 경감제도의 필요성은 무시할 수 없다.

소송구조는 기본적으로 당사자가 이를 신청해야 받을 수 있으므로, 당사자가 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절차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에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홍보비용을 투입해야 한다. 또한 차별구제소송은 당사자 개인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모든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이익으로 환원된다는 점에서 개인에게 패소비용을 포함한 소송비용을 모두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부당할 수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소송비용의 면제 또는 감면제도의 도입이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다. 그러나 법원행정처는 입법부에서 소송비용의 면제 또는 감면을 위한 입법안이 나온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소극적인 답변을 하였다. 법원행정처가 기존의 사법개혁안이나 상고법원 도입처럼 적극적으로 검토의견이나 입법요구를 할 의사가 없는 것이 안타깝다. 한편 법무부에서도 관련 입법안을 제출할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다.

(3) 소송구조의 운영

법원행정처는 이미 소송구조제도가 운영되고 있다고 답변하였지만, 소송구조의 대상이 되는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대상자가 반드시 차별피해를 받은

107) 에이블뉴스, “에버랜드 장애인 탑승거부, 3년만에 승소”, 에이블뉴스 (2018. 10. 11. 16:55). <http://abnews.kr/1K4E>.

모든 장애인의 범위와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장애인연금법」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수급권자는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으로 소득인정액이 그 중증장애인의 소득·재산·생활수준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2018년 121만원)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그리고 본인 또는 배우자가 아래의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장애인연금 수급권자에서 제외된다.

제4조(수급권자의 범위 등)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과 그 배우자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금을 받은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에게는 장애인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공무원연금법」 제42조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에 따른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장해연금, 장해보상금, 유족연금, 유족연금일시금, 순직유족연금 또는 유족일시금(유족일시금의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 제5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유족이 같은 법 제60조에 따라 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로 한정한다)
2. 「군인연금법」 제6조에 따른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퇴역연금공제일시금, 상이연금, 유족연금 또는 유족연금일시금
3. 「별정우체국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유족연금 또는 유족연금일시금
4.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10조 또는 제13조에 따른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중 같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직역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의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이와 같이 중증장애를 가지고, 18세 이상이고, 일정한 소득 이하이며, 배우자나 본인이 다른 연금의 수급자가 아니어야 하므로 모든 차별피해 장애인이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민사소송법」 제128조는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소송구조를 받을 수 없다는 단서를 두고 있다. 그러나 차별구제소송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한민국에 도입되어 정착되는 과정에 있으므로 현재로서는 승소가능성을 예측하기 어려운 사건이 많다.

소송 중 수화통역비용을 청각장애인 당사자가 원칙적으로 부담하고 소송구조를 받게하는 것에 대한 비판도 있다.¹⁰⁸⁾ 소송당사자의 장애와 관련된 통번역과 장비의 지원은 소송구조의 대상이 아니라 법원의 사법접근성 확보 방안이 되어

108) 2018. 10. 26. 제5차 FGI에서 희망을만드는법 김재왕 변호사의 의견.

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송당사자가 민원실에서 이러한 정당한 지원을 선택해서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문제라는 의견도 있다.¹⁰⁹⁾

(4) 소송구조 관련 통계

법원은 장애인에 대한 소송구조 신청 건수, 인용 건수, 기각 시 이유와 관련한 통계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질의에 회신하였다. 대신 최근 5년간의 사법연감을 통해 전체 소송구조의 인용율이 62.96% 정도임을 알 수 있다. 한편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상담 또는 소송대리를 제공받은 장애인은 2015년부터 2017년 사이에 단 1명뿐이었다.

[표-10] 2012년~2016년 소송구조 현황

	신청	처리	인용	기각	기타	직권	인용비율
2012 ¹¹⁰⁾	7,045	6,309	4,516	1,464	329		64.10%
2013 ¹¹¹⁾	8,930	8,371	6,045	1,909	417		67.69%
2014 ¹¹²⁾	9,708	9,208	6,143	2,505	560		63.28%
2015 ¹¹³⁾	9,666	9,641	6,244	2,783	614	722	64.60%
2016 ¹¹⁴⁾	7,952	7,947	4,315	3,144	488	906	54.26%
계	43,301	41,476	27,263	11,805	2,408	1,628	62.96%

(5) 해외 사례

미국 「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이하 “ADA”)은 장애인이 ADA에 의거하여 제기한 모든 소송 또는 행정절차에서 소송비용을 법원 또는 행정기관이 스스로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영국도 이와 유사한 규정을 두

109) 2018. 10. 26. 제5차 FGI에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김성연 사무국장의 의견.

110) 대법원, “2012 사법연감”, (2012), 792.

111) 대법원, “2013 사법연감”, (2013), 810.

112) 대법원, “2014 사법연감” (2014), 796.

113) 대법원, “2015 사법연감” (2015), 546.

114) 대법원, “2016 사법연감” (2016), 580.

고 있다.¹¹⁵⁾ 한편 오스트리아도 소송비용에 대한 최소화를 요구받고 있는데, 이에 대한 조치나 답변은 없었다.¹¹⁶⁾

(6) 소결 및 제언

적어도 장애인차별구제소송은 판결의 영향력과 효과가 광범위하고, 현재는 법리가 도입되어 정립의 단계라는 점, 고난도의 소송으로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소송비용을 면제하거나 감면하는 제도를 적극 검토하여 차별금지소송의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와 국회, 사법부가 협력하여 이를 입법과제로 추진해야 한다. 한편 현행 소송구조제도의 통계를 조사해 장애인 차별금지소송에서 소송구조를 얼마나 받고 있고, 다른 소송에 비해서 비율이 얼마나 높은지 실태를 파악해야 한다.

마. 시정명령 요건의 완화와 법무부 통보비율

(1) 정부의 이행현황

보건복지부는 시정명령이 적은 이유를 설득을 통한 자율적 이행이 유도된 결과로 파악하면서, 조건부 수용으로 표시하였다. 그리고 법무부는 권고사항의 이행을 위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3조 요건 완화와 시정명령 활성화의 연관성을 검토하고, 토론회 등을 통해 동 조항의 요건완화 필요성에 대한 의견 청취를 하였다고 밝혔다.

다행히, CRPD 제2·3차 병합 국가보고서(초안)에서는 시정명령의 발부요건을 완화하는 입법안¹¹⁷⁾이 2017. 12. 21. 에 발의되어 계류 중이라고 하면서, 시정명령의 제도개선방안을 연구할 예정이고, 하반기 중에 보건복지부에 법률개정 요청을 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115) 차선자와 4, “장애인권리협약의 국내적 이행을 위한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0), 249.

116) 이해경외 4, 앞의 글, 25-35.

117) 윤소하 의원의 1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류 중)”, 2010953, (2017. 12. 21.). “차별행위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시정명령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그 요건 중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고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삭제함(안 제43조제1항).”

한편, 2016년에 법무부는 2008. 4. 11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2015. 8. 31.까지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장애인차별에 관한 권고 총 100건을 통보 받아, 권고이행이 82건, 시정명령이 2건, 진행 중이 16건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2018년에는 같은 통계로 2008. 4. 11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2017. 10. 30.까지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장애인차별에 관한 권고 총 117건을 통보 받아, 권고이행이 87건, 시정명령이 2건, 진행 중이 28건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CRPD 제2·3차 병합 국가보고서(초안)에서는 통보 받은 진정사건은 총 125건(2018)으로 시정명령 2건, 종결 87건, 진행 중 36건이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행위 시정을 권고 중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한 장애 관련 진정 사건의 비중을 묻는 쟁점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법으로 권고를 법무부에 통보하도록 하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고유의 제도¹¹⁸⁾로 다른 법률은 이와 같은 규정이 없으므로, 비율을 계산할 수가 없다고 하였다. 대신 전체 장애인 관련 진정 및 전체 진정사건에서의 비율 등을 아래의 표로 정리하여 답하였다.

[표-11] 국가인권위원회 장애분야 사건접수 현황

연도	진정건수	장애분야		비고
		차별	침해 (정신보건시설)	
계	30,631	11,452	19,179	
2008.4.11.~	588	585	3	
2009	1,293	725	568	
2010	2,976	1,695	1,281	
2011	2,337	886	1,451	
2012	3,255	1,340	1,915	
2013	3,775	1,312	2,463	
2014	4,260	1,139	3,121	
2015	4,221	1,147	3,074	
2016	4,337	1,511	2,826	
2017	3,589	1,112	2,477	

118)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2조(권고의 통보) 위원회는 이 법이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의 권고를 한 경우 그 내용을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표-12] 장애차별 진정 사건 권고 내역 및 이행현황(2008.4.11.~2018.3.31.)

연도	권고 이행 현황					
	권고건수	수용	일부수용	불수용	검토중	수용률
전체	443	236	172	7	28	
2008	22	17	4	1	-	
2009	10	7	-	3		
2010	25	15	9	1		
2011	119	98	21			
2012	115	21	93	1		
2013	28	22	6			
2014	15	15				
2015	17	16	1			
2016	19	18			1	
2017	69	7	38	1	23	
2018	4				4	

[표-13] 최근 5년간 진정·상담·민원·안내 등 접수·처리 현황

(단위: 건)

구분	진정·상담 민원·안내 총 접수 건수	진정사건 총 건수		인권침해 진정사건		차별행위 진정사건		기타 진정사건	
		접수	처리	접수	처리	접수	처리	접수	처리
누계	885,064	122,899	118,908	94,194	91,643	26,439	25,001	2,266	2,264
2017	91,632	12,325	10,999	9,263	8,576	3,029	2,371	33	52
2016	80,281	10,645	10,868	8,160	8,424	2,431	2,410	54	34
2015	80,686	10,695	10,894	8,499	8,795	2,188	2,016	8	83
2014	82,093	10,923	10,331	8,708	8,093	2,197	2,223	18	15
2013	82,234	10,056	10,427	7,457	7,450	2,496	2,858	103	119

※ 누계는 위원회 설립일(2001. 11. 25.)부터 2017. 12. 31.까지 합계이다.

[표-14] 최근 5년간 사유별 차별행위 진정사건 접수 현황

(단위: 건)

접수 연도	합계	장애	비율
누계	26,439	12,106	45.79%
2017	3,029	1,113	36.74%
2016	2,431	1,511	62.16%
2015	2,188	1,147	52.42%
2014	2,197	1,139	51.84%
2013	2,496	1,312	52.56%

※ 누계는 위원회 설립일(2001. 11. 25.)부터 2017. 12. 31.까지 합계이다.

※ 국가인권위원회가 회신한 전체 통계 중장애 관련 부분과 합계만 추출

(2) 저조한 시정명령 실적

현재까지 시정명령은 단 2건에 불과하다. 첫 번째 시정명령은 뇌병변 2급 장애인을 직권면직한 구미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게 복직과 인권교육을 명령한 사안¹¹⁹⁾이고, 두 번째는 수원역 앞 지하도에 승강기를 설치하도록 명령한 사안¹²⁰⁾이다.

법무부는 시정명령이 활발하지 않은 이유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의 자율적 이행이 유도된 결과라고 하였다. 이러한 자율적 이행을 유도하기 위해 즉각적인 구제가 필요한 상황을 방치하는 것은 아닌지 실태파악을 할 필요가 있다. 2016년의 CRPD 이행계획과 2018년 이행현황에 의하면, 2015년 8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총 누적 진정건수가 17건이 늘어나는 동안, 자율적인 권고이행은 5건 증가했고, 진행 중인 사건은 12건이 늘어 1건당 이행 또는 시정명령까지 꽤 긴 시간이 걸리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한편, 시정명령 여부를 심사하는 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가 1년에 1회 정도 개최될 뿐이고, 위원장도 장관 대신 차관이 오거나, 그마저도 인사만 하고 나간다는 비판이 있었다. 또한 회의 주기가 긴 반면, 담당자는 인사 규칙에 따라 자주

119) 노컷뉴스, “법무부, 장애인차별 금지법 첫 시정명령”, 다음뉴스, (2010. 4. 28. 20:54).
<https://news.v.daum.net/v/20100428205409486>.

120) 연합뉴스, “법무부 장애인 이동권 제한 첫 시정명령”, 다음뉴스 (2012. 9. 28. 16:22).
<https://news.v.daum.net/v/20120928162212932>.

바뀌어 전문성이 부족하고, 직전 회의와의 연결성도 부족하다는 평가가 있었다.¹²¹⁾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3조(시정명령)
① 법무부장관은 이 법이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의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고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1. 피해자가 다수인인 차별행위에 대한 권고 불이행
2. 반복적 차별행위에 대한 권고 불이행
3.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고의적 불이행
4. 그 밖에 시정명령이 필요한 경우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으로서 이 법에서 금지되는 차별행위를 한 자(이하 “차별행위자”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3) 현행 시정명령 제도의 개선점

법무부의 시정명령에 관한 현행 규정에는 시정명령을 위한 조사방법과 절차 등에 대한 규정을 전혀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시정명령제도가 보다 실효적인 구제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법무부 장관의 시정명령을 위한 조사방법 및 절차, 조사 불응 시 제재수단 등에 관한 규정을 두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¹²²⁾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법무부장관의 시정명령이 발령될 수 있는데, 법무부가 이를 위해 적법성과 타당성을 별도로 심사하고 국가인권위원회와 다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 이후에 사정변경이 발생하여 의무를 축소하거나 가중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정리도 필요하다.¹²³⁾¹²⁴⁾

끝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3조는 시정명령의 발부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

121) 2018. 10. 22. 제1차 FGI에서 장애여성네트워크 김효진 대표의 의견.

122) 김종일, “CRPD의 국내 이행에 관한 고찰”, 입법학연구 제14집 제1호, (2017), 155.

123) 김종일, 앞의 글, 155-156.

124)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권고 이행에 대한 모니터링을 함께 강화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었다. 2018. 10. 26. 제5차 FGI에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김성연 사무국장의 의견.

하고 현실적이 아니하므로 요건을 완화하고 나아가 발부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우선 현행법은 “피해의 심각성”과 “공익에 미치는 영향의 중대성”을 동시에 요구하고 있는데, 과연 두 요건이 별개의 요건인지도 의문이고, 둘 중에 한 요건만 만족하더라도 다른 한 요건이 당연히 만족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또한 두 요건의 표현이 명백하지 않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서 권고나 재판 결과가 달라지곤 한다.¹²⁵⁾ 그러나 무엇보다 이미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행위가 존재한다면 그 결과가 심각하고 광범위한지 살펴 볼 필요 없이 차별상태가 해소되는 것이 타당하다. 차별행위의 피해가 심각하지 않거나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해서 차별행위를 방치해도 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현행법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의 권고를 받은 경우만을 전제하고 있는데, 제25조에 의한 권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즉 「국가인권위원회법」은 당사자의 진정이 있는 경우에 하는 권고(제44조) 이외에도 위원회가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기관등에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25조). 실제로 제25조에 따라 장애인 차별과 관련된 다수의 권고가 내려지고 있으므로, 시정명령의 대상이 이 부분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법무부는 2016년 이후로 줄곧 시정명령 활성화를 위해 요건 완화가 적절한 대책이 될 수 있는지 토론회 등을 열어 의견을 청취하겠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토론회나 연구를 전혀 실시하지 않고 있다.

(4) 법무부 통보의 통계 관리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의 권고를 법무부에 통보하는 경우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2조 밖에 없으므로 따로 비율이나 통계가 없다는 정부의 답변은 타당하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결정 수와 법무부가 통보 받은 권고의 수가 다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피진정인의 진정에 대하여 권고 결정을 하는 경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2조에 따라 법무부에 통보하게 되어 있으므로 모든 권고가 통보되어야 하는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2008년 이후 2017년까지 439건의 권고를 내렸으나 법무부가 통보 받았다고 하는 것은 약

125) 2018.10.23. 제2차 FGI에서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이용석 정책홍보실장의 의견.

25%인 117건뿐이다. 법무부와 국가인권위원회의 집계에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5) 소결 및 제언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권고된 사안을 통보 받으면, 법무부장관은 자체적으로 사실관계 및 권고 이행여부를 조사하도록 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의 규정대로 3개월 내에 이행이 없으며 바로 시정명령이 내려져야 한다.¹²⁶⁾ 이를 위해서는 현행 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의 개최주기를 단축하고, 사례 조사 및 회의 운영만을 담당하는 별도의 직원을 두어야 한다.

또한 이미 차별로 판명된 사안에 대해 피해의 심각성과 공익에 미치는 영향의 중대성을 요건으로 하는 현행 규정은 개정되어야 한다. 지난 2017. 12. 21. 윤소하의원이 발의한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에서는 시정명령 요건 중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고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삭제하도록 하였는데, 이를 시급히 입법할 필요가 있다.

바. 중지명령권 행사에 관한 인식제고

(1) 정부의 이행현황

CRPD 제1차 국가보고서 권고사항 이행방안(2016.1.21.)에서 법원행정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준수되고, 재판 절차에도 효과적으로 반영되도록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2012년부터 매년 1회 법관 및 법원 공무원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며, 지속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CRPD 제2·3차 병합 국가보고서(초안)에서는 그간의 교육 실적을 담고 있는데, 2012년부터 매년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 중이고, 2016년 기준 전체 대상자 14,738명 중 교육을 받은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9,620명이고(참석비율 65.3%), 2017년 기준 전체 대상자 14,955명 중 교육을 받은 숫자는 9,887명(참석비율 66.1%)이라고 하였다.

126) 김종일, 앞의 글, 156-157.

(2)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8조의 명령권한

장애인이 차별당한 경우에 장애인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8조에 의하여 법원에 차별을 멈추게 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법원은 차별이 있었다고 판단하면 그 차별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¹²⁷⁾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고의과실의 입증책임을 전환하거나 완화하고 있지만, 이러한 보완책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민법」상 손해배상은 여전히 금전배상을 원칙으로 하는 만큼(「민법」 제763조, 제394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되는 것만으로는 차별의 시정을 차별행위자에게 직접적으로 강제하기 부족하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8조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도입된 것이다.¹²⁸⁾

그런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8조는 우리 법제 내지 우리법제가 주로 계수한 대륙법 체계에서는 좀처럼 찾아볼 수 없는 종류의 제도로 미국의 강제명령제도(injunctive relief measure)와 유사하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운용상 어려움이 많다는 소리도 들린다. 최근 유의미한 하급심 판례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실제 적용례가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고, 관련된 학계의 논의도 부족한 상황이다.¹²⁹⁾ 이 제도의 이용을 꺼리는 이유로 ① 사적자치 혹은 계약자유에 근거한 문제제기, ② 권력분립이론에 근거한 문제제기, ③ 한국법제가 대륙법계 전통을 따르고 있으므로 영미법계 전통에 따른 법원의 구제조치는 난처하다는 문제제기가 있고,¹³⁰⁾ ④ 청구인인 장애인의 입장에서는 법원보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접근성이 높기 때문이기도 하다.¹³¹⁾

사적자치의 원칙이 민법의 최고원리임은 자명하지만 계약 주체들 간에 대등한 교섭력이 전제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계약자유원칙의 수정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8조의 명령권한도 사적자치의 수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행정기관의 차별행위에 대하여 법원이 시정 등을 위해 판결을 내리는

127) (사)한국발달장애인가족연주소, “장애인차별금지법해설서” (2018), 234.

128) 최초록외 2,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법원의 구제조치”, 장애인법연구(공익법총서2), 경인문화사 (2016), 253.

129) 최초록외 2, 앞의 글, 246.

130) 김재원, “장애 차별에 대한 구제조치 - 법원을 통한 구제를 중심으로”, 법과사회 제45호 (2013), 274-276, 최초록외 2 앞의 글 284에서 재인용.

131) 임성택, “장애인차별금지법상 법원의 구제조치”, 2013년 장애인분야 공익소송 보고대회 자료집 (2013), 81-82, 최초록외 2, 앞의 글, 284 에서 재인용.

것은 삼권분립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비록 행정소송법에는 의무이행소송을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이를 도입하는 법률안이 마련되어 있기도 하다. 기존에 한국법체계에 없던 낯선 제도이긴 하지만, 일단 도입되어 활용되는 과정에서 익숙한 제도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현시대의 법률과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당사자들이 법원의 구제조치의 실효성을 인지할수록 이 제도의 활용도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3) 관련 판결

[표-15] 차별구제소송 사례

<p>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10. 선고 2014가합 11791 판결</p>	<p>「장애인차별금지법」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을 종합하면 노선버스 운송사업자는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장애인이 버스에 승하차할 때 ‘휠체어 승강설비’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데 피고 금호고속과 명성운수가 운행하는 버스 일부에 휠체어 승강설비가 설치돼 있지 않다’며 ‘장애인인 원고들이 장애가 없는 사람들과 동등하게 승하차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씨 등이 ‘정부와 지자체가 저상버스 도입계획을 수립해 달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상버스 도입이 「교통약자법」상 의무는 아니다’라며 기각했다.¹³²⁾</p>
<p>서울고등법원 2017. 12. 5. 선고 2017나 2024388 판결</p>	<p>재판부는 2층버스에 휠체어 승강설비와 전용공간을 확보하지 못한 운송회사에 대하여, “「교통약자법」 등의 규정 및 입법취지를 종합하면 교통사업자는 버스에 휠체어 승강설비와 교통약자용 좌석을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고, 휠체어 승강설비가 설치된 버스에는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전용공간을 확보해야 한다”며 “해당 버스도 휠체어 승강설비가 설치된 버스이므로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전용공간을 확보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¹³³⁾</p>
<p>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8. 30 선고 2011가합 38092 판결</p>	<p>정신장애 3급으로 보험가입을 신청하였으나, 보험회사에서 보험인수를 거절한 사안에서, 법원은 청약의 유인행위를 중지하지 말 것, 보험체결을 위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보험계약청약서 양식을 교부하라고 한 청구를 기각하고, 손해배상 의무만 인정하였다.</p>
<p>서울중앙지법 2017. 12. 7. 선고 2016가합 508596 판결</p>	<p>장애인이 영화를 관람할 수 있도록, 화면해설 또는 자막파일과 FM 보청기를 제공하고, 영화 웹사이트를 통해 화면해설 도는 자막을 제공하는 영화와 상영관 및 상영시간, 편의의 내용을 제공하고, 이를 점자자료 또는 큰 활자로 확대한 문서, 한국 수어 통역 또는 문자에 의한 정보로 제공할 것을 명령하였다.</p>
<p>수원지법평택지원 2017. 7. 7. 선고 2016가단 45804 판결</p>	<p>법원은 버스가 소속 운전자들에게 장애인에 대한 버스 승차거부 행위, 정류소 무정차통과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 휠체어 승강기 사용방법이 포함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명하였지만,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였다.</p>

132) 법률신문 “[판결] 시외버스에 휠체어 승하차설비 갖춰야” 법률신문 (2015. 7. 10).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94271>.

133) 법률신문 “[판결] 버스에 휠체어 전용공간 무 장애인차별, 위자료 지급해야” 법률신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11. 선고 2015가합 553445 판결	놀이공원이 시각장애인들의 롤러코스터 탑승을 제한한 것은 장애인 차별로 판단하여, 당사자에 대한 위자료 및 시각장애인 탑승 제한을 규정한 자체 가이드북 내용을 시정하라고 명령했다. ¹³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 7. 3. 선고 2013가합 2599 판결	대학에서 근무하던 교직원이 교통사고로 장애판정을 받아 승진대상자에서 누락한 사안에 대해, 법원에서는 4급 이상 자격이 필요한 직책의 후임자 심사 대상에 원고를 포함하라는 판결을 하였다. ¹³⁵⁾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9. 4. 선고 2014가합 593279 판결	놀이공원이 가이드북을 근거로 지적장애인의 놀이기구 탑승을 거부하여 부당한 차별행위를 한 경우, 가이드북의 해당 내용을 삭제·수정하여 차별을 시정하여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¹³⁶⁾

(4) 소결 및 제언

법관에게 장애인식 개선 교육은 연 1회 실시하고 있다는 답변은 「장애인복지법」 제25조에 근거한 모든 공무원에 대한 의무교육으로, 다른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인식개선교육에 대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장애인권리위원회가 이 권고를 통해 법관에게 요구한 것은 단순한 인식 개선 교육의 이행여부가 아니라, 교육의 내용을 통해 법관들이 실제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8조의 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인지하도록 하여, 구체조치를 활성화하라는 것이었다. 따라서 교육 내용의 적정성이 얼마나 확보되고 있는지 내용을 공개하고 평가를 받아야 한다.

법원이 가진 명령권한이 한국에서는 낮은 제도임이 틀림없다. 그러나 적극적인 차별 구제를 위해 필요한 제도이기도 하다. 새로운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장애인 당사자와 변호사들의 적극적인 소제기도 필요하지만, 법관들이 장애인의 차별을 구제하기 위해서 어떠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 등을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법관을 대상으로 차별구제소송에 대한 교육을 확대·심화하여야 한다.

(2017. 12. 7.).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23608>.

134) 연합뉴스, “법원 ‘에버랜드, 시각장애인 롤러코스터 탑승 제한은 차별’”, 다음뉴스 (2018. 10. 11.) <https://news.v.daum.net/v/20181011143228772>.

135) 김종일, 앞의 글, 156.

136) 김종일, 앞의 글, 157.

3. 제6조 장애여성

가. CRPD 제6조

제6조 장애여성

1. 당사국은 장애여성과 장애소녀가 다중적 차별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인정하고, 이러한 측면에서 장애여성 과 장애소녀가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완전하고 동등하게 향유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2. 당사국은 여성이 이 협약에서 정한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행사하고 향유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여성의 완전한 발전, 진보 및 권한강화를 보장하는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이 조문과 관련한 일반논평(General Comment)은 위 조항의 용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다중적 차별(Multiple discrimination)은 한 개인이 두 개의 혹은 그 이상의 차별의 근거로 인해, 더욱 복잡하고 심화된 차별을 받는 상황을 의미한다. 중복 및/또는 복수 형태의 차별(Intersectional discrimination)은 수 개의 차별의 근거가 동시에 서로 상호작용하여 서로 떼려야 뗄 수 없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나. 최종견해 및 쟁점목록

(1) 최종견해

최종견해

13. 위원회는 장애 관련 법률과 정책이 성인지적 관점을 포함하지 않고 있음에 우려를 표한다. 또한 위원회는 장애여성에 대한 가정폭력과 거주시설 내·외부에서 벌어지는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지 않은 점에 우려를 표한다. 아울러 장애여성과 소녀들이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임신 및 출산기간 동안 장애여성에게 충분한 지원이 제공되고 있지 않음에 우려를 표한다.
14. 위원회는 당사국이 장애 관련 법률과 정책에 성인지적 관점을 주류화할 것과 장애여성을 위한 특화된 정책을 개발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위원회는 당사국이 특히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구상할 때, 장애인지적 관점을 도입하는 등 거주시설 내·외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장애여성에 대한 폭력을 해결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아울러 위원회는 당사국이 장애여성들이 정규교육을 마쳤는지 또는 그로부터 배제되었는지 관계없이, 그들의 선택과 필요에 따라 적절한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위원회는 당사국이 장애여성의 임신 및 출산기간 동안 그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것을 권고한다.

(2) 쟁점목록

쟁점목록

- 5-1. 장애인 관련 법률과 정책에 성 인지 관점(gender perspective)을 중점적으로 반영하고, 다층적 차별 및/또는 복합적 차별(intersectional and/or multiple forms of discrimination) 해소 조치가 포함된 장애 여성 관련 정책 수립 여부 및 관련 조치를 설명하시오.
- 5-2. 가족에 의한 정신적·신체적 폭력을 포함해, 거주 시설 안팎에서 장애 여성을 상대로 자행되는 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시행하며, 이를 위해 성폭력과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장애인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 수립 여부 및 관련 조치를 설명하시오.
- 5-3. 장애 여성이 자신의 욕구와 선택에 따라 적절한 평생교육을 받게 하고, 필요시 교육에 대한 재정적 지원 여부 및 관련 조치를 설명하시오.
- 5-4. 임신 및 출산기 장애 여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강제 불임 시술이나 낙태, 부모 자격 박탈 방지를 위한 보호조치 시행 여부 및 관련 조치를 설명하시오.

(3) 대상 쟁점

아래에서는 1) 성인지적 관점의 반영 또는 주류화, 2) 폭력 예방, 3) 모성권에 관한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의 권고 내용, 정부답변을 밝히고 그에 대해 평가하도록 하겠다.

다. 성인지적 관점의 반영 또는 주류화

(1) 권고 내용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는 최종견해를 통하여 “장애 관련 법률과 정책에 성인 지적 관점을 주류화할 것, 장애여성을 위한 특화된 정책을 개발할 것을 권고”하였다. 쟁점목록에 따르면 “젠더 관점을 장애 관련 법령 및 정책에 반영하고, 중복 및/혹은 복수 형태의 차별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한 여성장애인을 위한 전문적인 정책을 개발”하고 있는지를 제시하고 있다.

(2) 정부 이행현황 및 이행계획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는 ① 「장애인복지법」 제7조 및 제9조에서 국가가 여성장애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정책을 강구할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산후조리도우미 지원, 출산비 지원 등 장애여성을 위한 별도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는 점, ②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인보조기구 지원 등의 장애인 대상 사업에 대해 「양성평등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성인지 예산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을 수용 사유로 밝히고 있다.¹³⁷⁾

(3) 정부 이행현황 및 이행계획에 대한 평가

(가) 장애 여성을 위한 별도 정책 시행

제7조(여성장애인의 권익보호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기초학습과 직업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정책을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장애인복지법」 제7조 및 제9조에서 국가가 여성장애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정책을 강구할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위 규정의 내용이 추상적일 뿐 아니라, 이러한 의무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의 제재에 대하여는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선언적 규정에 그치고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단순히 이러한 조항들의 “존재”만을 들어, 정부가 UN 장애인권리위원회의 권고에 따르고 있다고 주장하기는 어렵다.

또한 일반논평에서 중복 및/혹은 복수 형태의 차별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조치를 포함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젠더 관점의 주류화에 대한 이해 또한 부족하다.

137) 이 중 산후조리도우미 지원, 출산비 지원 등은 모성권과 밀접히 연결되므로, 모성권을 다룰 때 별도로 다루기로 한다.

(나) 성인지 예산 현황

[표-16] 2018년도 성인지 예산서 현황

		2017(A)	2018 안(B)	증감(B-A)	증감률(%)
중앙관서 수		42	41	△1	△2.4
회계	예산	199,809	236,039	36,230	18.1
	사업 수	263	260	△3	△1.1
기금	예산	96,103	107,922	11,819	12.3
	사업 수	87	85	△2	△2.3
합계	예산	295,912	343,961	48,049	16.2
	사업 수	350	345	△5	△1.4

(단위: 개, 백만원)

	2017		2018	
	대상사업	금액	대상사업	금액
통계청	1	3,043	1	3,173
병무청	1	9,009	1	8,195
경찰청	4	25,724	4	43,869
문화재청	4	30,266	4	28,150
농촌진흥청	8	22,505	8	21,820
산림청	1	10,619	1	26,247
특허청	4	4,306	4	14,132
기상청	5	37,849	5	14,838
행정중심복합 도시건설청	1	2,220	0	0
해양경찰청	0	0	1	1,750
계	350	29,591,219	345	34,396,105

	2017		2018	
	대상사업	금액	대상사업	금액
국회	1	12,369	1	14,215
대법원	2	75,357	1	59,524
헌법재판소	1	130	1	11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168	1	168
기획재정부	2	20,801	2	6,954
교육부	11	195,844	11	186,69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4	598,333	16	733,752
외교부	14	186,642	12	178,709
통일부	5	44,556	6	43,010
법무부	12	88,482	12	89,489
국방부	6	34,924	4	27,123
행정안전부	8	56,751	5	34,784
문화체육관광부	26	309,612	21	333,810
농림축산식품부	18	358,023	19	361,897
산업통상자원부	9	129,986	8	132,620
보건복지부	40	14,817,393	39	17,088,726
환경부	6	32,097	6	38,494
고용노동부	38	4,008,005	38	5,216,797
여성가족부	39	551,060	39	596,159
국토교통부	14	2,108,664	15	2,894,019
해양수산부	13	96,448	13	77,203
중소벤처기업부	21	5,597,946	27	5,990,248
국민안전처	1	1,750	0	0
국가보훈처	4	63,694	4	66,276
법제처	1	289	1	292
식품의약품안전처	4	51,206	4	56,917
국가인권위원회	2	213	2	205
방송통신위원회	1	1,350	1	1,538
공정거래위원회	1	73	1	73
국민권익위원회	2	20	2	13
국세청	1	21	1	35
관세청	2	2,389	2	2,904
조달청	1	1,102	1	1,171

국회예산정책처는 2018년 성인지 예산서에 대하여, 아직 성인지 대상사업으로 부적절한 사업¹³⁸⁾이 포함되어 있고 잘못 선정된 성과목표를 제시하는 사업이 다수 발견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남녀간 역차별 문제를 파생하는 사업이 나타나고 있어 질적 성장이라는 면에서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¹³⁹⁾

(다) 해외의 사례 및 제안

1) 캐나다

[캐나다]

캐나다의 기존 여성정책은 이른바 전문가-행정 모델(Expert-bureaucratic model)에 의거하여 수립되고 이행되고 있었다. 이에 대하여 “전문가에게 더 큰 권위를 부여하여 여성당사자집단을 주변화시킨다”는 비판이 있었다.¹⁴⁰⁾ 또한 여성장애인 당사자들은 자신들이 캐나다 사회의 가장 열악한 사회적 환경에 처해있음을 강조하여, ① 경제적 영역, ② 직업활동과 자원봉사를 비롯한 사회적 참여 영역, ③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 영역, ④ 부정적 사회태도영역에 대한 지원을 요구하였다.¹⁴¹⁾

이와 관련해 캐나다 정부가 성인지적 정책으로 가장 우선적인 개선을 이행한 영역은 출산을 포함하는 양육영역으로, 캐나다의 연방 정부는 육아 휴가를 포함한 직장 보험을 담당하며, 각 주 정부에서는 사회 및 가족 서비스를 담당한다.¹⁴²⁾

2) 호주

[호주]

사회적 성을 기반으로 하는 여성정책에서 장애를 이유로 배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호주정부의 여성장애인 정책의 추진방향이다. 즉, 호주의 여성장애인정책은 거의 대부분 여성정책을 따르고 있다고 볼 수 있다.¹⁴³⁾ 주된 여성정책은 다음과 같다.

① 다양한 여성개발 프로그램: 여성능력 배양 보조금을 지원하고, 정책개발을 위하여 연구사업도 지원하고 있다.

138) 위 분석서는 사업의 대상이 성별로 구분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무의미한 사업, 해당 사업만을 통한 성별 불평등 제고가 어려운 사업, 사업의 대상자가 남녀간 구분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경우 이러한 사업을 성인지 대상사업으로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다.

139) 국회예산정책처, “2018년도 성인지 예산서 분석” (2017), 75.

140) 강민희, “캐나다와 호주의 성인지적 여성장애인 지원정책 고찰”, 여성문화연구 제7권 제2호 (2013), 39.

141) 강민희, 앞의 글, 41.

142) 강민희, 앞의 글, 41.

② 여성평등기회국(Equal Opportunity for Women in the Workplace Agency)에서는 평등한 여성고용을 위해, 평등한 고용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고용주에게 기업공로상을 수여하며, 남녀간 불평등한 임금격차를 보여줄 수 있도록 공정급여도구(pay equity tool)를 개발하고 있다.

③ 고용변호사사무국에서는 지역사회 파트너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여성들과 직장에서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한 직원들을 지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호주의 여성장애인들은 자신들이 호주사회에서 가장 소외되고 고립된 집단으로, 심각한 인권침해를 경험하고 있다고 주장한다.¹⁴⁴⁾

‘여성장애인의 부모역할과 관련된 호주여성장애인(WWDA)의 권고문’¹⁴⁵⁾을 참고해볼 필요가 있다.

① 최소 3년에 걸친 질적·양적 연구를 겸비한 여성장애인의 부모역할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고 이를 위한 국가 재정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호주정부는 여성장애인의 부모역할 지원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위한 자원 마련에 노력해야 한다.

③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고, 부모로서의 역할을 지원할 수 있는 국가 단위의 자원센터를 설립하고 정기적인 재원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 여성장애인이 자율적으로 자녀를 낳고 선택할 수 있도록 이를 방해하는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하도록 해야 한다. 장애아동, 특히 장애소녀들의 불임을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¹⁴⁶⁾

⑤ 여성장애인의 자율성을 증진하기 위해 장애인 정책과 가족지원정책을 분리해야 한다.

⑥ 여성장애인들에 관한 내용이 인권과 관련된 기구들의 정기적인 보고서에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⑦ 여성장애인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정치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⑧ 여성장애인의 사회적 소외가 국가 단위의 연구에서 주요 지표로서 포함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재정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라) 구체적인 성인지적 여성장애인 정책서비스의 실례

1) 여성장애인 임신·출산서비스

캐나다의 브리티시컬롬비아주의 의료서비스가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다.¹⁴⁷⁾

① 여성장애인 전용병실 운영: 보통 병실에 비하여 넓은 공간, 샤워시설 등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개별 여성의 특성에 맞도록 아기침대의 위치를 조정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② 여성장애인들의 장애 관련 전문 상담

③ 임상 간호사제의 운영: 여성장애인의 개별적 특성에 맞는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④ 장애부모교육 프로그램: 브리티시컬롬비아주의 건강센터의 지원을 받아 이 지역 주립대학의 간호, 재활학 과가 중심이 되어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출산 및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143) 강민희, 앞의 글 43.

144) 강민희, 앞의 글 43.

145) 강민희 앞의 글, 44.

146) 현재 호주 정부는 장애아동의 강제 불임시술을 허용하고 있어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47) 강민희, 앞의 글, 44.

2) 여성장애인 자녀양육 지원서비스

캐나다의 온타리오주의 자녀양육서비스가 대표적이다.

- ① 직접 송금 제도: 현금지원을 통해 여성장애인부모들이 양육에 필요한 서비스와 재화를 본인 스스로 구입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② 양육보조인 파견 제도: 서비스 공급기관에서 파견하는 양육보조인을 통하여 양육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고 있다.

(마) 결론 및 제언

현재 성인지적 예산 및 정책은, 과거에 비하여는 양적으로는 증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충분한 질적 성장을 이뤘다고는 보기 어렵다.

이를 위해서는 정책 및 예산 담당자들이 ‘성인지적’의 개념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따라 대상사업 선정 및 성과목표 설정이 적절히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여성장애인정책에 관하여 접근할 때, “여성정책”이라는 점에 더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제안은 유효하다고 생각된다. 실제로 정부가 내놓은 답변 중 많은 부분이 ‘발달장애인 전체를 위한 정책’을 제시하는 등, “여성”장애인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위 2018년 성인지 예산서 분석에 따라라도, 장애인 전체를 지원하는 사업이 성인지 예산의 대상 사업으로 포함된 예가 많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여성장애인 정책이 여성장애인 개인을 타깃으로 하는 사업에서 여성장애인이 속해 있는 가족 전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바뀌어 가는 것이 바람직할지에 관하여는 더욱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여성장애인의 출산과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등, ‘여성장애인이’ 돌보아야 하는 자녀를 위한 서비스는 궁극적으로는 여성장애인의 자립을 돕는 것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현재 장애인을 돌보는 역할을 가족 구성원들이 해내고 있다는 현실을 고려할 때, 가족들을 위하여 돌봄 노동을 대신해 주어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의 서비스는 여성장애인 및 그 가족에게 사실상 큰 도움 및 기여가 되어줄 수 있다. 그러나 여성장애인의 가족구성원에 대한 서비스를 확대할 때 이것이 자칫 여성장애인을 돌보는 부담을 가족 구성원에 전가하고, 그와 같은 돌봄이 당연히 가족의 몫이라

는 인식을 만드는 데 기여해서는 안 된다. 가족구성원에 대한 서비스를 확대하면 서도, 가족구성원의 ‘돌봄’을 당연한 것으로 전제하여서는 안 되며, 여성장애인의 자립과 자활에 대한 지원 또한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한국의 여성장애인 관련 서비스는 더욱 성인지적이 되어야 할 필요가 높 아 보인다. 캐나다와 호주처럼 여성장애인정책 자체를 장애정책으로보다 여성정 책으로 우선 분류하여 개발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는 의미이다.¹⁴⁸⁾ 또한 여성장 애인 정책이 여성장애인 개인을 타깃으로 하는 사업에서 여성장애인이 속해 있 는 가족 전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바뀌어 가야 한다는 제안 또한 이루어지고 있다.

라. 폭력 예방

(1) 정부 이행현황 및 이행계획

(가) 보건복지부는 최종전해에 대한 수용의사를 밝히면서, 인강원 등 장애인 거주시설과 염전지역 등 지역사회에서 장애여성에 대한 성폭력 등 학대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장애여성에 대한 학대를 예방하고 피해 장애여성을 구제하며 피 해여성에 대한 사후보호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사유로 제시하였다.

(나) 보건복지부는 이행계획으로 ①‘장애인 인권보호 강화방안’을 마련(‘14년 3월), ②관련 내용 법제화 위해 「장애인복지법」을 제정(‘15년 6월), ③장애인 학 대예방 및 종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전국에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17 년~) 등을 제시하였다.

(다) 보건복지부는 쟁점질의 목록에 대한 답변으로, 장애인 전문 상담소, 관 련단체,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폭력 피해여성을 위한 연 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148) 강민희, 앞의 글, 46.

(2) 정부 이행현황 및 이행계획에 대한 평가

(가) 장애여성 피해의 특징 및 피해사례 분석

장애여성은 장애와 여성이라는 이중적 요인으로 인해 학대에 상대적으로 더욱 취약하므로 이에 대한 특별한 분석과 대안마련이 필요하다.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성별에 따른 피해의 차이가 드러나는데, 특히 ‘가족 내 차별, 폭력 정도’와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경험 여부’의 항목에서 그러하다.

전국 기준으로 장애남성의 경우 가족 내 차별, 폭력 경험이 ‘자주 있다’로 응답한 비율이 1.1%, ‘가끔 있다’로 응답한 비율은 5.5%임. 반면 장애여성의 경우 ‘자주 있다’로 응답한 비율이 1.2%, ‘가끔 있다’로 응답한 비율은 7.0%이다.¹⁴⁹⁾

장애남성의 경우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0.3%인데 비해, 장애여성은 3.0%로 나타난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을 경험한 장애여성이 장애남성에 비해 거의 7배에 달하고, 대처방법의 다수가 ‘참는다’(46.1%), ‘몰라서 그냥 넘어간다’(16.3%)라는 사실이다.¹⁵⁰⁾

장애여성 안에서도 장애유형 및 학대유형에 따라 피해 양상이 달라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지원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2013~2015년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서울특별시장애인인권센터, 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에 학대 관련 상담을 요청한 서울시 장애여성은 각각 22명, 67명, 103명으로 총 192명이다.

장애유형으로는 지적 장애(134건, 69.8%)>지체장애(15건, 7.8%)>정신장애(13건, 6.8%)순이며, 정신적 장애여성의 상담사례는 총 148건으로, 전체 상담건수의 77.1%를 차지한다.

학대유형 면에서는 장애여성의 경우 성적 학대와 재정적·물질적 학대에 특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성적 학대의 경우 총 113건으로 58.9%이며, 재정적·물질적 학대는 총 33건으로 17.2%이다.¹⁵¹⁾

149) 김영정의 3, “장애여성 학대예방 정책방안 연구: 서울시 정신적 장애여성을 중심으로”, 서울시여성가족재단 (2016), 3.

150) 김영정의 3, 앞의 글, 4.

151) 김영정의 3, 앞의 글, 47.

성적 학대와 관련해, 피해자는 지적 장애가 압도적(80.5%)이다. 장애유형에 따른 장애여성 성적 학대 상담사례는 총 113건 중 지적 장애(91건, 80.5%)>정신장애(7건, 6.2%)>뇌병변장애(6건, 5.3%) 순으로 나타난다. 성적 학대 가해자의 경우, 가장 높은 비율은 '지인'으로 나타난다. 113건 중 59건으로 전체 52.2%를 차지하였으며, 뒤이어 '모르는 사람'(18.6%), '가족 또는 친척'(11.5%) 순이다.¹⁵²⁾

복합적 학대와 관련해, 정신적 장애여성 학대피해자의 경우 한 유형의 학대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유형의 학대를 동시에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경제적 착취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성적 학대, 신체적 학대 등이 동시에 또는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학대피해 여성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학대유형별로 이루어지기보다는 복합적 지원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¹⁵³⁾

학대의 원인 중 하나는 영원한 아이로만 취급받는 교육, 자기결정 경험의 부족으로 보인다. 아이로만 취급받는 교육을 받고 자기결정 경험이 부족하여, 위험한 상황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게 되고 의사소통과 신고에의 어려움을 겪게 된다. 동등하지 않은 존재로 인식되는 것에서도 기인한다.¹⁵⁴⁾ 장애인 특히 여성장애인은 가족, 시설 내에서 가족, 종사자들과 동등한 존재로 인식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즉 함부로 할 수 있는 대상으로 여기기 때문에 학대가 쉽게 발생하게 된다.¹⁵⁵⁾

서울시의 경우 성폭력 상담소 등 사후 대책 체계는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으나, 학대 예방을 위한 정책은 부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학대의 신호를 적절히 인지하고 효율적으로 반응할 수 있어야 하나, 이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조차 없다보니 서비스 기관 종사자들조차도 어디까지를 학대 및 방임으로 인식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지 못하고 있다.¹⁵⁶⁾

학대 이후 피난처 부재의 문제도 있다. 정신장애인의 경우 학대피해 이후 피난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증 정신장애인의 경우 가정에서 학대를 당해 긴급 피난처로 옮겨야 하는 경우에도 사회복지시설이나 쉽

152) 김영정의 3, 앞의 글, 52.

153) 김영정의 3, 앞의 글, 86.

154) 김영정의 3, 앞의 글, 87.

155) 김영정의 3, 앞의 글, 89.

156) 김영정의 3, 앞의 글, 93.

터 등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정신병원 외에는 갈 곳이 없다. 이 경우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한데 보호자가 가해자인 경우 보호자가 동의입원마저 거부함에 따라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가 되지 않기도 한다.¹⁵⁷⁾

(나) 정부의 이행에 대한 평가

실제로 장애여성에 대한 폭력을 “사전예방”하기 위한 조치는 전무하며, 일상적으로 성인지 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또한 전혀 없다는 지적이 있다.¹⁵⁸⁾ 또한 시설 및 지역사회에서 심각한 성폭력을 당하는 경우 문제제기가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일상적인 성희롱 및 성폭력의 경우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¹⁵⁹⁾ 장애여성들이 자신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많이 제공하고, 성폭력 예방 교육 및 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가정폭력과 관련해서도, 장애여성들을 위한 ‘쉼터’가 부족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절대적인 숫자가 부족할 뿐 아니라, ‘접근성’ 또한 없다. 현재 여성 쉼터와 직업교육기관, 여성발전센터, 여성능력개발센터가 있으나, 장애여성을 위한 접근성이 매우 떨어지는 상황이다. 최소한 편의시설이 있거나 개조비용을 지원해야 한다.¹⁶⁰⁾

성폭력과 관련하여서는, 기존 형사 체계가 남성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성폭력 조사시 남성 경찰관, 남성 판사에게 조사를 받고 판단을 받는 문제가 있어, 여성 경찰관, 여성 판사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¹⁶¹⁾

(다) 결론 및 제언

현재 정부는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 의무직군 확대, 벌칙조항 신설, 장애인식교육 실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등의 이행현황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제시한 이행현황 및 이행계획 모두, “장애여성”에 특화된 것이 아니라는 한계가 있다. 장애여성이 겪는 성폭력 및 가정폭력 등 폭력의

157) 김영정의 3, 앞의 글, 97.

158) 2018. 10. 22. 제1차 FGI에서 장애여성네트워크 김효진 대표의 의견.

159) 2018. 10. 22. 제1차 FGI에서 장애여성네트워크 김효진 대표의 의견.

160) 2018. 10. 22. 제1차 FGI에서 장애여성공감 강진경 활동가의 의견.

161) 2018. 10. 23. 제2차 FGI에서 한국여성장애인연합 김혜영 사무차장의 의견.

유형과 사례 모두 여성이라는 특성에서 기인하는 점이 큰 만큼, 장애”여성”에 특화된 이행계획이 필요하다.

여성의 학대방지와 관련하여서는, 사전예방 단계/확인 및 대응 단계/사후지원 및 재발방지 단계별로 아래와 같은 개선책이 제안되고 있다.

[표-17] 서울시 정신적 장애여성 학대피해 방지 정책 과제¹⁶²⁾

	사전예방 단계	확인 및 대응 단계	사후지원 및 재발방지 단계
정신적 장애여성	당사자 인권교육 개선 및 확대 특수학교 교육내용 개선 성인기 정신적 장애여성을 위한 성생활 관련 교육 프로그램 개발		정신적 장애여성 학대피해자 쉼터 확대운영
가족	복합위기가정 지원 강화		가족 상담 및 지원체계 구축
장애인 시설 및 서비스	시설 종사자 학대예방 교육 개발, 강화 인권지킴이단 독립성 확보	정보연계 체계화 학대피해 관련기관 아웃리치 증대	
지역사회/ 문화	장애인 학대 관련 시민교육 및 홍보 강화	신고시 불이익 방지	장애인 학대 실태조사 실시 서울시 장애인 지원관련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관계법령 개선

마. 모성권

(1) 정부 이행현황 및 이행계획

(가) 보건복지부는 최종견해에 대한 수용 의사를 밝히면서, 경제적 수준이 높지 않으나 비장애인 여성에 비하여 임신출산 관련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여성장애인의 모성보호를 위한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수용 사유로 제시하였다.

(나) 보건복지부는 이행계획으로 ‘15년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대상을 확대’(1~3급 → 1~6급)하였다고 밝히고, 이행실태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제도 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162) 김영정의 3, 앞의 글, 121.

(다) '16년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출산비용지원 신청을 일괄처리토록 신청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17년 온라인(정부24)으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라) 한편 지자체 및 장애인단체 등에 대한 홍보는 그 성과가 즉시 나타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책시차를 고려하여 지속적인 시행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마) 보건복지부는 쟁점질의 목록¹⁶³⁾에 대한 답변으로, 여성 장애인에게 강제로 낙태를 실시하고 있지 않으며, 피임이나 수정시술의 경우에도 제3자의 동의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여성 장애인을 포함한 임산부가 건강하게 임신을 유지하여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밝히며, 구체적으로는 임신·출산비를 국민행복카드로 단태아는 50만원, 다태아는 90만원 지원하고, 분만취약지역 임산부는 추가로 2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장애여성에게는 출산비용으로 100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있다고 한다. 모든 임산부에게 철분제, 엽산제를 지원하고 있으며, 고위험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를 운영하고, 건강보험 급여적용 확대를 통한 임산부 의료비 부담 경감으로 모성건강보호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2) 정부 이행방안 및 이행 현황에 대한 평가

(가) 임산부 전체에 대한 지원 내용(모든 임산부에게 철분제, 엽산제 지원·고위험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운영·건강보험급여적용 확대 등)은 쟁점질의 목록에 대한 적절하고 충분한 답변이 아니다. 여성장애인에 특화된 모성보호 및 지원이 맞춤형으로 이뤄져야 하며, 그에 대한 답변을 주어야 한다. 정부가 답변한 내용 중 장애여성에 특화된 지원은, 장애여성이 출산시 100만 원을 추가 지원하고 있다는 내용뿐이다. 실제로 장애단체 활동가들도 산부인과를 비롯한 의료접근권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출산장려금 외에 아무런 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하였다.¹⁶⁴⁾

163) 임신 및 출산기 장애여성에 대한 지원현황, 강제불임 시술, 낙태, 부모자격 박탈 방지 등을 위한 보호조치 현황.

164) 2018. 10. 22. 제1차 FGI에서 장애여성공감 강진경 활동가의 의견.

(나) 출산과 관련된 문제

1) 보건복지부는 여성 장애인에게 강제로 낙태를 실시하고 있지 않으며, 피임이나 수정시술의 경우에도 제3자의 동의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지체장애, 언어장애인의 경우 100% 자신의 의지에 의해 유산을 선택하였으나, 뇌전증 여성장애인의 경우에는 주의의 권유에 의해 인공임신 중절을 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¹⁶⁵⁾ 또한 최근 전라남도에 소재한 한 시설에서만 5~7건의 강제불임시술이 이루어진 사실이 밝혀져, 그 외에도 밝혀지지 않은 수많은 강제시술 사례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¹⁶⁶⁾

[표-18] 인공임신 중절인 경우 본인의 의사 여부

(단위: %, 명)

구분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요루장애	뇌전증장애	전체
본인 의사	100	-	-	-	100	-	-	-	-	-	-	-	-	-	0	88
주위 권유	0	-	-	-	0	-	-	-	-	-	-	-	-	-	100	12
계	100	-	-	-	100	-	-	-	-	-	-	-	-	-	100	100
전국 추정수	311	-	-	-	494	-	-	-	-	-	-	-	-	-	110	915

또한 장애단체 활동가들도 낙태나 친권박탈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였다.¹⁶⁷⁾

2) 출산 후 산후조리의 충분 정도에 대해서는 대략 52%의 응답자는 충분한 것으로, 나머지 47%의 응답자는 부족하다는 의견을 보여, 정부 답변과는 다르게 산후조리 지원이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16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2017), 391.

166) 2018. 10. 23. 제2차 FGI에서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이용석 정책홍보실장의 의견.

167) 2018. 10. 22. 제1차 FGI에서 장애여성공감 강진경 활동가의 의견.

또한 현재 출산지원제도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제도에 머무르고 있다. 그러나 여성의 모성권이라는 “권리” 차원이므로, 소득과 관계없이 모성권 실현을 위해 모든 장애여성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¹⁶⁸⁾

[표-19] 출산 후 산후조리의 충분도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요루 장애	뇌전증 장애	전체
매우 충분	3.4	0.0	8.9	0.0	0.0	0.0	-	0.0	-	-	-	-	0.0	-	0.0	2.7
충분	52.2	39.9	52.6	54.1	100	53.9	-	23.3	-	-	-	-	0.0	-	57.6	49.8
부족	28.7	31.5	33.6	35.7	0.0	27.2	-	52.2					0.0	-	0.0	31.9
매우 부족	15.8	28.6	4.9	10.2	0.0	18.9	-	24.5	-	-	-	-	100.0	-	100.0	100.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100.0	-	-	-	-	100.0	-	100.0	100.0
전국 추정수	15,648	4,305	9,312	7,920	324	7,046		4,099					57		1,754	50,285

따라서 향후 여성장애인의 임신과 출산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산후조리에 대한 지원책뿐만 아니라 여성장애인의 임신 전, 임신 중, 출산 시까지 전 과정을 포함하는 여성장애인 임신 출산 지원책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¹⁶⁹⁾

만 49세 이하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여성장애인으로서 가장 필요한 서비스를 묻자 임신이나 출산관련 교육 및 정보제공(16.0%), 자녀양육지원 서비스(13.2%), 활동보조인(10.1%) 등 높은 욕구를 보인 점에도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필요와 욕구를 고려하여, 임신이나 출산 관련 교육을 확대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¹⁷⁰⁾

168) 2018. 10. 22. 제1차 FGI에서 장애여성네트워크 김효진 대표의 의견.

169)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393.

170)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393.

[표-20] 여성장애인의 가장 필요한 서비스(1순위)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요루 장애	뇌전증 장애	전체
임신, 출산 관련 교육 및 정보 제공	17.1	15.0	8.5	18.4	19.2	22.3	0.0	5.6	14.3	0.0	0.0	0.0	0.0	18.3	25.4	16.0
임신, 출산, 육아 관련 hot-line 서비스	6.1	8.7	5.0	5.5	45.7	2.6	0.0	0.0	0.0	0.0	0.0	0.0	49.1	54.5	0.0	4.8
출산 비용 지원	16.9	0.0	14.0	4.6	20.5	5.9	0.0	4.1	37.0	0.0	0.0	0.0	0.0	0.0	20.3	9.1
여성 장애인, 임신, 출산 전문병원	10.1	13.0	16.1	0.0	0.0	7.7	13.1	0.3	7.8	60.5	0.0	34.0	0.0	27.2	9.8	8.0
산후 조리 서비스	9.3	6.5	11.6	19.6	0.0	3.2	0.0	6.7	0.0	0.0	0.0	0.0	0.0	0.0	6.9	7.2
육아 용품 대여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2
자녀양육지원 서비스	11.0	5.4	19.4	34.9	14.7	11.5	0.0	11.5	8.2	0.0	0.0	66.0	0.0	0.0	0.0	13.2
자녀 교육 도우미	0.3	7.4	0.0	3.8	0.0	3.6	41.3	0.0	0.0	0.0	0.0	0.0	0.0	0.0	0.0	2.4
가사 도우미	8.9	11.2	10.2	3.2	0.0	4.0	0.0	9.1	9.9	29.8	0.0	0.0	27.9	0.0	24.5	7.5
활동 보조인	7.5	19.5	0.0	0.0	0.0	18.0	0.0	7.5	0.0	0.0	0.0	0.0	0.0	0.0	8.4	10.1
건강관리 프로그램	6.6	7.5	3.4	0.9	0.0	5.1	45.6	31.2	0.0	0.0	74.6	0.0	23.0	0.0	0.0	8.0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요루 장애	뇌전증 장애	전체
상담서비스 (심리, 정서)	3.0	1.5	8.4	0.0	0.0	5.1	45.6	31.2	0.0	0.0	74.6	0.0	23.0	0.0	0.0	8.0
자조집단 (멘토)	0.0	4.3	0.0	0.0	0.0	5.9	0.0	7.0	0.0	0.0	0.0	0.0	0.0	0.0	0.0	3.2
학교 교육 이외 학습 및 재능 교육	2.9	0.0	3.5	9.0	0.0	4.5	0.0	1.6	0.0	0.0	0.0	0.0	0.0	0.0	0.0	3.3
기타	0.3	0.0	0.0	0.0	0.0	0.0	0.0	0.0	0.0	9.8	0.0	0.0	0.0	0.0	0.0	0.1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전국 추정수	37,711	16,174	14,782	14,455	1,582	53,694	802	25,873	4,657	430	232	818	864	1,147	3,171	176,392

3) 자녀 양육과 관련된 문제

현재의 지원 및 정부답변은 “출산”에 대한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출산에 못지않게 그 이후의 “자녀 양육”에 대해서도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들이 청소년 자녀 양육 시 겪는 대부분의 어려움은 장애로 인해 경험하게 되는 사회적 불리와 장애 편견과 배제 등의 문제인 것을 알 수 있다. 이전에 비해 어려움이 없는 장애인의 비율이 높게 나왔으나, 그럼에도 대략 40% 이상의 장애인은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대부분 양육비, 교육비 등 경제적 부담을 우선순위로 지적하였다. 향후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과 장애인 부모의 청소년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교육비 지원 등 경제적인 지원과 함께, 심리 상담지원 등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다.¹⁷¹⁾

17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384.

[표-21] 본인의 장애로 인한 자녀 양육시 애로사항¹⁷²⁾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요루 장애	뇌전증 장애	전체
자녀양육/교육 비용이 많이 들어서	7.2	5.7	7.3	3.3	12.2	17.2	-	22.4	15.2	0.0	0.0	24.1	91.8	0.0	27.7	7.2
주거 환경상 여건이 되지 않아서	0.0	0.0	0.7	0.2	7.9	5.4	-	0.0	0.0	0.0	5.5	0.0	0.0	3.7	0.0	0.3
아이를 돌볼 사람 시설 부족	1.2	0.6	0.1	0.5	19.0	8.7	-	4.2	0.0	0.0	0.0	0.0	8.2	0.0	13.1	1.1
양육할 충분한 시간 부족	0.6	0.8	1.1	0.4	6.0	1.0	-	0.0	0.0	0.0	0.0	0.0	0.0	0.0	12.7	0.7
양육 관련 정보 부족	0.1	0.2	1.0	0.7	1.3	6.7	-	0.0	0.0	0.0	0.0	0.0	0.0	0.0	0.0	0.3
아플 때 병원 데려가기 힘들어서	0.5	0.8	1.3	0.0	0.0	4.7	-	3.6	0.0	0.0	0.0	2.8	0.0	1.8	0.0	0.6
주위의 편견 및 시선때문에	1.1	1.0	1.3	0.6	0.0	9.8	-	3.5	0.0	0.0	0.0	0.0	0.0	0.0	2.6	1.1
자녀와의 의사소통이 어려워서	0.1	0.7	0.0	4.5	7.4	25.3	-	0.0	0.0	0.0	0.0	0.0	0.0	0.0	0.0	1.1
어려움 없음	10.4	1.4	18.1	3.0	0.0	4.3	-	4.0	6.4	7.1	2.8	8.4	0.0	0.0	2.5	8.5

17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383.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요루 장애	뇌전증 장애	전체
지녀양육시 장애가 없었음	78.7	88.8	69.2	86.9	46.0	16.9	-	53.6	77.6	92.9	91.7	64.7	0.0	94.5	41.4	78.9
기타	0.1	0.0	0.0	0.0	0.0	0.0	-	8.6	0.8	0.0	0.0	0.0	0.0	0.0	0.0	0.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 추정수	707,691	174,608	130,023	162,372	8,180	149,74	-	14,370	52,907	2,783	9,088	69,27	694	99,86	17,13	1,296,316

특히 현재 홈헬퍼제도 역시 소득을 고려하고, 어머니가 옆에 있을 때에만 자녀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직장에 다니는 ‘워킹맘’의 경우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는 문제점 또한 지적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 역시 필요하다.¹⁷³⁾ 서울시의 경우 그나마 예산이 많이 책정된 편이지만, 형식적으로만 운영되거나, 아예 폐지해버리는 지방자치단체도 있다. 우리나라에서 제공하는 육아와 관련된 서비스들은 비장애인 직장 여성들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는데, 장애는 수입과 무관한 지원체계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¹⁷⁴⁾

4) 국내의 여성장애인 모성권 증진을 위한 정책에 대한 분석¹⁷⁵⁾

① 국가단위의 건강 증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에 여성장애인의 모성권에 대한 고려가 배제되어 있는 측면이 있다.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상의 모성건강 증진 계획은 비장애 여성을 중심으로 수립되어 있고, 장애인건강 증진 계획은 모성권에 앞서는 건강권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는 여성장애인의 성과 모성을 비장애인의 그것과 같지 않거나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는 결과로 볼 수 있으며, 여성장애인 역시 여성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성의 권리와 보호를 위해 국가 정책의 대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② 현재의 모성권 관련제도 및 서비스는 임신과 출산, 양육에 한정하여 협의적 모성권의 의미를 기반으로 구축되어 있다. 그러나 임신과 출산, 자녀 양육은 모성의 일부에 불과한 측면이 있으며, 임신 지원과 출산 지원, 자녀 양육 및 돌봄 지원 제도는 생애주기에 따른 광범위한 모성의 보호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임신에 대해 고민하는 시기 훨씬 이전인 유아기부터 성에 대한 인지와 올바른 가치관의 정립, 자신의 성에 대한 관리, 임신, 출산, 양육, 나아가 중장년층의 부인과 건강에 이르기까지 여성의 생애주기에 따른 건강관리를 포괄하는 제도로 촘촘히 구성되어야 한다.

③ 국내 모성권 관련 제도 및 서비스는 장애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장애 유형별로 임신과 출산, 양육의 양상이 다르고, 그에 따라 서비스 욕

173) 2018. 10. 22. 제1차 FGI에서 장애여성공감 강진경 활동가의 의견.

174) 2018. 10. 26. 제5차 FGI에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김성연 사무국장의 의견.

175) 서혜정의 2. “여성장애인 모성권 증진을 위한 임신출산 지원 정책 연구”, 한국장애인개발원 (2016), 86-87.

구가 다르며, 소요되는 비용 또한 상이하다. 따라서 장애를 유형과 정도의 측면에서 세세하게 고려하고, 특성을 반영한 지원제도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

5) 정책 방향 제안

여성장애인의 모성권 증진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방향에서 추진될 필요가 있다.¹⁷⁶⁾

- ① 보건복지부에서는 주로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출산의 양을 확대하는 정책을 펼쳤다면, 향후 여성장애인의 모성권 증진 정책은 보다 질 높은 장애여성 임신·출산환경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방향의 전환이 필요하다.
- ② 장애정도 및 장애유형을 고려하지 못한 일률적인 출산 진료비 지원에서 장애유형에 따른 개인별 임신·출산 지원을 위한 맞춤형 패키지 개발과 이를 적극적으로 보급할 방안이 필요하다.
- ③ 임신과정 및 분만 지원에서 나아가 임신 전 관리 사업, 출산 이후 산후조리 지원 사업, 초기 양육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④ 장애여성의 임신출산관련 의료접근성 등 편의제공 위주의 정책과 생식건강 등의 보건의료적 접근에서 심리·정서·사회환경변화(정신건강, 산후우울증, 임신 중 체조 및 운동, 가족 상담 등)을 위한 장기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 ⑤ 여성장애인 모성권 증진을 위해서는 기존 사업간 연계 및 관련 자원의 활용이 필요하다.

6) 구체적 지원방안

임신 전과 임신 과정, 분만, 출산 후의 과정별 구체적 지원방안은 아래와 같다.¹⁷⁷⁾

- [임신 전]
- ① 임신 전 검사 및 철분제, 엽산제 복용에 대한 홍보 강화
 - ② 복지부의 '가임기여성건강증진사업' 내 여성장애인 관련 내용 추가 및 정보접근성 강화
 - ③ 장애여성 전문 임신·출산·육아 종합 정보제공 플랫폼 제작 및 운영
 - ④ 장애여성 성교육 및 부모교육 강화

176) 서혜정의 2, 앞의 글, 170-171.

177) 서혜정의 2, 앞의 글, 171-185.

<p>[임신 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Midwife 제도 도입 ② 임신부 운동 및 정신 건강 프로그램 제공 ③ 산전검사 시 이동 지원 및 수화통역사 지원을 위해 기존 사업간 연계 강화 ④ 분만진료비 지원 확대 ⑤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활용 방안 모색
--

<p>[출산 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산후조리 비용 일부 지원 ② 장애여성의 특성을 고려한 전문산후도우미 양성 및 지원 ③ 임신과 출산, 영유아기 양육에 관한 사회 서비스 확대

(3) 결론 및 제언

뇌전증 여성장애인의 경우에는 주의의 권유에 의해 인공임신 중절을 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그 원인을 분석하고 방지 및 지원 대책을 내놔야 한다.

또한 산후조리에 대한 지원책뿐만 아니라 여성장애인의 임신 전, 임신 중, 출산 시까지 전 과정을 포함하는 여성장애인 임신 출산 지원책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여성장애인의 필요를 고려하여, 임신 및 출산 관련 교육을 확대해야 한다.

출산에 못지않게 그 이후의 “자녀 양육”에 대해서도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대부분 양육비, 교육비 등 경제적 부담을 우선순위로 지적하고 있으므로, 교육비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장애로 인해 경험하게 되는 사회적 불리와 장애 편견과 배제 등의 문제도 크게 지적되므로, 이와 더불어 심리 상담지원 등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다.

또한 장애를 유형과 정도의 측면에서 세세하게 고려하고, 특성을 반영한 지원 제도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

4. 제7조 장애아동

가. CRPD 제7조

제7조 장애아동

1. 당사국은 장애아동이 다른 아동과 동등하게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완전히 향유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2. 장애아동과 관련된 모든 조치에 있어서는 장애아동의 최대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다.
3. 당사국은 장애아동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다른 아동과 동등하게 자신의 견해(이 견해에 대하여는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상당한 비중이 부여된다)를 자유로이 표현할 권리를 갖고, 이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장애 및 연령에 따라 적절한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보장한다.

나. UN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쟁점목록¹⁷⁸⁾ 및 일반논평

(1) 쟁점목록

쟁점목록

1. 완전한 통합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령 제정이나 개정, 아동 관련 정책 수립 시 대표단체를 통한 장애아동 및 그 가족들의 참여 수준을 극대화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라.
2. 당사국 시스템이 어떻게 공무원, 국회의원, 언론 및 일반 대중에게 본 협약의 내용 및 목적을 효과적, 지속적으로 공표, 교육하는지 서술하라.

(2) 일반논평

일반논평

3. 장애아동 포함
24. 제4조 (3)항은 또한 협약을 발효시키기 위한 법률과 정책의 개발과 이행, 그리고 기타 의사결정 과정에서 장애 아동 또는 장애 아동의 단체를 통해 체계적으로 “장애 아동을 포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이들 기관은 장애 아동의 개별적 자율성과 능동적 참여를 촉진 및 확보하는 데 핵심적이다. 주 당사자는 적절한 지원 자원을 포함하여 연결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유지할 의무의 일환으로 장애 아동의 대표적인 조직을 설립하고 기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178) 위 조항에 대한 최종견해 및 정부의 이행 계획, 정부 답변은 없다.

25. 주 당사자는 모든 사람이 자녀의 의지와 선호도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개인의 진화하는 능력을 항상 고려하도록 하기 위해 법률, 규정 및 개발 프로그램을 채택해야 한다. 개별 자치에 대한 권리의 인식과 승진은 어린이를 포함한 모든 장애인이 권리 소유자로 존중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협약에 발맞춘 적절한 입법, 규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하여서는 장애아동들이 그 자신의 요구와 경험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26. 예를 들어, 주 정당들은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도록 초청하는 세미나/미팅들을 구성할 수 있다. 그들은 또한 장애아들에게 특정한 주제에 대한 에세이를 제출하도록 개방적인 초대장을 만들어, 그들이 직접 경험이나 삶의 기대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도록 격려할 수 있다. 에세이는 장애아동 자신들이 직접 준 조언으로서 요약될 수 있고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 포함될 수도 있다.

(3) 실태조사의 대상 쟁점

장애아동과 관련하여서는 최종견해도, 정부답변도 없는데, 쟁점목록에서 제기된 장애아동 및 가족의 참여 보장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다. 법령 제·개정시 아동 및 가족 참여 관련

장애아동과 관련한 법령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이하 “「장애아동복지법」”), 「장애아동복지법 시행령», 「장애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특수교육법」”)이 있다.

그런데 「장애아동복지법」 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은 아동과 관련한 법령의 제·개정이나 정책 수립 시에 대표단체를 통한 장애아동 및 그 가족들의 참여 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내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

「장애아동복지법」 제7조 제1항은 장애아동에게 적절한 복지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업무에 관하여 중요한 정책조정에 관한 사항은 「장애인복지법」 제11조의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조 및 제10조에서 정하고 있으나, 장애아동 및 그 가족들과 관련한 자를 위원으로 위촉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은 없다.

「특수교육법」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의 수업, 학생자치활동, 그 밖의 교내외 활동에 대한 참여를 배제하거나, 개별화교육지원팀에의 참여 등 보호자 참여에서 차별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특수교육법」 제4조 제2항 제2호, 동항 제3호). 그리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형

사처별 규정(동법 제38조의2 제2호)도 두고 있다. 그러나 법률 제·개정시 아동 및 가족의 참여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제4조(차별의 금지)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각급학교의 장 또는 대학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시행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 외에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수업, 학생자치활동, 그 밖의 교내외 활동에 대한 참여 배제
3. 개별화교육지원팀에의 참여 등 보호자 참여에서의 차별

한편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인정책의 결정과 실시에 있어 장애인 및 보호자 등에 대한 의견수렴과 참여보장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장애인복지법」 제5조).

제5조(장애인 및 보호자 등에 대한 의견수렴과 참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정책의 결정과 그 실시 에 있어서 장애인 및 장애인의 부모, 배우자, 그 밖에 장애인을 보호하는 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사자의 의견수렴을 위한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또한 「아동복지법」 제15조 제3항은 보호조치를 하려는 경우 보호대상아동의 개별 보호, 관리계획을 세워야 하며, 그 계획 수립시에 해당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자를 참여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5조(보호조치)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를 하려는 경우 보호대상아 동의 개별 보호·관리 계획을 세워 보호하여야 하며, 그 계획을 수립할 때 해당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자를 참여시킬 수 있다.

장애아동이 동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의 대상이 되는 경우, 위 규정에 의해 장애아동의 보호자가 보호관리계획 수립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위 규정은 “참여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여 참여 보장을 임의적인 것에 그치게 하고 있다는 한계, 참여의 주체를 ‘보호자’에 한정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장애아동 및 그 보호자도 본 조항의 규정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또한 정책의 결정과 실시에 법률 제·개정이 포함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일응 법률 제·개정

시 아동 및 가족의 참여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위와 같은 선언적 규정만 두고 있을 뿐이고, 앞에서 본 것처럼 개별 법규나 정책을 시행할 때 위 규정이 실효성 있게 시행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법률의 제·개정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아동 및 가족의 참여의 보장 및 그 절차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라. 장애아동에 대한 지원 실태 및 결론, 제언

(1) 장애아동에 대한 지원 실태

지금까지 한국의 장애인복지정책은 장애인 당사자, 특히 성인장애인에 대한 지원에 일차적인 초점을 맞추고 진행되어 온 관계로 발달적인 측면에서 특별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 장애아동에 대한 지원책이 미비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들을 양육하면서 겪는 경제적, 교육적, 사회·정서적 돌봄 관련 어려움과 욕구를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지원정책 및 서비스가 미약한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¹⁷⁹⁾

지난 몇 년 동안 장애아동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 및 프로그램 등이 신설 확대되어 가는 양상을 보이고는 있지만, 그 제공되는 서비스의 총량과 내용에 있어서 매우 제한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장애아동과 그 가족이 겪어야 하는 다양한 어려움과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다.

(2) 장애아동의 자기결정권

장애아동은 ‘장애’와 ‘아동’이라는 이중의 지위로 인해 의사표현을 하지 못하고, 정체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사항들조차 부모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장애인권리협약에도 나온 “고유성”이 바로 부모에 의해 부정당하는 문제이다.¹⁸⁰⁾

청각장애아동의 경우, 영, 유아기에 인공와우 이식수술을 받는 경우가 많다.

179) 이승기의 8, “장애아동에 대한 사회적 복지지원체계 연구”, 보건복지부 (2011), 181.

180) 2018. 10. 22. 제1차 FGI에서 장애여성네트워크 김효진 대표의 의견.

그러나 성인이 되었을 때 만족도가 높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인공와우 이식수술을 한 상태에서 우리나라는 ‘비장애인으로 살라’며 수화를 배울 수 있는 접근 자체를 막는 경우가 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선택권이 부모나 의료진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¹⁸¹⁾ 인공와우 이식수술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나, 이중언어를 선택할 수 있도록 장애아동 자신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

마찬가지로, 저신장증후군을 가진 장애아동의 경우, 일리자로프 수술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수술과 그 후의 과정이 매우 고통스러울 뿐 아니라,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며 대인기피 현상이 나타나거나, 우울증을 앓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되고 있다.¹⁸²⁾ 인터섹스 수술의 경우에도, 태어났을 때 의료진과 부모의 결정에 의해 수술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후에는 수술을 번복할 수 없어 정체성 문제 등을 겪기도 한다.¹⁸³⁾

따라서 부모의 선택이 아니라 장애아동의 욕구를 확인하고, 이에 따라 치료와 교육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원 기관이 있어야 한다.¹⁸⁴⁾ 아동의 의사와 고유성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함을 부모 또한 알 수 있도록, 부모 교육도 중요하다. 장애아동이 어린 시절부터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도록 장려해야 한다.¹⁸⁵⁾

(3) 결론 및 제언

서비스 총량의 확대와 더불어 현행 장애등급에 의한 서비스 대상자 선정에서 벗어나 장애아동의 의료적, 기능적 측면뿐 아니라 생활환경적 요인과 가족전체적 필요요구에 근거하여 서비스가 결정되는 새로운 판정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현재 제공되고 있는 장애아동 및 가족지원 서비스가 장애아동의 장애 유형별 특성, 생애주기적 특성, 다양한 가족 환경 등을 반영하여 제공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그 내용이나 방식에 있어서도 보다 다양화되고 유연화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¹⁸⁶⁾

181) 2018. 10. 22. 제1차 FGI에서 한국농아인협회 김수연 기획부장의 의견.

182) 2018. 10. 22. 제1차 FGI에서 장애여성네트워크 김효진 대표의 의견.

183) 2018. 10. 22. 제1차 FGI에서 장애여성공감 강진경 활동가의 의견.

184) 2018. 10. 23. 제2차 FGI에서 한국여성장애인연합 김혜영 사무차장의 의견.

185) 2018. 10. 26. 제5차 FGI에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김성연 사무국장의 의견.

186) 이승기의 8, 앞의 글, 182.

특히 장애아동이 부모나 의료진의 결정에 의해 정체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수
술들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비슷한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교류하며 선택할
수 있는 정보를 충분히 받고, 그에 기반하여 스스로 의사표현을 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장애아동은 더더욱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장애아동의
경우 그에 대한 지원이 결코 충분히 이뤄지고 있지 않음에도, 논의 자체가 활발
히 이뤄지고 있지 않다. 지원은 물론이거니와 문제제기의 측면에서도 소외당하
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장애아동에 대한 지원 및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크다. 무엇보다 현재 크게 수면 위로 불거진 문제인 「특수교육법」 개정이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한다.¹⁸⁷⁾

5. 제8조 인식제고

가. CRPD 제8조

제8조 인식 제고

1. 당사국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즉각적이고, 효과적이며, 적절한 조치를 채택할 것을 약속한다.
 - 가. 가족 단위를 포함하여 사회 전반에서 장애인에 관한 인식을 제고하고,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성에 대한 존중심을 고취할 것
 - 나. 성별과 연령을 이유로 하는 것을 포함하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에 대한 고정관념, 편견 및 유해한 관행을 근절할 것
 - 다. 장애인의 능력과 이들의 기여에 대한 인식을 증진할 것
2.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치는 다음을 포함한다.
 - 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기획된 효과적인 대중인식 캠페인을 추진하고 지속할 것
 - 1) 장애인의 권리에 대한 수용성을 함양할 것
 - 2)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사회적 인식의 증대를 촉진할 것
 - 3) 장애인의 기술, 장점 및 능력과 직장 및 고용시장에의 기여에 대한 인식을 증진할 것
 - 나. 유아기부터의 모든 아동을 포함하여 교육제도의 모든 단계에서 장애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태도를 양성할 것
 - 다. 이 협약의 목적에 합치하는 방식으로 장애인을 묘사하도록 모든 언론 기관에 대해 권장할 것
 - 라. 장애인과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인식 훈련 프로그램을 장려할 것

187) 이에 대하여는 ‘교육’ 부분에서 자세히 서술하기로 한다.

장애 차별의 주된 양상과 원인 중 하나로 장애인에 대한 비장애인들의 부정적인 시선과 편견이 있다. 이는 매우 오랜 역사와 문화 속에서 나온 것이므로 장애 차별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는 부정적인 인식개선 및 사회적 편견의 제거를 위해 특별히 노력할 필요가 있다.¹⁸⁸⁾

제1항은 인식제고를 위한 조치의 방향과 목표를 명시하고 있다. 장애인을 비롯하여 모든 구성원이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장벽과 그릇된 편견이 불식되어야 하고,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가목에서는 협약의 취지에 부합하여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증진”한다는 문구가 추가되었으며, 나목에서는 “삶의 모든 영역에” 존재하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추가적으로 보완되었다. 이로써 특정영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삶의 전 분야에서 장애인과 관련한 총체적인 인식개선 규정이 마련되었다.¹⁸⁹⁾

제2항에서는 구체적으로 인식개선과 관련된 조치의 사례를 열거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캠페인, 교육제도, 언론, 훈련 프로그램을 제시한다.¹⁹⁰⁾

나. 최종견해와 쟁점목록

(1) 최종견해

제8조 인식 제고

15. 위원회는 당사국이 협약의 내용 및 목적에 대해 정부 공무원, 국회의원, 언론, 일반 대중 등에게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홍보 및 교육을 진행하고 있지 않음에 주목한다.
16. 위원회는 당사국이 인권의 주체로서 장애인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한 인식개선 캠페인을 견고히 할 것을 권장한다. 특히 위원회는 당사국이 협약의 내용 및 목적에 대해 정부 공무원, 국회의원, 언론, 일반 대중에게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홍보 및 교육을 진행할 것을 권고한다.

188)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권리협약 해설집” (2007), 54-57.

189) 국가인권위원회, 앞의 글, 54-57.

190) 국가인권위원회, 앞의 글, 54-57.

(2) 쟁점목록

제8조 인식 제고

7. 인권을 가진 주체로서 장애인의 긍정적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해, 언론 보도를 포함한 인식 제고 활동을 어떻게 강화하고 있는지 설명하십시오.
8. 공무원과 국회의원, 언론인, 일반대중을 상대로 「협약」의 내용과 목적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알리고 교육하기 위해 당사국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설명하십시오.

(3) 실태조사의 대상 쟁점

CRPD 제8조 인식 제고에 관하여는 ① 인식개선교육, ② 인식제고 활동, ③ 협약의 홍보, ④ 혐오 선동 표현의 제재에 대하여 이하와 같이 검토한다.

다. 인식개선교육

(1) 정부의 이행 현황

보건복지부에서는 우리사회에 장애인 차별이 많다고 응답한 비율이 2014년에는 60.7%, 2016년에는 55.8%에 이르는 등 장애인 차별이 남아있어 이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였다.

이를 위해 장애인식개선교육 의무 대상 기관을 기존의 정부·지자체에서 정부·지자체·교육기관·공공기관으로 확대하고, CRPD 내용을 장애 인식개선교육 시행하겠다고 답변하였다.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한 결과 10개 광역지방자치단체(서울, 대구, 대전, 세종, 전북, 충북, 제주, 전남, 경북, 경기)에서 답변을 회수할 수 있었다. 그 중, 충북과 제주, 전남에서는 연 1회 이상, 서울은 연 2회, 세종은 연 4회, 전북은 연 5회 이상 소속 공무원 대상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였다. 대전은 장애인 인권센터를 설치하여 시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수시 교육을 실시하고, 대구는 자체 교재를 배포하여 공무원이 활용토록 하였고, 인식개선 교육은 내년부터 실시하도록 조정 중이라고 하였다.

(2) 인식개선교육의 의무화

2016년 이전에는 장애인식개선교육에 관한 「장애인복지법」 제9조¹⁹¹⁾ 및 제25조¹⁹²⁾ 규정이 구체적 방법, 횟수, 내용, 제재수단 등에 대한 지시가 미비하여 실효적이지 않다는 지적을 많이 받아왔다. 그러나 지난 2016. 6. 28.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6조¹⁹³⁾를 정비하여, 장애인식개선 교육의 대상을 확장하고, 횟수 및 내용, 방식 등이 정해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와 각 지자체, 공공기관과 교육 기관에서는 장애인식 개선 교육이 매년 이루어지게 되었다.

또한 2018. 5. 29.부터 개정된 시행된 개정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법」”) 제5조의2¹⁹⁴⁾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2¹⁹⁵⁾는 장애인식개

- 191) 「장애인복지법」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정책을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192) 「장애인복지법」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공무원, 근로자, 그 밖의 일반국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공익광고 등 홍보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 및 공공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용도서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 193)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6조(장애 인식개선 교육) ① 법 제2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 및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②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이하 “장애 인식개선 교육”이라 한다)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③ 장애 인식개선 교육에는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의 정의
 2.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과 제도
 3. 장애인의 행동특성 및 능력
 4. 장애인과 의사소통하는 방법
 5. 장애인보조기구 및 장애인 편의시설
 6. 그 밖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내용
 ④ 장애 인식개선 교육은 집합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한 원격 교육, 체험 교육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선교육에 대해 구체적인 방법, 횟수, 내용 등을 정하고, 「장애인고용법」 제86조 제2항은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장에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전에는 사업주의 장애인식개선교육의 방법, 횟수, 내용, 제재가 정해지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있었는데, 최근에 입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한 것이다. 그 동안에는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교육의 횟수, 내용, 방식, 제재가 없어 실제로 사업장에서 실시되는 비율이 매우 낮았다.

[표-22] 2011년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 여부¹⁹⁶⁾

(단위: %)

구분	계	규모별				고용여부	
		50-99	100-199	200-299	300이상	고용	미고용
실시함	18.7	13.7	23.3	25.7	23.4	23.0	8.6
실시안함	81.3	86.3	76.7	74.3	76.6	77.0	91.4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194) 「장애인고용법」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①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 및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내용·방법 및 횟수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95)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① 사업주는 법 제5조의2에 따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2.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4. 그 밖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
 ③ 사업주는 사업의 규모나 특성을 고려하여 직원연수·조회·회의 등의 집합교육,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교육 또는 체험교육 등을 통하여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사업주는 법 제5조의3제3항에 따른 강사를 활용하여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⑤ 법 제28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는 사업주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급한 교육자료 등을 배포·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196) 남용현외 3 “장애인식개선교육 개선방안”,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011), 45.

다만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고용법」에 의한 장애인식개선교육은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19조¹⁹⁷⁾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3조¹⁹⁸⁾를 바탕으로 하는 성희롱 예방교육에 비해 요구되는 교육의 집중도나 의무의 강도가 낮다. 예를 들어 「양성평등기본법」의 성희롱 교육이 대면 교육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한 것에 비해 「장애인복지법」은 수강생의 집중도가 떨어지는 집합교육이나 원격교육만으로도 이수가 가능하다. 나아가 직장 내 인식교육에 있어서 「장애인고용법」은 교육내용을 배포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통해 전달하는 것으로도 교육의 실시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교육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장애인을 배제하는 역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연 1회 1시간 교육 실시가 사업

197)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19조(성희롱 예방교육)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희롱 예방에 관한 법령
2. 성희롱 발생 시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4. 성희롱을 한 사람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5. 그 밖에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내용

② 성희롱 예방교육은 강의, 시청각교육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되, 대면(對面)에 의한 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

198)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① 사업주는 법 제13조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방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2.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3.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4.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예방 교육은 사업의 규모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직원연수·조회·회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교육 등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단순히 교육자료 등을 배포·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거나 게시판에 공지하는 데 그치는 등 근로자에게 교육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예방 교육을 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내용을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할 수 있다.

1.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2.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 중 어느 한 성(性)으로 구성된 사업

주나 공무원에게 지나친 부담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이유로 장애인식개선교육의 방식을 더 느슨하게 정할 이유가 없다.

일선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앞서 언급한 「장애인복지법」 제9조와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장애인식개선교육이 실시된다. 특히 누리과정과 초·중등 교육과정은 전 국민이 반드시 수료하는 교육과정이므로 다른 인식개선 정책에 비해 효율적으로 최대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고, 유아기는 최초로 가치관과 인식이 만들어지는 시기이므로, 이 시기에 올바른 인식을 확립하는 것이 인식 개선에 매우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나아가 대학, 대학원, 평생교육 기관과 같은 고등교육 기관의 인식개선 교육의 실시도 필요하다.¹⁹⁹⁾

「장애인고용법」의 장애인식개선교육은 미이행시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되는 반면,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인식개선교육은 미이행에 대한 제재수단이 없다. 법으로 인식개선교육이 의무화된지 얼마 되지 않았으므로 앞으로 추이를 봐야겠지만, 「장애인복지법」이 적용되는 공공기관에서 인식개선교육을 강제할 수단이 없어 실제로 교육기관에서만 인식개선교육이 이루어지는 실태를 미루어 보아 이행률이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²⁰⁰⁾

(3) 인식개선교육의 내용

내용면에서 장애와 관련된 철학이나 차이, 다양성 등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²⁰¹⁾ 그러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에서는 인권의 주체로서의 권리를 향유하고 행사하는 장애인에 대한 내용이 교육내용에 관한 규정으로 반영되어 있지 않다. 인식개선 교육의 내용으로 장애인의 “긍정적 이미지”를 강화하라는 권고가 있었는데, 실제로 장애의 치료와 극복에 초점을 맞춘 교육이 이루어 진다는 평가가 있다. 또 장애유형을 이해하는 교육은 오히려 인간을 유형과 등급으로 나누어 인식시키는 결과를 낳는다는 지적도 있다.^{202) 203)}

199) 서원선외 2,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연구”, 한국장애인개발원 (2016), 146.

200) 2018. 10. 23. 제2차 FGI에서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이용석 정책홍보실장의 의견.

201) 서원선외 2, 앞의 글, 147.

202) 2018. 10. 22. 제1차 FGI에서 장애부모연대 이리나 실장의 의견.

203) 2018. 10. 24. 제3차 FGI에서 한국장애인연맹(DPI) 임상욱 조직국장의 의견.

한편 인식개선 교육의 방법으로 장애체험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장애가 얼마나 불편하고 어려운지를 부각하여 오히려 장애에 대한 공포와 연민을 갖게 하는 경우가 있다.²⁰⁴⁾ 그러나 장애체험 교육은 장애를 가진 개인이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체험하는 수준에서 그쳐서는 안 되며, 그러한 어려움이 비장애인 중심적인 사회환경 및 제도에서 기인한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보편적 설계의 필요성을 피력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끝으로 성별, 연령별, 인종, 국적, 언어 등에 의해 장애인에게 이중의 편견과 교차된 차별이 발생한다. 이러한 관점을 포함하여 다양한 장애인 집단과 정체성이 드러나는 교육을 개발하여야 하는데, 지금은 장애인을 균질한 집단으로 교육을 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장애인은 타자화하고 이중 차별을 받는 장애인이 인식개선 효과를 느낄 수 없게 하는 걸림돌이 된다.

(4) 인식개선 교육의 주체

장애인식 개선교육의 실효성을 담보하려면 양질의 강사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런데 실제로는 성희롱예방교육과 개인정보보호교육과 묶어서 학원에서 수익 사업으로 진행하거나, 보험회사 직원들이 보험상품을 소개하는 시간으로 교육이 진행되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았다.^{205) 206) 207)}

이러한 우려 때문에 장애인식개선 교육 강사를 장애인고용공단에서 교육을 수료하거나 검증받은 사람들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오히려 내용이나 장애에 대한 감수성을 충분히 살피지 않고, 프리젠테이션으로 시연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 때문에 오히려 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더 불리하고, 이러한 교육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나 영업사원들에게 더 유리한 결과가 발생한다.²⁰⁸⁾

(5) 소결 및 제언

204) 2018. 10. 22. 제1차 FGI에서 장애부모연대 이리나 실장의 의견.

205) 2018. 10. 23. 제2차 FGI에서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이용석 정책홍보실장의 의견.

206) 2018. 10. 23. 제2차 FGI에서 장애인학생지원네트워크 김형수 사무국장의 의견.

207) 2018. 10. 25. 제3차 FGI에서 한국장애인연맹(DPI) 임상욱 조직국장의 의견.

208) 2018. 10. 22. 제1차 FGI에서 장애여성네트워크 김효진 대표의 의견.

2016년 「장애인복지법」, 2018년 「장애인고용법」과 각 시행령의 개정으로 장애인식개선교육이 구체적인 의무에 한발 더 가까워졌다. 이제는 이 법률과 시행령에 따라서 장애인식개선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감시하고, 미이행시 이를 적절히 제재하는 실천이 필요하다. 그리고 대면교육이나 소그룹 교육 등 효과적으로 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교육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내용 면에서는 CRPD의 권고 중 “긍정적 이미지”의 해석에 주의해야 한다. 선량하고 정직한 장애인이나, 장애를 극복하는 장애인 영웅을 보여주는 것이 긍정적 이미지가 아니라, 인권의 주체로서 권리를 주장하고 능동적으로 살아가는 이웃을 의미하는 단어로 보아야 한다. 장애 유형보다는 모두가 즐겁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²⁰⁹⁾ 그리고 장애 체험 위주의 활동에서 벗어나 더 다양한 교육내용을 개발하고, 흑역 장애 체험을 진행하더라도 보편적 설계에 중점을 둔 내용으로 진행해야 한다. 끝으로 장애여성, 장애아동, 장애인 등 장애인 안에도 다양한 집단의 특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다양한 집단의 의견이 교육내용과 프로그램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라. 인식제고활동

(1) 정부의 이행 현황

장애인개발원은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으로, KBS를 통해 장애인 일자리에 대한 공익 캠페인을 총 30회 송출하고, 문화일보를 통해 총 4회의 기획기사와 10회의 지면광고로 장애인 근로자 인터뷰 등을 통한 정책 홍보를 하였으며, KBS 제3라디오로는 주1회 총 15회에 걸쳐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방송을 송출하였다. 또 장애인의 날 기념식을 진행해 올해의 장애인상을 수여하였으며, 장애인식개선 온·오프라인 홍보사업으로 사외보인 월간 디딤들을 연 총 12회 발간하고, 장애인 일자리, 국제협력사업 등에 대한 홍보 영상을 제작하여 블로그 및 페이스북에 게재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CRPD 제2·3차 병합 국가보고서(초안)를 통해 장애인 인권

209) 2018. 10. 22. 제1차 FGI에서 장애부모연대 이리나 실장의 의견.

교육도서, 사이버콘텐츠, 인권교육 표준강의안 등을 개발하였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영유아 대상 인식교육 개발, 장애인식개선교육 교재 및 표준강의안 개발, 인식개선교육 실적보고시스템 구축, 강사 양성 및 관리 등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2) 이행평가

장애인개발원이 다양한 루트와 방법, 내용으로 장애인식 개선을 시도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최근에는 다양한 매체와 플랫폼이 개발되고 있으므로, 이에 발맞추어 앞으로도 널리 효과적으로 홍보를 하길 바란다. 내용면에서도 고용, 여가생활, 노령화, 스포츠, 재해, 난민, 우선구매제도, 직업재활 등 다양한 홍보 주제를 다루고 있어 높이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장애인 안에 존재하는 다양한 집단의 특성을 반영한 캠페인과 프로그램이 활성화 되지 않고 있다. 특히, 여성과 장애, 아동과 장애, 노인과 장애 등 다중적 차별구조에 의한 왜곡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특화된 교육프로그램은 전무하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이다. 실제로 국가보고서의 인식제고 조항관련 내용에도 장애여성, 장애아동, 장애노인 등에 대한 내용은 보고되고 있지 않다.²¹⁰⁾

(3) 소결 및 제언

장애인 개발원은 다양한 인식제고 활동을 펼치고 있으나 국영방송 위주로 매체를 활용하거나 SNS 등을 활용하고 있다. 일반 상업방송이나 케이블, IP방송, VOD등에도 널리 홍보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어야 한다. 또 내용면에서도 다양한 주제를 다루었지만, 앞으로 아동, 노인, 여성, 이주민 등 더 다양한 장애인 집단을 보여줄 수 있도록 기획해야 한다.

마. 협약의 홍보

(1) 정부의 이행 현황

국가인권위원회는 공무원, 국회의원, 언론인, 일반대중 등을 상대로 협약의 내

210) 유엔장애인권리협약 NGO 보고서 연대, “연대 NGO보고서(국문)” (2014), 20-21.

용과 목적을 체계적으로 알리기 위하여, CRPD 이행현황에 대한 회의내용을 공유하고, 쟁점목록에 대한 답변서 취합 및 공청회 등을 통해 공무원에게 홍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CRPD 제2·3차 병합 국가보고서 초안 작성을 위한 공청회를 통해서도 홍보 및 이행현황 공유기회를 가질 예정도 있다고 한다.

(2) 이행평가

대한민국 정부는 CRPD 비준 이후 협약에 대한 내용과 취지를 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국회, 법원, 언론, 일반국민에게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홍보 및 교육을 진행하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해 CRPD의 내용이 법안의 제정과정, 장애인 차별관련 재판과정, 모든 정부정책의 시행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²¹¹⁾

또 장애인개발원의 인식제고 홍보의 내용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매우 다양한 편이지만, 이에 비해 CRPD에 대한 소개나 홍보가 부족하다. 특히 국회의원을 포함한 입법정책 공무원을 대상으로는 더더욱 CRPD에 대한 소개와 홍보가 필요하다. 정책 결정을 하거나, 현장에서 실행을 담당하는 국회의원과 공무원들이야말로 CRPD를 익혀서 이에 따른 상황판단을 해야 함이 마땅하다.

(3) 해외 사례²¹²⁾

독일이나 스웨덴에서는 CRPD 주제에 관한 행사, 인터넷 정보, 시민 참여, 회의, 전문가 학회, 다양한 유형의 포럼을 통해 일반 대중의 인식을 제고해 왔다. 스웨덴은 다른 EU 회원국에 CRPD의 가입을 제안하고 있다.

벨기에는 “동등기회 및 인종차별 방지 행동을 위한 센터”가 장애인 및 고용주, 노동조합, 상호공제조합, 판사, 경찰 등에게 CRPD의 법적 규정을 홍보하고 있다. 그리고 독일어지역과 프랑스어 지역에서 각각 알기 쉬운 언어를 사용해 CRPD를 설명하는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호주 빅토리아 주에서도 알기 쉬운 언어로 된 협약 설명 자료를 개발했다. 뉴질랜드에서는 뉴질랜드 수어로 협약의 내용을 제공하고 있다.

덴마크의 학교는 교육과정의 일부로서 CRPD와 그 주제를 다루고 있고, 오스

211) 유엔장애인권리협약 NGO 보고서 연대, “연대 NGO보고서(국문)”, 20.

212) 이해경의 4, 앞의 글, 48-63.

트리아는 방송을 통해 CRPD를 방영하고 있다. 호주에서는 협약을 법률정보 데이터베이스에 게재하고,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 협약상의 권리 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 모든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지 교육한다.

(4) 소결 및 제언

대한민국은 CRPD를 만드는데 기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국민들, 특히 국회의원과 공무원에게 널리 홍보하고 있지 않았다. 국회의원과 공무원이 CRPD 모니터링을 앞두고 국가보고서를 함께 작성하고 회의를 하는 경우, 담당 공무원이 자신의 분야에 대해서는 CRPD를 자세하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러나 그 외의 공무원과 국회의원, 그리고 자기 영역이 아닌 분야에서는 여전히 CRPD에 대한 인식과 지식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한편 외국의 사례에서 보면 실제 권리자인 장애인에게 CRPD를 홍보하기 위해 알기 쉬운 언어로 된 자료나 수어로 된 자료를 만들 필요가 있다.

바. 혐오 선동 표현의 제재

(1) 정부의 이행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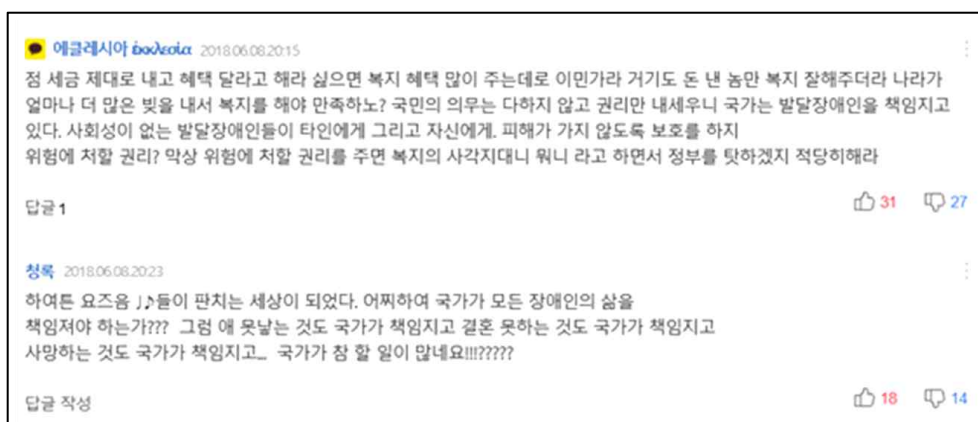
기존의 쟁점이 아니었으므로 별도로 국가보고서나 이행방안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지만, 최근에 불거지고 있는 혐오표현에 관한 규제여부와 대책이 있는지를 질의한 결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소관 업무가 아니라고 답하였고, 그 외의 기관에서도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2) 이행평가

국가인권위원회는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의무자에게 교육의 실시를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정부나 국회에 효과적인 인식개선 교육 정책의 대안을 제시하는 등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나가야 한다. 나아가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악화시키는 표현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의견을 표명하고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는 등의 역할을 해야 한다.

최근에는 방송이나 인터넷, 학교 교육 현장에서 다양한 혐오표현이 발견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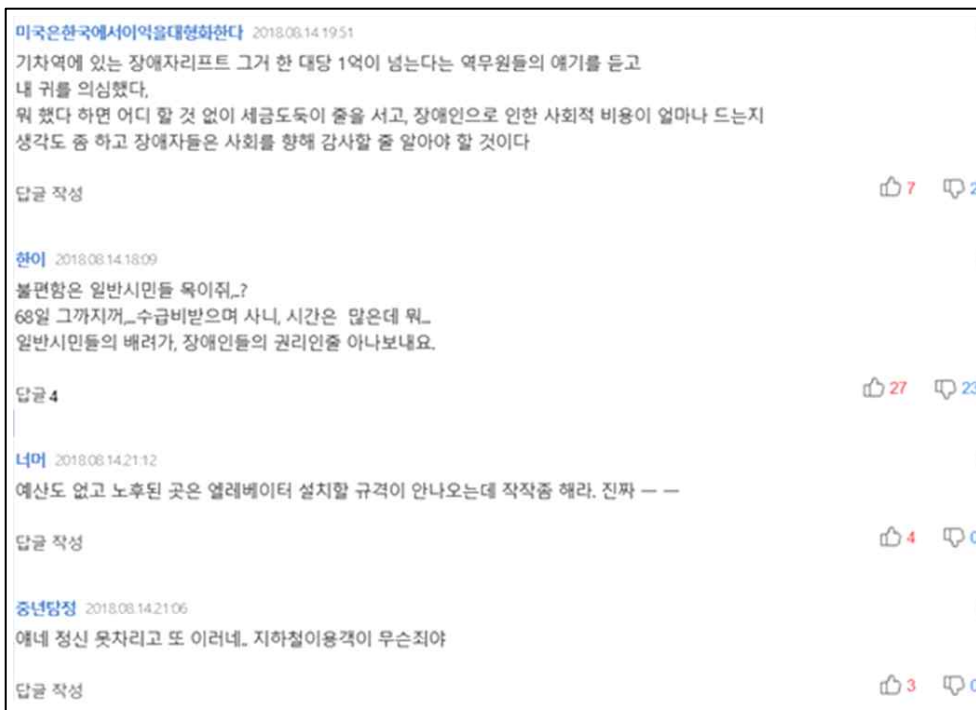
있다. 이중에는 새롭게 만들어지는 말들도 많지만, 과거에는 드러나지 않던 표현들이 인권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감수성이 함양되면서 드러나는 것들도 있다. 그러나 여전히 방송에서 웃음의 소재로 장애를 사용하는 경우²¹³⁾가 있고, 거리에서는 여전히 장애인을 비하하는 욕설들이 자주 들린다. 또한,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 도입을 위한 농성²¹⁴⁾이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시위²¹⁵⁾ 등을 다룬 기사에는 당사자에게 공포와 우울함을 조장하는 댓글이 달리는 경우도 많다. 심지어 장애여성의 강제 피임시술에 실태를 밝힌 뉴스에는 강제피임이 필요하다는 댓글이 달려 이를 읽는 장애여성에게 무력감과 공포감을 조성하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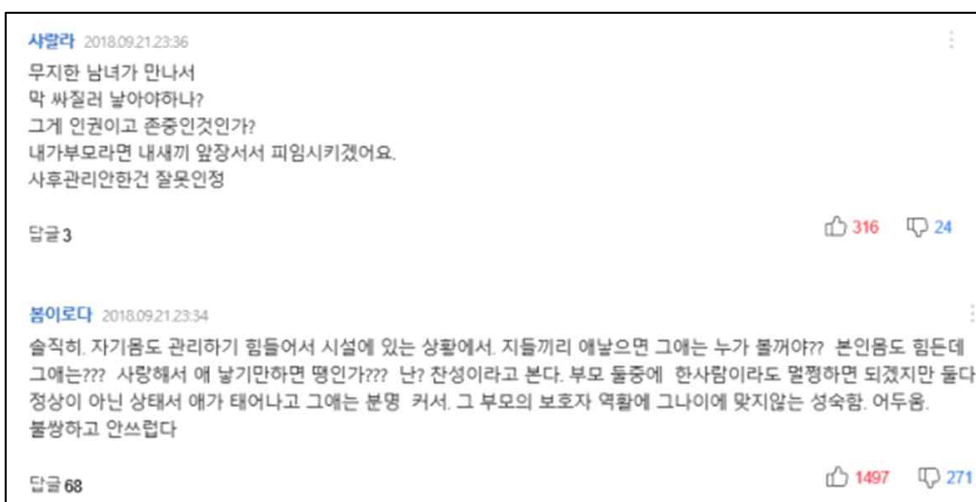
[그림-8] “발달장애 부모들 청와대 앞 농성 68일 만에 종료”
(연합뉴스 2018. 6. 8.) 기사의 댓글

213) 한국일보, “이번엔 유세윤, 장애인 비하에 여론 부글부글”, 한국일보 (2015.4.28. 17:23) <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504281736274487>.
 214) 연합뉴스, “발달장애 부모들 청와대 앞 농성 68일 만에 종료”, 다음뉴스 (2018.6.8. 19:33) <https://news.v.daum.net/v/20180608193327921>.
 215) 연합뉴스, “장애인 지하철 이동권 보장하라 68일간 투쟁 돌입”, 다음뉴스 (2018. 8. 14 17:34) <https://news.v.daum.net/v/20180814173430462>.

216 장애인권리협약 이행에 관한 실태조사



[그림-9] “장애인 지하철 이동권 보장하라 68일간 투쟁 돌입”
(2018. 8. 14 17:34) 기사의 댓글



[그림-10] “보호 시설 장애 여성 ‘강제 피임 시술’ 의혹”
(2018. 9. 21. 22:11) 기사의 댓글

흉악범죄에 대한 언론 보도는 용의자의 조현병이나 발달장애, 뇌전증 등 정신장애 전력을 강조·단정하는 행태가 많다. 대부분의 범죄는 지인에 의해 일어난다는 것은 주지된 사실임에도 정상범위 외부의 타자를 공포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적절한 범죄대응 또는 예방이 아니다. 그리고 범죄의 동기는 매우 다양하고, 범인의 특성을 아우르는 표지도 다양한데, 그중 장애나 출신국, 종교와 같은 한 가지 표지만으로 범죄와 인과관계를 설명할 수 없다. 이는 비장애인의 사회가 안전하다는 허황된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 장애인을 배척하는 것에 불과하다.²¹⁶⁾

2018. 9. 8. 인천 퀴어 문화 축제에서는 교차된 정체성을 가진 장애인에게 혐오선동과 폭력을 행사한 사건도 있었다.

“혐오 세력 몇 백 명이 깃발을 보자마자 ‘내리라고’ ‘장애인까지 들먹이고 싶냐고 소리를 쳤고, 장애인인권연대 측에서는 ‘이분들도 퀴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기독교 연대 여성 한 명이 휠체어를 강제로 넘어뜨리려고 했고, 퀴어들이 서둘러 그 사람을 끌어내고 몸으로 휠체어를 지키려는 듯이 서로 엮여 있었습니다.”²¹⁷⁾

(3) 소결 및 제언

현재 한국에는 혐오 표현에 대한 대책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이 우려된다. 일차적으로는 미디어를 통해 장애를 극복의 대상으로 표현하거나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내용 대신 권리의 주체로 보는 인권적 관점을 갖는 내용을 전파하여 시민들의 장애인 인식을 제고하여야 한다. 또한, 교육현장에서 사용하는 언어 중 혐오표현을 걸러내고, 학생들이 자정하는 능력을 갖도록 하는 교육 정책과 철학을 확립해야 한다. 나아가 심각한 혐오 선동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선제적으로 권고하는 등 선례를 축적하여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216) 2018. 10. 23. 제2차 FGI에서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이용석 정책홍보실장의 의견.

217) 뉴스앤조이, “인천 퀴어 축제 참가자들, 신체적·정신적 피해 극심”, 뉴스앤조이, (2018. 10. 11. 36) <http://www.news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220288>.

6. 제9조 접근성

가. CRPD 제9조

(1) CRPD 제9조

제9조 접근성

1. 당사국은 장애인이 자립적으로 생활하고 삶의 모든 영역에 완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도시 및 농촌지역 모두에서 물리적 환경, 교통, 정보통신 기술 및 체계를 포함한 정보통신, 그리고 대중에게 개방 또는 제공된 기타 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접근성에 대한 장애와 장벽을 식별하고 철폐하는 것을 포함하는 이러한 조치는 특히 다음의 사항에 적용된다.
 - 가. 건물, 도로, 교통 및 학교, 주택, 의료시설 및 직장을 포함한 기타 실내·외 시설
 - 나. 정보, 통신 및 전자서비스와 응급서비스를 포함한 기타 서비스
2. 당사국은 또한 다음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가. 대중에게 개방되거나 제공되는 시설과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관련된 최소한의 기준과 지침을 개발, 공표하고 그 이행을 감시할 것
 - 나. 대중에게 개방되거나 제공되는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주체가 장애인의 접근성의 모든 측면을 고려하도록 보장할 것
 - 다. 장애인이 직면한 접근성 문제에 대하여 이해관계자에게 훈련을 제공할 것
 - 라. 대중에게 개방된 건물과 기타 시설에 점자 및 읽고 이해하기 쉬운 형태의 공공표지판을 설치할 것
 - 마. 대중에게 개방된 건물과 기타 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안내인, 낭독자, 전문수화통역사를 포함한 사람과 동물에 의한 보조 및 매개자를 제공할 것
 - 바. 장애인의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기타 적절한 형태의 지원과 보조를 촉진할 것
 - 사. 인터넷을 포함한 새로운 정보 통신 기술 및 체계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을 촉진할 것
 - 아. 최소한의 비용으로 접근이 가능하도록 접근 가능한 정보통신 기술 및 체계의 고안, 개발, 생산 및 보급을 초기 단계에서 촉진할 것

(2) 일반논평 제2호

일반논평 제2호에 따르면 접근성 보장은 장애인이 독립적인 주체로서 살아가고, 사회에 완전하고 동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물리적 환경과 대중교통 접근성의 보장은 자유로운 이동의 전제가 되고, 정보 접근권은 표현의 자유의 전제가 된다(제1항). 접근권은 평등과 반차별의 측면에서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문제와 통합적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문제이다(제4항).

장애인은 대중교통 접근성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아서 문화 향유권, 의료권 등 기본적인 권리를 행사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정보 접근성이 보장되지 않아서

표현의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통역사가 있는 경우에도 그 수가 매우 적고, 읽기 쉬운(easy-to-read) 형식이 갖추어지지 않아 지적장애 인이나 시청각장애인은 정보에 접근하기가 어렵다(제7항).

장애인은 공중에게 열려 있는 재화, 서비스에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장애인을 존중하는, 효과적이고 동등한 방식이어야 한다(제13 항).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하는 것은 사회 전체의 접근성을 높이는 조치로서 장애인 뿐 아니라 모든 사회 구성원들의 접근성이 보장되는 것이다. 특히 CRPD 제9조는 도시와 지방 모두의 접근성을 보장하도록 당사국에게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제16항).

당사국은 접근성 기준을 채택, 공포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고(제28항), 공공 및 민간 기업이 다양한 장애 유형을 고려하여 접근성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할 의무가 있다(제30항). 또한 당사국은 접근성 보장을 위한 실행 계획을 세우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기한을 정해야 한다(제33항).

나. 최종견해 및 쟁점목록

(1) 최종견해

제9조 접근성

17. 위원회는 농촌 및 도시 지역에서 장애인들이 접근가능한 버스 및 택시의 수가 적다는 사실에 우려를 표한다. 또한 위원회는 건물에 관한 접근성 기준이 건물의 크기, 용적, 또는 건축일자에 의해 제한되며, 아직까 지 모든 공공건물에 적용되지 않은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아울러 위원회는 시각장애인들이 여전히 다수의 웹사이트를 접근할 수 없으며, 청각·지적·정신장애와 같은 각 장애유형에 맞춘 웹 접근성이 취약한 상황인 점에 우려를 표한다.
18. 위원회는 당사국이 현행 대중교통 정책을 검토하여 장애인이 모든 종류의 대중교통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협약 제9조와 일반논평 제2호에 따라, 당사국이 건물의 크기, 용적, 또는 건축일자에 관계없이 모든 공공시설 및 작업장에 접근성 기준을 적용할 것을 권장한다. 아울러 위원회는 당사국이 모든 장애인들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시각 및 기타 장애인들의 스마트폰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2) 쟁점목록

제9조 접근성

- 9-1. 현행 대중교통 정책을 검토하여, 도시 간 교통수단을 비롯한 각종 대중교통을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 왔는지 설명하십시오.
- 9-2. 규모나 수용 인원, 건축 연도와 무관하게 모든 공공시설과 작업장에 접근성 기준 적용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 왔는지 설명하십시오.
- 9-3. 모든 장애인들이 인터넷 웹사이트, 모바일 통신, 가전제품 등을 통해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한다.
10. 공공시설과 민간시설에서 시행 중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Barrier Free Accreditation System)'의 실효성을 설명하고, 민간시설의 인증제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당사국의 조치를 설명하십시오.

(3) 실태조사의 대상 쟁점

제9조 접근권과 관련하여 검토할 정부의 이행 현황은 대중교통 이동권, 공중이용시설 접근권, 정보 접근권에 관한 것이다. 특히 ① 대중교통 이동권과 관련하여서는 제3차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② 공중이용시설 접근권과 관련하여서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과 개정 필요성을, ③ 정보 접근권과 관련하여서는 국가정보화 기본법, 웹접근성 품질인증 제도의 문제를 주로 살핀다.

다. 대중교통 이동권

(1) 정부 이행 현황

(가) 국토교통부는 최종견해에 대한 수용의사를 밝히면서, 버스·철도·항공기 등 대중교통 수단에 대한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지속적으로 증진될 수 있도록 점검 및 정책 방향 제시가 필요하다는 점을 사유로 제시하였다.

(나) 국토교통부는 이행 현황으로 ①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이동권 관련 사항 등을 포함하여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017~2021)」을 수립하였고, ②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 중임을 밝혔다.

(2) 현행 규정

(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대중교통 이용권 관련 주요 내용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9조는 이동 및 교통수단 등에서의 차별금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교통약자법」(이하 ‘교통약자법’)에 따른 교통사업자와 교통행정기관은,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접근·이용함에 있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안 되고(제1항),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의 이용에 있어 보조건 및 장애인 보조기구 등의 동승 또는 반입 및 사용을 거부하여서는 안 되며(제2항),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게 장애 또는 장애인이 동행·동반한 보조건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이유로 불리한 요금 제도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제3항).

특히, 교통사업자와 교통행정기관은 장애인이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이용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 및 이동을 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제4항).²¹⁸⁾

218)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은 교통약자법 시행령이 정하고 있다. ▲「도시철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운행에 사용되는 차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호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 농어촌버스운송사업 및 시외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 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여객을 운송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철도차량, ▲「항공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항공기 중 민간항공에 사용되는 비행기, ▲「해운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 ▲ 광역전철 중 여객을 운송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차량,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환승시설, ▲「도시철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중 역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정류장,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 중 역사, ▲「항공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공항시설, ▲「항만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무역항에 설치되어 있는 항만시설 중 같은 조 제5호 나목에 따른 기능시설 중 여객이용시설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항만 친수시설, ▲ 광역전철의 역사, ▲「도로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도로(동조 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 ▲「도로법」 제108조에 따라 「도로법」이 준용되는 도로가 모두 이에 속한다.

대상시설별 설치해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의 종류도 「교통약자법 시행령」이 정하고 있다. 예컨대 저상형 및 일반형 시내버스의 경우에는 안내방송, 문자안내판, 목적지 표시, 휠체어 승강 설비, 교통약자용 좌석, 수직 손잡이, 장애인 접근가능 표시가 제공되어야 한다. 좌석형 시내버스와 시외버스의 경우 수직 손잡이를 제외하고는 저상형 및 일반형 시내버스의 경우와 동일하다.

(나) 「교통약자법」상 대중교통 이용권 관련 주요 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이용편의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제4조). 교통사업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교통약자법이 정하는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준수하고 교통약자에 대한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제5조 제1항). 교통수단을 제작하는 사업자는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구조·설비 또는 장치를 갖춘 교통수단을 개발·제조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제5조 제2항).

구체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5년 단위의 계획을 수립(이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하여야 하고(제6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이나 군수는 5년 단위의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제7조). 도지사는 5년 단위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제7조의2).

또한, 시장이나 군수는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수 이상의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여야 하고(제16조 제1항),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교통약자와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를 연결하여 주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동조 제2항).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는 교통약자의 거주지를 이유로 이용을 제한하여서는 안 되지만, 지방자치단체는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대수, 운행 횟수 등을 고려하여 그 운영의 범위를 인근 특별시·광역시·도까지로 할 수 있다(동조 제5항).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동조 제8항).

(3) 실태 및 문제점

(가) 이동편의시설 관련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017~2021)」(이하 “증진계획”)에 따르면, 2021년까지 이동편의시설 설치율을 아래와 같이 높이는 것이 목표이다.

[표-23] 지역별·시설별 최종 차등목표치

(단위: %)²¹⁹⁾

수단 및 시설		지역별	'16년	'21년
			설치율	설치율
교통수단	일반버스	광역시	80.5	85
		9개 도	68.3	79
		전국	72.2	82
	저상버스	전국	93	안정화 및 유지단계 (90% 이상 유지)
	도시철도 및 전철	전국	91.7	
	철도	전국	93.8	
	항공기	전국	98.7	
여객선	전국	17.6	39	
여객시설	여객자동차터미널	광역시	57.5	74
		9개 도	52.1	72
		전국	54.4	73
	도시철도 및 전철 역사	전국	83.6	90
	철도역사	광역시	81.1	90
		9개 도	79.7	90
		전국	81	90
	공항	전국	80.9	90
	여객선터미널	전국	67.6	79
	버스정류장	광역시	46.8	64
9개 도		33.1	51	
전국		39.4	57	
보행환경	광역시	75.2	83	
	9개 도	66.6	79	
	전국	72.2	81	

위 표에 따르면, ① 교통수단 중 여객선과 ② 여객시설 중 버스정류장의 이동 편의시설 설치율이 다른 교통수단 및 여객시설에 비해 현저히 낮다. 증진계획에

219) 국토교통부,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2017~2021)” (2016), 17.

따른 목표치 역시 각 39%, 57%(광역시 64%, 9개 도 51%)로 높지 않다.

장애인권리위원회는 2014년 최종견해에서 장애인이 ‘모든 종류’의 대중교통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하였다. 여객선의 이동편의시설 설치율 목표가 39%인 것은 지나치게 낮은 목표치로 보이며,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²²⁰⁾

또한, 버스 자체에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만큼 버스정류장에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다. 버스정류장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이동편의시설 설치 계획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특히 「2017년 교통약자 이용편의 실태조사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점형블록과 선형블록 설치율은 각 40.5%, 37.3%이고, 안내판에 점자안내나 음성안내를 제공하는 경우는 18.9%밖에 되지 않는다. 턱 낮추기나 활동공간 확보와 같이 지체장애인을 위한 시설개선은 많이 이루어졌으나, 시각장애인을 위한 시설 구비에는 미흡하다고 평가된다.²²¹⁾

[표-24] 버스정류장 이동편의시설 설치현황²²²⁾

구분		기준적합 (%)	기준미적합 (%)	미설치 (%)
턱낮추기	보도와 차도의 높이차이 15cm 이하	81.7	18.1	0.2
활동공간	0.8m이상 확보 및 1.8m*1.8m 이상 회전공간 확보	72.5	21.8	5.7
동선분리	시각장애인과 휠체어장애인이 교차하지 않도록 동선분리	73.6	0.9	25.5
점형블록	시각장애인이 위치를 감지할 수 있도록 설치	40.5	0.4	59.0
선형블록	점형블록과 함께 선형블록 설치	37.3	0.5	62.2
안내판 부착위치	안내판을 바닥에서 1.5m 안팎 설치	78.9	10.4	10.7

220) 한국일보, “서삼석 의원 ‘여객선 이동편의시설 기준 정비하라’”, (2018. 10. 29. 15:21), <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810291401060203?did=na>.

221) 티브로드, “[세종]세종 점자없는 버스정류장…권고는 있으나마나”, (2018. 10. 15. 19:23:37), http://ch1.tbroad.com/content/view?parent_no=24&content_no=79&p_no=66940.

222) 한국교통안전공단외 2, “2017년 교통약자 이용편의 실태조사 연구 최종보고서”, 국토교통부(2018), 62.

구분		기준적합 (%)	기준미적합 (%)	미설치 (%)
안내판 점자 및 음성안내	안내판에 점자안내 및 음성안내 제공	18.9	29.3	51.8
버스정보 조회버튼	바닥면으로부터 1.2m 이내 설치	17.2	2.9	79.9
버스정류장 평균		52.6	10.5	36.9

(나) 저상버스(시내버스) 관련

2021년까지 저상버스 보급률을 42%로 높이는 것이 국토교통부의 목표이다. 이는 「제2차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2012~2016)」의 저상버스 보급률 목표 41.5%에 비하여 불과 0.5%밖에 높아지지 않은 매우 소극적인 목표치이다.²²³⁾

[표-25] 저상버스 목표치²²⁴⁾

구분	현재 보급률 (2016년)	목표연도 보급률 (2021년)	비고(선정 근거)
저상버스	19.0%	42.0%	2016년 말 - 시내 33,882대, 저상 6,442대 2021년 말 - 시내 36,037대, 저상 15,178대

보급률 목표치 자체도 미흡하지만, 실제 보급률은 목표치에도 한참 미달한다. 장애인권리위원회가 2014년 최종견해에서 장애인들이 접근 가능한 버스나 택시의 수가 적다는 사실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 기준 저상버스 보급률은 22.4%(시내버스 33,796대, 저상버스 7,579대)에 불과하다.²²⁵⁾ 2011년 저상버스 보급률이 12.0%, 2016년 저상버스 보급률이 19.0%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저상버스의 보급은 매우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장애단체들도 이 점을 지적하며 정부는 저상버스를 도입하려는 의지가 없다고 평가하였다.²²⁶⁾

223) 국토해양부, “제2차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2012~2016)” (2012), 48.

224) 국토교통부,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2017~2021)”, 18.

225) 한국교통안전공단외 2, 앞의 글, 66.

226) 장애인권리협약 이행에 관한 실태조사

동두천시, 과천시, 군포시 등을 비롯하여 저상버스가 아예 도입되지 않은 지역도 상당하다. 장애인권리위원회는 ‘농촌 및 도시 지역’ 모두에서 장애인들이 접근 가능한 버스나 택시의 수가 적다고 지적하였는데, 대도시가 아닌 곳에도 저상버스가 적극 도입되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

(다) 특별교통수단(콜택시) 관련

특별교통수단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콜택시)이다. 증진계획은 2021년까지 전 지자체에서 법정기준 보급대수 100%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국 평균으로 계산할 때, 법정기준대수 대비 특별교통수단 보급율은 2016년 기준 103.3%, 2017년 기준 126%였다. 그러나 현재 법정기준대수는 제1급 및 제2급 장애인 200명 당 1대로 정하여져 있고(「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5조), 이는 최소한의 법정기준일 뿐이다. 위 기준을 충족시켰다고 하여 장애인의 이동권이 확보되었다고 평가하기는 곤란하다. 법정기준을 초과하는 목표치 설정이 필요하다.

또한 특별교통수단을 한 대도 도입하지 못한 경기도 안성시과 가평군, 경상북도 울릉군을 비롯하여,²²⁷⁾ 59개 시·군이 법정기준대수에 미달하는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고 있다.²²⁸⁾ 법정기준에 미달한 지역들이 특별교통수단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표-26] 특별교통수단 목표치²²⁹⁾

구분	현재 보급률 (2016년)	목표연도 보급률 (2021년)	비고(선정 근거)
특별교통수단	103.3%	전 지자체 100%	「교통약자법」 제16조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5조

226) 2018. 10. 24. 제3차 FGI에서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오창석 정책지원부 부장, 한국장애인연맹 조태홍 기획실장, 한국장애인연맹 임상욱 조직국장, 무장애연대 김남진 사무국장의 의견.

227) 국토교통부,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2017~2021)”, 28.

228) 한국교통안전공단외 2, 앞의 글, 76.

229) 국토교통부,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2017~2021)”, 20.

현재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 및 운행시간, 통행료 지불 주체 등은 기초지자체별로 상이하다. 「교통약자법」은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군산-전북도청을 왕복할 때, 전주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면 12,000원이 들지만 군산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면 50,000원 이상의 비용이 든다.²³⁰⁾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주말에는 주중보다 이용가능시간을 짧게 하기도 하고 아예 운행을 하지 않기도 한다.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²³¹⁾ 장애단체 또한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이 운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강력히 피력해오고 있다.²³²⁾

(라) 시외이동권 관련

증진계획에서 특히 미흡한 부분은 장애인의 시외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계획이다. 2014년 심의 당시 한국의 시외이동수단에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저상버스 또는 리프트 버스가 없다는 점이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었고, 장애인권리위원회는 장애인이 ‘모든 대중교통’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재의 대중교통 정책을 재고할 것을 권고하였다. 2015년 국가인권위원회 또한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하여 추후 증진계획 수립 시 시외버스에 단계적으로 휠체어 승강설비가 갖추어지거나 저상버스가 도입될 수 있도록 연차별 세부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고하였다.

그러나 현 증진계획상 시외버스에 관한 계획의 요지는, 2020년까지 휠체어 이용자의 탑승이 가능한 표준모델을 개발하고 관련 연구개발을 실시하며, 2021년에 실용화 사업을 시작하겠다는 것이다.²³³⁾ 장애인권리위원회의 권고가 2014년도에 있었음에도 여전히 연구개발 계획만을 수립하고 있는 것은, 장애인권리위

230) 노컷뉴스, “장애인NGO, 군산 장애인 콜택시 보편적 이동권 침해”, (2017. 9. 19. 13:38), <http://www.nocutnews.co.kr/news/4849621>.

231) 전북도민일보, “장애인 인권연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 철저히 조사해야’”, (2017. 9. 19. 18:52), <http://www.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68299#09gT>.

232) 2018. 10. 24. 제3차 FGI에서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오창석 정책지원부 부장, 한국장애인연맹 조태홍 기획실장, 한국장애인연맹 임상욱 조직국장, 무장애연대 김남진 사무국장의 의견.

233) 국토교통부,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2017~2021)”, 46-47.

원회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것과 다르지 않다. 장애단체 역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표준모델을 개발하고 2021년부터 실용화 사업에 들어가겠다는 정부의 계획은, 그동안 정부가 장애인의 시외이동권 보장을 위해 실질적으로 노력한 것이 없다는 방증이라며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다.²³⁴⁾

최근 국토교통부는 휠체어 이용 장애인도 탑승 가능한 고속버스·시외버스에 대한 시승식을 열었다. 시승식에서는 국토교통부가 2019년 하반기에 고속·시외버스 일부 노선에 시범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라는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버스가 공개되었다.²³⁵⁾ 그러나 장애인권리위원회의 권고 이후 4년이 경과하도록 시외버스에 저상버스나 휠체어 승강설비가 갖추어진 버스가 도입되지 않은 것을 고려하면, 이 시승식은 선언적 행사에 그칠 우려가 크다. 휠체어 탑승설비 장착 버스 도입의 의무화 등 보다 구속력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²³⁶⁾

나아가 시청각장애인의 편의 보장도 필요하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고속버스·기차·비행기 등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시각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인적서비스 제공을 보장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권고를 냈다(국가인권위원회 2018. 9. 19.자 17진정0989400 등 20건(병합) 결정, 시각장애인 인적서비스 미제공으로 인한 이동권 침해 정책권고). 주요 내용은 교통약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편의의 종류가 한국수어·통역서비스, 휠체어·점자안내책자·보청기기, 공중팩스 등 물적 서비스로 제한되어 있던 「교통약자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²³⁷⁾의 개정이다. 이번 권고에 의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안내보조 등 인적서비스를 마련하여야 한다. 고속버스터미널과 달리, 코레일은 휠체어 이용고객이

234) 2018. 10. 24. 제3차 FGI에서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오창석 정책지원부 부장, 한국장애인연맹 조태홍 기획실장, 한국장애인연맹 임상욱 조직국장, 무장애연대 김남진 사무국장의 의견.

235) 비마이너, “휠체어 이용 장애인도 ‘고속버스’ 타고 고향 갈 수 있을까... 시승식 열렸다”, (2018. 9. 19. 23:08),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2621&thread=04r08>.

236) 비마이너, “장애인 시외이동권 기대하며 시승식도 열었는데...이후 진행은?”, (2018. 9. 28. 19:55),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2647&thread=04r08>.

237) 제15조(교통이용정보 등의 종류)

③ 제11조에 따른 여객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교통사업자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교통약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편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8. 2.>

1. 한국수어·통역서비스
2. 휠체어·점자안내책자·보청기기
3. 공중팩스

나 시각장애인을 위한 장애인·노약자 도우미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인천국제공항 역시 인적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다만 위 기관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법령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체 규정을 따른 것이므로 법령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인적 서비스 도입의 필요성은 여러 장애 단체에서 지적한 부분이기도 하다.²³⁸⁾

특별교통수단의 경우, 「교통약자법」 자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대수, 운행 횟수 등을 고려하여 그 운영의 범위를 인근 특별시·광역시·도까지로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위 규정에 근거하여 다수의 지방자치단체들은 특별교통수단의 시외 운행을 제한하고 있다.²³⁹⁾ 장애인이 도시 간 이동을 하고자 할 때 시외버스를 이용할 수도,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도 없는 상황이므로 개선이 시급하다.

라. 공중이용시설 접근권

(1) 정부 이행 현황

(가) 보건복지부는 최종견해에 대한 일부·조건부 수용의사를 밝히면서,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르면, 법 시행 이전 건축물에는 편의시설 설치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으며, 일부 용도의 건축물은 300㎡미만인 경우 접근성 기준을 적용하고 있지 않는 등 장애인 편의증진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는 점을 사유로 제시하였다.

(나) 보건복지부는 이행계획으로 2015년 7월 29일부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공공건물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Barrier Free)인증을 받도록 하여, 장애인의 시설이용상 편의 증진 등을 제시하였다.

(2) 「장애인등편의법」의 주요 내용

「장애인등편의법」은 편의시설 설치의 기본 원칙을 선언하고(제3조), 접근권을

238) 2018. 10. 23. 제2차 FGI에서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김훈 정책연구원의 의견.

239) 경기일보, ““장애인도 시외 나들이 하고 싶다”...이동권 확대 선거 이슈화”, (2018. 5. 14. 20:43), <http://www.kyeonggi.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475246>.

규정하고 있다(제4조). 또한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을 나열하고 있는데, 그 중에 공공건물과 공중이용시설이 포함되어 있다(제7조).²⁴⁰⁾

제3조(편의시설 설치의 기본 원칙) 다음 각 호의 자(이하 “시설주등”이라 한다)는 장애인등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가능하면 최대한 편리한 방법으로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시설주²⁴¹⁾
2.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나 처분(「건축법」 제29조에 따른 협의를 포함한다)을 신청하는 등 절차를 진행 중인 자

제4조(접근권) 장애인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7조(대상시설)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공원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3. 공동주택
4. 통신시설
5. 그 밖에 장애인등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시설 및 그 부대시설

(가) 면적에 따른 예외

그러나 법에서 정한 공중이용시설 전부가 대상시설은 아니며,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에서 그 범위가 제한되어 있다(시행령 제3조 별표1). 이에 따라 대부분의 공중이용시설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일정기준 이상인 시설만 대상시설에 포함된다. 예를 들어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에서도 슈퍼마켓·일용품 등의 소매점으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300m²²⁴²⁾ 이상 1000m² 미만인 시설, 이용원·미용원·목

240) 「장애인등편의법」 제2조에서는 ‘공중이용시설’을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건축물, 시설 및 그 부대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과 시설”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시행령 제2조에서는 공중이용시설을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공장, 자동차관련 시설, 교정시설, 방송통신시설, 묘지 관련 시설, 관광 휴게시설 및 장례식장으로 구체화하고 있다.

241) 대상 시설의 소유주 또는 관리자.

242) 약 90평.

육장 중 바닥면적 합계가 500㎡ 이상인 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일반음식점 중 바닥면적 합계가 300㎡ 이상인 시설만 편의시설 설치의무가 부과된다. 이 같은 시행령에 따르면 바닥면적 합계가 일정규모에 미치지 못할 경우 편의시설 설치대상시설에서 제외된다.²⁴³⁾

(나) 건축시기에 따른 예외

「장애인등편의법」은 또한 제정 당시 경과규정을 두어 건축연도에 따른 법 적용의 예외를 두었다. “동법 시행 전에 설치된 대상시설 중 일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2년 이상 7년 내의 범위 안에서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였는데(부칙 제2항), 동법 시행령 부칙 경과규정에서 열거한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에는 상점이나 음식점 등 일반 공중이용시설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부칙 제3조, 별표3). 따라서 경과규정에서 열거되지 않은 대부분의 공중이용시설은 법 시행일인 1998. 4. 11. 이후에 설치된 건물만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²⁴⁴⁾

(다) 의무 발생 시기에 따른 예외

편의시설 설치 의무는 대상시설을 ‘설치’할 때, 즉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을 할 때 발생한다. 해당 용어의 의미는 「건축법」에 정의되어 있는데, 그 요건이 매우 엄격하다. 실무상 시설주관기관이 인테리어 공사(실내건축 공사)를 통해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편의시설 설치의무가 발생한다고 볼지 의문이다.²⁴⁵⁾

(라) 일정기준 미만 예외 인정의 문제점

「장애인등편의법」에서는 면적과 건축연도를 기준으로 일정기준 미만의 공중이용시설에 대하여 편의시설 설치의무를 면제하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시행

243) 임성택외 7, “일정기준 미만의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6), 58.

244) 임성택외 7, 앞의 글, 58-59.

245) 임성택외 7, 앞의 글, 59-61.

령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편의시설 설치 대상인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은 일반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이용하는 거의 모든 시설인데, 대부분의 시설이 시행령에서 정한 면적 미만의 소규모 시설이어서 예외 인정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다.²⁴⁶⁾ 또한 건축연도를 기준으로 예외를 인정하는 규정은 경과규정을 두지 않더라도 소급입법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지도 않는데 오히려 경과규정을 두어 일률적으로 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접근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²⁴⁷⁾

시설주에게 예산 부담이 과도한지 여부는 시설주의 재산 상태, 사회적 역량 외에 지원제도의 뒷받침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는데도 일률적으로 편의시설 설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다. 참고로 「미국장애인법」에서는 공중이용시설 접근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율하고 있다.

[참고] 「미국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ADA 1990) 시설물 접근권 규정

1. 원칙

- 가. 신·개축 건물: 법무부 가이드라인 준수
- 나. 기존 건물: 상당한 비용이나 곤란 없이 용이하게 달성할 수 있는(readily achievable) 방식의 물리적 장벽 제거(42 U.S.C. 12181-89)

2. 예외

- 가. 신축 건물: 법무부 가이드라인 준수가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 나. 개축 건물: 비용이 불균형하게 소요되는 경우
- 다. 기존 건물: 용이하게 달성할 수 있는 물리적 장벽 제거 방식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3.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 대안 조치(alternative measure)

- 가. 신·개축 건물: 임시적이거나 간단한 방식 중 용이하게 달성할 수 있는 방식으로 물리적 장벽 제거
- 나. 모든 건물: 용이하게 달성할 수 있는 방식으로 불가능하더라도 대안 조치를 통해 최대한의 접근권 보장

(3)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주요 내용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 차별을 정의하고 개별 영역에서의 차별을 구체적으로 금지하며 차별이 생긴 경우 구제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다. 「장애

246) 2014년 통계청 자료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전국의 일정규모 미만의 시설은 업종 별로 음·식료품업 98.06%, 일반 음식점업 95.77%, 이·미용업 99.21% 등이다.

247) 임성택외 7, 앞의 글, 82-84.

「인차별금지법」은 접근권과 관련, 시설물 접근권(제18조), 이동권(제19조), 정보접근권(제20조)을 구분하여 명문화하고 있다. 다만 장애인을 위한 접근권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는 시설이라도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제4조 제3항 제1호).

제18조(시설물 접근·이용의 차별금지) ① 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장애인이 당해 시설물을 접근·이용하거나 비상시 대피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시설물에 들여오거나 시설물에서 사용하는 것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장애인이 당해 시설물을 접근·이용하거나 비상시 대피함에 있어서 피난 및 대피시설의 설치 등 정당한 편의의 제공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을 받는 시설물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령 등에 규정한 내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차별행위) ①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2.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4-6. (생략)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1.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를 하지 않음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
 2.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가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이 경우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은 교육 등의 서비스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

한편,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시설물 접근·이용 차별금지 조항이 적용되는 시설물은 「장애인등편의법」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중 2009. 4. 11. 이후 신축·증축·개축하는 시설물이어서(법 제18조 제4항 및 시행령 제11조), 「장애인등편의법」에서 일정기준 미만 시설에 예외를 인정하는 문제점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다.

(4) 기타 법률의 주요 내용

(가) 「건축법」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건축계획서와 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법 제11조), 건축허가신청에 필요한 설계도서는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계획서가 포함된다(시행규칙 제6조 제1항 별표2).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편의시설 설계 작성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계획 설계 단계에서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상세도가 제출되지 않으므로 부적합한 편의시설 설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²⁴⁸⁾

(나) 「도로법」

「도로법」은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른 편의시설 중 출입구에 이르는 접근로 또는 출입구와의 높이 차이를 제거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도로점용료 전액을 면제하고 있다(법 제68조 제7호 및 시행령 제73조 제3항).²⁴⁹⁾ 다만 도로와 이어진 공중이용시설의 출입구에 경사로를 설치할 경우 도로점용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다.

(다) 「조세특례제한법」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을 위한 시설 설치에 소요된 금액의 7/100에 상당하는 금액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하는데(제94조 제1항 제4호), 공제 대상인 편의시설인 시행규칙(제43조, 별표9)으로 정하고 있다.

(5)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일정기준 미만의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 실태 조사(2016)” 이후 공중이용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정책 권고를 하였다.²⁵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48) 유동철외 13, “장애인 인권증진 중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장애유형별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1), 384.

249) 법률에서는 감면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시행령에서 전액 면제한다.

- ①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하여: 2019. 1. 1.부터 신축·증축·개축되는 50㎡(약 15평) 이상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등이 의무화도록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을 개정할 것
- ②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하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투자한 비용이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할 것
- ③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하여: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에 경사로 등 편의시설 설치를 촉진하고, 그에 따른 시설주 부담이 경감되도록 「도로법」을 개정해 경사로 설치에 따른 도로점용료를 감면하고,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자격시험 및 건축사 실무교육 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관련 사항을 포함할 것

이에 대하여 현재 정부에서 마련한 관련 법률 개정안은 찾지 못하였다. 다만 ①과 관련하여서는 신창현 의원 대표발의로 「장애인등편의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²⁵¹⁾ 주요 내용은 시설 규모에 관계없이 주출입구 접근로, 출입구(문)을 설치하고, 주출입구 높이 차이를 제거하도록 하는 것이다(제8조 제1항 단서 추가).

③과 관련하여서는 2017. 11. 28.자로 「도로법」이 개정되어 안전시설 설치, 점용료 감면 대상의 확대²⁵²⁾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²⁵³⁾ 그 외 위 권고와 관련된 정부 개정안은 찾을 수 없었다.

250) 국가인권위원회,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의 장애인 접근성 개선을 위한 정책 권고”(2017).

251) 신창현 의원의 10,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1212, (2018. 1. 2.). [계류 중].

252) 기존 법률이 이동편의시설 점용료 감면의 대상을 ‘주출입구’로 한정하고 있어서 부출입구 진입로와 부출입구 간 높이차이 제거 시설 설치를 위해 도로점용허가를 받는 경우에도 점용료를 감면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한 것이다.

253)

기존 법률	개정 법률
제68조(점용료 징수의 제한)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의 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 6. (생략) 7. 「 <u>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u> 」 제8조 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중 주출입구 접근로와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시설의 경우	제68조(점용료 징수의 제한) _____ _____ 1. ~ 6. (현행과 같음) 7. 「 <u>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u> 」 _____ 출입구에 이르는 접근로 또는 출입구와의 높이차이를 제거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_____

(6) 실태 및 문제점

보건복지부는 장애인권리위원회 최종견해를 일부·조건부 수용하면서 이행계획으로 공공건물에 대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Barrier Free)인증(이하 “BF인증”)과 민간시설의 자발적 참여 유도를 들고 있다. 그러나 이는 공공건물의 편의시설 설치 실태와 BF 인증제도의 운영방식을 고려할 때, 사실상 장애인권리위원회의 권고를 전혀 수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가) BF 인증 제도 개괄 및 문제점

보건복지부령·국토교통부령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은 「장애인등편의법」상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을 인증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인증은 개별시설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시공자가 “신청”을 하여야만 심사하도록 되어 있어 법적 의무가 아니고, 다만 「장애인등편의법」 제10조의2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공시설 위주로 인증이 이루어지고, 대다수의 근린생활시설은 인증을 받지 않고 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2조(인증 대상)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별시설

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

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2.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하여 교통수단·여객시설 및 도로를 계획 또는 정비한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른 지역

제6조(인증의 신청) ① 제2조제1호에 따른 개별시설(이하 “개별시설”이라 한다)에 대한 인증신청은 개별시설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시공자(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개별시설의 시공자로서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인증신청에 동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가 할 수 있으며, 제2조제2호에 따른 시·군·구 및 지역(이하 “지역”이라 한다)에 대한 인증신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

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5조의2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지역의 개발사업 시행자

그러나 2013년 편의시설 전수조사에 의하면, 공공시설과 민간시설은 대상 건물 수에서 10배 이상의 큰 차이가 있어 공공기관에만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²⁵⁴⁾ 오히려 공공시설과 민간시설의 실제 편의시설 설치율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²⁵⁵⁾ ²⁵⁶⁾

[표-27] 시설 주체별 편의시설 설치 현황

시설주체	대상 건물수 (개)	대상 편의시설수 (개)	설치율 (%)	적정설치율 (%)
공공시설	11,973	733,46	73.6	62.3
민간시설	129,600	5,571,913	67.2	59.9
계	141,573	6,305,374	67.9	60.2

정부에서 지정받은 BF 인증기관은 2018. 2. 28. 기준 2,750개²⁵⁷⁾의 예비인증과 본인증을 하였는데 실제로 BF 인증 본인증을 최우수 등급으로 통과한 곳도 실제 장애인의 이용은 불편하다는 지적도 있다.²⁵⁸⁾ 인증 기준이 낮고, 배점 기준이 애매하며, 사후관리가 부실하다는 것이 주 이유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시각장애인 가운데 점자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도 많은데 점자를 읽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안내장치’는 BF 인증 기준 안내판 항목의 의무 사항이 아니다. BF 인증은 94개 항목에 의거해 각 부문의 배점을 합산해 점수를 매기는데 288점 만점으로 100점으로 환산하여 70점이 넘으면 인증을 획득할 수 있다. 특정 항목에서 점수를 잃더라도, 다른 항목에서 배점을 많이 받으면 우수 등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또한, BF 인증기관마다 평가의

254) 같은 의견으로 2018. 10. 24. 제3차 FGI에서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오창석 정책지원부 부장의 의견.

255) 한국장애인개발원, “2013년 장애인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2013), IV.

256) 다만 「장애인등편의법」 제10조의2는 2015. 1. 28.에 신설된 조항이므로 5년마다 시행되는 2018년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에서 그 비율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면 유의미하다고 볼 수도 있겠다.

257) 2013년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전수조사에서 대상 건물수가 141,573개인 것을 고려하면 단순 계산으로도 1.9% 밖에 되지 않는 미미한 숫자이다.

258) SBS NEWS, “[취재파일] ‘탄생 10주년’ BF인증, 왜 이렇게 허술할까” (2018. 4. 28. 09:06)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732298 .

엄격성에 차이가 있고, 7개의 인증기관이 병존하는 상황에서 인증기관으로서는 타 기관보다 신청자 수를 많이 확보하고자 심사 기준을 완화하게 되는 유인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²⁵⁹⁾

2017년 8월 BF 인증시설 143곳을 대상으로 사후 조사를 한 결과, 적정 평가를 받은 곳은 13곳에 불과하여 90% 이상이 보완이 필요한 시설이었다.²⁶⁰⁾ 참고로 BF 인증은 한 번 받으면 5년이 기한이지만 재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다.

(나) 편의시설 실태조사 결과 및 권고에 대한 수용 방향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르면 5년마다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를 하게 되어 있으므로(법 제11조), 1998년부터 시작된 전수조사는 1998년, 2003년, 2008년, 2013년 네 차례 이루어졌고, 2018년 다섯 번째 전수조사가 예정되어 있다.²⁶¹⁾

2013년 편의시설 설치율은 67.9%, 적정설치율²⁶²⁾은 60.2%로 2008년 설치율 77.5%,²⁶³⁾ 적정설치율 55.8%와 비교하면 설치율은 낮아지고 적정설치율은 다소 높아졌다.²⁶⁴⁾ ²⁶⁵⁾ 건물유형별 편의시설 설치현황(일부)은 다음과 같다.

259) 2018. 10. 24. 제3차 FGI 에서 무장애연대 김남진 사무국장의 의견.

260) 정의당 윤소하 의원실 자료.

261) 2019. 1. 발표 예정.

262) 단순 설치율이 아닌, 「장애인등편의법」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 편의시설의 설치율을 말한다.

263) 이 조사에서 기존 건물이 아닌 신축 건물을 대상으로 설치율을 조사하여 수치가 과장되어 수치를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으로 2018. 10. 24. 제3차 FGI에서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오창석 정책지원부 부장의 의견.

264) 한국장애인개발원, “2013년 장애인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VI.

265) 이에 대해 보고서에는 “2013년 조사항목에 편의시설 설치율이 현저히 낮은 매개시설이나 내부시설 등에 설치하여야 하는 점자블록 관련 세부항목 등이 추가되었기 때문이지 실제로 설치율이 낮아진 것은 아님”이라고 서술되어 있으나, 어찌 되었건 편의시설 설치율이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낮아졌다는 점에서 정부의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표-28] 건물 유형별 편의시설 설치현황

구분	대상 건물수 (개)	대상 편의시설수 (개)	설치율(%)	적정설치율(%)
1종근린생활시설	27,050	1,001,853	70.0	61.1
2종근린생활시설	10,190	301,604	66.2	60.2
업무시설	9,706	563,796	71.7	63.0
종교시설	4,669	142,909	70.3	62.6
교육연구시설	14,765	925,477	70.6	61.9
숙박시설	4,335	212,873	70.0	62.1
공동주택	34,099	1,161,272	71.5	64.7
(일부 생략)				
계	141,573	6,305,374	67.9	60.2

위 실태조사 결과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편의시설 적정설치율은 60%에 불과하고, 그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건물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축하는 건물에는 의무적으로 BF 인증제도를 실시하고 있다는 보건복지부의 답변은 장애인권리위원회 최종견해에서 요구하는 내용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최종견해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건물의 크기·용적률·건축일자에 관계없이 모든 공공시설 및 작업장에 접근성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며, 적어도 국가인권위원회의 2017. 12. 권고에 대한 답변으로서 「장애인등편의법」령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모든 공공시설의 접근권 보장을 위하여는 유니버설 디자인이 원칙이 되어야 한다.²⁶⁶⁾

(7) 소결 및 제언 - 「장애인등편의법」령 개정

(가) 일정기준 미만·연도에 따른 예외문제의 해결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제3조 별표1을 수정하여 바닥면적 제한을 삭제하여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시설주가 의무를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에 관한 별도의 편의시설 종류 및 설치기준 마련은 필요해 보인다. 혹은

266) 2018. 10. 23. 제2차 FGI에서 장애인학생지원네트워크 김형수 사무국장의 의견.

「장애인등편의법」 제15조의 적용 완화 부분에 소규모 시설물을 추가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다.²⁶⁷⁾ 1998. 4. 11. 이전에 설치된 대상시설에 대해서는 법률 본문에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²⁶⁸⁾

(나) 편의시설 설치 대상 확대

현행 「장애인등편의법」과 시행령에는 대상시설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으므로, 규모와 상관없이 적용 대상에서 아예 배제되는 시설이 존재한다.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공공건물과 공중이용시설의 종류가 열거되어 있다. 장애인이 여가활동을 도모할 수 있는 노래연습장, 당구장, DVD 감상실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CRPD 제30조는 장애인의 문화생활, 레크리에이션, 여가생활 및 체육활동에 대한 참여를 규정하고 있다. 한 달에 한 번 이상 노래연습장을 방문한다는 응답자의 비율이 60%를 넘을 정도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노래연습장을 상당히 높은 빈도로 방문한다.²⁶⁹⁾ 당장 시행령 제2조 별표1을 수정하여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이 어렵다면, 적어도 장애인들이 여가를 보내는 주요 시설을 대상 시설부터 대상시설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한다.²⁷⁰⁾

(다) 그 외 명시하여야 하는 사항

미국의 입법례를 따라 대안적 조치를 강구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시하여야 한다.²⁷¹⁾ 또한 건축(신축, 증축, 개축, 재축, 건축물 이전), 대수선 이외에도 건축물 실내를 고치는 이른바 ‘인테리어 공사’를 할 경우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여야 한다.²⁷²⁾

267) 임성택외 7, 앞의 글, 188-189.

268) 임성택외 7, 앞의 글, 192.

269)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노래연습장 제도 개선 및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2015), 30.

270) 임성택외 7, 앞의 글, 190-192.

271) 임성택외 7, 앞의 글, 193-194.

272) 임성택외 7, 앞의 글, 195-197.

마. 정보 접근권

(1) 정부의 이행 현황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종견해에 대한 수용의사를 밝히면서, 장애인의 정보접근성 제고를 위해 인터넷 및 모바일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지원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사유로 제시하였다.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행 계획으로 ①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2조의 2(웹접근성 품질인증 등) 관련 웹접근성 품질인증제도를 지속 시행하여 웹접근성 제고를 유도하고, ② 장애인에 대한 스마트기기 이용 교육을 확대하며, ③ 모바일 앱에 대한 접근성 표준을 개정하고, ④ 접근성 수준 진단·컨설팅 제공 등을 통해 앱 접근성 제고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2) 현행 규정

(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정보 접근권 관련 주요 내용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일정한 범위의 행위자에 대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당해 행위자가 생산·배포하는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제2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은 장애인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필요한 수단을 구체화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누구든지 신체적·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 사이트’가 포함된다(제14조 제2항 제1호).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은 여러 개의 기준 시점을 두어 편의제공의무를 부담하는 행위자의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였는데, 2018년 현재는 위 기준 시점들이 모두 도과하였다. 즉,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정하는 ▲ 공공기관, ▲ 교육기관, ▲ 교육책임자, ▲ 법인, ▲ 문화·예술사업자, ▲ 의료인 등, ▲ 의료기관 등, ▲ 체육 관련 행위자, ▲ 복지시설 등 관련 행위자, ▲ 시설물 관련 행위자, ▲ 이동 및 교통수단 등 관련 행위자, ▲ 사용자, ▲ 노동조합관계자는 모두 「장애인차별금지법」상 편의제공의무를 지는 행위자에 해당한다.

(나) 「국가정보화 기본법」상 정보 접근권 관련 주요 내용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 보장과 관련하여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2조는 수범자에 따라 상이한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웹사이트와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 하고(제1항), 정보통신제품을 구매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과 이용 편의를 보장한 정보통신제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4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정보통신서비스 및 정보통신제품 등의 종류·지침 등을 정하여 고시할 의무가 있다(제5항).²⁷³⁾ 또한 국가기관 등의 웹사이트 접근성 보장을 위하여 웹사이트 접근성 실태조사, 웹사이트 접근성 표준화 및 기술개발 지원, 웹사이트 접근성 보장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그 밖에 웹사이트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동법 시행령 제31조).

한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장애인·고령자 등의 접근과 이용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제2항), 정보통신 관련 제조업자는 정보통신기기 및 소프트웨어를 설계, 제작, 가공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장애인·고령자 등이 별도의 보조기구 없이 정보통신제품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제품이 보조기구와 호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3항).

나아가 「국가정보화 기본법」은 ‘웹접근성과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접근성 품질인증’ 제도의 근거 규정을 두고 있으며(제32조의2 내지 5),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그 내용을 구체화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인 「웹 접근성 품질인증기관 지정 및 품질인증 등에 관한 고시」는 웹 접근성 품질인증기관 지정과 관련한 필요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273)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2조 제5항에 근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로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가 있다.

(3) 실태 및 문제점

(가) 법령 정비의 필요성

장애인권리위원회는 2014년 최종견해에서 장애인들의 스마트폰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다. 2018년 채택된 쟁점목록에서는, 장애인들이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소비자 전자제품 등을 통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정부가 관련 법령을 어떻게 개정하였는지 묻고 있다. 오늘날 웹사이트뿐만 아니라 모바일 앱 등 다양한 형태로 전자정보가 제공되고 있으므로, 웹사이트 접근성 확보를 중심으로 규정되었던 기존 법령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최근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2018. 2. 21.자로 개정되어 ① 국가기관 등이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하는 대상이 기존의 ‘웹사이트’에서 ‘웹사이트와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소프트웨어’로 확장되었고(시행일 2018. 8. 22.), ② 품질인증제도 또한 기존의 ‘웹접근성 품질인증 제도’에서 ‘웹접근성과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소프트웨어접근성 품질인증 제도’로 변경되었다(시행일 2019. 2. 22.). 이러한 법 개정은 장애인권리위원회의 권고에 부합하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여전히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은 법 개정과 맞추어 정비되지 않고 있다. 하위법령들의 재정비가 필요하다. 나아가, ‘웹사이트와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소프트웨어’ 외에도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정보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보다 포괄적인 규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나)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한 정보 접근에만 초점을 둔 현행 법령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은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전자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하는 ‘필요한 수단’으로 ‘누구든지 신체적·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만을 포함시키고 있고, 소프트웨어 등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장애인에게 의무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필요한 수단’의 범위를 확장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²⁷⁴⁾

274) 같은 의견으로 2018. 10. 23. 제2차 FGI에서 시각장애인연합회 김훈 정책연구원의 의견.

(다) 강제성의 미비

「국가정보화 기본법」상 장애인이 웹사이트와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해야 하는 의무의 주체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한정된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 정보통신 관련 제조업자는 서비스 제공과 정보통신제품의 설계, 제작, 가공에 있어 장애인이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다. 「국가정보화 기본법」의 개정만으로는 모바일 앱 등을 통한 정보 접근성이 확보되기 부족한 이유다. 「장애인차별금지법」상 편의제공의무를 부담하는 행위자의 범위는 매우 넓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의 개정이 필요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웹접근성 품질인증 제도를 지속 시행하여 웹접근성 제고를 유도하겠다고 답하였다. 그러나 현행 웹접근성 품질인증 제도(2019. 2. 22. 부터는 웹접근성과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소프트웨어 접근성 품질인증 제도)는 강제성이 없다. 「국가정보화 기본법」은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품질인증을 받은 사실을 홍보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을 뿐이다.

일반논평 제2호(2014) 제28항은, 당사국이 입법과 시행 사이의 괴리를 확인, 감시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접근성에 관한 법률을 포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하였다. 특히, 접근성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이들에게는 벌금 등 제재를 가함으로써 접근성 기준을 강제적으로 적용할 것을 권고하였다.²⁷⁵⁾

275) “28. States parties are obliged to adopt, promulgate and monitor national accessibility standards. If no relevant legislation is in place, adopting a suitable legal framework is the first step. States parties should undertake a comprehensive review of the laws on accessibility in order to identify, monitor and address gaps in legislation and implementation. Disability laws often fail to include ICT in their definition of accessibility, and disability rights laws concerned with non-discriminatory access in areas such as procurement, employment and education often fail to include access to ICT and the many goods and services central to modern society that are offered through ICT. It is important that the review and adoption of these laws and regulations are carried out in close consultation with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their representative organizations (art. 4, para. 3), as well as all other relevant stakeholders, including members of the academic community and expert associations of architects, urban planners, engineers and designers. Legislation should incorporate and be based on the principle of universal design, as required by the Convention (art. 4, para. 1 (f)). It should provide for the mandatory application of accessibility standards and for sanctions, including fines,

현재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근거하여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가 마련되어 있고, 동 고시에는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의 기능에 대한 설계 지침(제2장)’, ‘웹사이트의 접근성 준수에 관한 설계 지침(제3장)’,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준수에 관한 설계 지침(제4장)’이 포함되어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국립전파연구원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과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을 국가표준으로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정보화진흥원이 발표한 「2017 정보접근성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실제 이 접근성 기준(지침)의 준수율은 높지 않다. 실태조사는 대중성이 높은 웹사이트 1,079개와 모바일 앱 152개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문가 평가에서 웹 사이트의 접근성은 평균 61.0점, 모바일 앱의 접근성은 평균 78.3점이었고, 사용자 평가에서 장애 유형별 과업성공률은 웹 사이트가 평균 58.9%, 모바일 앱이 평균 71.7%에 불과했다. 특히 전맹 장애인의 경우 과업성공률이 웹사이트 35%, 모바일 앱 34%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²⁷⁶⁾

이는 「국가정보화 기본법」상 장애인이 웹사이트와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해야 하는 의무의 주체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한정되고, 그마저도 의무 위반 시 별다른 제재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 데 기인한다. 접근성 보장 의무의 주체를 어느 범위까지로 할 것인지, 접근성 기준의 준수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모색할 필요가 있다.

(라) 관리·감독의 필요성

뿐만 아니라, 의무적으로 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는 공공기관 사이트조차 실제로는 미인증 상태로 운영되는 경우가 다수인 상황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맹성규 의원실에 따르면, 복지부 및 산하기관 57곳의 웹사이트를 조사한 결과 웹접근성 인증이 유효한 곳은 절반인 31곳에 그쳤고, 15곳은 미인증, 11곳은 인증 만료 상태였다.²⁷⁷⁾

for those who fail to apply them.”, General comment No.2(2014).

276) 한국정보화진흥원, “[보도자료]한국정보화진흥원, ‘2017 정보접근성 실태조사’ 결과 발표” (2018).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만 두고 적절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장애인의 실질적 정보 접근권 보장은 요원하다. 특히 모바일 접근성은 관리·감독 부처가 명확하지 않다.²⁷⁷⁾ 장애인이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와 응용 소프트웨어 등이 기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적절한 관리·감독의 필요성이 크다.

(4) 제언

(가)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하는 정보제공매체의 확대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전자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하는 ‘필요한 수단’의 범위를 확장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

최근 개정된 「국가정보화 기본법」은 국가기관 등이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웹사이트’에서 ‘웹사이트와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소프트웨어’로 확장하였다. 그러나 아직 하위법령은 이에 맞추어 개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이를 재정비하여야 한다. 나아가, 접근성 보장 대상을 보다 넓게 규정하는 방식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나) 접근성 기준의 강제성 확보 및 관리·감독 강화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품질인증 제도가 시행되고 있고, 국가의 접근성 기준(지침)도 마련되어 있으나, 현행 법령상 이를 강제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 일반논평 제2호(2014)가 권고한 바에 부합하도록 법령을 개정하여 접근성 기준 의무에 강제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관련 규정에 따라 웹사이트와 응용 소프트웨어 등이 적절히 운영되고 있는지 관리·감독하고 위반 시 제재를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277) 한국일보, “시각장애인 안마사는 결제도 혼자 못해요”, (2018. 10. 29. 04:40), <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810262012376804?did=na>.

278) 2018. 10. 23. 제2차 FGI에서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김훈 정책연구원의 의견.

7. 제11조 위험상황과 인도적 차원의 긴급 사태

가. CRPD 제11조

제11조 위험상황과 인도적 차원의 긴급사태

당사국은 국제인도법과 국제인권법을 포함한 국제법적 의무에 따라 무력충돌, 인도적 차원의 긴급사태 및 자연재해의 발생을 포함하는 위험상황의 발생 시 장애인을 보호하고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나. 최종견해와 쟁점목록

(1) 최종견해

20. 위원회는 당사국이 자연재해를 포함한 위급상황에서 장애의 특성을 고려하여 장애인들의 보호 및 안전을 보장하고, 재난위험감소정책 및 그 이행의 모든 단계와 단위에서 보편적인 접근성 및 장애포괄성이 더욱 보장될 수 있도록 포괄적인 계획을 채택 및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2) 쟁점목록

1. 재난위험 감감을 위한 센다이 프레임워크(Sendai Framework for Disaster Risk Reduction) 및 아태지역 장애인 권리 실현을 위한 인천전략 목표 7에 따라 국가 및 지역 수준에서의 재난위험 감소계획 및 전략이 모든 위험 상황에서의 장애인의 접근 및 통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를 서술하라

(3) 실태조사의 대상 쟁점

제11조에서는 화재나 재난 발생 등 위급상황에서 장애인 보호 및 안전 보장 정책과 정부의 재난위험감소 정책에 주된 쟁점이다.

다. 위급상황시 장애인 보호 및 안전 보장, 재난위험감소 정책

(1) 정부의 이행 현황

행정안전부는 최종견해에 대해 수용의사를 밝히면서, 화재나 재난 발생 시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더 큰 피해를 입고 있어, 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행정안전부는 2017. 9.에 발표한 “장애인 안전 종합대책”의 세부 이행계획을 수립(2017. 11.)하여, 이에 대한 이행실적을 점검(2018. 2.)을 제시하였다. 행정안전부는 예상되는 문제점 및 극복방안으로 “장애인 안전 종합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관계부처와의 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 정부의 이행에 대한 평가

(가) 관련 법령 및 정책

1) 장애인 안전 관련 법령 개정(2017. 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

가. 안전취약계층의 안전 증진 및 안전관리 강화 등

- 1) 재난 및 안전사고에 취약한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을 “안전취약계층”으로 정의함(안 제3조제9호의3 신설).
- 2)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재난에 관한 대책과 더불어 안전취약계층의 안전에 관한 대책이 포함되도록 함(안 제22조제8항).
- 3) 위기관리에 필요한 표준화된 매뉴얼을 연구·개발함에 있어 안전취약계층의 특성을 반영하도록 함(안 제34조의5제9항 후단 신설)
- 4)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안전취약계층의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안전문화 활동을 적극 추진하도록 함(안 제66조의4제6호의2 신설).

나.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기능연속성계획 수립 등(안 제25조의2제5항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상황에서도 해당 기관의 핵심기능이 지속될 수 있도록 재난상황에 대비한 기능연속성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관리·운영하도록 함.

다. 국가기반시설 보호계획 수립·시행 등(안 제26조의2 신설)

-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의 기반시설 중 에너지·통신·의료 등 국가기반체계와 관련된 시설을 국가기반시설로 지정한 경우에는 소관 분야 국가기반체계 보호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국가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 2) 국가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단체의 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국가기반체계 보호계획에 따라 소관 국가기반시설에 대한 보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라. 긴급구조 관련 특수번호 전화서비스의 통합·연계 체계의 구축·운영(안 제54조의2 신설)

- 1) 국민안전처장관은 긴급구조 요청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긴급구조 관련 특수번호 전화서비스의 통합·연계를 위한 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함.
- 2) 국민안전처장관은 통합·연계되는 특수번호 전화서비스의 운영실태를 조사·분석하여 그 결과를 통합·연계 체계의 운영 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

2) 장애인 안전 종합대책 수립

“장애인 안전 종합대책”은 ① 재난 시 장애인의 높은 피해가능성, ② 장애인의 안전권 강화에 대한 공감대 확산, ③ 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관리 대책 필요하다는 배경 하에 장애인이 신체적, 정신적 제약 없이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에서 안전할 수 있도록 범부처 합동으로 5개년 장애인 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추진이 필요한 상황이다. 장애인의 안전사고 사망은 운수사고, 추락, 익사, 화재, 중독 순으로 많고, 비장애인에 비해 10만명 당 화재 사망자수가 4.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 분	운수사고	추락	익사	화재	중독	비고
비장애인	11.2	4.5	1.1	0.6	0.4	
장애인	31.7	17.8	3.2	2.8	1.1	

* 출처: 2014년 사망원인통계(통계청), 2016년 장애인 건강관리 사업(국립재활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취득시설 중 민간시설은 20.4% 수준에 불과하고, 접자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설비,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등 편의시설에 대한 적정 설치율 제고도 필요하다.

그러나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미약하고, 장애인 관련 재난 및 사고 통계 미비로 인해 체계적인 안전정책 수립이 어려웠다. 또한 장애 유형별 특수성을 반영한 위기관리 매뉴얼이 부족하고, 비장애인 중심의 비상대피시설 및 임시주거시설 등도 개선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재난 발생 시 초기 인지 및 대응이 곤란하여 재난정보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장애인 안전관리 인프라의 부족, 안전교육 및 훈련기회의 부족, 재난 약자 배려 문화의 미흡도 주요 문제점 중의 하나이다.

[표-29] 장애인 안전 종합 대책 개요

<p>1) 장애 특성을 반영한 재난 및 안전관리 강화 : 장애인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정책기반 구축, 체계적인 장애인 재난 및 안전 관리 강화, 장애인 위급상황 신고 및 대응체계 강화, 장애인 맞춤형 재난구호 서비스 강화, 장애인 재난경보 및 대피 전달 기술 등 연구개발</p> <p>2) 안전한 장애인 활동공간 조성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확대, 장애인 안전관리 인프라 확충, 안전한 장애인 주거환경 조성, 장애인 복지·교육 시설 안전관리 강화</p> <p>3) 안전 교육·훈련 강화 및 안전문화 확산 : 장애인 및 보호자 대상 안전교육 강화, 재난 대응 훈련 참가를 통한 장애인 재난대응 역량 함양, 장애인등 재난 약자 배려 인식 개선 교육 추진, 복지시설 종사자 및 경찰·소방공무원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 장애인 근로자 안전대피 매뉴얼 보급·홍보 및 교육</p>

(나) 정부의 이행에 대한 평가

1) 장애인 종합 계획에 대한 평가

장애인 안전 종합대책 마련시 장애인 단체의 참여(TF 구성)를 보장하고, 국회 주관 토론회(2017. 7., 2017. 9.)를 개최하여 장애인 맞춤형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범정부 안전대책이 수립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²⁷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2017. 1.)으로 장애인 등을 “안전취약계층”으로 정의하고,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안전취약계층의 안전에 관한 대책이 포함되도록 하는 등 재난 상황에서 장애인을 위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시 장애인, 어린이, 노인 등 대상별로 구체적인 특성이 고려되어야 하고, 장애인의 경우에도 유형별 특수성을 반드시 고려한 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²⁸⁰⁾

279) 이에 대해 2018. 10. 22. 제1차 FGI에서 장애여성 공감 강진경 활동가는 “정부의 재난 가이드라인에 장애인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형식적인 차원에서만 접근하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장애부모연대 이리나 실장은 “중앙정부가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지만, 실제 수행을 해야 하는 기관들의 이해도가 떨어지고 관련 교육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 같다”는 견해를 밝혔다.

280) 이에 대해 2018. 10. 23. 제2차 FGI에서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김훈 정책연구원은 “정부의 매뉴얼이나 가이드라인을 실제로 제작하는 업체의 장애감수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이용석 정책홍보실장은 “정부가 장애인 종합안전 대책을 발표했지만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확인할 수 없었다. 민방위에서 장애인을 참여하게 해 달라는 요청을 했지만 장애인을 위한 피난소가 없어 참여가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2) 센다이 프레임워크, 인천 전략 목표에 따른 조치 이행 여부

센다이 프레임워크는 2015년 유엔 재난경감 국제 전략기구(UNISDR, UN International Strategy for Disaster Reduction)가 협의한 것으로 2015년 이후 15년간의 국제적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다. 센다이 프레임워크는 모든 분야의 모든 수준의 재난 위험에 대한 가이드를 만드는 것이며, 재난에 쉽게 피해보고 위험에 노출을 막고 감소시키는 경제적, 구조적, 법적, 사회적, 건전하고, 문화적이며, 교육적, 환경적, 기술적, 정치적, 기관적 수단을 포함하고 통합적인 구현을 통한 재난 위험을 감소시키고 막고, 대응과 복구를 위한 준비를 증가시키고, 그러므로 강한 회복력을 가지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인천 전략은 제3차 아·태 장애인 10년(2013년~2022년), 즉 새로운 10년 동안 장애인의 진정한 권리 실현을 위한 UN ESCAP 62개국 회원국의 공동행동전략이다. 인천전략은 장애인의 평등을 위한 장애 포괄적 관점에서 문제해결에 접근하고 시도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인천전략은 개인의 천부적인 존엄성, 선택의 자유를 포함한 자율 및 자립에 대한 존중, 비차별,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참여와 통합, 인간의 다양성과 인류의 일부로서 장애인의 차이에 대한 존중과 정체성 유지를 위한 권리의 존중이라는 기본이념을 전제로 한다.

2016년 인천전략 중간평가연대가 인천전략의 평가 지표에 따라 이행 정도를 평가한 결과²⁸¹⁾, 핵심지표 9개와 보충지표 7개에서 한국은 핵심지표 3개(활동보조서비스 프로그램, 차별금지법 입법, 장애 포괄적 관점의 국제개발)가 이행되었으며, 1개 지표가 일부 이행(CRPD 부분 비준), 5개 지표가 미이행(국가재난관리 기본계획의 장애 포괄적 대책, 재난관련 인력 장애 교육, ICF기준 장애 출현율, 인천전략 이행 측정 데이터 구축, 장애여성 별도 데이터)이었다.

보충 지표의 경우 5개 지표가 이행(장애인 투표접근성 입법, 접근성 검사 전문가 참여, BF 유무, 웹 콘텐츠 접근성 규칙, 재난피해 심리사회적 서비스 인력), 2개 지표가 미이행(재난 대비 장애인보조기구 및 기술 보유, 선택의정서 비준)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장애 포괄적인 재난 위험 감소 및 관리의 보장이 가장 심각한 수준으로 이행 정도가 부족하다고 평가하였다. 그 이유로 재난 상황에서 장애인을 위한 안전 매뉴얼이 없고, 혼자 거동이 힘든 중증장애인들이 위험에 무

281) 우상호, “한국정부의 인천전략 실현, 이대로 좋은가” 인천전략 중간평가 준비 정책간담회, 한국장애인재활협회 (2016).

방비로 노출되어 있다는 점 등이 있었다.

3) 감염취약계층의 특수성을 고려한 위기 관리 대책 준수 여부

장애인 등 감염취약계층의 특수성을 고려해 감염관리 인프라 개선, 인센티브 확대 및 인식개선 캠페인 등 예방활동 강화 등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등 사건 발생시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정부의 대응지침으로 인해 장애인 당사자들이 차별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특히 중증장애인은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지 못해 병원에 입원해야 했다.

위 사건에서 자가격리대상 뇌병변 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 중단으로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모두 받을 수 없었고, 신장투석치료 등 건강관리에도 어려움을 겪었다.²⁸²⁾ 보건복지부는 메르스 사태 당시 질병관리본부의 대응은 적절했고, ‘장애인 안전 종합대책’에 장애인 등 감염취약계층의 특수성을 고려해 감염관리 인프라 개선, 감염취약계층 대책에 있어 인센티브 확대 및 인식개선 캠페인, 감염병 표준매뉴얼에 감염취약계층 관련 사항 구체적 명시 등을 반영하라는 법원의 조정안도 거부하였다.²⁸³⁾

이러한 정부의 태도는 ‘장애인 안전 종합대책’에 감염취약계층의 특수성을 고려한 정책을 이행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최종견해는 위급상황에서 장애의 특성을 고려하여 장애인들의 보호 및 안전을 보장하고, 재난위험감소정책 및 그 이행의 모든 단계와 단위에서 보편적인 접근성 및 장애포괄성이 더욱 보장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²⁸⁴⁾

국가인권위원회는 18진정1038200 중증장애인에 대한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지원 거부 사건에서 “보건복지부장관, 서울특별시 및 OO구청장에게 흑서기에 충분한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여 생명과 건강의 심각한 위협에 처한

282) 비마이너, “장애인 자가 격리 말고 대책 없는 메르스 지침은 ‘장애인 차별’” (2016. 10. 18.). <http://www.beminor.com/detail.php?number=10224>.

283) 비마이너, “‘장애인 감염병 안전대책’ 법원 조정안 거부한 복지부” (2018. 4. 13.).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2080&thread=04r03>.

284) 이와 관련해서 2018. 10. 26. 제5차 FGI에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김성연 사무국장은 “메르스 등 예상치 못한 감염 상황에서는 격리조치가 필요한데, 누군가의 지원 없이는 생활할 수 없는 장애인에 대한 고려가 없다. 감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이후의 격리과정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견해를 밝혔다.

피해자에게 24시간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긴급히 제공하고, 이와 유사한 형편에 처한 다른 중증장애인에게도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 하였다. 이 사건에서 중증장애인이 긴급구제를 요청하게 된 배경은 활동지원사가 없는 야간의 폭염 속에서 고열이 발생해 24시간 간병을 요한다는 진단을 받았으나 활동지원 서비스를 거부당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피해자에 대한 활동지원서비스 시간은 보건복지부 및 서울특별시의 적용기준에 따라 최대한 제공한 것이어서 추가적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애 결정에 의해 피해자를 구제하는 절차가 가능하더라도 대상자 선정 및 보건복지부의 협조 등이 필요하여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을 고려해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를 긴급히 제공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 사건은 재난상황에서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에 대한 적극적이고 유연한 정책결정이 요구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3) 제언

(가) 재난안전 행동 매뉴얼 개발 및 개선

우리나라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거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생활안전 강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재난발생시 대응에 가장 효과적으로 작용하는 표준화된 매뉴얼이 제공되고 있지 않다. 장애인에 대한 매뉴얼은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에서 제공하는 ‘시각장애인 재난대응매뉴얼’, ‘장애인 재난위기관리 매뉴얼’, ‘장애인 재난관리 픽토그램 활용가이드’ 등이 있으나, 시각장애인과 지체장애인에 대한 대응 및 위기관리 매뉴얼만 제공되고 있다. 따라서 재난 사고시 청각장애인, 발달장애인 등 여러 장애유형을 고려한 매뉴얼의 개발 및 표준화된 매뉴얼 제공이 필요하다.

(나) 장애인 특성화 안전체험관 설립

장애인 등 재난취약자들은 재난 대피 교육을 받는 것부터 쉽지 않다. 보호자와 대피 연습 및 체험을 직접 해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며, 장애유형에 따라 장애인 중심의 안전 체험 교육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재난 안전행

동 매뉴얼과 연계한 장애 및 재난 유형별 체험이 가능한 안전 체험관을 설립이 필요하다.

(다) 장애인 전담 조직의 설립

미국은 2010년 「미국장애인법」(ADA)에 의한 재난관리체계로서 장애통합조정실을 설립하였다. 장애통합조정실은 장애인을 위한 재난 준비, 가상훈련 등을 통한 재난 대비 효과성 테스트, 긴급재난 대피소 운영, 임시거주 및 안식처 제공 등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를 바탕으로 모든 유형의 자연재난과 인적재난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며, 장애인을 고려한 재난관리를 위해 장애인 재난안전 전담 조직을 설립하여 재난안전업무에 대한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라) 재난취약계층 재난 안전 특성화 전문인력 양성

재난 발생시 현장과 대피시설에서의 재난취약계층의 재난 안전, 생활 및 보건 안전을 담당할 전문인력(재난 안전 전문가, 안전교육 강사, 재난 간호사 등)이 부재하다. 특히 고등교육기관에서 재난 취약계층을 고려한 재난 안전 전문인력 양성 과정이 없다. 따라서 재난취약계층의 재난 안전을 담당할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과정이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8. 제12조 법 앞의 동등한 인정 관련

가. CRPD 제12조

제12조 법 앞의 동등한 인정

1. 당사국은 장애인이 모든 영역에서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가 있음을 재확인한다.
2. 당사국은 장애인이 모든 생활 영역에서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법적 능력을 향유함을 인정한다.
3. 당사국은 장애인이 법적 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4. 당사국은 법적 능력의 행사와 관련된 조치를 취할 때 이것이 남용되지 아니하도록 국제인권법에 따라 적절하고 효과적인 안전장치를 제공하도록 보장한다. 그러한 안전장치는 법적 능력 행사와 관련된 조치가 개인의 권리, 의지 및 선호도를 존중하고, 이익의 충돌 및 부당한 영향이 없고, 개인이 처한 환경에 비례하고 적합하며,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적용되고, 권한 있고 독립적이며 공정한 당국 또는 사법기관의 정기적인 검토를 받도록 보장한다. 안전장치는 그러한 조치들이 개인의 권리와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비례한다.

5. 이 조항 규정에 따라, 당사국은 장애인이 재산을 소유 또는 상속할 수 있는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고, 자신의 재정 상황을 관리하고, 은행대출, 담보 및 다른 형태의 재무신용에 대하여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모든 적절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며, 장애인의 재산이 임의적으로 박탈당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1) 일반논평 제1호²⁸⁵⁾

장애인권리위원회는 대부분의 당사국이 제12조의 조력(assisted) 의사결정제도를 오해하여, 대체(substituted) 의사결정제도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설명하기 위해 일반논평 제1호를 작성하였다.

제1항은 장애인이 법적으로 인격을 가진다는 점을 보장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을 천명한다.

제2항에서 법적 능력²⁸⁶⁾은 법인격을 인정받는 것과 권리 행사가 법률상 효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이루어지고, 모든 인간에게 보장되는 것이다. 이에 반해 정신 능력은 사람마다 다르고, 무엇보다 환경적, 사회적인 맥락에서 구성되는 것이다. 이처럼 법적 능력과 정신 능력은 동일한 개념도 아니고, 인과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국가에서 인지 또는 심리장애를 이유로 법적인 의사능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제3항은 당사국은 장애인의 법적능력을 부인하거나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장애인이 법적 효력이 있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4항은 안전장치가 필요성은 인정하나, 궁극적으로 장애인이 진정한 의사와 선호에 따라 자신의 권리를 실현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리스크를 감수하거나 실수를 할 권리 등을 포함한 장애인의 의사결정 권리를 존중하는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고 밝히고 있다.

285) “General Comments No.1”, UN CRPD, CRPD/C/GC/1, Supp, No. 1. (2014).

286) 제철웅, “CRPD의 관점에서 본 한국 성년후견제도의 현재와 미래”, 가족법연구 제28권 제2호(2014). 211.

“일반평석 초안에 따르면 ‘legal capacity’는 권리능력, 행위능력을 포함할 뿐 아니라 그 범위를 넘어서서 법적 효력을 가지는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고 한다. 요컨대 선거권, 소송능력, 직업수행의 법적 자격 등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러므로 제2항은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의 권리능력만인 아니라 행위능력, 법적 자격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5항은 금융, 경제 등에 관한 권리를 인정하고 보장하고 있다.
 장애인이 법 앞에 동등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각 당사국은 ① 장애인의 의사결정 및 법적능력 행사를 위한 훈련을 제공하고, ② 장애를 이유로 하는 법적능력 제한 제도를 폐지하고, ③ 후견과 신탁에 대한 법률을 정비하고, ④ 대체의사결정제도를 조력 의사결정체도로 완전히 전환해야 한다.

나. 최종견해와 쟁점목록

(1) 최종견해

제12조 법 앞의 동등한 인정

21. 위원회는 2013년 7월부터 시행된 새로운 성년후견인제도가 후견인으로 하여금 “질병, 장애 또는 고령으로 인한 심리적 제한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사무를 관리할 능력이 없다고 간주되는 자”의 재산 및 개인적 문제에 대하여 의사결정을 하도록 허용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위원회는 일반논평 제1호에 상세히 기술된 대로, 동 제도가 협약 제12조에 반하여 지원 의사결정이 아닌 대체 의사결정을 지속하는 것임에 주목한다.
22. 위원회는 당사국이 대체 의사결정에서, 의료적 치료에 대한 고지된 동의의 제시와 철회에 대한 권리, 사법 접근권, 투표권, 결혼에 대한 권리, 일할 권리, 거주지를 선택할 권리 등에 관한 것을 포함하여, 개인의 자율성과 의지, 선호를 존중하며 협약 제12조와 일반논평 제1호와 완전히 부합하는 조력 의사결정으로 전환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위원회는 당사국이 장애인과 그들을 대표하는 단체와 협의 및 협력함을 통하여 국가·지방·지역 차원에서 공무원과 판사, 사회복지사를 포함한 모든 주체들을 대상으로 장애인의 법적 권한과 조력 의사결정 체계에 관해 교육을 제공할 것을 권고한다.

(2) 쟁점목록

제12조 법 앞의 동등한 인정

- 12-1. ‘대리 의사결정(substituted decision-making)’을 ‘조력 의사결정(supported decision-making)’으로 대체하고, 이에 따라 성년후견제 폐지에 대한 당사국의 진척 사항을 설명하십시오.
- 12-2. 장애인 단체를 통해 장애인과 협의 및 협력함으로써, 공무원과 법관, 사회복지사 등을 포함하는 모든 행위자를 대상으로 전국·지역·지방 차원에서 장애인의 법적 능력 인정 교육과 ‘조력 의사결정’ 체계에 관한 교육 실시와 관련하여 당사국의 진척 사항을 설명하십시오.

(3) 실태조사의 대상 쟁점

CRPD 제12조 법 앞의 동등한 인정에 관하여는 ① 조력 의사결정체도로 전환
 ② 조력 의사결정 체계에 관한 교육에 대하여 검토한다.

다. 조력의사결정제도로 전환

(1) 정부의 이행 현황

법무부는 수용 또는 불수용의 의사를 밝히지 않았지만, 이미 새로운 성년후견 제도가 조력의사결정제도로 전환한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성년후견제 자체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개시되지 않으므로, 사실상 조력의사결정제도라고 한다. 다만, 이 제도를 더 개선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관련 연구용역 발주 등을 통해 거래 안전을 해하지 않으면서도 장애인의 잔존능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의 도입 필요성 등 보안 방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2) 성년후견제도 내용

종래의 금치산자·한정치산자 제도는 본인의 행위능력을 원칙적으로 박탈하고 그 후견인에게 포괄적 대리권을 부여한다. 결과적으로 금치산자·한정치산자 제도는 행위능력을 기준으로 본인에게 ‘무능력자’라는 낙인을 찍고, 본인을 후견인의 선의와 합리적 판단에 의존하는 수동적 보호 대상에 머무르게 한다. 나아가 금치산자·한정치산자를 직업활동이나 사회활동의 결격사유로 정하는 다른 법률이 많아, 본인이 사회활동에서 배제당하고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본인을 보호한다는 미명으로조차 활용이 많지 않았고, 재산관리를 둘러싼 가족간의 분쟁의 해결 수단으로 간간히 이용되었다.²⁸⁷⁾

성년후견제도는 위와 같이 획일적으로 행위능력을 제한하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기존의 금치산·한정치산제도 대신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사회복지 시스템인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제도(「민법」 제9조, 제12조 및 제14조의2)를 도입하고, 기존 금치산·한정치산 선고의 청구권자에 ‘후견감독인’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추가하여 후견을 내실화하고 성년후견 등을 필요로 하는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 하였다.²⁸⁸⁾

또 성년후견을 받는 사람의 법률행위 중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287) 박인환, “UNCRPD과 성년후견 패러다임의 전환-의사결정대행에서 의사결정지원으로-”, 가족법연구 제28권 제3호 (2014).

288) 법제사법위원회, “민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 1810526, (2010. 12. 31.), 4-5.

행위이거나 후견개시의 심판에서 달리 정한 것은 취소할 수 없도록 하고, 한정후견을 받는 사람의 법률행위는 가정법원에서 한정후견인의 동의 사항으로 결정한 것이 아닌 이상 확정적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로 인정되며, 특정후견을 받는 사람의 법률행위는 어떠한 법적 제약이 따르지 않도록 하였다(「민법」 제10조, 제13조 및 제14조의2).²⁸⁹⁾

(3) 성년후견제도 현황

[표-30] 후견유형별 연간 접수 건수²⁹⁰⁾

(단위: 건)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성년후견	1883 ²⁹¹⁾	2006	3010	3716
한정후견		236	283	282
임의후견		8	8	17
특정후견		355	179	158
합계		2605	3480	4173

종래 제도와의 연속성이 강한 성년후견과 달리, 한정후견이나 특정후견 그리고 후견계약의 이용은 당초 새 제도에 걸었던 기대에 못 미치는 저조한 수치에 머물고 있다. 이는 인지장애를 겪는 고령자의 재산관리를 중심으로 하는 종래의 후견수요(이는 대체로 성년후견 유형으로 흡수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외에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치매 등 인지장애 외에 발달(자폐·지적)장애, 정신장애, 뇌병변 장애 등]의 신상보호와 이를 계기로 하는 장애인의 인권옹호를 위한 후견수요를 새 제도가 충분히 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²⁹²⁾ 그리고, 애초에 성년후견 신청이 다수이긴 하지만, 몇몇 사안에서는 특정후견을 신청했는데도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받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²⁹³⁾

289) 법제사법위원장, 앞의 글, 4-5.

290) 대법원, “(2013-2016)사법연감”.

291) 2013년에는 유형 구분 없이 전제 후견 사건 수만 집계.

292) 박인환, 앞의 글, 178.

293) 2018. 10. 25. 제4차 FGI에서 공감 염형국 변호사의 의견.

[표-31] 인구 100,000명당 후견 하에 있는 성인의 수의 각국 비교²⁹⁴⁾

나라	이용자 수	나라	이용자 수	나라	이용자 수
아일랜드	48	불가리아	100	라트비아	106
우크라이나	107	슬로바키아	34	몰도바	152
폴란드	158	리투아니아	167	러시아	211
체코	317	크로아티아	410	헝가리 ²⁹⁵⁾	596
콜롬비아 구	311	캘리포니아	108	하와이	60
미네소타	521	뉴욕 ²⁹⁶⁾	90	독일 ²⁹⁷⁾	1614
빅토리아주 ²⁹⁸⁾	424	일본	128	한국 ²⁹⁹⁾	10

대만의 경우 2009년 11월 23일부터 새로운 성년후견 제도(監護制度)가 시행되었는데, 이미 그 전인 2008년에 감호신청건수가 3,862건, 2009년 3,992건, 2010년

294) 제철웅, “CRPD의 관점에서 본 한국 성년후견제도의 현재와 미래”, 208.

295) 이상 유럽 국가들의 수치는 Mental Disability Advocacy Centre, “Legal Capacity in Europe” (2013), 21의 자료에 수록된 2008년 기준 숫자이다. 제철웅, “CRPD의 관점에서 본 한국 성년후견제도의 현재와 미래”, 208에서 재인용.

296) 이상 미국의 자료는 Schauflier/Uekert, “The Need for Improved Adult Guardianship Data”, Caseload Highlights 15(2) (2008)에 기초한 것이다. 이 자료에 따르면 1996년 Schmidt가 보고한 미국 전역에 150만여 명이 성년후견 하에 있다 는 자료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고 한다. 제철웅, “CRPD의 관점에서 본 한국 성년후견제도의 현재와 미래”, 208에서 재인용.

297) 독일은 1990년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된 이래 1993년부터 매년 10만여 건의 후견인 선임이 이루어져 왔는데, 2002년부터는 매년 20만 건 이상으로 신규 후견인이 선임되고 있다. Bundesamt für Justiz, Betreuungsverfahren, 2013 자료 참조. 2011년 현재 1,319,380명에 대해 성년후견인이 선임되어 있다. <http://www.bundesanzeiger-verlag.de/betreuung/wiki/Betreuungszahlen> 참조. 최종방문 2014. 6. 24. 제철웅, “CRPD의 관점에서 본 한국 성년후견제도의 현재와 미래”, 208에서 재인용.

298) 호주의 수치는 후술할 Victorian Law Reform Commission, “Guardianship Final Report” (2012), 24를 기초로 한 추정치이다. 제철웅, “CRPD의 관점에서 본 한국 성년후견제도의 현재와 미래”, 208에서 재인용.

299) 우리나라는 후견제도 이용자 전체 통계가 없기 때문에, 행위무능력자 제도 하에서 한정치산, 금치산선고가 이루어졌던 사건, 새로운 성년후견제도 하에서 결정이 내려진 사건 등을 합하여 추정치를 산출하였다. 2001년 이후의 모든 건수를 합했는데, 후견인 선임 후 사망 기타 사유로 후견이 종료된 것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추정치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제철웅, “CRPD의 관점에서 본 한국 성년후견제도의 현재와 미래”, 208에서 재인용.

4,530건, 2011년 4,485건, 2012년 5,925 건에 달했다.³⁰⁰⁾ 일본의 경우 2012년 1년간 후견신청건수 28,472건, 보좌신청건수 4,268건, 보조신청 건수 1,264건이었고, 2012년 현재 후견 이용은 136,484건, 보좌 20,429건, 보조 7,508건, 임의후견 1,868건이다.³⁰¹⁾

우리나라의 후견 이용 건수가 낮은 이유는, ① 유교적 가족주의가 강한 우리 현실에서 가족들이 장애인을 대신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명의로 계약하는 것에 대한 사회문화적 거부감이 없다는 것을 꼽을 수 있다. ② 이런 문화는 장애인을 사실상 돌보는 제3자의 행태에도 영향을 미쳐 이들이 장애인을 대신하거나 장애인 명의로 계약 하는 것에 거부감이 없을 수 있다. ③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에 대한 「민법」 제755조는 후견인 뿐 아니라, 책임무능력자를 사실상 돌보는 가족, 친지 등에게도 적용되는 등 법률로도 위의 관념이 뒷받침 된다.³⁰²⁾ ④ 성년후견이 개시되면, 행위능력이 제한되고, 이에 근거한 광범위한 결격조항이 적용되는 등의 부정적 효과가 있다는 점도 큰 이유다.³⁰³⁾

(4) 성년후견제도 검토

(가) 성년후견제 개요

2013년 7월 성년후견제 시행 후 피성년후견인의 재산 및 신상문제 등에 관하여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의 의사를 대신하여 결정하고,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 외에는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를 임의로 취소할 수 있다. 이에 성년후견제도가 피성년후견인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주장이 정신적 장애를 가진 당사자 및 단체 등으로부터 계속 제기되고 있다.³⁰⁴⁾

300) 黃詩淳, “成年後見制度の概要と特色”, 新アジア家族法三國會議 臺灣大會 資料集 (2013), 제철웅, “CRPD의 관점에서 본 한국 성년후견제도의 현재와 미래”, 207에서 재인용.

301) 赤昭康弘, “成年後見制度の概要と特色”, 新アジア家族法三國會議 臺灣大會 資料集 (2013), 한편 1999년 한 해의 일본의 금치산선고 2,963건, 준금치산 선고건수가 671건이라고 한다. 제철웅, “CRPD의 관점에서 본 한국 성년후견제도의 현재와 미래”, 207에서 재인용.

302) 제철웅, “CRPD의 관점에서 본 한국 성년후견제도의 현재와 미래”, 207-209.

303) 박인환, 앞의 글, 189.

304) 국가인권위원회,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쟁점목록 선정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서” (2018), 11.

성년후견 결정을 받은 장애인은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만을 할 수 있고 나머지 법적행위는 후견인이 대리하여 행하도록 하고 있다. 심지어 피후견인으로 결정되고 나면 약혼, 결혼, 이혼, 입양 등도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거나 성년후견인이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³⁰⁵⁾

(나) 성년후견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일용품거래나 가정법원의 결정에 의한 범위내의 거래에서는 종래 금치산자·한정치산자 제도가 행위능력을 획일적으로 박탈·제한하던 것에 비해 다소 완화되었으나, 여전히 원칙적·일반적으로는 피성년후견인의 행위능력을 박탈하고 그 대신 성년후견인의 포괄적 대리권 행사(타인에 의한 의사결정의 대행)에 의해서 피성년후견인의 법률관계를 형성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장애인이 타인과 동등한 지위로 법적능력을 향유하여야 한다는 CRPD 제12조의 취지 및 이에 대한 일반논평 제1호의 해석과는 합치하지 않는다.³⁰⁶⁾

이에 대해 장애인 단체에서는 한 개인이 다른 한 개인의 모든 선택을 포괄적으로 대리할 수 있다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한다.³⁰⁷⁾ 그리고 당사자가 ‘좋은’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 대신 결정하는 제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비판도 있다.³⁰⁸⁾

(다) 한정후견

한정후견은 법원이 정한 범위에서 피한정후견인의 법적능력 행사를 한정후견인이 동의해야 효력이 발생하도록 유보시킴으로써 본인의 자기 결정을 사전적·예방적으로 제한한다. 따라서 피한정후견인의 법률행위는 한정후견인의 동의 여부에 따라 사후에 효력을 부정당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장애인의 자율성 및 자기결정권이 침해될 수 있다.³⁰⁹⁾

305) 유엔장애인권리협약 NGO 보고서 연대, “연대 NGO보고서(국문)”, 29.

306) 박인환, 앞의 글, 187.

307) 2018. 10. 23. 제2차 FGI에서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이용석 정책홍보실장의 의견.

308) 2018. 10. 26. 제5차 FGI에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김성연 사무국장의 의견.

309) 박인환, 앞의 글, 190.

(라) 결격조항

‘결격조항’이란, 후견선고를 공무의 담임, 선거권, 피선거권, 인허가, 각종 기관·법인·단체의 임직원 자격 등의 결격사유로 열거하고 있는 각종 법령조항을 의미한다.³¹⁰⁾ 후견이 개시되더라도 후견 개시의 사유가 저마다 다양하고, 유사한 사유와 장애 정도에도 후견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개개의 사유를 검토하지 않고, 후견개시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공권과 사권을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³¹¹⁾

이러한 현행 300여개의 결격조항에 대하여, 개개의 규정 취지와 성격에 따라 절대적인 결격규정, 상대적인 결격규정, 삭제할 결격규정으로 나누어 검토해야 한다는 견해³¹²⁾와, 결격조항은 기본적으로 삭제하되, 개별적으로 법원이 판단하여 필요 최소한의 제한을 해야 한다는 견해,³¹³⁾ 후견제도는 제3자를 위한 제도이기도 하므로, 후견개시를 하지 않은 경우보다 후견개시를 한 경우가 제3자에게 더 안전함에도 불구하고, 후견개시를 한 경우를 결격 사유로 삼는 것은 적절한 수단이 아니어서 전면 삭제해야 한다는 견해³¹⁴⁾ 등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정부 이행 현황에는 이에 대한 언급이 없다.

(마) 기존제도 개선연구 실시 여부

기존 성년후견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법무부는 “관련 연구용역 발주 등을 통해 거래 안전을 해하지 않으면서도 장애인의 잔존능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의 도입 필요성 등 보안 방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검토”한다고 하였으나, 이에 대한 이행 현황은 보고된 바가 없다.

310) 박인환, 앞의 글, 206.

311) 제철웅, “가칭 ‘피성년후견인 등의 자격제한 및 차별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제정제안”, 성년후견 제1집, (2013), 145.

312) 현소혜, “성년후견제도 도입에 따른 관계법령의 개선방안, 특히 결격조항의 정비를 중심으로”, 가족법연구제25권 제3호 (2011), 19-38.

313) 제철웅, “가칭 ‘피성년후견인 등의 자격제한 및 차별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제정제안”, 148.

314) 제철웅, “피성년후견 및 피한정후견을 이유로 한 결격조항의 폐지”, 외법논집, 제42권 제2호 (2018. 5.), 274.

(5) 해외 사례

(가) 국가별 정황

독일, 덴마크, 멕시코, 스페인 등은 조력 의사결정에 대한 장애인권리위원회의 해석에 동의하지 않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장애인권리위원회는 최종견해를 빌어 이들 나라의 「민법」 및 후견인제도 등이 CRPD 12조와 배치됨을 우려하고 이에 대한 검토와 법률개정을 요청하였다. 반면, 장애인을 보호하려는 대체 의사결정이 장애인의 사법적 능력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조력 의사결정제도를 도입하거나 도입할 계획이 있는 국가도 있다. 법률 검토를 하고 있거나(호주), 법 개정을 마쳤거나(벨기에), 실행계획을 추진하고 있거나(뉴질랜드), 시범사업을 수행 중(오스트리아)인 국가들에 대해서, 장애인권리위원회는 실효성 있는 변화를 주문하며 개혁의 방향에 대해 지지를 보내고 있다.³¹⁵⁾

(나) 독일의 사례

독일 「민법」 제104조는 7세 미만인 자와 자유 의지의 행사를 방해하는 일시적 심신미약인 자의 계약능력이 없다고 한다. 또한 독일 「민법」 제827조는 무의식이거나 자유의지를 행사할 수 없는 일시적 심신미약인 자는 타인에게 손해를 가해도 그 손해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한다. 장애인권리위원회는 독일 「민법」 제827조와 제104조가 CRPD 제12조에 위반한다고 권고하였다. 그러나 독일은 국가보고서를 통해 7세 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장애아동이라고 해서 더 차별하는 것이 없고, 심신미약인 자에 대한 부분은 장애와 관련 있거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규정이 아니며, 일시적 심신미약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모두 해당될 수 있다고 답하였다. 또한 독일의 후견인 제도에 대하여 독일 국가보고서는 후견인(custodian)이 있어도 본인의 법적능력과 계약능력이 유지되고,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의사를 반영하여 최선의 선택을 하게 되어 있으므로, 본 제도는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독일의 후견제도는 이미 CRPD 제12조와 부합하지만, 이를 더 개선하기 위하여, 독일은 앞으로도 연구 및 평가를 수

315) 이해경외 4, 앞의 글, 8.

행할 예정이라고 하였다.³¹⁶⁾

한편, 독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보고서에 대하여, 다른 나라와 다르게 법적 능력이 유지되고, 의사결정과정에서 본인의 의사가 유지되는 점은 인정하였다. 그러나 실무상으로는 후견인이 의사 조력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지 못하는 등의 사결정조력의 요소가 활발하게 활용되지 못한다고 평가했다. 그리고 독일의 현행 후견제도는 ① 후견인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선임될 수 있는 점, ② 최선의 이익이라는 개념이 본인의 선호와 의사를 넘어설 수 있는 점, ③ 필요한 범위 내에서 후견인의 동의유보가 있는 점에서 여전히 일반논평 제1호와는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독일 국가인권위원회는 후견인 제도와 실무를 검토하여, 법률 개정, 실태 조사, 통계, 연구, 모델개발, 전문가 기준 마련, 전문가를 위한 훈련프로그램 강화 등을 통해 실무적으로 조력사결정을 강화하고, 더 개발하도록 요구하였다.³¹⁷⁾

(다) 호주 빅토리아주의 「후견법」 개정안

호주의 빅토리아주의 「후견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의사결정지원을 우선시하고, 대안으로 공동으로 의사결정을 하게 함으로써 장애인을 지원하며, 의사결정의 대행은 최후의 수단으로 삼되, 이때에도 피후견인의 최선의 이익이 아니라 그의 의사, 희망, 감정, 세계관 등을 존중하도록 한다는 것이다.³¹⁸⁾

우선, 의사결정지원자(supporter)는 피지원자를 대신하여 의사결정과 관련된 정보에 접근하여 정보를 취득할 수 있고, 이를 본인에게 설명하고, 본인이 결정한 내용을 상대방에게 전달해서 그 내용대로 집행될 수 있게 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나 대리권은 없다.³¹⁹⁾

의사결정능력에 장애가 있고 관련된 문제에 대해 단독으로 결정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본인의 희망, 기존 가족관계 유지의 필요성, 추천된 자와 피보호자

316) "Initial report of Germany submitted according to Article 35 of the CRPD", UNCRPD, CRPD/C/DEU/1, Supp No.1 (2013), 25-28.

317) "Parallel Report to the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Person with Disabilities", UN CRPD, CRPD/NHS/DEU/19761, Supp, No. 1. (2015), 19-20.

318) 제철웅, "CRPD의 관점에서 본 한국 성년후견제도의 현재와 미래", 214.

319) 제철웅, "CRPD의 관점에서 본 한국 성년후견제도의 현재와 미래", 215.

의 관계, 추천된 공동결정자의 역량, 성품, 자질 등을 고려하여 법원이 공동결정자(co-decision maker)를 선임한다. 공동결정자는 단독으로 본인을 대신하여 결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기존에 없던 새로운 제도로, 본인이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을 입을 우려에 대비할 수 있다.³²⁰⁾

지속적인 의사결정 대행자를 두는 경우에도 지속적 신상후견인(enduring personal guardian)과 지속적 재정후견인(enduring financial administrator)을 각각 나누어서 두고, 한 후견인이 본인에 관한 사항을 전부 후견하도록 하지 않는다. 이러한 지속적 의사결정 대행자는 본인이 선정해서 등록하고, 본인의 지시범위 내에서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후견법원이 의사결정 대행자를 최종적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도 완전후견인은 지정할 수 없고, 신상후견인과 재산후견인을 각자 선임하며, 후견인이 본인에게 자기결정권한을 부여할 수도 있다.³²¹⁾

지시서(directive)제도는 미래에 대하여 본인의 희망과 바람을 서면으로 미리 남겨 두는 것으로, 종류는 후견인의 선임, 후견인의 권한지시, 직접 행위를 지시하거나 지시에 참고할 수 있는 문서 등이 있다. 특히 건강과 관련된 지시서는 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다.³²²⁾

(라) 결격조항 관련³²³⁾

영국은 후견개시를 사법상, 공법상의 권리나 자격의 박탈과 연결시키는 결격조항이 없다. 후견 개시를 결격조항과 연결시키는 선진국은 현재 일본이 거의 유일한 나라이다. 그런데 일본에서도 성년후견이 개시된 피성년 후견인이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일본 「공직선거법」 제11조에 대해 2011년 2월 1일 동경지방법판소에 위헌소송이 제기되었다. 동경지방법판소는 2013. 3. 14. 「공직선거법」 제11조를 피성년후견인의 선거권을 침해하는 규정으로 무효라고 하였고, 국회는 “피성년후견인의 공직선거권 회복 등을 위한 「선거법」 일부개정”을 결의하였다.

독일은 결격조항을 두지 않지만, 후견이 개시됨으로써 피후견인 자신이나 제3

320) 제철웅, “CRPD의 관점에서 본 한국 성년후견제도의 현재와 미래”, 215-216.

321) 제철웅, “CRPD의 관점에서 본 한국 성년후견제도의 현재와 미래”, 216-217.

322) 제철웅, “CRPD의 관점에서 본 한국 성년후견제도의 현재와 미래”, 216.

323) 제철웅 “장애인인권보호를 위한 입법적 과제”, 법학연구 제44집 (2015), 163-166.

자에게 위협이 초래될 행위를 할 우려가 높은 경우 후견법원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그 사실을 통지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공공기관에서는 일시적으로 직무나 자격을 정지시키는 조치를 통지할 수 있고, 이러한 통지에 대해서는 항고가 가능하다.

미국은 완전후견이 개시되면 피후견인의 행위능력이 부정되고, 부분후견이 개시되면 이전되는 권한만큼 행위능력이 부정되지만, 후견이 개시되었다고 자동적으로 법적자격이 제한되지는 않는다. 선거권의 경우 의사능력이 없는지의 판단은 후견절차에서 이루어지는데, 선거권 발탈 여부가 개별적인 법원의 판단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6) 소결 및 제언

정부는 2013년에 도입한 성년후견제도를 장애인의 잔존능력을 극대화하는 조력사결정제도의 이행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성년후견제도는 여전히 일부 법률행위를 제외하고는 재산과 신상에 관하여 피후견인의 법적 능력을 제한하거나 박탈하고, 후견인이 이를 포괄하여 대리하도록 한다. 일반논평 제1호가 해석하는 조력사결정제도는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완전히 존중하는데 반해, 현행 성년후견제도는 피후견인의 의사결정 능력을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방식이므로 대체사결정제도에 해당한다. 따라서 정부의 주장처럼 성년후견제도의 도입을 CRPD 제12조에서 말하는 조력사결정제도로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대체사결정제도인 성년후견제도는 CRPD 제12조의 조력사결정제도와는 양립 및 공존이 불가능하므로, 성년후견제도를 폐지하는 방향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고, 이에 장애인권리위원회의 권고대로 조력사결정제도를 개발하고 도입하여야 한다.³²⁴⁾ 나아가 법무부 스스로 이행방안으로 제시한 “관련 연구용역 발주 등을 통해 거래 안전을 해하지 않으면서도 장애인의 잔존능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의 도입 필요성 등 보안 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 역시 이루어져야 한다.

324) 2018. 10. 25. 제4차 FGI에서 공감 염형국 변호사의 의견.

이에 대해, 아예 진술을 할 수 없는 경우를 위해 대체사결정제도의 존속이 불가피하며, 새로운 지원사결정제도를 도입하기 보다는 현행 성년후견제도가 지원사결정의 원칙대로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발달장애인의 권리)

- ① 발달장애인은 원칙적으로 자신의 신체와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 ② 발달장애인은 자신에게 법률적·사실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하여 스스로 이해하여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필요한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
- ③ 발달장애인은 자신과 관련된 정책의 결정과정에서 자기의 견해와 의사를 표현할 권리가 있다.

제8조(자기결정권의 보장)

- ① 발달장애인은 자신의 주거지의 결정,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나 거부, 타인과의 교류, 복지서비스의 이용 여부와 서비스 종류의 선택 등을 스스로 결정한다.
- ② 누구든지 발달장애인에게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항과 관련하여 충분한 정보와 의사결정에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그의 의사결정능력을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호자가 발달장애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자는 발달장애인 당사자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성년후견제도의 개정을 위하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달장애인법”)을 조력의사결정제도의 기본원칙으로 참고할 수 있다.

그리고 구체적인 제도는 호주 빅토리아주 「후견법」이 도입한 조력자, 공동결정자, 지시서, 후견인의 분리 등을 참고해 볼만하다. 이들 제도의 실제 성과와 활용도를 조사·연구하고, 부작용이나 활용이 저조한 사유 등이 있다면 이를 개선하면서 도입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특히 후견 수요를 대비하기 위하여 신탁제도를 도입하거나 전문후견인과 후견감독인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³²⁵⁾

피후견인에 대한 약 300여개의 결격조항은 CRPD 제12조 및 일반논평 제1호의 해석과 부합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삭제하되, 제3자의 재산 또는 신체 및 생명에 위해를 가할 현저한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개별적 사안에 따라 법원의 판단으로 직무 또는 직업 수행을 제한하는 방안 등 침해가 필요최소한도에 그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³²⁶⁾

325) 조성혜, “지적장애인에 대한 성년후견제도의 문제점”, 노동법논총 제30권 (2014), 218-220.

326) 제철웅, “가칭 ‘피성년후견인 등의 자격제한 및 차별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제정제안”, 147-148.

라. 조력의사결정 체계에 관한 교육

(1) 정부의 이행 현황

법무부는 권고를 일부 수용하면서, 이미 법무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내부 인권 교육을 실시하여 장애인의 법적 능력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검사나 검찰 일반직 전문교육 과정에서 장애인 관련 교과목을 편성하여 시행 중이라고 답하였다. 다만, 직무교육이므로 장애 당사자 및 장애인 단체가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고 하였다.

법무부는 이행계획으로 인권교육의 횟수와 인원을 늘리고, 진술조력인 신규양성교육을 실시한다고 하였다. 이 이행계획에 대한 이행 현황으로 법무부는 진술조력인 신규양성교육을 실시 중이고, 인권국 인권교육의 횟수와 참가 인원을 늘리고 있다고 답하였다. 또 검사, 검찰수사관, 교도관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하였다. 장애인 관련 교육의 내용은 ‘장애인의 특성 및 조사접근법’, ‘장애여성 및 아동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특성 이해’, ‘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아동장애인 조사기법’, ‘발달장애인의 특성 및 조사접근법’, ‘발달장애인의 이해 및 보호필요성’, ‘장애는 다양성이다’, ‘아동장애인 조사’였다.

(2) 조력의사결정 체계의 마련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 기본적으로 조력의사결정체도가 도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조력의사결정 체계가 무엇인지, 어떻게 훈련할 것인지 구체적인 정의나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훈련 대상자의 범위

법무부의 답변에서 ‘모든 장애관련 행위자’ 중에서도 법무부 소속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한 교육만 언급하고 있다. 모든 장애관련 행위자에는 공무원, 사회복지사, 법관 등도 예시로 들고 있으므로 적어도 이들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여야 한다.

별도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질의한 결과, 매년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것인지, 복지나 주민등록 담당 공무원 등 직접 장애인과 대면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총 이수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 등은 불분명하다.

(4) 교육 내용의 적절성

검사/검찰 일반직/교정직 공무원 대상 교육을 제목만 보았을 때는, 조력 의사결정 메커니즘이나 장애인의 법적능력에 대한 내용 보다는 피해자 또는 가해자로서 장애인에 대한 조사기술에 관한 교육이 주를 이루고 있다. 법무부는 실제 교육 내용이 조력 의사결정에 관하여 적절한 것인지 아직 답하지 않았다.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질의 결과 주로 인식개선 교육이 이루어졌고 그 내용은 ‘장애인의 정의’,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과 제도’, ‘장애인의 행동 특성과 능력’, ‘장애인의 의사소통’, ‘장애인 인권현실’, ‘장애인 편견 극복’, ‘보조기구 및 편의시설의 종류’, ‘차별 없는 장애인 이해와 정책’, ‘차별의 이해’ 등으로 조력 의사결정에 관해 적정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힘든 주제였다.

(5) 장애인 당사자 및 장애인 단체의 참여

법무부는 직무교육이라는 이유로 장애인 당사자 내지는 장애인 단체를 교육과정에서 배제하고 있다. 그러나 오히려 직무교육은 실무를 위한 교육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직무의 주체 또는 대상이 될 장애인의 경험이 반영되어야 한다. 즉, 장애인 단체나 다양한 장애를 가진 장애인 당사자들이 실질적인 교육 내용 개발에 참여하는 것이 실효성 있는 직무교육을 개발하는데 필수적이다. 한편, 법무부는 장애인 당사자나 장애인 단체의 교육 참여 대신, 장애인의 인권요구를 충분히 반영하기 위한 통로를 개설하겠다고 하였으나, 이 부분도 구체적이지 않고,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도 불투명하다.

(6) 해외 사례

비교분석 9개 국가(독일, 벨기에, 덴마크, 멕시코, 뉴질랜드, 오스트리아, 호주, 스웨덴, 스페인) 모두가 조력 의사결정제도 도입의 권고 내지 기존 법으로 통합 권고 등의 내용은 있으나, 이와 더불어 공무원, 법률가, 사회복지사, 판사 등에 대하여 조력 의사결정의 내용을 담은 훈련과 교육실시를 권고한 나라는 독일, 멕시코, 스웨덴과 호주 네 나라뿐이다.³²⁷⁾

327) 이해경외 4, 앞의 글, 17.

(7) 소결 및 제언

법무부의 회신으로는 모든 장애관련 업무 공무원과 사회복지사가 인식교육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인식개선교육 범위가 확대되었으므로 앞으로는 효과있는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편 제12조에서의 인식개선 교육은 장애인의 의사결정능력에 대한 이해와 조력 의사결정의 방식에 대한 것이어야 하므로 이러한 내용의 교육이 이루어지는지 점검이 필요하다. 끝으로 장애인 당사자와 단체가 공무원의 업무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부족할 수도 있지만, 장애인 당사자로서의 감수성과 경험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교육과정과 내용을 개발하는데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9. 제13조 사법에 대한 접근

가. CRPD 제13조

제13조 사법에 대한 접근

1. 당사국은 장애인이 조사와 기타 예비적 단계를 포함한 모든 법적 절차에서 증인을 포함한 직·간접적 참여자로서의 효과적인 역할을 촉진하기 위하여, 절차적 편의 및 연령에 적합한 편의의 제공을 포함하여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사법에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2. 장애인이 효과적으로 사법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경찰과 교도관을 포함하여 사법 행정 분야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위한 적절한 훈련을 장려한다.

나.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최종견해와 쟁점목록

(1) 최종견해

제13조 사법에 대한 접근

23. 위원회는 사법절차에서 장애인을 위한 합리적인 편의제공의 보장을 요구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의 이행이 실효적이지 않음에 우려를 표한다. 또한 위원회는 장애인의 권리에 대해 법관 인사들의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위원회는 2013년 대한민국 대법원에서 발간한 “장애인 사법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의 존재를 인지한다.

24. 위원회는 당사국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의 실효적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들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위원회는 장애인과 함께 일을 하는 표준 모듈과 절차상에서의, 연령에 적합한, 그리고 성인지적인 합리적인 편의제공, 사법에 대한 접근 보장이 경찰과 교도관, 변호사, 법관 및 법원 인사를 위한 훈련 프로그램에 반영될 것을 권고한다. 아울러 대한민국 대법원이 발간한 “장애인 사법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이행될 것을 권고한다.

(2) 쟁점목록

제13조 사법에 대한 접근

13-1.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의 효과적인 시행과 관련한 당사국의 활동을 상세히 설명하십시오.

13-2. 사법 제도 내의 모든 관련 당사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에, 장애인과의 동반 근무, 연령과 성별을 고려한 절차적 편의 제공, 사법 접근 보장에 관한 표준 모듈을 포함시키기 위한 당사국의 활동을 상세히 설명하십시오.

13-3. 한국 대법원이 발간한 「장애인 사법지원 가이드라인」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하고, 가이드라인의 효과적인 시행에 대한 당사국의 활동을 상세히 설명하십시오.

13-4. 사법 절차와 공중 절차의 전 과정에서 수감자에게 절차적 편의 제공과 이에 관한 관련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한 교육 실시와 관련하여 당사국의 활동을 상세히 설명하십시오.

13-5. 장애인이 판사, 검사 및 변호사로 일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 제공을 비롯해 필요한 조치 시행에 관한 당사국의 활동을 상세히 설명하십시오.

(3) 실태조사의 대상 쟁점

제13조 사법에 대한 접근에 관하여는 ①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의 실효적 이행 보장, ② 경찰, 법관 등 훈련프로그램 강화, ③ 가이드라인의 법적 구속력 부여를 쟁점으로 다룬다.³²⁸⁾

328) 쟁점목록 (d)는 ①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의 실효적 이행 보장에서 함께 살펴보고, (e) 장애인이 판사, 검사 및 변호사로서 일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합리적 편의를 비롯한 조치 제공은 ‘고용’의 문제이므로 여기서는 생략한다.

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의 실효적 이행 보장

(1) 정부의 이행 현황

(가) 법무부는 2018. 1. 「CRPD 제1차 국가보고서 권고사항 이행 현황」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의 실효적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 강화 권고에 대해서는 일부·조건부 수용하였다고 밝혔다. 일부·조건부 수용 사유는 ① 법무부 산하 구금·보호시설에서 의료, 처우 등에 장애인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인권침해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장애인 수용자에 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24시간 신고를 접수하여 신속히 조사 및 구제 실시 중이며, ② 2016년도 실태점검 중점 점검사항으로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 실태 및 처우”를 선정하고, 특히 장애인 이동권 보장, 건강권 보장 등 처우개선에 집중하고 있으며, ③ 사법절차에서 장애인을 위한 편의제공을 위해 검사, 검찰일반직 공무원 대상 교육프로그램에 장애인 관련 교과목을 시행하고 있고, ④ 장애인 등 특별한 보호를 요하는 피의자 등에 대하여 소환 등 수사절차 단계에서 장애 유형별로 적극 보호하고 있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나) 법무부는 CRPD 제2·3차 병합 국가보고서(초안)에서 아래와 같이 답변하였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를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활동으로 “신뢰관계인 동석제도, 발달장애인전담검사, 수화·문자 통역의 제공, 진술조력인 지원 등의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검찰은 장애인 활동가의 검수를 거친 「장애유형별 피해자 조사 가이드」를 마련하여 일선 검찰청에 배포한 바 있다. 교정시설에 정당한 편의시설을 마련하고 직원이나 비장애 수용자로부터 도움을 받도록 하고 있다. 보조기구도 구비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사회에서 사용하던 보조기구를 대여할 수도 있다”고 답변하였다.

사법 절차와 공중 절차의 전 과정에서 수감자에게 절차적 편의 제공하는지와 관련하여, “모든 수용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국선변호인 제도를 통해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은 ① 피고인이 농아자인 때, ②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를 필요적 국선변호인 사유로 규정하여 장애인 수용자를 위한 국선변호인 제도를 시행 중이다” 라고 답변하였고, “모든 수용자는 소장면담, 청원, 정보공개청구, 국가인권위원회 및 인권국 진정 등 권리

구제 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는 장애 유무와 상관없이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다.

(2)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 및 시행령의 내용

제26조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 ① 공공기관 등은 장애인이 생명, 신체 또는 재산권 보호를 포함한 자신의 권리를 보호·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장애인에게 제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직무를 수행하거나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가, 신고, 인가 등에 있어 장애인을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제한·배제·분리·거부하는 경우
 2. 공공사업 수혜자의 선정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거나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 ④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를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⑤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장애인이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에 참여하기 위하여 장애인 스스로 인식하고 작성할 수 있는 서식의 제작 및 제공 등 정당한 편의제공을 요구할 경우 이를 거부하거나 임의로 집행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 ⑥ 사법기관은 사건관계인에 대하여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장애인에게 형사사법절차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음과 그 구체적인 조력의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법기관은 해당 장애인이 형사사법절차에서 조력을 받기를 신청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⑦ 사법기관은 장애인이 인신구금·구속 상태에 있어서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 및 적극적인 조치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⑧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7조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에 있어서의 편의제공 등)

- ①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법 제26조 제8항에 따라 장애인이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그에 참여하기 위하여 요구할 경우 보조인력, 점자자료, 인쇄물음성출력기기, 수화통역, 대독(代讀), 음성지원시스템, 컴퓨터 등의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고, 장애인의 장애유형 및 상태를 고려하여 교정·구금시설에서 계구(戒具)를 사용하거나 고충상담, 교도작업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제1항에 따라 장애인인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 5에 따른다.

(3) 실태조사 실시에 대한 평가

(가) 실태조사의 의의

구금·보호시설 실태조사의 근거 규정은 2011. 8. 4. 「인권침해 사건 조사·처리 및 구금·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이하, “인권침해사건조사규칙”)에 신설되었다. 이 규정의 취지는 인권침해사건의 조사·처리 업무의 효율성 증대 및 수용자 등의 실질적 인권 보호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인권침해 사건 조사 처리 및 구금 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시행세칙」(이하, “인권침해사건조사 시행세칙”) 제28조에서는 매년 실태조사 대상 법무부 소속 구금·보호시설을 선정하여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인권침해사건조사 시행세칙 제29조 제2항에 의하면 실태조사 담당 공무원은 법무부 소속 구금·보호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시설을 순회 점검하고, 수용자에게 설문조사와 면담을 실시하고, 업무 담당자와 면담을 하는 등 인권보호 실태를 확인하고, 조사결과를 인권국장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정기적으로 담당 공무원이 구금·보호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실태조사를 시행함으로써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 예방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 또한 인권침해사건조사규칙 제29조에 따라 실태조사 결과 인권침해가 우려되는 사항을 확인한 경우 시정 및 개선조치가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다.

(나) 관련 규정- 인권침해사건조사규칙

인권침해사건조사규칙 제3장 구금·보호시설 실태조사

제28조(계획 수립 및 시행) 법무부장관은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의 예방 및 제도 개선을 위해 법무부 소속 구금·보호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한 후 적절한 방법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9조(조사 후 조치) ① 법무부장관은 제28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가 우려되는 사항을 확인한 경우에는 법무부 내 관련 실장·국장·본부장 및 구금·보호시설의 장에게 시정 및 개선 조치를 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실태조사 중에 구체적인 인권침해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 사건으로 인지하여 조사·처리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지시받은 법무부 내 관련 실장·국장·본부장은 즉시 이행하고, 그 이행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30조(조사보고서 작성 등) 인권국장은 해마다 실태조사를 마치면 그 결과를 분석하여 조사보고서를 작성한 다음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구금·보호시설의 운영 실태와 관련된 제도 개선 및 정책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다) 현행 실태조사의 한계

구금시설 내 여성수용자 인권실태조사(2003)에서는 장애인 시설 중 여성 수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열악하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5. 장애인 및 노약자용 시설

구금시설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방문조사 기관 중 8개소에 모두 장애인 및 노약자용 시설(휠체어용 경사로, 장애인용 소변기, 수평 손잡이, 장애인용 화장실)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여성수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설치된 곳은 4개소였습니다. 장애인용 시설이 전혀 마련되지 않은 소에서는 휠체어를 사용하는 수용자가 화장실을 사용할 때 화장실 바닥에 주저앉았다가 다시 변기 위로 올라가야 했고 접견시에도 다른 수용자들이 부축하거나 휠체어 자체를 들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금시설 건강권 실태조사(2016)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가 아니다. 일부 정신질환 수용자에 대한 파악은 있지만, 설문지를 남녀로 구분하였을 뿐 장애 여부로 구분하지 않아 별도의 통계가 집계되지 않았다.

한편, 인권침해사건조사규칙을 보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구금·보호시설의 운영 실태와 관련된 제도 개선 및 정책 개발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만 부과하고 있어 개선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또한 장애등록을 하지 못한 발달장애인들이 구금시설 내에서 폭력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발생함에도, 이에 대한 조사나 시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³²⁹⁾

결국 법무부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의 실효적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 중 하나로 밝힌 구금·보호시설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실태점검은 적절하고 충분하지 못해, CRPD 이행을 위한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생각된다.³³⁰⁾

329) 2018. 10. 26. 제5차 FGI에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김성연 사무국장의 의견.

330) 2018. 10. 26. 제5차 FGI에서 김재왕 변호사는 장애인 전담교정시설이나 일반 교정시설 내 장애인 전담 교정실이 있지만, 국가가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모범수, 양심수 등 재소자들이 장애인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구금·보호시설의 실태조사나 연구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4) 인권침해신고센터 운영에 대한 평가

(가) 인권침해신고센터의 의의

법무부는 2006. 5. 3.부터 법무부 인권국 산하기구로서 인권침해신고센터를 설립하여 법무부 산하 공무원의 인권침해행위 진정을 접수 받아 이를 조사·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인권침해신고센터는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 사건의 조사와 처리, 구제업무 등을 담당하는 등 준사법기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인권침해신고센터의 주요 업무는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 사건의 조사·처리 및 법무부 소속 구금·보호시설의 실태조사이다.³³¹⁾

(나) 인권침해신고센터의 운영 현황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전체 신고 사건 수는 평균 1,426.8건이고, 그 중 평균 접수사건은 1,348.2건(94.5%), 접수 전 종결사건은 78.6건(5.5)이었다. 전체 평균 접수사건 1,339건 중 각하사건이 677.6건(50.6%)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이첩사건이 433.6건(32.4%), 기각 143.6건(10.7%), 인용·구제 83.6건(6.2%) 등의 분포를 보였다. 그런데 같은 기간 전체 인용·구제사건 368건 중 장애인 처우와 관련된 건은 6건이었다.³³²⁾ 실태조사 개선조치요구 및 면담 결과 중 장애 관련된 건수도 총 909건 중 4건이었다.³³³⁾

(다) 인권침해신고센터의 한계

인권침해신고센터는 장애인만을 위해 운영되는 센터가 아니고, 위 센터에 장애인을 상담, 조력할 수 있는 전문가가 있는지도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위 운영현황이 매우 저조한 것을 미루어 봤을 때 장애인을 조력할 수 있는 직원이 없거나, 또는 신고가 많지 않아서 그러한 직원을 배치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331)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인권침해신고센터의 발전방안”, 법무부 (2015), 7.

332)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앞의 글, 89.

333)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앞의 글, 90.

(5) 공무원 대상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현재 법무부에서 실시하는 장애 관련 교육은 인권국이 실시하는 인권교육과 법무연수원에서 실시하는 장애인 관련 교육이 있다.

그 중 법무연수원에서 실시하는 교육은 여성아동발달장애인 수사전문가 과정이나 여성아동학대범죄 수사실무 과목에 일부 포함되어 있어, 여성장애인, 발달장애인, 장애아동에 중점을 둔 수사기법 교육과 훈련은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장애인이 절차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사법지원을 위한 교육과 훈련을 찾아보기는 어렵다.

(6) 사법지원에 관한 규정에 대한 평가

(가) 사법 접근권의 근거 및 관련 규정³³⁴⁾

현재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가 포괄적으로 장애인의 사법접근권을 제시하고 있고,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의 일부 규정도 사법접근권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

「헌법」 제11조 제1항에서는 장애로 인한 차별금지 내지 국가의 편의제공 의무를 도출할 수 있다. 제27조에서 장애인이 소송절차 등에서 차별받지 않고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를, 제12조에서 장애인이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찾아낼 수 있다. 제25조에서 장애인이 검사, 판사, 법원사무관, 기타 법원 직원으로서, 제14조에서 장애인이 변호사로서, 자격을 취득하고 활동하는 권리를 도출할 수 있다. 그 밖에도 제34조 제5항, 제27조 제5항 등이 장애인의 사법접근권을 도출할 수 있는 헌법규정이다.

「민사소송법」 제143조, 「형사소송법」 제181조, 대법원이 정한 「통역번역 및 외국인 사건 처리 예규(재일 2004-5)」 제6조(통역 번역인의 지정)는 각급 법원이 매년 1월 말까지 농아자를 위한 2인 이상의 수화 통역인 지정대상자를 미리 선정하여 대장에 기재하고, 그 대상자 명단을 법원행정처장(사법정책실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2017년 개정된 「민사소송법」에는 진술보조인제도가 도입되었다.

334) 차성안, “장애인의 사법 서비스 접근권과 장애인차별”, 공익과 인권 통권 제8호 (2010), 243.

제143조의2(진술 보조)

- ① 질병, 장애, 연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제약으로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진술을 하기 어려운 당사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진술을 도와주는 사람과 함께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 ② 법원은 언제든지 제1항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술보조인의 자격 및 소송상 지위와 역할, 법원의 허가 요건·절차 등 허가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피고인이 농아자인 때와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제33조 제1항 제4호, 제5호)에는 국선변호인을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제163조의2),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문을 받는 피의자(제244조의5), 법정에서 신문을 받는 피고인(제276조의2) 등이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 그와 신뢰 관계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공판조서를 읽지 못하는 때에는 공판조서의 낭독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은 시각장애나 난독증을 가진 장애인에게 적용될 수 있다(제55조 제2항). “단, 증인이 선서서를 낭독하지 못하거나 서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참여한 법원사무관 등이 이를 대행한다”는 규정은 말을 하지 못하는 청각장애인이나 언어장애인,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또는 글씨를 쓰지 못하는 장애인 등의 경우에 적용될 수 있다(제157조 제3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도 피해자 국선변호인제도와 진술조력인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제27조 제6항, 제35 내지 38조).

(나) 평가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자의 범위는 매우 한정적이다. 그러한 경우 통역의 방식도 수화에 한정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장애유형 및 정도에 따라 의사소통에 있어서 구화, 속기사 등을 통한 문자통역, 필담 등 다양한 통역 방식을 제공할 필요가 있고 위 예규의 내용도 이에 따라 개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³³⁵⁾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과 관련 예규 등은 주로 청각장애인 등의 의사소

335) 차성안, 앞의 글, 246.

통, 그것도 수화에 국한된 내용만을 두고 있었다. 그러나 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의사소통 방식으로 수화 외에도 구화, 보청기, 문자통역, 필담 등의 다양한 수단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다. 또한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문제 외에도 시각장애인 등의 정보접근권이나 지체장애인 등의 법정시설 접근권 등 다른 유형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과 편의제공 등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라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³³⁶⁾ 2017년 도입된 진술보조인제도는 장애인의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장애인 등 특별한 보호를 요하는 피의자 등에 대하여 소환 등 수사절차에서 장애유형별로 적극 보호하고 있고, 검찰에서는 장애유형별 피해자 조사 가이드를 배포하였으며, 신뢰관계인 동석제도, 발달장애인전담검사, 수화·문자 통역의 제공, 진술조력인 지원 등의 제도를 실시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 제6항은 고지의무를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만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장애인들은 외관상 장애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그리고 장애인들은 사법 절차상 어떤 권리가 있는지 알지 못하여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장애 여부 확인 및 조력에 대한 고지는 행정절차상 강제처분(「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강제퇴거와 보호처분, 그 외 보호를 명목으로 한 수용 등)에서도 필요한데, 이에 대한 고려가 없다.

또한 전담수사제나 진술조력인제도 등 제도는 마련되었고, 관련 지침이 수사기관에 내려가도, 실무에서 지침을 무시하고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있다는 점, 전담수사제도의 경우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별도로 수사기관을 배정하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는 직접차별에 해당한다는 비판이 있고, 실제 전담수사기관이 배정되고 수사가 진행되기까지 장애인이 상당한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있다.³³⁷⁾

또한 진술조력인제도의 경우 모든 장애 유형에 필요함에도 청각장애인과 발달장애인에 초점을 맞추어 한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이 문제라는 비판도 있다.³³⁸⁾ 또한 최근 특수학교에서 발생한 폭력사건의 경우 수사절차에서 아동인

336) 차성안, 앞의 글, 247.

337) 2018. 10. 26. 제5차 FGI에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김성연 사무국장의 의견.

발달장애인은 국선변호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같은 피해자인 성인 발달장애인은 국선변호사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지적되기도 하였다.³³⁹⁾

뿐만 아니라 장애인에 대한 사법 지원 규정은 「장애인차별금지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성폭력처벌법」 등에 분산·규정되어 있어 체계적이지 못하다.

(다) 소결 및 제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독립적이고 구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

인권침해신고센터 내 장애인 상담, 법률 전문가를 영입하고 장애인 수용자가 신고할 때 전문 대응체계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장애인차별금지법」과 훈령에서 각기 규정하는 장애인관련 규정들의 상이점을 일관성 있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 법률의 명확성과 체계를 고려하여 각 관련법의 조항을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취지를 반영하여 개정하여야 한다.

장애인의 사법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법원이나 수사기관에서 장애인이 가진 권리를 알려주는 것이므로 고지의무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 제6항의 고지대상을 현행과 같이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으로 한정해서는 안 되고, 외관상 장애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까지 고려하여, 의무적으로 법원이나 수사기관이 모든 사람에게 장애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력의 내용을 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아가 장애 여부 확인 및 조력에 대한 고지를 사법기관 뿐 아니라, 공공기관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행정절차상 강제처분(「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강제퇴거와 보호처분, 그 외 보호를 명목으로 한 수용 등)에서도 이러한 절차는 차별을 막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므로 공공기관으로 의무주체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상도 형사사법절차에서 행정절차와 사법절차 일반으로 확대해야 할 것이다.³⁴⁰⁾

338) 2018. 10. 24. 제3차 FGI에서 한국장애인연맹 임상욱 조직국장의 의견.

339) 2018. 10. 25. 제4차 FGI에서 염형국 변호사의 의견.

340) 장애인법연구회, “장애인차별금지법 해설서”, 나남 (2017), 258-259.

라. 경찰, 법관 등 훈련프로그램 강화

(1) 정부의 이행 현황

법무부는 2018. 1. 「CRPD 제1차 국가보고서 권고사항 이행 현황」에서, ‘경찰·교도관·변호사·판사·법조인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에 장애인 업무에 관한 표준 모듈, 절차상에서 연령에 적합하고 성인지적인 합리적인 편의제공, 사법접근성 보장을 포함시킬 것을 권고’한 것에 대해서는 수용의사를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① 법무부 인권국, 교도관 등 법무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외부 인권강사단에 의한 인권교육, 내부 인권강사단에 의한 인권감수성 훈련 등 다양한 인권교육을 실시하여, 장애인의 법적 능력에 대한 인식개선, 합리적인 편의제공, 사법접근성 보장 등 법무부 소속 공무원의 인권감수성을 제고하고 있다는 점과 ② 검사, 검찰일반직 공무원 전문교육 과정에 장애인 관련 교과목을 편성하여 운영 중이라는 점을 제시하였다.

법원행정처는 CRPD 제2·3차 병합 국가보고서(초안)에서, 2013년 ‘사법접근성 제고를 위한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프로그램 제작 및 교육과정 운영 연구’용역을 발주하였고, 그 연구결과 사법접근성 제고를 위한 장애인식 개선교육의 효과적인 교육 시행방안³⁴¹⁾이 제시되었다고 밝혔다.

(2) 이행 현황에 대한 평가

법무부에서 실시하는 각 교육의 수준이나 적정성은 제시된 법무부의 답변만으로 파악하기 어렵다. 장애인 관련 교육의 경우 여성아동발달장애인 수사전문가 과정이나 여성아동학대범죄 수사실무 과목에 일부 포함되어 있다. 추측건대,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여성장애인, 발달장애인, 장애아동에 대한 수사기법을 중심으로 교육하는 것으로 보인다.

법원에서 지속적으로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근거한 차별구제 소송에 대한 이해가 낮은 재판부가 많고, 법원이 제공해야 할 정당한 편의에 소요되는 비용을 소송구조 결정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있다.

341) 장애인식 개선교육 표준 프로그램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 실제 사례(용어 부문) 장애인에 대한 기본 이해 및 현황, 장애 유형별 특성 및 각 장애유형별 특성에 맞는 사업 지원 내용 및 장애인 민원 응대요령 등이 포함되어 있다.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가 법원에게 있으므로 법원이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데, 당사자의 부담을 전제로 소송구조 결정을 내리는 것은 정당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조치 역시 재판부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발생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법무부가 지속적으로 다양한 인권교육과 장애인 관련 교과목을 운영하고 있고, 법원에서도 지속적으로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장애인 또는 장애단체들은 수사기관 또는 재판부의 태도에서 장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이는 교육의 내용과 방법의 효과성에 의문이 들 수 있는 부분이다.

(3) 소결 및 제언

장애인과 관련된 사법 또는 행정 절차에 관여하는 모든 전문가들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장애 유형, 성별, 연령 별로 어떻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지, 적절한 훈련을 받도록 하는 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지속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수사기관과 법관의 장애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평가가 있으므로 교육의 효과에 대한 검증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마. 가이드라인의 법적 구속력 부여

(1) 정부의 이행 현황

법원행정처는 2018. 1. 「CRPD 제1차 국가보고서 권고사항 이행 현황」에서, 가이드라인의 법적 구속력 부여 권고를 일부·조건부 수용한다고 밝혔다. 그 사유는 ① 가이드라인은 소송절차의 단계별 장애인 지원방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담고 있는 실무 지침서라는 점, ② 법관 및 법원공무원에게 가이드라인 책자를 배부하고, 법원 내부 인터넷과 홈페이지에 장애인 사법지원 안내문 및 신청서를 게시하는 등 위 가이드라인이 효과적으로 이행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대부분 잘 준수되고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정부의 이러한 태도는 사실상 가이드라인의 법적 구속력 부여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후 법원행정처는 CRPD 제2·3차 병합 국가보고서(초안)에서, 장애인 사법지

원을 위한 가이드라인은 장애유형별, 절차별 구체적인 세부 지원방안을 정하고 있는 내부 지침이고 일반적·추상적인 내용이 아니므로, 일률적으로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기에는 일부 부적절한 측면이 있지만 법적 구속력이 필요하거나 규범화가 가능한 장애인 사법지원 내용을 검토하여 2018년 내에 규범화 작업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변경된 태도를 보였다.

(2) 이행 평가

(가) 가이드라인의 내용

법원의 가이드라인은 크게 총설, 민사재판절차에서의 사법지원, 형사재판절차에서의 사법지원으로 나뉘어져 있고, 총설에서는 장애인 사법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 장애의 개념 및 유형, 장애 유형에 따른 다양한 사법지원, 장애인 사법지원의 신청 및 제공 절차를 제시하고 있다. 민사재판절차에서의 사법지원에서는 접수, 소장심사 및 송달, 제1회 기일 전, 재판기일의 운영, 판결의 선고, 화해·조정 절차에서의 사법 지원을 제시하고 있고, 형사재판절차에서의 사법지원에서는 장애인과 형사소송 능력과 관계인, 공소제기 전, 공소제기 후 제1회 공판기일 전, 공판기일의 심리, 국민참여재판, 판결의 선고와 관련하여 사법 지원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장애인 사법지원 안내문 및 동 신청서, 장애인을 위한 통역 안내문, 통역인을 위한 안내문 및 동 신청서를 함께 첨부하고 있다.

(나) 가이드라인의 법규화

1) 정부의 입장 변화

법원은 가이드라인을 3개 국어로 번역하여 책자로 배부하거나 인터넷으로 게시하는 등의 노력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규범화에 관하여 과거에는 가이드라인이 “일반적, 추상적 내용이 아니”라며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지 않다가, 최근에는 법적 구속력이 필요하거나 규범화가 가능한 내용을 검토하여 규범화를 하려는 방향으로 선회하였다.

2) 대법원 규칙 제정의 필요성

대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

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헌법」 제108조). 이에 따라 대법원은 「민사소송규칙」(대법원규칙 제2396호), 「형사소송규칙」(대법원규칙 제2376호),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대법원규칙 제2363호) 등을 제정해 각 소송법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소송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규칙은 법규명령 또는 행정명령에 해당하는 법적 효력을 지니므로 대외적 구속력이 있고, 법관이 일정행위를 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효력도 있다(「법원조직법」 제49조 제7호).

소송법에 구체적 규정이 없더라도 「장애인차별금지법」과 CRPD에 따라 법원은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을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그런데 정당한 편의의 내용은 무엇인지, 어떤 절차를 거쳐 제공되어야 하는지 등에 관해서는 아무런 하위규정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장애인 사법지원은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에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대법원 규칙을 만들어 장애인에 대한 사법지원의 방법과 내용,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³⁴²⁾

(3) 소결 및 제언

기존 가이드라인에서 정당한 편의의 내용이나 절차 등은 대법원규칙으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가이드라인은 미국의 예처럼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 및 사법지원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상세한 직무지침과 매뉴얼을 담는 것으로 수정해야 할 것이다. 법원의 구성원이 직무를 할 때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가이드라인은 장애인 당사자에게도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한편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비롯한 차별법제, 「장애인복지법」을 비롯한 복지법제, 인신보호 등 법제와 그에 관한 소송절차의 특징 등을 정리하는 실무제요를 만들면 크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³⁴³⁾ 또한 수화통역 등 편의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하는 것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한 입법자의 의사에 부합하므로,³⁴⁴⁾ 국고 부담이 가능하도록 세부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342) 임성택외 10, “장애인을 위한 사법지원에 관한 정책 연구”, 대법원 법원행정처 (2012), 173.

343) 임성택외 10, 앞의 글, 174.

344) 법원행정처, “장애인 사법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 (2013), 68.

10. 제14조 신체의 자유 및 안전

가. CRPD 제14조

제14조 신체의 자유 및 안전

1. 당사국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장애인에 대해 다음의 사항을 보장한다.
 - 가. 신체의 자유 및 안전에 관한 권리를 향유한다.
 - 나. 장애인의 자유는 불법적 또는 임의적으로 박탈당하지 아니하고, 자유에 대한 일체의 제한은 법에 합치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장애의 존재가 자유의 박탈을 정당화하지 아니한다.
2. 당사국은, 장애인이 어떠한 절차를 통하여 자유를 박탈당하는 경우, 모든 사람과 동등하게 국제인권법에 따라 보장받을 자격이 있고, 합리적인 편의제공을 비롯하여 이 협약의 목적과 원칙에 따라 대우받도록 보장한다.

나. 최종견해 및 쟁점 목록

(1) 최종견해

25. 위원회는 「정신보건법」의 기존 조항과 동법의 개정 초안이 장애를 근거로 한 자유의 박탈을 허용한다는 사실에 우려를 표한다. 또한 위원회는 정신장애인의 자유롭고 고지된 동의 없이 이루어진 장기간 시설 수용화를 포함한 시설 수용화의 비율이 매우 높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26. 위원회는 당사국이 정신·지적 장애를 포함하여 장애를 근거로 한 자유의 박탈을 허용하는 기존의 법률 조항을 철폐하고 모든 정신보건서비스를 포함한 보건서비스가 당사자의 자유롭고 고지된 동의를 바탕으로 제공되도록 보장하는 조치를 채택할 것으로 권고한다. 또한 위원회는 법률이 개정될 때까지 병원 및 특수 시설에서 벌어지는 장애인에 대한 모든 경우의 자유박탈을 검토하고, 검토과정은 항소 가능성을 포함할 것을 권고한다.
28. 위원회는 장애인에게 공정한 재판과 적법절차를 보장해주는 절차적인 편의를 구축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위원회는 장애인에게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적법절차를 보장해 주기 위하여, 형사사법제도상의 재판 부적합 판정을 없앨 것을 권고한다.

(2) 쟁점목록

1. 다음을 위해 당사국에서 이루어진 진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라.
 - (a) 정신적 손상을 포함한 손상에 기반하여 자유의 박탈을 허용하는 현행 법령 조항의 폐지
 - (b) 새로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 조항 및 그 시행에 따라 모든 정신 헬스케어 서비스를 포함한 헬스케어 서비스가 관련 개인들의 자유롭고 고지된 동의에 기초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조치 도입

- (c) 자유를 박탈하는 법령이 개정되기 전까지 병원 및 전문시설에서의 모든 장애인의 자유 박탈 사례 검토 및 이러한 검토가 이의제기 가능성을 포함하도록 보장
- (d) 장애인들에게 공정한 재판 및 적법절차가 보장되도록 하는 절차적 편의 확립;
- (e) 장애인들에게 일반인과 동등한 기준의 적법절차를 제공하기 위해 형사사법시스템에서 '재판 부적합 판정' 제거.

(3) 실태조사의 대상 쟁점

제14조에서는 ① 자유박탈 허용 조항의 철폐, ② 보건서비스 등의 제공 보장, ③ 공정재판 및 적법절차 등 편의 구축, ④ 재판 부적합판정 폐지에 관한 쟁점을 다룬다.

다. 자유박탈 허용 조항의 철폐

(1) 정부의 이행 현황

(가) 보건복지부는 2018. 1. 「CRPD 제1차 국가보고서 권고사항 이행 현황」에서, 의사능력이 없는 정신질환자 본인을 위한 치료의 필요성 및 자·타해 위험으로 인한 사회적 안전 측면에서 강제입원조항 삭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유로 최종견해의 권고 사항에 대해 일부·조건부 수용의사를 밝혔다. 다만, 강제입원 요건·절차 등을 더욱 강화하고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강화하기 위해 2016. 5. 29.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으로 전부 개정하여 2017. 5. 30.부터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① 정신의료기관 강제입원 요건 등 정신질환자 인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정신건강복지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개정법의 현장 안착에 주력하기 위해 정신장애인 주거시설기반 사회복지지원사업 연구용역(‘18. 상반기), 정신의료기관 입퇴원 관리시스템(amis.go.kr) 고도화(‘18년), 공공후견인 지원(‘18년), 입원적합성위원회 운영(‘18. 5~) 등을 예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② 정신의료기관 평가·인증시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을 평가지표에 반영하여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나) 보건복지부는 「CRPD 제2·3차 병합 국가보고서(초안)」에서 아래와 같이

답변하였다.

정부는 「정신건강복지법」에 의해 ① 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이 있고, ② 질환이 급성기 발현하는 등 자·타해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치료적 목적으로 정신의료기관에 치료를 위한 비자의입원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이 경우에도 자유의 박탈은 필요최소한도로 하도록 하고 있다. 즉, 이미 ‘장애를 이유로’ 자유를 박탈하지 않고 있으며, 「정신건강복지법」의 ‘정신질환자’와 「장애인복지법」의 ‘정신장애인’은 다른 개념이다.

정신질환자의 비자의입원의 경우, 의사능력이 없는 정신질환자의 치료필요성 및 자해 위험 등 환자의 건강, 안전 등 측면에서 강제입원조항 삭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다만 정부는 불필요한 강제입원을 막고 정신질환자의 인권 강화를 위해 2016. 5. 29. 강제입원 요건 및 절차 강화 등 내용이 포함된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복지법」으로 전부 개정하고 2017. 5. 30. 「정신건강복지법」을 시행하였다. 개정된 내용을 살펴 보면, 구 「정신보건법」상으로는 입원이 필요한 질환이 있거나 환자 자신의 건강 또는 타인의 안전을 위해 입원 등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보호의무자의 동의 및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에 의하여 비자발적 입원이 가능했다.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에서는 이러한 입원요건을 강화하여 입원이 필요한 질환과 자타해위험이 모두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호자 동의 및 정신건강전문과의 진단에 의하여 입원이 가능하게 하였다. 또한 입원 절차도 강화하여 강제입원 환자 최초 입원 시 2주 내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서로 다른 의료기관 소속 전문의여야 하며, 전문의 2인 중 1인은 국공립 정신의료기관 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정신의료기관에 소속된 전문의여야 함)의 일치된 소견이 있어야 2주 이상 강제입원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나아가 국립정신병원에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최초 입원 후 1개월 이내에 중립적 위원회에서 입원 적합성을 심사하도록 하였으며, 이후 정신건강심사위원회를 통한 퇴원심사 주기도 기존 최초입원 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여 정신질환의 초기 집중치료 및 조기퇴원을 유도하였다. 이러한 비자의 입·퇴원 절차 개선에 따라, 법 시행 이후 비자의 입원율이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전체 입원 환자 수는 다소 감소하였다. 현황을 살펴보면, 비자의 입원율은 2016. 12. 기준 61.6%에서 2018. 4. 기준 37.1%로 감소하였으며, 입원 환자수도 2016. 12. 기준 69,162명에서 2018. 4. 기준 66,523명으로 감소하였다.

(2) 정부 이행에 대한 평가

(가) 장애를 이유로 한 자유 박탈 조항 철폐

「정신보건법」은 병원과 요양원의 강제입원등의 대상이 되는 정신질환자를 “정신병(器質的 精神病을 포함한다)·인격장애·알코올 및 약물중독 기타 비정신병적 정신장애를 가진 자”로 정의하고 있었다(법 제3조 제1호). 이러한 개념 정의에는 의학적 의미의 정신질환에 포함되지 않고 사회에서 정상적으로 일상생활을 해 나가면서 어느 정도의 질환을 치유해 나갈 수 있는 사람들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었다. 특히 ‘기타 비정신병적정신장애를 가진 자’는 정신과전문의들도 정확하게 한정하기 힘든 광범위한 개념이다.³⁴⁵⁾ 「정신건강복지법」은 정신질환자를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법 제3조 제1호). 「정신보건법」이 진단명을 중심으로 정신질환자를 정의하는 것에서, 「정신건강복지법」은 증상의 유무에 근거한 기능상의 장애정도를 중심으로 정신질환자를 정의하였다. 나아가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존재할 것’을 추가적으로 요구하여 그 범위를 상당히 좁혔다.

정신질환자 정의 조항의 개정에 대해서는 구법에서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게 정의했던 문제점을 상당 부분 해소한 것으로 보인다는 평가도 존재한다.³⁴⁶⁾ 반면에 단순한 문언상의 변화만 있을 뿐, 실질적인 입원 대상은 변하지 않았다는 평가 또한 존재한다. 개정법에서는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의 존재’라는 요건을 추가하였으나 그 자체로도 추상적이며, 여전히 입원의 필요성이 없는 발달장애인이 자립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강제입원하는 데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 「정신보건법」이 정의하고 있는 정신질환자의 개념이 의학적으로 정신질환자와 반드시 일치한다고 할 수는 없고, 그보다 훨씬 넓은 개념으로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행위무능력 상태에 빠지거나 아니면 정신병에 관한 인식(병식)이 없는 상태가 아닌 사람들까지 포함될 수 있는 현저한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다. 의학적 의미의 정신질환자라고 할 수 없음에도 정신보건법상 정신질환자

345) 방승주,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과 신체의 자유의 객관적 가치질서로서의 의미”, 정신건강제도와 인권·정신건강법을 국제심포지엄, 국가인권위원회·국회의원 이명수 보건복지위원장·대한변호사협회, (2018). 61.

346) 방승주, 앞의 글, 81-82.

에 포함되는 다수의 사람들도 자기 스스로 입원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보호의무자가 의사의 진단을 받아 강제입원을 시킬 수 있도록 하는 문제점은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이다.³⁴⁷⁾

(나) 비자의적 수용(강제입원 요건, 절차 등)의 문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복지법」으로 전부개정되어 시행 중이다.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입원 유형과 각 유형별 입·퇴원 요건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32] 개정법에 따른 입·퇴원제도 개요³⁴⁸⁾

	자의입원 (제41조)	동의입원 (제42조)	보호 의무자에 의한 입원(제43조)	행정입원 (제44조)
유형	자발적		비자발적	
요건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	정신질환자	입원 치료 필요한 정신질환 및(and) 자·타해 위험	정신질환으로 자·타해 위험 발견 → 정신과전문의 또는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신청
입원 신청	본인이 입원 신청서 제출	본인의 신청 + 보호의무자 동의	보호의무자 2인의 신청 (※부득이한 경우 1인)	시장·군수·구청장
입원 절차	별도 절차 없음		정신과 전문의 1인 입원권고 ⇒ 2주 간 진단입원 ⇒ <u>소속이 다른 정신과전문의 2인이</u> 일치된 소견으로 입원(치료입원) 확정	정신과 전문의 1인 입원권고 ⇒ 2주 간 진단입원 ⇒ 정신과 전문의 2인이 일치된 소견으로 입원(치료입원) 확정
기간	제한 없음		3개월 간	

347) 방승주, 앞의 글, 55.

348)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정신보건법 개정 배경 및 「정신건강복지법」 주요내용” (2017).

	자의입원 (제41조)	동의입원 (제42조)	보호 의무자에 의한 입원(제43조)	행정입원 (제44조)
유형	자발적		비자발적	
입원 신고	해당없음		3일내 신고	
입원 적합성 심사	해당없음		국립정신병원 등에 설치된 입원적합성 심사위원회가 심사(최초 입원일부터 1개월 이내)	
퇴원 의사의 표시	본인의 신청 (2개월마다 퇴원의사 확인필요)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의 신청	시장·군수·구청장의 입원해제
퇴원 제한	신청하면 지체없이 퇴원	정신과 전문의 진단으로 최대 72시간 제한 가능	입원요건 충족시 퇴원거부 가능	해제하면 지체없이 퇴원
입원 연장의 요건	해당없음	해당없음 (72시간내 비자발적입원으로 전환 필요)	<u>소속 다른 정신과전문의 2인 소견 + 보호의무자 2명이상 동의 * 3개월(1차) + 6개월연장</u>	2인이상의 전문의 판단 * 3개월(1차) + 6개월연장

보건복지부는 「정신건강복지법」 시행으로 비자의 입·퇴원 절차가 개선됨에 따라, 법 시행 이후 비자의입원율이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전체 입원 환자 수는 다소 감소하였다고 밝혔다.

[표-33] 법 시행 전후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 현황³⁴⁹⁾

시점	입원 환자	자의입원	동의입원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행정 입원
				소계	친족 등	시·군· 구청장	
'16.12.31.	69,162 (100%)	26,545 (38.4%)	-	42,523 (61.5%)	39,586 (57.2%)	2,937 (4.2%)	94 (0.1%)
'17.4.30.	66,958 (100%)	27,877 (41.6%)	-	38,977 (58.2%)	36,269 (54.2%)	2,708 (4.0%)	104 (0.2%)
'17.6.23.	66,688 (100%)	30,536 (45.8%)	5,150 (7.7%)	29,002 (43.5%)	29,002 (43.5%)	-	2,000 (3.0%)
		35,686 (53.5%)					

349)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정신의료기관·정신요양시설 비자의입원·입소에 대한 입원적합성심사 시행” (2018), 9.

시점	입원 환자	자의입원	동의입원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행정 입원
				소계	친족 등	시·군·구청장	
'17.8.21.	67,605 (100%)	31,066 (45.9%)	8,023 (11.9%)	26,166 (38.7%)	26,166 (38.7%)	-	2,350 (3.5%)
		39,089 (57.8%)					
'17.12.29.	66,658 (100%)	31,274 (46.9%)	10,822 (16.2%)	22,050 (33.1%)	22,050 (33.1%)	-	2,512 (3.8%)
		42,096 (63.1%)					
'18.4.23.	66,523 (100%)	30,171 (45.4%)	11,623 (17.5%)	22,169 (33.3%)	22,169 (33.3%)	-	2,560 (3.8%)
		41,794 (62.9%)					

그러나 헌법재판소에 의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구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은 「정신건강복지법」 제43조 제1항으로 개정되었으나, 표현만 약간 바뀌었을 뿐 내용은 거의 대동소이하여 헌법재판소가 지적한 위헌성이 상당 부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비판이 많다.³⁵⁰⁾ 「정신건강복지법」은 정신질환자가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입원 신청서를 정신의료기관의 장에게 제출함으로써 그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을 할 수 있는 동의입원(제42조)을 신설하였는데, 동의입원이 자의입원으로 분류되어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과 동시에 자의입원율이 증가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정신건강복지법」은 평가입원 때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등에 소속된 2명 이상의 정신과전문의(국립·공립의 정신의료기관등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정신의료기관등에 소속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의 일치된 소견이 있는 경우에만 계속입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법 제43조 제4항), 현장에서는 이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정부는 이미 이런 상황을 예상한 듯 예외 규정을 법률에 규정했고(법 제43조 제11항) 이를 근거로 2018. 12.까지 예외조항을 적용하여 같은 기관의 정신과전문의

350) 방승주, 앞의 글, 81-82.

2명의 일치된 소견이 있는 경우에도 계속입원을 시키도록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정신의료기관’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병원을 포함하여 전국의 490개소의 정신의료기관 중 333개의 기관을 평가입원 시의 추가 진단의 자격이 있는 ‘지정정신병원’으로 하고 있다. 이것은 독립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확보하기 위해, 2차적인 추가진단제도를 도입한 범위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³⁵¹⁾

비자의입원의 절차와 관련해, 보호입원등의 절차에 있어서 환자 본인의 자기 결정권은 여전히 고려되지 않고 있다. 정신질환이 있다고 곧바로 환자의 이성적 능력이 손상된 것으로 간주할 수 없으므로, 환자의 치료거부가 비이성적 상태에서 비롯되었는지 따로 평가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정신건강복지법」은 이와 관련된 아무런 규정이나 장치를 두고 있지 않다. 구법 제정 시 많은 참고를 한 일본의 정신보건복지법의 경우, 유사한 제도로 소개되고 있는 ‘의료보호입원 제도’(33조)는 보호자의 동의와 의사의 진단 외에도 ‘정신장애로 인해 자의입원이 가능하지 않은 상태로 판정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정신장애인의 정신과입원치료에 대한 자기결정권 침해가 다른 강제입원등과 치료에 있어서의 인권 침해의 시작이라는 점을 생각할 때, 모든 강제입원등제도를 폐지할 수는 없지만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³⁵²⁾

입원적합성위원회제도는 각 국립정신병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안에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보호입원등과 행정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입원사실을 3일 이내에 위 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고, 위원회는 입원의 적합성 여부를 1개월 이내에 판단하도록 하는 등 입원등의 단계에서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한 절차이다(「정신건강복지법」 제45조~제49조). 서면심사가 원칙이나 입원등을 한 환자의 신청이나 위원장의 직권에 한해서 대면심사를 실시한다. 강제입원등 절차에서 청문 및 진술의 기회, 강제입원등에 대한 불복, 부당한 강제입원등

351) 조성용, “정신건강복지법의 주요 쟁점과 실태 및 문제점”, 정신건강제도와 인권·정신건강법률 국제심포지엄, 국가인권위원회·국회의원 이명수 보건복지위원장·대한변호사협회 (2018), 147-148.

352) 조성용, 앞의 글, 147.
이에 대해 2018. 10. 25. 제4차 FGI에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염형국 변호사는 “궁극적으로는 정신장애인들도 장애인복지체계에 들어가서 절차를 거쳐서 시설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에 대한 ‘사법심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비해 예외적 대면 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가 비사법기관이라는 점에서 후퇴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된다.³⁵³⁾ 또한 독립성이 보장되기 힘들고 구성원이 전문성을 갖추기 어려울 수 있으며, 심사 시에는 입원 시 필요한 서류구비 여부나 2인의 진단의사의 소견을 바탕으로 판단하게 되어 기존의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서류심사와 동일한 역할을 하게 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³⁵⁴⁾

(다) 병원·특수시설 내에서 벌어지는 자유 박탈 점검

보건복지부는 공공후견인의 정기적 모니터링 지원, 정신의료기관 평가·인증시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을 평가지표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인신보호법 제3조에 의해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법인 또는 개인, 민간단체 등이 운영하는 수용시설에 수용·보호 또는 감금되어 있는 자는 법원에 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3) 해외 현황³⁵⁵⁾

(가) 유럽연합 회원국의 강제입원심사제도

강제입원제도(정신보건법)의 목적(환자의 건강 및 안전, 타인 및 공중의 안전 보호)과 그 요건(정신질환으로 인한 자·타해 위험, 침해가 적은 다른 대안적 조치의 부재, 치료필요성)은 우리의 강제입원제도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입원심사(결정)기관을 보면, 유럽연합 회원국의 다수는 독립성과 중립성이 있는 법원(court)이나 심판원(tribunal)을 입원심사기관(입원결정기관)으로 두고서 필요적 심문(청문)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즉, 입원에 대한 평가기관(정신과 전문의)과 입원에 대한 결정기관을 분리하고 있다. 입원결정기관이 법원이나

353) 2018. 10. 25. 제4차 FGI에서 엄형국 변호사는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가 올해 5월부터 시행 중인데, 원래 계획보다 1, 2년 늦춰진 것이다. 시행은 하고 있으나, 서면심사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실효적인 구제 역할을 하는지는 의문이다.”라는 견해를 제시했다.

354) 조성용, 앞의 글, 151-152.

355) 신권철, “강제입원 위헌결정의 의미와 향후 과제”, 서울시립대학교 서울법학 제24권 제4호 (2017), 14-17.

심판원인 유럽연합 국가의 경우 대부분 필수적 대면 심문(청문)절차를 두고, 국선변호인 등 입원심사절차에서 절차조력인을 두고 있다.

[표-34] 유럽연합 회원국(총 27개국)의 강제입원 제도 비교

내용	EU 강제입원 제도
정신보건법의 목적	환자와 타인(공중)의 생명, 건강 및 위험방지(EU 다수의 국가)
강제입원 및 치료의 요건	1.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EU 27개국 공통) 2. 자신 또는 타인에 대한 중대한 위해 가능성(12개국) 3. 치료필요성(13개국) 4. 덜 제한적인 조치가 없을 것(18개국)
입원평가 기관	1. 정신과 전문의(대부분의 EU 회원국) 또는 의사(3개국) 2. 평가의사 1명(9개국), 2명(EU 국가의 과반수), 3명(2개국)
입원결정 기관	1. 법원이나 심판원(21개국) 2. 의료인의 결정 후 법원의 승인이나 연장
필수적 청문(대면)절차	EU 회원국 대부분 규정
입원(치료) 종료결정	1. 판사가 결정(프랑스, 오스트리아) 2. 병원과 판사의 협조를 통한 결정(독일 등) 3. 시장이 결정(이탈리아)
국선변호인 제공	1. 자동적·필수적 제공(벨기에 등 다수 국가) 2. 경제적 형편이나 사선 변호인 미선임 여부에 따라 국선변호인 지원(일부 국가)

(나) 다른 주요국의 강제입원심사제도

1) 미국

미국은 정신보건심판원제도를 가진 영국과 달리 법원이 강제입원심사기구가 된다. 미국의 경우 각 주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우리의 강제입원에 해당하는 민사수용(civil commitment)절차를 각각의 주법으로 규정하고, 대부분 판사(magistrate, judge 등)가 입원심사기구로 역할을 한다. 이러한 사법적 절차를 거칠 경우 대부분 주법에 항소할 권리, 변호인의 지원, 입원요건에 대한 증명의 정도, 입원신청권자 등이 규정되어 있다. 다만, 판사가 입원심사를 하는 시기는 각 주마다 다양하고, 최초의 짧은 입원기간은 의료인에 의해서도 가능하고, 더 장기로 연장하기 위해서 판사의 입원심사를 받는 경우도 있다.

2) 호주

호주의 경우에는 영국법의 전통을 이어받아 각 주마다 대체로 정신보건심판원(mental health tribunal)을 두어 입원심사를 한다. 호주의 정신보건심판원은 대체로 정신과 의료인, 법조인, 중립적 이해관계인 3명으로 구성되고, 사법적 절차인 심문(청문)절차를 거쳐 입원을 결정한다. 다만 심판원의 심사는 각 주별로 일정한 기간(예컨대 4주) 뒤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국 일정한 기간 이상 입원을 하는 경우에만 심사의 대상이 된다.

3) 일본

일본의 경우에는 1987년 정신보건법을 개정하면서 입원심사기구로 각 도도부현 산하에 정신의료심사회를 두고 있다. 정신의료심사회는 의료인(정신보건지정의), 법조인,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하여 5명으로 구성되며, 가족에 의한 입원인 의료보호입원(우리의 보호입원에 해당), 도도부현 지사의 행정조치에 의한 입원(우리의 행정입원에 해당)에 대한 최초입원과 입원연장을 심사한다. 일본의 경우도 우리와 유사하게 대부분 서면심사이고, 서면심사를 통한 퇴원율은 극도로 저조하다.

4) 대만

대만은 1990년 정신위생법을 제정하여 강제입원제도를 규율하고 있다. 강제입원심사기구로는 강제지역사회치료심의회를 두고 있다. 대만의 강제입원절차는 지방자치단체의 주관기관이 자·타해 위험이 있는 중증환자를 긴급입원시킨 후 2명의 전문의 감정을 거쳐 계속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강제지역사회치료심사회에 강제입원치료의 허가를 5일 이내 신청해야 하고, 허가를 받은 경우 60일 동안 입원을 시킬 수 있다. 강제입원된 환자나 보호자는 강제입원에 불복하는 경우 정신위생법에 따라 가정법원에 입원의 중지를 구하는 재판을 구할 수 있다.

(4) 제언

첫째, 입원·입소시 신체의 자유를 제한당하는 당사자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당사자에 대한 사전고지, 청문 및 진술의 기회, 강제입원에 대한 불복,

부당한 강제입원에 대한 사법심사, 국가 또는 공적 기관에서 제공하는 절차보조인의 조력과 같은 절차가 보장될 필요가 있다.³⁵⁶⁾

둘째, 입원평가기관과 입원심사기관을 분리하여 사법부가 입원심사를 담당하도록 하여야 한다. 비자의 입원의 경우, 법 개정 이후에도 여전히 ① 보호의무자 2인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신청과 ② 소속이 다른 정신과전문의 2인의 일치된 소견이 있으면 가능하다. 보호입원제도가 사인에 의한 사인의 사실상 구속·감금의 가능성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최소한 보호의무자가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강제입원을 시킬 경우에는 법관의 면전에서 본인의 의사가 어떠한지를 분명하게 보이고, 과연 정신과의사의 의견이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사가 심사하여 실제로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법관의 사전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급박한 경우에는 사후적으로라도 법관의 허가를 바도록 규율해야 한다.³⁵⁷⁾

라. 보건서비스 등의 제공 보장

(1) 정부의 이행 현황

보건복지부는 정신질환자의 인권강화를 위해 「정신보건법」을 전부 개정(2016. 5.)하여 「정신건강복지법」이 시행되었고, 동법의 현장 안착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정신건강복지법」 제6조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은 정신질환자등이 입원 등을 하거나 사회적응을 위한 훈련을 받으려고 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정신질환자 등과 그 보호의무자에게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권리 및 권리행사의 방법을 알리고, 그 권리행사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정신건강증진시설에 갖추두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정신질환자등의 치료, 보호 및 재활과정에서 정신질환자등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당사자의 자유롭고 고지된 동의를 바탕으로 정신보건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향

356) 이에 대해 2018. 10. 25. 제4차 FGI에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엄형국 변호사는 “보건복지부에서 절차보조인 제도를 준비 중이다. 강제입원 환자에게 절차 및 권리를 안내해 주고, 당사자가 진술하지 못하는 부분을 보조하는 역할을 상정하고 있다. 장애인권익보호기관이나 당사자단체를 중심으로 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담당하도록 한다. 이는 대부분 의료기관인데, 입원시키는 주체에게 말도록 하는 것은 문제”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357) 방승주, 앞의 글, 79-80.

후 공공후견인의 정기적 모니터링 및 절차보조인 제도 도입 등을 통해 권리 고지 및 정신질환자의 자발적 의사결정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신건강복지법」 제6조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시설(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의 장은 정신질환자등이 입원 등을 하거나 사회적응을 위한 훈련을 받으려고 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정신질환자등과 그 보호의무자에게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권리 및 권리행사 방법을 알리고, 그 권리행사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정신건강증진시설에 갖추어야 두어야 한다.

또한 같은 조에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은 정신질환자등의 치료, 보호 및 재활 과정에서 정신질환자등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향후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중 보호의무자가 없는 경우 의사결정 및 재산보호 등 권리보호를 위해 공공후견인의 정기적 모니터링 및 입원 시 의사결정, 투약 등 치료과정에서 환자의 입장을 반영한 의견을 제시하여 지원할 수 있는 절차보조인 제도 도입 등을 통해 권리 고지 및 정신질환자의 자발적 의사결정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그리고 정신의료기관 평가·인증시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을 평가지표(환자의 자·타해 등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 방안 마련, 환자 폭행 금지, 사생활 보호, 병원 내 학대 및 폭행피해자 또는 의심환자를 위한 보고 및 지원체계 등)에 반영하여 추진 중이다.

보호자가 없는 경우 의사결정 및 재산보호 등 정신질환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공공후견인 정기 모니터링 및 절차보조인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2017. 5. 30. 정신건강복지법 시행에 따라,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중 무연고 중증 정신질환자의 입소 연장 등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법원의 결정에 따라 중증 정신질환자 486명이 2017. 6.부터 한정후견(임시후견 포함)을 실시하고 있다. 후견인의 업무는 월 2회 이상 정신질환자 방문 및 상담, 법원 관련 업무, 입소연장, 입원결정 동의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후견인 활동지원비 1인당 월 200,000원씩 총 410,000,000원의 예산을 국비에서 지원하고 있다. 또한 2018. 10.부터 의사 표현의 제약으로 정신질환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절차보조인 시범사업을 실시하며,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전문인력(절차보조인)을 통해 정신질환자의 의사가 치료·입원·퇴원 등의 전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자발적 의사 결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절차보조 제도 실시 방안에 관한 연구용역 진행(2018. 3.~), 연구 결과 및 전문가 자문을 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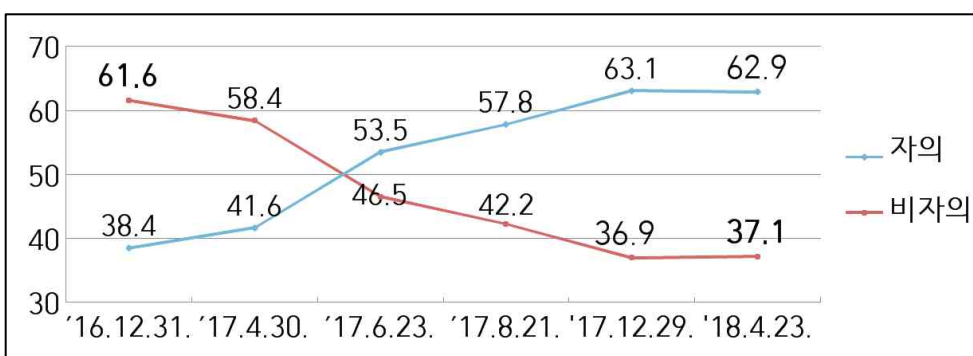
탕으로 2~3개 자치단체에서 시범 실시할 예정(2018. 10.~)이다.

2017. 5. 30. 「정신건강복지법」 시행에 따라, 2017. 5. 30.부터 정신질환자 인권 보호를 위한 입·퇴원 신고, 입원 적합성 진단을 위한 추가진단의사 배정 등을 위해 입·퇴원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고 있다. 입·퇴원관리시스템 운영을 통해 전국 정신의료기관의 모든 비자의입원(전수)에 대한 현황 파악이 중앙 정부에서 실시간으로 가능하다. 정부 자료에 의하면, 전체 입원 환자 66,523명 중 비자의입원 37.1%, 자의입원 62.9%으로 집계되었다.

또한, 2016년 정신건강 종합대책에 따르면, 정신질환자의 자기결정권 강화 관련해서 강제 입원 및 치료 기준 재정비를 위해 강제 입원 및 치료 등에 대하여 원칙적 금지를 선언하고, 예외적으로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시행하며, 해당 내용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의료인 및 종사자 등 교육을 하였다. 또한 중증 정신질환자 이사결정 지원 강화를 위해 민법상 성년후견인이 부양 의무자에 우선하여 입원 동의를 하도록 하여 가족 간 불화, 재산문제 등으로 인한 부적절한 입원을 제재하였고, 성년후견인 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 차원의 성년후견인 양성, 교육 및 지원제도 등 관련 제도를 구축하였다.

(2) 정부의 이행에 대한 평가

2018. 4. 기준 비자의입원 유형 비율은 37.1%으로, 2016. 12. 기준 61.6%와 비교하여 24.5%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건강복지법」이 개정되어 정신장애인의 자유가 일부 보장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정신장애인 당사자들의 자유롭고 고지된 동의에 기초

한 정신보건서비스가 실행되고 있는지는 검토가 필요하다. 당사자들의 의사확인 절차가 제대로 확보되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가 존재하지 않고, 절차보조인의 관여 가능성 등도 현실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인신보호법 제3조에 의해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법인 또는 개인, 민간단체 등이 운영하는 의료시설·복지시설·수용시설·보호시설에 수용·보호 또는 감금되어 있는 자는 법원에 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 이는 인신보호 관제도 도입 및 관계부처 협의를 통한 내실화를 마련한 결과이다. 또한 2016년 정신건강 종합대책'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국립병원에 '특별사법경찰관' 부여를 검토하여 인권침해, 불필요한 회전문식 재입원 등 조사, 처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병원 및 특수시설에서 벌어지는 자유의 박탈을 점검하기 위해 정신의료기관 평가·인증시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을 평가지표에 반영하여 추진 중에 있다. 환자의 자·타해 등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 방안 마련, 환자 폭행 금지, 사생활 보호, 병원 내 확대 및 폭행피해자 또는 의심환자를 위한 보고 및 지원체계 등을 평가지표에 반영하고자 검토하고 있다. 또한 2015년부터 매년 보건복지부 주관, 정신의료기관 평가 인증원이 정신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조사를 하고 있다(2015년 114개소, 2016년 100개소, 2017년 209개소 실시).

또한 보건복지부, 지자체, 인권위원회에서는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왔다. 보건복지부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전국 정신건강증진시설 현장 점검을 위해 정신건강증진시설 안전점검을 통해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등 안전 및 인권상황 점검을 실시하였다. 2016. 7.에는 경기도 모 정신병원에서 특별 점검을 실시하였다(2016. 7. 18. ~ 2016. 7. 27.). 지방자치단체 역시 정기적으로 점검을 진행하였고, 인권위원회에서도 정신병원 등 정신질환자 입소 현황에 대한 각종 인권침해 현황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관계부처에 권고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다.

(3) 제언

「헌법」상 권리주체로서 정신장애인이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절차적 권리의 보장 및 실질적으로 권리 행사가 이루어 질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객관적인 모니터링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공공후견인 제도를 활

성화하여 절차보조인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마. 공정한 재판 및 적법절차 보장

(1) 정부의 이행 현황

법무부에 의하면, 대한민국 형사사법 제도는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에 필요적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하고(「형사소송법」 제33조), 농아자인 경우에는 수화 등으로 통역을 하도록 하는 등(「형사소송법」 제181조) 장애인에 대한 공정한 재판과 적법절차를 보장해주는 절차적인 편의를 구축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2) 정부의 이행에 대한 평가

(가) 관련 법 규정

「헌법」 제27조

- ①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③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⑤ 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헌법」 제12조

- ④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헌법」 제11조 제1항

-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 ① 공공기관 등은 장애인이 생명, 신체 또는 재산권 보호를 포함한 자신의 권리를 보호·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장애인에게 제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직무를 수행하거나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가, 신고, 인가 등에 있어 장애인을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제한·배제·분리·거부하는 경우
 2. 공공사업 수혜자의 선정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거나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 ④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를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⑤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장애인이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에 참여하기 위하여 장애인 스스로 인식하고 작성할 수 있는 서식의 제작 및 제공 등 정당한 편의 제공을 요구할 경우 이를 거부하거나 임의로 집행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 ⑥ 사법기관은 사건관계인에 대하여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장애인에게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음과 그 구체적인 조력의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법기관은 해당 장애인이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기를 신청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⑦ 사법기관은 장애인이 인신구급·구속 상태에 있어서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 및 적극적인 조치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⑧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형사소송법」 33조(국선변호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 4. 피고인이 농아자인 때
- 5.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

「형사소송법」 제244조의5(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자에 대한 특칙)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의자·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 1. 피의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때
- 2. 피의자의 연령·성별·국적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심리적 안정의 도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나) 장애 유형에 따른 사법지원의 필요성

1) 지체장애, 뇌병변 장애

지체장애 및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 이동능력 또는 이동수단이 문제된다. 이들에게는 보조인 또는 활동보조인을 대동하지 않은 경우 보조인력 제공이 필요하다. 중증 지체장애인,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 언어기능 장애가 오는 경우가 있으므로 보조인력, 조음장치, 특수키보드, 특수 마우스, 기타 입력장치 제공도 필요하다.

활동보조인에 대한 대리, 동행 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 배제, 분리, 거부 등의 방법으로 불리하게 대하거나 정당한 편의제공을 거부하는 행위 및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는 차별로 간주된다. 경증 지체장애인의 경우 이동에 필요한 난간이나 넓은 폭의 계단이 필요하다. 휠체어 이

용 장애인의 경우 경사로를 통한 접근이 필요하고, 법정의 당사자석, 증인석,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석 등의 공간 역시 휠체어를 타고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다. 필요한 경우 일정 간격으로 휴정하는 등 적절한 휴식시간 및 휴게 공간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시각장애

시각장애인의 경우 이동 및 활동 보조가 문제된다. 문자 등 시각적 정보에 대한 접근이 가능해야 하며, 점자, 인쇄물 음성변환출력기, 화면낭독프로그램, 음성자료, 전자파일 확보 등도 필요하다.

3) 청각장애, 언어장애

수화 통역 서비스 제공 및 문자통역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

4) 지적장애, 발달장애, 정신장애 등 정신적 장애

지적장애인의 재판절차 자체 및 재판에 관하여하는 사람들의 진술에 대한 이해 정도, 지적장애인의 진술이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인지 여부, 지적장애인 진술의 신빙성을 얼마나 담보할 수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 지적장애인의 진술과 관련하여 적절한 수준의 전문가 조력을 받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5) 중복장애

사법지원이 필요한 특정 장애인의 장애상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다) 장애인 사법지원 이행 현황의 문제점

1) 체포 및 구속 단계

「헌법」 제12조 제5항(변호사 조력권),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체포 절차), 제85조 제1항 및 제200조의6(영장 제시), 「인권보호수사준칙」 제11조(피의자 체포 구속하는 공무원의 소속과 성명 제시) 등의 규정이 존재한다. 그러나 실무상 장애인 체포 시 영장을 제시하지 않거나 체포자의 신분이나 소속을 밝히지 않는

경우가 있고, 청각장애인에게 체포 이유 및 범죄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임의동행 한 뒤 조사 후 긴급체포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변호인 선임권, 가족 등 연락받을 사람 지정권 등이 고지되지 않는 사례도 발견된다. 특히 지체장애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휠체어나 목발 등 보장구 없이 연행하여 화장실 이용 등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다.

2) 경찰 및 검찰의 수사 단계

장애인에 대한 수사 시 유도심문과 위압적 추궁이 문제된다. 피의자에 대해 욕설 및 반말, 신체적 폭력을 당하는 사례, 조서 내용 변경 요청을 묵살하는 사례, 피의자가 글을 모르거나 시력이 좋지 않아 진술내용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 보조인이나 돋보기를 제공하지 않거나 조서 내용 확인할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청각장애인 피의자들이 수화통역사 없이 진술하게 하는 사례, 수화통역사가 장애인의 의사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사례, 유치장이나 구치소에서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사례도 지적된다.

3) 공판단계

장애인들은 재판절차의 어려움, 법률용어나 절차에 대한 두려움 및 불안함을 가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 공판과정에서 장애유형에 따른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에 대한 배려가 없고, 재판과정에서 판사와 검사가 고압적인 태도로 수치심을 주거나 반말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4) 변호인 선임, 접견 및 입회권

대체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하고 있으나, 체포 후 상당시간 경과 후에 변호사가 선임되어 변호인 입회하에 진술한 권리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고지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국선변호인 다수가 피의자의 장애나 상태를 잘 이해하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큰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5) 소결

형사사법기관에서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부족하고 때문에 장애인이 형사사법기관에서의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 적절한 법률서비스의

부재, 적법절차 미준수도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3) 제언

(가) 비구금적 수단의 활용

범죄와 범죄자의 위험성을 고려하면서 형사절차의 가장 초기 단계에서부터 장애인 범죄자를 형사절차에서 벗어나게 하고 적절한 치료와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이 구금되는 경우 합리적 편의의 제공과 공공에 대한 위험성을 함께 고려하여, 장애인 범죄자에 대한 구속과 구금형은 최후의 수단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장애인에 대한 지역사회에서 치료와 감독이 결합된 비구금적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하고, 장애인 피고인에 대해서 장애의 유형과 정도, 인성, 생활환경, 지적능력, 신체능력, 가정형편 등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통하여 형벌과 형량을 결정하는 판결 전 조사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나) 법률적 지원체계 강화

장애인 피의사건에서 국선변호인 조력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어, 보조인 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수사 및 재판의 각 단계에서 장애인의 인권보호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보조인의 자격범위를 피의자, 피고인과 신분관계에 있는 자로 제한하고 있으나, 보조인이 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장애인 관련 단체의 소속원이나 장애인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춘 사회복지사도 보조인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현행법상 장애인 피고인, 피의자의 경우 신뢰관계인의 동석은 임의사항으로 규정되고 있으나, 수사단계에서도 장애인이 심리적 불안 등으로 인하여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고, 수사단계에서 작성된 조서가 공판단계에까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피의자신문단계에서 신뢰관계인의 동석을 의무화하거나 적어도 변호인의 참여권을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

수사기관에서 장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신청이 있으면 동석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의무화하거나, 동석권이 있다는 사실을 심문에 앞서 피의자에게 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장애인의 수사과정에서 국선변호인을 지정하여 일부 장애유형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피의자신문 시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보

장해야 할 것이다. 특히 장애인에 대한 국선변호인은 장애인 사건에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들로 인력풀을 구성하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 조서작성방법의 개선

조사나 재판서 등 관련 서류는 시각장애인 피의자가 직접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작성되어야 한다. 즉, 음성지원시스템을 갖춘 컴퓨터를 활용하거나, 저시력 장애인을 위한 글자확대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진술내용의 정확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라) 직원교육

장애인 피의자에 대한 수사나 재판은 범죄사실의 확인에 앞서 당해 장애인이 가진 장애에 대한 이해에서 출발해야 한다. 따라서 장애인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인권 교육이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반드시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형사절차상 장애인 인권교육을 위하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단체, 학계 등이 참여하여 교재를 개발할 필요도 있다.

(마) 편의시설 개선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장애인이 방문 시 실질적 이동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은 경사로가 확보된 곳에서 수사 및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장시간 수사를 받는 경우 착석에 불편함이 없도록 공간을 배정하고 별도의 의자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바) 구금시설에서 장애인 처우 개선

장애인 수용자의 처우에 대한 종합 대책 마련, 교정 공무원에 대한 교육 및 감독, 구금 초기부터 사법접근성 보장 등이 필요하다. 입소 시 휠체어나 보장구 등의 소지 허용, 의료와 교육을 포함한 특별한 요구 확인, 교도소와 교도소 규칙에 대한 정보를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정신장애인에 대한 자살 및 자해 예방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정신장애인 수용자를 위한 특별한 치

료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도 이루어져야 한다.

(사) 발달장애인에 대한 불심검문과 임의동행 제도 개선

발달장애인에 대해서는 임의동행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소통 조력인이 없는 상황에서 임의동행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 만일 임의동행으로 경찰서에 간 경우 의사소통 조력인을 통하여 임의동행의 의미를 다시 설명하고 바로 퇴거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직무규칙」 제53조는 체포·구속할 때 유의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4항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 등에 대하여는 사후에라도 체포나 구속 시의 고지사항에 대하여 당사자뿐 아니라 신뢰관계 있는 자의 이해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임의동행에도 이 규정을 유추적용할 필요가 있다.

바. 재판 부적합 판정 폐지

(1) 정부의 이행 현황

법무부는 ‘재판 부적합 판정’제도는 한국에 존재하지 않는 제도에 대한 권고로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대한민국 형사사법 제도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는 벌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능력이 미약한 사람의 행위는 형을 감경하도록 하는 제도는 있으나(형법 제10조), 장애인에 대한 재판 불가 판정 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2) 정부의 이행에 대한 평가

“재판부적합(Unfitness to stand trial)”이란 영미 형사법에서, 피고인이 정신장애로 인해 기소된 사실을 방어하지 못하거나 당해 사건에서 변호사에게 원하는 진술을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예를 들어 피고인이 ① 자신이 법정에서 있다는 사실, 법정에서 있는 사람이 누군지, 왜 그들이 법정에서 있는지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② 어떤 사실로 기소되었는지, 기소사실에 대해 어떤 답변을 할 수 있는지, 유죄가 선고된 것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③ 당해 사건에서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 변호인과 기본적인 용어로도 대화하지 못하는 경우이다.

판사는 위의 ① 내지 ③이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적합성 평가(fitness assessment)”를 명하는데, 법률에 의해 모든 피고인은 심문을 통해(after a fitness hearing) 재판 부적합 판단을 받지 않는 이상 재판에 적합하다고 추정되는데, 이를 “재판 적합 추정”(presumption of fitness)이라고 한다. 여기에서 “재판 부적합 판정(the declaration of unfitness to stand trial)”이란 판사가 적합성 평가를 통해 당해 피고인에 대한 재판 적합 추정을 번복하는 판정을 내리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상 소송능력은 영미법상 ‘재판 부적합’과 유사한 개념으로 보이나, 법원에 의해 소송무능력이 결정되는 ‘재판 부적합 제도’와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법무부의 입장은 일견 이해가 된다.³⁵⁸⁾

다만 장애인권리위원회는 우리나라의 「형사소송법」상 소송능력제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상 소송능력은 소송당사자가 유효하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 즉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자기의 소송상의 지위와 이해관계를 이해하고 이에 따라 방어행위를 할 수 있는 의사능력을 의미한다(대법원 2009. 11. 19. 선고 2009도6058 전원합의체 판결).

11. 제15조 고문 또는 잔혹한,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로부터의 자유

가. CRPD 제15조

제15조 고문 또는 잔혹한,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로부터의 자유

1. 그 누구도 고문 또는 잔혹한,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특히, 그 누구도 자발적인 동의 없이 의학적 또는 과학적 실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2. 당사국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장애인이 고문 또는 잔혹한,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인 대우를 받거나 처벌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효과적인 입법적, 행정적, 사법적 또는 그 밖의 조치를 취한다.

358) 한국에는 재판 부적합 판정 제도가 없지만, 위원회가 이 제도의 폐지를 권고한 것은 치료감호 절차에 대한 개선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유엔장애인권리협약 NGO 보고서 연대, “제1차 UN 장애인권리위원회 한국 심의 최종견해 설명회 자료집” (2014), 59.).

나. 최종견해와 쟁점목록

(1) 최종견해

29. 위원회는 정신병원 내에서 정신장애인이 동방 감금과 상습적인 구타, 강박, 과도한 약물치료 등을 포함한 잔인하고,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로 간주되는 상황에 처해 있음에 우려를 표한다.
30. 위원회는 당사국이 장애인이 잔혹한,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 및 처벌에 처해지도록 하는 강제치료를 폐지할 것을 촉구한다. 시설수용이 지속되는 한, 위원회는 당사국이 장애인단체의 참여를 보장하는 효과적인 외부의 독립적인 모니터링 메커니즘의 구축을 통하여, 정신병원에 수용되어 있는 장애인을 모든 유형의 폭력, 학대 및 혹사로부터 보호할 것을 촉구한다.

(2) 쟁점목록

- 15-1. 신체적 제약, 격리 및 강제 약물 처방을 포함하여 장애인이 잔혹하고 비인간적이며 굴욕적인 치료와 처벌을 감내해야 하는 강제 치료 폐지와 관련한 당사국의 진척사항을 설명하십시오.
- 15-2. 정신병원에 수용된 장애인이 시설 퇴소 전까지 고문을 비롯해 잔혹하고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각종 치료를 받지 않도록 효과적인 보호조치를 강구하고, 특히 장애인 단체의 참여를 보장하는 독립적이고 실효성 있는 외부 감시 기구를 구성하는 것과 관련한 당사국의 진척사항을 설명하십시오.

(3) 실태조사의 대상 쟁점

제15조에서는 ① 장애인에 대한 강제치료 폐지, ② 독립적인 모니터링 메커니즘 구축에 관한 쟁점을 다룬다.

다. 강제치료 폐지

(1) 정부의 이행 현황

(가) 보건복지부는 2018. 1. CRPD 제1차 국가보고서 권고사항 이행 현황에서, 의사능력이 없는 정신질환자의 경우 의사결정 능력을 회복할 수 있는 수준까지의 치료 등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최종견해의 권고사항에 대한 일부·조건부수용 의사를 밝혔다.

(나) 보건복지부는 CRPD 제2·3차 병합 국가보고서(초안)에서 아래와 같이 답변하였다.

첫째, 보건복지부는 「정신건강복지법」 전부 개정·시행을 통해, 정신질환자 치료에 있어 잔혹하고 비인간적 강제치료의 여지가 없도록 하였다. 동법 제68조(입원등의 금지등)에 의해 정신의료기관등에 강제입원 및 강제입원 기간을 연장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또한 동법 제72조(수용 및 가혹행위 등의 금지)에 의해 정신질환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시설 외의 장소에 수용할 수 없으며, 폭행을 하거나 가혹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둘째, 「정신건강복지법」 제7장 ‘권익보호 및 지원 등’에 따라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 내에서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인권교육 실시 및 인권침해 관련 지도·강화의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능력이 없는 정신질환자의 경우 의사결정 능력을 회복할 수 있는 수준까지의 치료 등의 개입이 불가피하게 필요하며, 이에 대해서는 정신의료기관 내 기존 강제치료와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재검토하여 강제치료 수준,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계획에 있다. 격리·강박의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객관적 기준을 제시할 예정(18년)이다.

셋째, 「정신건강복지법」 제73조에 의하여, 정신질환자에 대한 전기충격요법(electronic shock therapy), 인슐린혼수요법(insulin lethargy therapy), 마취하최면요법(hypnosis under anesthesia therapy), 정신외과요법(psychiatric surgery), 정신질환증상 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신체 일부 절제술 및 정신질환의 증상교정을 위한 혐오자극법을 활용한 특수치료가 필요한 경우, 해당 정신의료기관에서 구성된 협의체에서 특수치료 여부를 결정하되,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 동의를 얻어 시행한다. 특수치료 여부를 결정하는 정신의료기관에서 구성된 협의체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2명을 반드시 포함하되, 「정신건강복지법」상 정신건강전문요원,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심리학, 간호학,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을 포함하여 3~5명으로 구성한다. 특수치료는 구성원의 2/3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시행하고,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협의체 회의내용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 작성한 날로부터 3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또한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에 의한 동의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며, 특수치료에 대한 협의체 결정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결정사항에 대해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 「정신건강복지법」에서는, 특수치료 시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부

분에 대해 원칙적으로 본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구 정신보건법에는 본인의 동의라는 명시적 문구가 없었음), 예외적으로 본인의 의사능력이 미흡한 경우에 한하여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도록 요건을 강화하였다.

(2) 정부의 이행에 대한 평가

「정신건강복지법」은 응급인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대면 진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등에 입원등을 시키거나 입원등의 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법 제68조 제1항). 또한,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정신질환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시설 외의 장소에 정신질환자를 수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이나 그 종사자는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입원등을 하거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폭행을 하거나 가혹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법 제72조).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을 한 사람에 대한 전기충격요법·인슐린혼수요법·마취하취면요법·정신외과요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치료(이하 “특수치료”라 한다)는 그 정신의료기관이 구성하는 협의체에서 결정하되,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에게 특수치료에 관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본인의 의사능력이 미흡한 경우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법 제73조 제1항).

정부의 답변은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으로 당해 규정을 마련한 의의만 있을 뿐, 이것이 실효적으로 이행되고 있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답변이 부족하다. 정신건강복지법 시행 전이기는 하지만, 강제로 정제 모를 약물을 투여하는 등 강제입원 피해자의 사례가 보도된 적 있다.³⁵⁹⁾ 단순히 강제치료를 금지하는 법 조항을 두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가혹행위 금지, 특수치료 제한 등에 대한 개정법 조항들이 준수되고 있는 지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감독이 필요하다.

359) 함께걸음, “강제입원·감금·강제치료 자행하는 국가폭력 ‘정신보건법 24조 폐지하라’”, (2013. 12. 31. 11:13) <http://www.cowalk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972>.

라. 독립적인 모니터링 메커니즘 구축

(1) 정부의 이행 현황

(가) 보건복지부는 2018. 1. CRPD 제1차 국가보고서 권고사항 이행 현황에서, 정신의료기관의 개방성을 확보하고 의료기관 내 인권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외부의 독립적인 모니터링 메커니즘 구축에 대해 수용의사를 밝혔다.

(나) 보건복지부는 CRPD 제2·3차 병합 국가보고서(초안)에서 아래와 같이 답변하였다.

첫째,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호를 위해 보건복지부 및 국립정신병원의 관련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였으며(2017. 7. 19.), 이를 통해 인권침해 등을 조사하고 적발 시 처분할 예정이다.

둘째, 강제치료와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재검토하여 강제치료 수준,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격리·강박의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 등)하는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객관적 기준을 제시하고자 하고 있다.

셋째, 국립정신병원에 설치되어 모든 비자의 입원·입소에 대하여 최초 입원 후 1개월 이내에 적합성을 판단하는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를 통해 정신질환에서 회복한 당사자 등이 정신질환자의 정신병원에서 인권침해여부 등 점검에 참여할 수 있게 했다. 적합성 판단을 내리는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는 「정신건강복지법」 제46조에 따라 그 위원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정신질환자 가족, 법조인 등 뿐만 아니라, 정신질환을 치료하고 회복한 사람으로서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이 참여할 수 있어, 정신장애인 당사자의 참여기회를 보장한 독립적, 실효적인 외부위원회로 볼 수 있다.

(2) 정부의 이행에 대한 평가

(가) 현황 및 문제점

「정신건강복지법」 제66조³⁶⁰⁾에 따라 보건복지부등에 의한 정신건강증진시설

360) 제66조(보고·검사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설치·운영자의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하거나 보건소로 하여

에 대한 행정지도가 실시되어 왔다. 행정지도는 두 가지 방법으로 수행되었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민원이 제기되었거나 전년 말을 기준으로 인력기준 위반 병원을 선정하여 민간정신의료기관 지도점검 지침을 시달하면 5개 국립정신병원을 중심으로 대상병원을 권역별로 구분하여 정신과의사, 간호사, 관계 공무원 등이 팀을 이루어 1년에 1회 점검하는 방식이다. 다른 방법의 지도점검은 보건복지가족부의 지시에 따라 시·도, 시·군·구에 계획에 하달되어 관내 정신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군구 자체적으로 지도·점검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는 2007년부터 5개 국립정신병원으로 하여금 각 권역별 정신의료기관에 대해 정신보건법 준수 여부, 정신질환자 권익침해여부, 적정치료 및 장기입원 여부 등을 조사하고, 지도·감독하도록 하고 있다.³⁶¹⁾

보건복지부등 외 국가인권위원회도 정신의료기관 모니터링을 담당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의결로써 구급·보호시설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24조 제1항). 정신의료기관과 관련하여서는 상임위원 3명으로 구성된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와 상임위원회에서 방문조사 및 조사결과 처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있으며, 정신보건시설의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 구제와 관련한 업무는 장애차별조사과에서 수행하고 있다.³⁶²⁾

금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연 1회 이상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의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운영상황을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공무원과 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하여금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출입하여 입원등을 한 사람을 직접 면담하여 입원등의 적절성 여부, 퇴원등의 필요성 또는 처우에 관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를 한 관계 공무원과 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위원은 그 심사 결과를 지체 없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심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과 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위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심사 결과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에게 그 정신질환자를 퇴원등을 시키도록 명령하거나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⑤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은 제4항에 따라 퇴원등을 시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보건소장과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정신질환자나 보호의무자가 통보하는 것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61) 하유정의 2, “정신보건시설 모니터링을 위한 매뉴얼 개발연구”, 국립서울병원 국립정신보건교육연구센터 (2009), 21.

그러나 현행 모니터링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보건복지부가 국립정신병원을 통해 실시하는 권역별 지도점검은 민간 정신의료 기관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에 문제가 되는 기관을 중심으로 일부에 대해서만 지도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다. 현장방문, 환자 면접 등의 장점을 살리지 못하고 문서 위주의 확인으로 법에 명시된 것과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을 주로 점검하고 있다. 인력 측면에서 정신의료기관 모니터링 업무를 맡고 있는 담당공무원은 여러 업무를 겸임하고 있으며, 순환보직으로 인하여 업무의 전문성을 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지도감독은 1년에 한번 선정된 대상기관만을 방문하여 조사하고 고발 혹은 행정조치만을 취함으로써 수시로 발생하는 환자의 인권침해 문제 발생시에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지도점검에서 제시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한 분석이 제공되지 않고, 결과발표는 점검 후 법률위반에 대한 조치에 치중하며, 지도점검 결과가 정책에 반영되는 기제가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그 실효성이 분명하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모니터링의 경우, 정신보건시설에서의 정신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조사 및 구제업무를 하고 있지만 여러 종류의 다수인 보호시설을 함께 관장하고 있으며, 독립적이고 상시적인 기구이기는 하지만 정기적으로 정신보건 시설에서의 정신장애인 인권보호를 모니터링하지는 않는다.³⁶³⁾

(나) 인권지킴이단 실시 여부

보건복지부는 정신의료기관 개방성 확대를 위해 2018년까지 ‘인권지킴이단’을 구성하여 시설 내 처우, 인권침해 등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애인복지법 제60조의4에 따라, 시설 운영자는 시설 이용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장애인 거주시설’에 시설 이용 장애인 인권지킴이단을 두어야 한다. 그러나 정신의료기관 내 인권지킴이단 설치 근거 규정은 보이지 않는다. 보건복지부에 정신의료기관 시설 내 처우, 인권침해 등 모니터링(“인권지킴이단”) 실시여부, 활동내역에 관해 질의하는 공문을 보냈으나, 아직 회신 받지 못한 상황이다(2018. 11. 6. 기준).³⁶⁴⁾

362) 하유정의 2, 앞의 글, 30.

363) 하유정의 2, 앞의 글, 39.

364) 2018. 10. 25. 제4차 FGI에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염형국 변호사는 “장애인시설에서도 인권지킴이단을 만들었는데 큰 의미가 없다. 정신병원 입원절차에서도 큰 의미가

(다) 특별사법경찰권을 통한 모니터링 실시 여부

보건복지부는 2017. 12. 19. 보건복지부 및 국립정신병원의 관련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였다. 이를 통해 인권침해 등을 조사하고 적발시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특별사법경찰권이 부여된 이후 구체적으로 어떠한 활동을 하였는지에 대한 결과보고는 보이지 않는다.³⁶⁵⁾ 정신건강증진시설에 대해 사법경찰권을 부여 받은 공무원은 동법에 규정된 정신건강증진시설 입·퇴원 또는 입·퇴소, 시설 내 인권침해 및 시설운영에 관한 단속 사무를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라) 공공후견인의 정기적 모니터링 실시 여부

그러나 보건복지부로부터는 공공후견인의 정기적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구체적인 실시계획과 일정을 전달 받지 못했다.

(마) 소결

정신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상시적·전범위적인 인권 침해 모니터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 등에 의한 지도 점검은 ‘독립적’인 외부 기관에 의한 모니터링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이마저도 인권 침해가 아니라 행정 절차에 관한 조사에 집중되어 있다고 보인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독립성이 보장되는 기관이지만 상시적·정기적으로 전범위에 걸쳐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보건복지부가 시행 중 또는 예정이라고 밝힌 정신의료기관 내 인권지킴이단, 특별사법경찰관의 활동 내역은 보이지 않는다.

없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외부인과의 자유로운 소통이 보장되는 것이 중요하다. 장애인옹호기관에서 이의제기를 받아서 가도 소통권이 보장되지 않아서 못 만나고 있다. 이런 것들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권지킴이단이 무슨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365) 이어서 영형국 변호사는 “국립정신병원이 입원적합성심사도 감당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별사법경찰권 부여가 의미가 없지는 않겠으나, 현실적으로 작동하기 어렵다. 오히려 권익옹호기관에서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고 말했다.

(3) 제언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는 많은 나라에서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정신보건시설에서의 인권 침해를 모니터링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여러 나라에서 정신보건에 투입하는 자원이 부족하고, 정신장애인을 인격적으로 존중하지 않으며, 인권에 대한 인식과 지식이 부족한데 이것은 정신보건시설의 광범위한 확대와 연관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세계보건기구는 정신보건시설에서 인권을 모니터링하는 메커니즘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국가방문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정신질환자의 인권증진을 위한 모니터링의 방법으로 정신의료기관의 감독을 위한 기관은 ‘독립된 기관이어야 할 것’과 ‘정기적으로 모든 정신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조사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방문조사는 필요한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추가적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정신의료기관의 모든 세부 부서와 의무기록에 대해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고 개별적으로 환자와 인터뷰할 수 있어야 한다. 이때 조사자는 정신의료기관의 생활환경에 대한 질적 평가를 수행해야 하며, 의무기록을 검토하고, 강제 및 자발적 입원환자와 인터뷰를 진행한다. 조사를 통해 ‘환자가 필요로 하는 치료를 받고 있는지’, ‘환자의 인권이 침해되고 있는지’, ‘의료기관에서 정신보건법 안전 규정을 따르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³⁶⁶⁾

세계보건기구의 권고에 비추어, 독립적인 모니터링 메커니즘을 구축하기 위해서 아래와 같은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³⁶⁷⁾

첫째, 전문성 있는 모니터링 추진체계와 기구 마련이 필요하다. 정신보건서비스를 포함하여 보건·복지서비스 전체를 포괄하고 정신의료기관의 지도점검, 정신질환자에 대한 권익 옹호 등의 문제해결 기능을 모두 갖춘 독립적인 지도감독기구의 설치를 고려할 수 있다.

둘째, 모니터링 인력을 다양하게 구성해야 한다. 정신의료기관 모니터링에는 정신보건의료 인력 외에도 전문가(정신보건의료전문가, 법률전문가, 교수 등), 환자 당사자, 지역사회주민, 정부관계자의 참여도 고려할 수 있다.

셋째, 모니터링 대상 기관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방문조사 형태의 모니터링

366) 하유정의 2, 앞의 글, 42~43.

367) 하유정의 2, 앞의 글, 76~79.

을 실시해야 한다. 현재 모니터링 대상은 문제가 되는 정신의료기관, 국립정신병원, 300병상 이상 대형병원인데, 궁극적으로는 입원실이 있는 모든 정신의료기관이 그 대상이 되어야 한다. 모니터링 수행 인력이 직접 정신의료기관 현장을 방문하여 시설을 둘러보고, 관련 문서의 확인, 직원과 환자 면담을 통하여 시설 환경, 정신보건법의 준수여부, 환자에 대한 인권침해, 치료 적절성, 배치의 적절성 등을 모니터링해야 한다. 정기방문은 연 최소 1회 실시, 수시방문은 환자 요청시 또는 필요시 실시해야 한다. 정신의료기관의 모니터링은 1회성이 아니고 정기적으로 수행되며 다양한 인력의 참여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일관될 수 있도록 매뉴얼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정신의료기관 모니터링의 주요 내용에는 치료과정, 보호과정에서의 인권 침해 여부도 포함되어야 한다.

12. 제16조 착취, 폭력 및 학대로부터의 자유

가. CRPD 제16조

제16조 착취, 폭력 및 학대로부터의 자유

1. 당사국은 가정 내외에서 성별을 이유로 한 유형을 포함하여 모든 형태의 착취, 폭력 및 학대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 행정적, 사회적, 교육적 및 그 밖의 조치를 취한다.
2. 당사국은 특히 장애인과 그 가족 및 보호자를 위하여 착취, 폭력 및 학대를 방지하고 인지하며 신고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 및 교육의 제공을 포함하여 성별과 연령을 고려한 적절한 형태의 지원 및 보조를 보장함으로써 모든 형태의 착취, 폭력 및 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당사국은 연령, 성별 및 장애를 고려하여 이러한 보호서비스를 제공한다.
3. 당사국은 모든 형태의 착취, 폭력 및 학대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독립적인 기관이 장애인에게 제공되도록 고안된 모든 시설과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감시할 것을 보장한다.
4. 당사국은 보호서비스의 제공을 포함하여 모든 형태의 착취, 폭력 및 학대의 피해자가 된 장애인의 신체적, 인지적 및 심리적 회복, 재활 및 사회적 재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그러한 회복 및 재통합은 피해자의 건강, 복지, 자아존중, 존엄성 및 자율성을 증진하는 환경에서 이루어지며, 성별과 연령에 따른 특수한 욕구를 반영한다.
5. 당사국은 장애인에 대한 착취, 폭력 및 학대 사례를 확인하고 조사하며 적절한 경우에는 기소하기 위하여, 여성과 아동에 중점을 둔 법률과 정책을 포함하여 효율적인 법률과 정책을 마련한다.

나. 최종견해와 쟁점 목록

(1) 최종견해

31. 위원회는 장애인이 여전히 강제노동을 포함하여 폭력, 학대 및 착취에 노출되어 있음에 우려를 표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가해자들을 처벌하고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점과 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자를 제외한 장애인을 위한 쉼터가 존재하지 않은 점에 대하여 우려를 표한다.
32. 위원회는 당사국이 거주시설 내외부에서 장애인들이 겪은 모든 폭력, 착취, 및 학대 사건을 조사하고, 가해자의 처벌과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보장하며 피해를 입은 장애인들을 위한 접근가능한 쉼터를 제공할 것을 촉구한다. 특히 위원회는 당사국이 장애인의 강제노역 사건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적절한 보호를 제공할 것을 권고한다.

(2) 쟁점목록

16. 장애인들이 시설 안팎에서 경험한 폭력과 착취, 학대 사례 조사,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상, 피해 장애인을 위한 쉼터 제공 등을 위해 당사국이 취한 조치 및 그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제시하십시오.
17. 강제노동 피해 장애인을 위한 적절한 보호 제도에 대해 설명하십시오. 아울러 강제노동이 확인된 피해자 보호를 위해 장기 보호 조치가 효과적으로 시행 중인지 여부를 설명하십시오.

(3) 실태조사의 대상 쟁점

제16조에서는 ① 거주시설 내·외부 폭력 등 사건 조사, 가해자 처벌, 피해자 보상 보장 및 쉼터 제공, ② 강제노역 사건 조사 강화 및 보호 제공이 주된 쟁점이다.

다. 거주시설 내·외부 폭력 등 사건 조사, 가해자 처벌, 피해자 보상 보장 및 쉼터 제공

(1) 정부의 이행 현황

(가) 보건복지부는 2018. 1. CRPD 제1차 국가보고서 권고사항 이행 현황에서 장애인 폭력·착취·학대 실태조사, 가해자 엄벌 및 피해자에 대한 보상 제공, 장애인쉼터 설치·운영에 관해 수용의사를 밝혔다. 인권침해 실태조사 및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 강화를 통해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 대한 인권 침해 예방이 필요하

며, 학대 장애인쉼터를 설치·운영하여 인권침해 피해 장애인의 치료 및 조속한 사회복귀를 도울 필요가 있다는 이유를 밝혔다.

(나) 보건복지부는 CRPD 제2·3차 병합 국가보고서(초안)에서 아래와 같이 답변하였다.

장애인거주시설과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에 대한 노동력착취, 성폭력 등 학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장애인에 대한 학대를 예방하고 피해 장애인을 구제 및 사후 보호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대책 마련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2017년부터 장애인 학대 예방 및 피해 장애인 사후 지원을 위한 전담기관인 총 18개소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전국에 설치하였으며, 2018년부터는 피해 장애인의 일시보호 및 지원을 위한 총 8개소의 피해 장애인 쉼터를 설치·운영 중에 있다.

구체적으로 폭력, 학대, 착취 등의 피해를 입은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인 학대 전담기관(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필요하다고 판단 시, 피해 장애인을 긴급 분리 조치한 후 피해장애인 쉼터에서 보호하면서 심리적·경제적 피해 회복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의 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장애인에 대한 지원과 사후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피해 장애인에 대한 사후관리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권익옹호기관과 공공후견법인, 그리고 발달장애인지원센터 간 연계를 통해 발달장애인을 위한 범죄 피해는 논스톱 권익옹호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는 2015년부터 ‘인권침해 피해장애인 쉼터’를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2016년 말 기준 피해장애인쉼터는 전국 총 8개소가 운영 중에 있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8개소 쉼터 별로 차이가 있으나, 공통적으로는 긴급 분리 및 보호, 심리지원 및 상담지원 실시, 쉼터 이용자의 퇴소 후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및 자원 연계를 실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보건복지부는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8-2022)에 학대,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한 장애인에 대해 찾아가는 상담을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더 나아가 사회전반의 인식 개선과 학대 예방 등 장애인의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해 장애인식개선 교육 활성화 및 저변학대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고자 한다. 사회 전반에 장애감수성 확산을 위하여 공공부문에 국한된 장애인식개선 교육 의무대상기관을 민간부문으로까지 확대하고, 인식 개선 관련 교육을 통합·

연계하는 장애인식개선 교육기관 설치, 양질의 교육컨텐츠 발굴 및 보급, 전문강사인증제도입을 통한 전문가 역량 강화, 교육이행률 제고를 위한 홍보, 교육 효과성 평가를 위한 장애인 구성의 교육 모니터링단을 운영하여 장애인 차별과 그에 따른 폭력, 착취, 학대 등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고자 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2017. 12. 장애인 학대 전담기관의 조사권한을 강화하고, 학대 신고인에 대한 보호조치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관련 법령인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할 바 있으며, 전국의 학대 고위험군 장애인 1만 1천 여명을 대상으로 정부, 지자체, 학대전담기관 합동으로 학대 실태조사를 실시('18. 5.)하였다.

(2) 정부의 이행에 대한 평가

(가) 장애인 학대 사례 조사

우리나라에서 장애인학대 실태를 전체적으로, 또 학대 유형에 따라 체계적으로 조사·분석한 자료는 없다. 아동, 여성, 장애인 등의 관련 조사 연구에서 학대 실태를 부분적으로 다루고 있을 뿐이다.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3년마다 시행되는 ‘장애인 실태조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차별 및 괴롭힘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상담, 여성가족부가 전국 성폭력상담소의 상담 내용을 분석하여 발간하는 ‘성폭력 피해자 지원사업 운영실적 보고’ 중 여성 장애인의 성적 학대 실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 실태 보고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노인학대 실태 보고서 등을 통해 장애인 학대 실태를 부분적으로 유추하고 있다.³⁶⁸⁾

한편,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설치된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연구 및 실태조사’를 담당하도록 되어 있다(법 제59조의11 제1항 제2호³⁶⁹⁾).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기관에 접수된 전국 장애인학대신고를 취합하여 이를 통해 장애인학대 실태를 분석하고 있는데³⁷⁰⁾, 신고를 기반으로 한 실

368) 이동석, “장애인 인권 현황 및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2017), 25-26.

369) 제59조의11(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 등) ① 국가는 지역 간의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연구 및 실태조사

370)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보도자료, 장애인학대 월 평균 300건 이상 신고접수” (2018).

태조사는 부분적이고 사후적인 조사라는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

따라서 시설 환경 안팎에서의 장애인 학대에 대해 정기적이고 포괄적인 사례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한편,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장애인학대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법 제2조 제3항). 보건복지부의 위탁을 받아 장애인 인권상담전화 운영하면서 장애인 권리 침해에 대한 조사와 상담을 시행해 온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상담 사례를 통해 학대 실태를 분석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2013년 1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에 접수된 전체 상담 2만 2,411건 중 학대로 규정된 상담은 6,872건으로 30.7%를 차지하였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학대 상담 건수는 2013년 947건에서 2014년 1,433건, 2015년 2,382건, 2016년 상반기 2,110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전체 상담 중 학대 상담이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2013년 21.0%, 2014년 24.7%, 2015년 33.2%, 2016년 상반기 42.8%로 나타났다. 즉 매년 학대 상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상담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높아지고 있다³⁷¹⁾.

학대 유형에 따라 연도별 현황을 살펴보면, 신체적 학대 비율이 전체 학대 중 41.6%로 확연히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정서적 학대 20.8%, 경제적 학대 18.5%로 나타났다. 성적 학대는 11.5%로 비율이 낮게 나타났지만, 성적 학대의 경우 성폭력상담소를 통해 상담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발생 비율은 이보다 훨씬 높다고 봐야 한다. 시간 흐름에 따라 학대 유형별 발생 추이를 분석해 보면, 신체적 학대는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으며 성적 학대 역시 증가 추세다. 경제적 학대는 매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정서적 학대와 유기·방임은 시간 흐름에 따라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차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언어적, 정서적 학대와 유기·방임이 비교적 감소하는 것으로 보인다.³⁷²⁾

371) 이동석, 앞의 글, 26~27.

372) 이동석, 앞의 글, 27.

[표-35] 연도별, 유형별 장애인 학대 현황³⁷³⁾

(단위: 건, %)

연도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경제적 학대	성적 학대	유기·방임
2013년	222	391	189	52	93
	23,4	41,3	20,0	5,5	9,8
2014년	361	481	243	140	208
	25,2	33,6	16,9	9,8	14,5
2015년	1,164	290	477	323	128
	48,9	12,2	20,0	13,5	5,4
2016년 상반기	1,112	267	365	273	93
	52,7	12,7	17,3	12,9	4,4
계	2,859	1,429	1,274	788	522
	41,6	20,8	18,5	11,5	7,6

피해 장애인의 장애 유형을 파악할 수 있었던 총 6,518건 중 피해 당사자가 지적장애인인 경우는 3,376건으로 전체의 51.8%를 차지하였다. 즉 학대 사건의 절반 정도는 지적장애인과 관련 되어 있다. 다음으로는 지체장애 13.8%, 뇌병변장애 8.5%, 정신장애 6.7%, 자폐성 장애 4.4%순이었다. 결국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달장애인으로 불리는 지적장애인 및 자폐성 장애인의 학대 피해 건수가 전체 학대 피해 건수의 56%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발달장애인이 학대 피해의 주요 대상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³⁷⁴⁾

(나)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에 대한 보상 방안

장애인학대범죄는 여러 법률을 위반하는 범죄인만큼 다양한 논의가 가능한데도 관련 논의가 이뤄진 바 없다. 「형법」이나 형사특별법 외에 「장애인복지법」, 「발달장애인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의 처벌 규정 적용이나 ‘장애인 학대’에 대한 해석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³⁷⁵⁾ 현재 「장애인복지법」

373) 이동석외 6, “비밀은 없다?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장애인 인권상담 분석 보고서”, 보건복지부,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2016), 143-144. 이동석, 앞의 글, 28에서 재인용.

374) 이동석, 앞의 글, 28.

375) 법률신문, “장애인 학대사건, 가해자 처벌 수위 너무 낮다”, (2017. 6. 9. 9:57).

에 학대 및 학대 금지행위에 대한 정의, 시설 종사자 등의 신고의무, 학대행위자 처벌 규정 조항 등이 있으나 구체적인 피해자 지원체계에 대한 법적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도 문제점으로 꼽힌다.³⁷⁶⁾

(3) 제언

(가) 학대 방지를 위한 예방 정책 강화³⁷⁷⁾

우선 피해 당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학대 예방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학대 신고에서 당사자 신고 건이 비교적 적었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학대를 당했을 때 자신의 피해 상황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적절한 기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학대 예방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자폐성장 애인 대상의 맞춤형 학대 예방 교육을 통해 당사자들의 학대민감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쉬운 언어와 접근하기 쉬운 매체가 준비되어야 하고, 발달장애인의 언어 방식을 잘 이해하고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학대 예방 강사를 양성해야 한다. 또한 학대 신고뿐만 아니라 장애인들이 학대 상황에서 저항할 수 있도록 자기 방어 능력을 높이는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발달장애인의 경우 자기 옹호가 가능하도록 학교, 복지관 등에서 자기 옹호 프로그램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사회를 대상으로 정신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은 많이 했지만 신체적 장애 중심으로 이루어져 온 경향이 있다. 이에 따라 편의시설, 접근권 등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이 이해하고 있으나 아직도 정신장애인에 대해서는 다름의 차원을 넘어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현실이다. 장애 유형별 학대 현황을 보면 지적장애는 전체 학대 피해의 49.7%를 차지하는데, 이는 전체 등록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비율인 7.6%의 6.5배에 이른다. 자폐성장애는 5.6배, 정신장애는 1.6배에 달한다. 이는 결국 우리 사회에서 정신장애에 대한 학대가 심각함을 보여 주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 구성원을 대상으로 정신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18692>.

376) 이동석, 앞의 글, 36.

377) 이동석, 앞의 글, 35-36.

셋째, 장애인 부모 및 가족 대상의 학대 예방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학대 행위자와 피해 장애인의 관계에서 유기·방임의 경우 학대행위자가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인 비율이 38.8%, 부모가 37.5%로 나타났다. 유기·방임 실태를 연령 대별로 살펴보면 40~50대 장애인은 형제자매로부터, 10대 장애인은 부모로부터 유기·방임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장애인 돌봄이 부모나 형제자매의 책임이 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더 이상 가족 관계에서 나타나는 유기·방임 문제를 장애인 가족만의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이에 따라 장애인 부모 및 가족 대상의 학대 예방 교육 프로그램이 수립되어 시행되어야 한다.

넷째, 민간기관 종사자에 대한 인권 기반 실천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차별이나 혼욕을 당연시하는 문화를 개선하고, 도전적 행동의 감소를 목적으로 신체적 개입을 하는 경우에도 인권에 기반을 둘 수 있도록 신체적 학대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정부와 협회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서비스 실천 방법 기법과 가이드라인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신고의무자의 직군을 확대해야 한다. 신고의무자는 주로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어 학대받는 장애인을 위기 상황에서 신속히 대응·보호·지원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더 많은 전문가를 신고의무자 직군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의료사회복지사, 보건소 종사자 등 학대 사례에 대한 접근성이 높은 직군을 추가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

(나) 학대 피해 장애인의 권리 회복 정책의 강화

첫째, 학대 피해 장애인을 지원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폭력, 노인학대의 경우처럼 행위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제도 안에서 보호할 수 있는 법률이 마련돼야 한다. 현재 「장애인복지법」에 학대 및 학대 금지행위에 대한 정의, 시설 종사자 등의 신고의무, 학대행위자 처벌 규정 조항 등이 있으나 구체적인 피해자 지원체계에 대한 법적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또한 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와 사회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도 명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장애인학대 발생 시 이를 신속하게 조사하고 학대 피해자의 상황이나 욕구에 따라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은 장애인학대 관련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³⁷⁸⁾

둘째, 장애인학대 피해자 보호시설의 역할 정립 및 확대가 필요하다. 피해장애인 쉼터는 현재 시범사업을 통해 전국 6개 지역에서 운영 중이나 필요성에 따라 향후 지역별 피해장애인 쉼터 확대가 예상된다. 이와 관련하여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피해장애인 쉼터 설치와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되었음에도 피해장애인 쉼터의 법적 지위가 불분명하고, 쉼터 설치와 운영에 국가의 책임과 의무가 배제되어 있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앞으로 지역사회의 인권의식 증대와 관심의 증가로 장애인 학대신고는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피해장애인 쉼터의 양적 증가와 함께 역할 정립과 이에 따른 운영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피해장애인 지원 등을 위해 현재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위기발달장애인 쉼터, 피해장애인 쉼터가 마련되어 있다. 피해장애인 쉼터는 피해장애인의 임시보호와 응급상황의 긴급지원을 주 업무로 하고, 장기적인 사례 관리는 지역 내 전문적인 개입이 가능한 기관에서 중점적으로 담당하여 쉼터 업무와 협력, 조력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유관기관 간의 전문성을 살리고 업무 체계화가 필요하다. 피해장애인 쉼터는 세부유형(성인, 아동, 성별) 구분없이 운영되고 있어 쉼터 내 이차적인 인권침해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쉼터는 성별, 연령 및 장애유형에 따른 세부유형을 구분하여 이에 따른 물리적 공간 규정 및 종사자 자격이나 역할 등도 달라져야 한다.³⁷⁹⁾

(다) 재학대 방지를 위한 사후 조치 정책의 강화³⁸⁰⁾

첫째, 학대행위자에 대한 개입을 강화하여야 한다. 재학대를 예방하고 장애인 학대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대행위자에 대한 개입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하지만 학대행위자 분류가 세분화되지 않고 기본 정보 파악도 어려운 상황에서는 학대행위자에 대한 개입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다. 학대행위자에 대한 정보가 파악되었다 하더라도 강제적으로 개입할 법적 근거가 미비한 것도 현실이다. 따라서 학대행위자에 대한 개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학대행위자에 대한 처벌뿐 아니라 학대 피해 장애인과 학대행위자의 관계, 경제적·

378) 이동석, 앞의 글, 36-37.

379) 유경민의 2, “피해장애인 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연구”, 한국장애인개발원, (2017), 5-6.

380) 이동석, 앞의 글, 37.

심리적 의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무적 상담·교육·치료를 위한 조건부 기소유예, 보호처분 등이 보완되어야 한다.

둘째, 국가적인 통계 관리가 필요하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 관련 장애인단체도 차별 등의 상담을 진행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도 「장애인차별금지법」상 괴롭힘 금지 조항에 의해 인권 침해와 학대 등에 대한 상담을 하고 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장애인 인권 침해 상담을 하고 있다. 하지만 각 기관의 상담 범주가 다르다 보니 정보를 서로 공개한다 해도 통합적 정보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전국적 수준에서 장애인 인권 침해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개별 기관들의 상담 범주를 통일하고, 이를 연도별로 합쳐 전국적 통계를 생산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그에 합당한 정확한 정책 수립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 강제노역 사건 조사 강화 및 보호 제공

(1) 정부의 이행 현황

(가) 이행 현황

정부(고용노동부)는 2014년도에 발생한 전남 신안군 지역 염전사건(장애인 강제 노역 사례)뿐만 아니라, 농림수산부분과 같은 취약 업종에서의 장애인 노동력 착취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장애인 근로자의 근로권의 보호를 위한 지도·감독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최종견해에 대한 수용의사를 밝혔다.

2017년에는 장애인 다수고용 사업장 202개소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하여('17. 6. ~ 7.), 680건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해 3개소를 사법처리하고, 27개소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다만, 190개소에 대해서는 시정조치에 그쳤다. 전남 신안군 사건의 경우 토지 소유주를 지적 장애인 임금 체불 혐의로 구속 수사하고('17. 1. 20.)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지적 장애인을 대상으로 폭행 및 임금체불 혐의가 있는 대표자들을 구속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였다('17. 2. 13., '17. 5. 12.).³⁸¹⁾

381) 그러나 대부분의 가해자들은 수십년간의 노동착취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로 석방되었다. 법원은 '지역의 관행'이라며 가해자들을 선처하였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수시로 접근하여 합의를 종용하기도 하였다. 허위로 작성된 합의서의 효력을 법원이 인정하기도 하였고,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패소하자 신안군은

(나) 이행 계획

고용노동부는 장애인에 대한 강제노역 등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형사입건하는 등 엄중 조치하고, 장애인 다수고용 사업장에 대해서는 정기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농축산, 어업은 벽지에 소재하고 있고, 사업장 규모도 영세하여 임금체불 및 폭행 등 불법행위에 매우 취약하고, 암암리에 발생하고 있어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 어려운 반면, 현재의 인력 규모로는 전수 조사 및 감독을 실시하기에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점점 대상 업종과 사업자 선정에 있어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점검의 효과를 높이는 한편, 장애인 강제노역 등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함과 동시에 보도자료 배포 등 홍보하여 예방효과를 높이겠다는 기대를 하고 있다.

(2) 정부의 이행에 대한 평가

(가) 장애인 학대 피해 및 지원 현황

1) 장애인 노동력 착취 실태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학대는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2018년 상반기 장애인학대 현황을 살펴보면, 학대 유형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경제적 착취’였다.³⁸²⁾ 장애인에 대한 경제적 착취란 장애로 인한 취약성을 이용하여 장애인의 노동력을 부당하게 이용하여 이익을 얻는 노동력 착취, 장애인을 지원하는 사람이 장애인의 돈을 가로채는 행위, 가족 등 장애인인 신뢰하는 사람이 장애인을 속여 부동산을 인도받는 행위, 장애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거나 차량을 구매하는 행위, 채무에 대한 보증을 서게 하는 행위 등을 들 수 있다.

2018년 상반기까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신고 접수된 사례들을 검토한 결과³⁸³⁾, ‘학대-경제적 착취’로 판정된 사례는 총 218건이다. 농사나 농장, 비닐하

소송비용을 청구하고 나섰다.

382)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장애인학대 현황 보고 및 노동력 착취 정책 대안 마련 토론회 자료집” (2018), 32.

383)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장애인학대 현황 보고 및 노동력 착취 정책 대안 마련 토론회 자료집” (2018), 12.

우스 허드렛일, 축사에서 가축을 돌보는 일을 한 피해자가 전체의 2/3에 해당하였다. 피해자 중에는 하루에 12시간 이상, 최장 17시간까지도 일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거환경의 경우 컨테이너에 살고 있는 사람, 가건물이나 창고, 폐가나 별도의 주거지가 없는 사례도 있었다.

2) 장애인 학대 지원 현황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11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대받은 장애인을 보호하고,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의거하여 2017. 1. 1.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만들어졌고, 2017. 2.에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개관하였다. 2018. 1.부터 서울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비롯한 17개 광역시·도에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개관을 마쳤고, 본격적으로 장애인학대 신고를 받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나) 장애인 학대 관련 규정과 문제점

가해자 처벌과 관련되어 가장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령은 근로기준법(제43조, 제109조)과 최저임금법(제6조 제1항, 제28조)이다. 그 외에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9 제2의2호, 제86조 제2항 제2호) 및 형법(제348조-준사기) 등이 적용될 수 있다.

2017. 2. 8. 「장애인복지법」이 개정(제59조의9 제2의2호)되어 장애인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노동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이 규정은 근로기준법의 강제근로 금지 규정에 비하여 처벌을 강화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가해자 등에 대한 처벌과 별도로 피해자는 민사상 금전으로 손해를 전보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48조에 의하여 청구시점부터 3년 전까지 발생한 임금에 한하여 청구할 수 없다.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경우에도 민사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정해져 있고,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역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즉, 노동력 착취를 당한 기간에 상관없이 청구 시점으로부터 최대 10년 이상의 손해를 전보 받기는 어렵다.

(다) 평가

2014년 신안군 염전 노예사건이 세상에 알려짐에 따라 전국적으로 각종 노예 사건이라고 불리는 사건들이 주민들의 신고 등에 따라 밝혀지고 있다. 장애인에게 의식주를 제공하고 일을 시키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 아니라 범죄라는 것에 대한 인식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2015년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구제 전문기관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설립 및 운영되고 있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애인학대 사례 조사 및 분석은 장애인 학대 현황에 대한 실증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학대 피해 장애인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정부가 나아가야 할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의 노동력 착취를 근절 및 처벌하기 위한 「형법」이 개정(제288조, 제289조, 제292조)되어 노동력 착취 목적의 약취·유인죄, 인신매매죄 등이 신설되었다. 「장애인복지법」상 강제근로 금지 및 처벌규정(제59조의9, 제86조)도 신설되었다.

현행 대법원 양형기준³⁸⁴⁾에 의하면, 강제근로에 대해서는 6월에서 1년(가중요소가 있는 경우 10월~2년 6월)이고,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경우 1년 6월에서 3년 6월의 형을 부과하게 되는데, 수십년 간 노동력 착취를 당하는 학대 피해 장애인이 받았을 고통에 비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관련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장애인관련 노동력 착취 실태는 여전히 우려할만한 수준이다.³⁸⁵⁾ 고용노동부는 예산과 인력의 한계로 전수조사 및 감독이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장애인에 대한 학대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배정하여 정기검사 사업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³⁸⁶⁾

384) 대법원 양형위원회, 「근로기준법」 위반범죄 양형기준(2016. 7. 1. 시행), http://www.scourt.go.kr/sc/krsc/criterion/criterion_36/labor_standard_01.jsp,

385) 2018. 10. 23. 제2차 FGI에서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김훈 정책연구원은 “염전 노예 사건에서 처벌이 미약했고, 장애인 복지법 개정에도 근절이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이용석 정책홍보실장은 “염전 사건 피해자들이 염전으로 다시 돌아간 것은 정기적인 모니터링 등 후속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견해를 밝혔다. 장애인학생지원네트워크 김형수 사무국장은 “이 사건 피해자들이 다른 곳에 취업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건을 완전히 종결하는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386) 한편, 보건복지부는 2019년 예산 요구안에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차별시정, 인권

(3) 제언

(가) 학대 피해 장애인에 대한 지원프로그램 마련

2017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설치되었으나, 초기 상담과 조사 등 사건 대응에 필요한 충분한 여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학대 피해 장애인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학대 피해 장애인을 위한 지원 내용과 지원 절차 및 지원 방법을 개발하고, 기존의 제도와 자원을 활용하는 지원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³⁸⁷⁾

(나) 학대 피해 장애인 맞춤형 쉼터 설치

학대 피해 장애인들이 머무를 공간 자체가 전무한 상황에서 피해자들은 노숙인 시설을 전전하다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다시 염전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 ‘인권침해 피해장애인 쉼터’를 2015년 서울·경기·전남·경북 등 4개 지역과 지난해 충남(공주), 제주 등 2개 지역에 설치하였다. 그러나 기존의 단기거주시설에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정도에 그친다면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과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수 있다.³⁸⁸⁾ 따라서 피해자가 가진 장애의 특성, 피해의 유형, 가해 환경으로부터 벗어난 기간 등에 따라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고,³⁸⁹⁾ 단순히 주거기능만을 제공하는 거주시설과는 차별화될 필요가 있다.³⁹⁰⁾

보호 및 학대 피해자 보호체계 강화를 위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사업비'로 약 52억원을 요구하였다.

387)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사람중심의 학대피해장애인 지원방안 및 쉼터운영방안 토론회” (2018), 19.

388) 2018. 10. 25. 제4차 FGI에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엄형국 변호사는 “학대 문제에 있어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우선적으로 분리되어야 하므로 안전 보장을 위한 사후 긴급 체계로서 쉼터가 필요하다. 다만, 사후적인 정착 단계에서 별도로 자립을 원하는지 등에 대해서는 선택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389) 2018. 10. 23. 제2차 FGI에서 장애인학생지원네트워크 김형수 사무국장은 “남성 장애인의 쉼터가 없고 이에 대한 인프라와 법률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390)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장애인학대 현황 보고 및 노동력 착취 정책 대안 마련 토론회 자료집” (2018), 26-27.

(다) 피해 장애인 자립 지원

시설 거주 장애인에 대한 탈시설과 자립생활 지원이 시도되고 있으나, 단절된 공간에서 사회적 교류 없이 학대를 받아온 장애인들에게도 자립을 위한 지원이 절실하다.³⁹¹⁾ 따라서, 학대 피해 장애인들의 자립을 위한 일상생활 훈련, 자립을 위한 각종 행정절차 지원 및 취업 지원, 사회적지자원과의 연계, 거주지 마련 등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초기정착자금과 자립지원금의 지급은 피해장애인의 지역 정착에 필수적이다.³⁹²⁾

(라) 학대 대응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장애인 학대 문제의 해결과 피해자 지원은 지역사회 전체가 힘을 모아 사회 환경을 변화시키고, 장애가 있는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연계하는 네트워크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 자치단체, 경찰, 권익옹호기관, 복지기관, 자립생활센터, 장애인고용공단이 함께 참여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역 내 장애인 학대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피해 사례 발생시 공동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마) 학대 피해자 지원 인력 양성

장애인 학대 사건 초동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원할만한 조력인 제도가 부재하고, 이에 초동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가해자 처벌이 제한되는 한편, 수사 절차에서 학대 피해 장애인이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다. 학대전담 경찰관, 발달장애인 전담 경찰관 등을 대상으로 장애와 학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 장애인을 지원한 진술지원인 지원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

391) 2018. 10. 25. 제4차 FGI에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염형국 변호사는 “장애인 노동력 착취 사건에서 가해자 처벌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염전을 나와서도 피해자들이 자립할 수 있는 지역사회 복지체계가 갖춰지는 것이 중요하다. 당사자의 의사가 존중된 문제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392)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앞의 글, 24.

(바) 노동력 착취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폭행이나 협박, 감금 등 다른 범죄가 없는 이상 장애인을 노동력 착취 행위자에게 넘기는 행위나 장애인의 노동력을 수십 년간 착취하는 행위 모두 제대로 처벌되고 있지 않다. 인신매매를 포함한 노예제를 근절하기 위한 별도의 특례법을 제정하거나, 「장애인복지법」 등을 개정하여 장애를 장애인의 주거를 함부로 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의 금지행위를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될 필요가 있다.³⁹³⁾

13. 제17조 개인의 완전함 보호

가. CRPD 제17조

제17조 개인의 완전함 보호

모든 장애인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신체적 및 정신적 완전함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

나. 최종견해와 쟁점목록

(1) 최종견해

- 33. 위원회는 이를 금지하는 법적 조항에도 불구하고 장애여성에 대한 강제불임 사건들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또한 위원회는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당사국이 실시한 조사에 관한 정보가 부재함에 우려를 표한다.
- 34. 위원회는 당사국이 가정과 지역사회, 거주시설 내에서 장애여성과 소녀의 권리에 대한 인식 제고와 강제 불임으로부터의 보호를 제공하는 메커니즘의 효과 및 접근성 보장을 포함하여, 강제불임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위원회는 최근 또는 현재 진행 중인 강제불임 사건을 조사할 것을 권고한다.

393) 이에 대해 2018. 10. 25. 제4차 FGI에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염형국 변호사는 장애인 노동착취 피해자들을 추가로 가중처벌하거나 조항을 신설하는 것만이 해결방안은 아니고, 현행법령이 제대로 집행되고 처벌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현실적으로 법을 적용하는 기관들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결여된 것도 문제다.“라고 밝혔다.

332 장애인권리협약 이행에 관한 실태조사

(2) 쟁점목록

18. 강제 불임 시술을 근절하고, 그러한 관행으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및 인식 제고 활동의 진척 사항을 설명하십시오. 아울러 강제 불임 시술이 명시적으로 금지되어 있는지 설명하십시오.

(3) 실태조사의 대상 쟁점

제17조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강제불임 근절 및 조사가 주된 쟁점이다.

다. 강제불임 근절 및 조사

(1) 정부의 이행 현황

(가) 보건복지부는 2018. 1. CRPD 제1차 국가보고서 권고사항 이행 현황에서 강제불임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 이행, 강제불임 사례 조사에 대해 일부·조건부 수용의사를 밝혔다. 장애여성 및 장애소녀의 권리를 포함한 모든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애여성·소녀의 임신 출산권은 보호할 필요가 있으나, 이들에 대한 강제불임 수술은 현재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례조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나) 보건복지부는 CRPD 제2·3차 병합 국가보고서(초안)에서 아래와 같이 답변하였다.

첫째, 현재 장애여성 및 장애소녀에 대한 강제 불임시술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모자보건법 제14조는 인공임신중절수술 허용 한계를 규정하고 있는데, 본인이나 배우자가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한 임신, 법률상 혼인 불가능한 혈족과 인척 간에 임신, 임신의 지속이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과 배우자의 동의하에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허용하고 있다. 또한 형법 제27장에 의거하여 낙태를 금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강제불임과 관련하여 사례가 보고된 바 없으며, 동 행위는 법적으로도 금지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례조사는 사실상 불가능함을 밝히는 바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임신 및 출산기 장애 여성을 지원하여 장애여성의 임신 및 출산권을 보호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둘째, 장애여성 및 장애소녀의 권리를 포함한 모든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2018년 5월부터는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및 이용 장애인을 대상으로는 매년 인권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2) 정부 이행방안 및 이행 현황에 대한 평가

(가) 최근 진행 중인 강제불임 사건 조사

강제불임의 법적 근거가 되었던 구 모자보건법 제15조는 1994. 12. 22. 동법 일부개정으로 삭제되었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의 유전 또는 전염의 방지를 위한 불임수술명령제도는 인권침해의 논란이 있어 이를 폐지하고자 하며, 명령에 의한 불임수술은 인권침해 조항임으로 관련규정을 폐지”한다고 그 개정이유를 밝혔다.

구 모자보건법(일부개정 1994. 12. 22. 법률 제4791호)

제15조(불임수술절차 및 소의 제기) ① 의사가 환자를 진단한 결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질환에 걸린 것을 확인하고 그 질환의 유전 또는 전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임수술을 행하는 것이 공익 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불임수술 대상자의 발견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보건사회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사를 지정하여 그 환자에게 불임 수술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

김홍신 당시 국회의원은 1999. 8. 19. “장애인 불법, 강제 불임수술 실태와 대책에 관한 조사보고서”를 통해 모두 6개의 정신지체 장애인시설에서 총 66명의 수용인에 대해 강제불임수술이 이루어졌음을 폭로한 바 있다. 김홍신 의원이 폭로한 강제불임 사례는 대부분 수술시기가 83년~98년이었고, 70년대에도 있었다. 이를 계기로 언론에서 강제불임이 시행된 사회복지시설들을 취재하였고 시민단체에서 공청회를 개최하자 보건복지부에서도 자체적으로 진상조사에 착수하였다. 여성장애인에 대한 강제불임 사건은 최근에도 보도된 바 있다. 8년 전 전라남도 의 한 시설 거주 장애여성이 같은 시설에 거주하는 남성과 성관계 후 아이를 갖게 되자 시설장은 거주 여성들의 동의 없이 피임 시술을 진행했다. 피임기구를 5년마다 교체해 줘야 하지만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³⁹⁴⁾

정신지체장애인의 강제불임수술과 관련해, 우리 정부는 한 번도 공식적인 조

사를 한 적 없다는 뉴스기사가 발견된다.³⁹⁵⁾ 보건복지부는 강제불임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례조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사실상 이행을 거부하였다.

(나) 강제불임을 근절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 실시

보건복지부 등에서 실시하는 장애인복지시설 및 지역사회 장애인권실태조사 항목에 강제불임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다) 장애여성·소녀의 권리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최종견해는 “장애여성 및 장애소녀의 권리에 관한 인식을 제고”할 것을 촉구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장애여성 및 장애소녀의 권리를 포함한 모든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음”을 일부·조건부 수용의 사유로 밝혔다. 그러나 ①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에 성교육, 장애여성·소녀의 임신·출산권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② 교육 대상, ③ 교육 횟수에 대한 검토 없이 인식개선 교육 실시만으로 최종견해 권고를 이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94) 에이블뉴스, “날 분노케 만든 시설거주 장애여성 강제피임”, (2018. 9. 28. 09:25),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09&NewsCode=000920180928062351616307>.

이에 대해서 2018. 10. 23. 제2차 FGI에서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이용석 정책홍보실장은 “(강제피임이) 최근 5~7년 간에도 만연해 있었기 때문에 위 뉴스기사에서 보도된 시설만이 문제일까 싶다. 각종 장애인시설에서 문제된다. 시설이 소규모화 될수록 이러한 문제가 음성화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김훈 정책연구원은 “주위에서 부모에게 강제로 (불임을) 시켜야 하지 않겠냐고 권하는 것을 봤다. 학생 때는 다들 케어하지만, 고등학교만 가도 다들 방임하고 국가에서는 손을 놓아 버린다. 그래서 여성 장애인 당사자들이 이러한 고통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용석 실장은 “전라도 강제 불임 사건에 대한 뉴스 기사에 달린 댓글들을 봤는데, 댓글이 다 너무 좋했다는 내용이었다. 고스란히 국가의 부담으로 오니 강제시술을 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다. 국가와 법률이 이를 범죄라고 선언해 줘야 한다”고 밝혔다.

395) 광주IN, “정신지체장애인의 강제불임수술과 성(性) 정체성”, (2007. 2. 13. 21:11), <http://www.gwangjuin.com/news/articleView.html?idxno=12803>.

(3) 제언

(가) 장애여성·소녀의 임신 출산권 및 성교육 실시

성별 및 장애유형을 고려한 형태의 장애인 성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나) 국가·지역사회가 주체가 된 지속적인 모니터링

강제불임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강제불임이 실효성 있게 근절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장애인복지시설 및 지역사회의 장애인권실태조사 항목에 강제불임 실시 여부도 포함시키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다) 장애인의 탈시설·자활 지원

장애인을 대상으로 강제불임·낙태가 이루어지는 원인으로 장애인 가족이 자녀를 낳아 기르기 어려운 현실적인 이유에서가 많았다. 궁극적으로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가족을 꾸릴 수 있도록 장애인의 탈시설·자활 지원이 필요하다.

14. 제18조 이주 및 국적의 자유

가. CRPD 제18조

제18조 이주 및 국적의 자유

1. 당사국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장애인의 이주의 자유, 거주지 선택 및 국적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인정한다. 여기에는 다음의 사항을 보장하는 것이 포함된다.
 - 가. 국적을 취득 및 변경할 권리를 가지며, 임의로 또는 장애를 이유로 국적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 나. 장애를 이유로 국적 관련 서류 또는 기타 신분증명서류를 취득, 소유 및 사용하거나 또는 이주의 자유와 관련된 권리의 행사를 용이하게 하는 데 필요할 수 있는 이민절차와 같은 관련 절차를 이용할 능력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 다. 모국을 포함하여 모든 국가로부터 출국할 자유가 있다.
 - 라. 임의적으로 또는 장애를 이유로 모국에 입국할 권리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2. 장애아동은 출생 즉시 등록되며, 출생 시부터 이름을 가질 권리, 국적을 취득할 권리 및 가능한 한 자신의 부모가 누구인지 알고 그 부모에 의하여 양육될 권리를 갖는다.

나. 최종견해 및 쟁점목록

(1) 최종견해

제18조 이주 및 국적의 자유

35. 위원회는 “사리 분별이 없고 국내에서 체류활동을 보조할 사람이 없는” 정신장애인의 입국을 거부하는 「출입국관리법」 제11조와 장애를 가진 이주민에게 기본적인 장애 서비스 제공을 제한하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36. 위원회는 장애인들이 장애를 근거로 하여 대한민국을 입국할 권리를 박탈당하지 않도록 보장하고 장애를 가진 이주민들이 기본적인 장애 서비스를 제공받는데 제한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출입국관리법」 제11조와 「장애인복지법」 제32조를 철회할 것을 권고한다.

(2) 쟁점목록

제18조 (이주 및 국적의 자유)

- 19-1.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한국 입국 권리를 박탈하지 않도록, 「출입국관리법」 제11조를 폐지하는 일과 관련한 진척 사항을 설명하십시오.
- 19-2. 장애를 가진 이주민이 기본적인 장애 지원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지 않도록 「장애인복지법」 제32조를 폐지하는 일과 관련한 진척 사항을 설명하십시오.

(3) 실태조사의 대상 쟁점

제18조 이주 및 국적의 자유와 관련하여 검토할 정부의 이행 현황은 「출입국관리법」에서 정신장애인의 입국을 제한하고 있는 조항을 폐지하였는지 여부, 「장애인복지법」에서 이주민에 대한 장애서비스를 제한하고 있는 조항을 폐지하였는지 여부이다.

다.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정신장애인 입국 제한 관련

(1) 정부의 이행 현황

법무부는 최종견해에 대하여 일부·조건부 수용 의사를 밝혔는데, 그 사유는 ① 동 규정의 입법 취지가 정신장애인과 타인의 안전 확보 차원에서 적용하는 최소한의 규정인 점, ② 미국·일본·중국·필리핀 등 해외 입법례가 있다는 점, ③

정신장애인이란 이유만으로 입국을 금지한 사례가 없다는 점 등이다. 한편, 법무부는 장애인 출입국전용심사대를 운영하여 장애인의 출입국편의를 지원하고 있다는 것도 밝혔다.³⁹⁶⁾

법무부의 이행내역으로는 정신장애인 입국심사 처리방안 공·항만 사무소 시달이 있다.

(2) 「출입국관리법」 제11조의 내용 및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

법무부장관은 ‘사리 분별력이 없고 국내에서 체류활동을 보조할 사람이 없는 정신장애인’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5호). 과거에는 다른 요건 없이 곧바로 ‘정신장애인’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법률 제7406호 2005. 3. 24. 일부개정되기 전의 법률), 요건을 추가하여 ① 사리 분별력이 없고, ② 국내에서 체류활동을 보조할 사람이 없는 정신장애인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것이다. 이는 일본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³⁹⁷⁾

한편, 「출입국관리법」에서는 정신장애인을 입국금지대상자뿐 아니라, 강제퇴거대상자로도 규정하고 있다.

「출입국관리법」 제11조(입국의 금지등)

-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1. 감염병환자, 마약류중독자, 그 밖에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을 위법하게 가지고 입국하려는 사람
 3.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396) 보건복지부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따라 보행상 장애인(1~5급)은 출입국 우대 제공자로서 전용 심사대(패스트 트랙)를 이용할 수 있으며, 본인 외 동반 3인까지 패스트 트랙 이용이 가능하다.

397) 일본의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이 우리나라의 「출입국관리법」과 비슷하게 규정하고 있다. 일본은 과거 정신상의 장애가 있는 외국인을 상륙거부 대상으로 규정하였다가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의 일부개정법률(2004. 6. 2. 개정, 2004. 8. 2. 시행 법률 제73호)을 통해 ① 정신상의 장애로 사리를 변식할 능력을 상실한 상황의 외국인이 ② 그 활동을 보조하는 수반자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상륙을 거부할 수 있다고 개정하였다.

4.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5. 사리 분별력이 없고 국내에서 체류활동을 보조할 사람이 없는 정신장애인, 국내체류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사람, 그 밖에 구호(救護)가 필요한 사람
 6.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1910년 8월 29일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사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부의 지시를 받거나 그 정부와 연계하여 인종, 민족, 종교, 국적,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사람을 학살·학대하는 일에 관여한 사람
 - 가. 일본 정부
 - 나. 일본 정부와 동맹 관계에 있던 정부
 - 다. 일본 정부의 우월한 힘이 미치던 정부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그 입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6조(강제퇴거의 대상자)
- 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이 장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
 3.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국금지 사유가 입국 후에 발견되거나 발생한 사람

이에 대해 법무부는 해당 조문이 모든 정신장애인의 입국을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타인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규정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법무부는 정신장애인 입국심사 처리방안³⁹⁸⁾을 마련하였다고 한다. 법무부는 제5호에 해당하는 외국인이 입국할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될 우려가 발생할 수 있고, 미국, 일본 등 외국 입법례에서도 정신장애 또는 행동장애가 있는 자에 대한 입국금지를 규정한 사례로 미루어 볼 때, 우리 「출입국관리법」에서 정신장애인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 차별적인 규정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³⁹⁹⁾

정신장애인의 입국 제한과 관련하여 개정 논의가 있었던 것은 「출입국관리법」 제정 이래 단 두 차례뿐이다. 한 번은 정신장애인의 내용을 구체화한 위 2005. 3. 24. 법률 제7406호 일부개정법률 때이고, 다른 한 번은 2009년이다(곽정숙의원등 10인 2009. 9. 10. 제안 제1805955호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개정안에서는 과학적, 의학적 근거 없이 관습적으로 정신질환을 이유로 많은 권리가 제

398) 이 자료는 찾을 수 없었다.

399)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1년 개정판 출입국관리법 해설” (2011), 196.

한되는 현실을 지적하며, 이를 명백한 차별과 편견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정신질환자에 대한 각종 면허, 자격, 영업제한 조항을 일괄적으로 정비하고자 한 것이다. 이와 같은 논의에도 불구하고 이 개정안은 임기만료를 이유로 폐기되었고, 이후로는 국회에서 이에 대해 논의된 바가 전혀 없다.

(3) 정신장애인의 입국금지 및 범죄 실태

한 시민단체가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대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한 자료에 따르면, 2011. 10. ~ 2012. 4. 2. 6개월 간 입국규제자로 분류되어 입국금지된 사례는 463건, 여권 위조 등의 위변조행사로 인한 입국금지 사례는 2,388건, 입국 목적과 숙소 등이 불분명해 입국금지된 사례는 5,188건이고, 그 외 기타 사유가 164건이었다⁴⁰⁰). 당시 법무부는 외교관계에 저해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입국금지자의 국적과 상세한 사유를 공개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정신장애를 이유로 입국금지된 사례가 몇 건이나 되는지는 알 수 없었다.

대검찰청이 매년 발간하는 범죄분석 보고서를 보면, 정신장애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범죄자들의 통계가 드러나 있다. 2014년 대검찰청 범죄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한 해 128만여명의 범죄자 중 범행 시 정신장애 상태에 있었던 범죄자의 비율은 0.4%로 5,241명이다. 정신이상, 정신박약, 기타 정신장애를 모두 포함한 수치다. 2015년 범죄분석 보고서에 드러난 ‘2014년 전과자 범행 시 정신상태’ 통계치도 유사하다. 2014년 총 전과자 71만여명 중 정신장애 상태에 있었던 전과자는 0.5%로 3,802명이다⁴⁰¹). 이처럼 정신장애인의 범죄 가능성, 혹은 정신장애인이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은 특별히 높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4) 정부의 이행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

현행 「출입국관리법」 제11조의 ‘사리분별력이 없’다는 것은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하는 것이어서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 나아가 범문대로라면 사리분별력이 없는 정신장애인은 반드시 체류활동을 보조할 사람이 동행하여야 한다는 것인데, 이

400)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입국금지 및 강제추방 법과 무관하게 입맛대로?”, (2012. 5. 3. 19:36) <http://www.opengirok.or.kr/2972>.

401) 경향신문, “한국사회가 정신질환에 대처하는 방식”, (2016. 6. 4. 15:55).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606041555001.

는 정신장애인의 자기결정권 등 「헌법」상 많은 기본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

법무부가 예로 드는 미국의 「이민국적법」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등으로 자기 또는 타인의 재산, 안전, 복지에 위협을 가하였거나, 가할 수 있는 자⁴⁰²⁾”로 비교적 그 범위가 구체적이다. 이는 장애를 이유로 입국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위협을 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상황을 이유로 입국을 금지하는 것이다. 그 외에 단지 ‘정신장애’만을 이유로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한 것은 중국 뿐이고, 일본, 말레이시아, 필리핀도 그 범위를 비교적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정부가 비교법을 들며 입법 정당성을 논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장애 분야에서 선진적인 제도와 정책을 도입하고 있는 나라의 제도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문제인 것은 법무부가 정신장애인을 ‘위험한 격리대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정부가 정신장애인을 격리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강조하는 입장이 단적으로 드러난 제도가 강제입원제도이다. 장애계에서 탈시설과 탈원화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정신장애인의 출입국 문제에 있어서도 장애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402) 미국 이민 및 국적법

INA: ACT 212 - GENERAL CLASSES OF ALIENS INELIGIBLE TO RECEIVE VISAS AND INELIGIBLE FOR ADMISSION; WAIVERS OF INADMISSIBILITY Sec. 212. [8 U.S.C. 1182]

(a) Classes of Aliens Ineligible for Visas or Admission.-Except as otherwise provided in this Act, aliens who are inadmissible under the following paragraphs are ineligible to receive visas and ineligible to be admitted to the United States:

(1) Health-related grounds.-

(A) In general.-Any alien-

(iii) who is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s prescribed by the Secretary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in consultation with the Attorney General)-

(I) to have a physical or mental disorder and behavior associated with the disorder that may pose, or has posed, a threat to the property, safety, or welfare of the alien or others, or

(II) to have had a physical or mental disorder and a history of behavior associated with the disorder, which behavior has posed a threat to the property, safety, or welfare of the alien or others and which behavior is likely to recur or to lead to other harmful behavior, or

라.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이주민에 대한 장애 서비스 제한 관련

(1) 정부의 이행 현황

보건복지부는 최종견해에 대하여 일부·조건부 수용 의사를 밝혔으며, 이미 2012년 「장애인복지법」을 개정(제32조의2 신설)하여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을 허용하고 있으나, 예산 상의 문제로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활동지원 서비스 등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하였다고 하였다.

보건복지부의 이행내역은 외국인 등록에 관한 근거조항 마련(「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 외국인 범위에 난민인정자 추가(2017. 12. 1. 국회 통과)이다. 나아가 보건복지부는 향후 정책여건 및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장애인연금, 활동지원 서비스 등의 수급 자격 확대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주요 내용 및 최근 개정 사항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은 장애인을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 정의하고 있는데, 실제로 장애인일지라도 활동지원급여 등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장애인 복지시책의 수혜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장애인 등록을 하여야 한다.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활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활동법」 제5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은 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을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자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 활동보조 등 활동지원 제도의 수혜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는 장애인 등록 여부에 달려 있는 것이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

① 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

제32조의2(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

① 재외동포 및 외국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 2. 「주민등록법」 제6조에 따라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을 한 사람 3.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 중 대한민국에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 4.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5. 「난민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난민인정자
<p>「장애인활동법」 제5조(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p> <p>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 이상인 사람 <p>시행령 제4조(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p> <p>① 법 제5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 이상인 사람”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등급이 제1급, 제2급 또는 제3급인 사람을 말한다.</p>

대한민국 국민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하는데, 재외 동포·외국인도 제32조의2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다.⁴⁰³⁾ 여기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 ▲ 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 결혼이민자, ▲ 난민 등이다.

본래 난민은 위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나, 국가인권위원회가 2017년 난민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등록제도의 개선을 권고하였다(국가인권위원회 2017. 3. 30. 난민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등록제도 개선 권고). 「난민법」에서 난민이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⁴⁰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 제1항에 난민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장애인등록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점을 지적하며 법 개정을 권고한 것이다. 나아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관련 지침을 정비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기도 하였

403) 과거에 외국인인 장애인 등록 대상이 아니었으나, 이에 대한 꾸준한 문제제기가 있었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2008. 7. 15.자 07진차359·07진차546·07진차919(병합) 결정을 통해 국내 거주 외국인들이 장애인등록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권고를 하였다. 이에 따라 2012. 1. 26. 제32조의2가 신설되어 일부 외국인들이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게 되었다.

404) 「난민법」 제31조(사회보장) 난민으로 인정되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사회보장기본법」 제8조 등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는다.

다. 이와 같은 문제제기에 따라 2017. 12. 19. 법이 개정되어 난민도 장애인등록 대상으로 포함되었다.

(3) 이주민 장애인 복지 실태 및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에 따라 장애 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은 활동지원 급여 제외 대상이나, 예외적으로 난민인정자로서 장애인 등록을 한 외국인은 활동지원 서비스 신청자격이 있다.⁴⁰⁵⁾

독일, 스웨덴, 영국, 일본의 장애인 복지 사업 대상자는 자국에서 상당 기간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할 예정인 장애인 등록자이다. 절차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하면 외국인이라도 활동보조를 비롯한 각종 장애인 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⁴⁰⁶⁾

국가인권위원회는 2008년 권고에서 이미 ‘국적’ 기준이 아닌 ‘거주지’ 기준의 장애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08. 7. 15.자 07진차359·07진차546·07진차919(병합) 결정). 당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여전히 이주민에 대한 장애 서비스 제공이 미흡한 현실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내용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장애인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는 사회적 취약 집단의 사회통합 증진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서비스의 제공은 그 사회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참여하는지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복지서비스는 국적에 따라 그 대상이 확정되기 보다는 사회통합 차원에서 상시 거주지 중심으로 적용되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 왜냐하면 사회복지서비스는 장애로 인한 개인의 일상생활과 사회생활 곤란에 대응하는 기능적 특징 때문에 공공부조와 같은 현금 급여적 성격과는 달리 거주하는 지역에서의 이용가능성 여부가 해당 장애인에게는 기초적인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4) 정부의 이행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

보건복지부는 “이미 2012년 「장애인복지법」을 개정(제32조의2 신설)하여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을 허용하고 있으나, 예산 상의 문제로 장애인연

405)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서비스과, “2018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2018), 5.

406) 비마이너, “장애인 등록 가능해진 ‘난민’ 아동 미르가 활동지원 못 받는 이유”, (2018. 1. 5. 18:12),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1750&thread=04r03>.

금, 장애수당, 활동지원서비스 등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하였다”며 “향후 정책여건 및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장애인연금, 활동지원서비스 등의 수급 자격 확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한다.

보건복지부의 입장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가 있는 지 10년이 지난 지금에도 큰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장애인 등록이 가능한 외국인은 일부에 불과하기 때문에, 근로를 하다가 산업재해로 장애가 발생한 외국인 등 장애인 등록과 지원이 시급한 외국인은 장애인 등록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다. 나아가 난민을 제외한 모든 외국인이 활동지원서비스 대상이 아니다.

외국인이 장애인 등록을 하더라도 이것이 곧바로 급여대상자가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장애 수당의 자격 조건은 장애인 등록이 되었다고 해서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세부 자격기준에 해당하는지를 심사받게 되어 있으므로 외국인에게 장애인등록을 허용한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공공부조의 부담이 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⁴⁰⁷⁾ 장애인등록조차 불허되는 외국인의 경우, 민간기관에서 제공하는 가장 기초적인 장애인복지서비스조차 이용할 수 없다.

따라서 정부에서 공공부조의 부담을 이유로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을 제한하기 위하여는 보다 실증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할 것이 요구된다. 장애인 등록 대상자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 중 장애 수당의 자격 조건을 갖춘 외국인의 수는 얼마나 되는지, 그에 따른 비용 지출이 어느 정도로 예상되는지 등 구체적인 수치를 바탕으로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 여부를 논의하여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장애인 등록 및 그에 따른 복지서비스 제공은 ‘국적’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안 된다. 2008년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서의 입장대로 국적 기준이 아닌 거주지를 기준으로 한 장애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는 인식 전환이 시급하다.

407) 국가인권위원회 2008. 7. 15.자 07진차359·07진차546·07진차919(병합) 결정.

15. 제19조 자립적 생활 및 지역사회에의 동참

가. CRPD 제19조

제19조 자립적 생활 및 지역사회에의 동참

이 협약의 당사국은 모든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한 선택을 통하여 지역 사회에서 살 수 있는 동등한 권리를 가짐을 인정하며, 장애인이 이러한 권리를 완전히 향유하고 지역사회로의 완전한 통합과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효과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여기에는 다음의 사항을 보장하는 것이 포함된다.

가. 장애인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자신의 거주지 및 동거인을 선택할 기회를 가지며, 특정한 주거 형태를 취할 것을 강요받지 아니한다.

나. 장애인의 지역사회에서의 생활과 통합을 지원하고 지역사회로부터 소외되거나 분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활동 보조를 포함하여, 장애인은 가정 내 지원서비스, 주거 지원서비스 및 그 밖의 지역사회 지원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다.

다. 일반인을 위한 지역사회 서비스와 시설은 동등하게 장애인에게 제공되고, 그들의 욕구를 수용한다.

한편 CRPD의 일반논평(General Comment) 제5호에서 장애인의 자립적 생활 및 지역사회 동참에 대해 논하고 있으며, 특히 제19조의 핵심인 탈시설의 범위, 목표, 우선순위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본 보고서와 관련된 부분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6. 정의

(a) 자립생활(independent living): 장애인이 자신의 생활을 선택, 통제하고 생활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모든 수단을 제공 받는 것을 의미함. 교통, 정보, 의사소통 및 개인지원에 대한 접근, 주거, 일상생활, 취미, 적당한 고용, 인간관계, 의복, 영양, 위생 및 의료, 종교활동, 문화활동, 성생활 및 출산권을 포함한 자율성 및 자기결정권이 핵심임

(b) 자립생활환경(independent living arrangement): 자립생활 및 지역사회 동참은 모든 종류의 거주시설 밖에서의 생활을 지칭함. 이는 특정 건물이나 환경에서의 생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생활이나 환경에 의한 강요로 인해 개인 선택과 자율성이 박탈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함. 시설화된 환경을 구성하는 요소로 강제적으로 지원을 타인과 공유하고, 지원 주체를 선택할 수 없거나 선택이 제한되는 것, 지역사회 내 자립생활에서 고립, 분리되는 것, 일상생활에 대해 선택할 수 없는 것, 동거인을 선택할 수 없는 것, 개인의 의지나 선호와 무관하게 경직된 삶, 특정 권위 하에서 한 집단의 개인이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활동을 하는 것, 서비스 제공에서의 가부장적 접근, 생활 환경 감독 및 불균형하게 높은 비율로 장애인들이 동일 환경에 거주하는 것 등이 있음. 따라서 위 특징들을 보인다면 대형 거주 시설 뿐 아니라 그룹홈이나 심지어 개인 주택에서의 생활도 자립생활이 아닐 수 있는 것임

(d)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개인지원(personal assistance)은 일반 개인지원과 구별되는 다음 요소들을 포함해야 함

- (i) 개인지원을 위한 자금지원은 개별화된 기준에 따라 적당한 고용이라는 인권 기준을 고려하여 제공되며, 어느 지원을 위해서든 사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당사자가 통제할 수 있어야 함
 - (ii) 장애인이 다양한 서비스 제공자 중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고용주(employer)로서 행위하는 등 개인 지원 서비스를 통제하고, 자신의 서비스를 설계할 수 있는 선택권을 보유해야 함
 - (iii) 개인지원은 1대1 관계로서 지원을 받는 당사자가 채용, 훈련, 감독해야 하며, 당사자 동의 없이 타인과 공유되지 않음
 - (iv) 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 전달에 대한 통제의 정도를 결정해야 하며, 어떤 경우에도 당사자의 의사가 확인되고 선호가 존중되어야 함. 의사결정 지원(supported decision-making)을 통해 개인지원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질 수도 있음
37. 동등한 지원 서비스에 대한 권리는 시설이나 서비스가 성과 연령에 민감할 수 있도록 당사자의 관련 절차 참여를 보장할 의무에 대응하며, 특히 아동의 자립적 생활 및 지역사회 동참에 대한 권리는 가족에게서 양육될 권리를 포함함
39. 주거지와 주거형태 및 방식, 동거인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로서 즉각 적용이 필요하며, 맞춤형 지원 서비스 및 서비스 시설에 대한 접근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로서 점진적인 실현이 요구되나 이는 구체적인 전략 및 계획을 즉각적으로 설계, 도입할 의무를 수반함
58. 탈시설은 또한 체계적인 전환을 요구하며, 이는 총체적 전략의 일부로서 시설의 폐쇄, 시설 규정의 제거 및 개별 전환 계획, 예산, 일정을 비롯한 다양한 개별화된 지원 서비스 구축을 포함함.

나. 최종견해 및 쟁점목록

(1) 최종견해

- 37. 위원회는 장애인시설 및 거주자 수의 증가에서 알 수 있듯이, 탈시설 전략이 효과적이지 않고 장애인을 지역사회에 통합시키기 위한 충분한 조치들이 부족한 점과 활동보조서비스를 포함한 모든 필요한 지원서비스를 보장하는 지역사회 내 통합을 위한 정책이 부족한 점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 38. 위원회는 당사국이 장애에 대한 인권적 모델에 기반한 효과적인 탈시설 전략을 개발하고, 지역사회 내 활동보조서비스를 포함한 지원서비스를 대폭 증가할 것을 촉구한다.
- 39. 위원회는 장애인들이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지불해야하는 비용이, 개인의 특성과 상황, 욕구가 아닌 “손상의 정도”를 기준으로, 또한 당사자의 소득이 아닌 가족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됨에 따라 일부 장애인의 경우 활동보조서비스의 제공으로부터 배제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 40. 위원회는 당사국이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사회부조 프로그램들이 충분하고 공정한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도록 보장할 것을 권장한다. 특히 위원회는 당사국이 “손상의 정도”가 아닌 장애인의 특성과 상황, 욕구와 가족의 소득이 아닌 장애인당사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활동보조서비스 이용금액을 산정할 것을 권고한다.

(2) 쟁점목록

20. 장애인 다수가 여전히 시설에서 거주하는 경우 효과적인 탈시설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여부와 구체적인 관련 조치를 설명하십시오. 아울러, 현재 시설에 거주하는 모든 이들의 효과적인 탈시설화 방안과 일정을 설명하고, 이미 퇴소한 장애인들의 수와 이들의 현황에 대해서도 설명하십시오.
21. 활동보조서비스(「장애인복지법」)와 최저생계비(「국민기초생활보장법」)를 비롯해, ‘장애 정도’나 가족구성원의 소득이 아닌 해당 장애인의 요구와 경제적 사정에 근거해, 지역사회에서 장애 관련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설명하십시오.

(3) 실태조사의 대상 쟁점

본장에서는 장애인의 자립적 생활과 지역사회 동참을 위한 정부의 이행 현황 및 이행계획을 평가하기 위해 정부의 효율적인 탈시설 전략 개발, 지역 내 지원 서비스 강화, 사회부조 프로그램 지원, 활동보조서비스 이용금액 기준 수정 관련 실태를 검토하였다.

다. 탈시설 전략 개발

(1) 정부의 이행 현황

보건복지부는 효과적인 탈시설 전략을 개발하라는 위원회의 최종견해를 수용하면서, 장애인의 자립역량 강화 및 지역사회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에 대한 국고 지원을 계속하고, 시설 입소 장애인의 인권보호 강화 및 자립생활을 유도하기 위해 기존 시설 소규모화 및 4인 이하 소규모 공동생활가정체험홈 설치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며, 장애인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지역사회 복귀 및 자립생활 지원 강화 등을 위한 제도 및 정책 방안 마련을 위해 「장애인거주시설 설치운영기준 등 개정안 마련」 연구용역을 진행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시설 이용 장애인의 지역사회 복귀 및 자립생활 지원강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 답변하였다. 또한, 탈시설 및 주거지원 강화를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중점과제 및 정책목표로 설정하였으며, 관련하여 「장애인복지법」 개정, 탈시설 지원센터 설치, 탈시설 장애인들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제공 및 정착금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2) 한국의 탈시설 정책 현황

(가) 한국법상 시설의 정의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1호는 장애인거주시설을 ‘거주공간을 활용 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요양·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거주시설에는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단기 거주시설, 공동생활가정이 있다(「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 관련 [별표4]).

현행 법령에 탈시설의 직접적인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다만 2018~2023년 시행될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안에서 정부는 지역사회 중심 복지체계 구축을 위해 탈시설 자립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장애인정책 과제로 제시함으로써 탈시설이 향후 정부의 정책 방향임을 천명하였다.⁴⁰⁸⁾ 다만, 2018년 10월 현재 이와 같은 탈시설 계획이 반영된 구체적인 안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나) 시설거주 현황

2015년 기준 한국의 등록 장애인 수는 2,490,406명이며, 이중 장애인거주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수는 31,222명이다. 등록 장애인의 1.25%, 1급 장애인과 2급 장애인을 합한 이른바 ‘중증장애인’의 5.86%가 장애인거주시설에 거주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장애인거주시설의 전체 시설 수와 거주 인원이 증가 추세(2015년도 거주인원 감소)에 있으며, 단지 2011년 이후 지체장애인 시설, 시각장애인 시설, 청각언어장애인 시설은 감소 추세에 있다. 반면 지적장애인 시설은 많이 증가한 편이고, 중증장애인 시설과 공동생활가정은 소폭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지적장애인 시설의 거주인원은 2015년 12,369명으로, 2011년 10,788명에 비해 14.7%, 중증장애인 시설의 거주인원은 4.8%(10,798명 구 11,314명) 증가하였다.⁴⁰⁹⁾

408) 보건복지부, “장애인의 자립생활이 이루어지는 포용사회를 위한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안) (2018~2022)” (2018).

409) 이만우외 1, “장애인거주시설 소규모화 정책의 개선방안”, 국회입법조사처 현안보고

(다) 탈시설의 정의

탈시설은 광의와 협의로 정의될 수 있다. 탈시설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탈시설 정책의 목표 및 효과적인 정책 수단의 종류가 달라진다. 탈시설을 광의로 정의하는 경우 이는 장애인거주시설을 개선하고 탈시설을 지향하는 일련의 과정과 대규모시설보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나은 방식의 보호를 위한 노력을 모두 포함한다. 탈시설을 광의로 정의할 경우 기존 시설의 기준 강화나 소규모화가 모두 탈시설 정책에 포함되나, 협의의 탈시설 정의에서 이러한 정책은 탈시설 정책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오히려 시설 중심 정책의 연장으로 해석될 수 있다.

CRPD나 최종견해, 쟁점목록에서 광의 혹은 협의의 탈시설이라는 개념을 인용하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CRPD 본문에서 ‘장애인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자신의 거주지 및 동거인을 선택할 기회를 가지며, 특정한 주거 형태를 취할 것을 강요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최종견해에서는 ‘장애인시설 및 거주자 수의 증가’ 자체를 문제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다. 시설의 규모나 여건이 아니라 당사자의 자율성, 시설 및 거주 장애인의 수로 탈시설 정책의 효과성을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위원회 일반논평 제5호의 Para. 16에서는 대형시설이 아닌 그룹홈이나 개인주택에서조차 시설적인 특징들이 나타난다면 자립생활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따라서 위원회가 제시하는 최종적인 탈시설 정책의 목표는 보편적 주택에서의 자립생활만을 탈시설로 정의하는 협의의 탈시설 개념에 가깝다. 결론적으로 시설환경을 개선하고 그 규모를 줄이는 것은 시설정책에 불과하므로, 탈시설은 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의 보편적 주택에서 자립생활을 하는 경우로 정의되어야 한다.⁴¹⁰⁾

위 연구에서는 모든 개인의 자유와 선택권 보장, 모든 개인의 성원권(成員權) 보장 및 모든 개인의 다양성과 현재적 및 잠재적 능력 존중과 발현권(發現權) 보장을 탈시설의 기본 철학으로 소개하고 있다. 위 세 가지 철학을 기반으로 하여 같은 연구에서 제안한 탈시설화 추진 원칙은 아래와 같다.

서 제303호 (2017), 1.

410) 박숙경 외 9, “장애인 탈시설 방안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7년도 인권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2017), 15.

- 이용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 체계를 당사자 위주의 개인별 지원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 주거지원시 모든 장애당사자가 제약이 최소화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해야 한다.
- 지역사회기반의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창출해야 한다. 이때 새로운 서비스는 기존 시설보호와 유사해서는 안 된다. 시설을 소규모화하거나, 체험홈을 늘리는 방식의 서비스 확충은 지양하여야 한다.
- 시설에의 신규 입소를 막고 기존시설을 폐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신규시설 설치를 현행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여 그 설치 요건을 최대한 엄격히 하여야 한다.
- 현존하는 시설에 대한 투자를 줄여나가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이에 대한 예산 투입을 중단하여야 한다.
- 인적자원을 개발해야 한다. 탈시설화 지원인력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여 사회적 저항을 줄이고, 서비스 질을 개선해야 한다. 기존시설의 인력을 새로운 자립지원 서비스 인력으로 전환 배치하고, 이들이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훈련해야 한다.
- 탈시설화 이후의 자립생활을 모니터링하고, 재시설화를 방지해야 한다.
- 지속적으로 시민과 가족의 이해를 증진시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 탈시설화에 대한 두려움을 가족과 당사자가 극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탈시설화 정책으로의 전환 과정에 기존시설과 서비스 제공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의 토대를 구축해야 한다.
- 전체적 관점(holistic approach)이 필요하다. 탈시설화가 사회 전체의 관점에서 어떠한 변화를 일으키는지를 종합적으로 통찰하려는 노력과 연구가 필요하다.⁴¹¹⁾

(3) 중증장애인지립생활지원센터 국고 지원 지속

(가) 법적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54조에서 아래와 같이 중증장애인지립지원센터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 제54조(중증장애인지립생활지원센터)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지립생활지원센터를 통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지립생활지원센터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또는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5. 12. 29.>

411) 박숙경외 9, 앞의 글, 169.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의2에서는 자립생활센터의 운영기준 및 주요 업무를 규정하고 있다.

<p>제39조의2(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운영기준)</p> <p>① 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 “자립생활센터”라 한다)의 의사결정, 서비스 제공 및 운영 등은 장애인 주도로 이루어져야 하며, 그 운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자립생활센터는 의사결정기구의 과반수를 장애인으로 구성하여야 한다.</p> <p>2. 자립생활센터는 장애동료 상담전문가 1인 이상의 인력을 갖추어야 하며, 센터의 장 이외의 직원 중 1인 이상은 장애인이어야 한다.</p> <p>3. 자립생활센터는 법 제54조제1항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업무를 주로 수행하여야 한다.</p> <p>가. 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 강화 및 동료상담 등 장애인 동료에 의한 서비스 지원</p> <p>나. 모든 유형의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참여적이고 통합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정보제공 및 의뢰 등 다양한 서비스의 제공과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물리적·사회적 환경개선 사업</p> <p>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참여하고 생활하는 데 있어서의 차별 해소 및 장애인 인권의 옹호·증진</p> <p>라. 중증장애인에게 적합한 서비스의 제공</p>

(나) 국고지원 현황

국회예산정책처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발표한 평가에 의하면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에 대한 국고 지원 총액은 아래 표와 같이 꾸준히 증가하였다.⁴¹²⁾

[표-36] 장애인복지사업의 예결산 추이

(단위: 억 원, %)

단위사업	세부사업	2012	2013	2014	2015	2016	연평균 증가율
장애인 권익증진 및 자립생활 지원 (0.33)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34	49	47	53	50	7.7
	장애인운전교육장 임차 및 순회교육	6	5	5	5	6	
	장애인차별금지 모니터링 및 인식개선	6	4	4	6	5	
	소계	46	58	55	64	62	

(2010~2014년은 결산액, 2015년은 예산액, 2016년은 예산안 기준임.)

412) 국회예산정책처, 장애인복지사업 평가(통권 346호) (2015).

중증장애일자립생활에 대한 국고 지원 총액은 증가하고 있으나, 개별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 대한 국고 지원은 지난 13년간 1억 5000만 원(국고 6000만 원, 지방비 9000만 원)으로 묶여있다. 그마저도 보건복지부 추산 전국 227개 중 62개소만 지원받고 있다. 62개소에 대한 2018년 총 예산은 38억 원이다. 반면 수용시설 예산은 5000억 원이다.⁴¹³⁾ 효과적인 탈시설 전략을 개발하라는 위원회 최종 견해 및 그에 대한 정부 답변과 달리 여전히 장애인 예산이 시설 위주로 편성되고 있는 것이다.

(다) 국고지원 정책 평가

정부의 장애일자립생활센터 국고 지원 정책에 대해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국고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측면과 장애인자립지원센터가 충분히 적극적으로 시설 거주 장애인의 탈시설에 기여하고 있지 못하다는 측면이다.

우선, 한국장애일자립생활센터연합회와 한국장애일자립생활센터협의회(이하 “한총협”)은 당장 내년부터 지원 개소를 올해 62개소에서 82개소로 20개소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후 단계적으로 2020년 102개소, 2022년 142개소까지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복지부에서 지원하는 국고보조금 또한 현재 6000만 원에서 당장 내년에 1억 2000만 원으로 2배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또 장애인복지법 속 자립생활센터 운영비와 사업비 지원을 의무화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음을 피력하고 있다.⁴¹⁴⁾

보다 근본적으로, 중증장애일자립생활지원센터의 역할은 중증장애인이 자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다. 탈시설의 궁극적인 목적이 장애인의 자립생활인만큼 이들 센터들이 탈시설에 어느 정도 기여할 것임은 분명하다. 다만, 중증장애일자립생활지원센터의 기능은 기왕에 시설에서 퇴소한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들의 시설 퇴소 자체를 유도하는 역할은

413) 에이블뉴스, “‘벼랑 끝’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청와대 호소”, 에이블뉴스 (2018. 4. 25. 16:46:39),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28&NewsCode=00282018042516002364404>

414) 에이블뉴스, “‘벼랑 끝’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청와대 호소”.

수행하고 있지 않다. 이에 대한 국고 지원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시설 거주 장애인의 수가 감소하지 않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만으로는 CRPD가 요구하는 시설 수 및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 수의 감소를 실현할 수 없다.

(4) 시설 소규모화 및 공동거주시설, 체험홈 활성화

(가) 시설 소규모화 현황

2015년 12월 기준 장애인거주시설 거주인원 총 31,222명 중 30인 이하 시설 거주인이 11,029명(35.3%), 31인~99인 시설 거주인이 14,459명(46.3%), 100인 이상 시설 거주인이 5,734명(18.4%)이다. 전체 장애인거주시설 1,484개소 중 30인 이하 시설 수는 1,167개소(78.6%)이고, 31인~99인은 278개소(18.8%), 100인 이상은 39개소(2.6%)이다. 참고로 공동생활가정의 입주정원은 4인, 단기거주시설의 정원은 10인 이상 30인 이하로, 공동생활가정과 단기 거주시설에서는 30인 이하 인원이 거주하도록 되어 있다.⁴¹⁵⁾ 공동생활가정 수는 717개소(전체 1,484개소)로 48.3%를 차지하고 있으며, 거주 인원은 2,899명으로 장애인거주시설 거주인원 총 31,222명 중 9.3%를 차지하고 있다.⁴¹⁶⁾ 한편, 30인 이하 시설은 공동생활가정과 단기거주시설을 제외한 전체 장애인거주시설의 49.4%에 머물고 있고, 31~99인 시설이 44.4%나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100인 이상 시설도 6.2%나 되며, 공동생활가정은 전체 장애인 거주시설의 절반에도 이르지 못하였다.⁴¹⁷⁾

(나) 시설 소규모화 및 공동가정생활 활성화 정책

2011년 「장애인복지법」 개정(2012. 3. 31. 시행)으로 장애인거주시설 설치 시 원칙적으로 정원이 30명을 초과할 수 없게 되었고(「장애인복지법」 제59조 제3항),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3-2017)」(보건복지부 등, 2012)에 따라 대규모 장애인거주시설을 개편하여 소규모 거주시설을 확충하는 정책이 시행되었다. 30인 초과 기존 대규모 시설을 30인 이하 소규모 시설로의 단계적 전환을 추진하면서

415) 이만우외 1, 앞의 글, 8.

416) 이만우외 1, 앞의 글, 9.

417) 이만우외 1, 앞의 글, 13.

100인 이상 대규모 시설 비율을 축소할 계획이었는데(2013년 15.6% → 2017년 12.2%), 그 실적은 장애인거주시설의 소규모 시설 비율로 나타났다. 소규모 시설 비율은 전체 장애인거주시설 대비 30인 이하 시설 비율(‘소규모화 비율’)을 의미 하는데, 2015년 77.8%로서 2013년 75.8%에 비해 2.0% 증가했으며, 2017년에는 80%대로 진입하겠다는 것이 목표였으며, 더디긴 하지만 30인 이하 소규모 시설 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⁴¹⁸⁾

기존 시설의 소규모화를 유도하기 위한 대표적인 정책은 장애인거주시설 관리 운영비를 30인을 기준으로 차등 지원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2018년 기준 30인 까지는 인원수에 따라 연간 인당 2,242,000원을 지원하나, 30인이 초과하는 인원 에 대해서는 연간 인당 629,000원을 지원하고 있다.⁴¹⁹⁾

정부는 또한 장애인거주시설 소규모화를 위해 기능보강사업 시 소규모 거주시 설을 우선 지원하고, 거주시설 운영형태를 다양화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 국고지원 기준 안내 시 소규모화 추진을 위한 신축, 증개 축 및 공동생활가정 신설 등을 우선 지원한다. 지역사회 내에서 가족과 장애인의 근접 생활이 가능하도록 3~4인이 생활하는 주택 7~8개를 통합 운영하는 형태 의 거주시설을 확대하고, 신규지원 시설은 지역사회 내 설치, 소규모화, 대상자 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기본조건으로 설치, 운영, 지원한다.⁴²⁰⁾

(다) 시설 소규모화 정책 평가

정부의 시설 소규모화 및 공동생활가정 활성화 정책 역시 두 가지 한계를 내 포하고 있다. 시설 소규모화 및 공동생활가정 활성화가 충분히 진행되고 있지 못 하다는 측면과 소규모화 정책 자체가 CRPD가 요구하는 진정한 탈시설에 부합 하지 못한다는 측면이다.

우선, 30인 초과 장애인거주시설을 새롭게 설치할 수 없도록 「장애인복지법」 제59조 제3항에 명시하고 있으나, 기존 30인 초과 대규모 시설의 소규모화에 대 한 강행 규정은 없다. 2011년 「장애인복지법」 개정 당시 장애인거주시설의 소규

418) 이만우외 1, 앞의 글, 18.

419) 더나은복지세상 사회복지 업무자료, “2018년 장애인거주시설 관리운영비 지원기준” <https://www.welfare24.net/ab-3864-318>.

420) 이만우외 1, 앞의 글, 20.

모화를 유도하기 위해, 신축 시설은 30인을 초과할 수 없게 하고, 기존 시설들은 5년간의 유예기간을 주고 30인 이하 시설로 축소하게 하자는 논의가 있었으나, 5년간의 유예기간을 두더라도 기존 시설들이 큰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의견에 따라 인센티브 등을 통해 30인 이하 시설로 유도하자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⁴²¹⁾

게다가 시설 인력 배치 기준 역시 시설 소규모화를 억제하고 있다. 30인 미만 시설에는 30인 이상 시설에 배치되는 사무국장(총무), 사회재활교사, 위생원이 배치되지 않는다. 30인 이상 시설에만 장애유형별 거주시설에 따라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상담평가요원, 청능치료사, 언어치료사, 보행훈련사가 배치된다.⁴²²⁾ 따라서 시설 입장에서는 대규모 시설을 운영해야 보다 풍부한 인력을 배치할 수 있으므로 시설을 소규모화할 유인이 적다.

공동생활가정 확대 설치는 30인 이하 시설로의 전환·개편과 더불어 소규모화 정책의 핵심이지만, 공동생활가정은 2012년도 667개소, 2013년 685개소, 2014년 713개소, 2015년 717개소로 더딘 증가 속도를 보여주고 있다.⁴²³⁾ 이는 입주 인원 4인에 종사자가 1인에 불과한 시설 인력 상황 등 공동생활가정 환경이 열악한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현재 공동생활가정은 관련 지침에 따라 시설 당 시설장 또는 사회재활교사 1인과 입주정원 4인이라는 단일 유형으로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입주 이용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선택권이 제한되어 있다. 공동생활가정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낮 시간 동안 근로 고용훈련, 교육 및 재활훈련 등에 참여하고 있어야 하므로 근로 등의 활동이 곤란한 장애인은 입주할 수 없는 것이다.⁴²⁴⁾

(라) 체험홈 확대 정책

체험홈을 확대 설치하도록 하는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는 않다. 다만 2018~2023년 시행될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안 중 장애인 거주 시설 서비스의 다양화 정책의 하나로 아파트형 등 일반주택에 그룹홈(체험홈) 다수를 설치하는 등 그룹홈(체험홈)의 확대를 통해 대규모 시설내 거주인원 감축

421)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법안심사소위원회)”, (2011. 3. 8.).

422) 이만우외 1, 앞의 글, 22.

423) 이만우외 1, 앞의 글, 24.

424) 이만우외 1, 앞의 글, 25.

을 추진한다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⁴²⁵⁾ 중앙정부가 체험홈을 탈시설의 최종단계로 혹은 최소한 중간단계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중앙 정부와는 달리 몇몇 지자체들은 자체적으로 체험홈 설치 및 확대 정책을 탈시설 및 지역사회 통합 정책의 일환으로 실시하여 왔다. 대표적으로 서울시는 아래에서 살펴볼 1차 계획에 이어 2018년 발표한 제2차 장애인거주시설 탈시설화 추진계획에서 탈시설 목표 인원 중 230명을 자립생활 체험홈으로 탈시설할 계획이라 밝히고 있다.⁴²⁶⁾

(마) 체험홈 확대 정책 평가

하지만 대표적인 소규모 시설인 체험홈의 실제 운영 실태는 체험홈이 진정한 탈시설과 얼마나 거리가 먼 주거 형태인지 보여준다. 체험홈이 실질적인 자립생활 거주 형태인지를 두고 장애계는 지속해서 우려를 제기해왔는데, 결국 벗어나야 할 대상인 시설에 탈시설 단계를 맡기는 것이 자립생활이라는 목적을 흐릴 수 있고, 체험홈에서는 시설이 여전히 체험홈 거주인을 관리하는 데다, 체험홈 거주인은 자립생활에 필요한 복지 수급비나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없어 자립생활이나 지역사회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2011년부터 2016년 5월까지 서울시 체험홈 퇴소자 현황을 살펴보면, 126명이 체험홈에서 퇴소했고 그 중 53.2%는 시설로 복귀했다. 반면 퇴소 인원 중 자립으로 볼 수 있는 단계로 나아간 인원은 그에 미치지 못했다. 자립생활주택으로 간 인원은 19명, 완전하게 자립한 인원은 11명으로, 그 비율은 23.8%에 그쳤다. 그 외에 다른 체험홈으로 이주한 4명, 공동생활가정 12명, 발달장애인 지원주택 3명이 있으나 이들은 거주시설로부터 완전히 독립적인 거주 형태로 이주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퇴소자뿐 아니라 현재 체험홈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거주기간을 통해서도 체험홈이 시설화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2016년 현재 체험홈 입주자 중 입주기간이 3~4년 사이인 거주인은 21명, 4~5년 사이인 거주인은 13명이었고, 5년 이상 체험홈에 거주한 인원도 8명이나 됐다. 거주인 중 3년 이상 장기 거주인의 비

425) 보건복지부, “장애인의 자립생활이 이루어지는 포용사회를 위한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안) (2018~2022)”.

426) 서울특별시, “2018년 서울시 장애인거주시설 탈시설화 정책 시행계획” (2018).

율은 30.2%에 이른다. 여기에 3년 이상 체험홈 거주 후 퇴소하고 다시 시설로 복귀한 사람(2명)까지 포함하면 총 44명이 진전된 자립생활 주거로 나아가지 못한 것이다. 체험홈이 자립 중간 단계가 아닌 장기간 거주 형태가 된다면 시설과 차이가 없다.⁴²⁷⁾ 이렇듯 체험홈이 시설의 특성을 여전히 갖고 있을 뿐 아니라 중간 단계로서의 역할도 제대로 시행하고 있지 못하므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탈시설 정책이 시행되기에 앞서 체험홈의 성격이나 역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5) 장애인거주시설 설치운영기준 등 개정안

보건복지부가 개선방향에서 언급한 장애인거주시설 설치운영기준 등 개정안 관련 용역은 한양대학교 산업협력단에 의해 2015년 수행되었다. 연구의 목적은 장애인거주시설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재정립을 통해 거주 생활 환경 개선 및 돌봄 기능 강화에 필요한 시설 설치기준 및 종사자 인력기준, 최저서비스 기준 등을 개선함으로써 시설 이용 장애인의 인권 및 안전 등 돌봄서비스를 강화하는 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근거들을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개정안을 마련하는 것이다.⁴²⁸⁾ 해당 보고서의 요약 부분에 정리된 연구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보고서 주요 내용

우선, 지역사회 중심의 거주시설 개편 방향으로 거주시설을 ‘2인 이상으로’ 인원기준을 명시하고, 최중증의 개념을 재정립함과 동시에 집중지원시설을 신설하며, 장애인거주서비스 급여 종류의 다양화를 통해 지원주거(supported living) 서비스를 도입하고, 일시 및 긴급보호의 단기거주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지역별 거점기관을 선정하며, 거주공간을 다양화하여 단일건물, 아파트형 등 거주공간개념을 확대하는 것을 제시하였다.⁴²⁹⁾

427) 비마이너, “체험홈이 탈시설로 가는 과정’이라던 서울시, 거짓말이었다”, 비마이너 (2016. 08. 26. 21:12:12),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0057>.

428) 박경수의 13, “장애인거주시설 설치·운영기준 등 개정안 마련 연구보고서”, 보건복지부 (2015), 3.

429) 박경수의 13, 앞의 글, 18.

같은 연구에서는 장애인 거주시설 소규모화 전략으로 다음 네 단계를 제시하였다.

- 1단계: 인력배치 및 시설설치기준 변경 (즉시)
- 2단계: 거주단위(UNIT)를 6명 이하로 줄임. (2년 내)
- 3단계: 규모를 현재의 60-70%로 줄임. (3년 내)
- 4단계: 규모를 30인 이하로 줄임. (5년 내)

개별 시설의 소규모화를 위해 규모에 따라 30인 이하는 집합건물에서 일반주택으로 이주를 통하여 소규모화, 31~50인 이하는 시설 설치기준 변경으로 소규모화, 51~100인 이하는 첫째, 시설 설치기준 변경과 일반주택 구입을 통한 시설 소규모화, 둘째, 자산대체를 통해 시설을 분리하여 소규모화, 100인 이상의 경우 앞의 모든 전략을 이용한 단계적 장기계획을 통한 소규모화 방식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⁴³⁰⁾

같은 연구는 자립, 탈시설 지원 정책 방안 역시 단기와 장기로 나누어 소개하였다.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단기 대책으로는 자립생활지원 전담인력의 배치를 제시하였으며, 사회복지사와 함께 자립생활센터에서 활동하고 있는 동료상담가를 포함하는 전담팀을 구성하는 것을 대안으로 소개하였다.⁴³¹⁾ 장기 대책으로는 주거를 공공에서 제공하거나, 전세 보증금을 대출하는 것, 장기적으로 장애인의 소득 보장을 위해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되고 있는 자립전환지원금 제도를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 시도 단위의 탈시설 전환조직을 설립하여 지원하는 것 등을 제시하였다.⁴³²⁾

(나) 연구용역 평가

위 연구는 탈시설의 여러 측면들을 포괄적으로 다루었으며, 시설 소규모화나 생활여건 개선과 같은 단기적인 대책뿐 아니라 지역사회에서의 자립생활을 위한 단기, 장기 대책까지 마련하고 있다. CRPD에서 요구하나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정

430) 박경수의 13, 앞의 글, 24.

431) 박경수의 13, 앞의 글, 27.

432) 박경수의 13, 앞의 글, 28.

책들에는 결여되어 있는 궁극적인 탈시설을 실현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연구의 내용을 살펴보면 시설 소규모화 및 생활여건 강화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안 및 시간표가 제시되고 있음에 반해 시설 거주인들의 퇴소나 지역사회 정착에 대해서는 인력, 재정 마련의 필요성 정도만 언급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퇴소 절차나 시간표 등은 제시하지 않았다. 여전히 본격적인 탈시설은 당장의 과제가 아닌 상당한 미래에 추진될 정책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그에 더하여, 위 연구가 진행된 지 수년이 지났으나 이에 기초한 구체적인 정책이 실행되지 않았다는 점이 가장 심각한 문제이다.

(6) 탈시설 및 주거자원 강화

(가) 탈시설 및 주거자원 강화 정책의 주요 내용

보건복지부가 밝힌 탈시설 및 주거자원 강화 정책 중 「장애인복지법」 개정 계획을 우선 살펴보면, 보건복지부는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장애인 탈시설화 및 지역사회 정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추진하고 올 4월 입법예고할 것이라 밝혔다.⁴³³⁾ 하지만 현 10월까지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되지 않았다. 따라서 여전히 개정될 「장애인복지법」에서 어떤 내용으로 장애인 탈시설화 및 지역사회 정착의 법적 근거가 추가될지 예상할 수 없다. 특히 본격적인 탈시설화 추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나 관련 단체의 반발 또한 만만치 않은 기존 시설에 대한 개입이 어느 수준에서 이루어질지 예상하기 어렵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올 11월까지 탈시설지원센터 운영계획 및 운영 매뉴얼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⁴³⁴⁾ 현재 이와 관련된 연구 용역이 아직 진행 중에 있으며,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탈시설 지원센터의 구체적인 형태나 운영 계획을 평가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탈시설 장애인들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제공 및 정착금 지원 역시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발표되지 않아 그 내용이나 수준이 적절한지 평가하기 어렵다.

433) 보건복지부,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2018).

434) 보건복지부,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2018).

(나) 탈시설 및 주거자원 강화 정책 평가

앞선 장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존에 보건복지부가 탈시설 방안으로 제시했던 정책들은 모두 직접적으로 탈시설을 유도하는 정책이 아니었다. 그에 비해 보건복지부의 2018년 주요업무로 선정된 「장애인복지법」 개정, 탈시설 지원센터 설치, 탈시설 장애인들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제공 및 정착금 지원은 모두 장애인 탈시설을 위해 직접적으로 필요한 정책들이다.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으로 향한 첫 걸음이라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이 드러나지 않아 이러한 정책들이 얼마나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장애인 탈시설에 기여할 수 있을지 판단하기 어렵다. 이미 「장애인복지법」 개정은 계획보다 한참이 지났으나 아직 개정안조차 발표되지 않았다는 점은 우려스럽다.

(7) 소결 및 제언

정부가 기존에 소개한 탈시설 정책인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 대한 국고 지원이나 시설 소규모화, 공동생활가정 활성화 등은 탈시설의 궁극적인 목표인 장애인의 시설 퇴소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기여를 하기 어려운 간접적인 정책들이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가 추진한 연구 역시 직접적인 탈시설 촉진을 위한 수단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안이나 기한을 제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들 기존 조치만으로 정부가 최종견해에서 요구한 효율적인 탈시설 전략을 개발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의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정부는 처음으로 실질적인 탈시설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며, 이를 위한 법적 근거, 전달 체계 등을 마련할 것이라 밝혔다. 아직 구체적인 정책의 내용이 발표되지 않아 최종적인 평가는 불가능하나, 위원회가 권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겠다는 신호로 해석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진전이다.

한편, 구체적인 탈시설 정책 수립 시 성과 연령에 민감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특히 장애아동의 경우 (혈연 가족이든 아니든) 가족과 성장해야 하는 바, 이들에 대한 탈시설 정책은 분명 성인에 대한 탈시설 정책과는 달라야 할 것이다(일반논평 Para. 37 참고).⁴³⁵⁾ 또한, 탈시설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435) 최승철 자문위원 서면의견서.

어떤 상황에서도 장애가 중증이라는 이유로 탈시설 대상에서 제외되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⁴³⁶⁾ 마지막으로, 현재 논의 중인 탈시설 정책에서는 장애인거주시설만 탈시설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정신부양시설, 노숙인시설, 노인복지시설에도 다수 장애인들이 거주하고 있으므로 장기적으로는 탈시설 정책이 모든 시설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러한 확대 없이는 장애인거주시설에서 퇴소하더라도 지역사회에 정착하는 대신 다른 시설에 입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⁴³⁷⁾

탈시설 정책의 진행 속도와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우선, 결국 시설을 폐쇄하지 않으면 탈시설은 가능하지 않으며 따라서 시설폐쇄법을 제정하고,⁴³⁸⁾ 거주시설에 제공되는 보조금을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⁴³⁹⁾ 반면, 대안 마련 없이 모든 시설을 폐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으므로 탈시설 추진에 있어 조정과 조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특히, 의사소통이 전혀 되지 않거나 여러 사람들과 모여 생활하고 싶어 하는 등 다양한 이유로 시설 거주를 선호하는 당사자들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들의 의사를 묻지 않고 일괄적으로 탈시설 하는 것은 폭력적일 수 있다는 우려이다.⁴⁴⁰⁾

이와 같이 탈시설은 수많은 이해당사자들이 관련되고 막대한 재정 및 인력이 요구되는 종합적인 정책이다. 정부가 적극적인 개입 의지를 갖지 않는다면 어떠한 조문이 신설되고 기관이 설립되더라도 효율적으로 시설 및 시설 거주인의 수를 감소시킬 수 없을 것이다.

라. 활동지원급여 등 지역 내 지원서비스 강화

(1) 정부의 이행 현황

보건복지부는 활동지원급여 등 다양한 지역 내 지원서비스를 강화하라는 위원회의 최종견해를 조건부로 수용하면서, 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 급여량 확

436) 2018년 10월 22일 제1차 FGI에서 장애부모연대 이리나 실장의 의견.

437) 2018년 10월 26일 제5차 FGI에서 희망을 만드는 법 김재왕 변호사의 의견.

438) 2018년 10월 22일 제1차 FGI에서 장애여성 공감 강진경 활동가의 의견.

439) 2018년 10월 22일 제1차 FGI에서 장애부모연대 이리나 실장의 의견.

440) 2018년 10월 25일 제4차 FGI에서 공감 염형국 변호사의 의견.

대와 관련하여 지자체에 자율권을 부여하고, 주간활동서비스를 제도화하여 신규 활동지원급여 유형으로 추가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라 답변하였다. 다만 중앙정부차원의 급여량 확대는 이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장애계의 관련 요구에 대해서는 국가 재정의 한계, 사업 효과성 등을 중심으로 설득할 예정이라 밝혔다.

(2) 활동지원급여의 법적 근거

2005년 4월부터 시작된 활동지원급여는 2007년 4월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후 2011년 10월 방문목욕과 방문간호를 포함한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도입되었다.⁴⁴¹⁾

우선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활동법」”)에서 다음과 같이 활동지원급여의 근거 및 종류를 규정하고 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6조(활동지원급여의 종류)

① 이 법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3.30.>

1. 활동보조: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이하 “활동지원인력”이라 한다)인 제27조에 따른 활동보조인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등을 지원하는 활동지원급여
2. 방문목욕: 활동지원인력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
3. 방문간호: 활동지원인력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이하 “방문간호지시서”라 한다)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
4. 그 밖의 활동지원급여: 야간보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지원급여

(3) 활동지원급여제도 현황

활동지원급여의 지원대상은 만 6세 이상~만 65세 미만의 1급, 2급, 3급 등록

441) 강정배, “장애인활동지원 주간활동급여 시범사업 분석 및 제도개선 연구보고서”, 보건복지부 (2016), 3.

장애인이다. 지원내용은 신변처리 지원, 가사지원, 일상생활 지원, 외출/이동/보조 등 활동 지원 및 방문목욕, 방문간호로 구성된다. 서비스 대상자에게 인정등급에 해당하는 매월 일정액의 바우처를 지원하며, 이들은 매월 일정액의 본인 부담금을 납부하고 바우처 지원액을 사용할 수 있다(인정점수 산정 및 본인부담금 바우처에 관해서는 아래 해당 부분 참조).

급여량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활동지원급여는 기본급여와 추가급여로 구성된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기본급여
 - 1등급: 127만원
 - 2등급: 101만2,000원
 - 3등급: 76만4,000원
 - 4등급: 50만6,000원
- 추가급여
 - 인정점수가 400점 이상으로 독거(1인 가구)인 경우이거나, 가구구성원이 1~3급 장애인이거나 18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가족만으로 구성된 경우: 293만8,000원
 - 인정점수가 380~399점으로 독거(1인 가구)인 경우이거나, 가구구성원이 1~3급 장애인이거나 18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가족만으로 구성된 경우: 86만1,000원
 - 인정점수가 380점 미만으로 독거(1인 가구)인 경우이거나, 가구구성원이 1~3급 장애인이거나 18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가족만으로 구성된 경우: 21만6,000원
 -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86만1,000원
 - 거주시설 등에서 퇴소하여 자립을 준비하는 경우: 21만6,000원
 - 직장에 다니는 경우: 43만1,000원
 - 학교에 다니는 경우: 10만8,000원
 - 가족(실질적 보호자) 등의 결혼, 출산, 입원 등으로 보호자가 일시적으로 부재한 경우: 21만6,000원
 - 인정점수 400점 이상으로 수급자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의 직장생활학교생활 등으로 인하여 보호가 필요한 경우: 78만6,000원⁴⁴²⁾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이용자의 인정조사등급별 급여량은 월평균 1,099,000원이며, 최소 급여량은 422,000원, 최대량은 3,892,000원이다. 최대 급여량을 받는 수급자의 급여량은 최소 급여량 수급자의 9.2배로 편차가 크게 나타난다. 등급별 총 급여량의 평균을 살펴보면 1등급 1,499,000원, 2등급 939,000원, 3등급 729,000원,

442) 복지로 “장애인활동지원”, <http://www.bokjiro.go.kr/welInfo/retrieveGvmtWelInfo.do?welInfSno=355>.

4등급 531,000원이다. 1등급의 최소는 1,040,000원으로 추가급여 미수급자이며, 최대는 3,892,000원으로 1등급에서 최대 수급자는 최소 수급자의 약 3.7배로 나타난다. 2등급의 최소는 834,000원, 최대는 1,891,000원으로 최대 수급자는 최소 수급자의 2.3배이다. 3등급은 최소 628,000원, 최대 1,509,000원이며 최대수급자는 최소수급자의 2.4배, 4등급은 최소 422,000원, 최대 1,479,000원으로 최대수급자는 최소수급자의 3.5배를 수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동일 인정조사 등급이라도 추가급여에 따라 수급하는 총 급여량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⁴⁴³⁾

(4) 지자체 자율성 부여

(가) 법적 근거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중앙정부와의 협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제26조(협의 및 조정)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와 재정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상호 협력하여 사회보장급여가 중복 또는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위원회가 이를 조정한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급여 관련 업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에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협의의 구체적인 절차 및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443) 김정희,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체계 개편방안 마련 연구보고서”, 보건복지부 및 한국장애인개발원 (2015), 71.

제15조(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에 대한 협의)

①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려는 경우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협의요청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 대상, 지원 내용, 전달체계 등 사회보장제도 신설과 관련된 세부사업계획
2. 사회보장제도 신설의 근거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따라 예상되는 사업의 성과
4. 사회보장제도의 신설에 필요한 예산규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보장제도의 신설에 따른 협의에 필요한 서류

②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의 변경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물가상승률, 최저보장수준, 최저임금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으로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매년 4월 30일까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협의요청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신설은 변경으로 본다.

1. 소득, 재산, 연령, 자격 등 대상자 선정기준
2. 국고보조율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수준
3. 그 밖에 급여 내용, 전달체계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나) 지자체 복지사업 자율성 현황

지자체 복지사업에 대하여 중앙정부가 관여하고자 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4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유사·중복 등으로 인한 비효율성 문제이다. 우선, 수혜자 측면에서 동일인에게 동일 사유의 급여가 2중으로 지원되는 경우 중복되는 재원은 다른 복지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둘째, 지역 간 형평성 문제이다. 주민복지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의 자치사무 영역이라고 볼 수 있지만, 지역에 따라 그 수준차이가 크게 발생한다면 바람직한 현상은 아닐 것이다. 셋째, 선심성 복지공약의 문제이다. 지방선거가 직선제로 바뀌면서 지자체장은 선심성 공약에 대한 강력한 유인을 느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복지재원에 관한 중앙과 지방의 불가분적 관계이다. 중앙정부의 복지사업들은 지방정부와 매칭으로 재원을 조성하는 경우가 많다. 2015년 지자체 통합재정(순계 기준)에서 사회복지분야의 경우 자체사업 예산(3.6조원)은 보조사업 예산(40.2조원)의 9%에 불과하다. 한정된 지방 재원에서 자체 복지사업의 확대는 중앙정부 매칭사업에 투입되어야 할 재원의 부족으로 연결된다. 때문에 지자체는 복지사업의 중앙정부 분담비율 증가나 중앙 환원을 주장하는 반면, 중앙정부는 지자체의 자체 복지 사업에 관여하고자 하는 것이다.⁴⁴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는 중앙정부가 지자체의 효과적인

복지 확장에까지 제동을 거는 장치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지역사회에 사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자체가 추가 지원하는 활동보조 시간에 복지부가 제동을 걸면서 이 문제가 대두되었다. 예를 들어, 2014년 대구시는 2015년부터 최중증 독거장애인에게 활동보조 하루 24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예산을 추가로 편성했는데, 복지부가 이는 ‘사회보장제도 변경’에 해당한다며 사회보장기본법 26조에 따라 협의하여 진행하라고 요청한 것이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복지부가 이를 ‘불수용처리’하면서 대구시의 활동보조 하루 24시간 지원 계획은 좌초됐다. 중앙에서 운영하는 활동지원서비스와 중복되며 지자체 재원의 지속가능성, 구체적 대상 선정 기준이 부재하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하루 24시간의 활동지원서비스를 20시간으로 줄이고 나머지 4시간에 대해서는 문화바우처로 지급하는 변경안을 다시 제출했으나 사회보장위원회 제도 조정소위원회에서 다시 불수용되었다.⁴⁴⁵⁾

이와 같이 국가에서 활동지원 시간을 제공하고 있다는 이유로 지자체에서 도비나 시비를 통해 보충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유사’, ‘중복’ 사업으로 규정되면서 복지부와 ‘협의’를 거친 지자체들이 하나둘씩 활동보조서비스 축소를 본격화하였다. 2016년 포천시와 의정부시, 그리고 고양시는 활동보조 24시간을 신규로 신청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활동보조 시간이 아닌 야간순회서비스나 응급안전서비스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는 시에서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활동보조 서비스가 국가사업과 유사, 중복되므로 ‘효율성’을 제고하라는 복지부의 방침에 따른 것이다.⁴⁴⁶⁾

(다) 2018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지침 개정

최근 2018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지침이 개정되어 일부 항목이 협의 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지자체의 자율성이 확대되었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444) 안병갑, “지자체 복지사업에 대한 중앙정부 관여의 의의와 개선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015), 2.

445) 비마이너, “지자체 예산 쪼개 복지부, ‘활동보조 24시간’ 싹둑”, 비마이너 (2015. 4. 3. 22:13),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8171>.

446) 장애인뉴스 “경기도 지자체들, ‘활동보조 칼질’ 시작됐다”, 장애인뉴스 (2016. 2. 2. 18:20), http://sdcil.or.kr/bbs/board.php?bo_table=B42&wr_id=1576.

[표-37] 2018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지침 보도자료

- 지자체 사업 협의 제외대상 대폭 확대
 - 지자체 보훈사업, 동일한 대상·서비스에 급여액만 변경되는 사업 등 협의 제외대상을 대폭 확대함으로 지자체 자율성을 강화하고자 한다.
- 협의 결과 통보방식 변경
 - 기존 사전 승인 의미의 일방적 통보방식인 ‘동의/변경보완/부동의’에서 지자체와의 지속적인 의견조율을 거쳐 협회가 성립되도록 하기 위해 ‘협의완료/재협의’ 통보방식으로 변경하여 운용할 계획이다.
- 중앙부처가 일괄 협의함으로써 지자체 부담 완화
 - 지자체 수요 대비 매칭된 중앙부처 사업량 부족으로 지자체에서 예산만 추가하여 집행하는 사업과 중앙부처 사업지침에 따라 지자체는 집행만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중앙부처가 보건복지부와 일괄 협의함으로써 지자체의 협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한다.
 - * 공익형 노인일자리 사업, 드림스타트 아동 심리정서 치료 지원사업 등
 - **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가정위탁보호종료 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사업 등

장애인 활동지원급여의 경우 동일한 대상, 서비스에 급여액만 변경되는 사업에 해당하므로 기존 협의 대상에서 제외되며, 지자체들은 중앙정부와의 협의 없이도 각자의 상황에 따라 활동지원급여를 추가로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라) 지자체 자율성 보장 정책 평가

활동지원급여는 위에서 설명한 중앙정부의 지자체 복지 서비스 개입의 정당성에 부합하지 않는다. 활동지원급여의 총액은 실제 장애인들이 필요로 하는 급여량에 비해 현저히 부족한 실정이므로 자원의 중복 사용이 문제 될 수 없다. 같은 이유로 지역 간 편차 역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주민 중 극소수에게 지급되는 활동지원급여는 정치인들이 내세울만한 선심성 공약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활동지원급여가 중앙정부 협의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다수 지역에서 활동지원급여량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 기대할 수 있다. 다만 활동지원급여의 경우 지자체가 아닌 중앙정부가 책임을 지고 보장해야 하는 장애인 권리에 해당하므로 자칫 지자체의 자율성 증가가 중앙정부의 책임 회피 수단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5) 주간활동급여 시범사업 보고서

보건복지부에서는 2015년 이미 제공되고 있는 활동보조, 방문간호, 방문목욕에

더하여 발달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하고자 주간활동급여 모형설계연구를 실시하였다. 해당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연구 개요

위 연구에서는 기존 활동지원 제도에서 주간활동을 서비스유형으로 추가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으며, 개별형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단계적 도입방안을 제시했다. 선행연구를 통해 제안된 주간활동서비스 종류인 학습형, 취미형, 체육형, 직업형의 프로그램이 적합한지를 평가하기 위해 시범사업 기관별로 주간활동 프로그램 구성 지원 및 다양한 유형의 표준 주간활동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이를 근거로 각 시범사업 기관의 운영 프로그램을 분석하였다.⁴⁴⁷⁾

주간활동급여 대상은 기존 활동지원제도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되, 주요 대상은 주간 활동급여의 도입 취지에 맞게 낮 시간의 의미 있는 생활이 가능하도록 18세 이상의 발달장애인임을 명시하였다. 하지만, 이용자 모집의 어려움을 겪는 지역이 많아짐에 따라 주요대상이 아니더라도 주간활동급여가 필요한 이유를 기록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였다. 주간활동 제공기관 지정기준은 방문목욕, 방문간호와 같이 주간활동의 별도 기준을 정의하고, 주간활동에 맞는 기관이 지정될 수 있도록 했다. 별도의 기준은 활동보조인 5명 이상이어야 하며, 시설은 주간활동급여를 이용하는 이용자 3명당 3.3m² 이상 확보하도록 했다.⁴⁴⁸⁾

이와 같이 시행된 시범사업 운영결과를 살펴보면 20대가 가장 많은 참여율을 보이며, 4개 프로그램 유형이 비슷한 수준으로 운영되었다. 이용시간은 일8시간을 이용하는 비율이 47.9%로 이용하는 장애인의 이용시간이 매우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주간활동급여 참여자 만족도는 급여 도움, 재이용 여부, 급여 추천, 이용료 가치 4개 분야 모두 매우 만족한다는 답변이 78%였다. 이렇게 주간활동의 이용 효과, 이용자 유형, 이용시간, 만족도는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⁴⁴⁹⁾

447) 강정배, 앞의 글, 34.

448) 강정배, 앞의 글, 139.

449) 강정배, 앞의 글, 138.

(나) 시범사업 평가

위와 같이 진행된 시범사업의 결과 모든 척도에서 만족스러운 결과가 도출되어 향후 주간서비스 도입에 긍정적인 근거로 활용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의 전제가 된 몇 가지 방침들에 대한 장애계의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다. 우선 왜 시범사업이 성인만을 대상으로 하는가에 대하여 장애인 부모들의 반발이 있었다. 그리고 서비스 제공기관은 활동지원기관 중에서 주간활동 시설의 기준 이용자 1인당 3.3m²을 충족하는 기관으로 선정한다는 것 역시 결국 기존 시설에게만 사업 확대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여겨져 반발을 샀다.

한편, 보다 근본적으로 위 시범사업은 서비스량 자체를 늘리지는 않고 서비스의 총량을 활동지원 서비스로 정하고, 사용하는 서비스 내용만 다양화한 것으로, 예산을 추가로 투입하거나 새로운 체계를 도입하지는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 궁극적으로는 서비스량 자체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마지막으로 위 시범사업은 발달장애인만을 대상으로 추진됨에 따라 다른 장애 영역에서 선택권을 다양하게 보장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⁴⁵⁰⁾

물론 제한된 대상에 대하여 제한된 시간에 제한된 예산 내에서 추진해야 하는 시범사업만을 근거로 향후 주간서비스 모형을 예단할 수는 없다. 하지만 위에서 제기된 비판들을 고려하면, 최소한 장애아동이나 다른 유형 장애인 역시 주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부모나 형제들이 휴식시간을 갖으며 본인의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된다. 또한 현재 활동지원급여량이 전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으므로 기존 급여량 내에서 주간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범사업 체계 대신 이를 위해 추가로 활동지원급여량이 늘어날 필요가 있을 것이다.

(6) 소결 및 제언

활동지원급여 지급과 관련하여 지자체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기존 서비스 이외에 주간 서비스를 도입하고자 시범사업을 실시한 것은 탈시설한 장애인들의

450) 에이블뉴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시범사업 문제점”, 에이블뉴스 (2017. 3. 28. 16:36:57),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06&NewsCode=000620170328143620699973>.

지역사회 자립을 도울 수 있는 의미 있는 정책들이다. 다만 현재 활동지원급여량 자체가 장애인들의 욕구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 두 정책 모두 중앙정부의 직접적인 자립생활 지원 증가라는 가장 중요한 진전 없이는 그 효과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보다 구체적으로, 24시간의 활동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의 경우 해당 시간이 보장되지 않으면 당사자의 욕구가 있더라도 탈시설을 할 수 없는 것이다.⁴⁵¹⁾ 따라서 정부가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 도입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견지한다면 최종견해에서 권고한 다양한 지역 내 지원서비스를 강화를 충분히 이행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무엇보다 세부적인 프로그램 마련 이전에 활동급여량 자체의 획기적인 증가가 필수적이라 판단된다.

한편, 본장에서는 주로 활동지원서비스의 제공량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일반논평 제5호 Para. 16에서는 개인 서비스(personal service)의 요건을 적시하고 있는데, 완전한 자기결정 및 통제(full self-determination and self-control)를 포함하고 있다. 현재 제공되고 있는 활동지원서비스가 그러한 요건들에서 벗어나는 부분은 없는지 향후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되었다.⁴⁵²⁾ 같은 맥락에서 활동지원 자체도 당사자들이 필요한 것을 당사자들이 선택하는 방식이 아니므로, 당사자들이 활동지원제도에만 의지하여 지역 사회 안에서 살아가기 힘들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절차의 측면에서 특정 장애인이 활동지원 대상자라 하더라도 신청을 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실제로 장애인 당사자들이 자격을 갖추었음에도 신청을 못 해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⁴⁵³⁾

마. 사회부조 프로그램 지원

(1) 정부의 이행 현황 및 이행계획

보건복지부는 장애인가구의 소득이 비장애인가구에 비해 낮은 수준이므로, 지역사회에 기반한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소득보장을 제공하라는 위원회의 최종견해를 수용하면서,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연금,

451) 2018년 10월 26일 제5차 FGI에서 김성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의 의견.

452) 최승철 자문위원 서면의견서.

453) 2018년 10월 26일 제5차 FGI에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김성연 사무국장의 의견.

장애수당 등 소득보장 수준 향상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증액 예산 및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안 국회 제출 등).

(2) 사회부조 프로그램 현황

장애인들에게 제공되는 사회부조 프로그램으로는 중증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장애인연금과 경증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장애수당이 있다.

(가) 장애인연금

중증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장애인연금의 법적 근거는 「장애인연금법」으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 및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장애인연금의 종류 및 내용)

이 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초급여: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補填)하여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
2. 부가급여: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

장애인연금의 지원대상은 만 18세 이상의 등록 중증장애인(1급, 2급, 3급 중복) 중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이다. 선정기준으로 2018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결정·고시한 금액은 단독가구 121만원, 부부가구 193만 6,000원이다.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만 18세~만 64세까지 매월 최고 206,050원(2017년 4월~2018년 3월), 209,960원(2018년 4월~8월), 250,000원(2018년 9월~2019년 3월) 기초연금을 지급한다. 한편,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각각 기초급여액 20%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65세 이상은 동일한 성격의 급여인 기초연금으로 전환하고(별도 신청 필요), 기초급여는 지급되지 않는다.

부가급여 대상자는 만 18세 이상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차상위 초과자이며, 구체적인 급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일반재가 / 생계, 의료수급): 65세 미만 8만원, 65세 이상 28만9,960원
- 보장시설수급자(일반 / 생계, 의료수급): 65세 미만 0원, 65세 이상 0원
- 보장시설수급자(급여특례 / 생계, 의료수급): 65세 이상 7만원
- 차상위계층(일반 / 주거, 교육수급): 65세 미만 7만원, 65세 이상 7만원
- 차상위계층(급여특례 / 주거, 교육수급): 65세 이상 14만원
- 차상위초과(일반) : 65세 미만 2만원, 65세 이상 4만원⁴⁵⁴⁾

(나) 장애수당

「장애인연금법」에 근거하여 중증장애인들에게 지급되는 장애인연금과 달리 경증장애인들에게 지급되는 장애수당의 근거는 「장애인복지법」에 규정되어 있다.

- 제49조(장애수당)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장애 정도와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補填)하게 하기 위하여 장애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인에게는 장애수당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2015.12.29.>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에게는 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0.4.12.>

장애수당의 대상은 만 18세 이상의 등록된 장애인 중 3~6급의 장애등급을 가진 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이다. 단, 3급 중복 장애인은 중증장애인에 해당되므로 장애인연금 대상이 되며 장애수당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득인정액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며, 2018년의 경우 4인 가구 기준 225만 9,601원 이하이다. 지급금액은 기초수급(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의 경우 월 40,000원이며, 보장시설 수급자(생계, 의료)의 경우 월 20,000원이다.⁴⁵⁵⁾

454) 복지로, “장애인연금”, <http://www.bokjiro.go.kr/welInfo/retrieveGvmtWelInfo.do?welInfSno=349>.

455) 복지로, “장애수당”, <http://www.bokjiro.go.kr/welInfo/retrieveWelInfoDetail.do?welInfSno=330>.

(3)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등 소득보장 수준 향상 정책

장애인연금의 대상 및 급여액은 도입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0년 도입된 이후 2014년 기초급여액이 20만 원으로 인상됐으며, 이후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2015년 20만 2천600원, 2016년 20만 4천 10원, 2017년 20만 6천 50원 등으로 조정됐다.⁴⁵⁶⁾ 장애인연금의 수급자 수 또한 2012년 306,000명, 2013년 305,000명, 2014년 329,000명, 2015년 358,000명, 2016년 351,000명, 2017년 352,000명으로 꾸준히 증가하였다.⁴⁵⁷⁾

한편 장애수당수급자의 경우 2005년 이후 지속적인 장애수당 수급범위의 확대에 따라 수급자가 다음 추이로 크게 증가하였다.

- 2005년 중증장애인에겐만 지급한 장애수당을 경증장애인까지 확대
- 2006년 시설수급자까지 장애수당 지급대상 확대
- 2007년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까지 확대 및 지급금액 인상(기초수급중증 7만원 → 13만원, 기초수급경증 2만원 → 3만원)
- 2010년 중증장애수당이 장애인연금으로 전환('10. 7. 시행)
- 2011년 이후 장애수당이란, 등록장애 3~6급(중복 3급 제외)인 경증 장애수당을 의미함
- 2015년 경증장애수당 단가 인상 (3만원~4만원)

2002년도에는 10만 명 수준에 불과하던 장애수당 수급자가 2005년도에 경증장애인까지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30만 명으로 3배 증가하였고, 2007년에는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여 40만 명으로 4배 증가하였다. 2009년도에는 48만 명 수준으로 불과 8년 만에 4.8배 증가하였다. 또한 2010년 7월 이후 기존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중증장애수당에서 장애인연금으로 전환되면서 급여수준 향상 및 대상자 확대에 큰 변환점을 마련하였다(2016년 말 기준 중증장애인연금 약35만 명). 2016년 기준 실제 장애인연금(35만 명) 장애수당(34만 명)을 합치면 69만 명 수준으로 2002년 대비 6.9배까지 급격히 증가했다.⁴⁵⁸⁾

456) 한국경제 “내년 4월부터 장애인연금도 25만원으로 인상, 2021년부터 30만원”, 한국경제 (2017. 8. 21. 14:24),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708214941Y>.

457) 국회예산정책처 “장애인연금 수급자 수 및 재정규모”, <http://stat.nabo.go.kr/fn03-97.jsp>.

458) 국가지표체계 “장애인현황”, <http://www.index.go.kr/potal/enaraIdx/idxField/userPageCh.do?chkURL=/potal/stts>

2017년 12월 6일 국회는 본회의를 개최해 정부안 대비 1000억 원 감소한 428조 8000억 원의 2018년도 예산을 확정했다. 이 중 복지부 소관 예산은 정부안보다 1조원 감액된 63조 1554억 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2017년 본예산 57조 6628억원 대비 5조 4927억 원 증가한 액수다.

2018년도 장애인 관련 예산을 살펴보면, 장애인연금이 정부안보다 346억 9500만 원이 감액된 6008억 7700만 원으로 확정됐다. 정부 원안은 당초 내년 4월부터 기초급여액을 25만 원을 증액하는 것이었으나, 야당의 반발로 아동수당 신설과 기초연금 인상과 더불어 지원 시기를 9월로 5개월 늦췄다. 지원금은 정부원안 그대로 기초급여액 월 25만 원을 지급한다.⁴⁵⁹⁾

(4)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안

2017년 12월 1일 2010년 장애인연금 도입 이후 장애인가구 빈곤율은 감소 추세이나, 2015년 기준 장애인가구 빈곤율이 전체가구 빈곤율의 1.9배에 이르는 등 장애인 빈곤은 여전히 심각한 수준임을 감안하여, 중증장애인가구의 소득 보장을 제고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주요 개정내용은 아래와 같다.

- 가. 현행 20만원 수준인 기초급여액을 2018년 25만 원으로 인상하고, 2021년 4월부터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연도 기초급여액을 고시하기 전까지의 기초급여액은 30만원으로 함(안 제6조제1항)
- 나. 장애인연금 수급희망자의 대리인도 장애인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명시함(안 제8조제1항)
- 다.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직역연금 수급자로서 장애인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를 수급권의 소멸 사유로 명시하여 수급권 소멸 사유를 통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제1항제3호)⁴⁶⁰⁾

[/idxMain/selectPoSttsIdxMain.do%3Fclas_div%3DC%26idx_cd%3D2768%26bbs%3DINDEX_001&idx_cd=2768&Title=%EC%9E%A5%EC%95%A0%EC%9D%B8+%ED%98%84%ED%99%A9&playurlstr=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3Fidx_cd%3D2768.](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3Fidx_cd%3D2768)

459) 에이블뉴스, “내년 장애인연금 인상시기 9월로 연기”, 에이블뉴스 (2017. 12. 6. 09:00:41),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44&NewsCode=004420171206085535557411>.

460) 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716, (2017. 9. 28.).

(5) 소득보장을 위한 사회부조 프로그램 평가

사회부조 프로그램 지원과 관련하여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 모두 보장액이 부족하다는 점과 장애등급제로 인하여 실제 욕구에 비해 경증장애인들이 현저히 부족한 장애수당만을 지급 받는다는 점을 주요 문제로 지적할 수 있다.

우선, 국회예산정책처가 2011년과 2014년 「장애인 실태조사」 원자료를 토대로 장애수당 및 장애인연금의 빈곤완화효과를 분석한 결과, 장애인소득보장사업이 장애인 가구의 빈곤율(전체 가구 대비 빈곤선 미만 가구의 비율)을 낮추는 데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빈곤갭(빈곤선 미만의 소득을 유지하고 있는 가구를 빈곤선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완화하는 효과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대비 2014년의 장애수당 및 장애인연금 이전 효과성을 살펴보면, 빈곤율은 1~2급 6.5%p, 3급 2.0%p, 4~6급 2.7%p 개선되었으나, 빈곤갭 비율은 1~2급 6.4%p, 3급 2.6%p, 4~6급 2.5%p로 3급 및 4~6급의 빈곤갭 개선 효과가 감소하였다. 이는 3급 및 4~6급 장애인가구에 대한 장애수당 및 장애인연금의 이전이 이들 가구가 빈곤선에 근접하도록 지원하는 정도가 2011년에 비하여 2014년에 약화되었음을 의미한다.

장애수당 및 장애인연금이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의 절반도 보전하지 못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장애인연금(부가급여)에 비하여 지원단가가 더 낮은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경증 장애인가구일수록 2011년 대비 2014년의 빈곤갭 완화 효과가 감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014년 기준 3급 및 4~6급 장애인의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은 장애수당 지원단가(월 4만원)보다 월 4만 5,235원~9만 9,942원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2015년 1월부터 장애수당 지급액을 1만원 인상하는 등 장애인 소득보장사업의 빈곤완화효과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장애로 인한 실질적인 추가비용을 보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⁴⁶¹⁾

한편, 장애의 수준은 매우 다양하지만 장애등급제는 이를 6단계로 나눴다. 작은 차이로 중증(1~2급, 3급 중복장애)과 경증(3~6급) 장애인이 갈리는 경우가 생기고, 똑같이 근로능력이 없는데도 실제로 장애등급제 숫자 하나 차이로 생גיע 되는 급여 차이는 4배가 넘는다. 장애수당이 장애인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

461) 에이블뉴스, “국회예산정책처가 밝힌 장애인소득보장제도의 문제점”, 에이블뉴스 (2016. 10. 10:13:41),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48&NewsCode=004820161006101450272096>.

는 이유는 장애등급제가 장애 수준을 기계적으로 나누어 놓은 뒤 지원 규모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근로능력은 물론, 일상생활이 어려운 3~4급 장애인들이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⁴⁶²⁾

(6) 소결 및 제언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의 액수 및 수급자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 도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그 액수 자체가 장애인들의 소득보장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에 머물고 있어 기존 정책만으로 정부가 위원회 최종견해에서 요구한 소득보장을 충분히 이행하고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실질적인 소득보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소득보장 자체에 대한 개념 정의와 그에 기반한 정책 수립이 요구된다. 또한, 소득보장 급여를 장애등급을 기준으로 결정하는 기존 방식은 실질적인 장애인의 욕구를 반영하지 못하므로 보다 총체적인 상황을 고려할 수 있는 평가 방식의 도입이 필요하다.

바. 활동보조서비스 이용금액 기준 수정

(1) 정부의 이행 현황 및 이행계획

보건복지부는 신체기능 위주의 활동지원급여 인정조사를 장애인의 건강상태, 가구특성 및 주거상황 등의 생활환경, 장애인의 욕구와 사회적 환경까지 고려할 수 있도록 인정조사 내용을 개선하라는 위원회 최종견해를 수용하면서, 장애인 복지법 및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신청인의 신체정신 기능상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 욕구, 주거특성 또는 사회참여 정도 등 사회적 환경을 조사하여 활동지원급여를 산정하겠다고 답변하였다. 다만, 부양의무자 기준은 가족 부양책임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재정적 영향을 감안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현 시점에서 수용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부양의무자 범위는 매우 협소하게 적용하여 그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금액(본인부담금)을 감면하여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462) 노컷뉴스, “‘차라리 중증장애인이었으면’ 장애수당 10년 동안 1만원 올라”, 노컷뉴스 (2017. 8. 29. 06:00), <http://www.nocutnews.co.kr/news/4836887>.

(2) 활동보조서비스 현황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의 월 한도액은 기본급여와 추가급여를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된다. 기본급여는 인정조사점수에 따른 활동지원등급에 따라 4등급으로 구분하여 산정하며, 추가급여는 생활환경 및 자립활동 등에 따라 산정한다(산정 기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당 내용 참조).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이용자의 총 급여량은 등급별로 동일한 기본급여와 개인별로 차등이 있는 추가급여로 구성된다.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이용자의 인정조사 등급별 급여량은 월평균 1,099,000원이며, 최소 급여량은 422,000원, 최대량은 3,892,000원이다. 최대 급여량을 받는 수급자의 급여량은 최소급여량 수급자의 9.2배로 편차가 크게 나타난다. 등급별 총 급여량의 평균을 살펴보면 1등급 1,499,000원, 2등급 939,000원, 3등급 729,000원, 4등급 531,000원이다. 1등급의 최소는 1,040,000원으로 추가급여 미수급자이며, 최대는 3,892,000원으로 1등급에서 최대 수급자는 최소 수급자의 약 3.7배로 나타난다. 2등급의 최소는 834,000원, 최대는 1,891,000원으로 최대 수급자는 최소수급자의 2.3배이다. 3등급은 최소 628,000원, 최대 1,509,000원이며 최대수급자는 최소수급자의 2.4배, 4등급은 최소 422,000원, 최대 1,479,000원으로 최대수급자는 최소수급자의 3.5배를 수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동일 인정조사 등급이라도 추가급여에 따라 수급하는 총 급여량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⁴⁶³⁾

(3) 인정점수 산정 기준

위에서 살펴본 기본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인정점수의 산정 방식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규정되어 있다. 인정점수는 일상생활(옷 갈아입기, 목욕하기, 식사하기, 잠자리에서 자세 바꾸기, 옮겨 앉기, 걷기, 화장실 사용하기), 수단적 일상생활(전화 사용하기, 물건사기, 식사준비, 집안일, 빨래하기, 약 챙겨 먹기, 금전관리, 대중교통수단 이용하기, 본인 물건 관리하기), 장애특성 고려영역(휠체어사용, 청각기능, 시각기능, 인지기능, 정신기능), 사회환경 고려영역(사회활동 참여, 위험상황 대처능력, 장애인보조기구 사용능력, 단어나 문장을 보고 이해하기)으로 산정하며, 4개 영역의 점수를 합산한다(총점 470점).⁴⁶⁴⁾

463) 김정희, 앞의 글, 71.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인정점수가 장애인의 욕구와 사회적 환경은 고려하지 않고 신체기능 위주로만 산정하다 보니 일부 장애인들의 경우 실제 욕구에 비해 현저히 낮은 점수를 받게 되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16년 1월부터 5월까지 이뤄진 활동지원서비스 등급재심사 결과를 보면 전체 평균 하락률에 비해 시각장애인 등급 하락률은 2배에 육박했다. 이런 사태에 대해 시각장애인 당사자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이하 “한시련”)는 적절치 않은 인정조사표를 원인으로 꼽았다. 즉, 활동지원인정조사표의 구체적인 내용은 활동지원이 아닌 요양과 보호에 치우쳐 장애유형별 특성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시각장애의 경우, 습관화된 환경에서는 단순 신체기능이나 인지능력, 기능 장애가 발생하지 않지만 그 외 환경에서는 반대의 경우가 다반사인데 이를 반영하지 못한다.⁴⁶⁵⁾ 다만 이와 같은 문제점을 정부가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정부의 인정조사 개편을 반영한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활동법」 개정안은 제출되지 않은 상태이다.

(4) 부양의무제 유지

(가) 부양의무제에 따른 본인부담금 현황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활동지원급여를 받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본인부담금을 산정함에 있어 본인의 소득뿐 아니라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함께 고려된다.

제2조(정의)

5. “부양의무자”란 수급자(제6조제1항에 따른 신청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자의 1촌 이내 직계 혈족 또는 그 배우자 및 그 밖에 수급자의 생계를 책임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3조(본인부담금)

- ① 수급자는 해당 급여비용의 100분의 15 한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급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등 생활수준에 따라 그 비용의 일부(이하 “본인부담금”이라 한다)를 차등 부담한다.

46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31호 심신상태 및 활동지원이 필요한 정도 등을 평가하는 방법.

465) 함께결음, “‘같은 문답’, ‘다른 결과’ 인정조사표가 빼앗은 시각장애인들의 일상”, 함께결음 (2016. 9. 5. 13:13:36), <http://www.cowalk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094>.

구체적인 본인부담금 산정 기준은 아래와 같다.⁴⁶⁶⁾

[표-38] 기본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면제	면제	면제	면제	면제
차상위계층		정액	20,000	20,000	20,000	20,000
전국가구 평균소득	50% 이하 (2,689,000원 이하)	6%	30,300	45,800	60,700	76,200
	100% 이하 (5,379,000원 이하)	9%	45,500	68,700	91,000	108,800
	150% 이하 (8,068,000원 이하)	12%	60,700	91,600	108,800	108,800
	150% 초과 (8,068,000원 초과)	15%	75,900	108,800	108,800	108,800

[표-39] 추가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면제	면제	면제	면제	면제	면제	면제
차상위계층		면제	면제	면제	면제	면제	면제	면제
전국가구 평균소득	50% 이하 (2,689,000원 이하)	2%	2,100	4,300	8,600	15,700	17,200	58,700
	100% 이하 (5,379,000원 이하)	3%	3,200	6,400	12,900	23,500	25,800	88,100
	150% 이하 (8,068,000원 이하)	4%	4,300	8,600	17,200	31,400	34,400	117,500
	150% 초과 (8,068,000원 초과)	5%	5,400	10,800	21,500	39,300	43,000	146,900

(나) 부양의무제 유지 평가

정부의 설명대로 활동지원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의 경우 모든 장애인들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대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하여는 부담을 완화하고 있으며, 전체적인 금액 역시 높지 않다. 하지만 현재의 논의 흐름에

466)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전자마우처
http://www.socialservice.or.kr/user/htmlEditor/view2.do?p_sn=11.

따라 궁극적으로 부양의무제를 폐지한다면, 기초생활수급 기준만이 아니라 각종 복지 서비스 선정 기준에도 부양의무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⁴⁶⁷⁾

(5) 소결 및 제언

정부의 이행계획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신체기능만을 고려하는 현 인정조사에 대한 개정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 정부가 위원회 최종견해를 이행했다고 평가할 수 없다. 한편 부양의무자 기준은 활동지원급여에서 요구하는 본인부담금 산정과 관련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와 같이 막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지만 부양의무자라는 개념 자체에 대한 의문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중증장애인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활동지원급여와 관련하여 이를 적용하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16. 제20조 개인의 이동

가. CRPD 제20조

제20조 개인의 이동성

당사국은 장애인에 대하여 가능한 최대한의 독립적인 개인적 이동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효과적인 조치를 취한다. 여기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다.

- 가. 장애인이 선택한 방식과 시기에,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비용으로 장애인이 개인적으로 이동하는 것을 촉진할 것
- 나. 장애인이 감당할 수 있는 비용으로 이용하게 하는 것을 포함하여 양질의 이동 보조기, 장치 및 보조기술 그리고 사람 및 동물에 의한 보조 및 매개자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을 촉진할 것
- 다. 장애인 및 장애인과 함께 근무하는 전문직원에게 이동기술에 관한 훈련을 제공할 것
- 라. 이동 보조기구, 장비 및 보조기술을 생산하는 주체가 장애인 이동의 모든 측면을 고려하도록 장려할 것

467) 에이블뉴스, “정부의 부양의무제 단계적 폐지의 허점”, 에이블뉴스 (2018. 7. 4. 14:35:23),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06&NewsCode=000620180702155134983442>.

나. 최종견해 및 쟁점목록: 없음

CRPD 제20조는 개인의 이동에 관한 부분이다. 최종견해와 쟁점목록에는 관련 내용이 없지만, 대중교통, 시설물, 정보 접근권과 별개로 장애인 각 개인이 보도에서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이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아 문제가 되므로, 보행환경 이동편의시설 설치 현황과 장애인보장구의 보험급여 지급에 관하여 검토하려 한다.

다. 장애인의 보행환경

(1) 보행환경 이동편의시설 설치 현황

국토교통부의 2017년 교통약자이동편의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보행환경’에서 기준 적합률은 2014년 68.2%, 2016년 72%, 2017년 78%로 꾸준히 증가하여 왔다.⁴⁶⁸⁾ 이 중 보도가 93.9%로 가장 기준 적합률이 높고, 블라드가 가장 낮은 64.7%로 조사되었다.⁴⁶⁹⁾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보행환경 이동편의시설 설치현황을 간단하게 나타내면 아래 표와 같다.

[표-40] 보행환경 이동편의시설 설치 현황

구분	기준적합(%)	기준미적합(%)	미설치(%)
보도	93.9	2.5	3.6
차량진출입부	1.7	9.4	18.9
턱낮추기	89.2	6.4	4.4
점자블록	75.8	8.2	16.0
지하도 및 육교	82.2	2.3	15.5
장애인전용 주차구역(노상)	64.7	11.8	23.5
음향신호기 및 잔여시간 표시기	82.6	0.9	16.5
자동차진입제어 말뚝 (블라드)	64.2	21.4	14.4
보행환경 평균	78.0	7.9	14.1

468) 한국교통안전공단외 2, 2017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연구, 국토교통부(2018), 34.

469) 한국교통안전공단외 2, 앞의 글, 64.

보행환경 이동편의시설 설치현황은 지역 별로 차이가 있어서 서울 88.4%, 부산 79%, 대구 80.6%, 인천 82.0%, 광주 70.2%, 대전 69.8%, 울산 65.7%, 세종 67.5%로 크게는 22.7%까지 차이가 났다.⁴⁷⁰⁾

(2) 이동편의시설 설치현황과 괴리가 있는 장애인의 보행환경 만족도

위와 같은 객관적 수치를 살펴보면 3년 전에 비해 기준 적합률이 10% 늘었고, 서울만 놓고 보면 기준 적합률이 평균적으로 88.4%에 이른다. 그러나 정부의 기준적합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진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드는 점은, 정부의 보행환경 이동편의시설 설치현황 발표와 달리 장애인의 이동편의시설 만족도는 지난해와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이다.

장애인의 이동편의시설 종합만족도는 60.7점으로 다른 교통약자에 비해서도 현저히 낮았다. 고령자(79.0점)나 임산부(78.5점)의 만족도는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의 만족도(79.3점)와 큰 차이가 없었던 것과 대비되는 점이다. 특히 장애인의 보행환경 만족도는 52.3점으로 여객선 만족도에 이어 최하위를 기록하였다.⁴⁷¹⁾

[표-41] 교통약자의 보행환경 만족도

구분	종합 만족도	보행 환경	시내 버스	도시 철도	철도	시외 버스	항공기	여객선	콜택시	
전체	74.6	71.8	76.5	79.8	78.9	75.4	79.5	65.7	62.5	
일반	79.3	78.8	79.3	82.5	82.7	75.3	83.8	75.3	-	
교통약자	71.5	67.1	74.0	77.8	74.7	75.6	73.8	57.4	62.5	
장애인	전체	60.7	52.3	58.9	68.7	66.9	61.9	69.7	47.1	62.5
	지체	61.8	53.5	62.3	72.6	69.0	65.9	70.3	55.0	62.6
	시각	56.9	46.5	47.1	62.6	66.5	58.0	73.3	33.1	62.1
	청각	58.4	51.8	53.5	62.4	63.2	-	65.2	47.0	63.5
기타	노인	79.0	77.5	79.6	83.2	82.6	77.1	80.3	73.8	-
	임산부	78.5	76.6	79.8	81.3	82.7	76.3	79.0	83.4	-

470) 한국교통안전공단외 2, 앞의 글, 64.

471) 한국교통안전공단외 2, 앞의 글, 144.

장애인은 특히 보도블럭 포장 상태, 보도폭(넓이), 횡단보도 턱 낮추기, 점자블록, 청결상태 등 전반적인 보행 만족도가 낮았는데, 특히 장애 유형별로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은 지체장애인의 경우 횡단보도 턱 낮추기, 시각장애인의 경우 점자블록, 청각장애인의 경우 청결상태였다.⁴⁷²⁾ 2016년 대비 보도 만족도에 대해서도 일반인, 고령자, 임산부의 경우 만족한다는 응답이 대부분(90% 이상)인 반면 장애인은 작년과 차이가 없으며, 불만족한다는 응답이 80%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⁴⁷³⁾ 이동편의시설 설치현황 등 객관적인 수치는 높아졌을지 모르나 장애인 당사자의 만족도는 여전히 낮은 것이다.

따라서 장애인의 보행환경 만족도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보도에 이동편의시설을 충분히 설치하는 등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나아가 보행환경 기준적합 평가는 양적 기준뿐 아니라 질적 기준을 포함한 평가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라. 「국민건강보험법」 상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 문제

「국민건강보험법」은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지만, 지체장애인의 66.3%가 보장구의 구입비용의 부담 때문에 보조기구를 구입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⁴⁷⁴⁾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장애인에 대한 특례)

- ① 공단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는 보장구(補裝具)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의 범위·방법·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장애인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기준 등)

- ①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보장구(소모품을 포함하며, 이하 “보장구”라 한다)에 대한 보험급여의 범위 및 공단의 부담금액 등은 별표 7과 같다.

472) 한국교통안전공단외 2, 앞의 글, 144-145.

473) 한국교통안전공단외 2, 앞의 글, 146.

47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2011), 13.

보조기기를 구입한 장애인 중 절반 이상이 국민건강보험급여를 받았다. 그러나 공단은 보조기기 구입에 따른 비용의 부담 완화를 위한 급여의 현실화를 요구하는 장애인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고 일부 소수 품목에 대한 급여만을 소폭 인상하였다.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의 현실화가 시급하다.

마. 기타

나아가 20조 (다)항 “장애인 및 장애인과 함께 근무하는 전문 직원에게 이동기술에 관한 훈련을 제공할 것” 항목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도 정책도 프로그램도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한 법적 근거와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7. 제21조 의사 및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권

가. CRPD 제21조

제21조 의사 및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권

당사국은 이 협약 제2조에 따라, 장애인이 선택한 모든 의사소통 수단을 통하여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정보와 사상을 구하고, 얻고 전파하는 자유를 포함한 의사 및 표현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여기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다.

- 가. 일반 대중을 위한 정보를 다양한 장애유형에 적합하고 접근 가능한 형식과 기술로 장애인에게 시의적절하고 추가 비용 없이 제공할 것
- 나. 장애인의 공식적인 교류에 있어 수화, 점자, 보완대체 의사소통, 그리고 장애인의 선택에 따른 의사소통의 기타 모든 접근 가능한 수단, 방식 및 형식의 사용을 수용하고 촉진할 것
- 다. 인터넷 경로를 포함하여 일반 대중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주체가 장애인에게 접근 및 이용 가능한 형식으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촉구할 것
- 라. 언론 매체의 서비스가 장애인에게 접근 가능하도록 인터넷을 통한 정보제공자를 포함한 언론 매체를 장려할 것
- 마. 수화의 사용을 인정하고 증진할 것

나. 최종견해 및 쟁점목록

(1) 최종견해

제21조 의사 및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권

41. 위원회는 한국 수화가 아직 당사국의 공식 언어로 인정되지 않았으며, 점자를 공식 문자로 인정하는 법안이 여전히 국회에 상정 중이라는 사실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또한 위원회는 장애인의 방송자료(특히 TV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는 규정이 프로그램에 대한 양적 기준만을 포함하고, 수화, 자막, 화면 및 소리 해설, 읽고 이해하기 쉬운 내용 및 기타의 다른 의사소통 형식, 방식 및 수단 등을 통한 적절하고 접근가능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질적 기준이 없음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42. 위원회는 당사국이 한국 수화를 대한민국의 공식 언어로 인정하고, 점자를 공식 문자로 인정하는 법안을 채택할 것을 권장한다. 또한 위원회는 장애인의 방송자료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는 규정이 프로그램의 질적 기준과 수화, 자막, 화면 및 소리 해설, 읽고 이해하기 쉬운 내용 및 기타의 다른 의사소통 형식, 방식 및 수단을 통한 적절하고 접근가능한 정보에 관한 기준을 포함할 것을 권고한다.

(2) 쟁점목록

제21조 의사 및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권

22. 다음 각 호와 관련한 당사국의 진척 사항을 설명하십시오.
 - 가. 「한국수화언어법」과 「점자기본법」을 적절히 시행하였는가?
 - 나. 방송 및 인터넷 TV 접근성 관련 규정에 장애인 접근성 표준을 포함시켰는가?
 - 다. 공공 정보를 접근 가능한 형식과 '읽기 쉬운 방식(Easy Read)'으로 제공하였는가?

(3) 실태조사의 대상 쟁점

제21조 의사 및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권과 관련하여 검토할 정부의 이행 현황은 수화법 및 점자법의 시행과 그 구체적인 시행 내용, 방송접근권 보장을 위하여 접근성 표준을 마련하였는지 여부 등이다.

다. 「한국수화언어법」 및 「점자법」의 시행

(1) 정부의 이행 현황

문화체육관광부는 최종견해에 대한 수용의사를 밝히면서, 현행법령에 규정된 규정으로는 한국수어를 제1언어로 사용하는 농인의 기본 인권으로서 언어권을

보장할 수 없고, 시각장애인들의 문자 의사소통을 위한 점자 사용 환경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한국수어를 농인의 공용어(공식어)로 선언하고, 점자를 공식 문자로 인정하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한 점을 사유로 제시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이행 현황은 다음과 같다. ① 「한국수화언어법」을 제정('16. 2. 3.)하고 시행('16. 8. 4.)하였다. ② 「점자법」을 제정('16. 5. 29.)하고, 시행('17. 5. 30.)하였다. ③ 또한 「한국수화언어법」 제26조에 근거하여 제1차 한국수어발전기 기본계획('18~'22)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고, 「점자법」 제7조에 근거한 점자발전 기본계획('19~'23)이 수립 및 시행 예정 중에 있다.

(2) 「한국수화언어법」의 주요 내용

「한국수화언어법」은 총 20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내용은 ▲ 수화언어를 농인의 공용어로 선언(제2조 제1항) ▲ 농인의 한국수어로 교육받을 권리 보장(제2조 제4항) ▲ 한국수어 사용환경 개선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규정(제4조) ▲ 한국수어발전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제6조) ▲ 실태조사 실시(제9조) ▲ 한국수어 사용촉진 및 보급(제14조) ▲ 통역 지원(제16조) 등이다.

「한국수화언어법」에서 한국수어가 한국어와 구별되는 고유한 자격의 공용어임을 선언함으로써 한국수어는 한국어와 대등한 언어로서 인정받게 되었다. 한편, 한국수어발전기본계획('18~'22)의 3대 중점 추진 과제는 ① 한국수어 능력 향상 및 보급, ② 한국수어 관련 제도의 안정적 운영 기반 마련, ③ 한국수어 사용 환경 개선을 위한 기반 구축 등이다.

(3) 「점자법」의 주요 내용

기존에 점자에 관한 규정은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등 편의법」, 「저작권법」, 「우편법」, 「공직선거법」, 「주민등록법」, 「화장품법」 등 여러 곳에 단편적이고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었다.⁴⁷⁵⁾ 위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점자법」은 ▲ 점자를 한글과 동일한 효력의 공용문자로 선언(제4조) ▲ 점자발전기본계획 수립·시행(제7조) ▲ 정책 수립에 필요한 실태조사 실시(제9조) ▲ 점자규정의 제·개정(제10조) ▲ 시각장애인 학생을 위한 점자 교과용 도서 제

475) 김호식, “「점자법」의 제정과 시행”, 새국어생활 제27권 제2호 (2017), 87.

작·보급(제12조)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점자법」에서 점자를 한글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선언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문자 향유권의 총체적 보장이 가능하게 되었다.

(4) 수어 및 점자에 관한 실태

최근 장애인 통계에 의하면, 2014년 기준 전체 장애 인구는 2,726,910명, 시각장애 인구는 257,492명, 청각장애 인구는 245,935명, 언어장애 인구는 15,252명이다.⁴⁷⁶⁾

그런데 전체 시각장애 인구 중 대부분이 점자를 독해할 수 없고, 청각/언어장애 인구 대부분이 수어를 이해할 수 없다. 시각장애인 중 점자해독이 가능한 비율은 전체 시각장애인의 5.1%에 불과하고, 93.4%는 점자해독이 불가능하다.⁴⁷⁷⁾ 청각장애인 중 의사소통 수단으로 말을 사용하는 비율은 80.3%, 구화(입모양)를 사용하는 비율은 7.5%, 수화를 사용하는 비율은 6.0%이다.⁴⁷⁸⁾ 언어장애인의 장애 형태는 발음의 문제로 알아듣기 어려운 조음장애가 33.8%, 실어증이 27.0%, 말을 전혀 하지 못하는 경우가 24.4%, 말더듬이 12.1% 순이다. 언어장애인 중 수화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의 비율은 11.8%이며, 그 외 말로 의사소통하는 경우가 54.0%, 몸짓으로 의사소통하는 경우가 23.4%이다.⁴⁷⁹⁾ 따라서 수어를 사용하지 않는 청각장애인, 점자를 해독할 수 없는 시각장애인의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권 보장 역시 중요한 과제이다.

(5) 「한국수화언어법」 및 「점자법」의 적절한 시행의 필요성

「한국수화언어법」 및 「점자법」은 2016년에 제정되어 시행된 지 이제 겨우 1년 남짓이 된 상황이다. 현재로서 시행이 잘 되고 있는지를 평가하긴 어렵지만, 이 법이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고 정책계획의 수립·실태조사가 뒷받침되는 효력 있는 법으로서 시행되어야 한다. 나아가 수어를 사용하지 않는 청각 및 언어장애

47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2014), 109-110.

477)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앞의 글 (2014), 143-144.

478)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앞의 글 (2014), 151-152.

479)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앞의 글 (2014), 155-156.

인, 점자를 사용하지 않는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권 및 의사소통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라. 방송접근권

(1) 정부의 이행 현황

방송통신위원회는 최종견해에 대한 수용의사를 밝히면서, 시·청각 장애인의 방송 접근권 향상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2012년부터 장애인방송 의무화제도를 도입·운영하여 장애인방송의 양적 증대를 확대·시행 중이라고 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행계획으로 장애인방송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방송사업자에게 장애인방송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연구를 통해 구체적인 평가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제시하였다.

(2) 방송 접근권의 현행 규정과 실태

2011. 7. 방송법의 개정과 함께 방송사업자의 장애인방송 제공이 의무화되었다.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이하 “「장애인방송고시」”)에 의하면 필수지정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인정하는 방송 시간 중 자막방송 100%, 화면해설방송 10%, 수화통역방송 5%에 해당하는 장애인 방송물을, 고시의무사업자는 자막방송 70%, 화면해설방송 7%, 수화통역방송 4%에 해당하는 장애인방송물을 제작·편성하여야 한다(「장애인방송고시」 제6조, 제7조).

방송법 제69조(방송프로그램의 편성등)

- ⑧ 방송사업자는 장애인의 시청을 도울 수 있도록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을 이용한 방송(이하 “장애인방송”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가 장애인방송을 하는 데 필요한 경비 및 장애인방송을 시청하기 위한 수신기의 보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⑨ 제8항에 따라 장애인방송을 하여야 하는 방송사업자의 범위, 장애인방송의 대상이 되는 방송프로그램의 종류와 그 이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우선 「장애인방송고시」에서 필수지정사업자로 하여금 자막방송 100%, 화면해설방송 10%, 수화통역방송 5%에 해당하는 장애인 방송물을 제작·편성하도록 비율을 정해둔 것은 구체적인 근거가 없다. 문자를 해독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수화의 비율을 더 높일 필요가 있다.⁴⁸⁰⁾

방송통신위원회의 2015년 장애인방송 편성실적 평가결과에 따르면 2014년 지상파, 중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 방송 145개사 중 141개사(97.2%)가 장애인 자막방송, 화면해설방송, 수화방송 등에서 목표 편성비율을 100% 달성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보도자료에서도 장애인방송 의무화제도의 안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그러나 KBS, EBS, 연합뉴스, 채널A 등은 일부 자막이 송출되지 않거나 오탈자가 속출하는 등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만점을 받았다. 양적 기준만을 평가하기 때문이다. 또한 애초에 의무편성비율 자체가 미미하기 때문에 사업자들은 의무편성비율만 겨우 넘기는 턱걸이식 편성을 하고 있다. 특정 프로그램에 장애인 방송 편성이 치중되는 것도 문제인데, KBS1, KBS2, EBS, SBS, 중편4사는 보도 프로그램에서 화면해설 편성을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았다.⁴⁸¹⁾

한편, 최근에는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에서 지상파 방송국들이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통역을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점에 대하여 장애 단체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한 사례도 있었다.⁴⁸²⁾

(3) 방송 접근권의 보장 필요성

「장애인방송고시」에는 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 지적한 대로, 양적 기준만이 존재할 뿐, 질적 기준이 없으므로 질적 가이드라인 제정이 시급하다. 또한 장애인 방송 제공대상은 현재 텔레비전방송에 국한되어 있으나 라디오방송 등 다양한 방송으로의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⁴⁸³⁾

480) 2018. 10. 22. 제1차 FGI에서 한국농아인협회 김수연 기획부장의 의견.

481) 미디어오늘, “형식적인 자막방송만, 수화·해설방송은 가끔 시늉만”, (2016. 10. 10.),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2500>, 미디어스, “장애인방송은 실적만 채우면 끝?”, (2016. 7. 22. 07:51),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1949>도 참조.

482) 비마이너, “질 낮은 지상파 수어방송, 소외되는 청각장애인 방송접근권”, (2018. 3. 2. 19:40),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1942>.

483) 사단법인 미디어전략연구소, “장애인방송 의무제공제도 개선방안 연구”, 방송통신위

18. 제22조 사생활의 존중

가. CRPD 제22조

1. 장애인은 거주지 또는 거주형태와 무관하게 자신의 사생활, 가족, 가정, 통신 및 다른 형태의 의사소통에 관하여 임의적 또는 불법적인 간섭을 받거나 자신의 명예와 명성에 대하여 불법적인 침해를 받지 아니한다. 장애인은 그러한 간섭 또는 침해에 대하여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2. 당사국은 장애인의 개인정보 및 건강과 재활에 관한 사적 정보를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보호한다.

CRPD 제22조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최종견해나 쟁점목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본장에서는 CRPD 본문에 소개된 장애인 사생활 보장 및 개인정보 보호를 중심으로 정부의 CRPD 이행 여부를 평가한다.

나. 장애인의 사생활 보장

(1) 법적 근거

우선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는 시설에서 장애인들이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함을 규정하면서, 특히 원치 않는 신체 공개 등의 사생활 침해를 차별의 예로 제시하고 있다.

제30조(가족·가정·복지시설 등에서의 차별금지)

- ① 가족·가정 및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과도한 역할을 강요하거나 장애를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의사결정과정에서 장애인을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가족·가정 및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장애인의 외모 또는 신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가족·가정 및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취학 또는 진학 등 교육을 받을 권리와 재산권 행사, 사회활동 참여, 이동 및 거주 자유(이하 이 항에서 “권리 등”이라 한다)를 제한·박탈·구속하거나 권리 등의 행사로부터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복지시설 등의 장은 장애인의 시설 입소를 조건으로 친권포기각서를 요구하거나 시설에서의 생활 중 가족 등의 면접권 및 외부와의 소통권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원회 (2013), 33-35.

한편,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인복지시설들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서비스 최저기준 이상으로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도록 요구하는데, 기준에서 제한적이거나 사생활 보장을 위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이론적으로는 그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해당 시설의 폐쇄가 가능하다.

제60조의3(장애인 거주시설의 서비스 최저기준)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제공하여야 하는 서비스의 최저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장애인 복지실시기관은 그 기준이 충족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② 시설 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서비스의 최저기준 이상으로 서비스의 수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62조(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폐쇄 등)

- ② 장애인복지시설시기관은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이 제60조의3에 따른 서비스 최저기준을 유지하지 못할 때에는 그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해당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1. 3. 30.>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복지법」 제6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3에 따라 ‘장애인 거주시설 서비스 최저기준’을 제정고시한다. 그 중 거주인의 사생활 보호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기준 8. 의사결정

원칙: 이용자는 필요한 지원을 받으면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고, 자신의 삶에 대해 결정한다.

8.1 시설과 직원은 다음과 같은 원칙에 입각하여 이용자의 자기결정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 이용자의 권리는 이용자가 참여한 사정에 근거한 개별 서비스 계획에 기록된 것에 한해서만 제한될 수 있다.
- 이용자가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는데 필요한 정보와 의사소통 지원 제공
- 이용자는 스스로 자신의 재정을 관리하며, 직원은 지원이 필요한 경우 그 이유와 방법에 대해 관찰·기록해야 함
- 스스로 결정하고 재정을 관리하기 어려운 장애인은 적절한 지원방법을 강구해야 하며 이 경우에도 장애인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지원은 상시적으로 모니터링 되어야 한다.

8.2 시설은 다음의 내용과 관련된 의사결정과정에 이용자나 그 가족 또는 법정대리인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 서비스의 목표
- 확인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서비스 구조화 방법
- 서비스 전달방법
- 예상되는 서비스의 지속기간
- 결과에 대한 평가 방법
- 미래에 대한 계획

기준 19. 사생활

원칙: 모든 일상생활에서 이용자는 권리를 존중받고, 책임을 다한다.

19.1 일상생활과 시설의 규칙은 이용자의 자립, 개인적 선택과 자유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 사생활의 제한은 개별 계획과 계약에서 동의한 내용에 한한다.

19.2 이용자는 침실 또는 욕실의 내부와 외부에서 잠글 수 있는 열쇠(또는 잠금장치)를 제공 받을 수 있다.

19.3 이용자는 다음과 같은 일상생활의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다.

- 신문·잡지의 구독이나 텔레비전의 자유로운 사용
- 기호품(술, 담배 등)에 대해서는 건강상의 영향 등에 유의하면서 기본적으로 개인의 자유 인정

19.4 이용자의 가사일 임무(요리, 방과 공동장소 청소, 세탁, 정원 유지 등)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 안내와 개별 서비스 계획서에 상세히 기술해야 한다.

기준 26. 개인 침실: 공간요구

원칙: 이용자의 욕구를 반영한 적절한 면적의 침실이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6.1 침실 바닥 면적은 1인 당 5제곱미터 이상이 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침실에 부착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 이를 침실면적에 산입하지 않음)

26.2 시설은 이용자의 침실이 4인실 이하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2) 시설에서의 사생활 보호 실태

국가인권위원회는 2017년 중증정신장애인 시설생활인에 대한 실태조사 연구를 통해 정신요양시설과 중증장애인 시설에서의 인권 실태를 포괄적으로 조사하였다. 시설 거주인에 대한 설문조사 문항 중 사생활 보호 관련 질문들이 포함되어 있어 관련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정신요양시설과 중증장애인 시설에 대한 환경 조사도 병행되어 물리적 환경이 거주인의 사생활을 보호하는데 적절 한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도 가능했다.

(가) 정신요양시설 거주인 설문조사 결과

위 조사에 따르면, 정신요양시설에서 1개 숙소에 6명 이상 거주하고 있는 비율이 62.7%이었고, 다른 사람이 안 보는 곳에서 옷을 갈아입을 수 없고(70.7%), 목욕시 타인에게 노출된 상태에서 하는 경우(58.3%) 등 개인의 사생활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었다.⁴⁸⁴⁾

484) 조한진외 8, “중증, 정신장애인 시설생활인에 대한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7), vii.

또한 전체 응답자의 95.2%가 개인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고 있었으며, 휴대폰을 갖고 있더라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었다(44.9%). 또한 필요 시 외출이 불가능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55.1%이었고, 시설 주변의 편의시설을 이용한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도 45.2%이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정신요양시설 거주인의 외부와 자유롭게 소통하거나 교류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하루 일과를 스스로 결정할 수 없었고(59.8%), 본인의 돈을 스스로 관리할 수 없었으며(82.1%), 본인의 신분증도 직접 관리하지 않고 있었다(82.8%).⁴⁸⁵⁾

(나) 정신요양시설 환경조사 결과

한편, 정신요양시설 환경 조사에 따르면, 시설이 과거 30~40년 전에 설립된 경우가 대부분이라 대중교통이 다니기 어렵고 지역사회와의 접근성도 매우 떨어져 있어 고립된 상황에 놓여 있었다. 그러나 정신요양시설은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시설 환경의 물리적 개선에 대한 권고 등이 명확하지 않다. 이로 인해 과거 집단수용시설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고,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의 환경과는 차이를 나타냈다. 또한 정신장애인시설이란 점 때문에 외부와의 소통은 물리적으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었다.⁴⁸⁶⁾

또한, 건물 안에서도 자유롭게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다. 대부분 층별 잠금장치가 되어 있어 직원들만 소지하는 자동키를 이용해야 문을 열 수 있었다. 담벼락이 있고 정문을 통제·관리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마당까지 자유롭게 나올 수 있었으나, 그것도 시간이 정해져 있었다. 따라서 대부분 낮 시간에는 복도나 거실에 앉아 있거나 서성댔고, 가끔 문을 열어주면 매점을 이용하기도 했다. 대부분 금전을 사용하지 못해 거주인들이 운영(물건을 내주는 것)하는 매점에는 개인 장부가 비치되어 있었다. 물건을 사면 보유하고 있는 통장 잔금을 확인해 삭감하는 형태였다.⁴⁸⁷⁾

485) 조한진외 8, 앞의 글, 7.

486) 조한진외 8, 앞의 글, 15.

487) 조한진외 8, 앞의 글, 15.

(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거주인 설문조사 결과

같은 조사에 따르면,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에서 1개 숙소에 3명 내지 5명이 거주하고 있는 비율이 전체 응답자의 52.4%이었고, 6명 이상 거주하고 있는 비율도 36.1%이었다. 다른 사람이 안 보는 곳에서 옷을 갈아입을 수 없고(38.3%), 자신이 원할 때 자유롭게 목욕하기 어려우며(34.8%), 목욕을 다른 사람과 해야 하는(55.2%) 등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보호될 수 없었다. 식사와 간식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을 제한당하고 있기 때문에, 먹고 싶은 것을 먹을 수 없거나(31.2%) 시설 측이 식사를 주지 않아서 식사를 못한 적이 있는 것(16.0%)으로 나타났다. 시설 내의 각종 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었고(31.2%), TV조차도 마음대로 볼 수 없었다(24.4%).⁴⁸⁸⁾

또한, 필요할 때 외출이 불가능하고(38.9%), 이로 인해 시설 주변의 편의시설을 이용하지 못하였으며(36.6%), 기상과 취침 시간(55.0%), 식사 시간(75.4%) 등을 스스로 결정할 수 없고, 무엇을 할 것인가와 같은 일상의 모든 생활에 대해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는 것(28.8%)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대다수가 개인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71.0%), 휴대폰을 갖고 있더라도 전원이 꺼져 있거나(개인 휴대폰 사용자의 15.9%), 휴대폰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었다(개인 휴대폰 사용자의 12.5%). 특히 통장 관리(61.7%가 다른 사람이 관리) 등 민감한 정보가 담겨 있는 수단마저도 스스로 관리할 수 없고 시설에서 관리되고 있었다. 또한 자신의 사진(영상)이 허락 없이 공개된 적이 있으며(11.1%), 자신의 신분증을 직접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도 82.8%이었다.⁴⁸⁹⁾

(라)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환경조사 결과

한편,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환경조사 결과, 서비스 최저기준 준수 노력에도 불구하고, 물리적 환경의 변화가 일상의 변화까지는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었다. 유니트형이지만, 개별적인 요리와 취식을 할 수 없거나, 싱크대만 있고 가스레인지 등의 실질적인 주방시설은 갖춰져 있지 않았고, 방 안에서 주로 TV만 보는 등 복도형 시설과 유니트형 시설의 거주인을 위한 서비스의 내용에 있어서 차이를

488) 조한진의 8, 앞의 글, 7.

489) 조한진의 8, 앞의 글, 8.

알 수 없었다.⁴⁹⁰⁾

또한, 시설이 지역사회에 고립된 곳에 위치한 경우가 많았다. 대중교통으로 이동이 불가능하고 주택이나 근린시설이 인근에 있는 경우가 드물었다. 위치 자체가 사회통합이 불가능했으며, 이동지원이 개별적으로 되지 않는다면 시설 안에서는 고립 그 자체였다. 외부 활동으로는 1년에 1~2회의 캠프, 생일잔치용 외식, 자원봉사자가 있을 때 제한적으로 시행되는 외출프로그램 등이 있었다. 이 정도의 프로그램으로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지원하기는 역부족이며, 시설의 위치 자체가 지역사회 속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거주인들의 사회적 고립을 벗어나기엔 역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⁴⁹¹⁾

(마) 실태조사 평가

위 조사를 종합해보면 대부분의 거주시설에서 사생활 보호를 기대하기 힘든 실정임을 알 수 있으며, 특히 외부와의 소통이 가장 심각한 문제로 드러났다. 물론 시설들이 서비스 최저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그 대상에서 제외되어 기준을 준수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는 측면도 분명 존재하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하지만 대형 거주시설이라는 물리적 환경의 성격 자체가 장애인의 사생활 특히 외부와의 소통을 가로막는 가장 큰 원인이라는 점 역시 위 실태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CRPD 제19조에서 요구하는 지역사회 통합이 이루어져야 제22조의 사생활 보호 역시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3) 기타 환경에서의 장애인 사생활 침해 사례

위에서 살펴본 대규모 시설뿐 아니라 기타 다양한 환경에서도 최근까지 장애인의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도되었다. 구체적인 사례들을 살펴보면 장애인의 사생활이 일반인의 그것만큼 보호 받아야 한다는 인식이 부족해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광주에 소재한 정신과에 입원한 A씨는 입원 당일 일반병실이 아닌 보호실에 격리 조치되었고, 내부에 따로 화장실이 없어 이동식 변기에 소변을 봤

490) 조한진의 8, 앞의 글, 14.

491) 조한진의 8, 앞의 글, 15.

다. A씨와 같은 병원에 입원한 다른 환자 2명도 보호실에서 용변을 보고, 옷을 갈아입었다. 이런 장면은 보호실 내에 설치된 사각지대 없는 CCTV에 고스란히 찍혀 간호사실에 그대로 노출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안 A씨는 ‘사생활을 과도하게 침해했다’고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광주인권사무소 측은 이 같은 주장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피진정인(병원) 측에 보호실 내 환자의 용변 모습이나 신체의 주요 부분이 화면상 나타나지 않게 보호실 내 가림막 설치 등 입원환자의 사생활침해가 과도하게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고 권고했다. 또 CCTV 촬영에 따른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 시행을 요구했다. 관할 지자체장에게는 정신의료기관에서 CCTV 운영으로 입원 환자의 사생활 침해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하도록 했다.⁴⁹²⁾

사생활 침해는 대규모 시설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거주인의 자립 생활이 보장되는 장애인 그룹홈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광주의 A 장애인 그룹홈의 경우 주거 환경이 비좁고 열악했으며, 인스턴트 위주의 음식으로 끼니를 해결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장애인의 개인 돈을 그룹홈 관계자가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과도하게 장애인의 사생활에 개입하는 것으로 드러났다.⁴⁹³⁾

(4) 소결 및 제언

법령의 문헌만 살펴보면 최소한 중증장애인시설에서의 사생활 보호 근거는 갖추어져 있으므로, 정부가 CRPD의 사생활 보호 요구를 어느 정도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 정부가 공포하는 서비스 최저기준을 시설들이 준수해야 하고,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해당 시설의 폐쇄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장치에도 불구하고,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사생활 보호 수준이 극히 낮다는 것은 이러한 조항들이 효과적으로 시행되고 있지 못하는 현실을 보여준다.

우선 이론적으로는 서비스 최저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한 시설의 개선, 사업의

492) 연합뉴스, “‘대소변 보는 것까지 CCTV 촬영’ 갈 길 먼 인권실태”, 연합뉴스, (2017. 04. 13. 15:13),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4/13/0200000000AKR20170413141700054.HTML>.

493) 광주일보, “장애인 그룹홈, 인권침해부실운영 심각”, 광주일보, (2018. 7. 11. 00:00), <http://www.kwangju.co.kr/read.php3?aid=1531234800635944006>.

정지, 시설 장의 교체, 해당 시설의 폐쇄가 가능하나, 어느 기준을 어느 정도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실태조사에서 드러난 것과 같이 상당수의 중증장애인 시설들이 서비스 최저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있으나 처벌 없이 그대로 운영되는 것이다. 따라서 최소한 거주인의 외부와의 연락 방해나 허락 없는 금전 사용과 같은 명백한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 특정 처벌이 반드시 부과되도록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자세히 살펴보면 서비스 최저기준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 무엇보다 3~4인이 숙소를 공유하도록 노력할 것을 요구하는데, 근본적으로 사생활의 보장이 불가능한 환경이다. 게다가 노력 의무만을 부과하고 있어 이보다 많은 인원이 숙소를 공유해도 최저기준 위반에 해당하는지 확실하지가 않다. 사생활 보호의 기초가 되는 1인이나 거주인이 선택한 2인의 동거인과 거주하는 것을 강제하는 등 서비스 최저기준을 거주인의 권리에 초점을 두고 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서비스 최저기준에 지역사회와의 근접성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대부분 시설들이 외딴 곳에 소재하고 있어 근본적으로 외부로부터의 고립을 초래하는 문제도 있다. 단기기간에 적용하기는 어렵겠으나 거주시설이 어느 정도 지역사회와 근접한 곳에만 위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역시 강구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복지법」 제15조는 정신건강 복지법 적용 대상 장애인에게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정신장애인들은 장애인복지 전달체계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되고 있다. 실태조사에서 드러난 심각한 사생활 침해는 이렇듯 서비스 기준 자체가 부재한 상황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정신요양시설에도 서비스 기준이 적용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

다. 장애인 개인정보 보호

(1) 법적 근거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는 장애인의 개인정보가 차별 없이 보호되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인 보호 방법이나 절차에 대해서는 동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대신 다른 법률을 준용한다.

제22조(개인정보보호)

- ① 장애인의 개인정보는 반드시 본인의 동의 하에 수집되어야 하고, 당해 개인정보에 대한 무단접근이나 오·남용으로부터 안전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 3. 29.>
- ③ 장애아동이나 정신장애인 등 본인의 동의를 얻기 어려운 장애인에 있어서 당해 장애인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에 관련된 동의행위를 대리하는 자는 「민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가) 개인정보보호법

2011년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었다. 기존 법률 체계에서와 달리 공공 및 민간 부문의 모든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며, 전자문서뿐 아니라 수기문서에도 적용된다. 특히 장애인들의 경우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신청하고 제공 받는 과정에서 장애나 의료 등 민감정보가 다수 공개된다. 많은 경우 본인이 이러한 정보의 적법한 사용을 모니터링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있다. 따라서 시설 자체적으로 적법하게 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 2.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야 한다.
 - 1.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 2.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 ②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이하 “위탁자”라 한다)는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 ④ 위탁자는 업무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하고, 처리 현황 점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 ⑤ 수탁자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위탁받은 해당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8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이하 “개인정보취급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감독을 행하여야 한다.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적절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9조(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제3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인정보의 처리 방침(이하 “개인정보 처리방침”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제32조에 따라 등록대상이 되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한다. <개정 2016. 3. 29.>
 -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 2.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 4.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 5.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 6. 제31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 보호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전화번호 등 연락처
 - 7. 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해당하는 경우에만 정한다)
 - 8. 그 밖에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3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질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개인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 2. 개인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 3.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 4.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 5.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
 - 6.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감독
 - 7. 그 밖에 개인정보의 적절한 처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
- ③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처리 체계 등에 대하여 수시로 조사하거나 관계 당사자로부터 보고를 받을 수 있다.
- ④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이 법 및 다른 관계 법령의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개선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소속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개선조치를 보고하여야 한다.

(나) 사회복지시설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2013년 보건복지부는 포괄적인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는데, 사회복지시설에서의 개인정보 보호를 별도 장에서 다루고 있다. 이 중 몇몇 조항들에서 장애인의 특수한 상황에 대한 대응 방법을 규정한다.

특히 이용자·입소자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입소자가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법정대리인이 계약을 체결할 경우 법정대리인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를 할 수 있으며, 입소대상자가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입소대상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계약당사자가 될 수 있다. 한편, 시각, 청각 등의 장애로 인하여 서면 동의를 이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음성 또는 통화 녹음을 통한 동의가 가능하다. 하지만 음성이나 통화를 통해 동의를 구할 경우에도 필수 고지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⁴⁹⁴⁾

(2) 사회복지시설 개인정보 보호 관리 현황

최근 장애인 시설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현황만을 별도로 조사한 연구가 수행된 적은 없다. 다만 2016년 이연희 등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간한 ‘IoT 중심의 사회복지시설 정보화 현안과 정책과제’ 연구의 일환으로 사회복지시설 개인정보 보호 관리 현황과 과제를 연구하였다. 연구는 설문조사로 이루어졌으며, 조사 대상은 보건복지부가 관할하는 사회복지시설 175곳이었는데, 장애인 관련 시설이 45.1%, 정신보건시설이 14.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⁴⁹⁵⁾ 따라서 동 연구가 장애인시설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현황을 상당 부분 반영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우선, 개인정보 처리 부문에서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받는 경우는 99.4%로 거의 모든 기관에서 지켜지고 있었으며, 응답 기관 중 지난 1년간 종이 문서 형태의 개인정보를 파기한 적이 있는 기관(81.7%)들은 직접 파쇄 및 소각(82.4%)하거나 대행업체 위탁(17.6%)으로 처리하였다. 한편 지난 1년간 전자파일 형태의

494)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사회복지시설 편” (2013), 22.

495) 이연희외 6, “IoT 중심의 사회복지시설 정보화 현안과 정책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2016). 65.

개인정보를 파기한 적이 있는 기관(49.1%)들은 대부분 직접 영구 삭제하였고(93.0%) 7.0%만이 대행업체에 위탁·처리하여 대행업체 위탁에 따른 위험성은 비교적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파기 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30.3%만이 이를 지키고 있었다.⁴⁹⁶⁾

개인정보 보호 담당 부서 지정,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지정, 개인정보 내부 관리 계획 수립 항목에서는 각각 66.3%, 82.9%, 86.9%로 나타나 개선의 여지를 보이고 있다. 이들 중 매년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지난 1년간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한 시설은 92.6%, 평균 개인정보 보호 교육 횟수는 1.4회, 포함한 교육 내용으로는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91.9%), 개인정보 취급 관련 주의 사항(83.2%) 순이었다. 이들 기관의 지난 1년간 개인정보 보호 교육 방법으로는 외부 전문 강사에 의한 집합교육(57.1%), 내부 직원에 의한 집합교육(44.1%), 인터넷 교육(23.6%) 등이 있으며 향후 개인정보보호법 변경 사항, 타 기관들의 실천 혹은 위반 사례, 사업별 개인정보 보호 관련 양식 소개 등 실 업무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사례 중심의 교육이 필요함을 추가로 기술하였다.⁴⁹⁷⁾

또한 전체 175개 기관 중 지난 1년간 외부 기관에 위탁한 사업 중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사업이 있었던 기관은 38.3%, 이들의 평균 사업 수는 2.5개였으나, 이들 기관 중 외부 수탁자에 대한 교육 및 관리·감독을 실시한 경우는 43.5%에 불과하여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 조사되었다.⁴⁹⁸⁾

한편 보호 대책 수립 및 시행 부문에서 개인 정보 처리 방침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는 91.4%,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율은 77.7%로 나타났으며, 영상정보처리기가 설치되어 있는 시설 중 4.5%는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⁴⁹⁹⁾

다음으로 침해 사고 대책 부문에서 업무용 컴퓨터에 백신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는 96.0%, 이러한 업무용 컴퓨터에 고유식별정보, 바이오정보, 비밀번호 등을 저장하고 있는 경우가 66.9%인데 반해 정보가 저장된 컴퓨터에 암호화 틀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는 45.9%, 업무용 컴퓨터 및 홈페이지에서 개인정

496) 이연희외 6, 앞의 글, 13.

497) 이연희외 6, 앞의 글, 11.

498) 이연희외 6, 앞의 글, 13.

499) 이연희외 6, 앞의 글, 13.

보가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상시 모니터링을 하는 경우는 63.4%, 안전성 확보 조치 부문 중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공간에 대한 출입 통제 절차를 수립하고 운영하는 경우는 54.3%로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⁵⁰⁰⁾

마지막으로 시설의 개인정보 보호 업무 수행에서 외부 전문가의 자문(컨설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수집 시 동의에 관한 사항, CCTV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보호 교육에 관한 사항 등 각각에 대한 응답 비율이 고르게 나타났다.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시설 종류별 상세 가이드라인 개발 및 배포에 대한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시설별 컨설팅은 9.7%로 그리 높지 않아 정부는 예산 및 상세 가이드라인 개발에 좀 더 치중해야 할 것으로 평가되었다.⁵⁰¹⁾

(3) 시설에서의 개인정보 유출 사례

최근 장애인 시설에서 장애인들의 개인정보가 대량으로 유출된 사례는 발견되지 않는다. 하지만 2017년 초 정부의 컴퓨터에서 장애인들의 민감한 정보가 보호되지 않고 노출된 사례가 있었다.

2010년 설립된 정보원은 2013년부터 2017년 초까지 4년여 동안 전국의 사회복지업무 담당 공무원들에게 행복이음 사용법을 교육하면서 경기도 성남시민과 그 부양의무자 191만 명의 개인정보를 그대로 활용했다. 행복이음엔 이름과 주민번호뿐 아니라, 학력, 직장명, 휴대전화 번호, 계좌번호, 통장 잔액, 부동산, 금융자산, 월 소득, 임신·출산 여부, 질병, 장애등급, 급여정보, 가족관계 등 많게는 760여 종의 사회복지 관련 개인정보가 저장돼 있다. 이 기간 중 정보원의 전산교육장(서울 중구 퇴계로 소재)이나 각 지자체 교육장에서 교육 받은 전국 사회복지업무 담당 공무원은 1만7천여 명에 달한다. 정보원은 행복이음 구축 과정에서 수집된 성남시민 등 294만여 명 가운데 103만여 명의 정보만 이름과 주민번호의 특정 자릿수를 별표(*) 처리하는 방법으로 ‘비식별화’했고 나머지 191만여 명의 정보는 “예산과 시간의 제약 때문에” 그대로 썼다. 감사원은 연초 감사 과정에서 이 문제를 확인했지만 9월 말에야 관련 보고서(‘복지사업 재정지원 및 관리실태’)를 내놓고 임병인 정보원 원장에 대한 주의조치를 했을 뿐이다.⁵⁰²⁾

500) 이연희외 6, 앞의 글, 13.

501) 이연희외 6, 앞의 글, 13.

(4) 소결 및 제언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포괄적인 법률이 제정되고, 상세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에서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지는 않다.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진행된 연구에서도 대체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률이나 가이드라인의 조치를 잘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정부는 큰 틀에서 CRPD에서 요구하는 개인정보 보호를 어느 정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보다 구체적인 상황에 이르면 준수 수준이 확연히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교육을 시설 종사자들에게는 비교적 철저히 시행하나, 동일한 정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교육을 누락하는 경우가 급격히 늘어나는 식이다. 또한 최근 발생한 성남 시민들의 개인정보 노출 사고에서 드러나듯 민감정보는 어떤 상황에서도 철저히 보호해야 한다는 의식 자체도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전면적인 법의 개정이나 새로운 정책의 도입 보다는 관련 교육을 강화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 가이드라인을 보완하여 혹시나 모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리라 판단된다.

19. 제23조 가정과 가족에 대한 존중

가. CRPD 제23조

제23조 가정과 가족에 대한 존중

1. 당사국은 다음의 사항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혼인, 가족, 부모자식 관계 및 친척관계와 관련한 모든 문제에 있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근절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가. 결혼적령기에 있는 모든 장애인이 장래 배우자의 자유롭고 완전한 동의 아래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된다.
 - 나. 장애인이 자녀의 수와 터울을 자유롭고 책임 있게 선택할 권리와 연령에 적합한 정보 및 출산과 가족계획 교육에 대해 접근할 권리를 인정하고, 장애인이 이러한 권리를 행사하는데 필요한 수단을 제공한다.
 - 다. 장애아동을 포함한 장애인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생식능력을 유지한다.
2. 당사국은 그러한 개념이 국내법에 존재하는 경우, 후견, 피후견, 위탁, 입양 또는 유사한 제도와 관련한 장애인의 권리와 책임을 보장한다. 모든 경우에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가장 중요시된다. 당사국은 장애인이 자녀에 대한 양육 책임을 수행하는데 있어 적절한 지원을 제공한다.

502) 한겨레, “사회보장정보원, 191만명 개인 민감정보 4년간 노출”, 한겨레, (2017. 10. 09. 20:55), <http://www.hani.co.kr/arti/society/rights/813736.html>

3. 당사국은 장애아동이 가정생활에 있어서 동등한 권리를 가질 것을 보장한다. 이러한 권리를 실현하고 장애아동의 은닉, 유기, 방임 및 격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장애아동과 그 가족에 대해 조기에 종합적인 정보, 서비스 및 지원의 제공을 약속한다.
4. 당사국은 관계당국이 사법적 검토를 조건으로 적용 가능한 법률과 절차에 따라 부모와의 격리가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부모의 의사에 반하여 아동이 부모로부터 격리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아동은 아동 자신 또는 부모의 장애를 이유로 부모로부터 분리되지 아니한다.
5. 당사국은 직계 가족이 장애아동을 돌볼 수 없는 경우에 확대가족 내에서 대체 보살핌을 제공하고, 이것마저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역사회에서 가족의 형태로 이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

나. 최종견해 및 쟁점목록

(1) 최종견해

- 제23조 가정과 가족에 대한 존중
43. 위원회는 장애아동의 가족에게 제공되는 지원서비스가 중증장애인을 포함한 저소득 가정에 한정되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 심지어 공급 부족으로 인하여 이러한 서비스조차 불충분한 실정이다. 또한 위원회는 원가정보다는 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족에 더욱 많은 보조금 및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특히 복합적인 낙인을 직면하는 미혼모 등 원가정이 장애아동을 유기하도록 촉진하며 아동의 가족에 대한 권리를 부인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44. 위원회는 당사국이 미혼모를 포함한 장애아동의 부모들이 가정 내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다른 아동과 동등하게 장애아동의 가족에 대한 권리와 지역사회에서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포괄적인 정책을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2) 쟁점목록

- 제23조 가정과 가족에 대한 존중
23. 장애아동 부모(미혼모 포함)는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제공받고, 해당 장애아동 가족의 권리와 지역사회 참여에 대한 권리를 비장애인 아동과 동등하게 누리고 있는지 포괄적 정책 마련 및 시행여부와 구체적인 조치를 설명하시오. 장애아동의 친부모와 입양부모를 공정하게 대우하기 위한 계획이 있는지 설명하시오.
 24. 장애인이 결혼할 수 있는 권리와 가족을 구성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설명하시오.

(3) 실태조사의 대상 쟁점

본장에서는 가정과 가족에 대한 존중을 위한 정부의 CRPD 제23조 이행 실태를 평가하기 위해 장애아동 가정양육 지원서비스 및 장애인의 결혼할 권리 영역을 주로 검토하였다.

다. 장애아동 가족지원사업

(1) 정부의 이행 현황

보건복지부는 장애아동의 부모(미혼모 포함)가 장애아동을 가정에서 양육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정책을 이행하라는 위원회 최종견해에 대한 수용 의사를 밝히면서, 성장기 장애아동에게 적절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행동발달을 지원하고, 높은 돌봄 부담으로 인한 장애아동 양육 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장애아동 가족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발달장애인의 지원 및 권리 보장을 위해 「발달장애인법」 하위법령 시행, 발달장애인 맞춤형 지원 등을 추진하겠다는 이행계획을 제시하였다.

(2) 장애아동가족 양육지원제도

(가) 법적 근거

장애아동가족 양육지원의 법적 근거가 되는 「장애아동복지법」은 장애아동의 생애주기적 복지욕구를 반영하여 장애아동과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복지 지원을 제공한다. 특히 제24조에서 장애아동 돌봄 및 가족의 일시적인 휴식지원서비스를 규정하고 있다.

제24조(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지원)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돕기 위하여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복지 지원을 제공할 때에는 장애아동의 장애유형, 장애정도와 그 가족의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대상 및 내용을 결정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복지 지원의 대상·지원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나) 장애아동가족 양육지원 현황

장애아가족 양육지원대상자는 만 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1~3급 장애아동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가정이다. 단, 맞벌이 가구의 경우 맞벌이 합산 소득의 25% 감경이 적용된다. 만약 장애아동이 다른 법령 혹은 국가예산에 따라 장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과 유사한 재가서비스를 받고 있다면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지원시간은 장애아동 1인당 연 480시간 범위 내에서 지원(특별한 경우 연장가능)을 받으며, 선정가정이 사용하지 않은 잔여시간이 있을 경우 추가로 지원하기도 한다.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은 돌봄서비스와 휴식지원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돌봄서비스는 양육자의 질병, 사회활동 등 일시적 돌봄서비스 필요 시 일정한 교육과정을 수료한 돌보미를 파견하여 장애아동 보호 및 휴식지원을 제공하는 것으로, 아동의 가정이나 돌보미 가정에서 제공된다. 휴식지원프로그램은 가족관계 회복 및 돌봄노동을 분담하기 위해 장애아가족에게 문화 및 교육 프로그램, 휴식 박람회, 가족캠프 등을 제공하며, 아울러 장애아가족 상담서비스 및 생활지도 등 제공, 자조모임 등을 지원한다. 또한 가족상담(치료)프로그램, 가족 교육프로그램(부모교육, 비장애 형제자매 교육, 가족관계 개선 등)을 통해 가족 역량강화 프로그램으로도 운영된다.⁵⁰³⁾

돌보미의 기본적 역할은 학습·놀이활동, 안전 및 신변보호 처리, 외출지원 등 장애아동 양육을 지원하고, 장애아 가족의 고충을 상담하는 것이다. 돌보미는 총 40시간의 양성교육과 연 8시간의 보수교육을 의무로 하고 있으며, 교육의 내용도 장애아동의 이해와 돌봄에 맞추어져 있다. 한편 2018년 현재 돌보미의 시간당 수당은 7,530원이다.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활동보조인 서비스단가의 경우, 2018년도 10,760원에서 2019년도 12,960원으로 2,200원 증액 예정 예정이나 돌보미 수당의 증액 계획은 없다.⁵⁰⁴⁾

이와 같은 기준에 따라 선정되어 2015년 현재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아동 수

503) 보건복지부,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개요”,
http://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370404&PAGE=4&topTitle=%C0%E5%BE%D6%BE%C6%B0%A1%C1%B7%20%BE%E7%C0%B0%C1%F6%BF%F8%20%B0%B3%BF%E4

504) 보건복지부 “사람 중심의 포용적 복지국가 구현을 위한 2019년 복지부 예산 편성”(2018).

는 3,012명으로, 돌봄서비스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이동지원서비스가 38.1%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일상생활지원 26.6%, 학습 및 놀이지원이 15.5%를 차지하고 있었다.⁵⁰⁵⁾

(다) 평가

장애아동 가족양육지원사업은 장애아동에 대한 돌봄과 함께 부모를 포함한 가족을 대상으로 휴식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가족지원서비스로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서비스 대상자가 전국 가구 평균 100% 이하 가정으로만 한정되어 있다 보니 서비스 이용자가 제한된다. 장애아동을 돌보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며, 가족의 돌봄 이외에 시장에서 구매할 수 있는 적당한 서비스도 없는 실정에서 이러한 어려움은 소득이 다소 높은 가정에도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현재와 같이 소득을 기준으로 서비스 제공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1인당 돌봄서비스 제공 시간도 월평균 40시간에 그치고 있는데, 이는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10시간, 하루에 1.4시간 정도에 불과하다. 장애아 가정에게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보장한다는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보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장애아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다른 제도인 활동지원서비스에 비해 돌보미가 장애아동에게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을 받고 있음에도 가장 많은 돌봄서비스가 이러한 전문성이 필요 없는 활동지원에 사용되고 있음이 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못한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서비스 제공 기관의 수도 활동지원서비스의 경우 1,080개인 데 반해 양육지원사업은 전국 18곳에 그쳐 극히 일부 가정만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장애아동에게 전문화된 돌봄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돌봄 인력의 처우(월평균 수당 609,474원)는 활동지원서비스(월평균 수당 953,797원)에 비해 충분하지 않다. 결과적으로 돌보미의 이탈이 심각하다.⁵⁰⁶⁾

505) 최복천, “장애아동 돌봄지원제도 현황 및 개선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238호 (2016). 74.

506) 최복천, 앞의 글, 76.

(3)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가) 법적 근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려는 목적으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 수행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신변처리, 가사, 외출이 동, 목욕 등의 서비스 또는 간병, 간호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2011년에 제정된 법률이며, 활동지원급여의 법적 근거가 된다(자세한 내용은 19조 활동지원급여 부분참조). 한편, 동법 시행령에서 동법이 6세 이상 아동에게만 적용됨을 명시하고 있다(참고로, 0세부터 만 5세까지의 장애영유아에 대한 사회적 돌봄은 일반적인 보육체계에서 담당한다).

제4조(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

- ① 법 제5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 이상인 사람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등급이 1급인 사람을 말한다.
- ② 법 제5조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사람이란 6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나) 장애아동에 대한 활동지원 제공 현황

장애인활동지원대상자는 만 6세 이상~만 65세 미만으로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 1~3급 장애인으로 활동지원서비스 인정조사표에 의한 인정점수 총 470점 중 220점 이상 획득한 대상자이다.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단, 다른 법령 혹은 국가 예산에 따라 활동지원급여와 유사한 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자격이 있는 경우는 본 사업의 대상자에서 제외되는데 장애아가족 양육 지원 서비스도 이에 해당된다.

실제 제공되는 활동지원의 종류에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가 있다. 활동보조인의 기본적 역할은 장애인의 신체활동, 가사활동,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다. 활동보조인은 장애 이해, 일상생활지원, 활동보조인의 역할 등으로 구성된 총 50시간의 양성교육을 의무로 받아야 하며, 2015년 현재 활동보조인의 수는 총 41,686명이며, 시간당 수당은 6,800원으로 1인당 월평균 수당은 953,797원 정도이다.⁵⁰⁷⁾

이러한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 자격을 갖춘 장애아동 수는 총 21,450명이며, 2014년 실제로 장애인 활동지원제도를 이용한 아동은 15,737명이었다. 장애유형별로는 지적장애아동이 8,520명으로 가장 많고 연령별로는 8세~13세가 8,494명으로 가장 많다. 추가급여 현황을 살펴보면 장애아동의 경우 학교생활서비스 이용현황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⁵⁰⁸⁾

(다) 평가

장애아양육지원 제도와 달리 활동지원서비스에서는 소득 기준으로 서비스 제공 여부를 결정하지 않아 장애아동을 둔 모든 가정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현재 활동지원서비스의 대상자 연령은 만 6~64세로 만 6세 미만의 장애아동을 둔 가족은 해당 서비스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그러나 활동지원서비스는 애초에 장애아동을 위해 설계된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서비스의 내용은 성인장애인의 신체적 활동지원 및 요양에 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장애아동의 발달 및 성장기의 특성과 욕구(예: 사회성 발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 마찬가지로 이유로 제공 인력 역시 장애아동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있지 못하다. 마찬가지로 이유로 서비스 제공 인력에 대한 교육 역시 성인 장애인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어 장애아동에 대한 전문성은 부족할 수밖에 없다.⁵⁰⁹⁾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 대상 범위가 넓고 지원체계도 풍부하기 때문에 장애아동가족들이 보다 전문화된 양육지원서비스 대신 활동지원서비스에 보다 많이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 결과적으로 장애아동에게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함으로써 가족의 부담을 경감시켜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507) 보건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사업”, http://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370406&PAGE=6&topTitle=.

508) 최복천, 앞의 글, 40.

509) 최복천, 앞의 글, 76.

(4) 발달장애인 맞춤 서비스

(가) 법적 근거

「발달장애인법」은 발달장애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그들의 생애주기에 따른 특성 및 복지 욕구에 적합한 지원과 권리옹호 등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14년 제정되었다.

「발달장애인법」의 법률수혜대상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으로 아동기와 성인기의 발달장애인을 포괄한다. 따라서 「발달장애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돌봄 관련 지원은 발달장애 아동과 성인에게 모두 적용된다.

제29조(거주시설·주간활동·돌봄 지원)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거주시설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낮 시간 활동 및 지역사회 참여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주간 활동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특성과 요구에 따른 돌봄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2조(휴식지원 등)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돕기 위하여 돌봄 및 일시적 휴식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형제자매로서 발달장애인이 아닌 아동 및 청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이들의 정서발달과 심리적 부담 해소 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을 제공할 때에는 발달장애인 가족의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대상 및 내용을 결정할 수 있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2조제1항의 돌봄 및 휴식지원 서비스는 시행규칙에서 그 범위와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양육 지원, 주간·단기보호, 문화·여가프로그램과 가족 캠프 등이 이에 포함된다.

제22조(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의 대상·기준 및 방법)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돌봄 및 일시적 휴식 지원(이하 “돌봄지원등”이라 한다)의 내용은 양육 지원, 주간·단기보호, 문화·여가프로그램, 가족 캠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정서발달과 심리적 부담 해소 등을 위한 프로그램(이하 “심리부담해소프로그램”이라 한다)의 내용은 심리상담, 휴식지원 등으로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돌봄지원등 및 심리부담해소프로그램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 기준에 따라 돌봄지원등 및 심리 부담해소프로그램 지원 대상 및 내용을 결정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별표 1의 심리상담 서비스의 제공인력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으로 하여금 돌봄지원등 및 심리부담해소프로그램 지원을 하게 할 수 있다.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돌봄 및 돌봄 지원에 관한 명쾌한 정의와 법적 규정은 내려지지 않았으며 돌봄에 대한 조항이 중복적으로 존재함으로써 법적 규정의 모호성이 남아 있다.⁵¹⁰⁾

(나) 발달장애인 맞춤형 지원 현황

발달장애인 가족 휴식 지원 사업은 「발달장애인법」 제32조에 근거하여 발달장애인 가족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가족의 정서적 안정을 돕기 위해 휴식, 여가, 교육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부모 및 가족의 서비스 이용 시 발달 장애인의 일시적인 돌봄을 제공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이며,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의 휴식지원 프로그램 이용자 혹은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사업과 유사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는 제외된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아래와 같다.⁵¹¹⁾

510) 최복천외 6, “장애아동에 대한 양육지원 및 활동지원사업의 통합적 운영방안 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32.

511) 복지로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http://www.bokjiro.go.kr/welInfo/retrieveWellInfoDetail.do?welInfSno=16437>.

구분		내용
지원 내용		- 힐링 캠프: 가족 캠프, 인식 개선 캠프, 동료 상담 캠프 - 테마 여행: 역사, 문화, 기관 방문 등
지원 비용		- 당일(62,000원), 1박2일(135,000원), 2박3일(227,000원) - 초과 금액 이용자 실비 부담
돌보미 지원 방식	여행지 지원	- 여행지까지는 동반, 여행지에서는 가족과 별개의 프로그램 운영
	거주지 지원	- 돌보미가 발달장애인 또는 돌보미 가정에서 돌봄 지원

(다) 평가

「발달장애인법」이 발달장애인들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을 목표로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 법에 근거하여 제공되는 돌봄서비스의 종류는 극히 제한적이다. 예를 들어, 장애아가족의 휴식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서비스는 가족들이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들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주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실제 서비스는 일회성 행사의 성격에 머물고 있어 가정들의 실질적인 양육 부담을 정부가 함께 부담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같은 일회성 행사는 장애아 가정이 직면하고 있는 진정한 고민들, 예를 들어 부모가 사망하거나 은퇴한 후 누가 장애아동을 돌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나, 장애아동 형제들의 정상적인 사회활동 제한과 같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

「발달장애인법」이 이렇듯 기대했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필요한 예산 자체가 배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018년 보건복지부 예산은 63조로 2017년보다 905% 증액되었고, 장애인정책국 예산도 2017년 2조원에서 2조2000억 원으로 약 7.1% 증액됐다. 하지만 발달장애인 관련 예산은 기존 예산,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 예산만 포함되었을 뿐, 2016년 91억 원, 2017년 89억, 2018년 83억 원으로 오히려 매년 삭감되고 있다. 특히 「발달장애인법」 제정 당시 정부 주도의 김명연 의원안에는 2015년~2019년간 매년 427~815억 원, 5년간 3,092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되었고, 이 추계액은 최소 추계치라고 명시되어있다. 그러나 실제예산은 이의 10% 수준이다.⁵¹²⁾ 따라서 「발달장애

512) 에이블뉴스, “발달장애인법 실행 예산, 3년째 ‘삭감’”, 에이블뉴스 (2017. 12. 08. 09:41:31),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Id=0014&NewsCo>

인법」 시행에 필요한 예산이 제공되지 않는 한 정부가 언급한 발달장애인 맞춤형 지원이 실제 장애아동가정의 부담을 경감시켜 줄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5) 소결 및 제언

장애아동을 둔 가정은 장애아동에게 특화된 양육지원서비스와 성인에게도 제공되는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전자가 장애아동의 특성을 반영하여 보다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나, 일정 소득 이상인 가정에서는 이용할 수 없고, 제공 기관이나 인력의 수가 부족하여 자격을 갖추더라도 접근성이 떨어진다. 반면 활동지원서비스는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장애아동 가정에서 이용할 수 있으나 서비스 내용은 성인에게 초점을 두고 있어 장애아동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다. 결과적으로 장애아동가정에서 그들의 욕구에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게 되므로 정부가 위원회 최종견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이와 같은 이원화된 체계가 현재 여건에서 불가피하거나 가장 바람직한 것인지 연구하여 두 제도를 통합하거나, 양육지원체계에 보다 많은 자원을 투입하여 모든 장애아동 가정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한편, 「발달장애인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본격적으로 발달장애인들만을 위한 서비스가 개발되지 않고 있다. 현재 제공 중인 휴식지원 프로그램은 일회성 이벤트에 가까워 장애아동 가정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없다. 따라서 장애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주간 서비스나 부모 상담, 형제 지원 등 지속적으로 장애아동 가정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제도의 발굴이 필요하다.

라. 장애인의 결혼할 권리

(1) 정부 이행현황 및 이행계획

보건복지부는 장애아동이 가정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권리와 지역사회에 참여할 권리를 비장애아동과 동등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정책을 이행하라는 위원회의 최종견해에 대한 수용 의사를 밝히면서, 장애아동에 대

de=001420171208091200798648.

한 발달재활서비스사업,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추진 등을 통한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장애아동이 사회구성원으로 차별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최소한의 여건을 마련하고, 언어·청능, 미술·음악, 행동·놀이·심리, 감각·운동 등의 재활서비스 등 장애아동에 대한 재활치료를 통해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을 주며,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보호자의 지원 및 권리 보장을 위해 「발달장애인법」 하위법령 시행 및 발달장애인 맞춤형 지원 등을 추진한다는 이행계획을 제시하였다.

(2) 2017년도 장애인실태조사에서 나타난 장애인의 결혼과 가정

한국에서는 2005년 이후 수행된 장애인실태조사들에서 전국 규모로 장애인의 결혼생활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가장 최근 수행된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장애인의 결혼 실태는 다음과 같다.

조사 당시 장애인의 결혼 상태는 유배우자(55.3%), 사별(18.7%), 미혼(15.3%)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폐성장장애인은 전원(100%) 결혼하지 않았고, 장애유형별로 지적장애인(77.9%), 정신장애인 (55.7%), 뇌전증장애인(48.2%)의 경우는 다른 장애인에 비해 미혼 비율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⁵¹³⁾ 결혼 당시 장애여부에 대해서는 22.7%의 장애인이 결혼 당시 장애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는 이들의 장애가 대체로 성인기 이후 사고나 재해 혹은 질병 등으로 장애를 갖게 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결혼 시 배우자의 장애여부와 관련하여, 배우자가 장애가 없다(97.6%)고 응답하였고, 응답자의 2.4%만이 결혼 당시 배우자가 장애인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은 장애인끼리 결혼하는 비율이 높을 것이라는 장애인에 대한 막연한 선입관이 어느 정도 존재하고 있었으나, 본 조사결과 장애인끼리 혼인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일로 파악되었다. 그럼에도 결혼 당시 장애인의 배우자의 장애유형과 관련하여, 지체장애(48.8%), 청각장애(75.9%), 언어장애(73.6%), 시각장애(62.7%), 지적장애(37.9%)는 장애인 본인과 동일한 유형의 장애를 가진 배우자를 선택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처럼 장애인은 자신과 같은 유형의 장애인과 결혼하는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향후 장애유형끼리 결혼을 하고 그들만의 문화를 구축하고 생활방식을 만들어 나갈 가능성, 예컨대, 청각장애인 공동체

513)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2017). 367.

의 수화와 같은 공식 언어의 활용으로 인한 주류 사회와의 차별화 가능성 등, 이 밖에도 지적장애인 가정에서의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가정생활지원 및 자녀 양육 시스템의 구축 등에 대해서 사회적 관심이 요구되는 점이라 하겠다.⁵¹⁴⁾

장애인이 결혼하지 않았다면, 그 주된 이유는 건강 및 장애문제 때문에 결혼할 생각이 없어서, 아직 결혼하기 이른 나이여서, 집 장만, 결혼비용 등 경제적인 이유로 이성을 만날 기회가 없어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안면장애, 정신장애, 언어장애, 신장장애 등은 결혼하지 못한 이유가 건강과 장애로 인해서(대략 50~70 %이상)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들의 건강문제는 결혼을 하지 않는 점에 그치지 않고, 가족을 구성하지 못함으로 인해 인적 혹은 물적 자원이 빈약하게 되며, 이로 인해 사회적 고립협상을 가질 가능성이 있음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⁵¹⁵⁾

장애인 중 혼인 경험이 있는 경우(미혼모/부 포함), 자녀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96.4%가 자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기혼자 대부분이 1명 이상의 자녀가 있음을 의미한다. 장애인이 가족을 부양하며 동시에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책임을 지고 있음을 의미한다.⁵¹⁶⁾ 장애인이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시키는 것은 지금까지 장애인이 복지수혜자이며 사용자로 여겨온 사회적 통념을 깨고, 장애인이 자녀에 대한 양육과 보육, 교육을 책임지는 돌봄 책임자이며 동시에 가사노동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지금까지 장애인에 대한 지원 대책이 장애인 자신에게 맞춰져 있다면 향후 자녀가 있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차별화된 사회서비스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는 장애유형, 장애등급을 고려하여 장애인복지 대책과 서비스를 수립하여 왔으나, 향후 장애인복지 서비스를 고려할 때에는 장애인 가운데, 배우자 유무, 장애인 배우자의 장애유무, 가족 내 또 다른 장애인이 있는지, 장애아동을 양육하고 있는지, 이밖에도 자녀의 수, 자녀양육 조력자 유무 등을 고려하여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⁵¹⁷⁾

51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369.

51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491.

51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373.

517)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374.

(3) 장애인 발달재활서비스

보건복지부가 이행계획에서 언급한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발달장애인법」 하위법령 시행 및 발달장애인 맞춤형 지원에 대해서는 바로 위 장애아동지원 사업에 대한 평가 부분에서 살펴보았으므로 여기서는 정부가 장애인의 결혼할 권리에 관하여 별도로 언급한 발달재활서비스에 대해 논의한다.

장애아동에 대한 발달재활서비스는 성장기의 정신적·감각적 장애아동의 기능향상과 행동 발달을 위한 적절한 재활치료서비스 지원 및 정보제공, 높은 재활치료 비용으로 인한 장애아동 양육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9년 2월부터 시행되었다.

(가) 발달재활 서비스의 법적 근거

2012년 8월 「장애아동복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은 “발달재활서비스”라는 새로운 용어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1조(발달재활서비스지원)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하여 적절한 발달재활서비스(이하 “발달재활서비스”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할 때에는 장애아동의 장애유형장애정도와 그 가족의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대상 및 내용을 결정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재활서비스의 제공경험 및 전문성, 서비스 내용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하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④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은 장애아동에게 적합한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장애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 <2012.>

3. 서비스 기준

가. 서비스의 내용 및 가격

- 1) 언어청능, 미술음악, 행동놀이심리, 감각운동 등을 통하여 장애아동의 재활 및 발달에 도움을 주는 서비스일 것
- 2) 관련 민간시장의 상황, 서비스 내용 및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제시된 서비스 가격이 적절한 수준일 것

(나) 발달재활 서비스 현황

발달재활 서비스는 만 18세 미만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장애 아동에게 제공된다.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50% 이하인 경우에만 제공되나, 소득 기준이 전국가구평균소득 150% 초과하는 경우에는 장애아 2명 이상 가구, 부모 중 1명 이상이 중증장애인(1,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가정에 대하여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마형’(본인부담금 8만 원)을 지원할 수 있다. 서비스에는 언어·청능(聽能), 미술·음악, 행동·놀이·심리, 감각·운동 등 발달재활 서비스가 포함되며 장애아동 및 부모의 수요에 따라 사업실시 기관이 다양한 서비스 개발할 수 있다.⁵¹⁸⁾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1년간의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자를 분석한 결과 총 55,556명이 발달재활서비스를 이용했으며, 55,556명 중에는 몇 달만 이용하거나, 몇 회만 이용한 사용자를 모두 포함한다. 바우처 1회 평균 결제금액은 26,465 원으로, 이용자 1인당 연평균 이용 금액은 1,649,210원으로 나타났다. 55,556명의 이용자 중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지만, 사회서비스 바우처 시스템에 기록정보가 없는 17,469명을 제외한 37,458명의 장애유형별 등록현황은 지적장애인이 20,843명으로 55.6%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자폐성장장애인이 6,846명으로 18.3%의 비율을 보였다. 발달재활서비스를 받는 전체 장애아동 중 지적장애, 자폐성장장애, 뇌병변장애를 합하면 총 인원대비 88.9%이다.⁵¹⁹⁾

(다) 평가

「장애아동복지법」 제21조(발달재활서비스지원)는 서비스 대상자를 ‘장애아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발달재활서비스는 「장애인복지법」 상의 15개 장애유형 가운데 6개 유형(뇌병변, 지적, 자폐성, 시각, 청각, 언어)의 장애를 가진 아동으로 서비스 대상자를 한정하고 있다. 또한 장애아동 재활치료는 이를 필요로 하는 모든 대상자들에게 차별 없이 제공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득기준 150%에 의해 대상자가 제한되고 있다.⁵²⁰⁾

518)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http://www.socialservice.or.kr/user/htmlEditor/view2.do?p_sn=11.

519) 김정희외 2, “장애아동 재활서비스 지원 사업 실태 및 개선방안”,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서·행동장애연구 제31호 (2015), 265.

객관적인 진단평가의 부재 역시 현행 발달재활서비스의 문제점이다. 진단평가는 대상자가 어떤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지 객관적으로 결정한다. 발달상 어떠한 부분이 지체되어 있어 미술재활서비스를 받아야 하는지 또는 언어상의 어떠한 어려움으로 인해 언어재활서비스를 받아야 하는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주는 것이다. 하지만 발달재활서비스에서는 필요 서비스 종류를 서비스 제공기관과 부모가 결정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장애아동에게 반드시 필요한 서비스 대신 반드시 필요하지 않는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⁵²⁰⁾

(4) 소결 및 제언

결혼은 당사자들이 자신의 의지로 결정하는 사항이라 정부가 개입할 여지가 많지 않다고 인식할 수 있다. 그러나 2017년 실태조사를 살펴보면 안면장애, 정신장애, 언어장애, 신장장애 등은 결혼하지 못한 이유가 건강과 장애로 인해서(대략 50~70% 이상)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들의 경우 우리 사회에서 장애를 극복하기 더욱 어려운 입장에 놓여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실태조사에서 다수의 장애인들이 자녀를 갖고 있으며 자녀 양육에 대한 별도의 서비스가 필요함이 확인되었다. 한편, 실태조사에서 사회 통념과 달리 대다수의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결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장애인들끼리의 결혼에 있어서도 커다란 장벽이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즉, 장애인들끼리 결혼을 해서 동거가족이 되면 장애 관련 수급비가 줄어드는 것이다. 결혼을 하면 실제로는 양육비 등으로 인하여 생활비용이 증가하는데 현행 제도에서 수급비가 가족을 중심으로 지급되면서, 2인 가족이 되면 각자 결혼하기 전에 받던 수급비보다 적은 액수를 받게 된다. 따라서 장애인들끼리 결혼을 하려면 상당한 경제적 손해를 감수해야 하며, 이는 장애인들의 결혼을 가로막는 제도라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제시한 이행계획인 장애아동에 대한 발달재활서비스사업,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추진, 언어청능, 미술음악, 행동놀이심리, 감각운동 등의 재활서비스 등 장애아동에 대한 재활치료 지원 등은 이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극적인 정책이라 평가할 수 없다. 양육지원서비스 부분에서 설

520) 김정희외 2, 앞의 글, 273.

521) 김정희외 2, 앞의 글, 275.

명한 것과 같이 한국에서 「발달장애인법」 하위법령 시행 및 발달장애인 맞춤형 지원은 사실상 존재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정부가 위원회 최종견해를 이행했다고 평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비록 정부가 직접적으로 이들의 결혼을 유도하는 정책을 개발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겠으나, 이들이 자신의 장애로 인하여 배우자를 만날 기회 자체가 심각하게 제한된다든지, 배우자를 만났음에도 결혼을 자제하게 되는 상황에 봉착하지 않도록 지원할 수 있는 적극적인 정책 개발이 요구된다.

20. 제24조 교육

가. CRPD 제24조

제24조 교육

1. 당사국은 장애인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인정한다. 당사국은 이러한 권리를 균등한 기회에 기초하여 차별 없이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수준에서의 통합적인 교육제도와 평생교육을 보장한다. 이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지향한다.
 - 가. 인간의 잠재력, 존엄성 및 자기 존중감의 완전한 계발과, 인권, 기본적인 자유 및 인간의 다양성에 대한 존중의 강화
 - 나. 장애인의 정신적, 신체적 능력뿐만 아니라 인성, 재능 및 창의성의 계발 극대화
 - 다. 장애인의 자유사회에 대한 효과적인 참여의 증진
2. 당사국은 이러한 권리를 실현함에 있어 다음의 사항을 보장한다.
 - 가. 장애인은 장애를 이유로 일반 교육제도에서 배제되지 아니하며, 장애아동은 장애를 이유로 무상 의무 초등교육이나 중등교육으로부터 배제되지 아니한다.
 - 나. 장애인은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에서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통합적인 양질의 무상 초등교육 및 중등 교육에 접근할 수 있다.
 - 다. 개인의 요구에 의한 합리적인 편의가 제공된다.
 - 라. 장애인은 일반 교육제도 내에서 효과적인 교육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제공받는다.
 - 마. 학업과 사회성 발달을 극대화하는 환경 내에서 완전한 통합이라는 목표에 합치하는 효과적이고 개별화된 지원 조치가 제공된다.
3. 당사국은 장애인의 교육에 대한 참여 그리고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완전하고 평등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생활 및 사회성 발달 능력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하여, 당사국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가. 점자, 대체문자, 보완대체 의사소통의 방식, 수단 및 형식, 방향정위 및 이동기술의 학습을 촉진하고, 동료집단의 지원과 조언 및 조력을 촉진할 것
 - 나. 수화 학습 및 청각 장애인 집단의 언어 정체성 증진을 촉진할 것
 - 다. 특히 시각, 청각 또는 시청각 장애를 가진 아동을 포함하여 이러한 장애를 가진 장애인의 교육이 개인의 의사소통에 있어 가장 적절한 언어, 의사소통 방식 및 수단으로 학업과 사회성 발달을 극대화하는 환경에서 이루어지도록 보장할 것

4. 이러한 권리 실현의 보장을 돕기 위하여, 당사국은 장애인 교사를 포함하여 수화 그리고/또는 점자언어 활용이 가능한 교사를 채용하고 각 교육 단계별 전문가와 담당자를 훈련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그러한 훈련은 장애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적절한 보완대체 의사소통의 방식, 수단 및 형태, 교육기법 및 교재의 사용을 통합한다.
5. 당사국은 장애인이 차별 없고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일반적인 고등교육, 직업훈련, 성인교육 및 평생교육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이를 위하여 당사국은 장애인에 대하여 합리적인 편의의 제공을 보장한다.

통합교육에 대한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일반논평 제4호는 통합교육을 설명하며, ① 학생들의 기본권으로 보호자의 권리가 아니며, ② 모든 학생의 복지와 존엄과 자율성을 더욱 존중하고, 개별 수요와 능력을 파악하여, 학생들이 사회에 효과적으로 기여하도록 하고, ③ 빈곤에서 벗어나고, 지역사회에 참여하며, 착취로부터 보호되고, 사회에 통합되는 등의 인권을 실현하는 도구가 되고, ④ 기존 교육의 문화, 실무, 정책을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변화시키고,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해 온 벽을 제거하여, 결과적으로 모든 학생을 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⁵²²⁾

나. 최종견해와 쟁점목록

(1) 최종견해

- 제24조 교육
45. 위원회는 통합교육정책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일반학교에 다니는 장애학생들이 다시 특수학교로 복귀하는 현상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또한 위원회는 일반학교에 등록된 장애학생들이 그들의 필요에 적합한 교육을 받고 있지 못하다는 보고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46. 위원회는 당사국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 (a) 현재 시행 중인 통합교육정책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시행
 - (b) 접근가능한 학습환경의 제공을 포함하여, 교실 내 보조기술 및 지원, 접근가능하고 적합하게 개조된 교육자료와 교육과정을 제공함으로써, 학교 및 기타 학습기관에서 통합교육과 합리적인 편의의 제공 노력 강화
 - (c) 일반학교의 교사와 행정가를 포함하여 교육 담당자에 대한 훈련 강화

522) “General Comments No.4”, UN CRPD, CRPD/C/GC/4, Supp, No. 4. (2016).

(2) 쟁점목록

제24조 교육

25. 장애학생이 통합교육을 받을 권리에 대해 다음 각호와 관련한 당사국의 개선사항을 설명하십시오.
- (a) 현행 장애학생 통합교육 정책의 실효성과 개선 방안에 대해 연구하는가?
 - (b) 교육기관에서는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중인 장애학생의 교육활동 관련하여 학급용 보조기기 지원, 장애유형별 맞춤 교육자료와 교과과정을 제공, 접근성 등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해 교육기관 환경을 조성하는가?
 - (c) 교육기관의 교직원 (장애통합, 장애인식)교육을 강화한다.
 - (d)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인식 제고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장애학생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고,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한 괴롭힘 또는 폭력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한다.
26. 특수학교 추가 건립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십시오.

(3) 실태조사의 대상 쟁점

CRPD 제24조 교육에 관하여는 ① 통합교육에 대한 연구 ② 정당한 편의제공 ③ 교직원 대상 교육 ④ 장애 영유아 대상 교육 및 보육 ⑤ 여성장애인 대상 평생교육 ⑥ 장애아동 대상 학교폭력에 대하여 이하와 같이 검토한다.

다. 통합교육에 대한 연구

(1) 정부의 이행 현황

교육부는 위원회의 최종견해에 대해 수용의사를 밝히면서, 통합교육을 위한 특수학급 신·증설, 담당교원 연수, 장애이해교육 등 장애학생 통합교육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추진해 왔으며, 현행 통합교육정책의 효과성 점검을 통해 통합교육의 발전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사유로 제시하였다. 교육부는 현행 통합교육 정책의 효과성에 관한 정책연구를 2015년에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위 연구를 바탕으로, CRPD 제2·3차 병합 국가보고서(초안)에서는 통합교육정책의 실효성 개선 방안으로 내실 있고 효율적인 통합교육 실현을 위한 ‘정다운학교’를 신설하여 2022년 85개로 증가시키고, 통합활동프로그램과 통합교육 교수·학습자료도 개발하여 확보하며, 통합유치원과, 시·청각 장애학생 등을 위한 특성화 특수교육 지원센터 지정운영도 2022년까지 확대할 계획임을 밝혔다.

한편, 특수학교를 추가 건립하는 이유에 대하여, 과밀학급 및 원거리 통학해소

를 위해 지속적으로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을 신설하여 장애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라고 하였다. 또 특수학교의 원활한 설립을 위해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등 개정을 추진하고, 특수학교 시설기준을 상향하려고 하고 국립대학교 부설 특수학교 설립을 2022년까지 추진한다고 답하였다.

(2) 통합교육

(가) 개념 및 의의

‘통합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장애유형·장애정도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또래와 함께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는 것을 말한다.⁵²³⁾

비장애아동과 장애아동을 포함한 모든 아동에게 통합교육은 개인적인 성장·발달을 최대한 이루어내고 상호 교류하는 가운데 자기가 가진 인식과 지식의 폭을 넓히고 창의적 사고를 확산시키며, 타인의 이질성을 인정하고 존중하게 하는데 적절한 방법이다.⁵²⁴⁾ 특히 장애아동에 대한 통합교육의 교육적 효과로 특수학교·특수학급의 관리자와 교사는 특수교육 대상자의 대인관계 기술과 의사소통능력 발달을 꼽고 있다.⁵²⁵⁾

장애인의 교육을 받을 권리에 관하여 CRPD 제24조와 더불어 국내에서는 「헌법」 제31조, 「교육기본법」 제3조, 제4조, 제18조, 「유아교육법」 제15조, 「초·중등교육법」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59조, 「장애인복지법」 제20조,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13조, 제14조, 「특수교육법」(이하 “「특수교육법」”) 제21조, 제27조 등이 있다.

(나) 역사 및 현황

1971년 대구에서 1학급 30명으로 특수학급을 도입한 이후로, 한국의 통합교육은 특수학급을 중심으로 하여 발전하였다. 당시의 특수학급은 특수아동을 위한

523)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 제6호.

524) 김성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통합교육의 가능성과 한계성”, 통합교육연구 제2권 제2호 (2007), 2.

525) 박해룡외 12, “2014 특수교육실태조사”, 국립특수교육원 (2014), 198.

통합교육의 기회 확대라는 문제의식 보다는 일반학교의 교실에서 문제거리로 제기되는 소위 문제아동을 일반아동들로부터 분리하기 위한 조치로서 모색되고 운영되었다.⁵²⁶⁾ 그러나 1994년과 2007년 「특수교육법」의 개정을 거치면서 통합교육은 특수학급 등을 통하여 여건과 기반을 조성하고 내실을 다지는 방향으로 발전되고 있다.⁵²⁷⁾ 그러나 특수학급을 기반으로 한 교육정책은 명목상 통합교육일 뿐, 실제로는 특수학급과 일반학급 사이의 교류가 되지 않고 분리되어 특수학급 학생을 방치하는 분리학급으로 볼 수 있다.⁵²⁸⁾

현재(2017년)는 전체 특수교육대상자 89,353명중 특수학급 47,564명(53.2%), 일반학급 15,590명(17.4%), 합계63,154명(70.6%)이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고 있다. 이중 특수학급은 7,799개 학교에서 10,325개가 운영되고 있고, 10,658명의 특수교사가 배치되어 있다. 일반학급은 7,622개 학교, 14,650학급에서 통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⁵²⁹⁾

526) 정희섭, “장애의 다중 패러다임에 근거한 통합교육 관련 법률의 성격”, 특수교육저널 이론과실천 제18권 제1호 (2017), 146-147.

527) 류재연, “통합교육을 위한 특수학급의 법적 역할 보완 탐색”, 통합교육연구 제8권 제1호 (2013), 15-16. 특수학급 설치에 대한 최초의 법 규정은 1949년에 제정된 「교육법」 제145조에서 비롯된다. 이 법에서는 ‘공회당’ 등에도 특수학급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당시의 사회적 인식을 고려할 때 매우 진보적인 특수교육 법안이라고 할 수 있다. 1977년의 「특수교육진흥법」은 특수학급 설치를 고등학교까지 확장하였지만 특수학급이 통합교육을 목적으로 한다는 법적 규정을 명시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1994년의 「특수교육진흥법」에는 특수학급이 통합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으로 규정되었다. 1994년의 「특수교육진흥법」에 의한 통합교육의 목적은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사회적응 능력’을 발달시키는 것이었다. 그러나 2007년의 「특수교육법」에서 규정한 통합교육의 목적은 1) 대상학생이 차별을 받지 않고, 2) 또래와 함께, 3) 개인의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528) 2018. 10. 23. 제2차 FGI에서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이용석 정책홍보실장의 의견.

529) 국립특수교육원, “2017특수교육통계” (2017), 3-8.

[표-42] 특수학급 현황⁵³⁰⁾

과정별	학교 수	학급 수	학생 수	교원 수
계	7,799	10,325	47,564	10,658
유치원	714	731	2,763	742
초등학교	4,192	5,281	22,400	5,286
중학교	1,811	2,364	10,256	2,378
고등학교	1,065	1,916	11,928	2,192
전공과	17	33	217	60

[표-43] 일반학급(전일제 통합학급) 현황⁵³¹⁾

과정별	학교 수	학급 수	학생 수
계	7,622	14,650	15,590
유치원	1,343	1,486	1,726
초등학교	3,114	6,041	6,249
중학교	1,730	3,218	3,377
고등학교	1,435	3,905	4,238

(다) 문제점

전문성이나 행정적 지원 없이 단순히 특수교육대상자를 공간적·시간적으로 일반학교에 배치하는 것만으로는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고, 통합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점차 감소할 수밖에 없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최종견해에서도 학생들이 통합교육에서 특수학교로 복귀하려는 현상⁵³²⁾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530) 국립특수교육원, “2017특수교육통계”, 7.

531) 국립특수교육원, “2017 특수교육통계”, 7.

532) 비마이너, “통합교육학부모협의회 출범, ‘특수학교가 장애인교육의 전부 아냐’”, 비마이너, (2018. 6. 4. 15:23),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2259>

- “제대로 된 통합교육이 모든 교육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면, 특수학교를 지어달라고 부모들이 지역주민들에게 무릎을 꿇는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전했다.
- “집 앞에 학교가 있지만 통합교육 환경이 좋지 않아 우리 아이를 10년 동안 특수학교에 보내고 있다. 영등포에 살고 있는데도 매일 한강을 건너며 마포까지 학교를 보내고 있다”면서 “바로 앞의 학교에서 완전 통합이 이뤄진다면 뭐하러 직장도 못

현행 특수교육 정책이 사회 통합의 책임을 장애인 또는 특수교육의 수요자에게 부여하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사회가 다양성을 포용하는 것이 아닌 장애인이 사회에 통합되어야 한다는 기본 이념은 교육을 장애인 개인의 책임으로 넘기고 국가의 책무성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는 변명이 된다. 또, 입시위주의 경쟁적인 한국의 학교환경의 혁신 없이는 온전한 통합교육의 실현이 어렵다는 문제도 지적된다.⁵³³⁾ 예를 들어 잔존 청력이 있거나 인공와우 수술을 받은 청각장애 학생에게 수어를 배우거나 이중언어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를 배제하고 비장애학생처럼 듣고 말하도록 교육을 시키는 경우가 있다.⁵³⁴⁾

그 외에도 현행 통합교육정책의 문제로는 체계적인 지원 부족, 특수교사의 인원 부족, 교사의 능력과 열정에 지나치게 의존, 통합교육 가이드라인과 교육 자료의 부족 등이 꼽히고 있다.⁵³⁵⁾

(3) 통합교육 정책의 효과와 발전방안 연구⁵³⁶⁾

(가) 연구 개요 및 요약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최종견해 46(a)의 실천을 위해 교육부는 이화여자대학교 박은혜 외 3명을 연구자로 지정하여 ‘통합교육 정책의 효과와 발전방안 연구’라는 제목으로 효과성과 개선방안을 연구하였다. 본 연구는 문헌조사, 설문조사, 면담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통합교육정책의 효과와 만족도를 검토하고, 전문가 자문 회의를 통하여 개선방안을 찾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다니면서 기름 값을 쓰겠다. 걸어서 5분 거리 학교들에 취학 통지서가 나왔을 때 마음 놓고 학교를 보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533) 한경근, “제1발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10년, 나아갈 길을 묻다 토론회, 조승래 국회의원·전국장애인부모연대 (2017), 3-8.

534) 2018. 10. 22. 제1차 FGI에서 한국농아인협회 김수연 기획부장의 의견.

535) 정민호의 6, “제5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 기초연구”, 국립특수교육원 (2016), 84.

536) 박은혜의 3, “통합교육 정책의 효과와 발전방안 연구”[내부용역보고서], 교육부 (2015).

[표-44] 연구요약 : 통합교육 정책의 효과와 발전방안 연구⁵³⁷⁾

- 본 연구를 통해 이루어진 국내외 통합교육 정책 관련 문헌연구 및 통합교육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한 통합교육정책 관련 인식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와 포커스 그룹면담 및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한 본 연구결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문헌연구 결과, 현재 통합교육이 현장에서 실행되고 있는 실태를 법령에 근거하여 장애유형과 인권침해, 적합한 교육, 교원, 통합교육 운영 및 지원, 시설, 설비 및 교재교구 등으로 분류하여 살펴보고, 이를 통해, 연수 질적 수준에 대한 제고, 통합교육의 물리적 환경 및 교수자료에 대한 지원, 통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과 책임의 공유, 보조인력 제도 정비, 관련서비스 제공에 대한 요구 등의 제안을 도출함
- 설문조사 및 포커스그룹면담 결과 통합교육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현장의 만족도는 높은 편이고, 특히 통합교육에 대한 인식 개선이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합교육관련 정책 목적의 명료성과 타당성에 대해서는 높은, 목적이 공유되고 달성된 정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만족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향후 통합교육 정책의 개선방안의 주요 방향은 다음과 같음: 1) 학생, 부모, 교사 등 관련 집단의 지속적 인식 개선 및 전문성 강화, 2) 통합교육 실행의 질적 제고를 위한 정책적 지원 강화, 3) 통합교육 성과 관리를 위한 체제 마련 및 일반교육과의 협력 강화 방안 모색 등

교육부는 통합교육 정책의 효과와 발전방안 연구 이후에,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제5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 기초연구⁵³⁸⁾를 실시하였고, 이어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⁵³⁹⁾을 새롭게 수립하였다.

(나) 평가

장애 영역별로 통합교육 참여 정도가 상이한데 통합교육을 경험한 학부모만을 장애 영역별 구분 없이 대상으로 삼았다. 특히 위원회가 시청각 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의 통합교육 참여율이 저조한 것에 우려를 표시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시청각 장애인의 학부모나 통합교육의 경험이 없는 학부모들이 통합교육에 자녀를 참여시키지 않는 원인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 통합교육 참여 아동의 학부모들 중에서도 장애 유형별로는 응답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세분할 필요가 있다.

협약 제24조에 대한 일반논평 제4호에서는 분명 통합교육이 부모가 아닌 아동

537) 박은혜외 3, 앞의 글, 연구요약.

538) 정민호외 6, 앞의 글.

539) 국립특수교육원,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 (2017), 36-46.

의 권리임을 명시하였음에도 이 연구는 통합교육의 당사자 중에서 교사, 행정가, 학부모, 연구자 위주로 그 대상을 삼은 점도 아쉽다. 실제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장애아동과⁵⁴⁰비장애 아동이 통합교육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또 어떠한 통합교육을 경험하고 있는지, 통합교육 후 어떠한 성과를 얻었는지 등에 대한 부분이 부족하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충실하고 다각적으로 이루어진 연구이고 이러한 연구는 주기적으로 이루어져 정책으로 반영되는 것이 마땅하다. 이 연구 이후 교육부에 주기적으로 연구를 반복할 의사가 있는지 문의하였으나, 교육부는 이에 대한 답을 하지 않았고, 계획이 있는지도 불확실하다.

연구에서 발견된 통합교육의 효과성 저해 요소들을 제거하고, 이 연구가 제시한 발전방안을 실천할 정책들을 만들고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통합교육의 성과가 교사, 행정가, 학부모, 아동이 가진 통합교육에 대한 인식과 역량에 달려 있다는 연구결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식 개선 교육의 계획만 있고, 통합교육에 대한 인식개선 계획은 불충분하다. 또 이 연구에서는 현행 NEIS체계가 객관적 학업성취도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통합교육에 의한 개별적 성취도를 평가하여 입력하는 도구로는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한다.⁵⁴⁰ 그런데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에서는 이 부분은 반영되어 있지 않다.

무엇보다 이러한 연구를 권고한 위원회의 취지는 한국에서 통합교육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점검을 하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연구를 통해 통합교육의 효과를 제고하고, 분리교육에서 통합교육으로 이행하도록 교육정책의 방향을 재설정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연구 이후에도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에서는 여전히 분리교육을 주요 정책 중 하나로 유지하고 있다.⁵⁴¹

심지어 CRPD 제2·3차 병합 국가보고서(초안)에서는 특수학급을 지속적으로 설립하려는 이유에 대한 위원회의 질문의 취지에 반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과밀화와 원거리 통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특수학급을 설치하겠다고 답변하고 있다. 교육부는 특수학교 건립하려는 이유에 대해서 답한 것일 뿐, CRPD의 취지에 반하여 분리교육을 정책으로 유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분명한 이유를 밝히고 있지 않다.

540) 박은혜 외3, 앞의 글, 170-171, 204-205.

541) 국립특수교육원,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 29-31.

(4) 해외 사례

장애인권리위원회는 독일과 멕시코, 오스트리아, 호주, 스페인에는 특수교육모델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또 스웨덴에 대하여는 장애 아동들의 성취를 평가할 도구를 마련하지 못하여 통합교육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였다.⁵⁴²⁾

(5) 소결 및 제언

(가) 통합교육 정책의 효과와 발전방안 추가 연구

장애 영역별로 통합교육에서 어떠한 경험을 하는지, 또 통합교육에서 배제되는 이유는 무엇인지를 밝혀내는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시각장애인의 참여율이 매우 저조한데 그 이유를 밝히고, 이들을 통합교육으로 포용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 또한 교육을 받는 당사자인 장애·비장애 아동은 통합교육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포함해 다양한 당사자의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나) 사례연구의 실시

연구 자체는 설문조사뿐 아니라 의견청취도 이루어진 매우 충실한 연구였지만, 향후 연구가 축적이 된다면 통합학급 내의 문제 사례가 접수되고 개선되는 문제해결 프로세스, 교사가 처음으로 통합학급을 맡아 실제로 교육받고 준비하는 과정의 추적, 통합교육이 각 발달과정에서 장애·비장애 아동에게 어떠한 교육 효과를 발생시키는지에 대한 통시적 접근 등 통합교육의 효과에 대한 개별 사례연구도 실시해야 한다.

(다) 주기적으로 연구 실시 계획

무엇보다 교육부는 이러한 연구를 주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현재의 특수교육 실태조사도 주기적으로 이루어지긴 하지만 그 중 통합교육에 관한 부분은 매우 제한적이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통합교육에 대한 평가가 향상되어 가는지도 보아야 하고, 개별 아동이 실제로 어떻게 통합교육에 반응하고 성

542) 이해경외 4, 앞의 글, 190-201.

장해 가는지, 실제로 통합교육의 실시가 한국 교육현장에 어떠한 변화를 일으키는지 연구해야 한다. 교육부는 5년마다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므로, 3~4년차에 평가를 포함해 통합교육 효과성 연구를 주기적으로 수행하고, 그 결과를 그 이듬해 차기 5개년 계획의 정책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는 주기도 검토해 봄직하다.

(라) 정책으로의 실현

그리고 이러한 연구 결과와 자료가 축적이 되면 이것이 정책으로 바로 연결되는 체계를 설계해야 하고, 궁극적으로 이러한 정책들이 통합교육으로의 이행이라는 방향을 향해 이루어져야 한다. 한국에서는 장애아동의 통합교육 합계 비율이 71%에 이르지만, 실제로 통합교육의 질과 효과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는 이번 연구가 처음이다. 이번 연구를 바탕으로 장애아동이 물리적으로 교실에 앉아 있는 정도의 통합교육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성하고, 실효성 있는 통합교육을 설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마) 통합교육 효과성 연구를 넘어

통합교육은 마치 장애아동, 이주아동 등 학습능력에 차이가 있다고 단정되는 아동들을 위한 교육이 아니다. 통합교육은 모든 아동들이 다양한 세상을 인식하고, 타인과의 접촉을 통해 생각을 바꾸고, 타인을 이해하고, 어울려 함께 살아가는 것을 배우는 과정이다. 따라서 특수교육대상이 아닌 비장애 아동도 통합교육의 당사자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입시를 최우선 목적으로 하는 경쟁적인 한국의 교육현장에서는 장애아동은 자리를 채우는 이상의 의미가 없고, 비장애 아동들은 옆에 누가 앉아있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한다. 이런 교육 환경에서 과연 효과적인 통합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 남는다.

사회통합을 촉진하기 위해서, 그 시작점은 통합교육이 되어야 한다. 특수교육 확대에 집중하고 있는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통합학교에 특수교사들이 더 많이 배치되고, 편의시설이 갖추어 양질의 통합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계획을 세우는 것이 장기적인 목표가 되어야 한다.

라. 정당한 편의제공

(1) 정부의 이행 현황

CRPD 제2·3차 병합 국가보고서(초안)에서 교육부는 ‘장애유형별 거점특수교육지원센터’를 설치운영 확대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장애학생 특수교육 활동지원 보조인력을 배치하여 교수·학습활동 및 생활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고, 2022년까지 8,351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편의시설을 확대하고, BF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할 예정이다. 통합교육 가이드 및 교수·학습자료 등을 개발하여 현장에 보급해 오고 있다. 장애학생이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장애학생 평가조정 매뉴얼’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대안평가방안을 연구한다고 답하였다.

(2) 정당한 편의 제공 관련 규정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는 제13조 제3항에서 교육책임자는 장애학생 및 그 보호자의 편의제공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는 것을 차별로 규정하면서, 제14조 제1항에서 정당한 편의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동용 보장구, 의사소통 도구나 수단, 공간의 확보, 교통편의 등 주로 물리적인 편의를 규정하고 있지만,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 교육보조인력의 배치를 제시하고 있어 인적 편의제공도 함께 규정하고 있다. 의무의 주체인 교육책임자는 교육기관의 장 또는 운영책임자를 뜻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4조는 정당한 편의제공의 내용과 함께, 편의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장애학생지원부서 또는 담당자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과 편의증진법에 따라 교육시설 내 편의시설 설치의무도 부과된다. 「특수교육법」에서는 보조인력 제공, 교육에 필요한 교구 등 설비, 통학지원 대책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면서 기숙사 설치 운영도 규정하고 있다.

(3) 정당한 편의제공의 현황

(가) 대학교 편의시설 현황

전북 소재 4년제 대학교 6개를 선정하고, 각 대학의 편의시설을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 및 기타시설로 나누고 각 시설이 편의증진법의 세부기준

에 적합한지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대학교 편의시설은 전반적으로 편의증진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으며, 편의증진법 기준에 맞더라도 이용의 불편함과 관리 부족 등으로 인해 장애학생들에게 적합한 환경을 제공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⁵⁴³⁾

(나) 국가 통계

2016년 9월 기준 특수학급 설치 유치원은 563개, 장애인 편의시설 평균 설치율은 96.3%. 특수학급 설치 초,중,고는 7,039개교이고 장애인편의시설 평균 설치율은 95.2%. 특수학급 미설치 초중고는 4,675개교이고 장애인 편의시설 평균 설치율은 88%. 특수학교는 165개교, 장애인 편의시설 평균 설치율은 99.2%이었다.⁵⁴⁴⁾

(다) 문제점

국가통계는 단순 설치율로, 실효성 확인이 어렵다. 편의시설 설치율은 높아지고 있지만, 부모들이 급식보조, 체험학습 동행 등 보조인력으로 학교에 지원을 제공하는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또 현행 「의료법」은 간호사가 석션이나 튜브삽관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므로, 학교에 의사가 배치되지 않으면 학부모가 학교에 와서 대신 석션이나 튜브삽관을 하는 경우도 있다.⁵⁴⁵⁾

(4) 관련 사례

(가) 편의시설 미제공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건

대학교에 입학한 지체장애인이 대학을 상대로 편의시설을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대학은 원고에게 3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창원지방법원 2008. 4. 23. 선고 2007가단27413 판결).

543) 장명화 외3, “장애학생 접근성 확보를 위한 편의시설 현황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17권 제4호 (2016).

544) 교육부, “2017년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2017).

545) 2018. 10. 22. 제1차 FGI에서 장애부모연대 이리나 실장의 의견.

위 판결에서 법원은, “교육기관인 대학은 입학할 허가한 장애인인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을 제공할 법적인 배려의무를 부담하고, 장애인인 학생은 대학에 이러한 시설의 설치를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 대학이 장애인인 학생에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정한 편의시설을 제공하지 않는 등 배려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나) 학교의 배려의무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장애인 특례입학자로 입학한 원고가 적어도 원고가 강의를 받거나 이용하는 건물에 휠체어 리프트나 승강기, 장애인용 화장실, 건물 입구 경사로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과 장애인용 책상 설치, 강의실 저층 배정, 도우미 제도 도입 등을 건의하였으나 거부당한 것 등을 이유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 있었다. 제1심은 2002. 7. 26. 피고는 원고에게 2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하였고, 위 판결은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2. 7. 26. 선고 2001가단76197 판결).

법원은 장애인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계약관계가 성립하였으므로 이에 기초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배려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았다. 위 배려의무의 인정범위와 관련하여, 피고가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공사를 준비 중인 점을 고려하여 장애인 편의시설 미설치를 이유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고, 장애인용 책상 설치, 강의실 저층 배치 등 비교적 쉽게 이행할 수 있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은 배려의무 위반으로 보았다. 위 사건에서 문제된 학교의 건물 대부분은 1998. 4. 11. 이전에 완공되어 편의증진법이 적용되지 않았지만, 법원이 인정한 배려의무 속에 장애인의 시설 접근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관점이 전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다) 직업전문학교에서 청각장애를 이유로 수강신청을 거부한 것이 차별이라고 본 사례(2014진정0870400)

직업전문학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및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에

근거한 실업자와 재직자의 직업능력향상을 위한 직업훈련기관으로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조 6호의 교육기관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3조 제1항과 제14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교육책임자는 시·청각 장애인의 교육에 필요한 수화통역, 문자통역(속기) 등의 의사소통 수단을 제공하여야 하고, 장애인의 입학을 거부할 수 없다.

그러나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청각장애로 개별지도가 어렵다는 사유로 진정인의 수강신청을 거절하였는바, 진정인은 개별지도를 요청한 사실이 없으며, 피진정인이 진정인에 대한 교육과정 이수 능력이나 의사소통 능력에 대한 평가 등을 통하여 진정인에게 필요한 정당한 편의가 무엇인지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고, 진정인이 청각장애로 수업 진도를 따라 가기 어렵다거나 개별 지도를 해야 한다 등의 이유로 진정인의 수강신청 거절한 것은 정당한 사유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수강신청을 거절한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3조 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의 교육·훈련을 위한 입학을 거부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라) 장애인 이동권 미확보로 인한 학습권 차별을 인정하고, 교육시설의 재배치 또는 이동편의시설 마련을 권고한 사례(2010진정0175100, 2010진정0180600, 2010진정0181100)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학생들은 대학교 일부 건물의 2층 이상으로 이동할 수 없어 학습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진정을 제기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행위로 해당 건물에서의 물리적 접근이 불가능하여 결과적으로 교육을 받을 기회가 제한될 뿐 아니라, 교육활동에 필요한 모든 공간에서 이동하거나 그에 접근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설비 및 이동수단을 제공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8조를 위반한 차별 행위에 해당된다고 보아, 대학교 총장에게 휠체어 사용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교육시설의 재배치 또는 이동편의시설 마련을 권고하였다.

(마) 중도·중복 장애학생에게 필요한 의료조치가 교육상 필요한 정당한 편의제공 이라고 본 사례 (2016진정0644000, 2016진정0649200, 2016진정0638200, 2016진정0616200, 2016진정0568600, 2016진정0616300, 2016진정0638400, 2016진정0567800, 2016진정0649600 병합)

교육활동에 필요한 편의는 위 법령에서 예시하고 있는 사항 외에도 장애의 유형이나 정도에 따라 다양할 수 있다. 장애학생 중 섭식·배설·호흡·복약 등의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도움은 장애학생의 건강과 생명유지에 관련된 의료조치에 해당할 수 있는 한편, 장애학생의 학습활동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이다.

미국의 경우 어떠한 조치가 원활한 학습활동을 위해 필요하고 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아닌 일반인도 훈련을 받아 해당 조치를 할 수 있다면 학교에서 이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며, 일본은 섭식·도뇨관 삽입·가래 제거 등에 있어서는 훈련된 담임교사가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참고인1, 2는 의사의 진단서에 의해 간호사 면허를 가진 보건교사가 학교에서 가래흡인과 같은 의료조치를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해자와 같은 중도 중복장애 학생에 대한 가래흡인 조치는 장애인에게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교육책임자가 제공해야 하는 정당한 편의에 해당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진정인과 같은 교육책임자는 해당 편의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바) 교육과정평가원, ‘선례 없다’며 수능 장애 학생 편의 제공 거부 (2017. 9. 21.)

지체장애 1급인 A씨는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할 예정이다. A씨는 엄지와 검지를 제외한 나머지 손가락을 사용할 수 없어 노트북에 연결된 펜 마우스를 이용해 필기를 해왔다. 펜 마우스는 작은 손가락 움직임에도 민감하게 반응하여 A씨 같이 손가락 움직임이 불편한 사람도 필기할 수 있다.

A씨는 수능 시험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노트북과 펜 마우스 반입을 허용하고 파일 형태의 시험지를 제공해줄 것을 평가원 등 교육 관계기관에 요청했다. 그러나 평가원은 ‘선례가 없다’라는 이유로 편의 제공 불가 입장을 밝혔다.⁵⁴⁶⁾

546) 비마이너, “교육과정평가원, ‘선례 없다’며 수능 장애 학생 편의 제공 거부”, 비마이너 (2017. 9. 21. 19:06),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1389>.

(5) 소결 및 제언

(가)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

정당한 교육편의 제공을 확대하기 위하여, 특수교육 보조공학기기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하는데, 구체적으로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장애유형별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확충 등 보조공학기기 대여 시스템을 구축하고 현장 지원을 강화하고, 특수교육 보조공학기기 운영 매뉴얼(교육부·경상남도교육청, 2017)의 현장 활용을 극대화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수교육 보조인력 지원 확대 및 운영체계 개선과 관련하여, ① 학교별 특수교육 보조인력 수급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유급 특수교육 보조인력 수를 2017년 8,101명에서 22년 8,351명으로 확대), 중도·중복장애 우선 지원을 위하여 특수교육 보조인력 배치를 확대하며, ② 수어통역 등 관련 전문성을 가진 특수교육 보조인력을 적정 배치하고, ③ 특수교육 보조인력의 학교 순환근무제 등 운영 효율화, 다양화 방안 강구를 포함하여, 교육(지원)청 단위 특수교육 보조인력 채용, 관리 등 총괄 운영체계 강화를 제시하고 있다.

(나) 장애학생 접근성 확보 위한 편의시설 개선 제언⁵⁴⁷⁾

목적지까지 가는 연속된 길 모든 영역에서 편의증진법 계획 원리가 일관성 있게 적용되는 것이 중요하다. 장애인 편의시설의 수적인 확보만 아니라 장애인의 행동 특성을 고려한 설치기준에 맞는 시설물 설치 필요하고, 지체장애인 외에 시각 및 청각장애를 위한 시설도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운영 면에서 대학 내 편의시설의 설치율과 적합도 제고와 함께 실질적인 활용도 높일 수 있도록 관리 및 운영 면에서 세심한 배려와 지원이 요구되고, 정부는 편의시설에 대한 기준 토대로 각 학교 평가하여 편의시설 확충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547) 장명화 외3, 앞의 글, 294.

마. 교직원 대상 교육

(1) 정부의 이행 현황

CRPD 제2·3차 병합 국가보고서(초안)에서 교육부는 통합교육 담당 교사의 특수교육 연수 이수율을 신장시켜 2022년에는 90%를 달성시키고, 소속 직원 및 학생들에 대한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일반학교 관리자(교장) 대상 특수교육 집합연수를 신설하였다고 답했다.

(2) 교직원 대상 교육의 의의와 근거규정

교원이 변화하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속적인 교육으로 학교 교육 교원의 자질과 교직의 전문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특수교육 교원 연수는 현직에서 근무하고 있는 특수교육 교원에게 교직에 관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교육을 의미하는 것으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의 습득으로 해당 직무에 대한 적응능력을 기르고, 특수교육 교원 자기의 발전과 성장을 도모하고 그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모든 교육 활동이 포함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학교의 교원에 대하여 특수교육 관련 교육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특수교육법」 제8조).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통합교육 이해를 높이기 위해 일반학교 교원에 연수를 실시하는 경우 특수교육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통합교육을 지원하는 일반학교 교원에 대하여는 특수교육과 관련된 직무연수 과정을 개설·운영하여야 한다(「특수교육법 시행령」 제5조).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 받은 일반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의 조정, 보조인력의 지원, 학습보조기기의 지원, 교원연수 등을 포함한 통합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특수교육법」 제21조).

일반교사 양성과정에서 이수해야 하는 교직과정의 세부 이수기준 중 교직소양 영역에 ‘특수교육학 개론’ 과목을 포함하여 2009년부터 시행한다(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7-161호, 2008.1.8.).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이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교육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따로 입학절차, 교육과정 등을 마련하는 등 통합교육을 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초·중등교육법」 제59조).

(3) 교직원 대상 교육 현황

일반교원의 특수교육 전문성 및 책무성 강화를 위하여, 42,081명의 일반학교 통합학급 담임교원이 특수교육 관련 연수 과정에 참여하였다. 2017년 일반교육 교원의 전체 연수과정 7,783개 중 장애학생 인권보호 강좌를 포함한 연수과정은 533개였다.⁵⁴⁸⁾

[표-45] 통합학급 담당 교사의 특수교육 관련 연수 과정 이수 현황⁵⁴⁹⁾

시·도	통합학급 담당 교사의 특수교육 관련 연수 이수 현황				
	15시간 미만	15~30시간 미만	30~60시간 미만	60시간 이상	계
서울	2,048	175	371	1,588	4,182
부산	112	594	202	1,772	2,680
대구	-	-	20	2,592	2,612
인천	50	52	336	2,309	2,747
광주	10	32	356	1,124	1,522
대전	10	11	58	1,406	1,485
울산	173	141	188	1,035	1,537
세종	44	2	13	158	217
경기	1,986	167	635	6,192	8,980
강원	147	21	508	991	1,667
충북	130	19	110	1,448	1,707
충남	1,053	195	367	685	2,300
전북	577	34	540	498	1,649
전남	1,051	63	605	228	1,947
경북	633	48	345	1,341	2,367

548) 교육부, “2017년 특수교육연차보고서”, 86.

549) 2016학년도 통합학급 담임교사 기준(교육부, “2017년 특수교육연차보고서”, 53).

시·도	통합학급 담당 교사의 특수교육 관련 연수 이수 현황				
	15시간 미만	15~30시간 미만	30~60시간 미만	60시간 이상	계
경남	24	34	99	3,597	3,754
제주	362	36	74	256	728
계	8,410	1,624	4,827	27,220	42,081

특수교육 담당교원의 자질 함양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현직연수는 국립특수교육원, 시·도교육청(산하기관인 시·도 교육연수원 포함) 및 대학 부설 교육연수원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국립특수교육원은 출석(집합)연수 혹은 원격교육연수를 통해 특수교사 자격연수(유·초등·부전공과목), 직무연수, 해외연수 및 기타 연수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시·도교육청과 대학 부설 교육연수원 등은 특수교사 자격연수(초·중등)와 직무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⁵⁵⁰⁾ 장애인 인권이 강화됨으로써 2017년 특수교육교원 대상의 장애학생 인권보호 강좌를 포함한 연수과정은 220개로 확인되었다.⁵⁵¹⁾

특수교육 보조인력의 경우, 서울시에는 특수교육 실무사 992명, 장애학생지원 사회복무요원 613명이 배치되어 있는데, 이들에 대한 원격직무연수는 연간 30시간 및 집합연수 4회 실시하고 있다.⁵⁵²⁾

550) 교육부, “2017년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62.

551) 교육부, “2017년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86.

552) 교육부, “2017년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136. 한편, 본 연구용역팀이 서울시 교육청에 보조인력 연수현황을 질의하여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서울특별시 각 교육지원청별로 보조인력 연수를 2회 내지 6회 실시하였고, 2018년에는 3회 내지 9회 실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46]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보조인력 연수현황

(횟수/시간)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중부	강동 송파	강서 양천	강남 서초	동작 관악	성동 광진	성북 강북
2017	4/8	4/8	4/8	4/8	4/8	5/11	4/9	6/9	2/4	4/8	4/8
2018	4/8	5/10	4/8	4/8	4/8	5/11	4/9	9/18	3/6	4/8	4/8

[표-47] 국립특수교육원 원격연수

영역	과정명	이수인원	기간	대상
특수교육보조인력	특수교육 보조인력 역량강화 기초과정	490	3주	특수교육 보조인력 및 관련 인력
	특수교육 보조인력 역량강화 심화과정	486	3주	
	특수교육 보조인력 역량강화 고급과정	495	3주	

대구시에는 총 725명(특수교육실무원 534명, 사회복지무원 191명)의 보조인력이 있고, 이들에 대하여 30시간 원격연수(677명 참가) 및 집합연수가 실시되었다(725명 참가).⁵⁵³⁾

울산시에서는 특수교육보조인력 신규 채용자는 30시간 이상 직무연수를 받아야 하고, 연 2회 이상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국립특수교육원 위탁원격연수는 무료 수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고, 특수학교 보조인력 연수를 위한 연수비(특수학교 4개교 3,200천원)를 지원하고 있다.⁵⁵⁴⁾

세종시에는 교육공무직 특수교육실무사 62명이 있는데, 신규 특수교육실무사에 대한 연수 실시(2017. 2. 22.), 특수교육실무사 장애학생 인권보호연수 실시(2017. 3. 29.), 경력 특수교육실무사에 대한 국립특수교육원 보조인력 역량강화 심화, 고급과정 연수 실시(26명)등을 통해 특수교육보조인력 연수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였다.⁵⁵⁵⁾

경기도에서는 신규 채용 인력의 경우 반드시 30시간 이상 직무연수 의무 실시, 특수교육 보조인력의 재교육 및 추가 연수가 필요할 경우 국립특수교육원 부설 원격 교육연수원의 '특수교육 보조인력 역량강화 과정' 원격연수 적극 활용, 특수교육 보조인력 업무 평가(근무성적평정 등) 후 결과 환류를 통해 직무 능력 향상 도모(연 2회 업무평가 실시), 사회복지무원의 특수교육 관련 직무연수 실시 의무화 등을 통해 특수교육 보조인력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⁵⁵⁶⁾

553) 교육부, “2017년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158.

554) 교육부, “2017년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204.

555) 교육부, “2017년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215.

556) 교육부, “2017년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244.

(4) 이행의 평가 및 문제점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교실 및 인력의 확충 필요한데, 교실도 충분하지 않고, 특수교원 뿐 아니라 일반교원, 보조인력 등의 전문성 제고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

특수교육 교원연수의 경우 교원연수에 대한 교원들의 인식 및 평가의 문제, 연수 운영의 어려움, 연수과정 및 내용의 체계성 미흡, 연수 유인체제의 미흡과 행정적 지원 부족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⁵⁵⁷⁾

(5) 소결 및 제언

(가)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

특수교육기관 확충 및 설립 다양화 : 특수학교를 2017년 174교에서 2022년까지 196교로 확대하고, 특수학급도 2022년까지 1,250학급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특수학교의 경우 12학급 이하의 작은 규모, 단일과정 특수학교, 직업교육 중점모델 등 특화된 분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학교를 설립하고, 대학(교) 부설 특수학교, 어린이 재활병원 내 특수학교 등 다양한 형태로 설립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유아단계 특수교육 활성화를 위해 전일제 통합 형태의 ‘통합유치원’ 및 유치원 특수학급을 확대하고, 지역여건과 장애특성을 고려한 일반학교 특수학급 설치를 확대하는데, 특히 중도·중복장애, 시·청각장애 등 전문적 지원이 필요한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특수학급 설치, 예술, 체육, 진로와 직업 등 특정 분야에서 특수교육대상자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특성화된 학급을 설치·운영하겠다는 계획이다.

특수학교 용지를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는 제도 개선 추진 : 특수학교 우선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신설 특수학교에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체육관, 도서관, 공연실 등 복합공간을 포함하여 상생하는 학교 설립을 확대하며, 특수학급의 경우 별도의 학급당 신·증설 및 전환 비용의 교부 기준을 마련하여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특수교육교원 증원 및 전문성 제고 : 특수교육교원의 연차적 증원을 위하여 특

557) 김영한 외4, “특수교육 교원연수의 현황과 문제점”, 한국특수교육문제연구소 학술대회발표자료집 2015권 제1호 (2015), 225.

수교사 법정정원 확보율을 제고하고, 일정규모 이상 유·초·중·고 통합 과정 운영 특수학교에 복수 교감 배치를 권장하며, 교과별 수업 전문가 양성 및 장애특성별 지도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를 확대하고, 특수교육 보조인력 지원 확대 및 운영체계를 개선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특수교육교원의 전문성 제고에 집중되어 있는 점이 아쉽고, 특수교육교원 외에 보조인력 등의 훈련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필요하다는 지적이 가능하다.

(나) 특수교육 교원연수의 개선방안⁵⁵⁸⁾

연수내용, 과정, 시기의 의견 수렴, 연수 우수교원을 확보 및 교수방법 개선, 연수시기 및 시간의 탄력적 운영, 다양한 연수모형의 개발 및 연수평가 방법의 개선, 연수비용 및 행정적 지원 등을 고려해볼 수 있다.

바. 장애 영유아 대상 교육 및 보육

(1) 정부의 이행현황

기존 쟁점 목록에 포함된 것은 아니지만, 최근 교육부는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에서 유아단계 특수교육 활성화를 위해 통합유치원을 2017년 1개에서 2022년 17개로, 유치원 특수학급을 2017년 731개에서 2022년 1,131개로 확대 설치하겠다고 밝히고 있다.⁵⁵⁹⁾

(2) 장애 영유아 대상 교육 및 보육 현황

(가) 장애유아의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

「특수교육법」⁵⁶⁰⁾에 따라 장애유아는 만 3세부터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

558) 김영한 외4, 앞의 글, 225.

559) 국립특수교육원,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 31.

560) 제3조(의무교육 등) ①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 「교육기본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은 의무교육으로 하고, 제24조에 따른 전공과와 만 3세미만의 장애영아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② 만 3세부터 만 17세까지의 특수교육대상자는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

다. 비장애학생의 경우 초등학교부터 의무교육과정인 데 비해, 장애학생의 경우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 즉 장애유아도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런데 「특수교육법」 제19조 제2항에서는 부득이한 경우 취학의무 면제나 유예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단서로 만 3세부터 만 5세까지의 특수교육대상자가 일정한 조건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유치원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본다. 이러한 의무면제 규정은 장애아동이 학교나 유치원에 입학하지 않고 집에서 지내는 근거가 된다. 나아가 후단의 간주규정은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문제가 많다.

(나) 장애유아가 교육에 있어 차별받지 않을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에는 교육에 있어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포함된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3조는 교육 영역에서 장애인 차별금지를 명시하고 있고, 제14조에서는 교육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할 정당한 편의를 제시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는 어린이집을 교육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어, 입학에 거부하거나 재학 중에 차별하면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적용될 수 있다.

(다) 장애유아의 교육을 받을 권리 침해

장애유아의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는 장애유아가 특수교육기관인 유치원에 입학하여야 실현될 수 있다. 그런데 장애유아는 여러 사정으로 유치원을 다닐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유치원이 일부 지역에 몰려 있거나, 특수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곳이 많다. 특수학급 설치 유치원이 부족하여 학급당 학생 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한정된 정원으로 인해 연령대별로 입학을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⁵⁶¹⁾

를 가진다. 다만, 출석일수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진급 또는 졸업에 하지 못하거나, 제19조제3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하거나 면제받은 자가 다시 취학할 때의 그 학년이 취학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받지 아니하고 계속 취학하였을 때의 학년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 연수(年數)를 더한 연령까지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 및 무상교육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561) 김삼섭외 1, “장애영유아 교육권 보장 실태 및 증진 방안”, 한국특수교육학회 2016 춘계학술대회(2016), 14.

특수교사 부족... 장애유아들 “유치원도 못가요”⁵⁶²⁾

지난해 만 5세 장애유아에 대한 무상교육이 시작돼 내년에는 만 3세로 확대되지만 정작 유치원에는 장애유아를 가르칠 특수교사가 턱없이 부족하다. 더욱이 특수반을 둔 유치원은 이미 포화상태다. 입학하는 것조차 힘든 것이다.

지난해 만 5세 장애유아에 대한 무상교육이 시작돼 내년에는 만 3세로 확대되지만 정작 유치원에는 장애유아를 가르칠 특수교사가 턱없이 부족하다. 더욱이 특수반을 둔 유치원은 이미 포화상태다. 입학하는 것조차 힘든 것이다.

2015년 유치원, 특수학교, 장애아전문어린이집 및 일반어린이집 부모, 교사, 관리자 16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집 근처에 장애 영유아를 위한 무상, 의무교육 기관이 확보되어 있다.”는 질문에 대해 전체 조사 대상자의 22.5%가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⁵⁶³⁾

만 3세부터 만 5세까지의 특수교육대상자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된 어린이집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교육 요건을 갖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하는 유치원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본다(특수교육법 제19조 제2항 단서). 그런데 실제로 만 3세부터 만 5세까지의 장애유아 대부분이 간주 규정의 적용을 받고 있어 실제로는 특수교육기관에서 의무교육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다.

2017년 말 기준 전국의 0~5세 영유아의 수는 2,568,516명이고, 장애발생률 2%를 기준으로 장애 영유아 수를 예측하면, 약 51,370명으로 추정된다. 2017년 말 기관에 배치된 장애 영유아는 장애 영유아 추정치의 33%에 해당하는 17,126명이다. 그 중에서도 31.75%만이 교육기관에 배치되어 있고, 나머지 68.25%는 보육기관에 있다.

562) 서울신문, “특수교사 부족... 장애유아들 ‘유치원도 못가요’”, 서울신문, (2011. 11. 24.),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11024008016#csidxacce5b02ddaafd9b823914a8e07bcec>.

563) 김상섭외 3, “장애 영유아 교육권 보장 실태 및 증진 방안”, 국가인권위원회 (2015), 153.

[표-48] 장애영유아 기관 배치 현황

구분	교육기관(2017. 4. 1.) ⁵⁶⁴⁾			보육기관(2017. 12. 31.) ⁵⁶⁵⁾			계
	특수학교 영아반, 유치부	일반유치원 특수학급	일반유치원 일반학급	장애아 전문	장애아 통합	일반 어린이집	
인원(명)	948	2,763	1,726	6,161	4,066	1,462	17,126
비율(%)	5.54	16.13	10.08	35.97	23.74	8.54	100

장애유아만을 대상으로 한 유아교육기관 배치 현황을 살펴 본 연구에 따르면, 어떠한 유아교육기관도 이용하지 않는 장애 유아의 비율은 26.2%이고, 장애유아의 약 23% 정도만이 유치원 교육기관을 이용하며, 약 50%는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다고 보고된 바 있다.⁵⁶⁶⁾ 결국 장애유아의 절반 이상에 대하여 「특수교육법」 제19조 제2항 단서가 적용되어 특수교육기관이 아닌 곳에서 장애유아가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원칙과 예외가 전도된 상황이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이 달라, 그 피해는 장애유아에게 돌아간다는 문제가 있다. 장애유아가 다닐 수 있는 어린이집이 되기 위해서는 장애아 3명당 보육교사가 1명 배치되어야 하고, 보육교사 3명 중 1명은 특수학교 유치원 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교사여야 한다. 그런데 국가가 유치원에 대하여는 특수교사 인건비를 전액 지원하는 데 비해 어린이집의 경우 80%만 지원한다. 교재 교구비 지원이나 통학지원도 어린이집이 유치원보다 불리하며, 특수교사 대우(연봉)도 어린이집이 열악한 상황이다.⁵⁶⁷⁾ 여기에 어린이집은 ‘보육기관’이라는 인식이 강하므로 특수교사들은 어린이집 취업을 꺼리고 있다. 게다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상 장애 영유아 어린이집은 법정 특수교사를 채용하지 못해 지정이 취소될 위험에 놓이게 되었다(「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32조 제4항 제6호).⁵⁶⁸⁾ 이렇게

564) 국립특수교육원, “2017 특수교육통계”, 3.

565)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2017 보육통계” (2018), 131-133.

566) 유영준외 1, “장애아 표준보육비 산출 방안”, 장애아보육의 질 개선 방안 토론회 자료집 (2012), 김상섭외 3, 앞의 글, 23 에서 재인용.

567) 권미경, “장애영유아 보육 교육 현안 및 요구”, 육아정책연구소, (2016), 3-4.

568) 제32조(장애영유아 어린이집)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어린이집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열악하고 불안정한 상황은 결국 장애유아의 교육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장애영유아 의무교육 기획 2편> [단독] 특수교사 3년이면 관두는데...정부는 '남 탓'만⁵⁶⁹⁾
 어린이집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와, 교원 수급정책을 담당하는 교육부가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는 겁니다.
 보건복지부는 교사를 배치하는 건 교육부의 책임이니, 교육부가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며 손을 놓고 있습니다.
 인터뷰: 보건복지부 관계자
 “전체적인 유아특수교사 수급 현황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관리를 하고 계세요.”
 반면 교육부는 보건복지부가 담당하는 시설에 교사를 배치할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3) 소결 및 제언

정부는 단계적으로 통합유치원과 유치원 특수학급을 확대 설치하는 것으로 의무교육을 실현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이 계획대로라면 현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장애유아가 차별받고 있는 상황은 해소될 수 없다. 따라서 교육부의 빠른 특수교육법 개정이 요구된다.

개정 방안으로는 의무교육 간주 규정을 삭제하고 장애유아가 다니는 어린이집을 유치원과 동일하게 특수교육기관으로 인정하는 것을 제시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특수교육법」의 특수교육기관과 각급 학교에 어린이집을 추가하고, 어린이집에 특수학급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정의규정을 바꾸는 방법으로 개정이 가능할 것이다. 이 경우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유치원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는 제19조 제2항 단서는 더 이상 필요 없으므로 삭제하면 된다.

「특수교육법」 개정으로 어린이집이 특수교육기관으로 포함될 경우 특수교사 확보 및 배치가 문제될 수 있다. 이 경우 「특수교육법」 제25조의 순회교육 규정을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순회교육은 장애가 심하여 교육기관에서 교

6. 제22조제3항에 따른 특수교사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배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569) EBS, “<장애영유아 의무교육 기획 2편> [단독] 특수교사 3년이면 관두는데...정부는 '남 탓'만” EBS NEWS, (2018. 7. 26.).
<http://news.ebs.co.kr/ebnews/menu1/newsAllView/10924240/H?eduNewsYn=N&newsFldDetlCd=focus&brdcDt=&dtBtn=W&srchStartDt=&srchEndDt=&srchType=newsTitle&srchWords=&srchWords2=&cPage=1>.

육반기 어려운 장애학생을 위한 교육만은 아니다.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는 장애학생을 지원하기 위해서도 시행이 가능하다. 어린이집에서 특수교사를 장기간 채용하는 것에 따른 부담을 줄일 수 있고, 특수교사와 어린이집 운영자와 사이에 생길 수 있는 갈등도 줄일 수 있다.

유아특수교사를 충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생각해보아야 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장애유아를 포함하여 의무교육 대상인 장애유아의 수를 고려하여 현실적인 유아특수교사 정원을 산출하고 유아특수교사를 양성하고 배치할 필요가 있다.

사. 여성장애인 대상 평생교육

(1) 정부의 이행현황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제6조 장애여성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장애여성 및 소녀들의 사회참여와 경제활동 촉진 등을 위해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피력하였다. 이를 위한 이행계획으로 ① ‘기초학습, 보건·육아, 직업상담 등 영역에서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 ② 장애여성 및 장애소녀의 평생교육 확대를 위해 ‘장애인평생교육 시설’에 대한 지원 확대[구체적으로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교육감에게 등록, 「특수교육법」의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내용이 「평생교육법」이관(16. 5. 29. 개정, 17. 5. 30. 시행)] 등을 제시하였다.

(2) 여성장애인에 대한 교육 실태

우리나라 여성장애인의 교육수준은 남성장애인과 전체 국민에 비해 월등히 낮은 특성을 보이고 있다.⁵⁷⁰⁾

570) 오혜경, “여성장애인의 자분실태에 관한 논의-경제·직업활동을 중심으로-”, 사회복지리뷰 제15집(2010), 59.

[표-49] 장애인의 성별 교육정도⁵⁷¹⁾

(단위: %)

교육정도	남자	여자	합계
무학	4.0	19.1	10.4
초등학교	20.5	36.5	27.3
중학교	18.3	14.5	16.7
고등학교	37.6	20.9	30.4
대학이상	19.7	9.0	15.1
합계	100.0	100.0	100.0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05년도 전국장애인실태조사 전국민 교육정도와 장애인 성별 교육정도에서 여성장애인은 초등학교 34.7%, 중학교 13.7%, 고등학교 17.9%로 나타났고, 무학, 미취학 합쳐 28.6%가 나왔다. 일반인, 남성장애인과 비교해 상위학교를 진급할수록 편차가 2, 3배 차이가 나, 여성장애인이 교육기회에서 차별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⁵⁷²⁾

[표-50] 전체국민 교육정도

교육정도	재가장애인(2005년) ⁵⁷³⁾			전국민(2005년) ⁵⁷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미취학	8.4	28.6	16.5	2.9	7.7	5.3
초등학교	30.2	34.7	27.1	15.9	20.1	18.0
중학교	16.7	13.7	18.6	11.9	13.1	12.5
고등학교	26.0	17.9	31.4	32.2	32.3	32.2
대학이상	14.5	5.0	10.6	37.1	26.8	31.9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57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2017), 629.

572) (사)한국여성장애인연합 홈페이지 “장애인 성별 교육정도”
http://www.kdawu.org/human/human03_1.php

573)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2006). (사)한국여성장애인연합, 앞의 글에서 재인용.

574) 국가통계포털, “2005 인구주택총조사”.

한편, 학교를 다니지 않았거나 중도에 그만둔 이유를 보면 남성, 여성장애인 공통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워 학교에 다니지 못했다는 점이 가장 높았으나 2번째 순위에서 집에서 다니지 못하게 해서 학교를 다니지 못했거나, 중도에 그만둔다는 여성장애인 비율이 남성장애인보다 거의 10배 이상 차이 나게 높게 나타나 여성장애인이 성장과정에서 차별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⁵⁷⁵⁾

[표-51] 재가 여성장애인 교육정도

구분	남자	여자	전체
경제적으로 어려워	79.6	62.7	71.4
장애 때문에	9.0	8.5	8.7
주위의 시선 및 편견 때문에	0.9	1.0	0.9
학교내 편의시설이 부족해서	0.1	0.1	0.1
집에서 다니지 못하게 해서	2.2	20.1	10.9
근처에 학교가 없어서	1.6	2.0	1.8
기타	4.1	3.4	3.7
다니기 싫어서	2.6	2.2	2.4
계	100.0	100.0	100.0
(N)	(1,783)	(1,665)	(3,448)
전국추정수	675,208	636,052	1,311,260

실제로 교육기회 충족도에 관련한 설문조사에서도 여성장애인은 남성장애인, 여성비장애인, 남성비장애인에 비해 원하는 만큼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했다고 인식하고 있다. 여성장애인은 84.5%가 본인이 원하는 단계까지 교육받지 못했다고 응답한 반면, 남성장애인은 75.6%, 여성비장애인은 70.2%, 남성비장애인은 62.9%가 본인이 원하는 만큼 교육을 받지 못했다고 응답하였다.⁵⁷⁶⁾

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menuId=M_01_01&vwcd=MT_ZTITLE&parmTabId=M_01_01#SelectStatsBoxDi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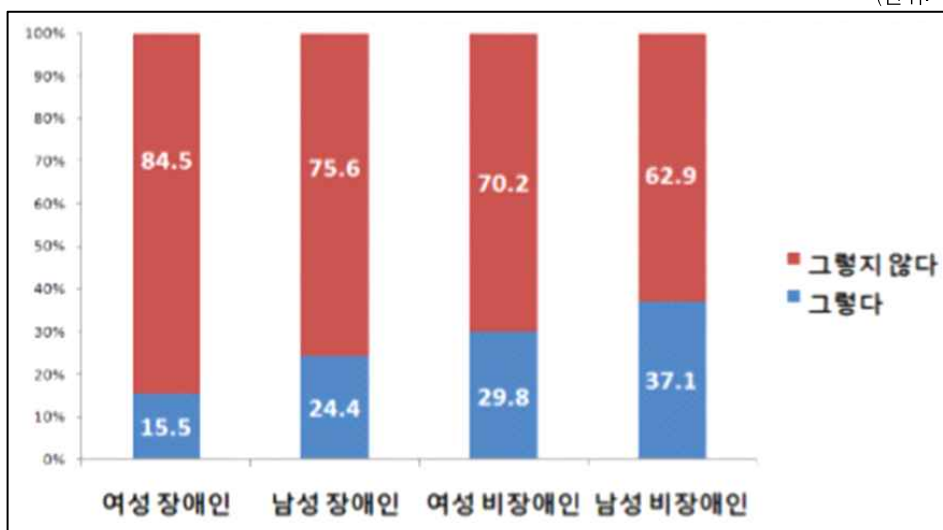
575) (사)한국여성장애인연합, 앞의 글.

576) 전기택외 2, “여성장애인 지표개발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0), 8.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4년 실태조사에서는 성별에 따른 교육정도 자료는 제공하고 있지 않으나, 장애인의 교육정도는 ‘초등학교’ 28.8%, ‘고등학교’ 28.1%, ‘중학교’ 16.2%, ‘대학 이상’ 15.3%, ‘무학’이 11.6%인 것으로 나타나, 2011년도 장애인실태조사의 교육정도인 ‘초등학교’ 32.9%, ‘고등학교’ 25.0%, ‘중학교’ 18.3%, ‘대학 이상’ 12.0%, ‘무학’ 11.8%의 순서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이를 보았을 때 현재 교육실태가 2005년 전국장애인실태조사 때와 비교해 크게 개선되었으리라고는 보기 어렵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볼 때 ‘여성’, ‘장애인’이라는 이중의 약자의 지위에 있는 여성장애인이 충분한 교육을 받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은 자명하다.

(단위: %)



[그림-11] 남녀 장애인과 남녀 비장애인의 교육기회 충족도 비교

(3) 이행평가

(가) 국가보고서 답변에 대하여

발달장애인의 경우 「발달장애인법」을 통해 별도의 평생교육기관을 지정한다고 하였으나, “장애여성 및 소녀들” 등 여성장애인에 대한 특화된 교육지원 사업을 실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정부답변에 따르더라도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은 2017년 기준

으로 47개에 불과한 바, 충분한 정도로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 확보되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그리고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예산 액수가 늘어난 사실은 인정되나, 여전히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2018년의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의 예산은 총 1,620백만원이며, 이는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의 모든 항목을 포함한 금액이다.⁵⁷⁷⁾

(나)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와 공동으로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게 취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쉽 및 취업 후 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One-Stop으로 제공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을 제고하고자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이하 “새일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201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서울 29개소를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147개소가 운영되고 있다(여성가족부 홈페이지, 2016).

교육훈련생 선발시 저소득층, 여성가장, 결혼이민여성, 장애여성, 북한이탈여성 등을 우선적으로 선발할 수 있게 되어 있어 장애여성도 새일센터 직업교육에 참여하고 있다.⁵⁷⁸⁾ 그러나 주요 교육대상이 비장애여성이기 때문에 교육시간 및 강사, 교육방법 등 전체적인 교육운영이 비장애여성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있어 장애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적인 직업훈련에는 한계점이 있다.⁵⁷⁹⁾

이택면 등의 장애인 직업능력 개발사업의 성별효과분석에서도 여성가족부의 새일센터는 장애여성의 이용률이 지극히 낮고, 직업훈련 참여도 및 직업훈련 후 취업에 있어서도 고용노동부의 직업훈련기관(한국장애인고용공단)보다 현저히 낮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된 바 있다.⁵⁸⁰⁾

여성가족부는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확대지원사업’, 즉 여성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 기반 강화를 통한 사회통합 지원과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여성발전기본법 제22조를 근거로 한다.⁵⁸¹⁾ 그러나 이용자 실 인원수가 2013년 708명, 2014년 695명, 2015년 525명으

577) 보건복지부, “2018년 여성장애인지원 사업 안내” (2018). 37.

578) 조자경외 1, “장애여성고용증진을 위한 교육콘텐츠 연구-서울시장여성인력개발센터를 중심으로” 서울시여성가족재단 (2016), 16.

579) 조자경외 1, 앞의 글, 16.

580) 조자경외 1, 앞의 글, 16.

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용자 연인원은 2013년 3,088명, 2014년 2,869명, 2015년 2,276명으로 감소하는 추세인바,⁵⁸²⁾ 제공되는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높지 않아서인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표-52] 여성가족부 수행 수행기관 이용자 수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9월 말		
	실인원	연인원	실인원	연인원	실인원	연인원	
종합상담(개별/집단)	225.5	1,315.3	255.5	1,096.4	190.6	841.9	
역량강화교육	정서안정	51.6	209.9	48.0	213.8	43.9	230.8
	사회성 향상	118.4	357.2	106.4	318.0	62.0	299.0
	기초 경제적 역량 강화	25.6	285.8	38.1	374.8	27.9	294.1
	기타	304.8	467.3	271.0	457.0	117.8	417.3
사례관리	36.6	149.2	58.6	111.4	33.4	73.4	
지역사회연계서비스	148.7	361.4	124.5	293.9	82.3	212.9	
자조모임 및 멘토링	31.3	378.4	35.5	564.3	26.3	378.6	
기타	393.8	523.2	391.0	500.7	371.4	540.2	
계	708.1	3,088.0	695.6	2,869.3	525.1	2,276.5	
이용자 배율 (연인원/실인원)	4.4		4.1		4.3		

(다)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직업훈련은 장애인 복지관과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의 직업재활사업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2015년 기준 전국 장애인 복지관 수는 213개이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541개이다.⁵⁸³⁾ 그러나 다른 부처에서 실시하는 직업훈련 사업과 마찬가지로, 장애여성에게 특화된 프로그램이 없으며, 시설 이용에 있어서도 지적장애인 비율이 높고 교육훈련 시스템이 지적장애인의

581) 양숙미, “여성장애인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사업 개발 연구”, 보건복지부, (2015), 70.

582) 양숙미, 앞의 글, 77.

583) 양숙미, 앞의 글, 20.

직업재활에 보다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한계가 있다.⁵⁸⁴⁾

보건복지부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사업’은 기초학습 교육, 인문교육, 사회 및 체험교육, 보건 및 가족교육을 기본 사업으로 제시하고 있다.⁵⁸⁵⁾ 그러나 이용자 실 인원수가 2013년 305명, 2014년 366명, 2015년 215명으로 증가하다가 감소한 것으로, 이용자 연인원은 2014년 1,532명, 2014년 1,573명, 2015년 1,395명으로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추세인바,⁵⁸⁶⁾ 제공되는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높지 않아서인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표-53] 보건복지부 사업 수행기관 이용자 수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9월말	
	실인원	연인원	실인원	연인원	실인원	연인원
기초학습 교육 (영어, 정보화 등)	21.3	463.8	19.3	333.8	20.9	449.5
인문교육 (역사, 예술)	49.2	370.9	55.8	285.6	22.3	239.7
사회 및 체험교육 (직업탐색 및 체험 등)	121.5	392.1	115.0	450.6	69.5	391.8
보건 및 가족교육 (성교육, 육아, 건강관리)	59.5	259.1	80.9	276.2	47.6	210.6
기타	65.0	189.0	101.0	220.0	88.3	319.8
계	304.6	1,532.2	366.3	1,572.5	215.5	1,394.5
이용자 배율	5.0		4.3		6.5	

(라) 고용노동부(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1990. 1. 13.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으로 설립되었다. 일산, 부산, 대전, 전남, 대구 지역 총 5개의 직업능력개발원을 운영하고 있다.

2015년도 12월 기준 전체 훈련인원 3,784명 중 장애여성은 1,143명이며, 수료인

584) 양숙미, 앞의 글, 22.

585) 양숙미, 앞의 글, 64.

586) 양숙미, 앞의 글, 64.

원 772명, 취업인원은 625명으로 81.0%의 취업률을 보이고 있다. 장애여성 훈련 수료자는 전체 훈련 수료인원 2,423 중 772명으로 31.9%이며, 취업인원은 전체 취업인원 2,002명 중 625명으로 31.2%를 차지하고 있다.⁵⁸⁷⁾

[표-54]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정도 및 성별에 따른 훈련 현황⁵⁸⁸⁾
(2015. 12월 기준)

구분		전체훈련		양성, 맞춤, 단기		취업	
		인원수	비율(%)	인원수	비율(%)	인원수	취업률(%)
계	훈련인원	3,784	100.0	2,469	100.0	2,002	82.6
	수료인원	2,423	100.0	1,665	100.0		
중증	훈련인원	2,251	59.5	1,682	68.1	1,300	86.4
	수료인원	1,504	62.1	1,128	67.8		
여성	훈련인원	1,143	30.2	654	26.5	625	81.0
	수료인원	772	31.9	479	28.8		

(마) 여성장애인의 교육지원 사업과 사회참여 지원사업 통합 관련

우리 정부는 2015년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과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지원 사업’을 통합하였다.⁵⁸⁹⁾ 이에 따라 수행기관의 명칭이 교육지원과 어울림센터에서 교육지원사업 수행기관으로 바뀌었다. 이에 한국여성장애인연합 등 장애인 단체들이 통합에 정면으로 반대한 사실이 있다. 두 사업은 전혀 다른 사업임에도 그나마 적은 예산으로 진행되고 있던 사업마저 통폐합한 것이며, CRPD 위원회로부터 최종견해를 받고도 이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기는커녕 오히려 예산을 축소하며 통합을 추진했다는 것이다.⁵⁹⁰⁾ 정부는 ‘사업의 정체성 부재’, ‘사업의 차별

587) 양숙미, 앞의 글, 26.

588)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https://www.kead.or.kr/>.

589)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의 경우 전국 33개의 수행기관에서 학령기를 놓친 저소득, 저학력 여성장애인의 기초학습교육과 보건, 인문, 사회교육 위주의 교육권 확보를 목적으로 함. 반면 여성가족부에서 시행하는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지원 사업’의 경우 전국의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 22개소에서 여성장애인의 생애주기별 고충상담과 자립을 위한 역량 강화, 취업지도 위주의 사회참여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

590) 함께걸음,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 사회참여지원사업 통합 반대”, 함께걸음 (2015. 7. 15. 09:25:17), <http://www.cowalk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405>.

성 부족', '사업의 중복'을 근거로 통합의 당위성을 주장하였다.⁵⁹¹⁾ 반대편에서는 '사업의 방향성 혼란', '인력 및 예산지원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⁵⁹²⁾

이에 관하여, 통합 후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는 것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 대상의 범위와 수준, 인력 편성, 예산 확보, 실적에 대한 추가요청자료가 필요하다. 정부는 특히 통합 전후를 비교하여 통합의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보건복지부 용역보고서는 통합사업의 기본원칙으로 아래 표를 제시하고 있는바,⁵⁹³⁾ 이것이 얼마나 이행되고 있는지 근거자료를 요청할 필요가 있다.

[표-55] 통합사업의 기본원칙

구분	통합의 기본방향과 원칙
이용 여성장애인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 제공 여성장애인의 욕구중심 서비스 기존 서비스를 포괄한 충분한 서비스 제공
서비스 제공인력	지속적 서비스 제공과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경제적, 환경적 여건 제공
서비스 제공기관	통합 관련 혼란 없이 지속적 서비스 제공 및 운영체계 수립 사업수행의 성과 제시
관리기관(시, 군, 구)	시·도, 시·군·구 지원 효율적, 효과적 업무집행이 이루어지기 위한 운영 기준 및 사업운영 지침 제공
보건복지부	국고지원 및 준비된 통합이 될 수 있도록 상황에 따른 단계별 통합방안 제시

(4) 소결 및 제언

현재 정부답변은 전체적인 답변이 되지 못하는 답변이거나, 혹은 아직 미흡한 수준의 조치에 불과하다. 그리고 현재 정부 각 부처에서 추진되고 있는 장애인 직업훈련사업 중 장애여성에게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고 있는 직업훈련은 거의 없다.⁵⁹⁴⁾

정부는 보건복지부 및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이용자 수가 왜

591) 양숙미, 앞의 글, 107.

592) 양숙미, 앞의 글, 121.

593) 양숙미, 앞의 글, 150.

594) 조자경외 1, 앞의 글, 16.

감소하는지에 대한 답도 제시해야 한다. 특히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과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지원 사업’ 통합이 우려가 제기되었던 대로 오히려 예산 감소, 지원 축소 등의 결과만 낳은 것이 아닌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아. 장애아동 대상 학교폭력

(1) 정부의 이행 현황

정부는 CRPD 제2·3차 병합 국가보고서(초안)에서 인식제고를 위한 장애이해 교육을 연 2회 의무화하고, 대한민국 어울림 축전, 장애인식개선캠페인 등 장애이해와 인식개선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다고 답하였다.

(2) 정부의 이행 현황에 대한 평가

교육부는 위원회의 권고 중 장애학생에 대한 학교폭력에 무관용 정책을 마련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 또는 불수용의 의사조차 밝히지 않고 있다. 그리고 학교폭력 대응에 대한 통계자료를 별도의 질의 사항으로 교육부에 요청했으나 이에 대한 답변이 없었다.

현장의 장애인 단체는 교사로부터 폭행을 당한 발달장애학생의 학부모가 전학을 요청했으나, 교육청에서 당사자의 의사를 묻는 절차 없이 배치를 거부한 사례를 들어 구제수단이 있어도 당사자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점을 비판했다.⁵⁹⁵⁾ 장애 아동에 대한 학교폭력사태가 교장과 교감에 의해 조직적으로 은폐되었는데도 교육청의 부실감사로 인해 1년 2개월 동안 재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도 있었다.⁵⁹⁶⁾

특히 최근에는 특수학교 사회복지무원⁵⁹⁷⁾이나 담임교사⁵⁹⁸⁾에 의한 폭행 사건도 연이어 불거지고 있다. 장애 아동에 대한 연이은 폭력사태는 장애에 대한 이

595) 2018. 10. 26. 제5차 FGI에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김성연 사무국장의 의견.

596) 노컷뉴스, “‘철원 장애아동 폭행’ 은폐 교장 등 ‘해임’ 중징계”, 다음뉴스 (2018. 5. 30. 13:57) <https://news.v.daum.net/v/20180530135704037>.

597) 중앙일보, “장애 학생 도우랬더니 무차별 폭행항 사회복지무원들”, 다음뉴스, (2018. 10. 6. 10:44) <https://news.v.daum.net/v/20181006104418062>.

598) MBC, “강서구 특수학교 교사들 장애아동 폭행.. 경찰수사”, 다음뉴스, (2018. 10. 10. 18:37) <https://news.v.daum.net/v/20181010183712362>.

해와 인식 부족이 원인이라는 정부답변의 전제는 일부분 옳다. 그러나 교육현장이 과연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바탕으로 인권을 존중하고 있는 곳인지 의문이다. 예를 들어 특수학급이나 특수학교에서 장애아동을 의자에 묶어 놓는 이른바 ‘구속의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교육현장에서 장애아동의 인권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은 수준이라는 것을 대변한다.⁵⁹⁹⁾ 안 그래도 아동의 인권이 존중 받지 못하는 한국의 학교에서 장애아동은 더욱 열악한 지위에 있는 것이다.

(3) 소결 및 제언

장애아동 대상 폭력에 대해 무관용 정책은 비교육적인 것이 아니다. 학교폭력 사태 자체가 어울려 함께 살아가는 교육의 실패이므로, 학교폭력 이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이 피해학생이나 가해학생 모두에게 비교육적이다. 무관용 정책은 가해학생에게 사법적 조치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적 회복을 요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위원회의 권고에 대한 교육부의 적극적인 회답이 필요하다.

또한 실질적인 인식개선이 이루어지려면 장애인에 대한 연2회의 인식개선교육 뿐 아니라, 현장에서 인권보장으로 실천되어야 한다. 교육현장에서 장애아동을 포함한 아동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모든 아동을 위한 「아동인권기본법」을 마련하여, 인권을 보장하는 학교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21. 제25조 건강

가. CRPD 제25조

제25조 건강

당사국은 장애인이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없이 달성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건강을 향유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다. 당사국은 보건 관련 재할을 포함하여 성별을 고려한 보건서비스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을 보장하는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특히, 당사국은 다음의 사항을 이행한다.

가. 성적, 생식적 보건 및 인구에 기초한 공공 보건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다른 사람에게 제공되는 것과 동일한 범위, 수준 및 기준의 무상 또는 감당할 수 있는 비용의 건강관리 및 프로그램을 장애인에게 제공한다.

599) 2018. 10. 23. 제2차 FGI에서 장애인학생지원네트워크 김형수 사무국장의 의견.

나. 적절한 조기 발견과 개입을 포함하여, 장애인이 특히 장애에 기인하여 필요로 하는 보건서비스와 아동 및 노인에게 발생하는 장애를 포함하여 추가적인 장애를 최소화하고 예방하기 위하여 고안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 농촌지역을 포함하여, 장애인이 속한 지역사회와 가능한 한 인접한 곳에서 이러한 건강서비스를 제공한다.

라. 특히 공공 및 민간 보건 관리의 윤리적 기준에 대한 훈련과 홍보를 통하여, 장애인의 인권, 존엄성, 자율성 및 필요에 대한 인식 증진에 따른 자유롭고 사전고지에 근거한 동의에 기초할 것을 포함하여 보건전문가로 하여금 장애인에게 다른 사람과 동등한 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요구한다.

마. 건강보험 및 국내법에 따라 허용되는 생명보험의 제공 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며, 이러한 보험은 공평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제공된다.

바. 장애를 이유로 한 보건 관리, 보건 서비스 또는 식량과 음료의 차별적 거부를 금지한다.

나. 최종견해와 쟁점목록

(1) 최종견해

제25조 건강

47. 위원회는 최근 개정된 「상법」 제732조가 장애인이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험가입을 인정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위원회는 “의사능력”에 기반한 보험가입의 거부가 장애인에 대한 차별임을 인지한다.

48. 위원회는 당사국이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험가입을 인정하는 「상법」 제732조를 삭제할 것과, 생명보험에 관한 협약 제25조 마항에 대한 유보를 철회할 것을 권고한다.

(2) 쟁점목록

제25조 건강

27-1. ‘의사 결정 능력이 있음(possesses mental capacity)’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만 장애인의 생명보험 계약(가입)을 인정한 「상법」 제732조의 개정 및 「협약」 제25조 (e)항에 대한 당사국의 유보 입장 철회 여부와 관련한 개선사항을 설명하십시오.

27-2. 의료기관의 접근성 제고를 위한 조치를 설명하십시오.

27-3. 정부에서 현재 장애인 본인부담의 보건 의료 서비스 비용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그 비용을 부담할 계획이 있는지 설명하십시오.

(3) 실태조사의 대상 쟁점

제25조에서는 상법 제732조 삭제와 협약 제25조 마항에 대한 유보철회의 쟁점을 다룬다. 위 쟁점은 연결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병합하여 검토하기로 한다.

다. 상법 제732조 삭제와 CRPD 제25조 마항 유보 철회

(1) 정부의 이행 현황

법무부는 정부는 2014. 3. 11. 정신장애인의 생명보험 가입을 전면 금지한 상법 제732조를 개정하여 의사능력이 있는 정신장애인은 생명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 권고사항을 이행하는 조치를 취하였으므로, 상법 제732조의 전면 삭제 요청은 위 조항의 취지를 오해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는 상법 제732조가 개정되어 의사능력이 있는 장애인의 생명보험 가입이 가능하게 변경되었고, 상법을 담당하는 법무부, 보험업무를 담당하는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상법 제732조의 유보철회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2) 정부의 이행에 대한 평가

(가) 상법 제732조 삭제에 대한 평가

법무부는 장애인 권리협약의 해석상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제한하는 것이 가능하고, 의사능력이 없는 정신 장애인의 생명 보험 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정신 장애인을 차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들을 보호하려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협약은 생명보험 제공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고, 장애인과 체결된 생명보험 계약에 따라 보험 혜택이 제공될 경우 비장애인과 공평하고 합리적인 방식에 이루어져야 할 것을 선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협약의 해석상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보험가입을 거절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협약의 취지를 오해한 것이다.

의사능력이 없는 장애인의 보험 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생명보험 가입 차별 금지를 명시한 협약 제25조에 취지에 반하는 것이다. 특히 장애인 단체는 상법 제732조는 장애인의 보험가입을 차별하는 조항이기 때문에 삭제되어야 하고,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장애인의 보험가입을 인정하는

것이어서 의사능력이라는 막연한 판단기준을 통해 장애를 이유로 한 보험가입 거부를 방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장애인권리위원회는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험가입을 인정하는 것에 우려를 표하고, 의사능력에 기반한 보험가입 거부는 차별임을 인지하여야 할 것을 권고하였다. 법무부는 장애인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은 “협약 제25조 (e)항에 대한 유보 철회”이고, 상법개정으로 위 권고사항을 이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장애인권리위원회는 의사능력에 기반한 보험가입 거부가 차별이므로 상법 제732조가 삭제되어야 한다고 명백히 밝히고 있다.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상법 제732조의 전면 삭제 요청은 의사능력에 기반한 보험 가입 거부가 차별이라는 점을 밝히면서, 개정 상법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한 것이다. 따라서 개정상법이 실질적으로 장애인의 보험가입 여부를 차별하는 수단이 되고 있지 않은지 검토하여 상법 제732조의 삭제 또는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나) 협약 제25조 마항 유보 철회에 대한 평가

한국이 협약 제25조 (e)항을 유보한 것은 상법 제732조와 충돌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협약 제25조 (e)항은 생명보험 제공시 장애인에 대한 가입차별을 금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상법 제732조는 의사능력이 없는 장애인의 보험계약을 무효로 하는 내용이다. 결국, 의사능력이 없는 장애인에 대한 보험계약을 무효로 하는 것이 장애인에 대한 가입차별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이다. 보건복지부는 개정 상법과 협약의 충돌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으나, 의사능력 없는 장애인에 대한 생명보험 계약 효력의 인정여부에 대한 검토를 선행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상법 제732조는 의사능력이 부족한 장애인 보호를 위해 만들어졌지만, 역설적이게도 장애인을 차별하는 대표적인 조항이라고 비판받아 왔다. 개정상법이 결과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보험가입 차별을 발생케 하고 있는지 여부와 개정상법의 협약과 충돌 여부를 중심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3) 해외 현황⁶⁰⁰⁾

(가) 서설

타인의 생명보험은 도박보험 또는 피험자 살해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고, 이를 방지하고 위해 이익주의(영국, 미국 등), 친족주의(구 일본), 동일주의(독일, 프랑스, 일본) 등의 입법례가 있다. 입법례에 따라 의사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장애인의 보험 가입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이익주의에서는 피보험이익이 있다면 타인의 보험계약이 가능하므로 피보험자의 행위능력이 문제되지 않는다. 친족주의에서도 일정한 친족관계만 있으면 장애인도 피보험자가 될 수 있다. 다만, 동일주의에서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므로 동의를 할 수 있는 법적 능력이 요구된다.

(나) 이익주의

이익주의는 피보험자의 생존에 이익을 가지는 자만이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례이다. 피보험이익은 계약의 성립요건이므로 계약을 체결할 때 피보험이익이 없다면 해당 계약은 무효이다. 영국 생명보험법에서는 피보험이익을 요구하지만 언제 피보험이익 인정여부는 판례법을 통해 구체화되었다. 판례에 따르면, 부모는 미성년자에 대하여, 배우자는 서로에 대하여 피보험이익이 있다.

미국은 일부 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이익주의를 취하고 있다. 피보험이익을 가지는 경우를 법률로 한정하거나 예시하는 주도 있고, 판례를 통해 구체화하는 경우도 있다.⁶⁰¹⁾ 혈연 혹은 법에 따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랑과 애정 관계에 의해 피보험자의 생존에 중대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 피보험자의 생존에 대한 합법적이고 상당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는 피보험이익이 있다.

이익주의에서 피보험이익이 인정되면 보험계약이 가능하므로, 피보험자의 의사능력이나 장애가 문제되지 않는다. 지적장애나 발달장애를 가진 미성년자를

600) 임성택, “개정 상법 제732조와 장애인 차별”, 법학평론 제5권, 서울대학교 법학평론 편집위원회 (2015).

601) 김성문, “피보험이익에 대한 소고”, 법학논고 제32집,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0), 228-229.

위해 부모가 생명보험에 가입하거나, 정신장애를 가진 배우자를 위해 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 동의주의

타인의 생명보험에서 피보험자의 동의를 요하는 것을 동의주의라 한다. 프랑스, 독일, 일본, 우리나라 등 주로 대륙법계에서 채택하고 있다. 동의주의에서도 의사능력이 부족한 장애인 또는 미성년자의 사망보험에 대해 다양하게 규율되고 있다.

독일의 보험계약법에 의하면 타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사망보험이 허용된다. 다만, 약정된 보험금이 통상의 장례비를 넘는 경우에는 타인의 서면 동의가 있어야 계약이 유효하다.⁶⁰²⁾ 피보험자가 행위무능력자이거나 제한적 행위능력자인 경우 또는 그 타인에게 후견인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도 보험계약이 가능하다. 성년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은 보험계약자인 행위무능력자 등의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프랑스 보험법에서는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이 체결될 경우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없으면 계약을 무효로 하고 있다. 다만 단체보험에서는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12세 미만의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자 및 정신병원에 수용 중인 사람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은 체결할 수 없고, 이에 위반하여 체결된 계약은 무효이다. 프랑스는 2007년 3월 보험법 개정으로 행위

602) 독일 보험계약법(Versicherungsvertragsgesetz; VVG) 제150조

- ① 생명보험은 보험계약자 또는 타인에 관하여 체결될 수 있다.
- ② 타인의 사망에 관한 생명보험이 체결되고, 약정된 보험금이 통상의 장례비를 넘는 경우에, 그 계약이 유효하려면, 그 타인의 서면 동의가 필요하다. 이는 단체보험 중 기업의 노령보험 분야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 타인이 행위무능력자(7세 미만의 자 또는 지속적인 심신상실 상태로 후견을 받는 자를 말함) 또는 제한적 행위능력자(7세 이상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또는 그 타인에게 후견인이 정해져 있는 경우로서 그 타인의 신상에 관한 사항의 대리권을 가진 사람이 보험계약자로 되는 경우에 그 보험계약자는 위 동의에 관한 한 타인을 대리하지 못한다.
- ③ 미성년의 자의 신상에 관해 부모의 일방이 보험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자(子)의 동의는, 그 자(子)가 만 7세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도 보험자가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 지급의무를 지고 이 때 약정 보험금이 통상적인 장례비를 넘는 경우에 한해서만 필요하다.

능력이 없거나 제한된 사람의 생명보험 계약을 허용하는 규정을 도입하였다. 피후견인의 경우 후견인을 정하는 판사의 허가 또는 피후견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가족의 결정으로 생명보험에 가입하거나 해약, 보험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2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은 해당 미성년자 부모나 후견인 또는 보좌진의 허락, 미성년자 본인의 동의를 요하도록 개정되었다.

일본 보험법은 우리나라와 같이 연령이나 의사능력을 기준으로 보험계약의 효력을 부정하는 조항은 없다. 다만 동의를 유효하기 위해서는 의사능력과 행위능력에 관한 일반원칙이 적용된다.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이 한 동의는 효력이 없고, 행위능력이 없는 사람은 동의를 할 수 없거나 취소될 수 있다. 지적장애, 발달장애 등을 가진 미성년 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은 대리에 의한 동의가 가능하다.

우리나라는 대체로 법정대리인에 의한 동의 또는 계약 체결을 부정하지만, 일본, 독일, 프랑스 등 다른 나라는 대체로 대리권 행사를 인정하고 있다.

(4) 제언

(가) 장애인 보험 차별 개선 방안

보험회사들은 그 동안 심신상실 또는 심신박약자로 포섭될 여지가 있는 정신적 장애인에 대한 보험가입을 거절해 왔다. 이러한 보험회사의 관행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상법 제732조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금지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도 하였다.⁶⁰³⁾ 상법이 개정되어 의사능력이 있는 장애인이 스스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되는 것은 법률상 허용되었지만, 의사능력이라는 판단하기 어려운 요건 때문에 보험회사의 보험인수 거절관행은 개선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은 여전히 타인의 생명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수 없고, 단체 보험의 피보험자도 될 수 없다. 민사상으로는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도 법정대리인을 통한 법률행위 또는 신분행위가 가능하다. 그러나 상법 제732조는 대리

603)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보험차별개선 가이드라인” 중 “인수단계의 차별” 제4항에는 ‘상법 제732조의 적용문제’라는 제목으로 아래의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 보험차별개선 가이드라인” (2013), 21-22.].

권 행사를 모두 부정하고 있다. 의사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장애인의 경우 타인의 보험계약으로 보험에 가입할 필요성이 높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 보험영역에서의 차별을 금지하는 명문의 규정이 도입되었고, 「보험업법」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장애인의 보험가입을 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10호).

의사능력은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정신능력에 관한 것이므로 정신적 발달의 정도, 행위 당시의 정신상태, 대상이 되는 행위의 난이도에 따라 달라질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상법 제732조가 의사능력을 기준으로 하므로 결국 의사능력이라는 판단은 보험회사에게 맡겨지게 될 수 밖에 없다. 보험회사 입장에서 보험인수는 보수적으로 될 수 밖에 없고, 정신적 장애인들은 개별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보험 가입에 배제될 위험이 높게 된다. 따라서 상법 제732조는 장애를 사유로 보험가입 등 서비스에 관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는 것이다. 이러한 제한과 배제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러한 취지로 장애인권리위원회는 상법 제732조의 삭제(또는 개정)와 생명보험에 관한 협약 제25조 (e)항에 대한 유보를 철회할 것을 권고한 것이다. 따라서 ‘의사능력’에 기반한 일률적인 보험가입 거부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에 해당하므로 상법 제732조의 개정 및 해당 협약의 유보 철회가 필요한 상황이다.

(나) 상법 제732조 삭제 또는 개정

개정 상법 제732조에 대한 평가는 장애인 및 장애인 당사자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차별 사례 검토,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장애인 보험가입률 및 가입 거부 사례 연구, 의사능력 없는 장애인에 대한 보험계약 효력 유무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⁶⁰⁴⁾ 상법 제732조가 삭제되면 장애인이나 미성년자를 피보험자로 할 경우 다른 성인과 마찬가지로 동의가 필요하고, 행위능력이 없는 사람은 동의를 할 수 없거나, 동의를 하더라도

604) 이에 대해서 2018. 10. 25. 제4차 FGI에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임형국 변호사는 “장애인 보험은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하면 된다. 어떠한 장애인도 차별 없이 보험가입을 할 수 있게 해 주고, 만약 보험 사기 등 사건이 발생하면 형법 등 현행 법령 위반으로 처벌하면 되기 때문이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도 취소될 수 있다. 다만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제한되지 않는다. 다만, 법정대리인과 피보험자의 이해가 충돌된다면 특별대리인 등이 개입하여야 할 것이다.

상법 제731조 및 상법 제732조를 모두 개정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다.⁶⁰⁵⁾

제731조 (타인의 생명의 보험) ①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약정된 보험금이 통상의 장례비를 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 체결시에 그 타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를 피보험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제732조 (피성년후견인과 미성년자에 대한 계약) ① 제731조제1항의 타인이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이 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로 지정되거나 상속 기타의 사유로 보험금을 수취할 권리를 가질 때에는 민법 제921조제1항, 제940조의6제3항에 따라 특별대리인을 선임하거나 후견감독인이 피보험자의 동의를 대리할 수 있다.
 ② 미성년자의 신상에 관해 부모의 일방 또는 쌍방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자(子)의 동의는 그 자(子)가 만 7세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도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의무를 지고, 약정보험금이 통상의 장례비를 넘는 경우에 한해서만 필요하다.

(다) 협약 제25조 (e)항 유보 철회

협약 제25조 (e)항은 개정상법의 내용과 관계없이 장애인에 대한 보험가입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이므로, 협약 가입 유보를 철회하여야 할 것이다.⁶⁰⁶⁾

605) 임성택, 앞의 글.

606) 이에 대해서 2018. 10. 25. 제4차 FGI에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염형국 변호사는 “상법이 개정되어 장애인 보험가입 차별문제가 해소되었다면, 장애인권리협약 제25조 제마항의 유보를 철회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22. 제26조 가활 및 재활

가. CRPD 제26조

제26조 가활 및 재활

1. 당사국은 장애인이 최대한의 독립성, 완전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및 직업적 능력 그리고 삶의 전 분야에서 완전한 통합과 참여를 달성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동료집단의 지원을 포함하여 효과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이를 위하여, 당사국은 특히 보건, 고용, 교육 및 사회 서비스 분야에서 다음의 방법으로 종합적인 가활, 재활 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구성, 강화 및 확대한다.
 - 가. 재활 서비스와 프로그램은 가능한 초기 단계에서 개시하고, 개인의 욕구와 강점에 대한 다양한 분야별 평가에 기초한다.
 - 나. 재활 서비스와 프로그램은 지역사회 및 사회 모든 분야로의 참여와 통합을 지원하고, 자발적이며, 농촌지역을 포함한 장애인 자신의 지역사회에서 가능한 근접한 곳에서 이용이 가능하도록 제공된다.
2. 당사국은 가활과 재활 서비스를 담당하는 전문가와 실무담당자를 위한 초기 및 지속적인 교육의 개발을 증진한다.
3. 당사국은 가활과 재활에 관련되고 장애인을 위하여 고안된 보조기구와 기술의 이용가능성, 숙지 및 그 사용을 촉진한다.

제26조에 대해서는 장애인권리위원회 최종견해 및 쟁점목록이 존재하지 않고, 따라서 정부 역시 이행현황이나 이행계획을 밝히지 않았다. 따라서 제26조에 대해서는 현재 한국에서 가장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재활에서 가활로의 패러다임 변화 및 발달장애 국가책임제의 도입과 관련된 쟁점을 중심으로 실태를 파악하였다.

나. 재활에서 가활로의 패러다임 전환

(1) 장애계의 패러다임 전환 요구

대표적인 발달장애인 부모 단체인 전국장애인부모연대(부모연대)는 꾸준히 재활에서 가활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해왔다. 우리나라에서는 생소한 개념인 가활(habilitation)은 아래 스웨덴의 사례를 통해 이해할 수 있다. 즉, 사람을 제도 와 환경의 틀에 맞추는 재활과는 다르게 가활에서는 사람 그 자체를 우선시한다. 평생지원을 고려해서 아동과 청소년, 성인과 부모에게 각각의 서비스가 지원되며, 임상으로 입증된 방법만 서비스로 제공된다. 쉽게 말해 키가 170cm인 사람한테 160cm 크기의 침대에 맞춰 생활하라는 게 재활이고, 그에게 180cm 크기의

여유 있는 침대를 제공하는 것이 가활이라 한다. 이를 장애 영역에 적용하면, 장애 자체를 중심으로 사람이 환경에 맞춰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그의 주변 환경을 개선하고 바꾼다는 의미가 된다.⁶⁰⁷⁾

(2) 서울시 발달장애인 마스터플랜

현재 중앙정부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가활과 관련하여 시행하고 있는 정책은 없다. 다만 서울시는 지자체중 유일하게 2017년 발표한 발달장애인 마스터플랜 세부운영사업 중 발달장애인 융복합센터(가활센터) 조성 운영 계획을 포함하였다.

마스터플랜에서는 우선 아래 사항들을 현 재활 정책의 문제점으로 파악한다.

- 발달장애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종사자도 발달장애인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적절한 서비스 제공이 어려움
- 특히 사회복지사 양성 과정에서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교과목이 개설되어 있지 않고, 발달장애인 업무 공무원에 대해서도 발달장애인에 대한 교육 과정이 없어 질적 수준을 담보하기 어려운 실정임
- 자녀가 발달장애인 진단을 받으면 부모는 재활치료라는 명목으로 미검증된 고비용 시설 강습을 평생 이용
- 자폐성 장애인의 경우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은 월 약 418,000원으로 전체 장애인 평균 164,000원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며, 비용에 대한 효과성에 대해서는 검증사례 없음('14 장애인 실태조사)
- 기존 재활 중심의 복지 정책이 아닌 발달장애인을 둘러싼 인적 물적 환경에 맞는 새로운 형태의 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됨⁶⁰⁸⁾

마스터플랜에서 제시한 구체적인 가활센터 조성 사업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 사업명: 발달장애인 융·복합 복지센터, 가활센터 조성·운영
- 사업목적
 - 발달장애인 지원 인력의 역량 강화 및 효과적인 지원을 위하여 복지·교육·노동·의료, 여가·문화 등을 총망라한 융·복합형 발달장애인 복지센터 건립
 - 발달장애인의 치료와 재활이 아닌 발달장애인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정보와 기술을 공유·전파

607) 함께걸음, “재활이 아니라 가활이다”, 함께걸음 (2017. 10. 25. 10:49:03), <http://www.cowalk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20>.

608)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마스터플랜 세부 운영사업” (2017), 30.

- 주요 사업
 - 발달장애인 지원 인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연수·훈련
 - 발달장애 관련 멀티콘텐츠 구축 및 복합도서관 운영
 - 발달장애인 사회적 경제 지원 사업 운영
 - 발달장애인 전문 정책 연구소 운영 등⁶⁰⁹⁾

위에서 살펴본 서울시 발달장애인 지원 마스터플랜 중 가활센터 조성 계획에 대한 시민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서울시는 ‘재활에서 가활로 패러다임 전환: 발달장애인 가활센터 조성계획’을 공개하였으며, 여기에는 보다 상세한 계획이 담겨있다. 계획에 따르면 가활센터 건립은 사전 절차로 인해서 당장 실행이 어려우므로 장단기로 사업 구분이 필요하며, 온오프라인 정보 플랫폼 제공을 2018년 우선 추진 사업으로 구분하였다. 그 구체적인 계획은 다음과 같다.

- 사업 목적: 발달장애 관련 다양한 콘텐츠를 수집, 관리, 공유할 수 있는 온라인 정보 포털 사이트를 구축하고 각종 멀티미디어 자료의 열람·대여·복사할 수 있는 플랫폼 설치
- 이용 대상: 서울시 거주 발달장애인, 가족 및 발달장애 분야 종사자, 전문가 등 40,000명 이상
 - 사업 내용
 - 오프라인 콘텐츠 수집 및 공유
 - 국내외 발달장애 관련 단행본, 자료집보고서, 음원자료, 사진영상자료 수집
 -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를 온라인상에서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 제작
- 발달 장애 전용 콘텐츠 제작
 - 발달장애 정보지 제작 및 배포, 발달장애 관련 이슈 등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
 - 기존 각종 정책 정보, 문학 작품 등을 발달장애인이 읽고 이해하기 쉬운 자료로 변환지원하는 사업
- 오프라인 정보 센터 설치
 - 온, 오프라인 자료를 열람, 대여, 복사할 수 있는 멀티콘텐츠 정보센터
 - 발달장애인의 독서를 지원하기 위한 전문가 교육 프로그램 제공
- 운영 조직
 - 1센터장, 사업별 담당자 4명(콘텐츠 개발 1명, 콘텐츠 수집 1, 읽기 쉬운 자료 전환 1, 행정 1)으로 운영
 - 지역사회 의료기관, 교육기관 복지시설과 연계협력을 위한 운영위원회 구성⁶¹⁰⁾

609)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마스터플랜 세부 운영사업”, 31.
 610) 서울특별시, “재활에서 가활로 패러다임 전환 「발달장애인 가활센터」 조성계획” (2017), 5.

(3) 소결 및 제언

아직 평가할만한 중앙정부 사업이 존재하지 않고, 서울시에서 계획 중인 가활센터 역시 아직 위에서 설명한 계획안 이외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드러나지 않았다. 그럼에도 서울시 가활센터 계획에서 몇 가지 긍정적인 변화를 지적할 수 있다. 무엇보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들의 장애에 대한 이해 부족, 당사자들의 정보 부족을 가장 큰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서비스가 제공자의 편의가 아니라 당사자들의 욕구에 기반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어느 정도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라 평가할 수 있다. 다만, 현재 가장 먼저 추진 예정인 사업 개요는 주로 정보의 수집, 배포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이는 기존 재활 패러다임에서도 충분히 제공할만한 서비스로서 서울시의 패러다임이 전환되었다고 판단할만한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 향후 보다 본격적인 사업 개발을 통해 진정으로 환경을 사람에 맞추는 정책을 실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

(1) 장애계의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 요구

보건복지부는 2017년 정부의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그 동안 치매예방부터 돌봄, 치료, 가족지원까지 치매 보호체계를 구축하려는 노력이 있었으나, 여전히 치매가족들은 어떤 절차로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 알기 어려운 구조이고, 국민들이 느끼는 치매 의료비와 요양비 부담이 컸다.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계획’은 그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치매에 대한 조기진단과 예방부터 상담·사례관리, 의료지원까지 종합적 치매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계획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치매안심센터(252개소)를 통한 1:1 맞춤형 상담검진·관리·서비스연결
- 의료비 부담 대폭 완화(건강보험 본인부담률 10%까지 인하, 진단검사 보험 적용)
- 장기요양 대상 및 서비스 확대 추진⁶¹¹⁾

611) 보건복지부, “치매, 안심하세요. 이제 국가가 책임집니다!” 1대1 맞춤형 상담·사례관

이러한 복지 분야에서의 국가 역할 확대 흐름에 발맞추어 2018년 부모연대는 세계자폐인의 날인 4월2일 ‘발달장애 국가책임제’ 도입을 위한 1박 2일 집중 결의대회를 열고, 209명의 식발식을 시작으로 청와대 인근 종로장애인복지관 앞에서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부모연대가 요구한 ‘발달장애 국가책임제’는 발달장애인을 책임져야 하는 가족들의 짐을 국가도 함께 나눠 갖자란 의미로, 지난 2015년 11월부터 시행된 「발달장애인법」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예산 반영과 정책을 추진해달라는 내용이었다.

이러한 요구에 대하여 6월 8일 청와대가 직접 발달장애인에 대한 국가 차원의 종합계획 수립을 약속하고, 세부 내용을 추진하기 위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하였다. 특히 이번 민관협의체는 한 부처가 아닌, 모든 부처를 조율할 수 있는 청와대가 주축이라 기대가 높다.⁶¹²⁾

(2) 장애계에서 제시하는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 주요 내용

부모연대가 소개하는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목적: 발달장애인이 인간답게 살 권리 보장 및 발달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
- 추진방향:
 -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의 완전한 참여보장
 - 발달장애인을 둘러싼 사회적 장벽 제거
 - 발달장애 특성과 요구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 체계 구축
 - 발달장애인 가족의 양육 부담 해소를 위한 지원 환경 마련
- 8대 정책 과제
 - ① 의미 있는 낮 시간 활동 보장
 - 주간활동서비스 본격 도입
 - 주간활동 지원체계 구축 및 시행예산 마련
 - ② 노동권 보장
 - 발달장애인 사회적 공공일자리 확보
 - 발달장애인 지원고용 확대
 - 최저임금 적용 제외 규정 폐지

리부터 치료지원까지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계획 발표” (2017).

612) 에이블뉴스 “뜨거운 외침 ‘발달장애 국가책임제’ 청신호”, 에이블뉴스 (2018. 6. 8. 14:50:07),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14&NewsCode=001420180608142603312600>.

- ③ 주거권 보장
 -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임차료 지원 등 주택 공급 정책 수립
 - 발달장애인 주거지원서비스 체계 구축
- ④ 소득 보장
 - 부양의무제도 즉각 폐지
 - 장애인연금 대상 확대 및 금액 인상
 - 자산형성 지원제도 도입
- ⑤ 중증중복장애 지원 강화
 - 주간활동지원 거점 센터 설치, 보조인력 추가 배치
 - 건강보험 적용 확대, 행동발달증진센터 및 거점병원 확충
- ⑥ 자기 권리 옹호 활동 지원
 - 자조단체 지원 확대
 - 피플퍼스트대회 운영 지원
 - 발달장애인 당사자 참여 기회 보장
- ⑦ 가족 지원 확대
 - 가족지원체계 구축
 - 가족지원센터 지원 확대
 -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확대
 - 양육수당 도입
- ⑧ 법적 능력 보장
 - 금융거래, 행정서류 발급 등 법적 능력 보장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⁶¹³⁾

(3)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

2018년 9월 12일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고용노동부는 부처 합동으로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별 필요서비스를 분석해 돌봄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돌봄을,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고용을 연계하는 등 개인의 요구와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에 걸쳐 전체 10대 과제와 24개 세부과제로 구성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613)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발달장애국가책임제도입관련 교양자료” (2018).

- ① 발달장애 조기 진단 강화를 위해 정밀검사 지원 대상을 확대('18년 소득하위 30%→'19년 소득하위 50%)하고, 장애아보육교육시설을 확충하며, 멘토링 등 부모 교육을 통해 조기개입을 강화한다.
* 영유아 정밀검사지원:('19) 2,000명 / 영유아 부모교육(신규) : ('19) 3,000명
- ② 방과후 돌봄 바우처를 신설('19년 4,000명)하고, 특수교육기관 및 특수교육교원을 늘린다(특수학교:('17) 174→('22) 197, 특수학급:('17) 1만 325→('22) 1만 1,575). 또한 재학 중 진로지도를 위한 직업체험을 확대하고 부모 대상으로 자녀진로 상담 및 코칭 프로그램을 지원('19년 3천 명)한다.
- ③ 돌봄과 일자리 등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와 자립을 강화한다. 의미 있는 낮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주간활동 서비스를 신설('19년 1,500명)하고 지역 내에서 학습형체육형 등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발달장애인훈련센터를 확충('19년 6개 증)하고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 지원('19년 3,000명) 및 지원고용('19년 5,000명) 확대를 통해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직업훈련과 취업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장애인연금 인상 및 부양의무제 적용 제외, 공공신택제 도입 등 소득지원을 강화한다.
- ④ 지역사회 커뮤니티케어 구축을 통해 돌봄 인프라와 장애인건강관리 체계(장애인 건강검진기관 및 건강주치의제 등)를 강화한다. 발달장애인 거점병원과 행동발달증진센터를 권역별로 확대 하여 발달장애인의 의료 접근성을 제고한다. 일반 병원 이용이 어려운 발달장애인을 위해 거점병원에 전담 코디네이터를 배치하고, 전문적인 행동치료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 장애인건강검진기관: '18년 8개소→'19년 28개소 (20개 증)
**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18년 2개소→'19년 8개소(6개 증)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교육부는 이번 종합대책을 통해 다음과 같은 계획을 밝혔다.

- 갈 곳 없어 집에만 머무르는 발달장애인 비율을 크게 낮추고(26%→2%), 발달장애인의 고용률을 전체 장애인 수준으로 높이며(23%→36%), 부모와 가족의 부담을 완화
- 특히 주간활동 및 방과후 돌봄,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훈련센터 등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19년 정부 예산안 *에 반영(국고 기준 18년 412억 대비 '19년 1,230억 3.2배 증가)하였고 국회심의를 거쳐 차질 없이 시행
* 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예산: '18년) 2조 2,209억→'19년) 2조 7354억 (5,145억, 23%증), 발달장애인지원사업: '18년) 85억→'19년) 346억 (261억, 304%증)
- 관계부처 간 '발달장애인지원실무협의체' 운영을 통해 대책 이행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부처간 협력을 강화하여 발달장애인 지원 정책의 효과 제고
*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주재로 복지부-고용부-교육부간 담당부서로 구성⁶¹⁴⁾

614)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다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를 위한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 발표 및 초청 간담회 개최” (2018).

(4) 소결 및 제언

장애계가 요구하는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는 그 동안 시민사회가 정부에 요구했던 각종 영역 정책들이 총망라되어 있다. 몇몇 정책 도입 여부가 아니라 발달장애인 생활의 모든 측면을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 제도의 골자이다. 이는 매우 광범위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수반하는 개념이므로 단기간 내에 실현될만한 과제가 아니다. 따라서 정부가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고 민간과 협의를 시작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상당한 진전이라 평가할 수 있다.

한편 정부가 최근 발표한 종합케어대책에서는 시민사회가 국가책임제의 일환으로 요구했던 사항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또 다른 진전이라 평가할 수 있다. 다만, 국가책임제의 핵심 중 하나는 장애인 본인에 대한 케어 뿐 아니라 가족에 대한 지원과 법적인 장벽 제거 등 주변 환경에 대한 변화에 대해서도 정부가 책임을 진다는 것이다. 이는 사회 구성원들의 공감과 협력이 반드시 필요한 영역이므로 민간과의 많은 협의가 필요할 것이다.

23. 제27조 근로 및 고용

가. CRPD 제27조

제27조 근로 및 고용

1. 당사국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장애인의 노동권을 인정한다. 이는 장애인이 장애인에게 개방적이고 통합적이며 접근 가능한 노동시장과 근로환경 내에서 자유로이 선택하거나 수용한 직업을 통하여 삶을 영위할 기회를 가질 권리를 포함한다. 당사국은 고용기간동안 장애를 입은 사람을 포함하여, 특히 다음의 사항을 위하여 입법을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노동권의 실현을 보호하고 증진한다.
 - 가. 모집, 채용 및 고용, 고용연장, 승진, 안전하고 위생적인 근무환경의 조건을 포함하여 고용관련 제반 사항에 관하여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한다.
 - 나. 동등한 가치를 갖는 업무에 대한 동등한 기회와 보수를 포함한 공정하고 우호적인 근무 환경, 괴롭힘으로부터의 보호를 포함한 안전하고 위생적인 근무조건, 그리고 고충처리에 대한 장애인의 권리를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보호한다.
 - 다.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장애인이 노동조합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 라. 일반적인 기술 및 직업 지도 프로그램, 직업소개 서비스, 직업훈련 및 지속적인 훈련에 대하여 장애인이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 마. 구직, 취업, 직업유지 및 복직에 대하여 지원할 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에서 장애인의 고용기회와 승진을 촉진한다.

- 바. 자영업, 기업경영, 협동조합의 개발 및 창업의 기회를 촉진한다.
- 사. 공공부문에 장애인을 고용한다.
- 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프로그램, 장려금 및 그 밖의 조치를 포함한 적절한 정책과 조치를 통하여 민간 부문에서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한다.
- 자. 작업장에서 장애인에게 합리적인 편의가 제공되도록 보장한다.
- 차. 공개 노동시장에서 장애인이 근로경력을 습득하도록 촉진한다.
- 카. 장애인을 위한 직업적 재활 및 전문적 재활, 직업유지 및 복지 프로그램을 촉진한다.
- 2. 당사국은 장애인이 노예상태 또는 강제노역에 처하지 아니하고, 강요되거나 강제된 노동으로부터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보호되도록 보장한다.

나. 최종견해와 쟁점목록

(1) 최종견해

- 최종견해
- 49. 위원회는 「최저임금법」이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에 대하여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하고 근로능력의 부족에 대한 평가와 판단하는데 있어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또한 위원회는 그 결과 특히 정신장애인을 포함한 많은 장애인 근로자들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수준의 급여를 받고 있고, 일반 노동시장으로의 진입 준비를 목표로 하지 않는 보호작업장이 존속함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 50. 위원회는 당사국이 보충급여제를 도입함으로써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적용에서 배제되고 있는 장애인들의 급여를 보장할 것과, 보호작업장 운영을 중단하고 장애인단체와 긴밀히 협의하여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협약에 부합하는 대안을 강구할 것을 권장한다.
 - 51. 위원회는 장애인을 위한 의무고용할당제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장애여성을 비롯한 장애인의 실업률이 일반 인구에 비해 높은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 52. 위원회는 당사국이 특히 장애여성의 고용에 주의를 기울이며, 고용격차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특히 위원회는 당사국이 장애인을 위한 의무고용할당제를 실효적으로 이행하고, 이 분야에서의 성과 및 결과에 대한 관련 통계자료를 발간할 것을 권고한다.

(2) 쟁점목록

- 쟁점목록
- 1. 당사국이 다음을 위하여 취한 조치가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조치에 대하여 서술하라:
 - (a) 지적 및/혹은 정신장애인의 노동시장 참여를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차별적 법령 철폐;
 - (b) 최저임금법 개정 등을 통하여 최저임금법상의 급여에서 배제된 장애인들에 대한 보상;

- (c) 본 협약에 따라 보호작업장에서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대안적 방식으로 전환;
- (d) 특히 여성장애인에 대한 특별한 주의와 함께 장애인들의 노동시장 참여 증진을 위해 장애인 의무고용할 당제의 효과성을 보장;
- (e) 장애인들이 공공부문에도 고용될 수 있도록 보장.

(3) 실태조사의 대상 쟁점

제27조에서는 ① 지적, 정신장애인의 노동시장 참여를 배제 또는 제한하는 차별적 법률 폐지, ② 보충급여제 도입, ③ 장애인 보호작업장의 폐쇄, ④ 실업률 격차 해소를 위한 조치 및 장애 여성 고용 관련, ⑤ 장애인의무고용제도의 시행 보장 및 고용 성과 관련 통계 발간 권고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다. 지적, 정신장애인의 노동시장 참여를 배제 또는 제한하는 차별적 법률 폐지

(1) 정부의 이행 현황

보건복지부는 우리나라에 지적, 정신장애인의 노동시장 참여를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차별적 법률이 존재하지 않음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적 및 정신장애인을 포함하여 모든 장애인의 취업 기회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지적 및 정신장애인들의 고용 확대를 위하여 정신적 장애인 고용모델 확산을 추진하고 있으며, 인사혁신처와 국방부 등 비공무원으로 정신 장애인을 채용하는 것과 관련한 자료를 제공 및 제안하고, 공무원 및 비공무원, 공공기관 등에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과 정신장애인의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는 장애인의무고용 확대를 통하여 더 많은 장애인들이 고용을 통해 생활 안정과 자립을 성취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임을 밝혔다.

(2) 정부의 이행 현황에 대한 평가

(가) 자격 취득제한 법률의 실태

보건복지부는 우리나라에 지적, 정신장애인의 노동시장 참여를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차별적 법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매우 다른

것이다.

현재 ‘정신질환’을 결격사유로 규정한 법령은 120여 개에 이르며,⁶¹⁵⁾ 그 구체적인 예는 아래와 같다.

<p>약사법 제5조(결격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u>약사면허 또는 한약사면허</u>를 받을 수 없다.</p> <p>1.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사회복지사업법 11조의2(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u>사회복지사가</u> 될 수 없다.</p> <p>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사회복지사로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p> <p>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의2(위생사의 면허 등)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u>위생사면허</u>를 받을 수 없다.</p> <p>1.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위생사로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p> <p>국민영양관리법 제1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u>영양사의면허</u>를 받을 수 없다.</p> <p>1.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영양사로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p> <p>노인복지법 제39조의13(요양보호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u>요양보호사가</u> 될 수 없다.</p> <p>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요양보호사로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선원법 제82조(선박소유자 등의 의무) ③ 선박소유자는 감염병, 정신질환, 그 밖의 질병을 가진 사람 중에서 승무가 곤란하다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u>선원을 승무시켜서는 아니 된다</u>.</p> <p>모자보건법 제15조의2(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u>산후조리원을설치·운영하거나 이에 종사할 수 없다</u>.</p> <p>1. 18세 미만인 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p> <p>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u>정신질환자</u></p> <p>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u>수렵면허</u>를 받을 수 없다.</p> <p>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p> <p>말산업육성법 제13조(결격사유 및 자격취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u>말조련사, 장제사나 재활승마지도사가</u> 될 수 없다.</p> <p>2.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p>
--

615) 비마이너, “정신장애인은 사회복지사 꿈도 꾸지 말라고?”, (2017. 10. 10. 20:28),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1389>.

약사,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는 정신질환자는 「정신건강복지법」상 정신질환자를 의미한다. 2017. 5. 30.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상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정신건강복지법」 제3조 제1호).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7. “정신재활시설”이란 제26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로서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정신질환자등”이라 한다)의 사회적응을 위한 각종 훈련과 생활지도를 하는 시설을 말한다.

「정신건강복지법」 제2조(정신재활시설 이용자의 범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1. 기질성 정신장애
2. 알코올 또는 약물중독에 따른 정신장애
3. 조현병 또는 망상장애
4. 기분장애
5. 정서장애, 불안장애 또는 강박장애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장애에 준하는 장애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종전 「정신건강복지법」에서는 정신병의 경중과 무관하게 모든 환자를 정신질환자로 정의했으나,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에서는 정신질환자의 법적 의미를 ‘정신질환으로 독립적 일상생활을 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으로 축소했다고 한다.

이는 종전 「정신건강복지법」상 정신질환자를 ‘망상, 환각, 사고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해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으로 규정했던 것에 비해서는 진일보한 규정으로 보인다. 하지만, 어떤 것이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해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관련 문헌에 따르면,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지 여부는 전문가가 전문성을 가지고 판단하도록 되어 있으며, 알코올 중독에 따른 장애가 심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경우 정신질환자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⁶¹⁶⁾ 이에 대해서는, 정신과

전문의를 주관적 판단이 고정된 법적 지위나 엄격한 절차를 거친 법원의 선고 등과 동일 시 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또한, 다양한 정신 질환의 경중을 법률로 정의하지 못한 채 정신질환자를 중증 질환자와 동일시함으로써 정신질환의 사회적 인식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더구나, 「정신건강복지법」상의 정신질환자라는 정의규정으로는 정신질환이 있음이 어떻게 증명되는지, 치료의 경과나 상황의 변화에 따라 어느 시점에 자격이 취득 가능하고 어느 시점에 자격 취득이 제한되는지 예측하기 어렵다. 따라서 정신질환자 본인은 충분한 자격조건을 갖추고도 정신질환자라는 이유만으로 특정 업종에서의 자격 취득 자체가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다. 특히 선원법, 모자보건법 등에서는 정신장애인의 승무, 면허 취득을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개정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말산업육성법 또한 구법인 정신보건법 조항을 인용하고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우려를 반영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8. 5. 8. 국무총리 및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정신장애인 자격, 면허 취득 제한 제도의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결정을 내렸다.⁶¹⁷⁾

또한, 정신질환자의 범주를 넘어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으로 결격 대상의 범위를 넓혀 살펴보면, 우선 공무원법에서부터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실정이다(공무원법 제33조 제1호). 결격 대상의 범위를 줄이려는 노력과 동시에, 합리적 판단에 따라서 임용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더라도 절대적 금지 조항이 아닌 상대적, 예외적 금지 조항 내지 원칙적 허용 조항으로의 점진적 전환이 필요하다.

(3) 제언

보건복지부는 우리나라에 지적, 정신장애인의 노동시장 참여를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차별적 법률이 존재하지 않음을 밝혔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정신질환자 자격 취득 제한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개선이 시급하다.

616)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2017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입, 퇴원 절차 안내” (2017), 4.

617)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 정신장애인 자격 면허 취득 제한 제도 개선 권고” (2018).

(가) 판단 기준과 절차의 구체화

정신질환을 자격 취득 등의 결격사유로 하고 있는 법률들의 입법취지는 업무 수행능력의 부족이나 위험성에 근거한 것이다. 하지만 정신질환 여부에 대한 판단이 과연 업무수행능력의 불충분이나 위험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절차에 따른 것인지는 매우 의문스럽다.

따라서, 우선 자격 취득이 제한되는 정신질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 사회복지사업법의 예를 살펴보겠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2(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3.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4.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
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사회복지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된 자 등의 요건은 각 법원의 판단에 의하여 결격사유 해당 여부가 명확하다. 또한, 피성년후견인의 경우 성년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을 하도록 되어 있는 등(민법 제11조), 결격사유에서 제외되기 위한 요건이 법정되어 있으며 해당 결격자 본인이 판단 기준 및 절차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통해 직업선택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정신질환자가 결격사유에서 제외되기 위한 ‘전문의를 적합성’ 판단은 어느 의료기관에서 받아야 하는지, 결격사유 해당일로부터 몇 개월 후에 해당 사유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를 발급받아야 하는지, 1명의 전문의가 적합하다고 판단하면 충분한지 아니면 복수의 전문의의 판단이 필요한지 등에 대한 기준이 전혀 설정되어 있지 않다. ‘전문의를 적합성’ 판단은 법원의 성년후견개시, 금고 이상의 형 선고 등 공권력의 행사와 동치되는 개념인데, 이에

수반되어야 하는 각종 적법절차의 원칙 준수, 명확성의 원칙 준수 등 각종 기본법원리의 준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신질환자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결격사유 판단 기준일을 정할 필요가 있다.⁶¹⁸⁾ 시험 원서 접수일로부터 합격자 발표 및 자격증 교부까지는 상당 시간이 소요되는데,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할지는 자격 취득 가부와 결부되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특히, 자격 취득일 이전 시점을 기준으로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정신질환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나) 결격사유 기준일의 명시

변호사시험법 등 일부 법령에서는 결격사유 기준일을 명시하고 있는데, 그 예는 아래와 같다.

변호사시험법 제6조(응시 결격사유) 제4조에 따라 공고된 시험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시험에 응시 할 수 없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4조(감정평가사시험) ② 시험의 최종합격 발표일을 기준으로 제12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렇게 결격사유 기준일을 명시하면, 정신질환자 본인이 스스로의 질환 상태와 치료 정도에 따라서 시험 응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므로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 정신질환자 자격제한 관련 법령의 축소

정신질환을 결격사유로 하고 있는 법률들 대다수는, 공중의 위생, 보건 등 공공의 안전과 관련되어 있거나, 보육, 돌봄 등 특별한 보호가치가 있는 분야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공공의 안전 등 사회공동체의 가치보호를 위해 관련 업종의 진입에 있어 엄격한 직무수행능력을 검증토록 하고 내재적인 위험가능성을 제거하려는 절차적 노력의 일환이라 할 것이어서, 법률에 자격 및 면

618) 같은 취지로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전문자격의 결격사유 기준일 명확화 방안” (2018).

허취득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자체를 문제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⁶¹⁹⁾

하지만, 직업선택의 전제조건이 되는 자격 및 면허취득의 제한은 직업선택의 자유라는 기본권의 중대한 제약에 해당하므로, 자격제한이 적용되는 법령의 범위는 최대한 축소되어야 할 것이다. 예컨대 장제사, 재활승마지도사, 수산질병관리사, 장례지도사 등의 직종의 경우 정신질환자 자격 제한을 완화시킬 여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정신적 장애인 고용모델 확산을 추진에 대해서는 특별한 추진 경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 현 단계에서 판단하기는 이르다. 비공무원 정신 장애인 채용, 공공기관 취업 알선 등과 관련해서도 단순한 ‘추진’ 내지 ‘알선’을 넘어선 구체적인 청사진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라. 보충급여제 도입 관련

(1) 정부의 이행 현황

고용노동부는 보충급여제의 도입을 권고하는 최종견해에 대해 일부·조건부 수용의사를 밝혔다.

현재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중증장애인들이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을 언급하며,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제도를 엄격히 운영하기 위해 현행 적용제외 인가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라 하였다.

또한,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들이 적정수준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고용장려금 제도의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나, 최저임금과 임금과의 차액을 보상하는 보충급여제는 사업주의 도덕적 해이 유발 우려 등이 있어 신중히 검토할 사항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619)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2018. 4. 12. 결정 정신장애인 자격, 면허 취득 제한 제도 개선 권고, 6.

(2) 정부의 이행현황에 대한 평가

(가) 보충급여제(supplementary wage system)의 개념

보충급여제란 자산액(소득인정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국가가 정한 최저 기준인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경우 그 부족분을 급여하는 제도이다. 이는 1795⁶²⁰⁾년 처음 실시되었던 스피햄랜드 제도(Speenhamland system)⁶²¹⁾의 전통을 이어 받은 것이다.

근로와 관련하여 보충급여제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부족분 상당을 국가가 지급하는 제도로 해석되며, 보충급여는 ‘고용보조금’으로 불리우기도 한다. UN장애인권리위원회는 2014. 9. 30. 보충급여제를 도입하여 최저임금법에 의해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에게 보상할 것을 권고하였으나,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는 불수용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는 최저임금 적용제외제도와 깊은 연관성을 가지므로, 우선 관련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한다.

(나) 최저임금 적용제외제도

최저임금이란, 근로자에 대해 보장되는 임금의 최저수준을 의미한다.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것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며, 최저임금제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최저임금법 제1조, 제3조 제1항). 이렇듯 최저임금제도는 부당한 저임금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이며, 취업취약계층의 최저생계비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보호장치라 할 것이다.

620) 김미곤 등,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보충급여제도 도입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자활급여 등의 지급시 보충급여의 원칙을 도입하고 있다(기초생활보장법 제3조 제1항).

621) 이 제도는 1795년 영국 스피햄랜드라는 지역에서 처음 도입된 것으로, 식료품 가격과 자녀수에 따라 노동자를 분류하여 임금을 보충해주는 제도인데, 현행 보충급여제의 뿌리라고 할 수 있다. [정현영, “사회복지의 이해”, 한국학술정보(2017)]

하지만 현행 「최저임금법」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가 업무 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거쳐 최저임금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최저임금법 제7조 각호, 제6조, 동법 시행령 제6조).

「최저임금법 시행규칙」은 최저임금 적용 제외의 인가 기준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별표 3]).

구 분	인가기준
근로자의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가 그 근로자를 종사시키려는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1. 정신 또는 신체 장애인으로서 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그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같거나 유사한 직종에서 최저임금을 받는 다른 근로자 중 가장 낮은 근로능력자의 평균작업능력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람(작업능력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의견을 들어 판단하여야 한다)을 말한다. 2. 인가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최저임금 적용 제외제도의 구체적인 운영을 위해서,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는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인가 업무처리지침(장애인고용과-3809, 2017. 12. 29., 이하 '업무처리지침')을 제정, 시행하고 있다.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구체적인 적용제외 인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

정신장애란 발달장애(지적·자폐성 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하며, 신체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따라서, 단순히 노령에 의한 심신쇠약 등은 최저임금법 상의 장애는 아니나,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 장애가 원인이 되어 업무에 직접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상의 장애가 될 수 있다고 본다.

2) 업무수행에 직접적인 지장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가 당해 근로자가 수행하고자 하는 또는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직접적인 지장을 주어야 한다.

예를 들어, 다리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앉아서 수작업을 주로 하는 경우와 같이 장애와 업무가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는 인가대상이 아니다.

3) 현저한 지장

현저한 지장이란 ‘동일 또는 유사직종의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다른 근로자 중에서 가장 낮은 근로능력자’(이하 ‘기준근로자⁶²²⁾’)의 평균 작업능력에도 미치지 못함을 의미한다. 장애근로자의 근로능력은 양적 비교가 바람직하나, 양적 비교가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장의 근로실태를 파악한 후 동료근로자, 근로자의 가족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지방고용노동관서는 적용제외인가 신청 근로자에 대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지사)에 작업능력평가를 의뢰한다. 작업능력평가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각 지사에 소속된 평가사가 실시하며, 평가사는 평가실시 후 작업능력평가 결과표를 해당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한다.

기준근로자와 작업능력이 같을 때 백분율 적용값(가중치 적용값)이 100인데, ‘작업능력이 현저히 낮은 경우’는 백분율 적용값이 70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이에 백분율 적용값이 70 미만인 경우에 인가승인이 내려진다.⁶²³⁾

622) 기준근로자의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 (i) 기준근로자는 원칙적으로 동일 사업장 내에서 선정하되, 없으면 인근 사업장에서 선정
- (ii) 동일 또는 유사직종의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다른 근로자 중에서 임금이 가장 낮은 근로자를 선정하되, 임금이 가장 낮은 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가장 최근에 입사한 자로 선정
- (iii) 이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없는 경우 신청 대상 장애인 근로자의 작업을 부수적으로 수행하는 근로자, 과거 해당 작업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근로자, 그 외 해당 작업에 대한 미숙련자(사무직원, 행정보조원 등) 순으로 선정

623) 사업주가 장애근로자의 주의집중력이 낮아 지속적인 작업이 어렵고 새로운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 부족과 지시 이해력이 낮음을 주장하며 최저임금 적용제외인가 거부 처분 취소청구를 한 사안에서, 국민권익위원회는 “근로자는 지적장애 2급이므로 주의집중력과 지시 이해력이 낮고 새로운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보이나(중략) 이 사건 근로자의 작업능력이 기준근로자(훈련교사) 대비 91.7%로 나타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자의 지적장애가 업무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재결하여(국민권익위원회 2013. 7. 23. 중앙행심2013-08560) 유관 기관도 위와 같은 기준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 최저임금 적용제외 현황

최저임금 적용제외를 받은 장애인노동자 수는 2012년 3,258명이었으나, 2017년 8,632명으로 6년간 약 3.7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확인된다. 2018년 9월 기준으로 이미 7,195명을 기록하여 연말까지 9천명 이상의 최대 수치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표-56] 2012~2017년 연도별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근로자 인가 현황
(단위: 명, 개소, %, 건)

구분	인가 인원	접수 사업장	인가 사업장	인가 비율	접수 건수	인가 건수	인가 비율
'12년	3,258	347	310	89.3	1,083	1,008	93.1
'13년	4,495	435	386	88.7	1,235	1,076	87.1
'14년	5,625	496	482	97.2	1,327	1,212	91.3
'15년	7,006	575	556	96.7	1,425	1,345	94.4
'16년	7,935	666	653	98	1,609	1,514	94.1
'17년	8,632	764	731	95.6	1,897	1,787	94.2

※ 출처 : 고용노동부(김승희 의원실 재구성)

그러나 이들의 평균 시급 비율은 6년 연속 하락하여 장애인 노동권이 해가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음이 드러났다.

[표-57] 2012~2017년 연도별 최저시급 및 최저시급 적용제외 장애인근로자 평균시급 현황

(단위: 원, %)

구분	법정 최저시급(A)	장애인 인가근로자 평균시급(B)	시급 격차 (A)-(B)	격차 비율 (B)/(A)
2012년	4,580	2,790	1,790	60.1%
2013년	4,860	2,775	2,085	57.1%
2014년	5,210	2,751	2,459	52.8%
2015년	5,580	2,727	2,853	48.9%
2016년	6,030	2,896	3,134	48.0%
2017년	6,470	3,102	3,368	47.9%

※ 출처 : 고용노동부(김승희 의원실 재구성)

법정 최저임금 시급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최저임금과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 노동자 평균시급의 격차 역시 벌어졌다. 2012년 1790원에서 2013년 2085원, 2014년 2459원, 2015년 2853원으로, 2016년에는 처음으로 3000원대를 넘긴 3134원을 기록하더니, 2017년에는 3368원으로 2012년에 비해 격차는 더욱 심각해졌다.⁶²⁴⁾

(라) 주요국가의 최저임금 적용제외제도 유무

그렇다면, 이러한 최저임금 적용제외제도는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해 필연적인 것인가? 이러한 물음에 간접적인 답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주요 국가의 최저임금제도(2018년 기준)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그리스, 독일, 아일랜드, 영국, 프랑스, 멕시코, 미국, 캐나다, 호주 등 OECD 가입 국가는 물론, 콜롬비아, 파라과이, 대만, 말레이시아,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태국, 터키, 필리핀, 뉴질랜드 등의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조사 대상 국가에서 장애인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제외제도를 두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⁶²⁵⁾

최저임금 적용제외제도를 두고 있는 네덜란드의 경우에는 (i) 직업이 있는 상태에서 장애인이 된 경우, 고용주가 본래 임금의 최소 70%를 2년간 지급해야 하는 등 임금의 하한선을 두고 있으며, (ii) 18세 이전 장애로 인하여 노동력을 상실한 경우 Wajong(장애원조) 수당을 지급하여, 실질적으로 보충급여제와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칠레의 경우에는 최저임금 적용제외제도의 대상이 정신 장애인으로 한정된다.

일본의 경우, 최저임금 적용제외제도에 대한 각종 문제점이 제기되자, 2007. 12.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 현재는 감액조치제도를 두고 있다.

외국 사례에 비추어, 최저임금 적용제외제도는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한 논리 필연적인 제도라기 보다는, 오히려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기 힘든 굉장히 예외적인 제도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최저임금 적용제외제도의 구체적인 문제점을 살핀다.

624) 비마이너, “최저임금 적용 제외 받은 장애인 노동자, 6년 사이 ‘3.7배’ 증가” (2018. 4. 23. 13:52),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2109>.

625) 최저임금위원회, “주요국가의 최저임금제도” (2018).

(마) 최저임금 적용제외제도의 문제점

1) 낮은 임금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 노동자는 최저임금의 절반 수준의 임금을 받으며 일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지원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것으로 장애인 당사자에 대한 지원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2) 직업능력 평가와 무관한 임금 체계

‘일한 만큼 받는’ 것이 임금의 본질이라면, 최소한 직업능력에 상응하는 임금은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장애인 노동자의 직업능력을 평가할 때,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직업평가사들이 사업체를 방문하여 직업능력을 평가, 인가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최저임금 적용제외인가 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직업평가사들은 직업능력평가 결과표에 (i) 평가 기준 (ii) 요구 수행량 (iii) 수행량 (iv) 결과 (v) 가중치 (vi) 가중치 적용값 등을 구하여, 평가결과를 도출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수치로 나타나므로, 임금 산정에 직접 반영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하지만 현재 직업능력 평가 결과는 최저임금 적용제외인가 대상 여부 판단시에만 사용되며, 임금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상황이다.

프랑스의 경우, 근로능력평가 기관(MDPH)의 욕구 사정 및 근로능력 평가를 거쳐 그 결과와 함께 실제 근로시간을 고려하여 임금을 산정하고 있다.⁶²⁶⁾

최저임금 적용제외인가를 받았다고 하여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정하는 것은 「헌법」상 적정임금 보장의 원칙(「헌법」 제32조 제1항)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이며, 직업능력에 상응하는 임금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3) 임금 하한선의 부재

임금 산정 기준이 모호할 뿐만 아니라, 임금의 하한선조차 없는 상황이다. 20만원 미만을 받는 장애인도 상당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⁶²⁷⁾ 최저임금 적용에서

626) 김용탁외 1, “최저임금 적용제외 대상자에 대한 고용보조금 지급 방안 검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015).

제외된다 하더라도, 일정 수준의 임금 하한선을 두어 최소한의 자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장애인 작업능력 평가 비공개

장애인의 작업능력 평가 결과가 공개되지 않으므로, 일단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사업자는 근로자에게 작업능력에 맞는 대우를 할 유인이 없는 상황이다.

(바) 최저임금법 개정법률안

1) 김병욱 의원 외 13인 법률안

이와 같은 현행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제도의 문제점을 바탕으로, 김병욱 의원 외 13인은 2016.8. 8. 최저임금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의 경우 최저임금의 절반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으며 최소한의 생활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하도록 하되, 최저임금 적용에 따른 사용자의 부담으로 인한 장애인 고용감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최저임금액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해주도록 하려는 것이 김병욱 의원 최저임금법 개정법률안의 요지이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개정안 주요 내용>

현 행	개 정 안
제7조(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 2.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	<삭 제>

627) 김용탁외 1, 앞의 글.

488 장애인권리협약 이행에 관한 실태조사

현행	개정안
제24조(정부의 지원) <신설>	② 정부는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를 고용한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근로능력 등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액의 일부를 지원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의 기준, 최저임금액의 지원 수준, 지원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에 대해, 환경노동위원회는 2016. 11.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에서 아래와 같은 의견을 밝혔다.

“현행법은 모든 장애인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고, 2013년 기준 실제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되는 장애인은 전체 장애인 근로자의 1% 수준인 4,495명에 불과하다는 점과 2011년도 조사에 따르면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되는 장애인의 94.2%가 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이었으며, 이들의 높은 실업률에 비추어보았을 때 최저임금 적용제외 제도가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견해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정부의 보조가 이루어지더라도 현재 중증장애인의 급여수준을 감안할 때, 장애인 고용기피현상이 심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개정안을 심의할 때 장애인근로실태조사와 이해관계자 의견, 고용영향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장애인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범위 확장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고용감소가능성을 감안하여 장애인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법을 전면 적용하되, 고용감소가능성을 감안하여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사람’일 경우 감액규정을 신설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을 밝혔다.⁶²⁸⁾

628) 이에 대해서는 (i) 일본이나 미국에서 감액제도를 시행하지만 이러한 국가에서는 기본적으로 장애인연금만으로도 기초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장애인 근로자들의 상황과 단순비교를 하는 것은 무리이고 (ii) 감액제도의 하한성이 낮을거라하면 현재 적용제외 상황과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다는 비판이 있다. [복지연합신문, “장애인 최저임금 감액제도, 해답이 아니다”, (2015. 9. 16. 14:26), <http://www.bokj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3752>].

2) 이정미 의원 외 10인 법률안

이정미 의원 외 10인이 2016. 7. 1. 발의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도 동일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한편, 한발 더 나아가 최저임금차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58] 개정안 주요 내용

현행	개정안
<p>제7조(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p> <p>1.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 2.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p>	<p><삭 제></p>
<p><신 설></p>	<p>제7조의2(최저임금차액의 지급)</p> <p>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은 사유로 최저임금액과 지급받은 임금액의 차액(이하 “최저임금차액”이라 한다)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차액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차액의 지급을 청구하려는 근로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6조제1항을 위반한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26조에 따른 최저임금감독관에게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6조제1항을 위반한 사실관계를 조사하게 하여야 하고, 최저임금감독관은 그 조사 결과를 지체 없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④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6조제1항의 위반 여부 및 최저임금차액 등을 확인하여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차액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p> <p>⑤ 최저임금차액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와 사업주의 기준과 그 밖에 최저임금차액의 청구 및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7조의3(최저임금차액의 청구권의 대위)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의2에 따라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차액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게 최저임금차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한다.</p>

이는 정부로 하여금 사업주를 대신하여 보충급여, 즉 최저임금액과 지급받은 임금액의 차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한편 환경노동위원회는 2016. 8.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에서 (i) 국가가 최저임금을 대신 지급하게 되면 근로자의 권리구제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장점이 있으나 (ii) 최저임금 미지급에 대해서만 대위지급을 도입하는 것은 일반적인 체불근로자와 형평성 문제는 없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고, (iii) 도산 등의 사유로 사용자에게 체불임금 지급능력이 없는 경우는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체불임금의 일부를 국가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하여 입법여부를 정해야 할 것이라는 평가를 하여 다소 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3) 제언

고용노동부는 보충급여제의 도입을 권고하는 최종견해에 대해 일부·조건부 수용의사를 밝히며, (i)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제도를 엄격히 운영하기 위해 현행 적용제외 인가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며, (ii) 또한,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들이 적정수준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고용장려금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정부가 제시한 개선책은 보충급여제의 도입에 대한 일부, 조건부 수용으로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보충급여제의 도입과 동떨어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2017. 12. 29. 개정된 최저임금 적용제외인가 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작업능력 평가를 실시 결과값이 70 미만인 경우에만 인가승인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종전 결과값 90 미만인 경우 인가승인을 하던 것과 비교하여 인가기준이 강화된 것이다.

작업능력평가사가 결과값 부여시, 기준근로자의 수준과 비교한 결과 우수는 100% 이상, 보통은 100% 미만 70% 이상, 미흡은 70% 미만 50% 이상, 매우 미흡은 50% 미만을 결과값의 기준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 보통 수준의 근로자의 경우에도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대상이 될 수 있던 것을, 미흡 수준의 근로자로 줄였다는 측면에서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기준이 강화된 것은 맞다.

하지만 이를 두고 보충급여제를 일부 내지 조건부나마 수용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기준 강화에 따라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대상이 감소하더라도, 인가 대상이 된 근로자들의 급여 수준이 나아지는 것이 아니

기 때문이다. 보충급여제의 취지는 근로자의 최저임금 보장에 있으며,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기준의 강화와는 무관한 것이다.

또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 안정을 위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제28조제1항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사업주를 포함한다)에게 고용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0조 제1항). 이를 위하여 고용노동부는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17-98호)을 정하여, 성별 및 장애 정도에 따라 300,000원~600,000원 상당의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기준 제3조, [별표]).

하지만,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에게 제공되는 것이며, 사업주가 제공된 고용장려금의 일부를 근로자에게 배분할 의무를 지는 것도 아니다. 즉, 근로자의 임금을 보장하고자 하는 보충급여제 관련 논의와는 완전히 무관한 것이다.

한국에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지 올해로 만 30년이 되었다. 최저임금제도의 시행, 발전과 맞물려 최저임금 감액적용 및 적용제외 대상도 축소되어 왔다.

제도 초기에는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의 제조업에만 적용되던 최저임금제도가, 이제는 전 규모, 전 산업에 적용되고 있다. 제도 시행 초기 최저임금 적용제외의 대상이던 양성훈련자, 수습근로자, 감시, 단속적 근로자는 최저임금 전액 적용이 대상이 되었지만, 유독 장애인근로자는 여전히 최저임금 적용제외의 대상으로 남아 있다.

따라서, 장애인근로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시급히 (i) 최저임금 적용제외제도의 폐지 및 (ii) 보충급여제도의 도입이 필요한 상황이다. 최근 최저임금의 상승 등으로 인해 최저임금을 전면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국가 재정상 어렵다면, 최소한 (i) 최저임금 적용제외 근로자에 대한 임금 하한선 도입 및 (ii) 업무능력에 비례하는 급여 책정 시스템의 도입을 통해 최소한의 급여 수준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마. 장애인 보호작업장의 폐쇄

(1) 정부의 이행 현황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폐쇄할 것을 권고하는 최종견해에 대해 불수용의사를 밝히면서 ①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의 일환으로 장애인의 직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규정하

고 있으며, 시설의 규모와 중증장애인비율 등을 감안하여 장애인근로사업장과 장애인 보호작업장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음 ②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일반 경쟁고용시장에 취업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 보호된 작업환경 속에 직업재활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장애인에게는 직업재활 및 근로활동을 통한 소득 보장기회를 제공하고, 그 가족에게는 부양의무 경감 및 경제활동 기회를 증진하며, 사회적으로는 경제활동인구 증가에 따른 경제적 활력 제고 및 사회통합의 기회가 증가할 수 있게 됨 ③ 2016년 말 현재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전혀 없는 지자체가 37곳에 달하고, 1개소만 있는 곳도 70여곳에 달하는 등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매우 부족한 형편이므로, 더욱 확충되어야 하며, 현재의 상황에서 중증장애인이 근로 및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대안인 보호작업장을 폐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적절하지 않음 등을 그 사유로 제시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일반 고용시장에서 채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주 대상으로 하여 설치,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운영방식 면에서는 장애인만으로 구성된 격리된 보호시설이 아니라 비장애인이 함께 고용되어 공동으로 생산·서비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일반 경쟁고용 사업장과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향후 중증장애인의 차별 없는 고용과 소득보장을 위해 이해관계자(장애인복지단체·장애인복지시설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미래지향적인 장애인 보호작업장 기능, 역할 모델을 마련하고, 2018년 하반기 부터는 이러한 발전모델이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할 계획을 천명하였다.

(2) 정부의 이행 현황에 대한 평가

(가) 장애인 보호작업장의 개념

장애인 보호작업장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한 유형이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란,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을 일컫는다(「장애인보호법」 제58조 제1항 제3호).

「장애인보호법 시행규칙」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i) 장애인 보호작업장 (ii) 장애인 근로사업장 (iii) 장애인 직업적응훈련시설로 분류하고 있는데, 장애인 보

호작업장이란 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직업적응능력 및 직무기능 향상훈련 등 직업재활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보호가 가능한 조건에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며, 이에 상응하는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며, 장애인 근로사업장이나 그 밖의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시설을 의미한다(「장애인보호법 시행규칙」 제41조, [별표 4] 3. 가.).

역사적으로 볼 때 장애인 보호작업장은 IMF 극복과 맞물려 도입된 “생산적 복지 패러다임”의 산물로 볼 수 있다. 즉, 일할 의욕과 능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직업훈련과 교육을 통해 일할 능력을 개발한다는 차원에서 고용과 교육 기능이 혼재된 장애인 보호작업장이 도입된 것이다.

장애인 보호작업장에서는 아래와 같은 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장애인보호법 시행규칙」 제41조, [별표 5] 13. 마.).

- 보호고용 : 근로장애인을 보호하는 환경에서 장애인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고 유상적인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훈련관리 및 작업관리 : (i) 근로장애인과 훈련장애인의 개인별 재활계획을 수립하여 직업상담 및 평가, 직업적응훈련, 직무기능 향상훈련 등을 실시하여야 하고 (ii) 근로장애인이 작업공정을 잘 이해하고 작업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작업에 대한 직무분석을 하고 이에 따라 직무를 변경하거나 보조공학을 활용한 적절한 배려 등의 조치를 하거나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 재활프로그램 : 장애인 보호작업장의 재활프로그램은 장애 유형, 장애 정도, 연령별 특성과 해당 시설에서 수행 중인 업종의 특성을 반영하여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며, 그 계획에는 일반고용으로의 전환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재활프로그램은 아래의 내용으로 주 8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① 직업적응훈련: 일상생활훈련, 사회적응훈련, 작업 태도 및 기술 훈련
 - ② 문제해결훈련: 의사소통 기술훈련, 문제해결훈련, 대인관계능력 향상훈련, 위급
 - ③ 상황 또는 응급상황 대비훈련, 자기옹호훈련 및 자기주장훈련
 - ④ 직업평가: 작업표본평가 및 현장평가
 - ⑤ 직무기능 향상훈련: 직무 분석에 따른 직무 변경, 개조, 보조공학 개입에 따른 훈련
 - ⑥ 지역사회 자원활용훈련
- 교육·훈련 : 장애인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장애 유형, 장애 정도, 직무수준별 특성, 연령별 특성 등을 고려한 재활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실시하여야 하며, 이들이 보호고용과 지역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가 2017. 7. 발간한 2017년 장애인 복지시설 일람표에 따르면, 보호작업장은 서울에 111개, 부산에 30개, 대구에 33개, 인천에 24개, 광주에 18개, 대전에 15개, 울산에 13개, 세종에 3개, 경기도에 84개, 강원도에 29개, 충청북도에

20개, 충청남도에 18개, 전라북도에 17개, 전라남도에 16개, 경상북도에 36개, 경상남도에 43개, 제주도에 6개 총 510여개가 설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나) 장애인 보호작업장의 문제점

1) 급여의 문제

보호작업장의 장애인들은 일반 노동시장의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동에 참여하지만, 그들처럼 충분한 노동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

특히, 보호작업장에서 근무하는 장애인들은 최저임금법의 적용 제외 대상이라는 점에서 노동인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전국 보호작업장 548군데 중, 시급 1000원이 안되는 곳이 30곳이나 된다.⁶²⁹⁾ 종이가방 제작 등 주로 단순 작업에 동원된 노동자들에게 시간당 475원, 478원을 주는 곳도 비일비재하며, 이렇게 한 달에 200시간을 넘게 일해도 월급은 고작 10만 원 남짓에 그친다. 교통비와 식대 등 필수 생활 비용을 지출하면 오히려 적자가 나는 실정이다.⁶³⁰⁾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17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및 판매시설 운영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근로 장애인 11,286명 중 10만원 이하의 임금을 받는 자가 449명(4.0%), 10만원에서 30만원 미만의 임금을 받는 자가 3,610명(32%), 30만원에서 50만원 미만의 임금을 받는 자가 2,705명(24%)로, 전체 직업재활시설 근로 장애인 중 60% 미만이 50만원 이하의 임금을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장애인 보호작업장 원장은 이들의 노동 과정을 훈련으로 봐야한다고 말하며, 저임금을 정당화하고 있다.

2) 자활의 문제

전술하였듯, 장애인 근로사업장은 (i) 보호가 가능한 조건에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도 수행하나, (ii) 그 밖의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도 수행한다. 즉, 한국에서의 장애인 근로사업장은 미국에서의 보호

629) JTBC, “시급 500원도 못 받는 장애인 노동자들…훈련과정이라서?”, (2018. 10. 18. 21:19)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712506

630) 한국일보, “월급 10만원 장애인 보호작업장, 자활 꿈도 못꿔”, (2016. 2. 17. 04:40)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602170428875412>

작업장(Sheltered Workshop)과 전이작업장(Transitional workshop⁶³¹)을 결합한 형태로 이해된다.

하지만, 직업재활시설의 많은 중증장애인들은 보호고용에서 경쟁 고용으로 전환되지 못하고 있다. 직업재활시설협회에서는 2016년 1월~3월, 전국의 직업재활시설 560개소를 대상으로 전반적인 운영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 실태조사에서 직업재활시설 장애인의 일반고용 전이 현황을 조사하였는데, 실태조사 결과, 조사에 참여한 직업재활시설에서 총 260명의 장애인이 시설 외 전이, 즉 일반 기업체, 사회적 기업 및 표준사업장 등으로 취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전체 직업재활시설의 일반고용 전이 장애인 수를 추정하면 372명으로 추정되며, 일반고용 전이률은 2.3% 수준이다.⁶³²

직업재활시설의 (일반)고용 전이 미흡의 주요 원인을 조사한 결과, 아래와 같은 요인들이 지적되었다.⁶³³

- 근로능력이 높은 장애인을 시설에서 일반고용으로 또는 기관(시설)으로 전이시킬 경우 해당 시설의 생산성이 낮아지는 것에 대한 우려
- 해당 근로장애인의 낮은 근로능력
- 전이시킬 기업의 부재(不在) 문제(전이 일자리 제공 기업의 부족)
- 전이 대상 기업의 장애 관련 비친화적 환경(정서적, 물리적 환경 등)
- 일반고용으로의 전이 시 출퇴근 등 이동의 어려움
- 전이 실패에 대한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당사자 및 가족의 염려 또는 전이 자체에 대한 장애인당사자 또는 가족의 부정적 입장(특히 발달장애인의 경우 일반고용만이 해법이 라는 논리에 대한 재검토 필요)
- 고용노동부 및 보건복지부의 사업내용이 중복, 분산된 형태로 운영됨에 따라 고용의 사각지대(일반고용으로의 전이부족) 발생 등

장애인 복지라는 이름으로 장애인을 지역사회로부터 격리하고 배제했던 ‘장애인 거주시설’과 마찬가지로 직업재활시설도 장애인의 노동에 있어서 사회 통합

631) 보호작업장은 경쟁고용에 쉽게 참여하기 어려운 내담자들의 궁극적 고용에 강조를 두며, 전이작업장은 경쟁고용에 있어서 재고용의 목적을 둔 직업적 재적응과 전이고용에 강조를 둔다. 강영임, “장애인 보호작업장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30쪽, 원광대학교 사회복지학 석사학위논문 (2007. 10.).

632)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의 노동시설 전이 활성화 방안” (2016). 34.

633)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앞의 글, 37.

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된 것이다.⁶³⁴⁾ 이러한 문제는 외국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하고 있으며,⁶³⁵⁾ 대다수의 장애인들이 평생 보호작업장에서 사회와 동떨어져 생활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선훈련 후배치’라는 체계상의 문제에서 기인한다는 지적이 있으며, ‘선배치 후훈련’을 통해서 일반고용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경청할 만하다.

(3) 제언

장애인 보호작업장에 대해서는 찬반론이 엇갈리고 있는 실정이다. 보호작업장이 장애인들을 사회로부터 격리시켜 차별하고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해도 되는 합법적 기구로 전락했다고 보아야 할 것인지, 그나마 장애인들을 보호하면서 이들에게 고용의 기회를 제공하는 시설로 보아야 하는지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일반경쟁고용시장에 취업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 보호된 작업환경 속에 직업재활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장애인에게는 직업재활 및 근로활동을 통한 소득보장기회를 제공하고, 그 가족에게는 부양의무 경감 및 경제활동 기회를 증진하며, 사회적으로는 경제활동인구 증가에 따른 경제적 활력 제고 및 사회통합의 기회가 증가할 수 있게 된”다는 정부의 의견이 아주 틀린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하여, 현재 생산직 중심의 단순 반복 작업⁶³⁶⁾이 주를 이루는 현행 보호작업장 제도를 그대로 방치할 수만은 없다. 중증장애인은 자활과 거리가 먼 단순 반복 작업과 낮은 임금 속에서 신음하고 있으며, 정부 또한 낮은 생산성을 보조하기 위해 지급되는 상당한 규모의 지원금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634) 정다운, “중증장애인 노동권 실태와 개선 방향”,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2018).

635) Brennan-Krohn, Zoe, “Employment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A Role for Anti-Subordination”, 51 Harvard Civil Rights-Civil Liberties Law Review (2016), 239

636) 자신의 기술수준에 비교한 현재 일의 난이도와 관련하여, 조사결과, 근로장애인 자신이 가진 기술수준에 비해 현재 하고 있는 일이 쉽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의 기술수준에 비해 현재 하고 있는 일이 매우 쉽다고 응답한 경우가 27.9%, 쉬운 편이라는 응답이 21.8%로 전체 가운데 약 5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의 노동시설 전이 활성화 방안” (2016), 37].

또한, 미국 버몬트 주의 경우 보호작업장 폐쇄 이후, 보호작업장을 나온 장애인의 80%가 고용되어 최저임금을 웃도는 임금을 받고 있고, 작업장 폐쇄에 반대하던 부모들도 자신의 자녀가 일반 노동시장에서 활기차게 일을 하는데 만족해한다고 한다. 또한, 과거에는 특수학교를 졸업한 장애인들이 자동으로 보호작업장으로 직행했는데, 보호작업장이 폐쇄된 후에는 자연스럽게 다른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직업을 찾거나 상급 학교 진학의 길을 찾는다고 한다.⁶³⁷⁾

결국 모든 일터가 중증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장애인의 사회 통합이 가능하다. 중증장애인을 한데 모아 그들만이 노동하는 사회 배제적인 정책은 중증장애인 노동의 유일한 대책일 수 없다.⁶³⁸⁾

장애인 보호작업장의 문제는 보호작업장에 대한 찬성/반대, 보호작업장의 유지/폐지라는 일차원적 시선에서 접근할 사안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장애인 보호작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은 탈시설,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문제와도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선 현재 틀 안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개선책으로는 훈련기간의 제한이 있다. 장애인 보호작업장은 고용과 동시에 훈련의 기능을 가짐은 전술한 바와 같으나, 고용과 훈련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문제가 있다. 즉, 훈련기간을 몇 개월 또는 몇 년으로 제한하고, 훈련기간 종료시에는 일반고용으로 전이되도록 하는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또한, 궁극적으로는 장애인 보호작업장이라는 틀을 벗어난 대안의 마련이 시급하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중증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사회적 활동을 종합적인 직무로 구성하여 그 업무를 신규 ‘사회적 공공일자리’로 만들 것을 요구하고 있다.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통해 중증장애인을 직접 고용하고, 직무로써 국민이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할 책임을 수행하도록 하는 공익적 성격의 일자리이다.⁶³⁹⁾ 즉, 무조건적으로 기존 노동 환경 하에서의 ‘생산자’ 역할을 가용할 것이 아니라, 장애인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장애인이 할 수 있는 일 가운데

637) Stockton, Halle, “What Happens When Sheltered Workshops Close?”, (2014).

638) 정다운, 앞의 글.

639)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1만개 도입을 위한 5W1H 토론회” (2018), 14.

사회에 보탬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준으로 하여 고유의 업무를 개발하고, 직무 교육을 강화해자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정책 수립과 관련된 전문 인력, 직무 관련 교육 인력, 업무시 보조 인력 등 추가 고용 창출도 기대할 수 있다.

결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미래지향적인 장애인 보호작업장 기능, 역할 모델에 기존에 장애인 보호작업장의 틀을 뛰어넘은 대책이 담겨야 할 것이며, 사회통합적 관점에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바. 실업률 격차 해소를 위한 조치 및 장애 여성 고용 관련

(1) 정부의 이행 현황

고용노동부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실업률 격차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과 장애 여성의 고용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권고한 최종건해에 대한 수용의사를 밝혔다. 이를 위해,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취업지원 강화(장애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취업지원, 장애 고교생 직업진로를 위한 ‘Work together 센터’ 사업 확대(‘16년: 진로설계컨설팅 2,000명, 사회성훈련 500명 → ‘17년 진로설계컨설팅 3,000명, 사회성훈련 600명), 중증장애인 사전 현장훈련 후 고용과 연계하는 지원고용 실시 및 장애인 훈련인프라 확대 및 장애여성 고용 확대(‘17년 발달장애인훈련센터 2개소(광주, 대구) 및 맞춤형훈련센터 2개소(천안, 창원) 신설, 기업 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훈련’(5개 직업능력개발원, 서울 맞춤형훈련센터))를 진행하고 있음을 밝혔다.

또한, 중증장애인 장애 유형별 특화훈련을 실시, ‘16년부터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증여성 장애인의 고용을 유도하기 위해 고용장려금 지급단가 인상(50만원→60만원), 여성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한 적합 직무 발굴(면세점 상품 판매원, 온라인 쇼핑 상품 분석가 등)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행계획으로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장애인에 대한 취업 지원을 강화, 장애인 직업훈련시설 확충 등 직업훈련 인프라 확대 추진, 장애 여성을 위한 적합 직무 지속적 발굴, 장애 여성을 채용하는 사업주에 대한 용자지원 시 우대 조치 시행을 제시하였다.

(2) 정부의 이행 현황에 대한 평가

(가) 장애인 고용 현황

2017년 기준 장애인의 경제활동상태는 아래 표와 같다.⁶⁴⁰⁾

구 분	15세이상 인구	경제활동인구			비경제 활동인구	경제활동 참가율	실업률	고용률
		계	취업자	실업자				
장애인구	2,460,080	953,008	898,475	54,533	1,507,072	38.7	5.7	36.5
남 성	1,424,442	705,002	666,078	38,924	719,440	49.5	5.5	46.8
여 성	1,035,638	248,006	232,397	15,609	787,632	23.9	6.3	22.4
15~29세	131,051	41,705	37,626	4,079	89,346	31.8	9.8	28.7
30~39세	149,078	84,203	78,524	5,400	65,055	56.4	6.5	52.7
40~49세	296,422	175,743	167,568	8,175	120,679	59.3	4.7	56.5
50~59세	513,567	282,926	270,027	12,899	230,641	55.1	4.6	52.6
60세이상	1,369,963	368,612	344,730	23,882	1,001,351	26.9	6.5	25.2
전체인구	43,735,000	27,828,000	26,824,000	1,003,000	15,907,000	63.6	3.6	61.3
남 성	21,452,000	15,986,000	15,388,000	598,000	5,466,000	74.5	3.7	71.7
여 성	22,283,000	11,842,000	11,436,000	405,000	10,441,000	53.1	3.4	51.3
15~29세	9,376,000	4,489,000	4,070,000	419,000	4,887,000	47.9	9.3	43.4
30~39세	7,491,000	5,820,000	5,636,000	184,000	1,671,000	77.7	3.2	75.2
40~49세	8,312,000	6,743,000	6,589,000	154,000	1,569,000	81.1	2.3	79.3
50~59세	8,247,000	6,399,000	6,252,000	147,000	1,848,000	77.6	2.3	75.8
60세이상	10,308,000	4,378,000	4,278,000	100,000	5,930,000	42.5	2.3	41.5

장애인의 실업률은 5.7%로 2011년도 장애인 실업률 6.2%에 비해 다소 감소하였으나, 전국 실업률 3.6%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는 과거에 비해서 크게 개선된 수치이기도 하다. 장애인의 실업률은 2011년 7.78%, 2014년 6.16% 등으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며, 특히 2017년의 임금 근로자 비율이 2014년에 비해 9.1% 포인트 증가하였고, 비임금 근로자 비율은 2014년에 비해 9.1% 포인트 감소하여 임금 근로자의 지속적인 증가 경향

640) 한국장애인고용공단, “EDI 2017 장애인통계” (2017), 65.

을 보인다는 점은 고무적인 결과로 평가된다.⁶⁴¹⁾

한편, 여성 장애인의 실업률이 6.3%, 남성 장애인의 실업률이 5.5%로 여성 장애인의 실업률이 더 높은 점은 개선이 필요한 대목이다. 특히 여성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3.9%에 지나지 않아, 남성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가율(49.5%)의 절반 이하의 수치를 보이고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53.1%) 자체가 남성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가율(74.5%)보다 낮기는 하나, 취약계층인 여성 장애인에의 경제활동 참가율 저하가 두드러지는 점은 주목해야 한다.

(나) 정부가 시행중인 각종 정책

1) 장애학생 맞춤형 일자리 및 취업지원 확대 방안⁶⁴²⁾

교육부는 대학 내 일자리 35명, 지역사회 일자리 580명, 그리고 재정지원 일자리에 1,500명 등 장애학생 2,115명에게 맞춤 일자리를 발굴,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보호작업장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단순 노동을 벗어나, 일반인들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일터(대학 등)에서 구체적인 채용 계획이 세워졌다는 점이 높게 평가된다.

지역사회 일자리는 교육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립특수교육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애인개발원 등과 연계하여 발굴 및 알선이 이루어지며, 산업체 현장에서의 직무 훈련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는 재정지원 일자리와 달리 민간이 직접 고용에 따른 재정적 책임을 지는 일자리인데, 장애인 개인 및 고용주의 자립이라는 관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2) Work Together 사업

Work Together 사업은 비장애 청년에 비해 장애로 인해 구직활동에 있어 탐색비용(search cost)이 크고 현장경험(work experience)이 부족하여 취업경쟁력이 떨어지는 청년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해 시작되었다.⁶⁴³⁾ 2013년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되었으며, 2016년 진로설계컨설팅 2,000명, 사회성훈련 500명이라는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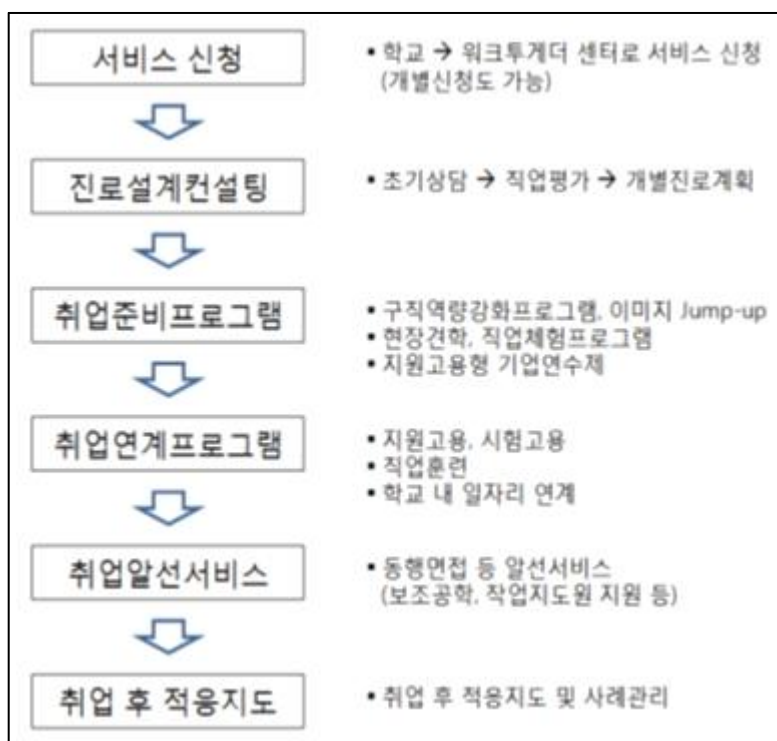
64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2017), 29.

642) 교육부, “보도자료, 장애학생 맞춤 일자리 늘린다” (2018).

643) 유은주, “워크투게더센터 사업 발전방안”,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013).

도 성과를 냈고, 2017년에는 진로설계컨설팅 3,000명, 사회성훈련 600명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다.

Work Together 사업이 지원하는 취업지원서비스는 아래와 같은 흐름으로 제공된다.



진로설계컨설팅을 통해서 초기상담과 직업평가가 이루어지고 이를 바탕으로 각 학생별로 개별고용계획(Individualized Plan for Employment :IPE)이 최종적으로 수립된다. 개인별 맞춤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장애학생 개인의 특성과 욕구에 맞는 진로를 설정할 수 있는 것이다.

진로설계 이후에는 취업전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취업전프로그램은 다시 취업준비프로그램과 취업연계프로그램으로 나뉜다. 취업준비프로그램은 장애학생의 취업욕구를 증진시키고 취업기술 및 취업자신감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취업준비프로그램에는 구직역량강화프로그램, 이미지 JUMP-UP, 현장견학 및 직업체험프로그램, 지원고용형 기업연수제 등이 포함되어 있다.

취업연계프로그램은 지원고용, 시험고용, 직업훈련, 학교 내 일자리 사업 등과 연계되어 제공된다. 취업 후에도 취업 후 1개월 이내에 반드시 1회 이상 적응지도 훈련이 실시된다.

3) 지원고용사업⁶⁴⁴⁾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고용사업도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

지원고용이란 중증장애인을 지역사회 사업체에 배치하여 일정기간 현장훈련을 실시, 직무지도원이 직무기술습득 및 적응능력 향상을 위해 계속적 지원을 하여 일반고용으로 유도하는 직업재활사업을 의미한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3조). 이를 확대하기 위하여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원고용을 실시하고자 하는 장애인복지관 및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단체, 사회복귀시설, 정신보건센터, 자립생활지원센터, 일반종합사회복지관 등을 지원하는 사업(중증장애인 지원고용확대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지원고용 훈련생인 중증장애인은 (i) 지체장애, 청각장애, 신장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요루 장애 1~2급 또는 (ii) 지적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자폐성장애, 심장장애, 정신장애, 간질장애, 호흡기장애 1~3급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지원고용사업은 중증장애인에게 직무지도원이 배치되어 직업 적응을 돕는 것이 특징이다. 직무지도원은 장애인복지관 5급 직원 또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직업훈련교사가 담당하는 것이 원칙이며, 교통수단 등의 이용에 관한 지도, 직장내 기본 규칙에 관한 지도, 직장생활을 위한 일상생활관리에 관한 지도, 대인관계 및 직장적응에 관한 지도, 작업도구 및 보조구 사용방법에 관한 지도, 훈련직종에서의 직무수행에 대한 지도, 작업태도에 관한 지도, 훈련사업체 담당자 및 보호자와의 협력관계 유지, 훈련일지 등 지원고용진행과정 기록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4) 장애여성 고용 확대

장애여성에게 취업은 경제적 자립의 필수적인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장애 여성의 고용 현황은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644) 한국장애인개발원, “2016년도 중증장애인 지원고용확대사업 안내지침” (2016).

장애여성은 장애 차별과 성차별이라는 이중적인 차별에 노출되어 있으며, 경제의 성장잠재력 저하와 전반적인 고용 위축에 따라 다른 집단에 비해 실업의 위험을 경험할 가능성이 크다.⁶⁴⁵⁾

이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 2012년부터 장애여성 적합직무를 개발, 보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면세점 서비스원, 바이럴 마케터, 방송제작 지원가, 상품정보 분석가, 임상연구 사무원, 조사보조원, 네일 아티스트 등이 있다.

외국의 경우에도 장애여성의 특성을 반영한 직종이 개발되고 있다. 독일의 “Discovering Hands”가 대표적인데, 촉각이 뛰어난 시각장애여성이 유방암 촉진 검사를 하는 직종이다.⁶⁴⁶⁾ 일반 여성이 감지하여 발견하는 종양의 크기는 1~2cm 정도인 반면, 훈련된 여성 시각장애인은 0.6cm 정도의 작은 종양도 발견할 수 있다고 한다. 일본에서 시행되고 있는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 제도, 지역사회 일자리 “커뮤니티 키친 포럼”도 여러 차례 매스컴에 언급되며 주목을 끈 바 있다.⁶⁴⁷⁾

(3) 제언

최근 장애인 실업률 감소 추세에 비추어, 정부가 시행중인 각종 정책은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정부가 답변한 바와 같이, 중증장애인 장애 유형별 특화훈련, 고용장려금 지급단가 인상, 여성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한 적합 직무 발굴 등의 사업을 추진하면 더 큰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중고령 여성 장애인의 취업 지원에 대한 대책은 다소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장애의 고령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중고령 장애인들은 장애와 고령이라는 이중적 차별에 놓여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들에게 특화된 교육 훈련과정을 개설하고, 중고령 여성 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한 취업 연계서비스를 활성화시켜야 한다.⁶⁴⁸⁾

645) 한국장애인개발원, “2016년도 중증장애인 지원고용확대사업 안내지침” (2016).

646) 이코노믹리뷰, “손끝으로 암을 진단하는 시각 장애인”, (2016. 5. 24. 06:39), <http://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289564>.

647) 매일경제, “노인 일자리 만들어 고령화위기 극복한 日도시재생”, (2018. 3. 20. 17:44),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9&aid=0004118686>.

648) 최운정의 2, “중고령 여성장애인의 취업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장애와 고

사. 장애인의무고용제도의 시행 보장 및 고용 성과 관련 통계 발간

(1) 정부의 이행 현황

고용노동부는 장애인의무고용제도의 효과적인 시행을 보장하고, 아울러 고용 부문에서 성과에 대한 관련 통계를 발간할 것을 요청하는 최종견해에 대한 수용 의사를 밝혔다.

현재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이행을 강화('16년 의무고용 대상 사업체 28,708개소의 장애인 근로자는 168,614명, 장애인고용률은 2.66%로 의무고용 이행지도를 통해 최근 지속 상승)하고 지속적으로 장애인고용 이행을 독려하기 위해 의무고용률을 상향 조정하고 장애인 고용 저조기업 명단공표를 실시(연 2회)하고 있으며, 장애인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 등을 통해 장애인 고용상황을 반영한 「장애인 의무고용현황('16년 2회)」,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16년)」, 「기업체장애인고용실태조사('16년)」결과 등을 발간, 실태조사를 매년(기존 2년에 1번) 실시하도록 법 개정 중임을 알렸다.

향후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이행하고, 정기적으로 통계를 발간할 것을 제시하였다.

(2) 정부의 이행 현황에 대한 평가

(가) 장애인의무고용제도의 시행

장애인의무고용제도는 사업주에 대한 강제할당에 의해 사업체에서 장애인의 일자리를 확보하고, 그 일자리를 통해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운 장애인의 고용증가를 도모하고자 하는 정책이다.⁶⁴⁹⁾ 이는 1990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법') 제정으로 도입되었으며, 국가, 지방자치단체,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의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에게 일정비율 이상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2.9%(2019년 이후 3.1%) 공공부문의 경우 3.0%(2019년 이후 3.2%)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

용 (2014), 20.

649)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의무고용제도 재설계 방안” (2008).

하여야 한다(「장애인고용법」 제28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2호, 제3호).

정부는 이 규정을 지키지 못한 기업체에 대해서는 의무고용률과 실제 고용률 간의 차이에 대해 부담금을, 의무고용률을 초과달성하는 경우는 고용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장애인고용법」 제30조, 제33조).

(나) 장애인 고용 현황

2016년 및 2017년 12월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은 아래와 같다(2018. 5. 10.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발췌).

구분	2016년 12월				2017년 12월				증감	
	대상 사업체	상시 근로자	장애인	고용률	대상 사업체	상시 근로자	장애인	고용률	장애인	고용률
합계	28,708	7,852,861	209,260	2.66	28,018	7,912,772	218,441	2.76	9,181	0.10
정부 (공무원)	313	852,554	23,958	2.81	314	861,388	24,831	2.88	873	0.07
정부 (근로자)	294	277,048	11,609	4.19	295	275,087	12,685	4.61	1,076	0.42
공공 기관	596	440,748	13,064	2.96	625	458,031	13,853	3.02	789	0.06
민간 기업	27,505	6,282,511	160,629	2.56	26,784	6,318,266	167,072	2.64	6,443	0.08

2017년 기준 2016년 대비 고용률이 0.1% 증가하였으나, 법정 기준인 2.9%(또는 3.0%)에는 못미치는 수준이다.

한편, 의무고용 대상 사업체 중 의무고용 이행 사업체 비율을 의미하는 이행비율은 46.1% 수준이다.

(다) 문제점

1) 대기업의 사회적 약자 배려 결여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2017년기준 100~299인 사업장의 장애인 고용률은 3.04%였으나 300~499인 2.88%, 500~999인 2.83%, 1천인 이상은 2.24%, 자산총액합계 10조원 이상인 대기업 집단의 장애인 고용률은 2.04%를 기록하였다.⁶⁵⁰⁾

즉, 기업규모가 클수록 장애인 고용률이 떨어지는 것으로 파악된다.

2) 공공기관의 장애인 채용 부진

공공기관의 경우 장애인 근로자는 12,131명, 고용률은 3.02%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나, 의무 이행비율은 55.7%로 여전히 저조하다.

의무고용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중앙정부기관 42개 중 41개 기관(97.6%), 광역지자체기관 156개 기관 중 152개 기관(97.4%), 기초지자체기관 88.2%(2319개 기관 중 2046개 기관의 준수율을 보이고 있어, 한국의 경우와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⁶⁵¹⁾

3) 명단공표의 실효성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 고용 의무를 현저히 불이행하면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장애인고용법」 제29조 제3항). 이에 고용노동부는 매 반기마다 “장애인고용 저조기업 및 기관 명단공표”를 하고 있다.

하지만, 대표적인 헌법기관이 3년 연속 장애인고용 저조 기관 명단에 오르는 등,⁶⁵²⁾ 명단 공표가 실효적인 제재수단으로 기능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라) 개선 방안

정부는 위와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고용노동부가 2018. 4. 19. 공표한 양질의 일자리 확대와 격차 해소를 위한 장애인 고용대책인 제5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2018~2022)에 따르면, 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대안이 제시되었다.

650) 연합뉴스, “큰 회사일수록 장애인 고용 외면…대기업 고용률 2.0% ‘최저’”, (2018. 4. 15. 10:30),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4/15/0200000000AKR20180415015200004.HTML>

651) 유아마 아쓰시, “일본의 장애인 고용할당제와 장애인 고용”, 국제사회보장리뷰 2018 봄호 Vol 4. (2018).

652) 매일노동뉴스, “국회 3년 연속 ‘장애인 고용 저조’ 명단 올라”, (2017. 11. 10. 08:00),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7900>.

1) 기업규모별 부담금 차등제 도입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 사업체의 경우 기업규모가 커질수록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점을 감안, 의무고용 이행비율이 낮은 기업이 부담금을 더 많이 내도록 의무 미이행 수준별 부담금을 차등 적용하여 가산율을 상향 조정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이에 (i) 의무고용률 25% 미달인 기업은 종전 부담기초액(최저임금 60%)에 50% 가산 (ii) 의무고용률 25~50%인 기업은 부담기초액에 30%를 가산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특히 장애인고용이 저조한 대기업에 대해서는 평균 임금과 최저임금 간 격차 심화를 고려, 부담기초액을 차등 적용하게 되었다.

2) 공공기관 의무고용 전면 확대

현재 50인 이상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의무이행을 규모에 관계 없이 전면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행정안전부의 부처별 정부혁신평가시 소속 기타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실적도 반영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장애인공단에 공공기관 전담 TF를 구성, 기타공공기관, 지방출자·출연기관 등 고용의무 불이행기관을 중점 지도하는 방안이 채택되었다.

3) 명단공표의 실효성 제고

명단공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i) 장애인 접근성이 큰 기관(장애인복지관, IL센터 등)에 지역 내 장애인고용 저조기업 명단을 게시하고 (ii) 일반국민 대상 관심도 제고를 위해 포털사이트, 일간지 및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 명단이 게시될 예정이다.

또한, 장애 친화성 지수가 높은 기업을 저조기업 명단공표시 함께 발표함으로써 기업의 자발적인 장애인 고용 확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3) 제언

현재 5년 연속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므로, 정부의

장애인의무고용제도 시책은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특히 5년마다 장애인 고용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i) 현주소 점검 (ii) 여건 전망 (iii) 분야별 추진과제 (iv) 향후 추진계획 (v) 추진일정을 비교적 상세히 기재하였다는 점에서, 장애인의무고용제도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 어느 정도 노력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또한 관련 통계 자료도 충실한 편이었으며, 실제 검색 결과 고용노동부 정책자료실,⁶⁵³⁾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통계자료실,⁶⁵⁴⁾ 국가통계포털 등을 통해 각종 통계에 대한 접근이 상당히 수월한 편이었다.⁶⁵⁵⁾ 다만, 통계의 정확성 및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의식을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각 통계 수치에는 설문 대상 및 산출 근거를 명확히 표기해야 할 것이다.

다만 아직 의무고용 이행비율이 46.1%로 낮은 것이 문제인데, 법정 의무고용률의 상승 과정에서 나타나는 과도기적 상황으로 보인다. 위에서 언급한 보충급여제 등이 도입된다면 기업이 장애인을 고용할 유인도 커질 것이므로, 향후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 보인다.

24. 제28조 적절한 생활수준과 사회적 보호

가. CRPD 제28조

제28조 적절한 생활수준과 사회적 보호

1. 당사국은 적절한 수준의 의식주를 포함하여 장애인 자신과 그 가족이 적절한 생활수준을 유지하고 생활 조건을 지속적으로 개선시킬 장애인의 권리를 인정하며,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없이 이러한 권리의 실현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2. 당사국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없이 장애인이 사회적 보호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는 점과 이러한 권리의 향유를 인정하며, 다음의 조치를 포함하여 이러한 권리의 실현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653) 고용노동부 정책자료실, “제5차 장애인고용촉진 기본계획”
http://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180400811.
 654)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통계자료실”
https://www.kead.or.kr/common/comm_board.jsp?main=4&sub1=4.
 655)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index/index.do>.

- 가. 정수(淨水) 서비스에 대하여 장애인에게 동등한 접근을 보장하고, 장애와 관련된 욕구를 위한 적절하고 감당할 수 있는 비용의 서비스, 장치 및 그 밖의 지원에 대한 접근을 보장할 것
- 나. 장애인, 특히 장애여성, 장애소녀 및 장애인에 대하여 사회보호 프로그램과 빈곤감소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을 보장할 것
- 다. 빈곤상태에 있는 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적절한 훈련, 상담, 재정지원 및 일시적인 보살핌을 포함하여 장애 관련 비용이 수반되는 국가 지원에 대한 접근을 보장할 것
- 라. 공공주택 프로그램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을 보장할 것
- 마. 퇴직연금과 프로그램에 대한 장애인의 동등한 접근을 보장할 것

나. 최종견해와 쟁점 목록

(1) 최종견해

- 최종견해
- 53. 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일정 수준의 소득 또는 재산을 보유한 가족구성원이 있는 장애인의 경우, 최저생계비 지원혜택에서 배제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또한 위원회는 최저생계비 지원혜택 대상자 기준이 기존의 장애등급제에 기초하고 있고 “중증장애인”에 한정된다는 사실에 우려를 표한다.
 - 54. 위원회는 당사국이 장애등급제와 가족의 소득 및 재산이 아닌, 장애인당사자의 특성, 상황 및 필요에 따라 최저생계비를 지원할 것을 권고한다.

(2) 쟁점목록

- 쟁점목록
- 1. 당사국의 높은 생활비를 책임지기 위한 장애수당 및 장애연금 금액 증가와 관련하여 장애 수입 및 사회보장정책을 검토할 계획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라.

(3) 실태조사의 대상 쟁점

제28조에서는 장애인당사자의 특성, 상황 및 필요에 따른 최저생계비 지원을 중심으로 살펴 본다.

다. 장애인당사자의 특성, 상황 및 필요에 따른 최저생계비 지원 관련

(1) 정부의 이행 현황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당사자의 특성, 상황 및 필요에 따른 최저생계비의 지원을 권고하는 최종견해에 대해 불수용 의사를 밝혔다.

이에 대해 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여러 지원에도 불구하고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지원하는 최후의 사회안전망이므로 장애인 등 특정 계층에게만 지원체계를 달리하기는 곤란한 점 ②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은 가구 단위를 기준으로 소득인정액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 모두를 충족할 경우 해당급여의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장애인의 장애등급제와는 관련이 없고,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가족구성원은 소득·재산을 함께 사용하는 것이 당연한 점 ③ 장애당사자의 특성·상황·욕구 등에 따른 추가 지출에 대하여는 장애인 연금·장애수당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장애인연금, 장애수당은 수급자의 소득에서 제외하는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상의 소득 산정 시 이미 고려하고 있는 점을 그 이유로 들고 있다. 또한, 권고 이행에는 세밀한 욕구 분석 및 그에 따른 지원 체계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므로 별도의 지원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한편, 최종견해 및 쟁점목록에는 장애 수당 및 연금 금액과 관련한 지적만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CRPD 제28조는 현금급여 이전에 “적절한 생활 수준” 자체에 대한 논의가 본질을 이룸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즉, 최저생계비 등 급여에 관한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해당 급여가 각종 지원 및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과 더불어 적절한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에 해당함을 인식하고, 급여의 지급을 통해 장애인의 적절한 생활 수준이 어떻게 담보될 수 있는지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또한, 본 보고서의 성격상 CRPD 제28조의 내용을 모두 다루지는 못하지만, 각종 서비스 및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에 대한 고민도 아울러 이루어져야 함을 밝힌다.

(2) 정부의 이행 현황에 대한 평가

(가)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기 위한 제도이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기초생활보장법」”) 제1조).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수급권자가 그 대상인데, 수급권자란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본단위는 개별가구인데, 개별가구란 (i)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본인) (ii) (i)의 배우자 (iii) (i)의 미혼 자녀 중 30세 미만의 사람 (iv) (i)과 사람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구성된 가구를 의미한다(「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8호, 동법 시행령 제2조). 다만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등은 개별가구의 구성원에서 제외된다(「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4호, 동법 제32조 제1호,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1호).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로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등이 있는데(제7조 제1항 각호), 이 중 생계급여는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이다(제8조 제1항).

「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를 받으려면 (i)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자로서, (ii)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

(i) 소득인정액과 관련하여, 「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이른바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정하고,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과 생계급여 선정기준의 차액을 보충급여로 지급하고 있다.⁶⁵⁶⁾ 즉, 생계급여 선정기준에 따른 금액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생계급여 선정기준만큼의 지출수준을 유지시켜 준다는 의미에서 생계급여 선정기준과 소득인정액의 차이만큼을 보조해줄 뿐이다.⁶⁵⁷⁾ 소

656) 보건복지부, “2018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2018), 17.

657) 참여연대, “최저생계비를 둘러싼 오해와 진실” (2010. 07. 06. 18:48)
<http://www.peoplepower21.org/Welfare/669985>.

특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할 경우 생계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다.
 2018년 기준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다.

[표-59] 2018년도 생계급여 선정기준 및 급여기준

(단위 : 원)

구분	1명가구	2명가구	3명가구	4명가구	5명가구	6명가구	7명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	501,632	854,129	1,104,945	1,355,761	1,606,576	1,857,392	2,108,208

우선 생계급여액 자체가 낮다는 문제가 있다.⁶⁵⁸⁾ 또한 생계급여와 관련된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ii) 부양의무자 조항이 있는데, 이는 항을 바꾸어 살펴보도록 하겠다.

(나) 생계급여와 부양의무자 조항

전술하였듯,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 만이 생계급여의 수급 대상이 된다. 즉, 부양의무자가 없으면 본인의 소득과 재산만으로 수급자격요건을 따지나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여부, 즉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수급자격여부가 가려진다. 여기서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5호).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여부는 수급권자의 소득과 마찬가지로 보장기관의 조사로 파악하며,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는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신용정보 중 채무액금융거래,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신용정보, 보험정보 등의 정보를 낱낱이 볼 수 있는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기초생활보장법」 제21조 제3항). 부양의무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보장기관은 수급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 제8항).

「기초생활보장법」이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수급자격요건으로 삼고 있

658) 한국일보, “기초생활수급자 가계부, 매달 17만원 ‘구멍’” (2018. 05. 16. 19:00)
<http://www.hankookilbo.com/v/4f3a46ffe09e4286b958854a259940c2>.

는 것은,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있으면 “부양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 문이다. 실제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수급신청자는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있 어도 부양받을 수 없는” 사정을 입증해야 한다. 즉,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 해 체”상태로 정상적인 가족기능을 상실하여 정서적, 경제적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수급(권)자가 소명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생계급여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가족관계 해체” 여부는 생계급여 수급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정의 규정은 관련 법령은 물론, 유관기관의 고시나 지침에 서조차 찾을 수 없다. 유일한 단서인 보건복지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서에서는 “가족관계 해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가족관계 해체”는 가족 관계의 기능을 상실하여 보편적이고 정상적인 가족 관계에서 작동하는 정서적 지지, 경제적 지지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에 대한 소명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 등 종합적인 판단을 위한 용 어임.

또한, 위 사업안내서에서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의 확인(인정)은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와의 관계에 대한 가족기능 작동여부 등 의 판단이라는 보장기관의 재량행위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판례도 “부양을 기피 또는 거부하는 경우는 법 제5조 제1항의 수급권 발생요건이자 동법 제30조 제1 항 제1호가 규정한 급여중지의 장애사유가 된다는 점에서 수급자에게 입증책임 이 있다고 할 것이다.”고 보아 동일한 입장이다(전주지방법원 2012. 6. 19. 선고 2011구합3002 판결).

결국, 수급권자의 요건과 관련된 여러 조항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부양의무자 와 관련해서는 뚜렷한 기준 없이 “가족 간의 정서적, 경제적 지지”에 대한 보장 기관의 재량 판단에 의해 생계급여 수급 여부가 결정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장애인과 관련하여 부양의무자 조항은 더욱 가혹하게 작용한다. 우선, 현 체제는 장애인 고유의 특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 전액을 부양 능력이 있 는 부양의무자에게 일차적으로 전가하는 형태로 되어 있다. 이는 인간다운 생활 을 할 권리(헌법, 제34조 제1항)에서 파생되는 기초생활수급권의 청구권적 성 격에 반하는 것이다. 독일의 경우, 중산층 가족에 장애아가 태어나서 생계계 된 수발 비용이 그 가족의 생활 수준을 빈곤선 이하로 끌어내릴 가능성이 생긴다면,

장애자녀 수발 비용을 공공보호 차원에서 부담하게 된다. 이로 인하여 수많은 가족들이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빈곤에 빠지게 되는 위험에서 해방될 수 있다.⁶⁵⁹⁾ 또한, 장애가정 특유의 비용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장애가정에 대한 실질적인 차별기제로 작용하고 있다.

(다) 장애인 가구⁶⁶⁰⁾에 대한 개별화된 급여수준 결정의 필요성

Kuklys(2004)는 동일한 자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그 자원을 기능으로 전환하는 정도가 다르다고 하면서, 여기에는 사회적·환경적·개인적 전환 요인들과 소득의 함수인 능력의 차이 때문이라고 보았다. 능력 관점(capability perspective)에서 보면 장애인은 성취할 수 있는 기능의 수준이 낮을 뿐 아니라 잠재적 기능의 범위도 줄어들기 때문이 낮은 능력을 갖게 된다. 따라서 장애인은 동일한 소득 수준인 비장애인에 비해 자원을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에 사용하여도 삶의 수준이 낮을 가능성이 높다. 다시 말하면 동일한 삶의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에게는 비장애인보다 더 많은 자원을 필요로 하게 된다. 따라서, 장애인 가구의 특성과 이를 고려한 개별화된 급여수준 결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각 개인은 개별적인 사정에 따라 다르므로, 급여 지원도 개인적인 조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스웨덴의 경우, 급여 지급시 생계지원의 범위와 생계 외 기타생활비의 범위에 있는 여타의 지원 중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를 개별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적인 결정이 이루어진다. 기준은 있되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사례별 합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고, 일종의 포괄범위와 상한액의 상정이라 할 수 있다. 개별 가구는 생계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급여, 금융자산, 임대료영수증, 주거수당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자격요건에 부합하여야 수급이 가능하다.⁶⁶¹⁾ “가족 관계의 해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 부양의무자의 존재를 부정하여야 수급이 가능한 국내와 다

659) 김태완외 20, “2017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및 평가연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46.

660) 2017년 기준,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 대상인 1,032,996가구 가운데 장애인세대는 197,081 세대로 약 19%를 차지한다.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60.

661) 임완섭외 7, “각국 공공부조제도 비교연구(스웨덴 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116.

른 접근이라 하겠다. 유사한 자료를 제출하더라도, 어떤 목적으로 자료를 제출하는지에 따라서 해당 국가 내지 기관이 제도를 바라보는 시각이 확연히 다를 수 있는 대목이다.

개인의 욕구와 바람직한 생활수준은 깊은 관련성이 있으며, 시대상황과 개인의 요구는 다양하므로 상황에 따라 무엇이 바람직한 것인가를 고민하여야 한다. 사회부조의 자격은 소득의 단절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개인의 욕구에 기초한다. 스웨덴 사회서비스법은 모든 개별 가구의 사례에 대한 광범위한 개인욕구평가(Individual assessment of the extent of the need)를 의무화한다. 모든 평가는 개인과 가족의 전체적인 상황에 대한 통합적 관점을 특징으로 한다.⁶⁶²⁾

물론,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분야 복지 지출이 증가될 필요가 있다. 한국의 장애인복지 지출 비중(0.6%)은 OECD 평균 2.1%의 28.6%에 불과한 수준으로, 이 수치는 OECD 국가들과 비교해 봤을 때 칠레, 터키 등과 함께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특히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에 따르면, 한국은 현금급여 수준이 2004년부터 최근 2013년까지 0.4%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적 기준에 크게 못미치는 것이라고 한다. 장애인복지 지출, 특히 현금급여를 증가시킴으로서 장애인 가구에 대한 개별화된 급여 수준에 부합하는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3) 제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장애인 등 특정 계층에게만 지원 체계를 달리하기는 곤란한 점은 인정할 수 있으나, 현행 제도의 틀 안에서도 해결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아래 방법을 통해 개별적으로 장애인 추가비용을 산출하여 현행 생계급여제도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우선, 장애인 추가비용을 장애인 가구의 생계급여 선정기준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장애인 가구는 비장애인 가구보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의 선이 상승되기 때문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는 생계급여에 장애인 추가비용을 포함시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다.⁶⁶³⁾

662) 인완섭외 7, 앞의 글, 117.

또한, 수급대상자 선정기준 중 부양의무자의 소득평가액을 산정할 때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을 반영한 금품에 장애 관련 추가 비용 전체를 반영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 장애인 가구의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장애인 추가비용을 제한 금액이 될 것이다.

한편, 정부는 2017. 8. 10.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안에서 부양의무자 요건은 폐지되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요건 폐지의 대상에 들어가지 않았다. 장기적으로는 생계급여와 관련해서도 부양의무자 요건이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5. 제29조 정치 및 공적생활에 대한 참여

가. CRPD 제29조

제29조 정치 및 공적 생활에 대한 참여

당사국은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정치적 권리와 기회를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다음의 사항을 약속한다.

가. 장애인이 투표하고 선출될 수 있는 권리와 기회를 포함하여,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직접 또는 자유롭게 선택한 대표를 통한 정치 및 공적생활에 효과적이고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특히 다음의 사항을 통하여 보장할 것

- 1) 투표절차, 시설 및 용구가 적절하고, 접근가능하며, 그 이해와 사용이 용이하도록 보장할 것
- 2) 적절한 경우 보조기술 및 새로운 기술의 사용을 촉진하여, 장애인이 위협당하지 아니하고 선거 및 국민투표에서 비밀투표를 할 권리와, 선거에 출마하고 효과적으로 취임하여 정부의 모든 단계에서 모든 공적 기능을 수행할 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할 것
- 3) 유권자로서 장애인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보장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투표에 있어 장애인의 요청에 따라 그가 선택한 사람에 의하여 도움을 받도록 인정할 것

나. 장애인이 차별 없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공적 활동 수행에 효과적이고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하고, 다음을 포함한 장애인의 공적 활동에의 참여를 장려할 것

- 1) 국가의 공적·정치적 활동과 관련된 비정부기구 및 비정부단체와 정당 활동 및 운영에의 참여
- 2) 국제적, 국내적, 지역적 및 지방적 차원에서 장애인을 대표하는 장애인 단체의 결성과 가입

663) 김태완외 12, “2013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연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 376.

나. 최종견해 및 쟁점목록

(1) 최종견해

제29조 정치 및 공적 생활에 대한 참여

55. 위원회는 많은 투표소가 장애인에게 완전히 접근가능하지 않으며, 투표 관련 정보가 다양한 장애유형을 고려하여 모든 장애인에게 제공되지 않음에 우려를 표한다. 또한 위원회는 장애인들이 지속적으로 겪는 장벽으로 인하여, 정치활동 참여와 선거 입후보 비율이 저조한 점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아울러 위원회는 행위 무능력을 신고받은 자들의 투표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56. 위원회는 당사국이 장애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투표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투표 관련 자료가 모든 접근가능한 형식으로 제공되도록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위원회는 당사국이 선출기구에 대한 장애인의 참여를 증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아울러 위원회는 당사국이 투표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조항을 철회하고 장애 유형에 관계없이 투표권과 피선거권을 보장할 것을 권고한다.

(2) 쟁점목록

제29조 (정치 및 공적생활에 대한 참여)

30. 장애인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보장 여부와 이를 위한 구체적 조치를 설명하시오. 아울러 유권자가 투표시 보조인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3) 실태조사의 대상 쟁점

제29조 정치 및 공적생활에 대한 참여와 관련하여 검토할 정부의 이행현황은 투표권 및 선거정보접근권, 피선거권의 보장 여부, 피성년후견인에 대한 투표할 권리 및 입후보할 권리의 제한 등이다.

다. 투표권 및 선거정보접근권

(1) 정부의 이행 현황

(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최종견해에 대한 수용의사를 밝혔다.

(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행현황으로 ① 1층 투표소 또는 승강기 등 편의시설을 구비한 투표소를 마련하였고(제19대 대선 사전투표소 81.6%, 선거일투

표소 98.4%), ② 「공직선거법」 제65조(선거공보)를 개정하여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있어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을 의무화하였으며, ③ 장애유형별로 선거정보 제공 통로를 다양화하였다고 밝혔다.

(2) 현행 규정 및 실태

(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선거권 관련 주요 내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직선거후보자 및 정당은 장애인이 선거권, 피선거권, 청원권 등을 포함한 참정권을 행사함에 있어 차별하여서는 안 된다(제27조 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고(동조 제2항), 공직선거후보자 및 정당은 장애인에게 후보자 및 정당에 관한 정보를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수준으로 전달하여야 한다(동조 제3항).

(나) 「장애인복지법」의 선거권 관련 주요 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선거권을 행사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편의시설·설비를 설치하고, 선거권 행사에 관하여 홍보하며, 선거용 보조기구를 개발·보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제26조).

(다) 「공직선거법」의 장애인 선거권 관련 주요 내용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의 투표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선거인 또는 노약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제6조).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는 거소투표신고 절차를 거쳐 거소에서 투표할 수도 있다(제38조).

후보자는 선거공보 외에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공보를 책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이내에서 작성할 수 있다. 그러나 대통령선거·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경우 후보자는 의무적으로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책자형 선거공보에 그 내용이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하는 것으로 점자형 선거공보를 대신할 수

있다(제65조 제4항).

후보자는 방송광고 시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 또는 자막을 방영할 수 있다(제70조 제6항). 방송시설이 주관하는 후보자 연설의 방송에 있어서도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수화 또는 자막을 방영할 수 있다(제72조 제2항). 각급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자막방송 또는 수화통역을 할 수 있다(제82조의2 제12항).

투표소의 설비, 고령자·장애인·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투표소 접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제반 시설의 설치, 적절한 투표소 위치 확보 등의 조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제147조 제11항).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시각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를 할 수 없는 선거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수투표용지 또는 투표보조용구를 제작·사용할 수 있다(제151조 제8항).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제157조 제6항).

(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현황(선거관리위원회 답변)

2018년 6월 13일에 시행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이동편의차량, 투표보조용구 등이 제공된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장애유형	판단기준	투표소 지원	비고
시각	점자형 투표보조용구	전투표소	
청각	한국 수어통역사 배치	338명	한국농아인협회 추천인원 전원 배치
지체	이동편의 차량지원	전투표소	
	특수형 기표용구	전투표소	
발달	투표안내자료 (가이드북·리플릿)	전투표소	

「공직선거법」 제65조(점자형 선거공보 또는 접근성 바코드 삽입 의무) 준수 비율은 시·도지사 선거의 경우 71/71, 구·시·군의장 선거의 경우 748/749, 교육감 선거의 경우 57/59였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2에 따른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에서 수어통역 또는 자막이 제공 비율은 아래 표와 같다.

구 분	개최횟수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통역 제공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 제공	
		제공횟수	비율	제공횟수	비율
합 계	358	358	100%	272	76%
시·도지사	23	23	100%	23	100%
시·도 교육감	21	21	100%	21	100%
비례대표시·도의원	30	30	100%	30	100%
구·시·군의 장	284	284	100%	198	70%

선거관리위원회는 ① 방송사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에서 수어통역을 100%, 자막을 76% 방영하였고, ② 수어통역사 표출 화면 확대, 화자에 따른 자막 색 변경, 후보자별 호칭 표시, 수어·자막 동시방영 등 정보전달 방법을 개선하였으며, ③ 향후에도 장애인의 선거정보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장애인의 투표를 보조할 수 있는 투표안내 전문요원은 모든 투표소(14,134)에 배치되었다.

(3) 정부의 이행에 대한 평가 및 개선 방안

(가) 정부의 접근권 향상 노력

2014년 이후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 대통령선거·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 후보자의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제출을 의무화한 것(법률 제13497호 2014. 8. 13. 일부개정), △ 장애인을 포함한 교통약자의 투표소 접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것(법률 제15551호 2018. 4. 6. 일부개정)은 정부가 장애인의 투표권 및 선거정보접근권 향상을 위해 노력한 결과로 평가할 수 있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 모든 투표소에 투표안내 전문요원을 배치한 것, △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에 대한 수어통역을 100% 제공한

것에서도 장애인의 실질적 투표권 보장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엿볼 수 있다.

(나) 「공직선거법」상 장애인 투표권 보장 규정의 의무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설비, 참정권 행사에 관한 홍보 및 정보 전달, 장애의 유형 및 정도에 적합한 기표방법 등 선거용 보조기구의 개발 및 보급, 보조원의 배치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제27조 제2항). 또한 공직선거후보자 및 정당은 장애인에게 후보자 및 정당에 관한 정보를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정도의 수준으로 전달하여야 한다(동조 제3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공직선거법」은 장애인의 실질적 투표권 보장을 위한 규정 대부분을 여전히 ‘의무’가 아닌 ‘재량’의 형식으로 두고 있다.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를 부여하고, 공직선거후보자와 정당에 동등한 수준의 정보 제공 의무를 부여한 취지에 반하는 것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취지를 존중하여, 「공직선거법」상 교통편의 제공(제6조), 수화 또는 자막에 의한 방송광고와 후보자연설의 방송(제70조, 제72조), 대담 및 토론회의 자막방송 또는 수화통역(제82조의2), 특수투표용지 또는 투표보조용지의 사용(제151조) 등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다) 투표소 접근 편의 규정의 준수

최근 개정된 「공직선거법」 제147조는 투표소의 설비, 고령자·장애인·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투표소 접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제반 시설의 설치, 적절한 투표소 위치 확보 등의 조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2018. 4. 6. 개정된 「공직선거관리규칙」에 의하면, 투표소는 이동약자의 투표소 접근 편의를 위하여 1층 또는 승강기 등의 편의시설이 있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제67조의2 제1항 본문). 다만, 원활한 투표관리를 위하여 적절한 장소가 없는 경우에는 다른 곳에 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고, 이때에는 투표소 입구에 이동약자를 보조할 투표사무원 등을 배치하거나 임시 기표소를 설치하는 등 이동약자가 투표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동조 제1항 단서, 동조 제2항). 이는 사전투표소의 설치에 관하여도 준용된다(제68조 제1항).

그러나 인천지역 장애인단체들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인천지역 사전투표소를 모니터링하여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인천시 사전투표소 중 2층 이상이면서도 승강기가 설치되지 않은 곳이 134개소 중 30개소나 되었다. 이로 인해 장애인들이 투표용지를 직접 투표함에 넣지 못하는 문제가 다수 발생하였다.⁶⁶⁴⁾

김수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의안번호 14057)의 「제안이유」 역시 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모 광역시의 경우 지상 1층에 설치된 사전투표소는 139개소 중 31개소(22.3%)에 불과하였고, 지하층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108개소 중에서 승강기가 설치된 곳은 53개소(49.1%)에 불과하였다.⁶⁶⁵⁾ 적절한 장소가 없는 경우 1층 또는 승강기 등 편의시설이 마련되지 않은 장소에 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규정이 지나치게 넓게 인정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예외적으로 1층 또는 승강기 등이 마련되지 않은 곳에 투표소가 설치된 경우 투표소 입구에 이동약자를 보조할 투표사무원을 배치하거나 임시 기표소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도 부족하다. 공직선거관리규칙 제67조의2 제2항에서 말하는 투표사무원은 이동약자의 이동을 보조할 투표사무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며, 이동약자로부터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함에 대신 넣어주는 투표사무원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관위 직원이나 보조인 등이 장애인으로부터 투표용지를 받아 위층의 투표함에 대신 넣는 사례가 다수 발생한 것은 비밀투표의 원칙에 반해 장애인의 투표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

664) 비마이너, “6.13지방선거 첫 모니터링 결과 발표...여전히 갈 길 먼 장애인 투표권”, (2018. 7. 16. 17:59),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2388&thread=04r01>.

인천시 사전투표소 중 투표소가 2층 이상이지만 승강기가 설치되지 않은 곳은 134개 중 30개소였다. 이 경우 장애인 기표대는 1층에 있지만 투표함이 위층에 있는 경우, 투표용지를 장애인이 직접 투표함에 넣지 못하고 선관위 직원이나 다른 보조인이 투표함에 넣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고 이들은 전했다. 김광백 인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무국장은 “장애인이 직접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지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선관위로부터 적절한 설명을 듣지 못한 채 투표용지를 거의 강탈당하다시피 ‘뺏긴’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라며 “왜 자신이 직접 투표함에 용지를 넣을 수 없는지, 자신의 투표용지가 투표함에 제대로 들어갔는지 등을 당사자는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665) 김수민 의원의 1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14057, (2018. 6. 28.).[계류 중], 2.

(라) 정당한 편의 제공의 질적 측면 고려

투표보조용구의 제공 및 투표보조요원의 배치와 관련하여도, 장애인의 투표권 보장을 위한 정당한 편의가 제공되었는지 질적인 측면에서 재고할 필요가 있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점자보조용구와 투표안내 전문요원은 모든 투표소에 준비·배치되었다. 그러나 제공된 점자보조용구는 숫자만을 점자로 표시하였기 때문에, 시각장애인들은 7개 선거 각 후보자들의 기호를 미리 외워야 했다.⁶⁶⁶⁾ 활동보조인이 후보자들의 성명을 읽어주고 시각장애인의 의사에 따라 도장을 대신 찍어주기도 하였는데, 이 때 활동보조인을 감시하기 위해 참관인이 함께 기표소에 들어와서 비밀투표가 보장되지 않았다는 것이 장애단체의 의견이다.⁶⁶⁷⁾

또한 모든 투표소에 투표안내 전문요원을 배치하였다고는 하나, 장애인의 투표를 보조할 전문성이 있는 인력이 충분히 배치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예컨대, 14,134개 투표소 중 338개 투표소에만 수화통역사가 배치되었을 뿐이다.

(마) 점자형 선거공보물의 면수 제한 규정 삭제

제65조 제4항 단서는 점자형 선거공보물의 면수를 책자형 선거공보의 면수와 동일하게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면수 제한 규정으로 인하여 점자형 선거공보물에는 일반 책자형 선거공보물의 3분의 1 정도의 내용만 담기고 있는 실정이다.⁶⁶⁸⁾ 점자형 선거공보물의 면수 제한 규정은 ‘다른 것을 갈게’ 취급하여 장애인의 투표 정보에의 접근권을 제한하고 있으며, 삭제될 필요가 크다. 장애단체 또한 선거 관련 웹사이트에 게재되는 문서는 문서변환기가 인식하지 못하는 등 시각장애인이 선거공보물 이외의 매체를 통해 선거정보에 접근하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현행 규정의 개정 필요성이 크다고 지적하였다.⁶⁶⁹⁾

한편, 2018. 4. 6.자로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점자형 선거공보를 대신하여 책

666) 일요서울, “6.13지방선거, 장애인도 ‘유권자’입니다”, (2018.6.12. 18:31), <http://www.ilyoseoul.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8025>.

667) 2018. 10. 23. 제2차 FGI에서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김훈 정책연구원,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이용석 정책홍보실장의 의견.

668) 김호식, 앞의 글, 95.

669) 2018. 10. 23. 제2차 FGI에서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김훈 정책연구원의 의견.

자형 선거공보에 음성, 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둘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바코드를 스캔할 보조기기의 보급률이 낮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개정은 시각장애인의 투표 정보에의 접근 가능성을 오히려 후퇴시켰다고 볼 여지가 있다.⁶⁷⁰⁾

(바) 2인 동반 투표 규정의 개정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6항은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해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해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업무지침을 통해 가족을 동반하지 않은 장애인의 경우에는 2인의 참관 하에 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활동보조인 1인만 동반하여서는 투표가 불가능하고, 투표사무원 1인이 추가로 입회해야 하는 것이다.

장애인이 투표사무원에게 투표의 내용을 노출하도록 강제하는 위 업무지침은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비밀투표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크다. 현재 위 업무지침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된 상태이다.⁶⁷¹⁾

라. 선출기구참여증진 및 피선거권

(1) 정부의 이행 현황

(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최종견해에 대하여 수용 의사를 밝혔으나, 구체적인 사유는 제시하지 않았다.

(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행내역으로 임기만료에 의한 각종 선거 때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670) 뉴시스, “충북시각장애인회 “점자형 선거 공보물 의무화하라””, (2018.5.30. 13:43),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530_0000322604&cID=10806&pID=10800.

671) 천지일보, “장애인단체 헌법소원… “투표 시 2인 보조는 위헌””, (2017. 8. 4. 22:39),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440961>.

(2) 현행 규정 및 실태

(가) 「공직선거법」 상 장애인 피선거권 관련 주요 내용 및 현황

공직후보자 장애인추천보조금 제도는 장애인의 정치적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지급하는 보조금이다. 이는 임기만료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임기만료 지역구시·도의원선거 및 지역구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선거에 적용된다.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장애인 후보자, 예비후보자의 경우 선거사무관계자로 활동보조인을 둘 수 있고, 이 경우 활동보조인은 선거사무원수에 산입되지 않는다(「공직선거법」 제62조 제4항). 또한 활동보조인에 대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⁶⁷²⁾ 과거에는 예비후보자의 활동보조인에 대한 비용이 보전되지 않아 차별이라는 문제제기가 있었고, 2010. 7. 19. 국가인권위원회가 구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 제3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후보자’에게 소요된 활동보조인 경비를 부담하면서 ‘예비후보자’에게 소요되는 활동보조인 경비를 부담하지 않는 것은 예비후보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차별행위이므로, 해당 조항을 개정하라는 의견표명을 하기도 하였다.

공직선거법 제62조(선거사무관계자의 선임)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장애인 예비후보자·후보자는 그의 활동을 보조하기 위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1명의 활동보조인(이하 “활동보조인”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활동보조인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선거사무원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7조의3(활동보조인을 둘 수 있는 장애인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범위)

① 법 제62조제4항에 따라 활동보조인을 둘 수 있는 장애인 예비후보자·후보자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인의 장애등급표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청각장애인 및 언어장애인 : 모든 등급의 사람
2. 그 밖의 장애인 :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사람

② 제1항의 장애인 예비후보자·후보자가 활동보조인을 두려는 경우에는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활동보조인의 선임신고를 하는 때에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의 사본이나 장애인증명서 그 밖에 관공서가 발행한 것으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672) 활동보조인에게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59조에서 정한 수당(1일당 3만원 이내), 공무원예비규정 별표2 제2호에 해당하는 실비(1일당 일비 2만원, 식비 2만원)의 실비를 지급하는데, 이는 선거비용외 정치자금에 해당되어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이다.

제5회 지방선거에서는 80명이,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1개 정당에서 6명이, 제18대 대선에서는 0명이 활동보조인 실비를 지원받았다.⁶⁷³⁾

1988년 13대 총선에서 선출된 이철용 의원을 시작으로, 소수의 장애인 국회의원이 선출되었다. 그 중 2008년 18대 총선에서 8명이 선출된 것이 최다 인원이고, 2012년 19대 총선에서는 4명이,⁶⁷⁴⁾ 2016년 20대 총선에서는 4명의 국회의원이 선출되었다. 이는 여야 공천 결과 당선권 내 순번에서 배제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미 예견된 일이다.⁶⁷⁵⁾ 또한 선출되는 장애인 의원은 대부분 지체장애인이고, 남성 장애인에 편중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다.⁶⁷⁶⁾

(나) 각 정당의 당헌 및 당규

각 정당의 당헌 및 당규에서 일부 장애와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장애인의 피선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 각 정당에서도 피선거권 보장을 위한 방안을 두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장애인 등 다양한 사회적 계층이 후보자에 포함되도록 노력하거나 배려하여야 한다는 당헌 규정을 두고 있을 뿐, 적극적으로 장애인 후보자에 관한 내용을 두고 있지는 않았다. 또한 제1야당인 새누리당 역시 장애인 후보자에 대한 내용은 당헌에 포함하고 있지 않았고, 다만 장애인위원회에 관한 내용을 두고 있을 뿐이었다.

673)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 유권자 참정권 보장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2014). 66.

674) 지역구 대표 심재철(새누리당, 경기 안양 동안구을, 지체장애), 이상민(더불어민주당, 대전시 유성구을, 지체장애), 비례대표 김정록(새누리당), 최동익(민주통합당, 시각장애) 의원.

675) 에이블뉴스, “20대 총선, 장애인당사자 4명 국회 입성”, (2016. 4. 14. 10:36:27),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43&NewsCode=004320160414101809745533>.

676) 함께걸음, “19대 장애인 5명 여의도 국회 입성”, (2012. 4. 12. 11:13:58), <http://www.cowalk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683>.

더불어민주당 당헌 제8조(성평등 실현)

① 우리 당은 여성의 정치참여를 보장하여 실질적인 성평등을 구현하고, 여성당원의 지위와 권리에 대하여 특별히 배려한다.

② 우리 당은 제1항의 실현을 위하여 중앙당 및 시·도당의 주요당직과 각급 위원회의 구성, 공직선거의 지역 구선거후보자 추천(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후보자 추천은 제외한다)에 있어서 당헌·당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을 100분의 30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농·어촌 등 취약지역의 경우에는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여성을 100분의 30 이상 포함하는 경우 노인, 청년, 대학생, 장애인, 다문화 등 다양한 사회적 계층을 고르게 안분하도록 노력한다⁶⁷⁷).

더불어민주당 당헌 제97조(심사기준)

① 각종 공직선거 후보자에 대한 심사는 정체성, 기여도, 의정활동 능력, 도덕성, 당선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한다.

② 각종 공직선거 후보자에 대한 심사에 있어서 반인륜적 범죄행위 사실이 있는 자와 중대한 해당행위 전력이 있는 자 등 공직선거 후보자로 추천되기에 명백히 부적합한 사유가 있는 자는 배제한다.

③ 중앙당공천관리위원회는 사전에 제1항 및 제2항을 반영한 공직선거 후보자추천 심사기준 및 심사방법을 마련하여 최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무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여성, 청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이주민, 사무직당직자, 보좌진 및 당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특별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

새누리당 당헌 제13조(구성)

① 전당대회는 당의 최고결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그 정수는 10,000인 이내로 하고, 각 호의 정수는 당규로 정한다.

1. 당 대표

2. 최고위원(원내대표, 정책위원회 의장 포함)

17. 당원협의회에서 추천하고 시·도당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당원

18. 국회의원이 추천하는 당원

③ 제1항제17호의 대의원은 특수직능 및 네티즌을 각각 대표하는 당원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④ 제1항제17호의 대의원은 장애인 당원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⑤ 제1항제17호 내지 제18호의 대의원 중 50%는 여성으로 구성한다.

⑥ 제1항제17호 내지 제18호의 대의원 중 20% 이상 40% 이하는 만45세 미만 당원으로 구성한다.

새누리당 당헌 제65조 (장애인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장애인에 대한 당 지지도 확산과 장애인의 정치참여 확대 및 장애인 권익향상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애인위원회를 둔다.

② 장애인위원회는 장애인위원장의 추천과 최고위원회의의 협의를 거쳐 당 대표가 임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새누리당 당헌 제110조 (지방선거 우선추천지역의 선정 등)

① 각종 공직선거(지역구)에 있어 우선추천지역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우선추천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선정된 지역을 말한다.

1. 여성·청년·장애인 등 정치적 소수자의 추천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한 지역

677) 여성 이외에 청년(제9조), 노인(제10조), 재외국민(제12조) 당원의 지위와 권리는 따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장애 당원에 관한 규정은 따로 없다.

반면, 정의당은 장애인당원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었고, 모든 선출직과 임명직에 장애인당원을 5% 할당하도록 의무 규정을 두고 있었다. 당규를 살펴보면 성평등교육과 장애평등교육을 포함한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당직 및 공직에 출마하는 모든 당원이 당해 인권교육을 이수하여야만 출마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실제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많이 두고 있었다(당규 제12조).

정의당 당헌 제8조(장애인당원의 지위와 권리)

① 장애인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고 실질적인 사회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선출직과 임명직에 장애인 당원 5% 이상을 할당한다.

정의당 당헌 제10조(장애인, 청년, 여성 할당) [신설 2017.10.21.]

① 당헌 제7조⁶⁷⁸⁾, 제8조⁶⁷⁹⁾의 각 항에도 불구하고, 할당 정수대로 선출(선임)되지 않았을 경우 부족한 수만큼 공석으로 둘 수 있다. 단, 당대회, 전국위원회, 광역시·도당대회, 전국위원회 직속기구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선출(선임)을 완료하여 공석이 없도록 해야 하며, 만약 3개월 이내에 할당 비율을 준수하지 못했을 경우 해당 단위의 지위와 권한은 자동 정지된다.

② 당헌 제9조⁶⁸⁰⁾에도 불구하고, 할당 비율을 실현하지 못한 기구는 3개월 내에 할당비율을 준수해야 하며, 준수하지 못했을 경우 해당 단위의 지위와 권한은 자동 정지된다.

(3) 정부의 이행에 대한 평가 및 개선 방안

현행 「공직선거법」은 여성할당제에 대한 내용만 규정할 뿐(법 제47조 제3항), 장애인을 비롯한 소수자에 대한 비례대표 추천 의무화 조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⁶⁸¹⁾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답변에 따르면, 현행 법규정에서 장애인의 정치참여를 보장하고 있는 제도는 장애인 추천보조금 제도뿐이다. 그러나 이는 우회적으로 장애인 후보자의 추천을 유도할 뿐, 실질적으로 장애인의 정치참여를 보장하는 조항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 때문인지 각 정당에서는 장애인의 정치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실질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가 드물었다.

678) 여성.

679) 장애인.

680) 청년.

681) 2014지방선거장애인연대는 6.4지방선거에서 비례대표에 장애인을 당선권 내 10% 공천하고, 정치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 2009. 2. 26. 선고 2006헌마626 결정 이후, 「공직선거법」에는 장애인 후보자·예비후보자에게 활동보조인을 선거사무원수에 제외하는 조항이 신설되었을 뿐, 오히려 장애인 피선거권 차별은 여전하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장애인 후보자와 비장애인 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을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다(법제93조 제1항). 유권자와 직접적인 대면을 통한 선거운동 방식이 적지 않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한 정확한 의사전달이 어려운 언어장애를 가진 후보자는 비장애인 후보자에 비해 불리한 위치에 있다. 따라서 언어장애를 가진 후보자에게 의사전달을 도와줄 보조자로서 선거사무원을 추가로 1~2명 허용한다거나 「공직선거법」상 가능한 인쇄물의 법정 상한을 늘려주는 등 언어를 대체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이 더 많이 허용되어야 한다.⁶⁸²⁾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국회의원에 당선되었을 때, 의정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편의제공이 제대로 되는지 여부다.⁶⁸³⁾ 국회에서 시설 개선이 이루어진 것은 17대 국회에 들어서다. 도로와 복도의 턱이 사라지고 이동권 보장을 위한 인프라가 갖춰지기 시작했다.

20대 국회에서 ‘장애인’과 관련하여 국회에 제출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총 23개인데, 이 중 피선거권을 다룬 것은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비례대표에 우선 추천되도록 하는 김학용 의원안(의안번호 2006759)이 유일하다.

다양한 계층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대표성이 적절히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선거제도와 정당의 지역구 또는 비례대표 후보자 공천과정에 마련되고, 국고보조금의 운용을 통해 제도를 정착하여야 한다.⁶⁸⁴⁾

682) 헌법재판소 2009. 2. 26. 선고 2006헌마626 결정 4인의 헌법불합치이견.

683) 19대 국회에서 유일한 시각장애인이었던 최동의 의원은 한 인터뷰에서 ① 의원들이 이름을 먼저 밝히는 일이 없는 점, ② 성명서 등 바로 제출되어 즉시 검토하여야 하는 문서의 글씨가 너무 작은 점, ③ 의원회관에 위치한 점자 출력기로 출력을 하려면 별도 편집 작업을 거쳐야 하는 점 ④ 벽이 유리로 되어 있는 부분에 별도의 표시가 없는 점 등을 어려운 점으로 꼽았다. [한겨레 21, “구색맞추기 비례대표 아닌 정치인으로 인정받고 싶다”, (2013. 4. 20. 20:36), http://h21.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34350.html].

684) 정당이 비례대표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 그 후보자 중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후보자명부의 순위의 매 홀수에 여성을 추천하여야 하는 「공직선거법」 제47조 제3항 참조.

마. 피성년후견인의 투표할 권리 및 입후보할 권리의 제한

(1) 정부의 이행 현황

(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최종견해에 대하여 수용 의사를 밝혔으나, 구체적 사유는 제시하지 않았다.

(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행내역으로 ① 「민법」 제9조 개정으로 성년후견제도가 실시되어 모든 피성년후견인은 선거권 행사가 가능하게 되었다는 점, ② 2018. 6.까지 금치산자에게도 (피)선거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하였다는 점 등을 밝혔다.

(2) 현행 규정과 실태

「공직선거법」 제18조에서는 선거권이 없는 자를 나열하고 있는데, 그 중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가 규정되어 있다. 이 규정을 준용하는 타법 규정에 따라 금치산자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투표권, 국민투표법에 따른 투표권,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권이 모두 없게 된다.

공직선거법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 ①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권이 없다.

1.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

공직선거법 제1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1. 제18조 제1항 제1호·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

국민투표법 제9조(투표권이 없는 자) 투표일 현재 「공직선거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자는 투표권이 없다.

주민투표법 제5조(주민투표권) ① 19세 이상의 주민 중 제6조제1항에 따른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주민투표권이 있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에게는 주민투표권이 없다.

(3) 정부의 이행에 대한 평가 및 개선 방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4. 10. 8. 피성년후견인에 대해 선거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현행 금치산자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

한 바 있다.⁶⁸⁵⁾ 그러나 실제로 이와 같은 내용의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출되거나 실제 개정까지 나아가지는 않았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의 선거권을 박탈하는 것은 국민의 참정권과 보통선거 원칙에 위배될 여지가 있다. 「공직선거법」에서 명시적으로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는 대상은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이고 다른 하나는 범죄자이다(「공직선거법」 제18조, 제19조). 이는 의사결정 장애인에 대한 뿌리깊은 편견에서 비롯된 것이다. 징벌적으로 선거권을 제한하는 범죄자와 달리 금치산자(성년후견인)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법이 정한 평등성 원칙에 맞지 않는다. 특히 금치산자의 경우 「공직선거법」이 제정된 1994년부터 오랜 기간 동안 선거권, 피선거권이 모두 인정되지 않아 왔다.⁶⁸⁶⁾

금치산자(성년후견인)의 선거권을 박탈·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서는 꾸준히 문제제기가 있었고, 국가인권위원회도 CRPD의 국내적 이행과 관련하여 피후견인을 이유로 하는 결격 조항에 대하여 폐지를 권고한 바 있다.⁶⁸⁷⁾ 이후에도 국가인권위원회는 대체입법을 마련하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⁶⁸⁸⁾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후견심판에서 평가대상이 되는 의사결정능력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유동적이고, 의사결정 대상별로도 달리 판단될 수 있으며, 치료 등으로 상태가 호전될 수도 있음에도 위 결격조항은 일률적으로 자격을 제한·박탈하고 이를 다시 회복할 수 없게 하고 있다. 이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5조 또는 제12조 등과도 조화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후견선고를 받았다는 사유만으로 어떤 자격이나 직무에의 접근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거나 그 동안 본인이 종사해 왔던 직무와 관련된 자격을 획일적으로 제한·박탈하는 결격조항을 유지하는 것은 성년후견제도의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각종 법률에 존재하는 결격조항을 성년후견제도의 취지에 맞게 삭제하거나 개정하여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685)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관계법 개정의견(공직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 국회(2014), 39.

686) 「공직선거법」 제정 이전에는 대통령선거법·국회의원선거법·지방의회의원선거법·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이 모두 별개의 법으로 존재하였다. 1948. 12. 23. 제정된 국회의원선거법, 1980. 12. 31. 제정된 대통령선거법 등에서도 금치산자(한정치산자)는 선거권·피선거권이 없는 자로 규정되어 있었다.

687) 자기결정권 존중을 위한 성년후견제 내실화 방안 마련에 대한 권고(국가인권위원회 2013. 5. 16.자 결정),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집 제6집 (2013), 22 이하.

688) 국가인권위원회, “CRPD 제1차 국가보고서 심의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서”(2014) 15,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서에 따르면 후견 선고를 받았다는 이유로 권리나 자격이 제한·박탈하는 결격 조항이 290여 개에 달한다고 한다.

「민법」 제9조를 개정하여 문제를 해결하였다는 정부 답변과 달리,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된 이후에도 행위무능력자의 공법상·사법상 제한 내지 박탈은 대부분 개정되지 않고 남아 있다. 2011년 개정 「민법」 부칙(법률 제10429호⁶⁸⁹⁾)에서는 법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고 하고 그 기간을 5년 유예하였고(부칙 제2조), 유예된 5년의 기간 동안은 피성년후견인 역시 선거권이 박탈된다(부칙 제3조). 이에 따라 금치산자 및 피성년후견인은 2016. 4. 13. 20대 국회의원 선거, 2017. 5. 9. 제19대 대통령 선거, 2018. 6. 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거권·피선거권이 없었다.

다만 5년의 유예기간이 만료되는 2018. 6. 30.자로 금치산(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모두 실효되었다. 2018. 7. 1.자로 행위능력이 회복된 금치산(한정치산)자는 「공직선거법」상 선거권 및 피선거권 행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후 「공직선거법」 제18조의 개정 여부는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지 않아, 피성년후견인의 선거권은 공백으로 남아있다.⁶⁹⁰⁾⁶⁹¹⁾

선거는 유세과정을 통해 유권자가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성년후견인이 출마하고자 한다면 이를 막을 이유가 없다. 그러나 피성년후견인으로 독자적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다면 출마에 수반되는 여러 부수적인 법률행위를 스스로 하기 어려울 것이다. 기탁금을 낸다든지, 개인 관련 정보를 받기 위한 공법상의 신

689) 「민법」 부칙 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이 개시되거나 임의후견감독인이 선임된 경우 또는 이법시행일부터5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는 장래를 향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을 인용한 경우에는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른 5년의 기간에 한정하여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690) 참고로 다음 선거는 2020. 4. 15. 치러질 21대 국회의원선거이다.

691) 한편 [황주홍 의원의 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03901, (2016. 11. 28.)]은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호의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변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에 대하여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① 금치산자와 피성년후견인의 행위능력에는 차이가 있는데, 개정안과 같이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일괄 개정하면 투표능력이 있을 수 있는 피성년후견인까지 선거권이 일률적으로 제한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 점, ② 성년후견제도를 두고 있는 외국의 입법례를 살펴보면, 피성년후견인의 선거권 제한은 드물다는 점 등을 이유로 부정적 의견을 냈다. 특히 「헌법」상 권리인 선거권의 제한은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청행위를 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피성년후견인이 출마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일 것이다. 한편 의사결정능력 장애를 이유로 성년후견이 개시되었다는 것과 국민으로서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 사이에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 민주주의란 현명한 사람들의 통치가 아니라 다종다양한 생각과 사상, 성향을 가진 사람이 공통의 사회질서를 만들어 가는 절차이기 때문에 유독 의사결정능력에 장애가 있다는 것을 선거권 박탈의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⁶⁹²⁾

한편, 일본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170여 개의 결격조항을 가지고 있었는데(「공직선거법」 제11조), 2013. 3. 14. 동경지방법재판소에서 피후견인의 선거권을 박탈하는 「공직선거법」 제11조 제1항 제1호가 위헌이라고 결정하였고,⁶⁹³⁾ 이에 따라 「공직선거법」과 「국민투표법」에서 피성년후견인의 선거권 결격 규정이 삭제되었다.⁶⁹⁴⁾ 그 직후 국회는 “피성년후견인의 공직선거권 회복등을 위한 선거법 일부개정”을 결의하였다.⁶⁹⁵⁾ 그 외 주요 국가의 피후견인의 선거권 제한·박탈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⁶⁹⁶⁾

국가	제한 여부	주요 내용
독일	일부 제한	법적 후견인이 필요한 경우, 범죄의 가능성이 높아 정신병동에 입원한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사법부 결정에 의해서 투표권 행사를 제한함. 근로장애인 대표 선출 제도 실시함.
벨기에	무제한	읽기 쉬운 용어를 사용한 투표 안내문, 보조기기의 도움을 받아 투표 부스 입장 허용, 인식 개선, 5개 투표 중 1개 장애인 유권자 부스 설치 등 장애인의 정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음.

692) 제철웅, “피성년후견 및 피한정후견을 이유로 한 결격조항의 폐지”, 270.

693) 平成25(2013年)年3月14日判決、東京地方裁判所、平成23年(行ウ)第63号、選挙権確認請求事件.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성년후견인도 우리나라의 주권자인 ‘국민’임은 분명하며, 자기통치를 하는 주체로서 본래 선거권을 행사해야 하는 존재인바, 피성년후견인에게 선거권을 박탈하지 않으면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면서 선거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 내지 현저히 곤란하다는 것은 인정하기 어렵다”, “선거권 행사에 충분한 판단능력을 가지는 피성년후견인의 선거권을 박탈하는 것은 성년후견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것”

694) 제철웅, “가칭 “피성년후견인들의 자격제한 및 차별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제정 제안”, 143-144.

695) 제철웅, “CRPD의 관점에서 본 한국 성년후견제도의 현재와 미래”, 227.

696) 이해경의 4, 앞의 글, 233-241.

국가	제한 여부	주요 내용
오스트리아	무제한	장애인의 공적 참여를 위한 조치로서 장애인 고용법에 따라 기업 내 장애인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 장애인 대표를 임명하는 제도를 시행함.
스페인	일부 제한	조직법 5/1985 제3조에 의하면 판사의 결정으로 투표권이 거부될 수 있음.
덴마크	제한	보호제도법 제6조에 의해 후견(보호)을 받는 사람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 박탈함.
스웨덴	무제한	장애인의 공적 참여 확대를 위해 지방정부법에 근거하여 장애인 대표를 선출함.
멕시코	일부 제한	선거제도 및 절차에 대한 연방규약에 의해 지적·심리사회적 장애를 가진 사람(“정신적 능력을 소유하지 않은 자”)의 투표권 부정하고 있으나, 멕시코 정부는 장애인이 아닌 마약·약물 중독자의 투표권을 제한하는 것이란 입장임.
뉴질랜드	일부 제한	선거법 제80조에서 심리사회적 장애가 있으나 범죄경력 없는 장애인이 재활시설에 입소해 있거나 환자라면 투표권이 제한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뉴질랜드 정부는 장애가 아닌 형사 사법 범죄 경력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투표권이 제한된다는 입장임.
호주	일부 제한	‘심리적 요인으로 인해 투표의 성격과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함’다고 문서를 통해 공식적으로 확인된 자에 대해서는 투표권을 제한함. 장애인의 공적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장애인 단체를 통해 장애인이 공적 업무의 실행 과정에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함.

26. 제30조 문화생활, 레크리에이션, 여가생활 및 체육활동에 대한 참여

가. CRPD 제30조

제30조 (문화생활, 레크리에이션, 여가생활 및 체육활동에 대한 참여)

1. 당사국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문화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장애인의 권리를 인정하며, 장애인에게 다음의 사항을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가. 접근 가능한 형태로 된 문화자료에 대한 접근을 향유한다.
 - 나. 텔레비전 프로그램, 영화, 연극 및 다른 문화 활동에 대한 접근을, 접근 가능한 형태로 향유한다.
 - 다. 공연장, 박물관, 영화관, 도서관, 관광서비스와 같은 문화 활동 또는 서비스를 위한 장소에 대한 접근과, 국가적으로 문화적 중요성을 가진 기념물과 명소에 대한 접근을 가능한 한 향유한다.
2. 당사국은 장애인 자신의 이익뿐만 아니라 풍요로운 사회를 위하여 장애인의 창조적, 예술적, 지적 잠재력을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3. 당사국은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법이 문화자료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에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장벽을 구성하지 아니하도록 국제법에 따라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4. 장애인은 수화와 청각장애인의 문화를 포함하여 그들의 특정한 문화적·언어적 정체성을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인정받고 지원받을 자격이 있다.
5. 당사국은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레크리에이션, 여가생활 및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의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가. 주류 체육활동의 모든 단계에서 장애인이 가능한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증진할 것

나.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최종견해 및 쟁점목록

(1) 최종견해

제30조 (문화생활, 레크리에이션, 여가생활 및 체육활동에 대한 참여)

57. 위원회는 당사국이 시각장애인 및 기타 인쇄된 자료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발행물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는 「시각장애인 저작물 접근권 개선을 위한 마라케시 조약」을 비준하지 않은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58. 위원회는 당사국이 마라케시 조약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비준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장한다.

(2) 쟁점목록

제30조 (문화생활, 레크리에이션, 여가생활 및 체육활동에 대한 참여)

1. 시각장애인 저작물 접근권 개선을 위한 “마라케시 조약”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당사국이 한 조치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십시오. 아울러 최근 개최된 동계 올림픽과 패럴림픽, 기타 스포츠 행사에서 장애인을 온전히 통합하고 장애인에 대한 접근성을 온전히 보장하기 위해 당사국이 취한 조치를 설명하십시오.

(3) 실태조사의 대상 쟁점

정부가 마라케시 조약을 실행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장애인의 체육활동 접근성, 장애인의 문화·오락·여가활동 접근성은 어떻게 보장되고 있는지 검토한다.

다. 마라케시 조약을 실행하기 위한 조치

(1) 정부의 이행 현황

(가) 문화체육관광부는 최종견해에 대한 수용의사를 밝혔다.

(나) 문화체육관광부는 이행현황으로 ① 대한민국 정부는 2014. 6. 26. 마라케시 조약에 정식 서명하였으며, 2015. 10. 8.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에 동 조약 비준서를 기탁하여 마라케시 조약에 가입하였고, ② 현행 「저작권법」은 ‘공표된 모든’ 저작물에 대하여 시각장애인을 위한 복제 등을 허용하는 규정(제33조)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2) 현행 규정 및 실태

(가) 마라케시 조약

대한민국 정부는 2014. 6. 26. 마라케시 조약에 서명하고, 2015. 10. 8. 동 조약 비준서를 기탁하였다.

마라케시 조약은 전맹, 시각장애/인지장애/독서장애인, 시각적 장애로 인해 책을 넘기지 못하거나 눈의 초점을 맞추지 못하거나 눈을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을 수혜자로 규정하고(제3조), 계약당사자로 하여금 수혜자가 접근 가능한 형태의 복제물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국내 「저작권법」에 예외 규정을 두도록 하는 것을 요체로 한다(제4조). 계약당사자는 수혜자가 접근 가능한 형태의 복제물을 타국의 권한 있는 기관 또는 수혜자에게 배포할 수 있고(제5조), 계약당사자의 국내법은 수혜자가 접근 가능한 형태의 복제물을 권한 있는 기관 또는 권리자의 허가 없이 수입할 수 있도록 규정해야 한다(제6조).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법으로 인하여 장애인의 문화자료 등 접근에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장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요구하는 CRPD 제30조 제3항은 마라케시 조약의 핵심적인 정신에 맞닿아 있다.⁶⁹⁷⁾

(나) 「저작권법」

현행 「저작권법」은 공표된 저작물을 시각장애인 등을 위하여 점자로 복제·배포할 수 있는 권리(제33조 제1항), 시각장애인 등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공표된 어문저작물을 녹음하거나 전용 기록방식으로 복제·배포·전송할 수 있는 권리(제33조 제2항), 공표된 저작물을 청각장애인 등을 위하여 한국수어로 변환하고 복제·배포·공연·공중송신할 수 있는 권리(제33조의2 제1항), 청각장애인 등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공표된 저작물 등에 포함된 음성 및 음향 등을 자막 등으로 변환하고 복제·배포·공연·공중송신할 수 있는 권리(제33조의2 제2항)를 규정하고 있다.

697) 남형두, “마라케시 조약의 의의와 우리나라에 미치는 시사점”, 저스티스 제146-1호 (2015), 397.

(3) 정부의 이행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

정부는 마라케시 조약을 빠른 시간 내에 비준·이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는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최종권해를 이행하였다.

라. 체육활동 접근권

(1) 정부의 이행 현황

(가) 문화체육관광부는 최종권해에 대한 수용의사를 밝혔다.

(나)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개최된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에서 ① ‘패럴림픽 경기관람 장애인 배려정책’을 추진하여 수어통역, 점자지도, 교통약자 이동 편의, 1:1 휠체어 푸싱 등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베뉴·수송구역·선수촌 외에도 지역 음식점·숙박업소·공중화장실 등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을 개선하였으며, ② 동계스포츠 발전 및 장애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써 ‘ADP(Actualising the Dream Project)’를 추진하였다고 밝혔다.

(2) 현행 규정 및 실태

(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체육활동 접근권 관련 주요 내용

체육활동을 주최·주관하는 기관이나 단체, 체육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체육시설의 소유·관리자는 체육활동의 참여를 원하는 장애인을 장애를 이유로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안 된다(제25조 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신이 운영 또는 지원하는 체육프로그램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동조 제2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동조 제3항).

(나)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상 체육활동 접근권 관련 주요 내용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사의 처방에 따른 재활운동 프로그램을 장애인 또는 손상이나 질병 발생 후 완전한 회복이 어려워 일정기간 내에 장애인이 될 것으로 예

상되는 사람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제15조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체육시설을 지정하여 장애인에게 체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동조 제2항).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또는 손상이나 질병 발생 후 완전한 회복이 어려워 일정기간 내에 장애인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의 신체적·정신적 기능과 사회적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재활운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보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동조 제3항).

(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지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에서는 수어통역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아 논란이 되었고, 국가인권위원회는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식과 패럴림픽 개·폐막식에 수어통역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식 현장에는 단상 수어통역이 없었고, 전광판에도 수어통역이 제공되지 않았다. 강원도지역 수어통역사들이 객석에서 자발적으로 통역을 한 것이 전부였다. 지상파방송 중 KBS는 많은 부분 수어통역을 제공하였지만, MBC와 SBS는 IOC위원장과 조직위원장의 폐막 인사말만 수어통역 하였을 뿐이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 해설은 어디에서도 제공되지 않았다.⁶⁹⁸⁾ 장애인 단체인 ‘장애벽허물기’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2018. 10. 30.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수어통역 미제공에 대하여 IOC윤리위원회에 차별진정을 제기한 상태이다.⁶⁹⁹⁾

(라) 2018 평창 패럴림픽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 개막식의 경우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통역은 제공되었으나,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 해설은 제공되지 않았다. 시각장애인은 패럴림픽에서조차 소외된 것이다.

698) 비마이너, “‘평창올림픽 폐회식 수어통역 제공’ 인권위 권고 무시한 지상파 방송국”, (2018. 2. 26. 17:14),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1925&thread=04r10>.

699) 에이블뉴스, “평창동계올림픽 장애인차별, IOC 윤리위 간다”, (2018. 10. 30. 15:37:49),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14&NewsCode=001420181030151053907343>.

각 방송국의 중계 부실 문제도 여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패럴림픽 중계의 확대를 지시하면서 KBS가 41시간, SBS가 32시간, MBC가 18시간을 중계에 할애 하기는 하였으나, FT(프랑스) 100시간, NFC(미국) 94시간, NHK(일본) 62시간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편성이었다.⁷⁰⁰⁾⁷⁰¹⁾

장애단체들도 2018 평창 패럴림픽의 중계가 극히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졌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장애인 스포츠 경기가 중계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장애 단체가 공영방송국에 거액의 돈을 지불해야 하는 등 장애인의 스포츠 접근권에 둔감한 사회 전반의 분위기에 대한 문제도 지적되었다.⁷⁰²⁾

(3) 정부의 이행에 대한 평가 및 개선 방안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을 개최하며 ‘패럴림픽 경기관람 장애인 배려정책’과 ADP(Actualising the Dream Project)를 추진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수어통역 및 화면해설 서비스 미비 논란, 중계 부실 논란에서 드러나듯, 장애인의 차별없는 체육활동 참여와 관람을 위한 정부의 노력과 사회의 인식 수준은 매우 낮다. 현재 전국의 장애인 체육선수는 8,000여명에 달하지만 실업팀에 등록된 선수는 280명에 불과하고, 전국의 장애인형 체육관은 국민체육센터 4개소, 장애인전용 체육시설 40개소에 불과하다.⁷⁰³⁾

정부는 스포츠 경기 참여 및 관람에의 장애인 접근성 개선을 위한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김석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8825)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장애인이 전용으

700) 연합뉴스, “신의현 금메달도 못봤다…지상파 패럴림픽 ‘중계 부실’ 여전”, (2018. 3. 18. 09:59),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3/18/0200000000AKR20180318015500005.HTML?input=1195m>.

701) 오마이뉴스, “대통령 지적 없으면, 우린 패럴림픽도 못보나요?”, (2018. 3. 14. 16:22),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13938&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702) 2018. 10. 22. 제2차 FGI에서 한국농아인협회 김수연 기획부장, 2018. 10. 24. 제3차 FGI에서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오창석 정책지원부 부장, 한국장애인연맹 조태홍 기획실장, 임상욱 조직국장의 의견.

703) 뉴스1, “최경환 “장애인 체육선수 훈련 환경 열악…처우·시설 개선 필요””, (2018. 10. 23. 18:27), <http://news1.kr/articles/?3458123>.

로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 위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장애인의 차별없는 스포츠 접근권을 위한 초석이 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2018. 8. 14.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 유산 창출을 위한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체육시설, 지도자, 프로그램, 용품, 차량 등을 종합 지원하여 2017년 기준 20.1%에 불과한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을 2022년까지 30%로 향상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생활밀착형 장애인 체육시설인 ‘반다비 체육센터’는 2025년까지 150개를 신규 건립할 계획이다.⁷⁰⁴⁾⁷⁰⁵⁾ 위 활성화 방안은 열악한 현 장애인의 체육활동 접근 환경을 개선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데, 실제 정부의 계획이 충실히 이행되는 것이 관건이다.

마. 문화·오락·여가활동 접근권

(1) 정부의 이행 현황

문화체육관광부는 마라케시 조약의 비준과 관련한 답변 외에 장애인의 문화·오락·여가활동 접근권과 관련한 이행현황에 대해 달리 답변하지 않았다.

(2) 현행 규정 및 실태

(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문화·오락·여가활동 접근권 관련 주요 내용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출판물을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사업자와 영상물의 제작업자 및 배급업자에 대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는 출판물 또는 영상물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제21조 제5항 1문). 특히 도서관법 제18조에 따른 국립중앙도서관은 새로이 생산·배포하는 도서자료를 점자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가 삽입된 자료, 음성 또는 확대문자 등으로 제공하여야 한다(동조 동항 2문).

문화·예술사업자는 당해 행위자 등이 생산·배포하는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에 대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

704) 머니투데이, “장애인 체육시설 150곳 세운다…생활체육 참여율 30%로”, (2018. 8. 14. 11:30),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081409174409273>.

705) 뉴스워커, “장애인 체육센터 2025년까지 150개 신규 건립한다”, (2018. 8. 15. 19:07:52), <http://www.newswork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985>.

수어,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제21조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예술사업자는 장애인이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함에 있어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한 행동을 강요하여서는 안 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제24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호·제2호·제4호). 또한 장애인이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동조 제2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문화·예술시설을 이용하고 문화·예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동조 제3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관광사업자는 장애인이 관광활동에 참여함에 있어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제24조의2 제1항, 제4조 제1항 제1호·제2호·제4호·제5호·제6호). 또한 장애인이 관광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동조 제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관광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동조 제3항).

(나) 「문화기본법」상 문화·오락·여가활동 접근권 관련 주요 내용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갖는다(제4조).

(다) 「장애인복지법」상 문화·오락·여가활동 접근권 관련 주요 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적인 행사, 그 밖의 교육·집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한국수어 통역 및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가 삽입된 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민간이 주체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한국수어 통역과 점자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가 삽입된 자료 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제22조 제3항). 위 요청을 받은 방송국의 장 등 민간 사업자와 민간 행사 주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동조 제4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각장애인이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점자도서와 음성도서 등을 보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동조 제5항).

(라) 「도서관법」상 문화·오락·여가활동 접근권 관련 주요 내용

「도서관법」은 장애인에 대한 도서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립장애인도서관을 설립·운영하도록 하고 있다(제45조 제1항). 국립장애인도서관이 수행하는 업무에는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의 수집·제작·제작지원 및 제공 업무가 포함되어 있다(제45조 제2항 제3호).

(마) 실태

「장애인차별금지법」상 문화·예술사업자는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예컨대 영화를 관람하고자 하는 청각장애인에게는 자막 제공 기기, FM보청기가 제공되어야 하고, 시각장애인에게는 화면해설(Descriptive Video, Audion Description)이 제공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국내 상영관들은 극히 제한적으로만 배리어프리 영화를 상영하고 있을 뿐,⁷⁰⁶⁾ 장애인에게 화면해설, 자막, FM 보청기기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또한 장애인이 신체적·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영화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웹사이트도 구축되어 있지 않고, 상영관에서 점자자료, 큰 활자로 확대된 문서, 한국수어 통역이 제공되지도 않는다.

장애인의 방송, 영화, 공연 등에 대한 접근권은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고 있고, 문화 향유 측면에서 장애인들의 만족도는 극히 낮다는 것이 장애단체들의 의견이다.⁷⁰⁷⁾

(3) 정부의 이행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

영화상영관 운영자의 장애인 간접차별 문제와 관련하여, 최근 시·청각 장애인 4인은 멀티플렉스 사업자들을 상대로 차별구제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원고승소 판결을 받기도 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2. 7. 선고 2016가합508596 판결).⁷⁰⁸⁾

706) 2017년 1월부터 11월까지 우리나라에서 개봉된 영화 총 1627편 중 배리어프리 영화는 29편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광남일보, “장애인 영화관람 아직도 ‘먼 길’”, (2018. 1. 9. 19:30), <http://www.gwangnam.co.kr/read.php3?aid=1515493819276943023>.]

707) 2018. 10. 22. 제2차 FGI에서 한국농아인협회 김수연 기획부장, 2018. 10. 24. 제3차 FGI에서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오창석 정책지원부 부장, 한국장애인연맹 조태홍 기획실장, 임상욱 조직국장, 무장애연대 김남진 사무국장의 의견.

위 사건은 피고들의 불복으로 현재 항소심 진행 중에 있다. 만일 항소심에서 영화상영관 운영자들의 화면해설 등 편의제공의무가 부인된다면, 정부는 장애인의 문화생활 접근권을 보장하라는 CRPD의 취지가 몰각되지 않도록 시급히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현재 국회에는 영화제작업자 및 영화배급업자로 하여금 장애인의 영화 향유권 신장을 위하여 폐쇄자막, 한국수어통역, 화면해설 등을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영화상영업자는 이러한 영화를 상영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도록 함과 동시에 문화체육부장관이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출되어 있다(의안번호 11553). 이러한 법개정을 통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취지를 다시 한 번 명확히 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7. 제31조 통계와 자료 수집

가. CRPD 제31조

제31조 (통계와 자료 수집)

1. 당사국은 이 협약의 이행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통계 자료와 연구 자료를 포함한 적절한 정보를 수집할 것을 약속한다. 이러한 정보의 수집 및 유지 절차는 다음에 따른다.
 - 가. 장애인의 사생활에 대한 비밀과 존중을 보장하기 위하여 자료 보호와 관련된 입법을 포함하여 법적으로 확립된 보호조치를 준수한다.
 - 나.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보호하는 국제적으로 승인된 규범과 통계의 수집과 사용에 관한 윤리원칙을 준수한다.
2. 이 조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는 적절한 경우 구성요소별로 분류되어, 이 협약에 따른 당사국의 의무 이행을 평가하고 장애인이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직면하는 장벽을 규명하고 해결하는 데에 사용된다.
3. 당사국은 이러한 통계의 보급에 책임을 지고, 이에 대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접근가능성을 보장한다.

70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2. 7. 선고 2016가합508596 판결.

... 따라서 ① 화면해설 또는 자막 파일을 제공하는 영화에 관하여 시각장애인인 원고 김O형, 박O규에게 화면해설을, 청각장애인인 원고 오O윤에게 자막, FM 보청기기를, 청각·언어장애인인 원고 함O숙에게 자막을 제공할 것, ② 원고들이 영화 및 영화관에 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를 통하여 원고들에게 화면해설 또는 자막을 제공하는 영화와 영화 관련 정보(상영관, 상영시간) 및 그 밖에 장애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편의의 내용을 제공하고, 영화상영관에서 시각장애인인 원고 김O형, 박O규에게 점자자료 또는 큰 활자로 확대된 문서를, 청각장애인인 원고 오O윤, 청각·언어장애인인 함O숙에게 한국수어 통역 또는 문자에 의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여기로 한다.

나. 최종견해 및 쟁점목록

(1) 최종견해

제31조 (통계와 자료 수집)

59. 위원회는 당사국이 수집한 장애인 관련 통계자료가 장애인의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아, 각 정책이 장애인에게 미친 영향평가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에 우려를 표한다. 또한 위원회는 통계자료가 모든 접근가능한 형식으로 제공 및 공개되고 있지 않은 점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60. 위원회는 당사국이 성별과 나이, 장애, 거주지, 지역, 정책수혜자를 기준으로 분리된 자료의 수집, 분석 및 보급을 체계화하고, 접근가능한 형식으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모든 장애인들에게 자유롭게 통계자료를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한다.

(2) 쟁점목록

제31조 (통계와 자료 수집)

1. 당사국이 성, 연령, 종족, 손상, 거주지, 지리적 영역, 교육과 고용 상태 및 급여 형태를 기준으로 데이터를 분류하는 장애 통계에 관한 워싱턴 그룹(Washington Group on Disability Statistics)의 방법론에 따른 데이터의 수집, 분석 및 배포를 체계화하고, 접근 가능한 통계를 대중에게 공개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당사국이 착수한 조치에 대한 업데이트를 제공하라.

(3) 실태조사의 대상 쟁점

정부가 장애 통계에 관한 워싱턴 그룹의 방법론에 따른 데이터의 수집·분석 및 배포를 체계화하였는지, 접근 가능한 통계를 제공하고 있는지 검토한다.

다. 장애 통계에 관한 워싱턴 그룹의 방법론 적용 및 접근 가능한 통계의 제공

(1) 정부의 이행 현황

통계청은 최종견해에 대한 수용의사를 밝혔다. 통계청은 이행현황으로 ①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시 조사표에 워싱턴 그룹의 ‘Short set of disability questions’ 유형을 기반으로 한 장애인 유형 문항을 추가하였고, ② 대한민국 정부는 성별·연령, 장애유형 등을 세분화하여 장애인 가구나 인구를 대상범위로 다양한 통계 조사(보건복지부 - 장애인등록현황 및 장애인실태조사, 고용노동부·한국장애인고용

공단 - 장애인 고용 패널조사,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 - 장애인 생활체육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③ 통계청 홈페이지 및 국가통계포털(KOSIS)에 웹 표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계청은 이행계획으로, ① 각 부처에서 작성되는 장애인 통계의 작성·분석·공표 과정이 국제 표준안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것이고, ② 매년 실시하는 통계수요조사를 통해 장애인 관련 통계 요구 사항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 현행 규정 및 실태

(가) 「통계법」상 장애 통계 관련 주요 내용

현행 「통계법」은 장애 통계와 관련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나) 실태

통계청의 답변에 따르면, 2018. 7. 2. 기준 국가승인통계는 총 1,092종이고, 이 중 장애 항목을 작성하는 국가승인통계는 289종(통계표 2,733개)이다. 그러나 통계청이 근거자료로 제공한 ‘장애 항목 포함 국가승인 통계표’ 자료는, ‘유연근무제 및 단시간 근로제도 도입 시 가장 장애가 되는 요인’, ‘여성취업 장애 요인’, ‘일-가정 양립의 장애요인에 대한 인식’ 등 ‘disability’의 의미가 아니라 ‘obstacle’의 의미로 ‘장애’가 사용된 통계표까지 포함하고 있다. ‘disability’ 의미의 ‘장애’에 관한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통계표는 통계청이 제시한 숫자보다 적을 것으로 추측된다.

특히, 289종의 국가승인통계에 장애 항목 통계표가 어떻게 포함되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면, 상위 21종의 통계에 2,106개의 장애 항목 통계표가 집중되어 있고,⁷⁰⁹⁾ 1~2개의 장애 항목 통계표만 포함하고 있는 통계가 233종이다. 더구나

709) ‘기업체장애인고용실태조사’에 580개, ‘장애인기업실태조사’에 363개, ‘장애인고용패널조사’에 318개, ‘특수교육실태조사’에 170개, ‘장애인생활체육실태조사’에 140개, ‘한국복지패널조사’에 113개, ‘정신질환실태조사’에 69개, ‘장애인실태조사’에 57개, ‘장애인구인구직및취업동향’에 51개, ‘사회조사’에 42개,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에 29개, ‘대구광역시사회조사’에 29개, ‘범죄분석통계’에 24개, ‘농어업인복지실태조사’에 23개, ‘충청남도사회조사’에 20개, ‘경찰청범죄통계’에 18개, ‘광주광역시사회조사’에 16개, ‘제주특별자치도사회조사’에 14개,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에 10개, ‘영동군취약계층통계’에 10개, ‘국민연금통계’에 10개가 포함되어 있다.

위 통계표의 숫자는, 여러 차례의 통계조사에 동일하게 존재했던 통계표가 각 1개로 계산되어 합산된 것이다. 예컨대, ‘한부모 가족 실태조사’에 포함된 장애 항목 통계표는 ‘한부모 장애 여부’, ‘자녀 장애 여부’, ‘자녀 외 가구원 장애 여부’ 3개가 전부이나, 위 실태조사는 2012년과 2015년에 시행되었으므로 통계표는 6개(3×2)로 계산되어 있다.

즉, 1,092종의 국가승인통계 가운데 장애 항목을 일절 포함하지 않고 있는 통계가 1,352개 이상이고, 장애 항목을 포함하고 있는 통계의 경우에도 대개 1~2개의 통계표로 장애의 유무 정도만을 파악하는 단순한 데이터의 수집에 머물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각 장애단체는 유효한 장애 관련 데이터가 없는 점을 호소하고, 그나마 존재하는 통계의 신뢰도도 떨어진다고 평가하였다.⁷¹⁰⁾

(3) 정부의 이행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

통계청은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조사표에 워싱턴 그룹의 ‘Short set of disability questions’ 유형을 기반으로 한 장애인 유형 문항을 추가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가승인통계 총 1,092종 가운데 단 하나만을 예시로 들고 있는 것이어서, 실제 장애 통계에 관한 워싱턴 그룹의 방법론이 국가승인통계에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위 (2)항에서 살펴본 실태에 비추어 보아도, 성, 연령, 인종, 장애의 종류, 거주지, 교육과 고용 상태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데이터를 분류하는 워싱턴 그룹의 방법론이 적용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통계청은 2018. 7. 7. 인권위에 보낸 공문 ‘장애인권리협약 이행 실태조사 연구용역 관련 답변자료 송부’에서, “장애 통계에 관한 워싱턴 그룹의 방법론을 적용한 데이터의 수집, 분석 및 배포의 체계화’를 권고하는 쟁점목록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관련 향후 계획(Q5)”을 묻는 질문에 대하여, “현재 장애 항목을 작성하고 있으나 성, 연령 등이 세분화된 통계작성은 통계예산 및 조사결과의 신뢰성 등 문제로 통계작성에 한계가 있음(A1)”이라고 답하기도 하였다. 이는 최종견해를 수용하겠다는 입장과는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통계는 각종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공공자원으로서 사회발전

710) 2018. 10. 22. 제1차 FGI에서 장애여성네트워크 김효진 대표, 장애부모연대 이리나 실장, 한국농아인협회 김수연 기획부장; 2018. 10. 23. 제2차 FGI에서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이용석 정책홍보실장의 의견.

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작성·보급·이용되어야 하고, 정확성·시의성 및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과학적인 방법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통계법」 제2조 제1항, 제2항). 그러나 현행 통계조사의 실태를 볼 때, 장애인의 삶 전반에서 일어나는 차별을 없애고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초가 되는 통계조사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두 개의 통계조사에 위싱턴 그룹의 방법론을 도입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국가승인통계 전반에 있어 위싱턴 그룹의 방법론을 도입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현행 「통계법」에는 장애 통계와 관련한 아무런 규정이 없는데, 장애 통계와 관련한 국가의 의무와 지향점을 규정한 조문을 두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

28. 제32조 국제협력

가. CRPD 제32조

제32조 국제협력

1. 당사국은 이 협약의 목적과 목표의 실현을 위한 국가차원의 노력을 지원함에 있어 국제협력과 그에 대한 증진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이러한 관점에서 당사국 간 그리고 적절한 경우에는 관련 국제기구 및 지역기구와 시민단체, 특히 장애인 단체와의 협력을 통하여 적절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다. 이러한 조치는 특히 다음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 가. 국제개발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국제협력이 장애인을 포함시키고 장애인에게 접근 가능하도록 보장할 것
나. 정보, 경험, 훈련 프로그램 및 모범사례의 교류 및 공유 등을 통하여 역량구축을 촉진하고 지원할 것
다. 연구 협력과 과학적 및 기술적 지식에 대한 접근을 촉진할 것
 - 라. 적절한 경우, 접근가능하고 보조적인 기술에 대한 접근과 공유를 촉진하는 것과, 기술이전을 포함하여 기술적 및 경제적 지원을 제공할 것
2. 이 조항의 규정은 이 협약 하에서 각 당사국이 이행하여야 하는 의무를 저해하지 아니한다.

현실적으로 각 국가의 경제적, 사회적 수준의 차이로 말미암아 장애인을 위한 법률, 정책, 프로그램, 편의시설 등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의 국가에 살고 있는 장애인으로서 많은 불이익을 감수할 수 밖에 없는 명백한 한계를 갖고 있다. 이러한 저개발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에게 국제협력은 보편적 인류애와 인권 실현의 발로가 된다.

제1항은 국제협력에 관한 예시적 내용으로 국제협력에 있어서 장애인의 참여

와 접근성, 정보를 포함한 자원의 공유와 지원, 기술적 및 과학적 연구의 협력, 기술적 경제적 지원 등을 제시하고 있다.

제2항은 본 협약 이행의 일차적 의무는 각국에 있음을 밝히는 내용으로, 모든 당사국은 본 협약의 불이행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국제협력의 불이행이나 부족함을 주장할 수 없다.⁷¹¹⁾

나. 쟁점목록

(1) 쟁점목록

제32조 국제협력

33. 협약의 효과적 이행과 아태 장애인의 “권리 실현”을 위한 인천전략과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2030의제의 연계에 주목하여, 모든 장애인에게 통합적이고 접근 가능한 국제 개발 프로그램과 활동을 확고히 하기 위해 당사국이 취한 조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십시오.

(2) 실태조사의 대상 쟁점

이하에서는 CRPD의 효과적 이행과 아태 장애인의 “권리 실현”을 위한 인천전략과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2030의제의 연계를 고려한 정부의 국제협력 노력에 대하여 검토한다.

다. 정부의 이행 현황

정부는 CRPD 제2·3차 병합 국가보고서(초안)에서 “아태지역의 신뢰가능하고 국제비교가 가능한 통계구축을 통해 향후 각국의 장애인을 위한 제도 설계 및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는 현재 유엔에스캅(UNESCAP)의 장애통계구축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몽골과 라오스, 인도네시아의 장애인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해당 지역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권익 신장을 지원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또한 민관 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2013년 정부, 장애인단체,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인천전략국제협

711)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권리협약 해설집”, 160-162.

력추진단을 발족하여 인천전략을 비롯하여 민간 기관 및 단체의 장애분야 국제협력사업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16년과 2017년 장애분야 국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국제포럼 개최 및 인천전략 공모사업을 통한 국내 장애인 단체의 국제협력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개발목표 이행 기여를 위해 개발협력 사업에서 범분야적 장애 이슈를 반영하는데 노력했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는 장애포괄적 개발협력사업 시행 노력을 강화했다. 또한 2018년 5월에는 KOICA 인권 전문위원회 내 장애분과 전문위원 4인을 위촉하여 장애분야 사업 품질 제고를 도모한 바 있다”고 밝히고 있다.

라. 협약 이행과 인천전략과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2030의제의 연계 고려한 국제협력의 노력

(1) 인천전략 및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2030의제

인천전략은 제3차 아·태 장애인 10년(2013-2022) 즉 새로운 10년동안 장애인의 진정한 권리 실현을 위한 유엔에스캅(UNESCAP) 62개국 회원국의 공동행동 전략이다.⁷¹²⁾ 인천전략은 제2차 아·태지역 장애인 10년을 결론짓고 새로운 10년을 출발시키기 위해 인천세계대회에서 선포되었으며, 아시아 태평양 지역, 그리고 세계에서 처음으로 지역차원에서 합의된 장애포괄적인 개발목표를 10가지 목표와 27개의 세부목표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⁷¹³⁾⁷¹⁴⁾

712) 나운환, “한국의 인천전략 이행수준과 개선방안 연구”, 재활복지 제21권 제2호 (2017), 10.

713) 인천전략기금 운영사무국, “인천전략 서문”, https://mrr.koddi.or.kr/page/kor/strategy_guide.jsp?menu=strategy_guide.

714) 인천전략기금 운영사무국, 앞의 글.

<p>목표1. 빈곤 감소 및 고용 전망의 증진</p> <p>세부목표 1.A. 장애인의 극심한 빈곤을 해소한다.</p> <p>세부목표 1.B. 일할 수 있고 또 일하기를 원하는 근로 연령의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와 고용을 늘린다.</p> <p>세부목표 1.C.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하는 직업훈련과 기타 고용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장애인의 참여를 증진한다.</p> <p>목표2. 정치 과정 및 의사결정에 대한 참여의 증진</p> <p>세부목표 2.A. 정부의 의사결정기구에서 장애인의 대표성을 보장한다.</p> <p>세부목표 2.B. 정치 과정에 대한 장애인의 참여를 증진하기 위해 정당한 편의를 제공한다.</p> <p>목표3. 물리적 환경, 대중교통, 지식, 정보 및 의사소통에 대한 접근성의 향상</p> <p>세부목표 3.A. 국가 수도에서 공공에 개방된 물리적 환경의 접근성을 향상시킨다.</p> <p>세부목표 3.B.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성 및 이용성을 향상시킨다.</p> <p>세부목표 3.C. 정보 및 의사소통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이용성을 향상시킨다.</p> <p>세부목표 3.D. 적합한 보조기구나 생산품이 필요하나 이를 갖지 못한 장애인의 비율을 반으로 줄인다.</p> <p>목표4. 사회적 보호의 강화</p> <p>세부목표 4.A. 재활을 포함한 모든 보건 의료 서비스에 대해 모든 장애인의 접근성을 향상시킨다.</p> <p>세부목표 4.B. 사회 보호 프로그램에서 장애인의 수혜 범위를 늘린다.</p> <p>세부목표 4.C.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인 생활하는 장애인, 특히 중복장애인, 광범위 장애인, 그리고 다양한 장애를 가진 개인들을 지원하는 활동보조, 동료상담 등의 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강화한다.</p> <p>목표5. 장애 아동에 대한 조기개입 및 교육의 확대</p> <p>세부목표 5.A. 출생부터 취학 전까지 장애아동을 위한 조기발견 및 조기개입 조치를 향상시킨다.</p> <p>세부목표 5.B. 초중등 교육 취학률에서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의 격차를 반으로 줄인다.</p> <p>목표6. 성평등과 여성의 역량강화 보장</p> <p>세부목표 6.A. 장애소녀 및 여성이 주류의 개발 기회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p> <p>세부목표 6.B. 정부의 의사결정기구에서 장애여성의 대표성을 보장한다.</p> <p>세부목표 6.C. 모든 장애 소녀 및 여성이 비장애 소녀 및 여성과 동등하게 성 및 생식보건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p> <p>세부목표 6.D. 장애 소녀 및 여성을 모든 형태의 폭력과 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늘린다.</p> <p>목표7. 장애 포괄적인 재난 위험 감소 및 관리의 보장</p> <p>세부목표 7.A. 장애 포괄적인 재난 위험 감소 계획을 강화한다</p> <p>세부목표 7.B. 재난에 대응할 때 장애인에게 적시에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는 조치의 이행을 강화한다.</p> <p>목표8. 장애 데이터의 신뢰성 및 비교가능성 개선</p> <p>세부목표 8.A.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형태로 신뢰할 수 있고 국제적으로 비교가 가능한 장애통계를 생산하여 배포한다.</p> <p>세부목표 8.B. 인천전략의 목표와 세부목표의 이행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서 새로운 아태장애인 10년의 중간 시점인 2017년까지 신뢰할 수 있는 장애통계를 구축한다.</p>
--

목표9. CRPD 비준 및 이행과 협약과 국내법의 조화 촉진

세부목표 9.A. 새로운 아태장애인 10년의 중간 시점(2017년)까지 10개의 아태지역 정부가 추가로 CRPD를 비준 또는 가입하고, 종료시점(2022년) 까지 다른 10개의 정부가 협약을 비준 또는 가입한다.

세부목표 9.B. 장애인의 권리를 옹호하고 보호하기 위한 차별금지조항, 기술적 표준 및 기타 조치를 포함하는 국내법을 제정하고, CRPD와 국내법의 조화를 위해 장애인을 직/간접적으로 차별하는 내용의 국내법을 개정 또는 폐지한다.

목표10. 하위지역, 지역, 지역 간 협력의 강화

세부목표 10.A. 장관선언 및 인천전략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에스캡 다자간기금 또는 기타 계획 및 프로그램에 기여한다.

세부목표 10.B. 아태지역의 개발협력기구는 그 정책과 프로그램에 장애 포괄성을 강화한다.

세부목표 10.C. 유엔지역위원회는 장애이슈 및 CRPD의 이행에 대한 지역간의 경험과 모범사례 공유를 강화한다.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2030 의제는 2015년 9월 193개 UN회원국들이 모여서 전지구적으로 국제사회가 참여하여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할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를 채택한 것이다.

SDGs는 총 17가지 목표와 169개의 세부 과제로 이루어졌는데, 그 중 17 분야별 목표는 아래와 같다.

- Goal 1. 모든 국가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 종식
- Goal 2. 기아의 종식, 식량안보 확보, 영양상태 개선 및 지속가능농업 증진
- Goal 3. 모든 사람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웰빙을 증진
- Goal 4. 모든 사람을 위한 포용적이고 형평성 있는 양질의 교육 보장 및 평생교육 기회 증진
- Goal 5. 성평등 달성 및 여성·여아의 역량 강화
- Goal 6. 모두를 위한 식수와 위생시설 접근성 및 지속가능한 관리 확립
- Goal 7. 모두에게 지속가능한 에너지 보장
- Goal 8. 지속적·포괄적·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생산적 완전고용과 양질의 일자리 증진
- Goal 9. 건실한 인프라 구축,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 진흥 및 혁신
- Goal 10. 국가내·국가간 불평등 완화
- Goal 11. 포용적인·안전한·회복력 있는·지속가능한 도시와 거주지 조성
- Goal 12.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 패턴 확립
- Goal 13. 기후변화와 그 영향을 대처하는 긴급 조치 시행
- Goal 14.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해양·바다·해양자원 보존과 지속가능한 사용
- Goal 15. 육지생태계 보호와 복구 및 지속가능한 수준에서의 사용 증진 및 산림의 지속가능한 관리, 사막화, 대처, 토지 황폐화 중단 및 회복 및 생물다양성 손실 중단
- Goal 16.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평화적이고 포괄적인 사회 증진과 모두가 접근할 수 있는 사법제도,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책임성있는·포용적인 제도 구축
- Goal 17. 이행수단 강화 및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재활성화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2030 의제의 결과물은 인cheon전략의 장애특정적 접근방식을 통해 향상될 수 있다. 개발에 대한 인cheon전략의 범분야 인권기반 접근 방식은 장애인이 지속가능한 개발 이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포함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도구가 될 것이다. 정부는 인cheon전략과 2030 의제 간의 시너지를 발휘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인cheon전략과 SDGs의 이행계획을 나란히 하고, 두 의제와 관련된 정책 수립 시 대표적 장애인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구를 구축하여, 장애포괄적 SDGs를 이행하는 데 헌신한다.
- SDGs의 이행 상황을 알리기 위해 인cheon전략 지표들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SDGs 이행에 관한 자발적 국가보고서에 장애관점을 반영한다.⁷¹⁵⁾

(2) 정부의 이행 현황에 대한 평가

정부는 인cheon전략과 관련하여 제3차 아태장애인 10년 주도국으로 모범적인 계획 수립, 이에 따른 이행과 지속적인 평가를 요구받았다. 정부는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인cheon전략의 주요 내용을 반영하였다. 그럼에도 인cheon전략에서 제시한 목표의 국내 이행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목표7인 장애포괄적인 재난위험감소 및 관리의 보장이 가장 심각한 수준으로 이행 정도가 부족하고, 목표9의 CRPD 비준 및 국내법의 조화촉진, 목표8의 장애데이터의 신뢰성 및 비교 가능성 개선, 목표6의 성평등과 여성역량강화 순으로 이행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있다.⁷¹⁶⁾ 인cheon전략과 SDGs의 각 세부목표들이 연관되어 있으므로, 인cheon전략 이행에 대한 위와 같은 비판은 SDGs 이행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인cheon전략 기간의 절반이 지난 2017년말에 이르기까지 정부 차원의 로드맵이나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점이 큰 문제로 지적되었다.⁷¹⁷⁾ 인cheon전략 이행을

715)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ESCAP'), "장애포괄적 아·태지역사회 건설: 인cheon전략 상반기 이행 평가 (Building Disability-Inclusive Societies in Asia" (2018), V.

716) 나운환, 앞의 글, 24.

717) M이코노미뉴스, "[인cheon전략5년] 주도국 한국, 로드맵도 컨트롤타워도 無" (2017. 12. 13 20:06:08) <http://www.m-economynews.com/news/article.html?no=20984>.

위한 예산은 현재 연 7억원 수준에 불과한 점과 장애계 참여가 보장되지 못하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었다.⁷¹⁸⁾

정부가 올해 발표한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따르면 인천전략이 완전한 이행을 위하여 2018년 2월부터 6월까지 장애인개발원이 하반기 로드맵을 수립하여야 하고,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가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하지만 현재까지 하반기 로드맵은 공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므로 위 위원회가 인천전략의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는 계획은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그리고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SDGs는 언급조차 되어 있지 않다. 정부가 장애인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할 때 SDGs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장애인과 관련하여 국제적인 기준을 고려하지 않는 낙후된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비판과 SDGs가 그 이전 새천년 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보다 진보된 것으로 평가받는 주요 요소가 개발정책에서 배제된 장애인의 포함시킨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가 SDGs에 대한 이해도 낮다는 비판이 모두 가능할 것이다.

한편, 위와 같은 평가는 모두 국내에서의 논의이다. 정부가 인천전략이나 SDGs의 국내 이행조차 미흡하다는 점에서 인천전략과 SDGs의 연계를 고려한 국제협력은 더욱 기대하기 어렵다.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은 2013. 7. 16.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기본정신에 장애인의 인권향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⁷¹⁹⁾ 하지만 정부가 2015. 11. 발표한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에는, “개도국 소녀 보건·교육 분야, 농촌개발 분야를 중점 지원함으로써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이행에도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힐 뿐, 장애인과 관련된 내용은 없다.

따라서 정부는 수용하였다는 취지로 답변하였지만, 이행이 미흡하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718) 비마이너, “하반기 5년 앞둔 ‘인천전략’, 효과적 수행 위한 정부의 과제” (2018. 1. 16. 17:59)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1779>.

719) 제3조(기본정신 및 목표) ① 국제개발협력은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여성·아동·장애인의 인권향상, 성평등 실현, 지속가능한 발전 및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협력대상국과의 경제협력관계를 증진하며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는 것을 기본정신으로 한다.

마. 소결 및 제언

우선 인천전략과 SDGs의 국내 이행을 강화하여야 한다. 뒤에서 살펴보는 CRPD 이행 강화 방안은 인천전략이나 SDGs의 국내 이행 강화를 위해서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수립할 때는 SDGs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인천전략, SDGs, CRPD가 모두 연동된다면, 장애인 권리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이행 상황 평가, 감독에도 유리할 것이다.

인천전략의 경우 2017년말에 이르기까지 정부 차원의 로드맵이나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점이 큰 문제로 지적되었는데,⁷²⁰⁾ 아직 5년여의 기간이 남은 점을 고려하여 정부 차원의 로드맵이나 컨트롤타워 구축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인천전략 이행을 위한 예산을 늘려야 한다.

국내 이행이 충분하지 않다고 하여 국제협력 노력을 다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국내 이행 강화와 국제협력 강화는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 정부 차원의 로드맵이 마련되고 컨트롤타워가 구축되면 국제개발프로그램과 활동이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2021년부터 적용될 제3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중점 지원분야로 장애를 적극 고려하여야 한다.

720) M이코노미뉴스, “[인천전략5년] 주도국 한국, 로드맵도 컨트롤타워도 無” (2017. 12. 13 20:06:08) <http://www.m-economynews.com/news/article.html?no=20984>.

29. 결 론

지금까지 최종견해 및 쟁점목록을 중심으로 추출한 쟁점 62개를 조문순으로 검토하였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조문	이슈	세부 쟁점	관련 부처	정부 답변	이행 평가		과제
					이행 여부	평가요지	
제5조 평등 및 비차별	-	국가 인권 위원회 지원 독립성 강화	국가 인권 위원회	수용	불이행	현재 인원으로는 모니터링 할 수 없음 조직, 인사, 재정에서 행안부, 기획재정부의 영향을 받으므로 독립성 부족 헌법기관화 논의 있지만 실현이 불확실함	단기적으로 독립적인 재정과 인사권한 부여 장기적으로 헌법기관화 고려
		소송 비용 감면	법원 행정처	일부, 조건부 수용	불이행	장애인차별구제소송을 위한 소송비용 감면제도는 없음. 현행 소송구조제도 요건 상 모든 차별피해 장애인에게 신청자격이 부여되지 않고, 승소가능성을 전제로 구조 여부 결정 장애인에 대한 소송구조 관련 통계 없음	장애인차별구제소송의 소송비용 감면에 관한 입법화 필요 장애인차별금지소송에 관한 소송구조 통계 필요
		시정 명령 요건 완화	보건 복지부	일부, 조건부 수용	이행 불충분, 미흡	시정명령 실적 저조 시정명령을 위한 조사방법과 절차 등에 대한 규정 없음 시정명령 요건 완화 및 발부대상 확대 필요 시정명령 요건 완화에 관한 토론회나 연구 없음	법무부의 시정명령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차별시정심의위원회 활성화 필요 시정명령 요건 완화한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 입법화 필요
		명령 권한 행사 인식 제고	법원 행정처	수용	불이행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8조의 명령권한에 관한 실제 적용례나 학계 논의 부족 법관에 대한 교육의 적정성 평가 필요	법관을 대상으로 차별구제소송에 대한 교육 강화
제6조 장애 여성	장애 여성	성인지적 관점의 반영 또는 주류화	보건 복지부	수용	이행 불충분, 미흡	선언적 규정에 그치고 있음 중복 및/복수 형태의 차별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하지 않음 젠더 관점의 주류화에 대한 이해 부족	‘성인지적’의 개념 정확히 파악 여성정책으로 우선 분류하여 개발하는 것이 더 필요 여성장애인이 속해 있는 가족 전체 지원 사업 확대 필요

조문	이슈	세부 쟁점	관련 부처	정부 답변	이행 평가		과제
					이행 여부	평가요지	
		폭력 예방	보건 복지부	수용	대체로 이행	「장애인복지법」 개정(15. 6.)으로 인권보호 강화, 다만, 장애여성에 특화된 이행 계획이 아니라는 한계, 장애인 확대 및 장애인 대상 신고의무직군 확대가 조기발견에 기여하였는지 검토 필요	장애여성에 특화된 정책 개발 필요
		평생 교육	보건 복지부, 여성 가족부, 고용 노동부	일부, 조건부 수용	이행 불충분, 미흡	장애여성 및 소녀들에 대한 교육지원 사업을 실시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불충분 장애여성에 특화된 프로그램 없음	장애여성에 초점을 둔 직업훈련 필요, 정부 운영 프로그램 이용자 수 감소 대책 마련
		모성권	보건 복지부	수용	이행 불충분, 미흡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제도에 머무르고 있음 금전적 지원 외 아무런 지원제도 없음	수입과 무관한 지원체계 구축 필요 임신, 출산 관련 교육 확대 시행 필요 자녀 “양육”에 대한 지원 필요 장애 유형, 정도 반영한 지원제도 구축 필요
제7조 장애 아동	-	법령 제 개정시 아동의 참여 아동의 자기 결정권 존중	-	없음	-	선언적 규정에 그침 부모에 의해 정체성 결정되거나 수술 받는 경우 많음	아동 및 가족의 참여 및 절차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 필요 장애아동 욕구 확인 위한 지원기관 필요 부모교육 필요
제8조 인식 제고	-	인식 개선 교육		수용	이행 불충분, 미흡	교육의 집중도나 의무의 강도가 낮음 고등교육 기관의 교육 필요 권리주체의 이미지, 교차차별에 관한 내용이 부실한 반면, 장애체험교육과 같은 부적절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평가할 필요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교육을 하는지 감시하고, 미이행시 제재 필요 교육방법에 대한 가이드 마련 내용적으로 “긍정적 이미지”에 대한 재검토 필요하고 보편적 설계에 중점을 두고, 교차차별에 대한 내용 반영되어야 함

조문	이슈	세부 쟁점	관련 부처	정부 답변	이행 평가		과제
					이행 여부	평가요지	
		인식 제고 활동	보건 복지부		이행 불충분, 미흡	홍보를 위한 노력과 내용 좋음 교차차별 및 장애인 내의 다양한 집단에 대한 캠페인 과 프로그램 활성화 필요	홍보 매체 확대를 위 한 충분한 예산 확보 필요 아동, 노인, 여성, 이 주민 등 더 다양한 장애인 집단을 보여 줄 수 있도록 기획 필요
		협약의 홍보			이행 불충분, 미흡	협약 내용, 취지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홍 보 및 교육 미흡	체계적인 홍보 확대 필요 장애인에게 CRPD를 홍보하기 위해 알기 쉬운 언어로 된 자료 나 수어로 된 자료를 만들 필요
		혐오 선동 표현의 제재			불이행	혐오 표현에 대해서 국가 인권위원회 권고 등의 역 할 미흡 방송이나 인터넷, 학교 교 육 현장에서 다양한 혐오 표현이 발견되고 범죄 보 도에서 용의자의 장애 여 부를 강조하는 경우가 많 은데, 대책이 전혀 마련되 어 있지 않음	장애 인권에 관한 시 민들의 인식 제고 교육현장의 언어 중 혐오표현 걸러내기 학생들이 혐오표현 자정 능력 가질 수 있는 교육 정책과 철 학 확립 심각한 혐오 선동에 대한 인권위 권고 및 가이드라인 제시
제9조 접근성	접근권	대중 교통 이용권	국토 교통부	수용	이행 불충분	여객선(교통수단)과 버스 정류장(여객시설)의 이동 편의시설 설치율이 기타 교통수단 및 여객시설에 비해 현저히 낮음, 저상버 스 보급률 낮음, 일부 지 자체의 경우 법정기준에 미달하는 특별교통수단 운영, 특별교통수단 운영 기준이 지자체마다 상이, 장애인의 시외이동권 보 장이 특히 미흡	여객선의 이동편의 시설 설치율 목표 상 향 설정, 이동편의시 설 설치계획 보강(특 히 버스정류장), 저상 버스 보급률 확대, 특 별교통수단 운영 기 준 통일, 장애인의 시 외이동권 보장 노력 필요
		공중 이용 시설 접근권	보건 복지부	일부, 조건부 수용	이행 불충분	BF인증의 실효성 부족(한 정적 의무대상, 인증기준 낮음, 배접기준 모호, 사 후관리 부실)	모든 공공시설 및 작 업장에 접근성 기준 적용, 「장애인등편의 법」 개정 필요

조문	이슈	세부 쟁점	관련 부처	정부 답변	이행 평가		과제
					이행 여부	평가요지	
		정보 접근권	과학기술 정보 통신부	수용	이행 불충분	현행 법령들은 인터넷 웹 사이트를 통한 정보 접근 에만 초점(최근 「국가정보 화 기본법」이 개정된 것은 긍정적 평가), 강제성 미비	다양한 정보제공매 체에 대한 접근성 보 장을 위하여 기존 법 령 재정비 필요(「장애 인차별금지법」 등), 접근성 기준의 강제 적 적용 필요
제11조 위험 상황과 인도적 차원의 긴급 사태	재난 및 안전	위급 상황시 장애인 보호 및 안전 보장, 재난 위험 감소 정책	행정 안전부	수용	이행 진행중	장애인 안전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장애인 안전 중 합대책을 세웠다는 점에 서 의미가 있으나, 감염취 약계층의 특수성을 고려 한 위기 관리 대책은 보완 이 필요함	장애특성 고려한 재 난안전 행동 매뉴얼 개발 및 장애인 특성 화 안전체험관 설립, 장애인 전담 지원조 직 및 전문인력 양성 필요
제12조 법 앞의 동등한 인정	조력의사 결정제도	조력 의사 결정 제도 전환, 성년 후견제 폐지	법무부		불이행	정부는 성년후견제도를 조력의사결정제도의 이행 이라고 평가하고 있으나, 이는 피후견인의 자기결 정권과 자율성을 침해하 는 대체의사결정제도에 해당함. 따라서 성년후견 제도의 도입을 조력의사 결정제도의 이행이라고 볼 수 없음	성년후견제도는 조력 의사결정제도로 보기 어려움, 성년후견제 폐지 및 조력의사결 정제도 도입 필요
		조력 의사 결정 메커니즘 훈련	법무부	일부 수용	불이행	조력의사결정제도가 도입 되어 있다고 볼 수 없고, 훈련대상자의 범위도 불 충분함 직무교육 개발에 장애인 당사자 또는 장애단체 참 여 미흡	교육의 대상과 내용 점검, 장애인과 장애 단체의 장애 감수성 과 경험을 교육 개발 에 반영
제13조 사법에 대한 접근	사법 접근권	「장애인 차별 금지법」 제26조 실효적 이행 보장	법무부	일부, 조건부 수용	이행 불충분	여성 수용자 시설 열악, 구금·보호시설의 실태점 검은 부적절, 불충분 인권침해신고센터 전문성 의문 장애인이 절차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사법지 원을 위한 교육과 훈련 부 재 사법절차상 권리에 대한 고지 범위와 대상 한정적 진술조력인의 제한적 운영 사법지원 규정 체계 부재	장애인 맞춤형 실태 조사 운영 및 정책 반영 인권침해신고센터 내 장애 전문가 필요 장애인 사법지원 규 정 정비 필요

조문	이슈	세부 쟁점	관련 부처	정부 답변	이행 평가		과제
					이행 여부	평가요지	
		사법 기관 훈련 프로그램 운영	법무부	수용	이행 불충분	각 교육 수준이나 적정성은 판단하기 어려움	경찰, 법관, 변호사 대 상 훈련프로그램 강화
		장애인 사법 지원을 위한 가이드 라인 법적 구속력 부여	법원 행정처	일부, 조건부 수용	이행 불충분	장애인 사법절차상 권리 파악 어려움, 사법지원 규 정 체계 부족	가이드라인 법적 구 속력 부여 「장애인차별금지법」 포함한 실무제요 제작 편의제공 비용 국고 부담하는 규정 마련
제14조 신체의 자유 및 안전	신체의 자유	자유 박탈 허용 조항 철폐	보건 복지부	일부, 조건부 수용	대체로 이행, 세부 검토 필요	「정신건강복지법」 개정되 었으나, 실제로 정신장애 인의 자유박탈을 정당화 할 가능성 존재	정신건강증진시설 수용실태 분석 필요, 비자의적 수용 요건 및 절차 개선
		보건 서비스 등 동의 제공 보장	보건 복지부	일부, 조건부 수용	이행 불충분	헬스케어 서비스가 개인 들의 자유롭고 고지된 동 의에 기초하도록 보장하 기 위한 조치에 관한 구체 적인 이행계획이 불충분	객관적 모니터링 실 시 및 절차보조인 역 할 강화 필요
		공정한 재판 및 적법 절차 보장	법무부	수용	이행 불충분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인 식 부족, 적절한 법률서비 스 부재 및 적법절차 미준 수 사례 발생	비구금적 수단 활용, 법률적 지원체계 강 화, 직원교육 강화, 편의시설 개선 및 구 금시설에서의 장애 인 처우 개선
		재판 부적합판 정 폐지	법무부	불수용	이행 불가	대한민국에는 영미법상 재판부적합판정 폐지 제 도가 존재하지 않음	「형사소송법」상 소 송능력 제도 또는 처 료감호 절차 제도에 대한 검토 필요
제15조 고문 또는 잔혹한, 비인도적 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차별로 부터의 자유	고문, 비인도적 대우 부터의 자유	강제 치료 폐지	보건 복지부	일부, 조 건부 수용	이행 불충분	「정신건강복지법」상 규정 이 존재하나, 실효적으로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 부족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에 따른 이행현 황 파악 필요
		독립적인 모니터링 메커니즘 구축	보건 복지부	수용	이행 불충분	권역별 지도점검이 부분 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한계가 있고, 지도점검 결 과가 정책에 반영되는지 불분명함. 공공후견인의 정기적 모니터링과 관련 한 회신자료 불충분	전문성 있는 모니터 링 추진체계와 기구 마련 필요, 모니터링 인력 및 대상 확대 필요

조문	이슈	세부 쟁점	관련 부처	정부 답변	이행 평가		과제
					이행 여부	평가요지	
제16조 착취, 폭력 및 학대로 부터의 자유	폭력, 학대로 부터의 자유	거주 시설 내·외 폭력 사건 해결 및 쉼터 제공	보건 복지부	수용	이행 불충분	장애인 학대에 대한 정기 적이고 포괄적인 사례조 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보 상에 대한 구체적인 체계 가 갖추어졌다고 보기 어 려움	학대 피해 예방 강화, 학대 피해 장애인의 권리회복 정책 강화, 재학대 방지를 위한 사후조치 정책 강화
		강제 노역 사건 조사 강화 및 보호 제공	고용 노동부	수용	이행 불충분	관련 규정이 강화되고 일 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장애 인 노동착취 실태는 여전 히 우려할 만한 수준임	학대 피해 장애인에 대한 지원프로그램 마련, 맞춤형 쉼터 설 치 및 자립 지원, 노 동 착취 가해자에 대 한 처벌 및 집행 강화
제17조 개인의 완전함 보호	생명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보건 복지부	일부, 조건부 수용	이행 평가 어려움	인식교육에 성교육, 장애여 성 등의 임신 및 출산권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 는지 여부, 교육대상 및 교 육 횟수에 대한 검토 필요	장애여성, 소녀 등으 임신출산권 및 성교 육 실시
		강제 불임	보건 복지부	일부, 조건부 수용	이행 평가 어려움 사실상 이행 거부	장애인복지시설 및 지역 사회의 장애인권실태조사 항목에 강제불임 포함여 부 확인 필요, 강제불임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 므로 사례조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은 이행 을 거부하는 것으로 평가	국가 및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장애인 탈시설 및 자활지원
제18조 이주 및 국적의 자유	이주의 자유	정신 장애인 입국 제한	법무부	일부, 조건부 수용	불이행	해당 조항이 폐지되지 않 았고, 주관적인 판단에 근 거하여 정신장애인의 자 기결정권을 침해할 여지 가 있음	정신장애인이라는 요건이 아닌 구체적 인 상황을 토대로 한 입국 제한 결정 필요
		이주민 장애 서비스 제한	보건 복지부	일부, 조건부 수용	이행 불충분	해당 조항이 폐지되지 않 았고, 난민이 대상 외국인 에 포함된 것에 불과함	국적이 아닌 거주지 기준의 장애 서비스 제공 필요
제19조 자립적 생활 및 지역 사회에의 동참	탈시설	탈시설 전략 개발	보건 복지부	수용	불이행	시설 거주 장애인들이 시 설을 나와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 는 중앙정부 차원의 전략 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시설 거주 장애인의 시설 퇴소를 위한 구 체적인 방안 마련
		활동 지원 급여 등 지역 내 지원 서비스 강화	보건 복지부	조건부 수용	이행 미흡	중앙정부 차원의 활동지 원급여 인상 계획이 마련 되어 있지 않음	중앙정부 차원의 자 립생활 지원 확대

조문	이슈	세부 쟁점	관련 부처	정부 답변	이행 평가		과제
					이행 여부	평가요지	
		사회 부조 프로그램 지원	보건 복지부	수용	이행 미흡	장애연금 수준이 중증 장애인의 생활 보장에 충 분하지 않으며, 장애등급 제로 인해 실질적으로 소 득생활이 어려운 경증장 애인들이 장애연금 대 상에서 제외됨	소득보장 자체에 대 한 개념 정의와 그에 기반한 정책 수립
		활동 보조 서비스 이용 금액 기준 수정	보건 복지부	수용	불이행	인정점수 산정 개정안이 아직 마련되지 않음	중증장애인의 당사 자의 총체적 상황을 고려한 활동지원급 여 산정
		부양 의무자 기준	보건 복지부	현시점 불수용			활동지원급여 산정 시 부양의무자 소득 배제
제20조 개인의 이동성	이동권	보도 에서의 이동	국토 교통부	없음	이행 불충분	이동편의시설 설치현황과 달리 장애인의 이동편의 시설 만족도는 낮음, 장애 인보장구 구입에 대한 지 원 부족, 이동기술 훈련 (20조 c항)과 관련한 법령, 정책, 프로그램 없음	보행환경 기준적합 평가에 질적 기준 포 함,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현실화, 이동기 술 훈련과 관련한 법 령, 정책, 프로그램 마련 필요
제21조 의사 및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권	정보 접근권	「수어법」 및 「점자법」 시행	문화체육 관광부	수용	이행 불충분	대부분의 시각장애인이 점자 해독 불가능, 대부분 의 청각장애인이 수화 사 용 불가능, 장애인방송 의 무화 제도의 실효성 부족 (의무편성비율 기준이 낮 음, 양적 기준만을 평가)	「수어법」 및 「점자법」 의 실효성 확보를 위 한 정책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점자와 수 화를 사용하지 않는 시각장애인 및 청각· 언어장애인의 의사 소통에 대한 고민 필 요
		방송 접근권	방송통신 위원회	수용	이행 불충분	장애인 방송 미흡	「장애인 방송고시」 질적 가이드라인 제 정, 장애인 방송 제공 대상 매체 확대
제22조 사생활의 존중	사생활	사생활 보장	보건 복지부	없음	이행 미흡	시설 서비스 최저기준이 마련되어 있음. 하지만 내 용이 부족하거나 이행을 강제할 법적 수단이 미흡	서비스 최저기준 강 화, 이행을 강제할 법 적 수단 마련
		개인정보 보호	보건 복지부	없음	이행	「개인정보 보호법」 및 사 회복지시설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 있고 대체로 준수됨	담당자 교육강화, 세 부 가이드라인 강화

조문	이슈	세부 쟁점	관련 부처	정부 답변	이행 평가		과제
					이행 여부	평가요지	
제23조 가정과 가족에 대한 존중	가족	장애 아동 가정 지원 결혼할 권리	보건 복지부 보건 복지부	수용 수용	이행 미흡 불이행	양육지원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나 범위나 수준이 총 분하지 않음 실질적으로 취한 조치가 없음	양육지원제도 확대 장애인의 결혼 및 자 녀양육에 필요한 지 원 방안 강구
제24조 교육	교육	통합 교육	교육부	수용	이행 불충분	통합교육 효과성 연구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음 통합교육 효과성 연구결 과가 제대로 반영되고 있 지 않음 여전히 분리교육 기초를 유지	통합교육 효과성 연 구를 주기적으로 심 화하여 실시, 연구 결과의 반영, 분리교육에서 통합교 육으로 기초를 변경
		정당한 편의제공				단순 설치올로는 실효성 확인 어려움 부모들이 보조인력으로 동원되는 사례 다수	장애인의 행동 특성 고려한 시설물 설치 시각 및 청각장애인 을 위한 시설 보완 필요, 대학 내 편의시 설의 설치율과 적합 도, 활용도 제고, 정부 편의시설에 대 한 기준 토대로 각 학교 평가하여 편의 시설 확충방안 마련
		교직원 대상 교육				교실 및 인력 부족 특수교육 교원연수의 교 원들의 인식 및 평가, 내 용 체계성 미흡, 행정적 지원 부족	연수내용, 과정, 시기 의견 수렴, 연수 우수 교원 확보, 교수방법 개선, 연수시기 및 시 간의 탄력적 운영, 다 양한 연수모형 개발 및 연수평가 방법의 개선, 연수비용 및 행 정적 지원
		장애 영유아 대상 교육 및 보육				장애영유아가 의무교육 대상임에도 의무교육기관 유치원의 부족, 차별 등으로 대부분 교육적 지 원 받지 못하고 있음	「특수교육법」상 의 무교육기관에 어린 이집 포함되도록 개 정
		여성 장애인 대상 평생 교육				여성장애인에 특화된 교 육지원 사업, 직업훈련 부재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 업'과 '여성장애인 사회참 여 지원 사업' 통합 후 실 효성 확인되지 않음	여성장애인에 특화 된 교육지원, 직업훈 련 마련 사업 통합 및 이용자 감소 등에 대한 점검 필요

조문	이슈	세부 쟁점	관련 부처	정부 답변	이행 평가		과제
					이행 여부	평가요지	
		장애학생 대상 학교 폭력의 무관용 정책	교육부	수용	이행 불충분	학교폭력 처분 결과에 대 한 통계없음 학교폭력 후 구제절차가 실효적이지 않음 교육현장 자체가 인권 친 화적이지 않음	장애아동 대상 학교 폭력 통계 작성 확고한 무관용정책 인권을 보장하는 교 육현장 조성
제25조 건강	보험	「상법」 제732조 삭제	법무부	불수용	불이행	개정 「상법」은 여전히 장 애인 보험가입 차별 수단 이 되고 있음에도 이행 거 부	「상법」 제732조 삭제 또는 개정
		협약 제25조 마항 유보 철회	보건 복지부	일부, 조건부 수용	불이행	협약과 개정 「상법」과의 충돌가능성을 명분으로 입장을 유보하며 사실상 불이행	협약 제25조 마항 유 보 철회
제26조 가활 및 재활	재활	가활로 패러다임 전환	보건 복지부	없음	불이행	정책이 구체화되지 않음	패러다임 전환을 위 한 연구
		발달 장애인 국가 책임제	보건 복지부	없음	불이행	정책이 구체화되지 않음	제도 마련을 위한 연구
제27조 근로 및 고용	근로 및 고용	지적, 정신 장애인 차별 법률 폐지	보건 복지부	불수용	불이행	현재 '정신질환'을 걸격사 유로 규정한 차별적 법률 은 다수 존재하며, 정신질 환자 해당 여부는 정신과 전문의의 주관적 판단에 좌우됨	정신질환자 판단 기 준과 절차를 구체화 하고(기준일 명시 등), 자격제한 법령을 축 소해야 함
		보충 급여제 도입	고용 노동부	일부, 조건부 수용	이행 불충분	정부가 제시한 개선책은 보충급여제 도입에 대한 일부, 조건부 수용으로 보 기 어려움, 오히려 보충급 여제 도입과 동떨어진 것 으로 평가됨	기업규모별 부담금 차등제 도입
		장애인 보호 작업장 폐쇄	보건 복지부	불수용	불이행	보호작업장 근무 장애인 들은 최저임금제 적용 대 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일반 고용으로 전이되는 비율도 현저히 낮음	사회적 공공일자리 등 사회 통합적 정책 마련 필요
		실업률 격차 해소 조치 및 장애여성 고용	고용 노동부	수용	대체로 이행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취업지원 강화, 중증장애 인 장애 유형별 특화훈련 을 시행 중	중고령 여성 장애인 의 취업 지원에 대한 대책 보완 필요

조문	이슈	세부 쟁점	관련 부처	정부 답변	이행 평가		과제
					이행 여부	평가요지	
		장애인의 무고용 제도 시행 보장 및 고용성과 관련 통계 발간	고용 노동부	수용	대체로 이행	5년 연속 장애인 의무고 용률 지속적으로 상승하 고 있고, 장애인 고용촉진 기본계획이 수립하고 이 행노력, 통계에 대한 접근 옹이, 의무고용 이행비율 더 높일 필요	공공기관 의무고용 전면 확대
제28조 적절한 생활 수준과 사회적 보호	생활수준 유지	장애인 당사자의 특성, 상황 및 필요에 따른 최저생계비 지원 권고	보건 복지부	불수용	불이행	생계급여액 자체가 낮을 뿐만 아니라, 부양의무자 가 부양능력이 있음에도 실제로 부양을 받지 못하 는 수급신청자는 그러한 사정을 스스로 입증해야 함. 또한, 장애인 가구에 대한 개별화된 급여 수준 결정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장애인 추가비용을 생 계급여 선정기준에 포 함, 부양의무자의 소 득평가액 산정시 장애 관련 추가 비용 전체 를 반영
제29조 정치 및 공적 생활에 대한 참여	선거권	투표권 및 선거 정보 접근권의 보장 여부	중앙선거 관리 위원회	수용	이행 불충분	장애인 투표권 보장 규 정이 '재량'의 형식에 불과 하고, 투표권의 질적 측면 에 고려되고 있지 않음. 선거공보물 제한 규정이 나 2인 동반 투표 규정도 투표권이 제한됨	투표권 보장 규정의 의무화, 투표소 접근 편의 규정 준수, 정당 한 편의제공의 질적 측면 고려, 점자형 선 거공보물의 면수 제 한 규정 삭제, 2인 동 반 투표 규정 개정
		피선거권의 보장 여부	중앙선거 관리 위원회	수용	이행 불충분	장애인의 피선거권을 보 장하는 유일한 제도인 장 애인 추천보조금 제도는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 는 규정이 아님	실질적인 피선거권 보장을 위한 선거운 동 제한 완화, 국고보 조금의 운용
		피성년후 견인의 선거권 제한	중앙선거 관리 위원회	수용	이행 불충분	피성년후견인의 선거권이 제한됨	관련 조항 삭제
제30조 문화 생활, 레크리 에이션, 여가 생활 및 체육 활동에 대한 참여	접근권	마라케시 조약 실행을 위한 조치	문화체육 관광부	수용	이행	「저작권법」에서 장애인을 위한 복제·배포권 규정	
		체육활동 접근성	문화체육 관광부	수용	이행 미흡	장애인의 차별 없는 체육 활동 참여와 관람을 위한 정부의 노력과 사회 인식 수준이 낮음	장애인 접근성 개선 을 위한 정책 마련
		장애인의 문화·오락· 여가활동 접근성	문화체육 관광부	미답변	이행 미흡	법 규정과 달리, 장애인이 영화 등 문화생활을 향유 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관련 법 개정 필요

조문	이슈	세부 쟁점	관련 부처	정부 답변	이행 평가		과제
					이행 여부	평가요지	
제31조 통계와 자료 수집	정보 접근권	워싱턴 그룹 방법론의 적용	통계청	수용	이행 미흡	대부분의 국가승인통계가 장애 항목을 포함하지 않 고, 장애 항목을 포함한 경우에도 단순한 데이터 수집에 불과함	국가통계 전반에 방 법론 도입 필요, 통계 법에 관련 조항 마련
제32조 국제 협력		인천전략 이행 및 SDGs를 고려한 국제협력	보건 복지부	수용	이행 미흡	인천전략, 국내 이행 미비, 정부 차원 로드맵과 컨트 롤타워 부재, 장애인정책 종합계획상 인천전략 이 행은 실효성 낮고, SDGs 는 언급 없음	인천전략과 SDGs의 국내 이행 강화 제3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상 중점 지 원분야에 장애 고려
제33조 국내적 이행 및 감독	모니터링	장애인 정책 조정 위원회의 활성화	보건 복지부	수용	이행 미흡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형 식적 운영	위원회 소집 정례화, 기능 강화, 장애인 전 문가 포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활용한 모니터링 시 스템 구축
		모니터링 기구로서 국가 인권 위원회의 인적, 재정적 지원 확보		불이행	전담인력 없음 일부 예산 증가했지만 모 니터링 예산 아님 연구용역 발주 외에 모니 터링에 관한 노력 없음	국가인권위원회 내 CRPD의 이행을 모 니터링하는 전담기구 와 전담인력 배치 장애인정책조정위원 회와 보건복지부의 모니터링 역할 강화	
		모니터링 과정에 장애인과 장애 단체의 참여 보장		수용	이행 미흡	필요한 경우 자문을 받는 것으로는 '완전하고 효과 적인 참여'의 수준에 이르 지는 못하였음	장애인정책조정위원 회 심의, 보건복지부 장관 의 계획 추진성 과 평가시 위촉위원 들의 의견을 청취 의 무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

VI

CRPD 이행 강화를 위한 개선 방안

1. CRPD 관련 규정	569
2. CRPD 이행 및 모니터링 관련 최종견해 및 쟁점목록	571
3. CRPD의 법률규범력 확보	572
4. 정부의 CRPD 이행체계 구축	574
5. 국가인권위원회의 모니터링 등 역할 강화	580
6. 장애인과 장애인단체의 참여 보장	592

1. CRPD 관련 규정

가. CRPD 규정

제4조 일반 의무

3. 당사국은 이 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법률과 정책의 개발 및 이행, 그리고 장애인과 관련된 문제에 관한 그 밖의 의사결정절차에서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를 통하여 장애아동을 포함한 장애인과 긴밀히 협의하고 이들을 적극적으로 참가시킨다.

제33조 국내적 이행 및 감독

1. 당사국은 이 협약의 이행과 관련된 사항을 위하여 국내조직의 체계에 맞춰 정부 내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전담부서를 지정하고, 다양한 부문과 다양한 수준에서 관련 활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정부 내에 조정기구를 설치하거나 지정하는 것을 충분히 고려한다.
2. 당사국은 자국의 입법과 행정 체계에 따라 이 협약의 이행을 증진, 보호 및 감독하기 위하여 적절한 경우 당사국 내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독립적 기구를 포함한 체제를 유지, 강화, 지정 또는 설치한다. 이러한 체제를 지정 또는 설치할 경우, 당사국은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한 국가기구의 지위 및 역할과 관련된 원칙을 고려한다.
3. 시민단체, 특히 장애인과 이들을 대표하는 단체들은 감독 절차에 충분히 개입하고 참여한다.

나. 일반논평 제7호

31. 완전하고 효과적인 참여에는 국가인권기관, 특별위원회, 의회 및 지방 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지역, 국가 및 국제 수준에서 서로 다른 의사결정기관에 장애가 있는 사람을 포함시켜야 한다. 주정부는 입법 및 관행에서 모든 장애인을 대표기관에 지명하거나 선출할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장애인을 도시 수준에서 장애위원회에 임명하는 것 또는 국가인권기관의 구성에 있어 특정한 장애 권리의 사무실 소유자로 지정하는 것을 보장한다.
53. 제4조 제(3)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당사자들은 법률 및 규제 프레임워크와 절차를 채택하여, 장애 관련 법률, 정책, 전략 및 조치 계획을 포함한 입법 및 정책과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과 정책 작성에 있어, 그들의 대표 조직을 통하여 장애인의 완전하고 동등한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정부는 상임 위원회 및/또는 임시 특별 태스크 포스에 구성원을 임명할 수 있는 권리를 그들에게 부여함으로써 장애인의 참여를 보장하는 법과 규정을 채택해야 한다.
94. 위원회는 주정부 당사자들이 여성과 어린이를 포함한 장애인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법률과 정책의 개발, 실행 및 모니터링에 대한 권리를 자문받고 참여할 때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위에서 설명한 규범적 내용 및 의무에 비추어, 주 당사자는 무엇보다도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제4조 제(3)항 및 제33조 제(3)항을 완전히 이행해야 한다.

(e) 모든 권한 및 의사 결정 수준에서 협의에 대한 명확한 절차를 수립하는, 장애인의 조직 참여와 참여를 인정하는 법률 및 정책을 채택한다. 이 입법 및 정책 체계는 의사결정을 채택하기 전에 공청회 의무 실현을 제공해야 하며, 명확한 시간 틀, 협의의 접근성 및 정당한 편의와 지원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포함해야 한다. 이는 법 및 기타 형태의 규정에 대한 명확한 참조를 통해 장애인의 조직 대표자 참여 및 선택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⁷²¹⁾

721) 31. Full and effective participation entails the inclus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different decision-making bodies, both at local, regional, national and international levels, as well as in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ad hoc committees, councils and regional or municipality organizations. States parties should recognize in their legislation and practice that all persons with disabilities can be nominated or elected to any representative bodies: for example, ensuring the nomina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o disability councils at the municipal level, or as specific disability-rights office-holders in the composition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53. To fulfil their obligations under article 4 (3), States parties should adopt legal and regulatory frameworks and procedures to ensure the full and equal involvement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hrough their representative organizations, in decision-making processes and the drafting of legislation and policies concerning issues related to persons with disabilities, including disability-related legislation, policies, strategies and action plans. For example, States parties should adopt laws and regulations granting organization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seats on, for example, standing committees and/or temporary task forces by giving them the right to nominate working members to these bodies.

94. The Committee acknowledges that States parties may face challenges when implementing the right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cluding women and children, to be consulted and involved in the development, implementation and monitoring of legislation and policies to implement the Convention. In the light of the normative content and obligations outlined above, States parties should, among other things, take the following steps to ensure the full implementation of articles 4 (3) and 33 (3):

(e) Adopt legislation and policies that recognize the right to participation and involvement of organization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regulations that establish clear procedures for consultations at all levels of authority and decision-making. This legislative and policy framework should provide for the mandatory realization of public hearings prior to the adoption of decisions, and include provisions requiring clear time frames, accessibility of consultations, and an obligation to provide reasonable accommodation and support. This can be done through clear references in laws and other forms of regulations to the participation and selection of representatives from organization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2. CRPD 이행 및 모니터링 관련 최종견해 및 쟁점목록

가. 최종견해

제33조 국내적 이행 및 감독

61. 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이 협약의 전반적인 이행을 담당하고,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가 장애인 관련 기본 정책을 구상, 조정 및 모니터링하며 국가인권위원회가 협약의 이행에 관하여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게 조언 또는 의견을 제공한다는 사실을 인지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가 제대로 기능하고 있지 않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협약의 이행을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한 인적·재정적 자원이 충분하지 않은 점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62. 위원회는 당사국이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가 자신의 역할인 장애인 관련 정책의 효과적인 개발 및 이행을 수행하도록 보장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협약의 이행을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인적·재정적 자원을 제공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위원회는 당사국이 협약 이행 모니터링에 있어서, 장애인 및 그들을 대표하는 단체의 완전한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법률 조항을 채택할 것을 권고한다.

나. 쟁점목록

제33조 국내적 이행 및 감독

34. 다음 각 호를 이행하기 위해 당사국이 취한 조치를 설명하십시오.
 - (a)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가 장애인 정책관련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가?
 - (b) 국가가 국가인권위원회가 협약이행을 효과적으로 감독할 수 있도록 인적, 물질 자원을 충분히 제공하는가?
 - (c) 장애인과 장애인단체(NGO)이 협약 이행 및 모니터링 과정에서 효과적으로 참여하도록 보장하는가?

다. 본건 연구의 대상

보고서의 앞선 부분에서는 대한민국이 CRPD 최초보고서를 제출한 이후 협약 및 최종견해의 이행과 관련하여 주요 쟁점을 정리하고 우리나라의 이행 현황과 이에 대한 평가, 개선방안을 살펴보았다. 개별적 쟁점을 살펴보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협약을 실질적으로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관련하여 CRPD는 제4조 제3항과 제33조에서 국내적 이행 및 감독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특히 CRPD는 이행과 감독의 과정에 장애인 및 장애인단체의 참여를 강조한다. 최근에 채택된 일반논평 제7호는 협약의 이행과 감독에 관하여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최종견해 및 쟁점목록에서는 CRPD 이행을 위한 방안으로 ① 장애인정책조정

위원회의 활성화, ② 모니터링 기구로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인적, 재정적 지원 확보, ③ 모니터링 과정에 장애인과 장애인단체의 참여 보장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에 앞서 협약의 이행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CRPD의 법적 규범력을 인정하는 것이다. 즉 CRPD는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아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되었으나, 국내에서는 아직 법률규범화되고 있지 않다. 나아가 CRPD의 이행을 위해서 그와 상충되거나 이행을 촉진할 부분은 국내의 다른 법률에 명시하는 것도 고려하여야 한다.

나아가 정부의 CRPD 이행체계가 보완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최종견해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역할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의 협약 모니터링이 실질적으로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를 담보하며 이루어져한다.

3. CRPD의 법률규범력 확보

가. CRPD의 국내법과 동일한 재판·행정규범화

CRPD는 다자간 조약으로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헌법」 제6조 제1항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행정기관 또는 사법부, 나아가 국민이 CRPD를 국내법과 동일한 법률규범으로 인식하고 있지 못한 것이 우리의 실정이다.

장애인 차별 등 장애인의 권리와 관련된 소송에서 CRPD를 법률규범으로 원용한 사례는 거의 찾기 어렵다. 최근에는 장애인차별 관련한 각종 소송에서 장애인들이 CRPD를 원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으나, 법원이 CRPD를 들어 판결을 내린 경우는 거의 없다. 공개된 판례 중에는 탈시설 기획소송이었던 “서울행정법원 2011. 1. 28 선고 2010구합28434 판결 사회복지서비스 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 사건”에서 유일하게 CRPD를 다른 법률과 함께 거론하고 있다.

행정기관도 국내의 다른 법률들과는 달리 CRPD를 행정과 정책의 준거로 국내법과 동일하게 고려하거나 준수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지 않다. 단적으로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의 종합법률정보 사이트에서 장애인권리협약을

검색하면 검색결과가 전혀 나오지 않는다.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생긴 국제인권조약이라면 국민들이 쉽게 법률정보에서 검색할 수 있어야 한다.

CRPD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CRPD를 국가기관과 국민의 법규범으로 인식하고 행위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CRPD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임을 명심하여야 한다.

나. 이행법률의 검토

CRPD를 포함한 국제인권조약의 법적 효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이행법률을 별도로 제정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 나라에 따라서는 조약에 법적 효력을 부여하기 위하여 국내법을 새로 제정하거나 기존 국내법을 개정하는 경우도 있으나(영국), 우리나라는 국회의 비준동의만으로 해당 조약에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도 일부 조약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행법률을 제정한 사례가 있는데 바로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이하 “통상조약 이행법”)이 그것이다.

이 법은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통상조약 체결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통상협상을 추진하며, 통상조약의 이행과정에서 우리나라의 권리와 이익을 확보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 법에서는 통상조약의 이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 즉 통상조약의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보고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등의 협력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제15조(통상조약의 이행상황 평가 및 보고)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발효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통상조약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이행상황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발효된 통상조약의 경제적 효과
 2. 피해산업 국내대책의 실효성 및 개선방안
 3. 상대국 정부의 조약상 의무 이행상황 등 통상조약에 따라 구성된 공동위원회에서의 주요 논의사항
 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행상황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을 포함한 관계 연구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 연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그 밖에 통상조약의 이행상황 평가의 주기·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3조 (통상조약의 이행상황 평가 방법)

- ① 제2조에 따른 통상조약의 이행상황 평가는 평가를 개시(開始)한 날부터 6개월 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통상조약의 이행상황 평가에 대한 협조를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 또는 관계 연구기관의 장이 기술적인 이유로 평가 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② 통상조약의 이행상황 평가는 가능하면 객관적으로 검증 가능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통상조약의 이행상황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국제인권조약에 관한 이행법률을 제정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CRPD를 포함한 국제인권조약의 이행 의지를 국내외에 천명하여 인권국가로서의 위상을 높이며, 국제인권조약의 범규범으로서의 인식이 부족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일반적인 조약과는 달리 인권조약의 이행법률을 만드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이러한 법률을 만든다면 국제인권조약의 이행에 관한 국가의 체계 구축, 주무부처의 역할과 다른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협력의무, 국무총리실의 조정 및 총괄 역할, 사실조회 또는 정보 취득의 근거 마련, 국제인권조약 이행에 관한 모니터링 관련 조항, 당사자의 참여권 보장 등을 내용으로 하면 좋을 것이다.

4. 정부의 CRPD 이행체계 구축

가. 기존 이행체계의 개편

(1) CRPD 주무부처의 검토

CRPD가 제대로 이행되려면 정부 안에 협약 이행을 위한 체계가 잘 구축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보건복지부가 CRPD 소관부처로서 각 부처의 협약 이행사항을 취합하고 확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CRPD는 장애인복지를 강화하는 것을 결과적인 목표로 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복지 담론이 아니라 인권 담론에

의한 조약이다. 서비스 또는 보호의 관점으로 강화되어온 복지정책과 장애인 당사자의 권리를 중요시하는 인권의 담론은 매우 다르다. 따라서 보건복지부가 CRPD의 주무부처가 되는 것이 바람직한지, 인권업무를 소관으로 하는 법무부가 주무부처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법무부가 인권업무보다는 검찰과 교정 중심의 업무를 처리해온 결과 CRPD 및 장애인 정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인력도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제기가 있을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법무부의 인권기능과 조직을 강화하여 인권조약을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2) 국무총리실의 역할 강화

나아가 다양한 부처에 흩어져 있는 장애인정책과 법률이 CRPD에 부합하는지 평가하고, 조정하며 강화하는 역할을 하려면 개별 행정기관의 역할로는 부족하고 국무총리의 역할이 높아져야 한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는 위치에 있다. 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도 있다(정부조직법 제18조 제2항). 프랑스의 경우 총리 산하에 장애부 국무장관을 설치하여 모든 행정기관의 장애정책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⁷²²⁾ 프랑스와 유사하게 국무총리실에 장애 정책을 총괄하는 국무조정실장을 두는 것을 검토하여야 한다. 현재 국무총리실에는 각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의 지휘·감독, 정책 조정 및 사회위험·갈등의 관리, 정부업무평가 및 규제개혁에 관하여 국무총리를 보좌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을 두고 있다. 국무조정실에는 실장 1명과 차장 2명을 정무직으로 두고 있다.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여 장애 담당 국무조정실장을 두거나 적어도 인권정책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인권담당 국무조정실장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722) 2018년 3월 15일부터 19일까지 소피 클뤼젤 국무총리실 산하 장애인담당 국무장관이 프랑스 대표로 평창 동계패럴림픽 폐회식 참석과 장애인 분야의 양국 협력 강화를 위해 방한하면서 장애인 담당 국무장관의 권한과 역할에 대하여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나.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권한 강화 및 활성화

(1) 최종견해와 정부의 입장

장애인권리위원회는 대한민국의 CRPD 이행과 관련하여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가 장애인 관련 기본 정책을 구상, 조정 및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데, 제대로 기능하고 있지 않다”고 우려하면서,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가 장애인 관련 정책의 효과적인 개발 및 이행을 수행하도록 대한민국 정부가 이를 보장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정부는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활성화하는 것에 대해 수용의 의사를 밝혀왔다. 구체적으로는 2016. 1. 21. 「장애인권리협약 제1차 국가보고서 권고사항 이행방안」에서 정부는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연 2회 이상 개최를 추진하고, 장애등급제 개편, 「발달장애인법」 시행 등 주요 장애인정책이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정책 시행 계획을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 보고 및 심의를 거쳐 추진하겠다고 답하였다.

장애인권리협약 제2·3차 병합 국가보고서(초안)에서는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장애인정책의 효과적 개발과 이행이라는 역할 수행 여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

1. 「장애인복지법」(ACT ON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제11조(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는 장애인 종합정책을 수립하고 관계부처 간의 의견을 조정하며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 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둔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는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2018년 3월 5일에 발표하였다.
2.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가 심의, 의결 기능 위주로 되어 있어, 정책분야별로 전문적인 사항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여 2018년 3월 제19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전문 분과위원회를 구성키로 결정하여, 제1분과 전문위원회에서는 복지·건강·권익 분야의 정책방향을 논의하고, 제2분과 전문위원회에서는 교육·문화·경제·사회참여 분야의 정책방향 등 현장 및 전문가와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장애인정책 개선방향을 모색하고,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상 추진사항을 점검하고자 한다.

(2)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현황 및 관련 논의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장애인 종합정책을 수립하고 관계 부처 간의 의견을 조정하며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하에 있는 위

원회이다. 위원회는 “장애인복지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장애인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중요한 특수교육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장애인 고용촉진정책의 중요한 조정에 관한 사항, 장애인 이동보장 정책조정에 관한 사항, 장애인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장애인복지에 관한 관련 부처의 협조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 조정한다(「장애인복지법」 제11조 제1항, 제2항).

또한 그 산하에 별도로 위 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관계 기관 사이의 협조 사항을 정리하기 위하여 장애인정책조정실사무위원회를 두고 있다(「장애인복지법」 제11조 제4항). 즉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부처 간 장애인 정책이 중복되거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장애인 정책에 대한 방향과 의견의 충돌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16년 장애인권리협약 이행방안 작성 시에는 장애인정책 조정위원회 활성화를 위해서 이를 연 2회 개최하겠다고 하였고, 제2차, 제3차 국가보고서에서는 전문 분과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개선방향을 모색하고 있다고 답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2016.1. 21. 제16회 개최 이후, 2018. 3. 5. 제19회를 개최하여 약 9개월에 1회씩 개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더군다나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개최를 알 수 있는 보도자료나 공지는 보건복지부나 국무조정실 어디에서도 찾기가 어렵고,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별도의 홈페이지가 마련되어 있지도 않다.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명실상부한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 총괄 기구이자, 최고 의사결정구조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위원회는 그 동안 1년에 1~2회 모여 의례적인 보고를 듣고 식사를 하고 마치는 형식적 기구였다. 따라서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법적으로만 존재하고 실제로는 작동하지 않는 유명 기구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있다.⁷²³⁾

이러한 비판의 목소리에는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가 비효율적이고 체계적이지

723) 2012년 이전 10년간 1년에 단 한차례조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아 장애계에서 위 위원회는 유명기구라는 강한 비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대통령산하 장애인위원회 상설화 장애계 요구공약, 장애인위원회 역할과 기능정립을 위한 세미나(2012)].

못한 근본적인 원인들 가운데 하나가 장애인 복지를 최종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하는 범정부적 관제탑이 유명무실하기 때문일 것이라는 지적이 포함되어 있다.⁷²⁴⁾ 이와 관련하여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은 대통령제 아래에서 국무총리의 주재 하에 국무회의 수준의 회의구조를 가진 구조적 한계 때문이라는 주장이 있다.⁷²⁵⁾ 위 주장은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대통령 산하 ‘국가장애위원회를 설립하고, 위 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가칭 ‘국가장애위원회법’을 별도 입법하거나 기존 「장애인복지법」의 전면 개정 또는 ‘장애인기본법’을 제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안한다. 이와 관련하여 2014년에는 최동익 국회의원이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⁷²⁶⁾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처럼 국무총리 직속의 위원회이지만 실질적인 역할을 하는 위원회가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구조적 한계가 현재 문제의 핵심은 아니라는 반박도 있다.⁷²⁷⁾

미국은 1984년 국가장애위원회를 설립하였는데, 대통령 산하 독립기구로서 정책자문기구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국가장애인위원회의 위원은 대부분 장애인당사자로 구성되어 있고, 위원회의 역할은 대통령과 국회 및 모든 행정부 내 산하 기관의 정책에 대해 조언할 수 있다.⁷²⁸⁾

(3)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운영 개선방안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설치하더라도 지금처럼 필요에 따라 운영되고, 심의·조정을 한다면 형식적으로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

724) 윤삼호, “장애인위원회 역할과 기능 정립”, 장애인위원회 역할과 기능정립을 위한 세미나 (2012), 8.

725) 윤삼호, 앞의 글. 8.

726) 중앙일보, “최동익,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법 발의”, 중앙일보 (2014. 02. 26. 21:09), <https://news.joins.com/article/14012498>.

727) 김치훈, 장애인위원회 역할과 기능 정립에 대한 토론문, 장애인위원회 역할과 기능정립을 위한 세미나(2012). 2-3. http://kodaf.or.kr/bbs/download.php?bo_table=B21&wr_id=234&no=1&page=14.

728) 웰페어뉴스,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이대로 좋은가?”, 웰페어뉴스 (2012.04.19 00:04),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28&NewsCode=002820180425160026644604>.

각된다.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가 장애인정책을 ‘수립’하고 ‘조정’하는 관제탑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위원회 소집을 정례화하여 현안을 파악하고 거시적인 정책의 방향을 미리 정하여야 하며, 대통령, 국회, 법원,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적극적인 정책자문, 조언을 할 수 있어야 한다.⁷²⁹⁾ 그리고 위원들을 위촉할 때 전문성을 가진 장애인 당사자들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⁷³⁰⁾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심의·조정 및 실질적인 의결권을 부여하여야 하고, 위원회의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사무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위 주장은 특히 사무기구와 관련하여 ① 장애인개발원, 국립특수교육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의 전문인력 파견, ② 장애인정책조정실무위원회 및 장애인정책책임관과 업무협력 시스템 구축, ③ 장애인정책조정실무위원회의 분과위원회 업무지원, ④ 중앙부처 간 정책조정안 마련, ⑤ 정책이행 모니터링 조직 설치 등을 제안하고 있다.⁷³¹⁾

(4)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활용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방안

정부의 이행과 관련하여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수립, 시행하는 장애인의 권리와 복지에 관한 정책으로, 복지, 교육문화, 경제활동, 사회참여 등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정책이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련 업무에 대한 사업계획을 매립 수립, 시행하여야 하고, 그 사업

729)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장애인차별개선 모니터링 체계구축을 위한 정책연구”, 보건복지가족부(2009), 261에서는 “우리나라의 여건상 정부 간 조정을 위한 상설기관의 설치가 사실상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보다 자주 개최 - 예를 들어 연 4회- 하도록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여 준상설기구화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제안한다.

730) 일반논평 제7호에서도 장애 관련 입법과 정책에 관한 의사결정과 정책 작성에 있어, 장애인단체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53. 제4조 제(3)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당사자들은 법률 및 규제 프레임워크와 절차를 채택하여, 장애 관련 법률, 정책, 전략 및 조치 계획을 포함한 입법 및 정책과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과 정책 작성에 있어, 그들의 대표 조직을 통하여 장애인의 완전하고 동등한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정부는 상임 위원회 및/또는 임시 특별 태스크 포스에 구성원을 임명할 수 있는 권리를 그들에게 부여함으로써 장애인의 참여를 보장하는 법과 규정을 채택해야 한다.

731) 김치훈, 앞의 글, 7-8.

계획과 전년도 사업계획 추진실적을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종합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여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추진성과를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종합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종합계획을 변경하거나 다음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2).

위 「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르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련 업무에 대한 사업계획을 매립 수립, 시행하여야 하고, 그 사업계획과 전년도 사업계획 추진실적을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이 시스템을 활용하여 CRPD의 이행을 모니터링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실현가능한 방안이라는 견해가 있다.⁷³²⁾ 이것이 가능하려면,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원칙이나 방향에서부터 CRPD를 준용하며, 세부 계획도 UN CRPD 해당 조항과 연동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올해 발표된 정부의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CRPD를 국제협력의 일환으로 모니터링 강화에서만 언급하고 있다.

2023년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원칙이나 방향의 설정 단계, 세부계획 단위까지 CRPD와 연동시켜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이행하고, 그 이행여부를 점검함으로써 CRPD의 이행과 감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5. 국가인권위원회의 모니터링 등 역할 강화

가. 최종견해와 정부의 입장

장애인권리위원회는 최종견해를 통하여 우리나라 CRPD 이행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가 협약의 이행을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인적·재정적 자원을 제공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2016. 1. 21. 「장애인권리협약 제1차 국가보고서 권고사항 이행방안」에서 모니터링을 위한 국가 인권위원회의 인적·재정적 지원 확보에 대하여서도 수용의 의사를 밝혔다.

732) 최승철 박사의 자문 의견.

구체적인 이행계획으로 ① 장애인권리위원회 위원 국내 초청, 토론회 행사 개최 (2016. 6.), ② 장애인권리위원회 최종 견해에 대한 관계 기관 이행상황 모니터링(2016년 하반기), ③ UN장애인권리협약 모니터링 세부 대상·지표 등 개발 (2016년 하반기)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예상되는 문제점 및 극복방안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모니터링 전담 인력을 증원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장애인권리협약 제2·3차 병합 국가보고서(초안) 내용은 다음과 같다.

- b) 국가인권위에서 협약이행을 효과적으로 감독할 수 있도록 인적, 물적 자원을 충분히 제공하는지 설명
1. 2014년~2018년 동안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 업무를 담당하는 인원은 1명으로 이 업무만을 전담 수행하는 인력은 없다. 관련 예산은 2014년 25백만원에서 2016년 45백만원으로 약 20백만원 증액되었다. 2016년 이후로는 사업비 총액에 변동 없이 45백만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증액된 예산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당사국회의 참석 및 장애인권리협약 이행강화를 위한 모범사례 벤치마킹과 관련된 국외여비이다.
 2.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그동안 장애인권리협약의 실효적 이행을 위한 전담 인력 증원과 그에 필요한 예산을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 이후 국외여비 20백만원 이 증액된 것 외에는 현재까지 인력 및 예산이 확충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는 앞으로도 관련 부처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국가인권위원회가 협약의 이행상황을 효과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인적 물적 자원을 확대해 줄 것을 적극 요청하고자 한다.

한편, 본 연구팀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받은 이행 현황에 관한 답변은 아래와 같다.

1. 본 협약의 이행을 효과적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공되는 인적, 재정적 지원 현황
 - 가. 국가인권위원회가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33조 제2항에 따른 대한민국의 유일한 모니터링 기구인바, 그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는데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는 관련 부서 직원 수와, 현재의 관련 부서 직원 수
 - 추정 : 모니터링을 전담할 수 있는 최소한 1개과 7명 필요
 - 현재 : 장애차별조사1과 1명(전체 업무 중 장애인권리협약 업무 비중 : 25%)
 - 나. 만약 '28-4'의 비율이 100% 미만이라면, 그 비율을 100%에 이르게 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계획(100% 달성까지의 기간 포함) - 해당 없음

나. 모니터링 기구에 관한 일반론

(1) 근거 규정

장애인권리협약 제33조 제2항에 따라 당사국은 협약의 이행을 증진 보호 감독하기 위해 당사국내에 국가인권기구의 지위 및 역할에 관한 원칙(파리원칙)을 고려하여 독립적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르면, 국제인권규약에 따라 관계 국가행정기관이 정부보고서를 작성할 때에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제21조). 국가인권위원회는 국제인권조약 가입 및 그 조약의 이행에 관한 연구와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업무를 수행하고(제19조 제7호),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제30조 제3항).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사실조회를 할 수 있고(제22조 제1항), 필요한 경우 출석을 요구하여 사실 및 의견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제23조). 그리고 정부의 관행이나 정책의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도 있다(제25조).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제39조).

(2) 모니터링 주체

CRPD 제33조 제2호는 당사국의 입법과 행정 체계에 따라 협약의 이행을 증진, 보호 및 감독하기 위하여 적절한 경우 당사국 내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독립적 기구를 포함한 체제를 유지, 강화, 지정 또는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모니터링 체제는 당사국 내에서 독립적 기구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독립적인 기구로서 모니터링에 관한 지위와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전제로 인적, 재정적 지원과 독립성 강화에 관한 최종견해가 나왔다.

(3) 모니터링 기구의 역할

모니터링 기구는 협약에 대한 국내적 이행을 강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정부 부처별로 장애인권리협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여, 협약과 부합하지 않는 국내법령, 정책, 제도, 관행에 대한 지속적 개선계획을 마련하고, 개선을 권고하고, 당사국의 의무 및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역할을 해야 한다. 정부의 이행상황을 장애인권리위원회에 공유하고, 모니터링 기구의 관점에서 평가하고 의견을 개진하는 역할도 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모니터링 기구는 장애인권리위원회와의 관계에서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⁷³³⁾

- 보고 의무를 포함하여 동 협약에 따른 국가의 의무에 대한 인식을 제고한다;
- 국가의 시기 적절한 보고를 권장한다;
- 국가가 초기 및 주기적 보고서를 작성할 때, 독립적인 감독의 틀, 시민 사회 및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단체와 폭넓게 상의하도록 권장한다;
- 장애인권리위원회에 대체 보고서를 제출한다;
- 장애인권리위원회와 당사국 대표단 간의 대화에 참여한다;
- 마지막으로, 국가 보고서가 검토된 후에 모니터링 메커니즘은 장애인권리위원회가 보고절차 상 발표한 권고사항에 대한 위원회의 후속 절차에 기여할 수 있다. 이는 무엇보다도 국가적인 수준의 광범위한 이해관계자들에게 이 절차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전파함으로써; 그리고 후속 협의를 조직하고;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단체가 동 절차에 친숙해지고 시기 적절하게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장애인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이 당사국에 의해 적절히 해결되거나 이행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는 서면 의견제시를 함으로써 성취할 수 있다.

733) 실비아 칸, “장애인권리협약에 대한 효과적인 감독 국가인권기구의 역할 및 독립적인 모니터링 메커니즘”,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 강화를 위한 국제심포지엄(2016), 11.

(4) 다른 나라의 동향 : 최종견해 및 국가보고서를 중심으로⁷³⁴⁾

국가	최종견해	쟁점목록 및 답변서	국가보고서
독일	위원회는 회원국이 33조 1항을 준수하는 제도적 구조를 확립하고 모든 주에서 본 협약의 적용되는 영역에서 전담기구와 협력기관을 공식적으로 지정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모든 주의 “장애인정책조정관”의 법적 지위를 포함하여 전담기구의 독립적 활동을 위해 필요한 자원과 환경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마지막으로 33조 2항에 따라 독립적인 모니터링 기제의 역량을 강화하여 모든 주와 자치단체에서 더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하기 위한 자원을 활용할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장애인정책조정관이 지방정부와 연방정부사이에서 원활한 조정을 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는 무엇인가에 대해 질의하였다. 이에 대해 독일 정부는 지방정부 장애인정책조정관들은 매년 2회씩 연방정부 장애인정책조정관과 함께 정례적인 회의를 개최하여 각 주의 현안은 물론 전체 주 및 연방정부의 공통 사안에 대하여 논의하고 조정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독일 연방 정부는 권리협약의 이행을 위한 주정부의 전담기구를 이미 설치하였으며, 연방정부와 주정부 장애인정책조정관이 참여하는 조정위원회를 통해 협약의 이행을 모니터링하고 지원하고 있다. 특히 위원회에는 장애인 당사자 및 단체가 다수 참여하는 통합을 위한 권고 위원회가 구성되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벨기에	위원회는 당사국이 파리 원칙에 부합하는 전담기구 센터(공평한 기회를 위한 센터)의 독립성 강화를 완수할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의 질의가 없음	벨기에는 연방정부 및 각 지역별 주정부 관련 부처에 협약의 이행과 모니터링을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하였으며, 조정의 권한은 연방정부 관련부처(사회보장부) 전담기구에서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연방정부 외교부 주관 하에 다자간 조정 회의를 통해 시민사회를 포함한 장애인 단체들이 국가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덴마크	위원회는 당사국이 시민사회와 장애인 단체가 CRPD의 이행을 모니터링 하는 과정에 완전히 참여하는 것을 보장할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해 줄 것과 조정위원회가 장애인 당사자 및 장애인 단체와 어떻게 협력하는 지에 대해 설명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덴마크 정부는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	덴마크 정부는 파리원칙에 기초하여 설립된 인권위원회와 부처간의 장애인정책조정 업무수행하고 있는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그리고 의회 결의안에 따라 설치된 의회 옴부즈맨 등의 기구들이 협력하여 권리협약의 이행과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다.

734) 이해경의 4, 앞의 글, 260-266.

국가	최종견해	쟁점목록 및 답변서	국가보고서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부처가 일관되게 장애인정책을 수행하는 것을 지원하며, 권리협약의 지속적 이행을 포함한 장애인 정책의 이슈에 관한 지식의 공유와 네트워크 구축 등을 다루는 포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장애인 정책의 이슈와 관련 있는 장애인단체를 포함한 시민사회단체의 관계자 및 이해관계자들과 대화하는 포럼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멕시코	위원회는 당사국이 국가인권위원회와 32개 주정부의 인권기관들이 CRPD의 독립적인 모니터링 기제로서 요구되는 조직 구조와 목적, 지표 및 자원 등을 명확하게 설정할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CRPD의 이행을 촉진하고 모니터링 하는 기구로서 33개의 인권위원회가 언제부터 운영되는지에 대해 질의하였다. 이러한 질의에 대한 멕시코 정부는 2013년에 33개 중앙정부 및 주정부의 인권위원회가 207회의 인권 촉진 활동, 286회의 회의 424회의 자문 등을 수행하였다고 답변하였다.	멕시코 정부는 2009년 9월 CRPD 33조 1항이 요구하는 조정 기구로서 국가 장애인위원회를 지정하였으며, 2011년 2월에 CRPD 33조 2항이 요구하는 국가인권위원회와 32개 주정부 인권위원회를 지정하였다.
뉴질랜드	위원회의 최종견해 없음	위원회의 질의가 없음	뉴질랜드는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의장을 담당하는 장애인부(Office of Disability Issue)가 CRPD의 이행 및 모니터링에 관한 전담 기구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는 독립 기구인 인권위원회와 옴부즈맨부가 CRPD의 독립적 감시기구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오스트리아	위원회는 당사국이 파리원칙에 부합하게 모니터링 위원회의 완전한 독립성을 보장하고, 지방정부도 자체적인 독립적 감시기구를 설치하며, 감시기구는 투명한 예산을 할당받아야 하고 자신의 예산을 독립적으로 운용할 권한을 가져야 할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국가보고서에서 독립 기제인 독립 모니터링 위원회의 역할 및 업무에 대해 상술하고 있으나, 이 독립 기제는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국가 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파리 원칙)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지 않아 협약에서 요구하는 독립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협약 제33조에 부합하도록 모니터링 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할 것인	오스트리아 정부는 연방 장애인 권고 위원회의 참여가 보장되는 장애인정책조정기구를 운용하고 있으며, 권리협약의 촉진과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독립적인 조직으로서 모니터링 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이 위원회에는 4명의 장애인 단체 대표와 1명의 인권분야 시민사회단체 대표, 1명의 개발 협력 분야의 시민사회단체 대표, 1명의 학계 대표로 구성된다.

국가	최종견해	쟁점목록 및 답변서	국가보고서
		지 여부에 대해 설명해 줄 것과 또한 지방정부 중 연방 차원의 오스트리아 독립 모니터링 위원회와 유사하게 독립적인 모니터링 위원회를 설치한 정부가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질의하였다.	
호주	위원회는 당사국이 제33조에 부합되게 그러한 구조를 구축할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협약 비준 절차를 준비함에 있어 장애인과, 특히 지적·정신장애인과 직접 협정한 사항과, 협약의 국내 이행 및 모니터링에서 정부와 장애인단체 간의 협력관계 틀 그리고 지적·정신장애인과 직접 협의하고 이들을 참여시키는지에 대해 상술해 줄 것을 질의하였다.	33조 1항이 요구하는 전담 조정 기구는 법무부와 가족주거지역 사회서비스부가 공동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권리협약의 이행과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독립적인 조직으로서 1986년에 설치된 호주인권위원회가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스웨덴	위원회는 당사국이 독립적인 모니터링 기구를 설치할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협약 33조 1항이 요구하고 있는 장애인단체의 대표가 참여하는 정부 간 장애인정책의 조정과 협력을 담당하는 전담기구와 33조 2항이 요구하는 독립적인 모니터링 기구의 설립 및 기능에 대해 상술해 줄 것을 질의하였다. 이에 대해 스웨덴 정부는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 보건사회부가 CRPD와 관련한 조정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장애인정책의 조정을 담당하는 아동노인부 장관이 주관하는 특별장애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권리협약의 이행을 모니터링 하는 기구로서 차별금지법에 의해 설치된 평등옴부즈맨부서가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CRPD의 이행과 관련해서는 보건사회부가 정부 내 전담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더불어 관계부처 장관과 장애인 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장애인정책 조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또한 파리 원칙에 가장 근접한 기구로서 평등 옴부즈맨이 CRPD의 이행을 모니터링 하는 기구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스페인	위원회의 최종견해가 없음	위원회는 국가의 모니터링 기제가, 특히 국가장애위원회가 어떻게 스페인의 국가인권 기제에서 주류화 되는지에 관해 정보를 제시할 것과 CERMI가 파리원칙을 준수하는지 여부에 관해 설명할 것을 질의하였다.	2007년 국가장애위원회가 CRPD의 이행과 관련한 정부 내 전담 기구로 지정되었으며, 2009년 9월 국가장애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CRPD의 이행을 모니터링 하는 독립적인 시민사회 조직으로서 스페인 장애인대표 위원회(CERMI)가 지정되었다.

다.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 현황 및 이에 대한 평가

모니터링 기구로서 국가인권위원회가 2015년에 제시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5개년(2016~2020년) 모니터링 계획(안)의 과제별 세부추진 일정은 다음과 같다.⁷³⁵⁾

연도	전략과제	세부과제	추진 일정	관계기관	
2016년	최종 견해 이행여부 모니터링	최종 견해 이행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9월	인권위, 장애인 단체	
		협약 및 최종 견해 등 이행성과 중간평가 토론회 개최	11월	인권위, 정부기관, 장애인 단체	
		모니터링 과정에서 장애인 및 장애인 단체의 참여 보장	연중	인권위, 장애인 단체	
	협약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국내 초청 간담회 개최	6월	인권위, 법원 행정처, 국회, 장애인 단체	
		알기 쉬운 협약 교육자료 작성	9월	인권위, 장애인 단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에 협약 내용 포함	연중	인권위, 교육부, 고용부, 복지부	
	협약 모니터링 지표	협약의 각 조항별 모니터링 세부 대상 및 지표 개발 등	10월	인권위, 정부기관, 장애인 단체	
	2017년	선진사례 공유 등 국제협력 체계 구축	국제기구 및 장애인 단체와의 협력 강화	6월	인권위, CRPD, IDA
		장애인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법령 등 개선	장애인의 접근성 개선을 위한 정책 권고	11월	인권위, 장애인 단체
인권위의 위상 및 역할 강화		인권위의 모니터링 인력, 조직, 예산 확대 협의	연중	인권위, 기재부, 행자부, 국회	
	모니터링 담당자 역량 강화 교육	6월	인권위, CRPD, IDA		
2018년	2019년도 제2·3차 국가보고서 심의 대비	차기 보고서 심의 대비 검토의견서 작성	11월	인권위, 복지부	
		최종 견해 권고사항 이행 여부 점검	11월	인권위, 장애인 단체	

735) 정호균, “유엔장애인권리협약 5개년(2016~2020년) 모니터링 계획(안)”, 유엔장애인 권리협약 이행 강화를 위한 토론회(2015), 22-23.

연도	전략과제	세부과제	추진 일정	관계기관
	법령, 정책, 제도, 관행 등 개선	협약 각 조항별 법령, 정책, 제도, 관행 등 개선과제 추진방안 마련	연중	인권위, 장애인 단체, 관계 기관
2019년	최종 견해 홍보 및 관계 기관의 이행 독려	최종 견해를 홍보자료로 제작, 배포	9월	인권위, 복지부
		최종 견해 논의를 위한 토론회 개최	11월	인권위, 장애인 단체
	국내법령 개정 등 정책권고	제도개선 확인사항에 대한 정책권고	11월	인권위, 장애인 단체
2020년	5년간 모니터링 결과정리 보고서 발간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발간 및 토론회 개최	11월	인권위, 장애인 단체
		협약 모니터링 5개년(2021~2026) 계획 수립	12월	인권위, 장애인 단체
	장애차별예방지침 발간	장애차별예방지침 작성, 발간	11월	인권위, 장애인 단체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협약 발효 후 협약의 관련 조항을 판단근거로 활용한 정책권고 및 시정권고, 의견 제출을 여러 차례 한 바 있었다. 대표적인 정책권고 및 시정권고 등 활동으로는 2013~2017 장애인 인권증진 중장기 계획 권고(2012. 10. 31.), 자기결정권 존중을 위한 성년후견제도 내실화 방안 마련에 대한 권고(2013. 6. 7.), 근로지원 서비스 제공 시 공무원인 중증장애인 배제에 대한 정책 권고(2013. 11. 12.),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구축을 위한 정책 권고(2013. 12. 9.),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대법원 2012두20991)에 대한 의견제출(2014. 2. 17.), 6·4전국동시지방선거 장애인 선거인의 평등권 침해에 대한 정책권고(2014. 4. 22.) 등이 있다.⁷³⁶⁾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2010년 장애인권리협약의 국내적 이행을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2011년 장애인 인권증진 중장기 계획 수립을 위한 장애 유형별 실태조사, 2012년 자립생활 기반구축을 위한 외국사례 및 정책연구를 통한 선진모델 구축 실태조사, 2013년 장애 인고용보장 및 확대를 위한 지원체계연구, 2014년 ‘건강권’, ‘교육권’, ‘주거지원제도’, ‘활동지원제도’, ‘거주시설 종사자 인권

736) 안석모, “유엔장애인권리협약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 강화를 위한 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 (2014), 15-18.

상황 실태 및 서비스 질 향상', 2018년 장애인권리협약 이행에 관한 실태조사 등 협약 상 규정된 장애인의 인권증진을 위해 다양한 분야와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⁷³⁷⁾

이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모니터링 계획이 최종견해에 집중되어 있는 점, 장애정책 전반을 보는 것은 2018년 '협약 각 조항별 법령, 정책, 제도, 관행 등 개선과제 추진방안 마련'에 해당하는데, 독립기구이자 준사법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위나 전문성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 위 계획에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대해 전혀 언급이 없다는 점 등이 문제라는 지적이 있다.⁷³⁸⁾

라. 모니터링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인적, 재정 자원 확보에 대한 평가

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인권리협약 모니터링 기구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모니터링을 전담할 수 있는 1개과에 7명의 전담직원이 최소한 필요함에도 현재 장애차별조사1과에서 1명이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위 1명조차 모니터링 업무만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업무 중 25% 정도의 비중으로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충실한 모니터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은 5억 원으로 추정되지만, 현재 배정된 예산은 4,500만원에 불과하다. 위 예산은 2014년 2,500만원에서 2016년 2,000만원이 증액된 것이다. 위 증가된 예산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당사국회의 참석 및 장애인권리협약 이행 강화를 위한 모범사례 벤치마킹과 관련된 국외여비로, 모니터링을 위한 예산으로는 볼 수 없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5년에 협약 이행 관련 전반적 모니터링체계 구축을 위한 로드맵(연차별 중장기계획)을 수립할 예정이었고, 협약 권고사항에 대해 관계기관의 이행 여부를 직접 파악한 후 권고 미이행 기관에 권고 이행을 독려하는 방법과 병행하여, 협약과 부합하지 않는 국내 법령, 정책, 제도, 관행 등에 대하여는 정책권고, 시정권고, 의견표명, 의견제출 등의 방법을 통해 협약 이행을 모니터링 할 예정이었으나, 위에서 살펴본 인적, 예산상 한계로 인해 본 연구용역 외에 모니터링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개선내용은 보이지는 않는다. 구용역 외에 모

737) 안석모, 앞의 글, 18.

738) 최승철 박사의 자문 의견.

니터링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개선내용이 보이지는 않는다.

마. 기타 모니터링 개선방안

(1) 모니터링 기구 및 체계의 문제

국가인권위원회 내에 CRPD의 이행을 모니터링하는 전담기구(내지 센터)와 전담인력을 배치할 경우 보건복지부가 운영하였던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의 운영을 참고할 수 있다.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위탁으로 2006년 개소하여 아동권리의 효율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였다. 모니터링 보고서를 바탕으로 분기별 전문가회의를 소집, 회의 결과를 종합하여 해당 정부부처에 전달하며 부처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였다.⁷³⁹⁾

이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와 별도로 ‘장애인인권모니터링센터’를 ‘독립적 기구를 포함한 체제’로 두는 것을 고민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⁷⁴⁰⁾⁷⁴¹⁾

그리고 독립기구이자 준사법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가 관계기관들의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것은 법적 위상이나 전문성 측면에서 맞지 않고, 모니터링을 위하여 7명의 전담인원이 필요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답변에 따르면, 다른 조약에 따른 모니터링 역할까지 고려할 때 모니터링을 위한 인원이 50명 넘게 필요할 것이므로 국가인권위원회에게 모니터링을 맡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도 있다.⁷⁴²⁾

생각건대, 국가인권위원회가 독립적인 기구로서 국내적 이행을 감독하고 별도의 의견을 제출해야 하는 만큼, 국가인권위원회 내에서 CRPD 이행을 모니터링

739) 염형국, “CRPD 이행 모니터링 체계 토론”, UN 장애인권리위원회 최종견해 이행 및 모니터링 방안에 관한 토론회, 유엔장애인권리협약 NGO보고서 연대 (2014), 79.

740) 원종필, “CRPD 모니터링 방향성에 대한 제언”, UN 장애인권리위원회 최종견해 이행 및 모니터링 방안에 관한 토론회 자료집 (2014), 81.

741) 영국의 인권공동위원회(UK Joint Committee on Human Rights)를 비롯하여 아일랜드, 벨기에, 캐나다, 가봉, 필리핀, 잠비아, 포르투갈 등처럼 유엔인권권고 이행을 위한 제도적 기구로서 입법부 산하의 기구 설립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오재창, “유엔인권권고 이행 메커니즘 확립 방안에 대한 토론문”, 제2회 유엔인권권고 이행사항 점검 심포지엄(2012), 170].

742) 최승철 자문위원의 의견.

하는 전담직원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모니터링 기구로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은 전담직원을 배치하여 관계기관의 이행현황을 취합하고, 정리하고 개선사항을 권고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장애인차별이나 인권침해 사건에 관한 조사, 구제조치 이행 권고 또는 정책 권고 과정에서 CRPD 규정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는 것도 넓은 의미의 모니터링에 포함될 수 있다. 위 전담직원은 국가인권위원회 내부에서부터 CRPD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이행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한편, CRPD 모니터링은 국가인권위원회라는 하나의 ‘기구’를 통해서만 수행되는 것이 아니다. 정부는 CRPD 모니터링 ‘체계’(framework)를 구축해야 한다. 모니터링 체계는 국가인권위원회 외에도 CRPD 이행 및 감독에 관여하는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국무총리실을 포함하여 구축되어야 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장애인정책종합계획과 CRPD를 연동시키면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사전 심의가 모니터링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매년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따른 사업의 계획과 추진 실적을 취합하는 것도 모니터링 과정에 포함될 수 있다. 그리고 위 체계에는 장애인과 장애인단체가 포함되어야 한다.⁷⁴³⁾

(2) 모니터링 방법의 문제

모니터링을 할 때 장애인에 초점을 맞추되, 일반적 인권과 연계되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의 모니터링 역시 장애인 권리에 특별한 초점을 맞춰야 한다. 다만 일반적 인권과 통합되어야 한다.⁷⁴⁴⁾

일반적 인권실태조사와 장애인 관련 다른 실태조사가 CRPD 이행 모니터링과

743)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연구보고서에서도 ①모니터링 체계는 파리원칙에 따른 독립된 메커니즘을 1개 이상 포함하여야 하고, ②위 체계는 협약의 이행을 촉진, 보호, 이행해야 하는 임무를 적절히 실행할 수 있어야 하며, ③시민사회, 특히 장애인과 이들의 대표 단체가 모니터링 프로세스에 관여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고 언급한다[“Thematic study by the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n the structure and role of national mechanisms for the implementation and monitoring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UN OHCHR, A/HRC/13/29 (2009), 9-10].

744) “Monitoring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UN OHCHR, HR/P/PT/17 (2010), 38.

연계될 필요가 있다. 즉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인권실태조사, 「장애인복지법」, 사회복지법에 따른 실태조사가 CRPD 모니터링의 관점에서 설계되고 이를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장애인 권리의 향상이 다른 사회적 약자의 인권 개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도 모니터링에 포함시켜야 한다. 장애인의 권리를 위한 정책과 법률을 결국 노인, 아동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개선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실제로 장애인의 이동권은 노약자, 영유아 동반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시키고, 장애인의 접근권 향상은 노인, 아동 등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의 권익을 증진한다. 이런 관점을 견지할 때 CRPD의 국민 수용성이 높아질 수 있다.

예들 들어 장애인의 시외이동권과 관련하여 최종견해는 “모든 교통수단에 접근성을 보장”하라는 권고를 하였다. 우리 현실이 시외버스, 광역버스 등 시외이동권을 전혀 보장하지 않은 데서 비롯된 권고였다. 그런데 이동권은 장애인뿐 아니라 노인, 아동, 임산부, 유모차 동반자 등 모든 교통약자를 위한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여전히 이동권을 장애인을 위한 문제로 인식하고 대처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은 이동권 예산을 장애예산으로만 편성하고 있는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는 다른 교통약자의 이동권 개선으로 이어진다는 인식이 중요하므로 모니터링에서도 그러한 관점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6. 장애인과 장애인단체의 참여 보장

가. 정부의 입장

CRPD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당사자 또는 관련 단체의 역할을 높여야 한다. 장애인권리위원회는 최종견해를 통하여 이를 권고하였다.

Monitoring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requires a twin-track approach:
 First, monitoring might warrant a specific focus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order to be effective.
 Second, monitoring should not reinforce an approach that considers persons with disabilities as inherently different from others. Consequently, monitoring their rights should be integrated into general human rights monitoring work.

관련하여 정부는 2016. 1. 21. 「장애인권리협약 제1차 국가보고서 권고사항 이행방안」에서 내실있는 모니터링을 위해서 장애인 당사자와 단체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모니터링 과정에 당사자 및 장애인단체의 참여를 보장하고, 분기별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답하였다. 또 장애인단체가 직접 추진하는 장애인권리협약 모니터링 사업에 참여하고 지원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장애인권리협약 제2·3차 병합 국가보고서(초안)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장애인과 NGO가 협약 이행 및 모니터링 과정에서 효과적으로 참여하도록 보장하는지 여부

1. 국가인권위원회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토론회 및 간담회 등 각종 행사 개최와 전문가 자문 등이 필요할 경우, 장애인 단체를 지속적으로 참여시키고 있으며, 장애인권리협약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서 작성 시 장애인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고 있다. 현재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상황을 모니터링 하는데 있어서 장애인 및 장애인단체의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을 규정한 현행 법령은 없으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를 법제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2018년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에 관한 실태조사 과제에 이를 포함하였다.

나. 현황과 과제

CRPD 제정 과정의 슬로건은 “Nothing about us without us!”였다. 이에 협약 이행을 위해서도 장애인과 밀접하게 상의하는 것, 장애인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것은 CRPD에 따른 당사국의 본질적 의무라고 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인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자문이 필요할 경우 장애인단체를 참여시키는 것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CRPD 제33조와 일반논평에서 요구하는 ‘완전하고 효과적인 참여’의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못하였다고 생각된다. 일반논평에서는 “완전하고 효과적인 참여에는 국가 인권 기관, 특별 위원회, 의회 및 지방 자치 단체뿐만 아니라 지역, 국가 및 국제 수준에서 서로 다른 의사결정 기관에 장애가 있는 사람을 포함”시켜야 하고, “장애 관련 법률, 정책, 전략 및 조치 계획을 포함한 입법 및 정책과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과 정책 작성에 있어, 그들의 대표 조직을 통하여 장애인의 완전하고 동등한 참여를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첫째, 절차와 내용에서 장애인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DPO(장애인 당사자 단체), NGO를 통한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고, 모니터링 요원 중 장애인이 포함되

어야 한다. 장애인을 참여시킬 때는 장애의 유형, 연령, 성별, 인종, 직업 등 다양한 배경이 반영되어야 한다. 나아가 내용면에서도 장애인의 목소리와 경험이 반영되어야 한다.

둘째, 장애인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능력 향상이 필요하다. 장애인 및 DPO의 능력(capacity)을 향상하는 것이 모니터링의 요소이자 부분이다(Building capacity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their representative organizations). 장애인 및 DPO가 장애인권리협약과 최종견해를 충분히 인식하고, 그와 관련된 견해를 밝힐 수 있게 되면 자연스럽게 모니터링이 가능해진다.

앞서 살펴본 여러 모니터링 활동에서 장애인 및 장애인단체의 참여를 법적으로 보장해야 할 것이다. 우선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는 장애인단체나 장애인이 위촉위원으로 포함되어 있다(「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조 제4항⁷⁴⁵⁾).

하지만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가 비정기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각 행정부처의 장관이 당연직위원으로 대거 포함된 상태에서 일부 장애인이나 장애인단체의 장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이것이 실제 정책에 반영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심의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위 계획의 추진성과를 평가할 때 위촉위원들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도록 규정을 강화하는 것을 고려해보아야 한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법」의 개정을 통해 권리협약 또는 한국정부가 비준한 모든 인권협약 이행의 모니터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다. 위 주장에 따르면 모니터링 체계의 구성에서부터 권한과 역할에 대한 부분, 조직 및 운영에 관련된 사항, 예산의 편성과 관련한 내용이 담겨야 할

745)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조(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1조에 따른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국무조정실장, 국가보훈처장, 법제처장 및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되어 위원장이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된다.

④ 위촉위원은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이나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것이다. 특히 구성에 있어서 CRPD 모니터링 체계는 장애유형과 장애 정도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장애인당사자 참여를 보장하고, 남녀의 비율은 각 50%로 맞추어야 한다. 또한 예산과 관련한 부분을 명시하여 각 모니터링 메커니즘의 운영과 임무수행에 적절한 인적, 물적 지원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⁷⁴⁶⁾ 이러한 내용을 반영한 모니터링과 관련한 법률개정안은 다음과 같다.

「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2(장애인정책종합계획)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때 종합계획에는 「장애인권리에 관한 협약」의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의 복지에 관한 사항
2. 장애인의 교육문화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의 경제활동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의 사회참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관련 업무에 대한 사업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그 사업계획과 전년도 사업계획 추진실적을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되, 제11조에 따른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미리 거쳐야 한다. 이때 위촉위원들의 의견은 반드시 청취하여야 한다. 종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추진성과를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종합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4항 후단에 따라 종합계획을 변경하거나 다음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 반영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추진성과를 평가할 때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위촉위원들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합계획의 수립 시기,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1조의1(모니터링) ① 위원회는 국가행정기관의 국제인권규약 이행 여부를 검토하는 모니터링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모니터링의 설계, 이행, 결과분석 과정에는 해당 규약의 당사자, 관련 단체가 구성원으로 절반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모니터링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둔다. 아울러 모니터링을 위한 자문기구를 구성할 수 있다.

④ 제1, 2항에 따른 모니터링 업무의 방법, 제4항에 따른 부서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46) 이석구, 앞의 글, 65.

VII

결론

- | | |
|---------------|-----|
| 1. 의의 및 한계 | 599 |
| 2. 연구결과와 활용방안 | 601 |

1. 의의 및 한계

우리 연구는 크게 장애인권리협약, 최종건해, 쟁점목록의 이행을 점검할 수 있는 지표 개발 연구와 장애인권리협약 이행에 관한 실태조사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지표 개발 연구는 다시 협약에 관한 지표, 최종건해에 관한 지표, 쟁점목록에 관한 지표로 나누어 연구하였다. 특히 최종건해와 쟁점목록은 공통되는 내용이 많지만, 최종건해 이후에 우리나라의 변화된 상황에 맞춘 추가 질문이 쟁점목록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지표를 개발하는 연구가 필요하였다.

실태조사는 다시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국가기관의 답변, 연구 중반 이후에 나온 국가보고서 초안 및 국내외 문헌연구를 통하여 살펴 본 정부의 이행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와 장애인단체 등을 대상으로 정부의 이행에 관한 평가를 측정하는 설문조사 및 FGI가 그것이다. 첫 번째 문헌연구를 통하여 현재 시행 중인 장애인에 관한 정책, 제도를 살펴보고, 설문조사 및 FGI를 통해 그것이 장애인 및 관련자들에게 실제로, 제대로 작동하는 것인지 살펴보는 기회가 되었다. 이 과정에서 연구팀은 장애인에 관한 법령과 제도를 만들고 집행하는 정부기관과 장애인, 장애인단체 사이에 인식의 차이가 크다는 점을 새삼 알게 되었다.

우리 정부는 장애인의 권리와 복지를 향상하기 위한 많은 법률과 제도를 만들었다. 이에 대하여 개별적인 평가는 있었지만, CRPD에 기초하여 이에 부합하는지를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은 없었다. 제1차 국가보고서 제출 후 장애인단체들이 NGO연대를 만들어 민간보고서를 냈다. 그 과정에서 장애인단체들이 국가보고서에 언급된 내용을 평가하였지만, 그 이후에 이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시스템은 만들어지지 않았다.

CRPD는 모니터링의 필요성과 모니터링 과정에서의 장애인, 장애인단체의 참여를 강조한다. 그동안 우리나라에는 CRPD 이행에 관한 모니터링을 위한 지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있었지만, 이를 실제로 개발하고 활용하는 단계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번 연구는 CRPD 이행에 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기 위하여 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활용하여 장애인단체를 대상으로 평가조사를 시행한 것에 의미가 있다. 특히 평가조사는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다.

장애인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평가조사를 통해 장애인단체들은 CRPD 이행에 관한 모니터링 과정에 직접 참여하였다. 이는 장애인권리위원회가 요구하는

장애인과 장애인단체의 모니터링 참여를 이행하는 노력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장애인단체들은 CRPD 최종견해와 쟁점목록을 알게 되었다. 우리 정부가 국제적으로 장애인권과 관련하여 어떤 요구를 받고, 어디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집행해야 하는지 파악할 수 있다. 정부가 향후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정책이 장애인들에게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문제를 점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우리나라 장애인 정책의 큰 방향은 장애인권리협약의 정신, 취지를 고려하여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선택권, 참여권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한편, 지표개발에 연구기간의 상당기간을 할애하였지만, 우리 연구 전체에서 보면 일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연구진과 연구비가 투입될 수 없었다. 이에 CRPD에 관한 지표와 최종견해, 쟁점목록 지표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이는 향후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이번 평가조사는 최종견해와 쟁점목록에 대한 지표를 활용한 것이기 때문에 향후에는 협약에 대한 지표를 확정하여 이를 활용한 평가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CRPD 국내 이행실태 조사연구를 통해 주요 장애인 정책 전반을 점검하였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탈시설처럼 개별 쟁점들이 하나의 연구용역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6개월의 연구기간에 개별 쟁점에 대한 깊이 있는 검토가 이루어질 수는 없었다. 그래서 정부의 답변을 기초로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연구가 이루어졌고, 제언은 기존의 문제제기나 개선 방안을 정리하는 수준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연구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표개발이 선행되고, 개발된 지표에 따라 문헌조사 및 민간단체 평가조사가 이루어지고 이를 모두 종합하여 결론과 정책제안이 도출되어야 한다. 하지만 6개월이라는 짧은 연구기간 내 지표개발과 CRPD 국내 이행실태 조사연구가 모두 이루어져야 했으므로 지표개발 연구와 CRPD 이행 상황에 대한 검토를 동시에 진행할 수 밖에 없었다. 따라서 CRPD 이행 상황에 대한 검토는 지표개발과 별개로 진행되어 보고서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부분은 아쉬움이 남는다.

CRPD 이행 강화를 위한 개선 방안으로 ① CRPD의 법적 규범력 확보, ② 정부의 CRPD 이행체계 구축, ③ 국가인권위원회의 모니터링 등 역할 강화, ④ 장애인과 장애인단체의 참여 보장을 제시하였다.

CRPD는 국회의 비준을 받아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고 있다. CRPD의 법률

규범력이 인정되어야 하지만, 그렇다고 장애인과 관련된 여러 법률 중 하나로만 볼 수는 없다. 장애인과 관련된 개별법률을 제·개정하고 집행할 때 CRPD의 규정의 내용과 취지가 고려되어야 한다. 그런데 장애인종합계획은 CRPD를 모니터링과 관련하여 일부 항목으로만 고려하고 있다. 이는 잘못된 접근방식이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원칙, 방향 설정단계부터 CRPD를 고려하여야 하고, 세부 계획도 CRPD의 개별조항을 준용하여 수립되어야 한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이 CRPD를 이행하는 방향으로 마련된다면, 보건복지부가 향후 위 계획의 세부계획과 추진실적을 취합하여 평가하는 과정도 CRPD 이행 모니터링의 하나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CRPD 이행 및 감독을 강화를 위하여 모니터링 기구로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뿐 아니라 모니터링 체계로서 법무부, 국무총리,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역할과 모니터링 방법에 대한 개선안도 제안하였다.

2. 연구결과의 활용방안

가. 모니터링 평가지표의 활용

이번 연구를 통해 개발된 평가지표는 향후 CRPD 이행에 관한 모니터링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모니터링 전담부서를 통하여 정기적으로 CRPD 이행 여부를 점검하여야 할텐데, 장애인단체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나 FGI를 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나.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서의 기초자료

이번 연구는 장애인 권리에 관한 주요 쟁점들을 추출하여 국가기관의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평가한 것이고, 연구과정 후반기에 제2차 국가보고서 초안이 나와서 연구기간상 어려움이 있었지만 최대한 위 보고서 초안을 평가대상으로 삼아서 검토하였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가 향후 장애인권리위원회에 모니터링 기구로서 독자적인 의견서를 제출할 경우 의견서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책권고의 기초자료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를 조사하고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 권고를 내릴 수 있다(제44조 제1항 제2호). 이번에 장애인에 관한 주요 정책을 망라하여 점검하면서 제시한 개선방안은 향후 관련 주제의 정책권고시에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평가 및 심의 기초자료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추진성과를 매년 평가하고 이를 고려하여 종합계획을 변경하거나 다음 종합계획에 반영하게 된다(「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2 제5항). 위 평가 단계에서 이 연구결과가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사전 심의하여야 하고, 주요 장애인정책을 심의·조정한다(「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2 제4항, 제11조 제2항). 위 심의단계에서 이 연구결과가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마. 장애인에 관한 법률이나 정책에 참고자료로 활용

향후 장애인에 관한 법률이나 정책을 만들거나 수정할 때 관련 쟁점의 최신 국내외 주요 내용이 포함된 이 연구결과가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바. 장애인단체들의 민간보고서 작성 또는 독자적인 모니터링의 참고자료로 활용

장애인단체들은 장애인권리위원회에 민간보고서를 제출하여 우리나라의 장애인 정책의 현황을 알릴 수 있다. 이를 위하여 별도의 단위를 꾸려 우리나라 장애인 정책의 현황을 점검하는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이 연구에서 개발된 평가지표를 활용할 수 있고, 연구내용을 민간보고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국내문헌)

- 강민희, “캐나다와 호주의 성인지적 여성장애인 지원정책 고찰”, 여성문화연구 제7권 제2호 (2013).
- 강영임, “장애인 보호작업장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사회복지학 석사학위논문 (2007).
- 강정배, “장애인활동지원 주간활동급여 시범사업 분석 및 제도개선 연구보고서”, 보건복지부 (2016).
- 교육부, “2017년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2017).
- 교육부, “보도자료, 장애학생 맞춤 일자리 늘린다” (2018).
-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권리협약 해설집” (2007).
- 국가인권위원회, “CRPD 제1차 국가보고서 심의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서” (2014).
- 국가인권위원회,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쟁점목록 선정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서” (2018).
-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 보험차별개선 가이드라인” (2013).
-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 유권자 참정권 보장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2014).
-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 정신장애인 자격 면허 취득 제한 제도 개선 권고” (2018).
- 국가인권위원회, “기본권보장강화 헌법개정안(연구포럼안)” (2017).
- 국가인권위원회, “세계 각국의 국가인권기구 설립 및 운영현황 연구” (2016).
- 국가인권위원회,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의 장애인 접근성 개선을 위한 정책 권고” (2017).
- 국립특수교육원, “2017특수교육통계” (2017).
- 국립특수교육원,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 (2017).
-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전문자격의 결격사유 기준일 명확화 방안” (2018).
- 국토교통부,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2017~2021)” (2016).
- 국토해양부, “제2차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2012~2016)” (2012).
- 국회예산정책처, “2018년도 성인지 예산서 분석” (2017).
- 국회예산정책처, 장애인복지사업 평가(통권 346호) (2015).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법안심사소위원회)”, (2011).
-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보고서” (2018).

-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연구자료집 6 헌법개정 조문별 참고사항(그 밖의 사항)” (2018).
- 권미경, “장애영유아 보육 교육 현안 및 요구”, 육아정책연구소 (2016).
- 권오용외 12,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모니터링 지표(안)”,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모니터링 지표(안) 개발 공청회 (2015).
- 김동호, “국제장애인권리조약 실무그룹회의의 경과와 개요”, 국제장애인권리조약 유엔 특별위원회 워킹그룹 참가보고 및 초안 공개토론회 자료집, 국제장애인권리조약 한국추진연대 (2004).
- 김미곤 등,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보충급여제도 도입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5).
- 김삼섭외 1, “장애영유아 교육권 보장 실태 및 증진 방안”, 한국특수교육학회 2016 춘계학술대회 (2016).
- 김삼섭외 3, “장애 영유아 교육권 보장 실태 및 증진 방안”, 국가인권위원회 (2015).
- 김성문, “피보험이익에 대한 소고”, 법학논고 제32집,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0).
- 김성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통합교육의 가능성과 한계성”, 통합교육연구 제2권 제2호 (2007).
- 김영정의 3, “장애여성 학대예방 정책방안 연구: 서울시 정신적 장애여성을 중심으로”, 서울시여성가족재단 (2016).
- 김영한의 4, “특수교육 교원연수의 현황과 문제점”, 한국특수교육문제연구소 학술대회 발표자료집 2015권 제1호 (2015).
- 김용탁외 1, “최저임금 적용제의 대상자에 대한 고용보조금 지급 방안 검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015).
- 김재원, “장애 차별에 대한 구제조치 ? 법원을 통한 구제를 중심으로”, 법과사회 제45호 (2013).
- 김정희외 2, “장애아동 재활서비스 지원 사업 실태 및 개선방안”,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서·행동장애연구 제31호 (2015).
- 김정희,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체계 개편방안 마련 연구보고서”, 보건복지부 및 한국장애인개발원 (2015).
- 김종일, “CRPD의 국내 이행에 관한 고찰”, 입법학연구 제14집 제1호 (2017).
- 김치훈, 장애인위원회 역할과 기능 정립에 대한 토론문, 장애인위원회 역할과 기능정립을 위한 세미나 (2012).
- 김태완외 12, “2013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연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
- 김태완외 20, “2017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및 평가연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 김호식, “「점자법」의 제정과 시행”, 새국어생활 제27권 제2호 (2017).
- 나운환, “한국의 인cheon 전략 이행수준과 개선방안 연구”, 재활복지 제21권 제2호 (2017).
- 남용현외 3 “장애인식개선교육 개선방안”,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011).
- 남형두, “마라케시 조약의 의의와 우리나라에 미치는 시사점”, 저스티스 제146-1호 (2015).
- 대법원, “2012 사법연감” (2012).
- 대법원, “2013 사법연감” (2013).
- 대법원, “2014 사법연감” (2014).
- 대법원, “2015 사법연감” (2015).
- 대법원, “2016 사법연감” (2016).
- 류재연, “통합교육을 위한 특수학급의 법적 역할 보완 탐색”, 통합교육연구 제8권 제1호 (2013).
- 문도운외 5, “알기 쉬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 (2016).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개헌특별위원회 “헌법개정리포트 2018” (2018).
- 박경수의 13, “장애인거주시설 설치·운영기준 등 개정안 마련 연구보고서”, 보건복지부 (2015).
- 박숙경외 9, “장애인 탈시설 방안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7년도 인권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2017).
- 박영실외 2, “SDGs 통계 거버넌스 연구”, 통계개발원 (2017).
- 박은혜외 3, “통합교육 정책의 효과와 발전방안 연구”, 교육부 (2015).
- 박인환, “UNCRPD과 성년후견 패러다임의 전환-의사결정대행에서 의사결정지원으로-”, 가족법연구 제28권 제3호 (2014).
- 박해룡외 12, “2014 특수교육실태조사”, 국립특수교육원 (2014).
- 방승주,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과 신체의 자유의 객관적 가치질서로서의 의미”, 정신건강제도와 인권·정신건강법률 국제심포지엄, 국가인권위원회·국회의원 이명수 보건복지위원장·대한변호사협회, (2018).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1년 개정판 출입국관리법 해설” (2011).
- 보건복지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1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최종 견해’ (2015).
- 법원행정처, “장애인 사법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 (2013).
- 보건복지부, ‘장애인권리협약 제1차 국가보고서’, (2011).
- 보건복지부 “사람 중심의 포용적 복지국가 구현을 위한 2019년 복지부 예산 편성” (2018).

- 보건복지부, “장애인의 자립생활이 이루어지는 포용사회를 위한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안) (2018~2022)” (2018).
-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2017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입, 퇴원 절차 안내” (2017).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정신보건법 개정 배경 및 「정신건강복지법」 주요내용” (2017).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정신의료기관·정신요양시설 비자의입원·입소에 대한 입원적합성심사 시행” (2018).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치매, 안심하세요. 이제 국가가 책임집니다!’ 1대1 맞춤형 상담·사례관리부터 치료지원까지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계획 발표” (2017).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다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를 위한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 발표 및 초청 간담회 개최”, (2018).
-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사회복지시설 편” (2013).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서비스과, “2018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2018).
- 보건복지부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결과” (2018).
- 보건복지부,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2018).
-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2017 보육통계” (2018).
- 보건복지부, “2018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2018).
- 보건복지부, “2018년 여성장애인지원 사업 안내” (2018).
- 임성백외 7, “일정기준 미만의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6).
- 사단법인 미디어전략연구소, “장애인방송 의무제공제도 개선방안 연구”, 방송통신위원회 (2013).
- (사) 한국발달장애인가족연구소, “장애인차별금지법해설서” (2018).
- 서울특별시, “2018년 서울시 장애인거주시설 탈시설화 정책 시행계획” (2018).
-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마스터플랜 세부 운영사업” (2017).
- 서울특별시, “자활에서 가활로 패러다임 전환 「발달장애인 가활센터」 조성계획” (2017).
- 서원선외 2,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연구”, 한국장애인개발원 (2016).
- 서혜정외 2, “여성장애인 모성권 증진을 위한 임신출산 지원 정책 연구”, 한국장애인개발원 (2016).
- 신권철, “강제입원 위헌결정의 의미와 향후 과제”, 서울시립대학교 서울법학 제24권 제4호 (2017).

- 실비아 콰, “장애인권리협약에 대한 효과적인 감독 국가인권기구의 역할 및 독립적인 모니터링 메커니즘”,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 강화를 위한 국제심포지엄 (2016).
-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장애포괄적 아·태지역사회 건설: 인천전략 상반기 이행 평가(Building Disability-Inclusive Societies in Asia and the Pacific)” (2018).
- 안병갑, “지자체 복지사업에 대한 중앙정부 관여의 의의와 개선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015).
- 안석모, “유엔장애인권리협약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 강화를 위한 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 (2014).
- 양숙미, “여성장애인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사업 개발 연구”, 보건복지부 (2015).
-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장애인차별개선 모니터링 체계구축을 위한 정책연구”, 보적복지가족부 (2009).
- 염형국, “CRPD 이행 모니터링 체계 토론”, UN 장애인권리위원회 최종견해 이행 및 모니터링 방안에 관한 토론회, 유엔장애인권리협약 NGO보고서 연대 (2014).
- 오재창, “유엔인권권고 이행 메커니즘 확립 방안에 대한 토론문”, 제2회 유엔인권권고 이행사항 점검 심포지엄 (2012).
- 오정화외 1,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에 대한 국가통계 대응방안 수립”, 통계청 (2015).
- 오혜경, “여성장애인의 자본실태에 관한 논의-경제·직업활동을 중심으로-”, 사회복지리뷰 제15집 (2010).
- 외교부,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조약정보” (2009).
- 외교부, “제12차~제14차 유엔 인권이사회 결과보고서” (2010).
- 외교부, “맹인, 시각 손상인 또는 그 밖의 독서 장애인의 발행 저작물 접근 진을 위한 마라케시 조약 조약정보” (2016).
- 이상호, “한국정부의 인천전략 실현, 이대로 좋은가” 인천전략 중간평가 준비 정책간담회, 한국장애인재활협회 (2016).
- 원종필, “CRPD 모니터링 방향성에 대한 제언”, UN 장애인권리위원회 최종견해 이행 및 모니터링 방안에 관한 토론회 자료집 (2014).
- 유경민외 2, “피해장애인 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연구”, 한국장애인개발원, (2017).
- 유동철외 13, “장애인 인권증진 중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장애유형별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1).
- 유야마 아쓰시, “일본의 장애인 고용할당제와 장애인 고용”, 국제사회보장리뷰 2018 봄호 Vol 4 (2018).

- 유엔장애인권리협약 NGO 보고서 연대, “제1차 UN 장애인권리위원회 한국 심의 최종 견해 설명회 자료집” (2014).
- 유엔장애인권리협약 NGO 보고서 연대, “연대 NGO보고서(국문)” (2014).
- 유영준외 1, “장애아 표준보육비 산출 방안”, 장애아보육의 질 개선 방안 토론회 자료집 (2012).
- 유은주, “워크투게더센터 사업 발전방안”,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013).
- 윤삼호, “장애인위원회 역할과 기능 정립”, 장애인위원회 역할과 기능정립을 위한 세미나 (2012).
- 이광원, “국제장애인권리조약 북경회의 참가결과 보고”, 2003 국제장애인권리조약 보고대회 자료집 (2003).
- 이광원, “바람직한 NGO 보고서의 형식과 내용에 관한 고찰”, 제4회 한국 DPI 대회 자료집 (2011).
- 이광원, “유엔장애인권리협약과 NGO 보고서 추진 현황”, 대한변호사협회 장애인인권소위원회 유엔장애인권리협약 관련 전문가 초청 강연회 자료집 (2013).
- 이광원,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모니터링 계획안에 대한 토론문”,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 강화를 위한 토론회 자료집 (2015).
- 이광원, “권리기반 패러다임과 장애인의 임파워먼트”,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네트워크 지원사업 자료집 (2017).
- 이동석외 6, “비밀은 없다?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장애인 인권상담 분석 보고서”, 보건복지부,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2016).
- 이동석, “장애인 인권 현황 및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2017).
- 이만우외 1, “장애인거주시설 소규모화 정책의 개선방안”, 국회입법조사처 현안보고서 제303호 (2017).
- 이승기외 8, “장애아동에 대한 사회적 복지지원체계 연구”, 보건복지부, (2011).
- 이연희외 6, “IoT 중심의 사회복지시설 정보화 현안과 정책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2016).
- 이익섭, “국제장애인권리조약 워킹그룹 초안의 의미와 전망”, 국제장애인권리조약 유엔 특별위원회 워킹그룹 참가보고 및 초안 공개토론회 자료집 (2004).
- 이혜경외 4,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최종견해 이행방안 연구”, 한국장애개발원 (2015).
- 임성택외 10, “장애인을 위한 사법지원에 관한 정책 연구”, 대법원 법원행정처 (2012).
- 임성택, “개정 상법 제732조와 장애인 차별”, 법학평론 제5권, 서울대학교 법학평론 편집위원회 (2015).

- 임성택, “장애인차별금지법상 법원의 구제조치”, 2013년 장애인분야 공익소송 보고대회 자료집 (2013).
- 임원섭외 7, “각국 공공부조제도 비교연구(스웨덴 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 장명화외 3, “장애학생 접근성 확보를 위한 편의시설 현황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17권 제4호 (2016).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사람중심의 학대피해장애인 지원방안 및 쉼터운영방안 토론회” (2018).
- 장애인법연구회, “장애인차별금지법 해설서”, 나남 (2017).
-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발달장애국가책임제도입관련 교양자료” (2018).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1만개 도입을 위한 5W1H 토론회” (2018).
- 전기택외 2, “여성장애인 지표개발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0).
- 정다운, “중증장애인 노동권 실태와 개선 방향”,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2018).
- 정민호외 6, “제5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 기초연구”, 국립특수교육원 (2016).
- 정현영, “사회복지의 이해”, 한국학술정보 (2017).
- 정호균, “유엔장애인권리협약 5개년(2016~2020년) 모니터링 계획(안)”,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 강화를 위한 토론회 (2015).
- 정희섭, “장애의 다중 패러다임에 근거한 통합교육 관련 법률의 성격”, 특수교육저널 이론과실천 제18권 제1호 (2017).
- 제철웅 “장애인인권보호를 위한 입법적 과제”, 법학연구 제44집 (2015).
- 제철웅, “CRPD의 관점에서 본 한국 성년후견제도의 현재와 미래”, 가족법연구 제28권 제2호 (2014).
- 제철웅, “가칭 ‘피성년후견인 등의 자격제한 및 차별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제정제안”, 성년후견 제1집 (2013).
- 제철웅, “피성년후견 및 피한정후견을 이유로 한 결격조항의 폐지”, 외법논집 제42권 제2호 (2018).
- 조규범, “국가인권위원회의 헌법기관화 필요성과 방향”, 이슈와 논점 제1319호, 국회입법조사처, (2017).
- 조성용, “정신건강복지법의 주요 쟁점과 실태 및 문제점”, 정신건강제도와 인권·정신건강법률 국제심포지엄, 국가인권위원회·국회의원 이명수 보건복지위원장·대한변호사협회 (2018).
- 조성혜, “지적장애인에 대한 성년후견제도의 문제점”, 노동법논총 제30권 (2014).

- 조자경 외1, “장애여성고용증진을 위한 교육콘텐츠 연구-서울시장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
를 중심으로” 서울시여성가족재단 (2016).
- 조한진 외8, “중증, 정신장애인 시설생활인에 대한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7).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관계법 개정의견(공직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 국회 (2014).
-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장애인학대 현황 보고 및 노동력 착취 정책 대안 마련 토론회
자료집” (2018).
-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보도자료, 장애인학대 월 평균 300건 이상 신고접수” (2018).
- 차선자외 4, “장애인권리협약의 국내적 이행을 위한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0).
- 차성안, “장애인의 사법 서비스 접근권과 장애인차별”, 공익과 인권 통권 제8호 (2010).
- 최복천, “장애아동 돌봄지원제도 현황 및 개선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
럼 238호 (2016).
- 최복천외 6, “장애아동에 대한 양육지원 및 활동지원사업의 통합적 운영방안 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 최운정의 2, “중고령 여성장애인의 취업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장애와 고용
(2014).
- 최용준외 3, “장애인방송 의무제공제도 개선방안 연구”, 방송통신위원회 (2013).
- 최저임금위원회, “주요국가의 최저임금제도” (2018).
- 최초록외 2,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법원의 구제
조치”, 장애인법연구(공익법총서2), 경인문화사 (2016).
- 하유정의 2, “정신보건시설 모니터링을 위한 매뉴얼 개발연구”, 국립서울병원 국립정
신보건교육연구센터 (2009).
- 한경근, “제1발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10년, 나아갈 길을 묻다 토론회, 조승
래 국회의원·전국장애인부모연대 (2017).
- 한국교통안전공단외 2, “2017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연구 최종보고서”, 국토
교통부 (2018).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노래연습장 제도 개선 및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2015).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2001).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2006).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2009).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2011).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2014).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2017).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7 장애여성 실업실태와 정책 과제” (2017).
- 한국장애인개발원, “2013년 장애인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2013).
- 한국장애인개발원, “2016년도 중증장애인 지원고용확대사업 안내지침” (2016).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의 노동시설 전이 활성화 방안” (2016).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EDI 2017 장애인통계” (2017).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의무고용제도 재설계 방안” (2008).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대통령산하 장애인위원회 상설화 장애계 요구공약”, 장애인위원회 역할과 기능정립을 위한 세미나 부록 (2012).
- 한국정보화진흥원, “[보도자료]한국정보화진흥원, ‘2017 정보접근성 실태조사’ 결과발표” (2018).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7년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2017).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인권침해신고센터의 발전방안”, 법무부 (2015).
- 현소혜, “성년후견제도 도입에 따른 관계법령의 개선방안, 특히 결격조항의 정비를 중심으로”, 가족법연구제25권 제3호 (2011).

(유엔문헌)

- “Concluding observations on the initial report of the Republic of Korea”, UN CRPD, (2014).
- “Draft General Comments No.5”, UN CRPD, CRPD/C/GC/5, Supp, No. 5. (2017).
- “General Comments No.1”, UN CRPD, CRPD/C/GC/1, Supp, No. 1. (2014).
- “General Comments No.2”, UN CRPD, CRPD/C/GC/2, Supp, No. 2. (2014).
- “General Comments No.3”, UN CRPD, CRPD/C/GC/3, Supp, No. 3. (2016).
- “General Comments No.4”, UN CRPD, CRPD/C/GC/4, Supp, No. 4. (2016).
- “General Comments No.6”, UN CRPD, CRPD/C/GC/6, Supp, No. 6. (2018).
- “General Comments No.7”, UN CRPD, CRPD/C/GC/7, Supp, No. 7. (2018).
- “Guidelines on treaty-specific document to be submitted by states parties under article 35, paragraph 1,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UN CRPD (2009).
- “Guidelines on Independent Monitoring Frameworks and their Participation in the Work of the Committee”, UN CRPD, (2016).

- “Human Rights Indicators ; A Guide to Measurement and Implementation“, UN OHCHR (2012).
- “Initial report of Germany submitted according to Article 35 of the CRPD“, UN CRPD, CRPD/C/DEU/1, Supp No. 1. (2013).
- “List of issues prior to submission of the combined second and third periodic reports of the Republic of Korea“, UN CRPD, (2018).
- “List of issues in relation to the initial report of the Republic of Korea“, UN CRPD, (2014).
- “Parallel Report to the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Person with Disabilities“, UN CRPD, CRPD/NHS/DEU/19761, Supp, No. 1. (2015).
- “Monitoring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UN OHCHR, HR/P/PT/17 (2010).
- “Thematic study by the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n the structure and role of national mechanisms for the implementation and monitoring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UN OHCHR, A/HRC/13/29 (2009).

(외국문헌)

- Bickenbach, Jerome E. “Monitoring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data, and the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 and Health“, BMC Public Health (2011).
- Brennan-Krohn, Zoe, “Employment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A Role for Anti-Subordination“, 51 Harvard Civil Rights-Civil Liberties Law Review (2016).
- R. L. Schalock and K. D. Keith. “Cross-cultural quality of life: Enhancing the lives of people with intellectual disability” (2th ed.) (2016).
- “Disaggregation by Disability: A way forward-Washington Group Questions“. Access Sep 28, (2018).
- French Phillip, “Human Rights Indicators for People with Disability: A resource for disability activists and policy makers“, Queensland Advocacy Incorporated (2008).
- Gaare Larsen, Freja Marie, “The Gold Indicators: Measuring the Progress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as with Disabilities“, The Danish Institutes for Human Rights (2015).

International Disability Alliance, “GUIDANCE DOCUMENT : Effective Use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Monitoring Mechanisms to Protect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2010).

Mental Disability Advocacy Centre, “Legal Capacity in Europe” (2013).

Phillip, F., “Human Rights Indicators for People with Disability : A resource for disability activists and policy makers”, Queensland Advocacy Incorporated (2008).

Priestley, M. and Lawson, A., “Indicators of Disability Equality in Europe (IDEE): A preliminary list of indicator proposals for discussion”, University of Leeds, Human European Consultancy (2009).

Republic of Korea. “Initial reports submitted by States parties under article 35 of the Convention”, (2011).

Schauffler/Uekert, “The Need for Improved Adult Guardianship Data”, Caseload Highlights 15(2) (2018).

Schalock, R. L, and Keith, K. D., “The evolution of the quality-of-life concept” pp. 3-12. in Cross-cultural quality of life: Enhancing the lives of people with intellectual disability. edited by R. L. Schalock and K. D. Keith. (2th ed.) Washington, DC: AAIDD (2016)

Schalock, R. L, and Verdugo, M. A., Handbook on quality of life for human service practitioners. Washington, DC: American Association on Mental Retardation (2002).

Victorian Law Reform Commission, “Guardianship Final Report” (2012).

W3C, “Web Content Accessibility Guidelines (WCAG) 2.1” (2018).

赤昭康弘, “成年後見制度の概要と特色”, 新アジア家族法三國會議 臺灣大會 資料集, (2013).

黃詩淳, “成年後見制度の概要と特色”, 新アジア家族法三國會議 臺灣大會 資料集 (2013).

(국회법률안)

김수민 의원외 1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14057, (2018. 6. 28.).

법제사법위원장, “민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 1810526, (2010. 12. 31.).

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716, (2017. 9. 28.).

신창현 의원외 10,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1212, (2018. 1. 2.).

윤소하 의원의 1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류 중)”, 2010953, (2017. 12. 21.).

황주홍 의원의 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03901, (2016. 11. 28.).

(언론보도)

EBS, “<장애영유아 의무교육 기획 2편> [단독] 특수교사 3년이면 관두는데..정부는 ‘남 탓’만” EBS NEWS, (2018. 7. 26.).

<http://news.ebs.co.kr/ebsnews/menu1/newsAllView/10924240/H?eduNewsYn=N&newsFldDetlCd=focus&brdcDt=&dtBtn=W&srchStartDt=&srchEndDt=&srchType=newsTitle&srchWords=&srchWords2=&cPage=1>.

JTBC, “시급 500원도 못 받는 장애인 노동자들…훈련과정이라서?”, (2018. 10. 18. 21:19).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712506.

MBC, “강서구 특수학교 교사들 장애아동 폭행.. 경찰수사”, 다음뉴스, (2018. 10. 10. 18:37). <https://news.v.daum.net/v/20181010183712362>.

M이코노미뉴스, “[인천전략5년] 주도국 한국, 로드맵도 컨트롤타워도 無” (2017. 12. 13 20:06:08). <http://www.m-economynews.com/news/article.html?no=20984>.

SBS NEWS, “[취재파일] ‘탄생 10주년’ BF인증, 왜 이렇게 허술할까” (2018. 4. 28. 09:06)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732298.

경기일보, “장애인도 시외 니들이 하고 싶다...이동권 확대 선거 이슈화”, (2018. 5. 14. 20:43). <http://www.kyeonggi.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475246>.

경향신문, “한국사회가 정신질환에 대처하는 방식”, (2016. 6. 4. 15:55).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606041555001.

광남일보, “장애인 영화관람 아직도 ‘먼 길’”, (2018. 1. 9. 19:30). <http://www.gwangnam.co.kr/read.php3?aid=1515493819276943023>.

광주IN, “정신지체장애인의 강제불임수술과 성(性) 정체성”, (2007. 2. 13. 21:11). <http://www.gwangjuin.com/news/articleView.html?idxno=12803>.

광주일보, “장애인 그룹홈, 인권침해부실운영 심각”, 광주일보, (2018. 7. 11. 00:00). <http://www.kwangju.co.kr/read.php3?aid=1531234800635944006>.

노컷뉴스 “‘차라리 중증장애인이었으면’ 장애수당 10년 동안 1만원 올라”, 노컷뉴스 (2017. 8. 29. 06:00). <http://www.nocutnews.co.kr/news/4836887>.

노컷뉴스, “‘철원 장애아동 폭행’ 은폐 교장 등 ‘해임’ 중징계”, 다음뉴스 (2018. 5. 30. 13:57). <https://news.v.daum.net/v/20180530135704037>.

- 노컷뉴스, “법무부, 장애인차별 금지법 첫 시정명령”, 다음뉴스, (2010. 4. 28. 20:54)
<https://news.v.daum.net/v/20100428205409486>.
- 노컷뉴스, “장애인NGO, 군산 장애인 콜택시 보편적 이동권 침해”, (2017. 9. 19. 13:38).
<http://www.nocutnews.co.kr/news/4849621>.
- 뉴스1, “최경환 ‘장애인 체육선수 훈련 환경 열악…처우·시설 개선 필요’”, (2018. 10. 23. 18:27). <http://news1.kr/articles/?3458123>.
- 뉴스앤조이, “인천 퀴어 축제 참가자들, 신체적·정신적 피해 극심”, 뉴스앤조이, (2018. 10. 11. 36). <http://www.news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220288>.
- 뉴스워커, “장애인 체육센터 2025년까지 150개 신규 건립한다”, (2018. 8. 15. 19:07:52).
<http://www.newswork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985>.
- 뉴스시스, “충북시각장애인회 ‘점자형 선거 공보물 의무화하라’”, (2018. 5. 30. 13:43).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530_0000322604&cID=10806&pID=10800.
- 매일경제, “노인 일자리 만들어 고령화위기 극복한 日도시재생”,(2018. 3. 20. 17:44),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9&aid=0004118686>.
- 매일노동뉴스, “국회 3년 연속 ‘장애인 고용 저조’ 명단 올라”, (2017. 11. 10. 08:00).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7900>.
- 머니투데이, “장애인 체육시설 150곳 세운다…생활체육 참여율 30%로”, (2018. 8. 14. 11:30).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081409174409273>.
- 미디어스, “장애인방송은 실적만 채우면 끝?”, (2016. 7. 22. 07:51).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1949>도 참조.
- 미디어오늘, “형식적인 자막방송만, 수화·해설방송은 가끔 시늉만”,(2016. 10. 10.).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2500>.
- 법률신문 “[판결] 버스에 휠체어 전용공간 무 장애인차별, 위자료 지급해야” 법률신문 (2017. 12. 7.).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23608>.
- 법률신문 “[판결] 시외버스에 휠체어 승하차설비 갖춰야” 법률신문 (2015. 7. 10).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94271>.
- 법률신문, “장애인 학대사건, 가해자 처벌 수위 너무 낮다”, (2017. 6. 9. 9:57).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18692>.
- 복지연합신문, “장애인 최저임금 감액제도, 해답이 아니다”, (2015. 9. 16. 14:26).
<http://www.bokjine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3752> 참조.
- 비마이너, “장애인 감염병 안전대책’ 법원 조정안 거부한 복지부”, (2018. 4. 13.).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2080&thread=04r03>.

- 비마이너, “‘평창올림픽 폐회식 수어통역 제공’ 인권위 권고 무시한 지상파 방송국”, (2018. 2. 26. 17:14).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1925&thread=04r10>.
- 비마이너, “6.13지방선거 첫 모니터링 결과 발표…여전히 갈 길 먼 장애인 투표권”, (2018. 7. 16. 17:59).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2388&thread=04r01>.
- 비마이너, “교육과정평가원, ‘선례 없다’며 수능 장애 학생 편의 제공 거부”, 비마이너 (2017. 9. 21. 19:06),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1389>.
- 비마이너, “장애인 등록 가능해진 ‘난민’ 아동 미르가 활동지원 못 받는 이유”, (2018. 1. 5. 18:12).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1750&thread=04r03>.
- 비마이너, “장애인 시외이동권 기대하며 시승식도 열었는데…이후 진행은?”, (2018. 9. 28. 19:55).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2647&thread=04r08>.
- 비마이너, “장애인 자가 격리 말고 대책 없는 메르스 지침은 ‘장애인 차별’” (2016. 10. 18.). <http://www.beminor.com/detail.php?number=10224>.
- 비마이너, “정신장애인은 사회복지사 꿈도 꾸지 말라고?”, (2017. 10. 10. 20:28).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1438&thread=04r01>.
- 비마이너, “지자체 예산 권 복지부, ‘활동보조 24시간’ 싹둑”, 비마이너 (2015. 4. 3. 22:13).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8171>.
- 비마이너, “질 낮은 지상파 수어방송, 소외되는 청각장애인 방송접근권”, (2018. 3. 2. 19:40).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1942>.
- 비마이너, “체험홈이 탈시설로 가는 과정’이라던 서울시, 거짓말이었다”, 비마이너 (2016. 8. 26. 21:12:12).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0057>.
- 비마이너, “최저임금 적용 제외 받은 장애인 노동자, 6년 사이 ‘3.7배’ 증가” (2018. 4. 23. 13:52).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2109>.
- 비마이너, “통합교육학부모협의회 출범, ‘특수학교가 장애인교육의 전부 아냐’”, 비마이너, (2018. 6. 4. 15:23).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2259>.
- 비마이너, “하반기 5년 앞둔 ‘인천전략’, 효과적 수행 위한 정부의 과제” (2018. 1. 16. 17:59).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1779>.
- 비마이너, “휠체어 이용 장애인도 ‘고속버스’ 타고 고향 갈 수 있을까... 시승식 열렸다”, (2018. 9. 19. 23:08).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2621&thread=04r08>.
- 서울신문, “특수교사 부족... 장애유아들 ‘유치원도 못가요’”, 서울신문, (2011. 11. 24.).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11024008016#csidxacce5b02ddaafd9b823914a8e07bcec>.
- 에이블 뉴스“‘벼랑 끝’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청와대 호소”, 에이블뉴스 (2018. 4. 25. 16:46:39).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28&NewsCode=002820180425160026644604>.

- 에이블뉴스, “20대 총선, 장애인당사자 4명 국회 입성”, (2016. 4. 14. 10:36:27).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43&NewsCode=004320160414101809745533>.
- 에이블뉴스, “국회예산정책처가 밝힌 장애인소득보장제도의 문제점”, 에이블뉴스 (2016. 10. 6. 10:13:41).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48&NewsCode=004820161006101450272096>.
- 에이블뉴스, “날 분노케 만든 시설거주 장애여성 강제피임”, (2018. 9. 28. 09:25).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09&NewsCode=000920180928062351616307>.
- 에이블뉴스, “내년 장애인연금 인상시기 9월로 연기”, 에이블뉴스 (2017. 12. 6. 09:00:41).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44&NewsCode=004420171206085535557411>.
- 에이블뉴스, “뜨거운 외침 ‘발달장애 국가책임제’ 청신호”, 에이블뉴스 (2018. 6. 8. 14:50:07).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14&NewsCode=001420180608142603312600>.
- 에이블뉴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시범사업 문제점”, 에이블뉴스 (2017. 3. 28. 16:36:57).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06&NewsCode=000620170328143620699973>.
- 에이블뉴스, “발달장애인법 실행 예산, 3년째 ‘삭감’”, 에이블뉴스 (2017. 12. 08. 09:41:31).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14&NewsCode=001420171208091200798648>.
- 에이블뉴스, “정부의 부양의무제 단계적 폐지의 허점”, 에이블뉴스 (2018. 7. 4. 14:35:23).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06&NewsCode=000620180702155134983442>.
- 에이블뉴스, “평창동계올림픽 장애인차별, IOC 윤리위 간다”, (2018. 10. 30. 15:37:49).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14&NewsCode=001420181030151053907343>.
- 에이블뉴스, “NGO보고서, 소외된 장애인 이슈 포함해야”, 에이블뉴스 (2013-06-21 17:27:12).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06&NewsCode=000620130621140850797155>.
- 에이블뉴스, “에버랜드 장애인 탑승거부, 3년만에 승소”, 에이블뉴스 (2018. 10. 11. 16:55).
<http://abnews.kr/1K4E>.
- 연합뉴스, “‘대소변 보는 것까지 CCTV 촬영’ 갈 길 먼 인권실태”, 연합뉴스, (2017. 04. 13. 15:13).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4/13/0200000000AKR20170413141700054.HTML>.

- 연합뉴스, “발달장애 부모들 청와대 앞 농성 68일 만에 종료”, 다음뉴스 (2018.6.8. 19:33). <https://news.v.daum.net/v/20180608193327921>.
- 연합뉴스, “법무부 장애인 이동권 제한 첫 시정명령”, 다음뉴스 (2012. 9. 28. 16:22). <https://news.v.daum.net/v/20120928162212932>.
- 연합뉴스, “법원 ‘에버랜드, 시각장애인 롤러코스터 탑승 제한은 차별’”, 다음뉴스 (2018. 10. 11). <https://news.v.daum.net/v/20181011143228772>.
- 연합뉴스, “신의현 금메달도 못봤다…지상과 패럴림픽 ‘중계 부실’ 여전”, (2018. 3. 18. 09:59).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3/18/0200000000AKR20180318015500005.HTML?input=1195m>.
- 연합뉴스, “장애인 지하철 이동권 보장하라 68일간 투쟁 돌입”, 다음뉴스 (2018. 8. 14 17:34). <https://news.v.daum.net/v/20180814173430462>.
- 연합뉴스, “큰 회사일수록 장애인 고용 외면…대기업 고용률 2.0% ‘최저’”, (2018. 4. 15. 10:30).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4/15/0200000000AKR20180415015200004.HTML>.
- 연합뉴스,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국제 사회에서 ‘등급보류’ 판정, 다음뉴스 (2014. 4. 5. 10:16). <https://news.v.daum.net/v/20140405101606117>.
- 오마이뉴스, “대통령 지적 없으면, 우린 패럴림픽도 못보나요?”, (2018. 3. 14. 16:22).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13938&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 웹툰 뉴스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이대로 좋은가?”, 웹툰뉴스 (2012.04.19. 00:04).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28&NewsCode=002820180425160026644604>.
- 이코노믹리뷰, “손끝으로 암을 진단하는 시각 장애인”, (2016. 5. 24. 06:39),
- 인사이드, “[박성연의 비영리를 위한 혁신] 손끝으로 암을 진단하는 시각 장애인”, 인사이드 (2016. 5. 24. 6:39:09). <http://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289564>.
- 일요서울, “6.13지방선거, 장애인도 ‘유권자’입니다”, (2018.6.12. 18:31). <http://www.ilyoseoul.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8025>.
- 장애인뉴스, “경기도 지자체들, ‘활동보조 칼질’ 시작됐다”, 장애인뉴스 (2016. 2. 2. 18:20). http://sdcil.or.kr/bbs/board.php?bo_table=B42&wr_id=1576.
- 전북도민일보, “장애인 인권연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 철저히 조사해야’”, (2017. 9. 19. 18:52). <http://www.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68299#09gT>.

- 중앙일보, “최동익,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법 발의”, 중앙일보 (2014.02.26. 21:09).
<https://news.joins.com/article/14012498>.
- 중앙일보, “장애 학생 도우랬더니 무차별 폭행항 사회복무요원들”, 다음뉴스, (2018. 10. 6. 10:44). <https://news.v.daum.net/v/20181006104418062>.
- 천지일보, “장애인단체 헌법소원… “투표 시 2인 보조는 위헌””, (2017. 8. 4. 22:39).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440961>.
- 티브로드, “[세종]세종 짐자없는 버스정류장…권고는 있으나마나”, (2018. 10. 15. 19:23:37).
http://ch1.tbroad.com/content/view?parent_no=24&content_no=79&p_no=66940.
- 한겨레 “헌병철의 국가인권위원회’ 또 등급 보류”, 다음뉴스, (2014. 11. 10. 23:50).
<https://news.v.daum.net/v/20141110235005301>.
- 한겨레, “ICC, 국가인권위원회에 3번째 등급 판정 보류 결정”, 다음뉴스 (2015.3.27. 22:40). <https://news.v.daum.net/v/20150327194010764>.
- 한겨레, “사회보장정보원, 191만명 개인 민감정보 4년간 노출”, 한겨레, (2017. 10. 09. 20:55). <http://www.hani.co.kr/arti/society/rights/813736.html>.
- 한겨레21, “구색맞추기 비례대표 아닌 정치인으로 인정받고 싶다”, (2013. 4. 20. 20:36).
http://h21.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34350.html.
- 한국경제, “내년 4월부터 장애인연금도 25만원으로 인상, 2021년부터 30만원”, 한국경제 (2017. 8. 21. 14:24).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708214941Y>.
- 한국일보, “기초생활수급자 가계부, 매달 17만원 ‘구멍’” (2018. 05. 16. 19:00).
<http://www.hankookilbo.com/v/4f3a46ffe09e4286b958854a259940c2>.
- 한국일보, “서삼석 의원 ”여객선 이동편의시설 기준 정비하라“, (2018. 10. 29. 15:21).
<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810291401060203?did=na>.
- 한국일보, “시각장애인 안마사는 결제도 혼자 못해요”, (2018. 10. 29. 04:40).
<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810262012376804?did=na>.
- 한국일보, “월급 10만원 장애인 보호작업장, 자활 꿈도 못꿔”, (2016. 2. 17. 04:40).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602170428875412>.
- 한국일보, “이번엔 유세윤, 장애인 비하에 여론 부글부글”, 한국일보 (2015.4.28. 17:23).
<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504281736274487>.
- 함께걸음,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 사회참여지원사업 통합 반대”, 함께걸음 (2015. 7. 15. 09:25:17). <http://www.cowalk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405>.
- 함께걸음, “‘같은 문답’, ‘다른 결과’ 인정조사표가 빼앗은 시각장애인들의 일상”, 함께걸음 (2016. 9. 5. 13:13:36). <http://www.cowalk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094>.

- 함께걸음, “19대 장애인 5명 여의도 국회 입성”, (2012. 4. 12. 11:13:58).
<http://www.cowalk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683>.
- 함께걸음, “강제입원·감금·강제치료 자행하는 국가폭력 ‘정신보건법 24조 폐지하라’”, (2013. 12. 31. 11:13). <http://www.cowalk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972>.
- 함께걸음, “재활이 아니라 가활이다”, 함께걸음 (2017. 10. 25. 10:49:03).
<http://www.cowalk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20>.
- Stockton, Halle, “What Happens When Sheltered Workshops Close?”,
<https://www.disabilitycoop.com/2014/09/30/what-sheltered-workshops-close/19717>.

(웹 문헌)

- 고용노동부 정책자료실, “제5차 장애인고용촉진 기본계획”
http://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180400811
- 국가지표체계 “장애인현황”
http://www.index.go.kr/potal/enaraIdx/idxField/userPageCh.do?chkURL=/potal/stts/idxMain/selectPoSttsIdxMain.do%3Fclas_div%3DC%26idx_cd%3D2768%26bbs%3DINDEX_001&idx_cd=2768&Title=%EC%9E%A5%EC%95%A0%EC%9D%B8+%ED%98%84%ED%99%A9&playurlstr=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IPageDetail.do%3Fidx_cd%3D2768
- 국가통계포털 “2005 인구주택총조사”
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menuId=M_01_01&vwcd=MT_ZTITLE&parmTabId=M_01_01#SelectStatsBoxDiv
- 국회예산정책처 “장애인연금 수급자 수 및 재정규모”
<http://stat.nabo.go.kr/fn03-97.jsp>
- 대법원 양형위원회, “근로위반법 등 위반범죄 양형기준”(2016. 7. 1. 시행),
http://www.scourt.go.kr/sc/krsc/criterion/criterion_36/labor_standard_01.jsp
- 더나은복지세상 사회복지 업무자료, “2018년 장애인거주시설 관리운영비 지원기준”
<https://www.welfare24.net/ab-3864-318>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IPageDetail.do?idx_cd=2760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http://www.socialservice.or.kr/user/htmlEditor/view2.do?p_sn=11

보건복지부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개요”

http://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370404&PAGE=4&topTitle=%C0%E5%BE%D6%BE%C6%B0%A1%C1%B7%20%BE%E7%C0%B0%C1%F6%BF%F8%20%B0%B3%BF%E4

보건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사업”

http://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370406&PAGE=6&topTitle=

복지로 “장애인활동지원”

<http://www.bokjiro.go.kr/welInfo/retrieveGvmtWelInfo.do?welInfSno=355>

복지로, “장애인연금”

<http://www.bokjiro.go.kr/welInfo/retrieveGvmtWelInfo.do?welInfSno=349>.

복지로, “장애수당”

<http://www.bokjiro.go.kr/welInfo/retrieveWelInfoDetail.do?welInfSno=330>.

복지로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http://www.bokjiro.go.kr/welInfo/retrieveWelInfoDetail.do?welInfSno=16437>.

(사)한국여성장애인연합 홈페이지 “장애인 성별 교육정도”

http://www.kdawu.org/human/human03_1.php

인천전략기금 운영사무국, “인천전략 서문”

https://mrr.koddi.or.kr/page/kor/strategy_guide.jsp?menu=strategy_guide

참여연대 “최저생계비를 둘러싼 오해와 진실” (2010. 7. 6. 18:48)

<http://www.peoplepower21.org/Welfare/669985>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입국금지 및 강제추방 법과 무관하게 입맛대로?”, (2012.

5. 3. 19:36) <http://www.opengirok.or.kr/2972>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https://www.kead.or.kr/>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통계자료실

https://www.kead.or.kr/common/comm_board.jsp?main=4&sub1=4

The Academic Network of Europe Disability Experts(ANED)

www.disability-europe.net

BT prax online lexikon Betreuungs Recht,

<http://www.bundesanzeiger-verlag.de/betreuung/wiki/Betreuungszahlen>

International Disability Alliance,

www.internationaldisabilityalliance.org



부 록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최종건해와 쟁점목록 이행 평가에 관한 조사 설문지	625
---	-----

No.				
-----	--	--	--	--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최종견해와 쟁점목록 이행 평가에 관한 조사 설문지

저희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사단법인 두루'에 용역을 주어,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이하 '협약') 최종견해와 쟁점목록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이행 실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 정부가 협약의 최종견해와 쟁점목록에 제시된 내용들을 얼마나 잘 이행하고 있는지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장애인 당사자, 관련 전문가, 유관 단체나 기관 등의 평가 의견을 듣고 반영하는 게 매우 중요하므로, 그에 관한 귀하(단체, 기관)의 평가 고견을 듣고 연구에 반영하기 위하여, 본 설문지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응답해 주신 내용은 관련 법령에 따라 비밀이 보장되며, 연구의 목적 이외로는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귀하(단체, 기관)의 성실한 답변은 정부의 협약 이행을 평가하는데 도움이 됨으로써, 궁극적으로 한국 장애인의 인권을 향상시키는데 귀중한 기초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성심껏 응답해 주신 후, 10월 18일까지 메일 또는 팩스로 우선 답변을 보내주시고, 원본은 아래의 주소로 퀵서비스 또는 택배(착불)로 송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8년 10월
국가인권위원회

설문지 관련 연락처(사단법인 두루) : 전화 (02)6200-1917 / 이메일 : jelee@jipyong.com
설문지 작성 후 송부 주소 :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60 KT&G 8층 사단법인 두루

우리나라에서는 협약이 2009년 1월 10일부터 발효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제출한 제1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심의 결과,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014년 9월에 한국 정부의 제1차 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를 채택하였고, 내년 1월 한국 정부의 제2·3차 병합보고서 제출을 앞두고 여러 질의 내용을 담은 '쟁점목록'을 2018년 초에 제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정부가 최종견해와 쟁점목록에 따라 취한 조치들에 대해, 협약 조항의 순서에 따라 질문을 드리오니, 이행 여부, 적절성 및 충분성 등을 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이 어려운 문항은 답변을 생략하여도 됩니다.

※ 응답자(단체, 기관)에 관한 사항 ※

1. 응답자(단체, 기관)의 성함(명칭) : _____

2. 단체나 기관의 경우 담당자분의 성함 : _____

3. 단체나 기관의 경우 담당자분의 연락처 : _____

4. 단체나 기관의 경우 담당자분의 이메일 주소 : _____

1. 제1~4조(일반 원칙 및 의무)

구분	해당 조항 관련 내용
최종 견해	<p>7.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장애인복지법」을 검토하고, 동 법이 협약에서 주장하는 장애에 대한 인권적 접근과 조화를 이루도록 할 것을 권고한다.</p> <p>9.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현행 장애등급판정제도를 검토하여 장애인의 특성·상황·욕구에 부합하도록 수정하고, 장애인의 요구에 따라 복지서비스 및 활동지원 서비스를 정신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유형의 장애인에게로 확대할 것을 권고한다.</p> <p>10.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협약 선택의정서를 비준할 것을 권장한다.</p>
쟁점 목록	<p>1. 당사국이 「장애인복지법」을 검토하고, 동 법률을 「협약」에 명시된 장애에 대한 인권적 접근법과 조화시키기 위해 취해온 조치를 설명하십시오. 이와 함께 「정신건강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에게도 「장애인복지법」을 적용하기 위해 취해온 조치를 설명하십시오.</p> <p>2. 「장애인복지법」에 의거한 장애등급 심사가 장애인의 특성과 환경, 욕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정신 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장애인에게 필요에 따라 복지서비스와 활동보조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당사국의 장애등급제 개정 여부 및 그 방식에 대해 설명하십시오.</p> <p>3.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을 위한 당사국의 세부 일정 수립 여부를 설명하십시오.</p>

1-1. 협약에서 주장하는 ‘장애에 대한 인권적 접근(human rights-based approach to disability)’과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법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만약 한국 정부가 법 개정을 위한 조치를 취했다면, 그 방향이 협약과 부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__ ①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_____ ② 별로 부합하지 않는다 _____ ③ 그저 그렇다
 _____ ④ 약간 부합한다 _____ ⑤ 매우 부합한다 _____ ⑥ 정보가 없어서 모르겠다
 _____ ⑦ 조치를 취한 게 없다

1-2. 협약에서 주장하는 ‘장애에 대한 인권적 접근(human rights-based approach to disability)’과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법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만약 한국 정부가 법 개정을 위한 조치를 취했다면, 그 조치가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 ① 전혀 충분하지 않다 ___ ② 별로 충분하지 않다 ___ ③ 그저 그렇다
 ___ ④ 약간 충분하다 ___ ⑤ 매우 충분하다 ___ ⑥ 정보가 없어서 모르겠다
 ___ ⑦ 조치를 취한 게 없다

1-3. 장애인의 요구에 따라, 복지서비스 및 활동지원 서비스가 정신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유형의 장애인에게로 확대되었다면, 그 확대 조치가 적절하였습니까?

- ___ ① 전혀 적절하지 않았다 ___ ② 별로 적절하지 않았다 ___ ③ 그저 그렇다
 ___ ④ 약간 적절했다 ___ ⑤ 매우 적절했다 ___ ⑥ 정보가 없어서 모르겠다
 ___ ⑦ 조치를 취한 게 없다

1-4. 장애인의 요구에 따라, 복지서비스 및 활동지원 서비스가 정신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유형의 장애인에게로 확대되었다면, 그 확대 조치가 충분하였습니까?

- ___ ① 전혀 충분하지 않았다 ___ ② 별로 충분하지 않았다 ___ ③ 그저 그렇다
 ___ ④ 약간 충분했다 ___ ⑤ 매우 충분했다 ___ ⑥ 정보가 없어서 모르겠다
 ___ ⑦ 조치를 취한 게 없다

1-5. 협약 제1조부터 제4조까지에 해당하는 최종견해와 쟁점목록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답변하신 이유와 배경, 그리고 기타 평가의견들을 자유롭게 적어주십시오.

()

2. 제5조(평등 및 차별)

구분	해당 조항 관련 내용
최종 견해	12.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인력을 확충하고 독립성을 더욱 확보해 줄 것을 권고한다. 또한 법원을 통한 권리구제에 접근할 수 있도록 장애로 인한 차별 피해자의 소송비용을 감면하고, 법무부 장관의 시정명령 요건(장애인차별금지법 제43조)을 완화할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또한 대한민국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효과적인 이행 필요성 및 법관에게 부여된 명령 권한을 제대로 인식할 필요성에 대해 법관들의 인식을 제고할 것을 권장한다.
쟁점 목록	4. 다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십시오. (a)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의 인력 확충과 독립성 강화를 위한 조치 및 방안에 대해 제시하십시오. (b) 장애인 차별 피해자들이 법원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소송비용을 면제 또는 경감하기 위한 방안, 그리고 법무부의 시정명령 발부 요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제시하십시오. (c)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효과적 이행의 필요성 및 법원에 부여된 중지명령권 행사의 필요성에 대한 법원의 인식 제고 사업과 활동에 대해 제시하십시오. (d) 법무부가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통보 받은 진정 사건 중, 기타 진정 사건의 비율과 비교하여 장애인 관련 진정 사건 비율 및 진정 사유를 제시하십시오. (e)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소송과 관련한 법률구조 통계를 제시하십시오.
참고 사항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중> 제43조(시정명령) ① 법무부장관은 이 법이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의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고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1. 피해자가 다수인인 차별행위에 대한 권고 불이행 2. 반복적 차별행위에 대한 권고 불이행 3.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고의적 불이행 4. 그 밖에 시정명령이 필요한 경우

2-1. 장애인 차별 피해자들이 법원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소송비용을 면제 또는 경감하기 위한 현행 제도가 있다면, 그 제도는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 ① 전혀 적절하지 않다 ___ ② 별로 적절하지 않다 ___ ③ 그저 그렇다
 ___ ④ 약간 적절하다 ___ ⑤ 매우 적절하다 ___ ⑥ 정보가 없어서 모르겠다
 ___ ⑦ 제도 자체가 없다

2-2. 장애인 차별 피해자들이 법원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소송비용을 면제 또는 경감하기 위한 현행 제도가 있다면, 그 제도는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 ① 전혀 충분하지 않다 ___ ② 별로 충분하지 않다 ___ ③ 그저 그렇다
 ___ ④ 약간 충분하다 ___ ⑤ 매우 충분하다 ___ ⑥ 정보가 없어서 모르겠다
 ___ ⑦ 제도 자체가 없다

2-3. 위원회는 현행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3조의 법무부 장관 시정명령 요건이 너무 제한적이니, 이를 완화하여 시정명령이 더 많이 나올 수 있게 함으로써, 이 법을 더 강화시킬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만약 이에 따라 한국 정부가 취한 조치가 있었다면, 그 조치는 적절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_ ① 전혀 적절하지 않았다 ____ ② 별로 적절하지 않았다 ____ ③ 그저 그렇다
 ____ ④ 약간 적절했다 ____ ⑤ 매우 적절했다 ⑥ 정보가 없어서 모르겠다
 ____ ⑦ 조치를 취한 게 없다

2-4. 위원회는 현행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3조의 법무부 장관 시정명령 요건이 너무 제한적이니, 이를 완화하여 시정명령이 더 많이 나올 수 있게 함으로써, 이 법을 더 강화시킬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만약 이에 따라 한국 정부가 취한 조치가 있었다면, 그 조치는 충분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_ ① 전혀 충분하지 않았다 ____ ② 별로 충분하지 않았다 ____ ③ 그저 그렇다
 ____ ④ 약간 충분했다 ____ ⑤ 매우 충분했다 ⑥ 정보가 없어서 모르겠다
 ____ ⑦ 조치를 취한 게 없다

2-5. 위원회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효과적인 이행 필요성 및 법관에게 부여된 명령 권한을 제대로 인식할 필요성에 대해, 법관들의 인식을 제고할 것을 권고한 바 있었습니다. 만약 이에 따라 한국 정부가 취한 조치가 있었다면, 그 조치는 적절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_ ① 전혀 적절하지 않았다 ____ ② 별로 적절하지 않았다 ____ ③ 그저 그렇다
 ____ ④ 약간 적절했다 ____ ⑤ 매우 적절했다 ⑥ 정보가 없어서 모르겠다
 ____ ⑦ 조치를 취한 게 없다

2-6. 위원회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효과적인 이행 필요성 및 법관에게 부여된 명령 권한을 제대로 인식할 필요성에 대해, 법관들의 인식을 제고할 것을 권고한 바 있었습니다. 만약 이에 따라 한국 정부가 취한 조치가 있었다면, 그 조치는 충분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_ ① 전혀 충분하지 않았다 ____ ② 별로 충분하지 않았다 ____ ③ 그저 그렇다
 ____ ④ 약간 충분했다 ____ ⑤ 매우 충분했다 ____ ⑥ 정보가 없어서 모르겠다
 ____ ⑦ 조치를 취한 게 없다

2-7. 협약 제5조에 해당하는 최종견해와 쟁점목록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답변하신 이유와 배경, 그리고 기타 평가의견들을 자유롭게 적어주십시오.

()

3. 제6조(장애여성)

구분	해당 조항 관련 내용
최종 견해	14.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장애 관련 법률 및 정책에서 성 인지적 관점을 주류화하고, 장애여성만을 위한 정책을 개발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장애인 거주시설 안팎에서 벌어지는 장애여성에 대한 폭력을 해결하기 위해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고, 특히 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에 관한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 장애 인지적 관점을 도입할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또한 장애여성이 정규교육을 수료하였는지 또는 정규교육에의 참여가 배제되었는지 관계없이, 자신의 선택과 욕구에 따라 적절한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한다. 아울러 위원회는 임신 및 출산기간 동안 장애여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것을 권고한다.
쟁점 목록	5. 당사국이 다음 조치를 취하는지 여부와 그 방식을 서술하십시오. (a) 장애인 관련 법률과 정책에 성인지적 관점을 중점적으로 반영하고, 다중적 차별 및/또는 복합적 차별 해소 조치가 포함된 장애 여성 관련 정책 수립 여부 및 관련 조치를 설명하십시오. (b) 가족에 의한 정신적·신체적 폭력을 포함해, 거주 시설 안팎에서 장애 여성을 상대로 자행되는 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시행하며, 이를 위해 성폭력과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장애인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 수립 여부 및 관련 조치를 설명하십시오. (c) 장애 여성이 자신의 욕구와 선택에 따라 적절한 평생교육을 받게 하고, 필요시 교육에 대한 재정적 지원 여부 및 관련 조치를 설명하십시오. (d) 임신 및 출산기 장애 여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강제 불임 시술이나 낙태, 부모 자격 박탈 방식을 위한 보호조치 시행 여부 및 관련조치를 설명하십시오.

3-1. 만약 한국 정부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장애 관련 법률 및 정책에서 성 인지적 관점을 주류화하는 조치를 취한 게 있다면, 그 조치는 적절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적절하지 않았다
 ② 별로 적절하지 않았다
 ③ 그저 그렇다
 ④ 약간 적절했다
 ⑤ 매우 적절했다
 ⑥ 정보가 없어서 모르겠다
 ⑦ 조치를 취한 게 없다

3-2. 만약 한국 정부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장애 관련 법률 및 정책에서 성 인지적 관점을 주류화하는 조치를 취한 게 있다면, 그 조치는 충분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충분하지 않았다
 ② 별로 충분하지 않았다
 ③ 그저 그렇다
 ④ 약간 충분했다
 ⑤ 매우 충분했다
 ⑥ 정보가 없어서 모르겠다
 ⑦ 조치를 취한 게 없다

3-3. 만약 한국 정부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다중적 차별, 복합적 차별 해소 조치가 포함된 장애여성만을 위해 특화된 정책을 실시한 게 있다면, 그 정책은 적절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적절하지 않았다
 ② 별로 적절하지 않았다
 ③ 그저 그렇다
 ④ 약간 적절했다
 ⑤ 매우 적절했다
 ⑥ 정보가 없어서 모르겠다
 ⑦ 정책을 실시한 게 없다

3-4. 만약 한국 정부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다중적 차별, 복합적 차별 해소 조치가 포함된 장애여성만을 위해 특화된 정책을 실시한 게 있다면, 그 정책은 충분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 ① 전혀 충분하지 않았다 ___ ② 별로 충분하지 않았다 ___ ③ 그저 그렇다
___ ④ 약간 충분했다 ___ ⑤ 매우 충분했다 ___ ⑥ 정보가 없어서 모르겠다
___ ⑦ 정책을 실시한 게 없다

3-5. 만약 한국 정부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가족 내 정신적·신체적 폭력을 포함하여 거주시설 내·외부 장애여성 폭력 해결에 대한 조치를 취한 게 있다면, 그 조치는 적절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 ① 전혀 적절하지 않았다 ___ ② 별로 적절하지 않았다 ___ ③ 그저 그렇다
___ ④ 약간 적절했다 ___ ⑤ 매우 적절했다 ___ ⑥ 정보가 없어서 모르겠다
___ ⑦ 조치를 취한 게 없다

3-6. 만약 한국 정부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가족 내 정신적·신체적 폭력을 포함하여 거주시설 내·외부 장애여성 폭력 해결에 대한 조치를 취한 게 있다면, 그 조치는 충분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 ① 전혀 충분하지 않았다 ___ ② 별로 충분하지 않았다 ___ ③ 그저 그렇다
___ ④ 약간 충분했다 ___ ⑤ 매우 충분했다 ___ ⑥ 정보가 없어서 모르겠다
___ ⑦ 조치를 취한 게 없다

3-7. 만약 한국 정부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프로그램의 장애인지적관점 도입을 위해 조치를 취한 게 있다면, 그 조치는 적절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 ① 전혀 적절하지 않았다 ___ ② 별로 적절하지 않았다 ___ ③ 그저 그렇다
___ ④ 약간 적절했다 ___ ⑤ 매우 적절했다 ___ ⑥ 정보가 없어서 모르겠다
___ ⑦ 조치를 취한 게 없다

3-8. 만약 한국 정부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프로그램의 장애인지적관점 도입을 위해 조치를 취한 게 있다면, 그 조치는 충분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 ① 전혀 충분하지 않았다 ___ ② 별로 충분하지 않았다 ___ ③ 그저 그렇다
___ ④ 약간 충분했다 ___ ⑤ 매우 충분했다 ___ ⑥ 정보가 없어서 모르겠다
___ ⑦ 조치를 취한 게 없다

3-9. 만약 한국 정부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장애여성이 적절한 평생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정책을 펼친 게 있다면, 그 정책은 적절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 ① 전혀 적절하지 않았다 ___ ② 별로 적절하지 않았다 ___ ③ 그저 그렇다
___ ④ 약간 적절했다 ___ ⑤ 매우 적절했다 ___ ⑥ 정보가 없어서 모르겠다
___ ⑦ 정책을 펼친 게 없다

3-10. 만약 한국 정부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장애여성이 적절한 평생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정책을 펼친 게 있다면, 그 정책은 충분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 ① 전혀 충분하지 않았다 ___ ② 별로 충분하지 않았다 ___ ③ 그저 그렇다
 ___ ④ 약간 충분했다 ___ ⑤ 매우 충분했다 ___ ⑥ 정보가 없어서 모르겠다
 ___ ⑦ 정책을 펼친 게 없다

3-11. 만약 한국 정부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장애여성 평생교육을 위한 재정적 지원 정책을 펼친 게 있다면, 그 정책은 적절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 ① 전혀 적절하지 않았다 ___ ② 별로 적절하지 않았다 ___ ③ 그저 그렇다
 ___ ④ 약간 적절했다 ___ ⑤ 매우 적절했다 ___ ⑥ 정보가 없어서 모르겠다
 ___ ⑦ 정책을 펼친 게 없다

3-12. 만약 한국 정부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장애여성 평생교육을 위한 재정적 지원 정책을 펼친 게 있다면, 그 정책은 충분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 ① 전혀 충분하지 않았다 ___ ② 별로 충분하지 않았다 ___ ③ 그저 그렇다
 ___ ④ 약간 충분했다 ___ ⑤ 매우 충분했다 ___ ⑥ 정보가 없어서 모르겠다
 ___ ⑦ 정책을 펼친 게 없다

3-13. 만약 한국 정부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장애여성 임신출산 지원 확대 정책을 펼친 게 있다면, 그 정책은 적절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 ① 전혀 적절하지 않았다 ___ ② 별로 적절하지 않았다 ___ ③ 그저 그렇다
 ___ ④ 약간 적절했다 ___ ⑤ 매우 적절했다 ___ ⑥ 정보가 없어서 모르겠다
 ___ ⑦ 정책을 펼친 게 없다

3-14. 만약 한국 정부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장애여성 임신출산 지원 확대 정책을 펼친 게 있다면, 그 정책은 충분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 ① 전혀 충분하지 않았다 ___ ② 별로 충분하지 않았다 ___ ③ 그저 그렇다
 ___ ④ 약간 충분했다 ___ ⑤ 매우 충분했다 ___ ⑥ 정보가 없어서 모르겠다
 ___ ⑦ 정책을 펼친 게 없다

3-15. 만약 한국 정부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장애여성 강제불임, 낙태 또는 친권박탈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장치를 만든 게 있다면, 그 보호장치는 적절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 ① 전혀 적절하지 않았다 ___ ② 별로 적절하지 않았다 ___ ③ 그저 그렇다
 ___ ④ 약간 적절했다 ___ ⑤ 매우 적절했다 ___ ⑥ 정보가 없어서 모르겠다
 ___ ⑦ 보호장치를 만든 게 없다

3-16. 만약 한국 정부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장애여성 강제불임, 낙태 또는 친권박탈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장치를 만든 게 있다면, 그 보호장치는 충분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 ① 전혀 충분하지 않았다 ___ ② 별로 충분하지 않았다 ___ ③ 그저 그렇다
 ___ ④ 약간 충분했다 ___ ⑤ 매우 충분했다 ___ ⑥ 정보가 없어서 모르겠다
 ___ ⑦ 보호장치를 만든 게 없다

3-17. 협약 제6조에 해당하는 최종견해와 쟁점목록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답변하신 이유와 배경, 그리고 기타 평가의견들을 자유롭게 적어주십시오.

()

4. 제7조(장애 아동)

구분	해당 조항 관련 내용
최종 견해	해당 없음.
쟁점 목록	6. 아동에 대한 완전한 통합을 보장하기 위해 아동 관련 법률을 제·개정하거나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장애 아동의 대표기관을 통한 장애 아동 및 그 가족의 참여도를 극대화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설명하십시오.

4-1. 만약 한국 정부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완전한 통합을 보장하기 위한 아동 관련 법령의 제·개정이나 정책 수립 시에, 대표단체를 통한 장애아동 및 그 가족들의 참여 수준을 극대화하기 위해 취한 조치가 있다면, 그 조치는 적절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 ① 전혀 적절하지 않았다 ___ ② 별로 적절하지 않았다 ___ ③ 그저 그렇다
 ___ ④ 약간 적절했다 ___ ⑤ 매우 적절했다 ___ ⑥ 정보가 없어서 모르겠다
 ___ ⑦ 조치를 취한 게 없다

4-2. 만약 한국 정부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완전한 통합을 보장하기 위한 아동 관련 법령의 제·개정이나 정책 수립 시에, 대표단체를 통한 장애아동 및 그 가족들의 참여 수준을 극대화하기 위해 취한 조치가 있다면, 그 조치는 충분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 ① 전혀 충분하지 않았다 ___ ② 별로 충분하지 않았다 ___ ③ 그저 그렇다
 ___ ④ 약간 충분했다 ___ ⑤ 매우 충분했다 ___ ⑥ 정보가 없어서 모르겠다
 ___ ⑦ 조치를 취한 게 없다

4-3. 협약 제7조에 해당하는 쟁점목록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답변하신 이유와 배경, 그리고 기타 평가 의견들을 자유롭게 적어주십시오.

()

5. 제8조(인식 제고)

구분	해당 조항 관련 내용
최종 견해	16.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인권의 주체로서 장애인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확대하기 위해 인식제고 캠페인을 강화할 것을 권장한다. 특히 위원회는 협약의 내용과 목적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공무원·국회의원·언론·일반 대중들에게 관련 교육을 제공할 것을 권고한다.
쟁점 목록	7. 인권을 가진 주체로서 장애인의 긍정적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해, 언론 보도를 포함한 인식 제고 활동을 어떻게 강화하고 있는지 설명하십시오. 8. 공무원과 국회의원, 언론인, 일반대중을 상대로 「협약」의 내용과 목적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알리고 교육하기 위해 당사국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설명하십시오.

5-1. 만약 한국 정부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장애인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확대하기 위해 인식제고 캠페인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한 게 있다면, 그 조치는 적절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적절하지 않았다
 ② 별로 적절하지 않았다
 ③ 그저 그렇다
 ④ 약간 적절했다
 ⑤ 매우 적절했다
 ⑥ 정보가 없어서 모르겠다
 ⑦ 조치를 취한 게 없다

5-2. 만약 한국 정부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장애인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확대하기 위해 인식제고 캠페인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한 게 있다면, 그 조치는 충분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충분하지 않았다
 ② 별로 충분하지 않았다
 ③ 그저 그렇다
 ④ 약간 충분했다
 ⑤ 매우 충분했다
 ⑥ 정보가 없어서 모르겠다
 ⑦ 조치를 취한 게 없다

5-3. 만약 한국 정부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공무원, 국회의원, 언론 및 일반 대중 등에 대한 협약의 내용과 목적 교육을 제공하는 조치를 취한 게 있다면, 그 조치는 적절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적절하지 않았다
 ② 별로 적절하지 않았다
 ③ 그저 그렇다
 ④ 약간 적절했다
 ⑤ 매우 적절했다
 ⑥ 정보가 없어서 모르겠다
 ⑦ 조치를 취한 게 없다

5-4. 만약 한국 정부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공무원, 국회의원, 언론 및 일반 대중 등에 대한 협약의 내용과 목적 교육을 제공하는 조치를 취한 게 있다면, 그 조치는 충분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_ ① 전혀 충분하지 않았다 ____ ② 별로 충분하지 않았다 ____ ③ 그저 그렇다
 ____ ④ 약간 충분했다 ____ ⑤ 매우 충분했다 ____ ⑥ 정보가 없어서 모르겠다
 ____ ⑦ 조치를 취한 게 없다

5-5. 협약 제8조에 해당하는 최종견해와 쟁점목록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답변하신 이유와 배경, 그리고 기타 평가의견들을 자유롭게 적어주십시오.

()

6. 제9조(접근성)

구분	해당 조항 관련 내용
최종 견해	18. 위원회는 장애인이 모든 유형의 대중교통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현행 대중교통 정책을 점검할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협약 제9조 및 위원회 일반논평 제2호에 따라, 건물의 크기·용적률·건축일자에 관계없이 모든 공공시설 및 작업장에 접근성 기준을 적용할 것을 권장한다. 위원회는 또한 모든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시각 및 기타 장애인이 스마트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한다.
쟁점 목록	9. 제9조 접근성에 대한 위원회 일반논평 제2호에 따라, 당사국이 어떻게 다음 조치 및 수단을 이행하는지 설명하십시오. (a) 현행 대중교통 정책을 검토하여, 도시 간 교통수단을 비롯한 각종 대중교통을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 왔는지 설명하십시오. (b) 규모나 수용 인원, 건축 연도와 무관하게 모든 공공시설과 작업장에 접근성 기준 적용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 왔는지 설명하십시오. (c) 모든 장애인들이 인터넷 웹사이트, 모바일 통신, 가전제품 등을 통해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한다. 10. 공공시설과 민간시설에서 시행 중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의 실효성을 설명하고, 민간시설의 인증제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당사국의 조치를 설명하십시오.

6-1. 만약 한국 정부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도시 간 교통을 포함하여 모든 형태의 대중교통 정책을 장애인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펼친 게 있다면, 그 정책은 적절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_ ① 전혀 적절하지 않았다 ____ ② 별로 적절하지 않았다 ____ ③ 그저 그렇다
 ____ ④ 약간 적절했다 ____ ⑤ 매우 적절했다 ____ ⑥ 정보가 없어서 모르겠다
 ____ ⑦ 정책을 펼친 게 없다

6-2. 만약 한국 정부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도시 간 교통을 포함하여 모든 형태의 대중교통 정책을 장애인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펼친 게 있다면, 그 정책은 충분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 ① 전혀 충분하지 않았다 ___ ② 별로 충분하지 않았다 ___ ③ 그저 그렇다
 ___ ④ 약간 충분했다 ___ ⑤ 매우 충분했다 ___ ⑥ 정보가 없어서 모르겠다
 ___ ⑦ 정책을 펼친 게 없다

6-3. 만약 한국 정부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소규모 시설에 접근성 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게 있다면, 그 조치는 적절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 ① 전혀 적절하지 않았다 ___ ② 별로 적절하지 않았다 ___ ③ 그저 그렇다
 ___ ④ 약간 적절했다 ___ ⑤ 매우 적절했다 ___ ⑥ 정보가 없어서 모르겠다
 ___ ⑦ 조치를 취한 게 없다

6-4. 만약 한국 정부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소규모 시설에 접근성 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게 있다면, 그 조치는 충분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 ① 전혀 충분하지 않았다 ___ ② 별로 충분하지 않았다 ___ ③ 그저 그렇다
 ___ ④ 약간 충분했다 ___ ⑤ 매우 충분했다 ___ ⑥ 정보가 없어서 모르겠다
 ___ ⑦ 조치를 취한 게 없다

6-5. 만약 한국 정부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건축일자와 무관한 시설 접근성 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게 있다면, 그 조치는 적절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 ① 전혀 적절하지 않았다 ___ ② 별로 적절하지 않았다 ___ ③ 그저 그렇다
 ___ ④ 약간 적절했다 ___ ⑤ 매우 적절했다 ___ ⑥ 정보가 없어서 모르겠다
 ___ ⑦ 조치를 취한 게 없다

6-6. 만약 한국 정부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건축일자와 무관한 시설 접근성 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게 있다면, 그 조치는 충분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 ① 전혀 충분하지 않았다 ___ ② 별로 충분하지 않았다 ___ ③ 그저 그렇다
 ___ ④ 약간 충분했다 ___ ⑤ 매우 충분했다 ___ ⑥ 정보가 없어서 모르겠다
 ___ ⑦ 조치를 취한 게 없다

6-7. 만약 한국 정부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인터넷에 대한 접근성 개선을 위한 법령을 개정한 게 있다면, 그 개정은 적절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 ① 전혀 적절하지 않았다 ___ ② 별로 적절하지 않았다 ___ ③ 그저 그렇다
 ___ ④ 약간 적절했다 ___ ⑤ 매우 적절했다 ___ ⑥ 정보가 없어서 모르겠다
 ___ ⑦ 법령을 개정한 게 없다

6-8. 만약 한국 정부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인터넷에 대한 접근성 개선을 위한 법령을 개정한 게 있다면, 그 개정은 충분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 ① 전혀 충분하지 않았다 ___ ② 별로 충분하지 않았다 ___ ③ 그저 그렇다
 ___ ④ 약간 충분했다 ___ ⑤ 매우 충분했다 ___ ⑥ 정보가 없어서 모르겠다
 ___ ⑦ 법령을 개정한 게 없다

6-9. 만약 한국 정부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스마트폰에 대한 접근성 개선을 위한 법령을 개정한 게 있다면, 그 개정은 적절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 ① 전혀 적절하지 않았다 ___ ② 별로 적절하지 않았다 ___ ③ 그저 그렇다
 ___ ④ 약간 적절했다 ___ ⑤ 매우 적절했다 ___ ⑥ 정보가 없어서 모르겠다
 ___ ⑦ 법령을 개정한 게 없다

6-10. 만약 한국 정부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스마트폰에 대한 접근성 개선을 위한 법령을 개정한 게 있다면, 그 개정은 충분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 ① 전혀 충분하지 않았다 ___ ② 별로 충분하지 않았다 ___ ③ 그저 그렇다
 ___ ④ 약간 충분했다 ___ ⑤ 매우 충분했다 ___ ⑥ 정보가 없어서 모르겠다
 ___ ⑦ 법령을 개정한 게 없다

6-11. 만약 한국 정부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소비자용 전자제품에 대한 접근성 개선을 위한 법령을 개정한 게 있다면, 그 개정은 적절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 ① 전혀 적절하지 않았다 ___ ② 별로 적절하지 않았다 ___ ③ 그저 그렇다
 ___ ④ 약간 적절했다 ___ ⑤ 매우 적절했다 ___ ⑥ 정보가 없어서 모르겠다
 ___ ⑦ 법령을 개정한 게 없다

6-12. 만약 한국 정부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소비자용 전자제품에 대한 접근성 개선을 위한 법령을 개정할 게 있다면, 그 개정은 충분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 ① 전혀 충분하지 않았다 ___ ② 별로 충분하지 않았다 ___ ③ 그저 그렇다
 ___ ④ 약간 충분했다 ___ ⑤ 매우 충분했다 ___ ⑥ 정보가 없어서 모르겠다
 ___ ⑦ 법령을 개정할 게 없다

6-13. 만약 한국 정부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공공 및 민간시설과 관련된 장애물없는생활환경인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조치를 취할 게 있다면, 그에 따라 실효성이 높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 ① 전혀 높아지지 않았다 ___ ② 별로 높아지지 않았다 ___ ③ 그저 그렇다
 ___ ④ 약간 높아졌다 ___ ⑤ 매우 높아졌다 ___ ⑥ 정보가 없어서 모르겠다
 ___ ⑦ 그런 조치를 취할 게 없다

6-14. 만약 한국 정부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민간시설의 장애물없는생활환경인증제도 참여 증진 조치를 취할 게 있다면, 그 조치는 적절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 ① 전혀 적절하지 않았다 ___ ② 별로 적절하지 않았다 ___ ③ 그저 그렇다
 ___ ④ 약간 적절했다 ___ ⑤ 매우 적절했다 ___ ⑥ 정보가 없어서 모르겠다
 ___ ⑦ 조치를 취할 게 없다

6-15. 만약 한국 정부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민간시설의 장애물없는생활환경인증제도 참여 증진 조치를 취할 게 있다면, 그 조치는 충분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 ① 전혀 충분하지 않았다 ___ ② 별로 충분하지 않았다 ___ ③ 그저 그렇다
 ___ ④ 약간 충분했다 ___ ⑤ 매우 충분했다 ___ ⑥ 정보가 없어서 모르겠다
 ___ ⑦ 조치를 취할 게 없다

6-16. 협약 제9조에 해당하는 최종견해와 쟁점목록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답변하신 이유와 배경, 그리고 기타 평가의견들을 자유롭게 적어주십시오.

()

7. 제11조(위험상황과 인도적 차원의 긴급사태)

구분	해당 조항 관련 내용
최종 견해	20.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자연재해를 포함한 위험상황에서 장애 특성을 고려해 장애인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재난 위험 감소 정책 및 그 이행의 모든 단계에서 보편적 접근성 및 장애 포괄성을 확보하도록 종합적인 계획을 채택하고 이행할 것을 권고한다.
쟁점 목록	1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재난위험감소 계획과 전략에, 모든 위기 상황 시 장애인을 고려하고 접근성을 보장하며, 이러한 계획과 전략이 센다이 프레임워크 및 아태지역 장애인의 권리실현을 위한 인천전략의 목표 7에 부합하게 하기 위한 조치를 설명하시오.
참고 사항	<p><센다이 프레임워크></p> <p>2015년 3월 14일부터 18일까지, 일본 미야기현 센다이에서 개최된 제3차 세계재난위험감소회의(The Third World Conference on Disaster Risk Reduction)에서 채택된, 'post-2015 재난위험감소강령 (post-2015 framework for disaster risk reduction)'으로, 그 한국어 전문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https://www.unisdr.org/files/44784_sendaiframeworkkoreanfinal.pdf</p>
	<p><인천전략 목표 7> 장애 포괄적인 재난 위험 감소 및 관리의 보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부목표 7.A. 장애 포괄적인 재난 위험 감소 계획을 강화한다. - 세부목표 7.B. 재난에 대응할 때 장애인에게 적시에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는 조치의 이행을 강화한다.

7-1. 만약 한국 정부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자연재해를 포함한 위험에서 장애인을 보호하고, 재난 등에서 보편적 접근성 및 장애포괄성을 확보하기 위한 종합적 계획을 채택하고 이행한 게 있다면, 그 계획과 그 이행은 적절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적절하지 않았다
 ② 별로 적절하지 않았다
 ③ 그저 그렇다
 ④ 약간 적절했다
 ⑤ 매우 적절했다
 ⑥ 정보가 없어서 모르겠다
 ⑦ 계획을 채택한 적이 없다
 ⑧ 계획은 채택했지만 이행한 적이 없다

7-2. 만약 한국 정부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자연재해를 포함한 위험에서 장애인을 보호하고, 재난 등에서 보편적 접근성 및 장애포괄성을 확보하기 위한 종합적 계획을 채택하고 이행한 게 있다면, 그 계획과 그 이행은 충분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적절하지 않았다
 ② 별로 적절하지 않았다
 ③ 그저 그렇다
 ④ 약간 적절했다
 ⑤ 매우 적절했다
 ⑥ 정보가 없어서 모르겠다
 ⑦ 계획을 채택한 적이 없다
 ⑧ 계획은 채택했지만 이행한 적이 없다

7-3. 만약 한국 정부가 '센다이 프레임워크'에 따라, 국가 및 지역 수준에서의 재난위험 감소계획 및 전략에, 모든 위험 상황에서의 장애인의 접근 및 통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취한 조치가 있다면, 그 조치는 적절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 ① 전혀 적절하지 않았다 ___ ② 별로 적절하지 않았다 ___ ③ 그저 그렇다
 ___ ④ 약간 적절했다 ___ ⑤ 매우 적절했다 ___ ⑥ 정보가 없어서 모르겠다
 ___ ⑦ 조치를 취한 게 없다

7-4. 만약 한국 정부가 '센다이 프레임워크'에 따라, 국가 및 지역 수준에서의 재난위험 감소계획 및 전략에, 모든 위험 상황에서의 장애인의 접근 및 통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취한 조치가 있다면, 그 조치는 충분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 ① 전혀 충분하지 않았다 ___ ② 별로 충분하지 않았다 ___ ③ 그저 그렇다
 ___ ④ 약간 충분했다 ___ ⑤ 매우 충분했다 ___ ⑥ 정보가 없어서 모르겠다
 ___ ⑦ 조치를 취한 게 없다

7-5. 만약 한국 정부가 '인천전략 목표 7'에 따라, 국가 및 지역 수준에서의 재난위험 감소계획 및 전략에, 모든 위험 상황에서의 장애인의 접근 및 통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취한 조치가 있다면, 그 조치는 적절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 ① 전혀 적절하지 않았다 ___ ② 별로 적절하지 않았다 ___ ③ 그저 그렇다
 ___ ④ 약간 적절했다 ___ ⑤ 매우 적절했다 ___ ⑥ 정보가 없어서 모르겠다
 ___ ⑦ 조치를 취한 게 없다

7-6. 만약 한국 정부가 '인천전략 목표 7'에 따라, 국가 및 지역 수준에서의 재난위험 감소계획 및 전략에, 모든 위험 상황에서의 장애인의 접근 및 통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취한 조치가 있다면, 그 조치는 충분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 ① 전혀 충분하지 않았다 ___ ② 별로 충분하지 않았다 ___ ③ 그저 그렇다
 ___ ④ 약간 충분했다 ___ ⑤ 매우 충분했다 ___ ⑥ 정보가 없어서 모르겠다
 ___ ⑦ 조치를 취한 게 없다

7-7. 협약 제11조에 해당하는 최종견해와 쟁점목록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답변하신 이유와 배경, 그리고 기타 평가의견들을 자유롭게 적어주십시오.

()

8. 제12조(법 앞의 동등한 인정)

구분	해당 조항 관련 내용
최종 견해	22.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대리의사결정에서 의학적 치료에 대한 사전 동의 및 철회, 사법 접근성, 투표, 결혼, 근로, 거주지 선택 등 개인의 권리에 관하여, 개인의 자율성, 의지 및 선호를 존중하고 협약 제12조 및 위원회 일반논평 제1호에 충실히 부합하는 조력의사결정으로 전환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장애당사자 및 장애인단체와 협력 하여, 국가·지방·지역 차원에서 공무원, 법관, 사회복지사를 포함한 모든 행위자를 대상으로 장애인의 법적 능력에 대한 인식 및 조력의사결정 메커니즘에 관한 교육을 제공할 것을 권고한다.
쟁점 목록	12. 다음에 대하여 당사국에서 이루어진 진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십시오. (a) '대리의사결정'을 '조력의사결정'으로 대체하고, 이에 따라 성년후견제 폐지에 대한 당사국의 진척 사항을 설명하십시오. (b) 장애인 단체를 통해 장애인과 협의 및 협력함으로써, 공무원과 법관, 사회복지사 등을 포함하는 모든 행위자를 대상으로 전국·지역·지방 차원에서 장애인의 법적 능력 인정 교육과 '조력의사결정' 체계에 관한 교육 실시와 관련하여 당사국의 진척 사항을 설명하십시오.

8-1. 만약 한국 정부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대리의사결정'에서 '조력의사결정'으로 전환하는데 있어서 진전된 부분이 있었다면, 그 진전은 적절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적절하지 않았다
 ② 별로 적절하지 않았다
 ③ 그저 그렇다
 ④ 약간 적절했다
 ⑤ 매우 적절했다
 ⑥ 정보가 없어서 모르겠다
 ⑦ 진전된 게 없다

8-2. 만약 한국 정부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대리의사결정'에서 '조력의사결정'으로 전환하는데 있어서 진전된 부분이 있었다면, 그 진전은 충분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충분하지 않았다
 ② 별로 충분하지 않았다
 ③ 그저 그렇다
 ④ 약간 충분했다
 ⑤ 매우 충분했다
 ⑥ 정보가 없어서 모르겠다
 ⑦ 진전된 게 없다

8-3. 만약 한국 정부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대표단체를 통한 장애인들과의 협의 및 협력을 바탕으로, 국가, 지방, 지역 수준에서 공무원, 판사 및 사회복지사를 포함한 모든 행위자들을 대상으로 한, 법적 능력과 조력의사결정 메커니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면, 그 교육은 적절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적절하지 않았다
 ② 별로 적절하지 않았다
 ③ 그저 그렇다
 ④ 약간 적절했다
 ⑤ 매우 적절했다
 ⑥ 정보가 없어서 모르겠다
 ⑦ 교육이 실시된 적이 없다

8-4. 만약 한국 정부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대표단체를 통한 장애인들과의 협의 및 협력을 바탕으로, 국가, 지방, 지역 수준에서 공무원, 판사 및 사회복지사를 포함한 모든 행위자들을 대상으로 한, 법적 능력과 조력사결정 메커니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면, 그 교육은 충분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__ ① 전혀 충분하지 않았다 _____ ② 별로 충분하지 않았다 _____ ③ 그저 그렇다
 _____ ④ 약간 충분했다 _____ ⑤ 매우 충분했다 _____ ⑥ 정보가 없어서 모르겠다
 _____ ⑦ 교육이 실시된 적이 없다

8-5. 협약 제12조에 해당하는 최종견해와 쟁점목록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답변하신 이유와 배경, 그리고 기타 평가의견들을 자유롭게 적어주십시오.

()

9. 제13조(사법에 대한 접근)

구분	해당 조항 관련 내용
최종 견해	24.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경찰·교도관·변호사·판사·법조인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에 장애인 업무에 관한 표준 모듈, 절차상에서 연령에 적합하고 성 인지적인 정당한 편의제공, 사법접근성 보장을 포함시킬 것을 권고한다. 아울러 대한민국 대법원이 발간한 '장애인 사법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이행되도록 할 것을 권고한다.
쟁점 목록	13. 다음을 위한 당사국의 노력을 설명하십시오. (a)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의 효과적인 이행과 관련한 당사국의 활동을 상세히 설명하십시오. (b) 사법 제도 내의 모든 관련 당사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에, 장애인과의 동반 근무, 연령과 성별을 고려한 절차적 편의 제공, 사법 접근 보장에 관한 표준 모듈을 포함시키기 위한 당사국의 활동을 상세히 설명하십시오. (c) 한국 대법원이 발간한 「장애인 사법지원 가이드라인」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하고, 가이드라인의 효과적인 시행에 대한 당사국의 활동을 상세히 설명하십시오. (d) 사법 절차와 공증 절차의 전 과정에서 수감자에게 절차적 편의 제공과 이에 관한 관련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한 교육 실시와 관련하여 당사국의 활동을 상세히 설명하십시오. (e) 장애인이 판사, 검사 및 변호사로 일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 제공을 비롯해 필요한 조치 시행에 관한 당사국의 활동을 상세히 설명하십시오.
참고 사항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中> 제26조(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① 공공기관 등은 장애인이 생명, 신체 또는 재산권 보호를 포함한 자신의 권리를 보호·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장애인에게 제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직무를 수행하거나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구분	해당 조항 관련 내용
	1. 허가, 신고, 인가 등에 있어 장애인을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제한·배제·분리·거부하는 경우 2. 공공사업 수혜자의 선정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거나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④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를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장애인이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에 참여하기 위하여 장애인 스스로 인식하고 작성할 수 있는 서식의 제작 및 제공 등 정당한 편의 제공을 요구할 경우 이를 거부하거나 임의로 집행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⑥ 사법기관은 사건관계인에 대하여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장애인에게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음과 그 구체적인 조력의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법기관은 해당 장애인이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기를 신청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⑦ 사법기관은 장애인이 인신구급·구속 상태에 있어서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 및 적극적인 조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⑧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1. 한국 정부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의 이행을 위해 한 노력은 효과성이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효과가 없었다 ② 별로 효과가 없었다 ③ 그저 그렇다
 ④ 약간 효과가 있었다 ⑤ 매우 효과가 있었다
 ⑦ 정부가 노력한 적이 없다

9-2. 한국 정부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의 이행을 위해 한 노력은 충분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충분하지 않았다 ② 별로 충분하지 않았다 ③ 그저 그렇다
 ④ 약간 충분했다 ⑤ 매우 충분했다 ⑥ 정보가 없어서 모르겠다
 ⑦ 정부가 노력한 적이 없다

9-3. 한국 정부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경찰·법조인 등에 대한 훈련에 포함된 장애인 업무에 관한 표준 모듈, 절차상에서 연령에 적합하고 성 인지적인 정당한 편의제공, 사법접근성 보장 등을 적절하게 실시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적절하지 않았다 ② 별로 적절하지 않았다 ③ 그저 그렇다
 ④ 약간 적절했다 ⑤ 매우 적절했다 ⑥ 정보가 없어서 모르겠다
 ⑦ 그런 걸 실시하려고 노력한 적이 없다

9-4. 한국 정부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경찰·법조인 등에 대한 훈련에 포함된 장애인 업무에 관한 표준 모듈, 절차상에서 연령에 적합하고 성 인지적인 정당한 편의제공, 사법접근성 보장 등을 충분하게 실시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 ① 전혀 충분하지 않았다 ___ ② 별로 충분하지 않았다 ___ ③ 그저 그렇다
___ ④ 약간 충분했다 ___ ⑤ 매우 충분했다 ___ ⑥ 정보가 없어서 모르겠다
___ ⑦ 그런 걸 실시하려고 노력한 적이 없다

9-5. 한국 정부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대법원이 발간한 '장애인 사법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 이행을 위해 한 노력은 효과성이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 ① 전혀 효과가 없었다 ___ ② 별로 효과가 없었다 ___ ③ 그저 그렇다
___ ④ 약간 효과가 있었다 ___ ⑤ 매우 효과가 있었다
___ ⑦ 정부가 노력한 적이 없다

9-6. 한국 정부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대법원이 발간한 '장애인 사법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 이행을 위해 한 노력은 충분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 ① 전혀 충분하지 않았다 ___ ② 별로 충분하지 않았다 ___ ③ 그저 그렇다
___ ④ 약간 충분했다 ___ ⑤ 매우 충분했다 ___ ⑥ 정보가 없어서 모르겠다
___ ⑦ 정부가 노력한 적이 없다

9-7. 한국 정부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수감자 뿐 아니라 사법 및 공증 절차의 모든 단계에 있어서, 절차적 편의를 제공한 것은 적절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 ① 전혀 적절하지 않았다 ___ ② 별로 적절하지 않았다 ___ ③ 그저 그렇다
___ ④ 약간 적절했다 ___ ⑤ 매우 적절했다 ___ ⑥ 정보가 없어서 모르겠다
___ ⑦ 절차적 편의 제공에 노력한 적이 없다

9-8. 한국 정부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수감자 뿐 아니라 사법 및 공증 절차의 모든 단계에 있어서, 절차적 편의를 제공한 것은 충분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 ① 전혀 충분하지 않았다 ___ ② 별로 충분하지 않았다 ___ ③ 그저 그렇다
___ ④ 약간 충분했다 ___ ⑤ 매우 충분했다 ___ ⑥ 정보가 없어서 모르겠다
___ ⑦ 절차적 편의 제공에 노력한 적이 없다

9-9. 만약 한국 정부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유관 전문가 집단들을 대상으로 한, 수감자 뿐 아니라 사법 및 공증 절차의 모든 단계에 있어서 절차적 편의의 제공과 관련된 훈련이나 교육 등을 실시한 적이 있다면, 그 훈련이나 교육 등은 적절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 ① 전혀 적절하지 않았다 ___ ② 별로 적절하지 않았다 ___ ③ 그저 그렇다
 ___ ④ 약간 적절했다 ___ ⑤ 매우 적절했다 ___ ⑥ 정보가 없어서 모르겠다
 ___ ⑦ 그런 훈련이나 교육을 실시한 적이 없다

9-10. 만약 한국 정부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유관 전문가 집단들을 대상으로 한, 수감자 뿐 아니라 사법 및 공증 절차의 모든 단계에 있어서 절차적 편의의 제공과 관련된 훈련이나 교육 등을 실시한 적이 있다면, 그 훈련이나 교육 등은 충분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 ① 전혀 충분하지 않았다 ___ ② 별로 충분하지 않았다 ___ ③ 그저 그렇다
 ___ ④ 약간 충분했다 ___ ⑤ 매우 충분했다 ___ ⑥ 정보가 없어서 모르겠다
 ___ ⑦ 그런 훈련이나 교육을 실시한 적이 없다

9-11. 만약 한국 정부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장애인이 판사, 검사 및 변호사로서 일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정당한 편의 제공을 포함하여 취한 조치가 있다면, 그 조치는 적절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 ① 전혀 적절하지 않았다 ___ ② 별로 적절하지 않았다 ___ ③ 그저 그렇다
 ___ ④ 약간 적절했다 ___ ⑤ 매우 적절했다 ___ ⑥ 정보가 없어서 모르겠다
 ___ ⑦ 그런 조치를 취한 적이 없다

9-12. 만약 한국 정부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장애인이 판사, 검사 및 변호사로서 일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정당한 편의 제공을 포함하여 취한 조치가 있다면, 그 조치는 충분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 ① 전혀 충분하지 않았다 ___ ② 별로 충분하지 않았다 ___ ③ 그저 그렇다
 ___ ④ 약간 충분했다 ___ ⑤ 매우 충분했다 ___ ⑥ 정보가 없어서 모르겠다
 ___ ⑦ 그런 조치를 취한 적이 없다

9-13. 협약 제13조에 해당하는 최종견해와 쟁점목록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답변하신 이유와 배경, 그리고 기타 평가의견들을 자유롭게 적어주십시오.

()

10. 제14조(신체의 자유 및 안전)

구분	해당 조항 관련 내용
최종 견해	<p>26.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정신 또는 지적 장애를 포함하여 장애를 이유로 한 자유의 박탈을 전제하고 있는 현행 법률 조항을 폐지하고, 모든 유형의 정신보건 서비스를 포함하여 보건서비스가 당사자의 자유로운 사전 동의에 근거하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또한 「정신보건법」이 개정될 때까지 병원 및 전문기관에서 벌어지는 장애인 자유 박탈 사례를 모두 점검하고, 점검 과정에서 항소 가능성을 포함할 것을 권고한다.</p> <p>28. 위원회는 장애인에 대해 공정한 재판과 적법절차를 보장하는 절차적 편의를 확립할 것을 권고한다. 나아가 장애인에게 다른 사람들과 동등하게 적법절차를 보장해 주기 위해, 형사사법 제도상에서 재판 부적합 판정을 내리지 못하도록 할 것을 권고한다.</p>
쟁점 목록	<p>14. 다음을 위해 당사국에서 이루어진 진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십시오.</p> <p>(a) 정신적 장애를 포함해 장애를 이유로 자유를 박탈할 수 있는 기존의 법률 조항을 폐기와 관련한 당사국의 진척사항을 설명하십시오.</p> <p>(b)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정신보건 서비스를 포함한 모든 보건의료 서비스가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동의를 토대로 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는 것과 관련하여 당사국의 진척사항을 설명하십시오.</p> <p>(c) 장애인의 자유가 박탈 될 수 있는 법률이 개정될 때까지 병원 및 전문기관에서 벌어지는 장애인의 자유 박탈 사례를 검토하고 항소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한다.</p> <p>(d) 장애인에게 공정한 재판과 적법절차를 보장하기 위한 절차적 편의 조치 수립과 관련한 당사국의 진척사항을 설명하십시오.</p> <p>(e) 형사사법 제도상에서 재판 부적합 판정을 없애고, 장애인에게 다른 이들과 동등한 적법절차를 보장하기 위한 당사국의 진척사항을 설명하십시오.</p>

10-1. 약 한국 정부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모든 유형의 정신보건 서비스를 포함하여 보건서비스가 당사자의 자유로운 사전 동의에 근거하도록 취한 조치가 있다면, 그 조치는 적절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적절하지 않았다
 ② 별로 적절하지 않았다
 ③ 그저 그렇다
 ④ 약간 적절했다
 ⑤ 매우 적절했다
 ⑥ 정보가 없어서 모르겠다
 ⑦ 그런 조치를 취한 적이 없다

10-2. 만약 한국 정부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모든 유형의 정신보건 서비스를 포함하여 보건서비스가 당사자의 자유로운 사전 동의에 근거하도록 취한 조치가 있다면, 그 조치는 충분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충분하지 않았다
 ② 별로 충분하지 않았다
 ③ 그저 그렇다
 ④ 약간 충분했다
 ⑤ 매우 충분했다
 ⑥ 정보가 없어서 모르겠다
 ⑦ 그런 조치를 취한 적이 없다

10-3. 만약 한국 정부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병원 및 전문기관에서 벌어지는 장애인 자유 박탈 사례를 전수 점검한 적이 있었다면, 그 점검은 적절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 ① 전혀 적절하지 않았다 ___ ② 별로 적절하지 않았다 ___ ③ 그저 그렇다
 ___ ④ 약간 적절했다 ___ ⑤ 매우 적절했다 ___ ⑥ 정보가 없어서 모르겠다
 ___ ⑦ 그런 점검을 한 적이 없다

10-4. 만약 한국 정부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병원 및 전문기관에서 벌어지는 장애인 자유 박탈 사례를 전수 점검한 적이 있었다면, 그 점검은 충분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 ① 전혀 충분하지 않았다 ___ ② 별로 충분하지 않았다 ___ ③ 그저 그렇다
 ___ ④ 약간 충분했다 ___ ⑤ 매우 충분했다 ___ ⑥ 정보가 없어서 모르겠다
 ___ ⑦ 그런 점검을 한 적이 없다

10-5. 만약 한국 정부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장애인에 대해 공정한 재판과 적법절차를 보장하는 절차적 편의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적이 있었다면, 그 조치는 적절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 ① 전혀 적절하지 않았다 ___ ② 별로 적절하지 않았다 ___ ③ 그저 그렇다
 ___ ④ 약간 적절했다 ___ ⑤ 매우 적절했다 ___ ⑥ 정보가 없어서 모르겠다
 ___ ⑦ 그런 조치를 취한 적이 없다

10-6. 만약 한국 정부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장애인에 대해 공정한 재판과 적법절차를 보장하는 절차적 편의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적이 있었다면, 그 조치는 충분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 ① 전혀 충분하지 않았다 ___ ② 별로 충분하지 않았다 ___ ③ 그저 그렇다
 ___ ④ 약간 충분했다 ___ ⑤ 매우 충분했다 ___ ⑥ 정보가 없어서 모르겠다
 ___ ⑦ 그런 조치를 취한 적이 없다

10-7. 협약 제14조에 해당하는 최종견해와 쟁점목록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답변하신 이유와 배경, 그리고 기타 평가의견들을 자유롭게 적어주십시오.

()

11. 제15조(고문 또는 잔혹하고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로부터의 자유)

구분	해당 조항 관련 내용
최종 견해	30.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장애인으로 하여금 잔혹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대우 및 처벌을 받도록 하는 강제 치료를 폐지할 것을 촉구한다. 장애인에 대한 시설화가 지속되는 한, 위원회는 장애인단체의 참여를 보장하는 효과적인 외부 독립 모니터링 메커니즘의 구축을 통해, 정신병원에 있는 장애인을 모든 유형의 폭력·학대·혹사로부터 보호할 것을 촉구한다.
쟁점 목록	15. 다음을 위해 당사국에서 이루어진 진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십시오. (a) 신체적 제약, 격리 및 강제 약물 처방을 포함하여 장애인이 잔혹하고 비인간적이며 굴욕적인 치료와 처벌을 감내해야 하는 강제 치료 폐지와 관련한 당사국의 진척사항을 설명하십시오. (b) 정신병원에 수용된 장애인이 시설 퇴소 전까지 고문을 비롯해 잔혹하고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각종 치료를 받지 않도록 효과적인 보호조치를 강구하고, 특히 장애인 단체의 참여를 보장하는 독립적이고 실효성 있는 외부 감시 기구를 구성하는 것과 관련한 당사국의 진척사항을 설명하십시오.

11-1. 만약 한국 정부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시설 퇴소 전까지 정신병원에 있는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모든 형태의 고문을 비롯하여 잔혹하고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취급으로부터의 효과적인 보호 조치를 강구한 적이 있었다면, 그 조치는 적절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 ① 전혀 적절하지 않았다 ___ ② 별로 적절하지 않았다 ___ ③ 그저 그렇다
___ ④ 약간 적절했다 ___ ⑤ 매우 적절했다 ___ ⑥ 정보가 없어서 모르겠다
___ ⑦ 그런 조치를 취한 적이 없다

11-2. 만약 한국 정부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시설 퇴소 전까지 정신병원에 있는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모든 형태의 고문을 비롯하여 잔혹하고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취급으로부터의 효과적인 보호 조치를 강구한 적이 있었다면, 그 조치는 충분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 ① 전혀 충분하지 않았다 ___ ② 별로 충분하지 않았다 ___ ③ 그저 그렇다
___ ④ 약간 충분했다 ___ ⑤ 매우 충분했다 ___ ⑥ 정보가 없어서 모르겠다
___ ⑦ 그런 조치를 취한 적이 없다

11-3. 만약 한국 정부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정신병원의 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하여 장애인 단체의 참여를 보장하는 독립적이고 실효성 있는 외부 감시 기구를 구성하는 조치를 취하였다면, 그 조치는 적절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 ① 전혀 적절하지 않았다 ___ ② 별로 적절하지 않았다 ___ ③ 그저 그렇다
___ ④ 약간 적절했다 ___ ⑤ 매우 적절했다 ___ ⑥ 정보가 없어서 모르겠다
___ ⑦ 그런 조치를 취한 적이 없다

11-4. 만약 한국 정부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정신병원의 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하여 장애인 단체의 참여를 보장하는 독립적이고 실효성 있는 외부 감시 기구를 구성하는 조치를 취하였다면, 그 조치는 충분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_ ① 전혀 충분하지 않았다 ____ ② 별로 충분하지 않았다 ____ ③ 그저 그렇다
 ____ ④ 약간 충분했다 ____ ⑤ 매우 충분했다 ____ ⑥ 정보가 없어서 모르겠다
 ____ ⑦ 그런 조치를 취한 적이 없다

11-5. 협약 제15조에 해당하는 최종견해와 쟁점목록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답변하신 이유와 배경, 그리고 기타 평가의견들을 자유롭게 적어주십시오.

()

12. 제16조(착취, 폭력 및 학대로부터의 자유)

구분	해당 조항 관련 내용
최종 견해	32.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거주시설 안팎에서 장애인이 겪는 모든 폭력·착취·학대를 조사하고,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며, 피해를 입은 장애인에게 접근 가능한 쉼터를 제공할 것을 촉구한다. 위원회는 특히 대한민국이 장애인의 강제 노역 사건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피해자에게 적절한 보호를 제공할 것을 권고한다.
쟁점 목록	16. 장애인들이 시설 안팎에서 경험한 폭력과 착취, 학대 사례 조사,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상, 피해 장애인을 위한 쉼터 제공 등을 위해 당사국이 취한 조치 및 그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제시하십시오. 17. 강제노동 피해 장애인을 위한 적절한 보호 제도에 대해 설명하십시오. 아울러 강제노동이 확인된 피해자 보호를 위해 장기 보호 조치가 효과적으로 시행 중인지 여부를 설명하십시오.

12-1. 만약 한국 정부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거주시설 내·외부 장애인에 대한 학대를 조사하고,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배상을 하며, 접근 가능한 쉼터를 제공하는 조치를 취하였다면, 그 조치는 적절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_ ① 전혀 적절하지 않았다 ____ ② 별로 적절하지 않았다 ____ ③ 그저 그렇다
 ____ ④ 약간 적절했다 ____ ⑤ 매우 적절했다 ____ ⑥ 정보가 없어서 모르겠다
 ____ ⑦ 그런 조치를 취한 적이 없다

12-2. 만약 한국 정부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거주시설 내·외부 장애인에 대한 학대를 조사하고,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배상을 하며, 접근 가능한 쉼터를 제공하는 조치를 취하였다면, 그 조치는 충분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_ ① 전혀 충분하지 않았다 ____ ② 별로 충분하지 않았다 ____ ③ 그저 그렇다
 ____ ④ 약간 충분했다 ____ ⑤ 매우 충분했다 ____ ⑥ 정보가 없어서 모르겠다
 ____ ⑦ 그런 조치를 취한 적이 없다

12-3. 만약 한국 정부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장애인 강제노역사건 피해자 조사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였다면, 그 조치는 적절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 ① 전혀 적절하지 않았다 ___ ② 별로 적절하지 않았다 ___ ③ 그저 그렇다
 ___ ④ 약간 적절했다 ___ ⑤ 매우 적절했다 ___ ⑥ 정보가 없어서 모르겠다
 ___ ⑦ 그런 조치를 취한 적이 없다

12-4. 만약 한국 정부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장애인 강제노역사건 피해자 조사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였다면, 그 조치는 충분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 ① 전혀 충분하지 않았다 ___ ② 별로 충분하지 않았다 ___ ③ 그저 그렇다
 ___ ④ 약간 충분했다 ___ ⑤ 매우 충분했다 ___ ⑥ 정보가 없어서 모르겠다
 ___ ⑦ 그런 조치를 취한 적이 없다

12-5. 만약 한국 정부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장애인 강제노역사건 피해자에게 보호를 제공하는 조치를 취하였다면, 그 조치는 적절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 ① 전혀 적절하지 않았다 ___ ② 별로 적절하지 않았다 ___ ③ 그저 그렇다
 ___ ④ 약간 적절했다 ___ ⑤ 매우 적절했다 ___ ⑥ 정보가 없어서 모르겠다
 ___ ⑦ 그런 조치를 취한 적이 없다

12-6. 만약 한국 정부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장애인 강제노역사건 피해자에게 보호를 제공하는 조치를 취하였다면, 그 조치는 충분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 ① 전혀 충분하지 않았다 ___ ② 별로 충분하지 않았다 ___ ③ 그저 그렇다
 ___ ④ 약간 충분했다 ___ ⑤ 매우 충분했다 ___ ⑥ 정보가 없어서 모르겠다
 ___ ⑦ 그런 조치를 취한 적이 없다

12-7. 만약 한국 정부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확정된 장애인 강제노역사건 피해자 보호를 위한 효과적인 장기 보호 조치를 취하였다면, 그 조치는 적절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 ① 전혀 적절하지 않았다 ___ ② 별로 적절하지 않았다 ___ ③ 그저 그렇다
 ___ ④ 약간 적절했다 ___ ⑤ 매우 적절했다 ___ ⑥ 정보가 없어서 모르겠다
 ___ ⑦ 그런 조치를 취한 적이 없다

12-8. 만약 한국 정부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확정된 장애인 강제노역사건 피해자 보호를 위한 효과적인 장기 보호 조치를 취하였다면, 그 조치는 충분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 ① 전혀 충분하지 않았다 ___ ② 별로 충분하지 않았다 ___ ③ 그저 그렇다
 ___ ④ 약간 충분했다 ___ ⑤ 매우 충분했다 ___ ⑥ 정보가 없어서 모르겠다
 ___ ⑦ 그런 조치를 취한 적이 없다

12-9. 협약 제16조에 해당하는 최종견해와 쟁점목록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답변하신 이유와 배경, 그리고 기타 평가의견들을 자유롭게 적어주십시오.

()

13. 제17조(개인의 완전함 보호)

구분	해당 조항 관련 내용
최종 견해	34.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가정·지역사회·기관에서 장애여성 및 장애소녀의 권리에 관한 인식을 제고하고, 강제불임으로부터 장애여성 및 장애소녀를 보호하는 메커니즘의 효과성과 접근성을 보장하는 등, 강제불임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위원회는 또한 대한민국이 최근의 또는 현재 진행 중인 강제불임 사례에 대해 조사할 것을 권고한다.
쟁점 목록	18. 강제 불임 시술을 근절하고, 그러한 관행으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및 인식 제고 활동의 진척 사항을 설명하십시오. 아울러 강제 불임 시술이 명시적으로 금지되어 있는지 설명하십시오.

13-1. 만약 한국 정부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장애여성 및 장애소녀의 권리에 대한 인식제고 조치를 취하였다면, 그 조치는 적절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 ① 전혀 적절하지 않았다 ___ ② 별로 적절하지 않았다 ___ ③ 그저 그렇다
 ___ ④ 약간 적절했다 ___ ⑤ 매우 적절했다 ___ ⑥ 정보가 없어서 모르겠다
 ___ ⑦ 그런 조치를 취한 적이 없다

13-2. 만약 한국 정부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장애여성 및 장애소녀의 권리에 대한 인식제고 조치를 취하였다면, 그 조치는 충분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 ① 전혀 충분하지 않았다 ___ ② 별로 충분하지 않았다 ___ ③ 그저 그렇다
 ___ ④ 약간 충분했다 ___ ⑤ 매우 충분했다 ___ ⑥ 정보가 없어서 모르겠다
 ___ ⑦ 그런 조치를 취한 적이 없다

13-3. 만약 한국 정부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강제불임 보호 메커니즘의 효과성과 접근성 보장 등의 근절 및 인식제고 활동을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면, 그 조치는 적절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 ① 전혀 적절하지 않았다 ___ ② 별로 적절하지 않았다 ___ ③ 그저 그렇다
___ ④ 약간 적절했다 ___ ⑤ 매우 적절했다 ___ ⑥ 정보가 없어서 모르겠다
___ ⑦ 그런 조치를 취한 적이 없다

13-4. 만약 한국 정부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강제불임 보호 메커니즘의 효과성과 접근성 보장 등의 근절 및 인식제고 활동을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면, 그 조치는 충분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 ① 전혀 충분하지 않았다 ___ ② 별로 충분하지 않았다 ___ ③ 그저 그렇다
___ ④ 약간 충분했다 ___ ⑤ 매우 충분했다 ___ ⑥ 정보가 없어서 모르겠다
___ ⑦ 그런 조치를 취한 적이 없다

13-5. 협약 제17조에 해당하는 최종견해와 쟁점목록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답변하신 이유와 배경, 그리고 기타 평가의견들을 자유롭게 적어주십시오.

()

14. 제19조(자립적 생활 및 지역사회에의 동참)

구분	해당 조항 관련 내용
최종 견해	38.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장애에 대한 인권적 모델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탈시설화 전략을 개발하고, 활동보조 서비스를 포함한 지원서비스를 대폭 확대할 것을 촉구한다. 40.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사회부조 프로그램을 통해 충분하고 공정하게 재정을 지원하여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장한다. 위원회는 특히 대한민국이 활동보조 서비스 이용비용을 산정할 때 “장애 등급” 보다는 장애인의 특성·상황·욕구에 근거하고, 그리고 가족의 소득 보다는 장애당사자의 소득에 근거할 것을 권고한다.
쟁점 목록	20. 장애인 다수가 여전히 시설에서 거주하는 경우 효과적인 탈시설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여부와 구체적인 관련 조치를 설명하십시오. 아울러, 현재 시설에 거주하는 모든 이들의 효과적인 탈시설화 방안과 일정을 설명하고, 이미 퇴소한 장애인들의 수와 이들의 현황에 대해서도 설명하십시오. 21. 활동보조서비스(「장애인복지법」)와 최저생계비(「국민기초생활보장법」)를 비롯해, ‘장애 정도’나 가족구성원의 소득이 아닌 해당 장애인의 요구와 경제적 사정에 근거해, 지역사회에서 장애 관련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설명하십시오.

14-1. 만약 한국 정부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탈시설화 전략을 세우고 이행하였다면, 그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 ① 전혀 효과가 없었다 ___ ② 별로 효과가 없었다 ___ ③ 그저 그렇다
___ ④ 약간 효과가 있었다 ___ ⑤ 매우 효과가 있었다
___ ⑦ 정부가 이행한 적이 없다

14-2. 만약 한국 정부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탈시설화 전략을 세우고 이행하였다면, 그 전략이 장애인에 대한 인권적 모델에 얼마나 부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 ①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___ ② 별로 부합하지 않는다 ___ ③ 그저 그렇다
 ___ ④ 약간 부합한다 ___ ⑤ 매우 부합한다 ___ ⑥ 정보가 없어서 모르겠다
 ___ ⑦ 정부가 이행한 적이 없다

14-3. 만약 한국 정부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활동보조서비스를 포함한 지원서비스를 확대하는 조치를 취하였다면, 그 조치는 적절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 ① 전혀 적절하지 않았다 ___ ② 별로 적절하지 않았다 ___ ③ 그저 그렇다
 ___ ④ 약간 적절했다 ___ ⑤ 매우 적절했다 ___ ⑥ 정보가 없어서 모르겠다
 ___ ⑦ 그런 조치를 취한 적이 없다

14-4. 만약 한국 정부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활동보조서비스를 포함한 지원서비스를 확대하는 조치를 취하였다면, 그 조치는 충분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 ① 전혀 충분하지 않았다 ___ ② 별로 충분하지 않았다 ___ ③ 그저 그렇다
 ___ ④ 약간 충분했다 ___ ⑤ 매우 충분했다 ___ ⑥ 정보가 없어서 모르겠다
 ___ ⑦ 그런 조치를 취한 적이 없다

14-5.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에 대한 사회부조 프로그램(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의 재정지원은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 ① 전혀 충분하지 않다 ___ ② 별로 충분하지 않다 ___ ③ 그저 그렇다
 ___ ④ 약간 충분하다 ___ ⑤ 매우 충분하다 ___ ⑥ 정보가 없어서 모르겠다

14-6.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에 대한 사회부조 프로그램(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의 재정지원은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 ① 전혀 공정하지 않다 ___ ② 별로 공정하지 않다 ___ ③ 그저 그렇다
 ___ ④ 약간 공정하다 ___ ⑤ 매우 공정하다 ___ ⑥ 정보가 없어서 모르겠다

14-7. 만약 한국 정부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일반논평 제5호에 따른 효과적인 탈시설 달성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면, 그 조치는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 ① 전혀 적절하지 않다 ___ ② 별로 적절하지 않다 ___ ③ 그저 그렇다
 ___ ④ 약간 적절하다 ___ ⑤ 매우 적절하다 ___ ⑥ 정보가 없어서 모르겠다
 ___ ⑦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

14-8. 만약 한국 정부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일반논평 제5호에 따른 효과적인 탈시설 달성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면, 그 조치는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 ① 전혀 충분하지 않다 ___ ② 별로 충분하지 않다 ___ ③ 그저 그렇다
 ___ ④ 약간 충분하다 ___ ⑤ 매우 충분하다 ___ ⑥ 정보가 없어서 모르겠다
 ___ ⑦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

14-9. 만약 한국 정부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활동보조서비스 이용료 산정 근거를 장애등급에서 장애인의 특성·상황·욕구 등으로 전환하였다면, 그 조치는 적절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 ① 전혀 적절하지 않았다 ___ ② 별로 적절하지 않았다 ___ ③ 그저 그렇다
 ___ ④ 약간 적절했다 ___ ⑤ 매우 적절했다 ___ ⑥ 정보가 없어서 모르겠다
 ___ ⑦ 그런 조치를 취한 적이 없다

14-10. 만약 한국 정부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활동보조서비스 이용료 산정 근거를 장애등급에서 장애인의 특성·상황·욕구 등으로 전환하였다면, 그 조치는 충분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 ① 전혀 충분하지 않았다 ___ ② 별로 충분하지 않았다 ___ ③ 그저 그렇다
 ___ ④ 약간 충분했다 ___ ⑤ 매우 충분했다 ___ ⑥ 정보가 없어서 모르겠다
 ___ ⑦ 그런 조치를 취한 적이 없다

14-11. 만약 한국 정부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활동보조서비스 이용료 산정 근거를 가족소득 기준에서 본인 소득 기준으로 전환하였다면, 그 조치는 적절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 ① 전혀 적절하지 않았다 ___ ② 별로 적절하지 않았다 ___ ③ 그저 그렇다
 ___ ④ 약간 적절했다 ___ ⑤ 매우 적절했다 ___ ⑥ 정보가 없어서 모르겠다
 ___ ⑦ 그런 조치를 취한 적이 없다

14-12. 만약 한국 정부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활동보조서비스 이용료 산정 근거를 가족소득 기준에서 본인 소득 기준으로 전환하였다면, 그 조치는 충분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 ① 전혀 충분하지 않았다 ___ ② 별로 충분하지 않았다 ___ ③ 그저 그렇다
 ___ ④ 약간 충분했다 ___ ⑤ 매우 충분했다 ___ ⑥ 정보가 없어서 모르겠다
 ___ ⑦ 그런 조치를 취한 적이 없다

14-13. 만약 한국 정부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손상의 정도나 가족의 수입이 아니라 욕구 등에 기반하여, 활동보조서비스 및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를 포함하여 지역사회에서 제공되는 장애 관련 지원 서비스를 증가시키기 위한 정책 또는 그에 대한 계획을 이행하였다면, 그 조치는 적절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_ ① 전혀 적절하지 않았다 ____ ② 별로 적절하지 않았다 ____ ③ 그저 그렇다
____ ④ 약간 적절했다 ____ ⑤ 매우 적절했다 ____ ⑥ 정보가 없어서 모르겠다
____ ⑦ 그런 조치를 취한 적이 없다

14-14. 만약 한국 정부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손상의 정도나 가족의 수입이 아니라 욕구 등에 기반하여, 활동보조서비스 및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를 포함하여 지역사회에서 제공되는 장애 관련 지원 서비스를 증가시키기 위한 정책 또는 그에 대한 계획을 이행하였다면, 그 조치는 충분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_ ① 전혀 충분하지 않았다 ____ ② 별로 충분하지 않았다 ____ ③ 그저 그렇다
____ ④ 약간 충분했다 ____ ⑤ 매우 충분했다 ____ ⑥ 정보가 없어서 모르겠다
____ ⑦ 그런 조치를 취한 적이 없다

14-15. 협약 제19조에 해당하는 최종견해와 쟁점목록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답변하신 이유와 배경, 그리고 기타 평가의견들을 자유롭게 적어주십시오.

()

16. 제21조(의사 및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권)

구분	해당 조항 관련 내용
최종 견해	42.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한국 수화를 자국의 공식 언어로 인정하고, 점자를 자국의 공식 문자로 인정하는 법안을 채택할 것을 권장한다.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방송물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을 보장하는 규정에 프로그램의 질에 관한 기준을 포함시키고, 수화·자막·화면해설·이해하기 쉬운 내용·기타 의사소통 수단을 통한 적절하고 접근 가능한 정보 제공에 관한 기준을 포함시킬 것을 권고한다.
쟁점 목록	22. 다음 각 호와 관련한 당사국의 진척 사항을 설명하십시오. (a) 「한국수화언어법」과 「점자기본법」을 적절히 시행하였는가? (b) 방송 및 인터넷 TV 접근성 관련 규정에 장애인 접근성 표준을 포함시켰는가? (c) 공공 정보를 접근 가능한 형식과 '읽기 쉬운 방식(Easy Read)'으로 제공하였는가?

16-1. 한국수화언어법은 적절하게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_ ① 전혀 적절하지 않다 ____ ② 별로 적절하지 않다 ____ ③ 그저 그렇다
____ ④ 약간 적절하다 ____ ⑤ 매우 적절하다 ____ ⑥ 정보가 없어서 모르겠다

16-2. 점자법은 적절하게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 ① 전혀 적절하지 않다 ___ ② 별로 적절하지 않다 ___ ③ 그저 그렇다
___ ④ 약간 적절하다 ___ ⑤ 매우 적절하다 ___ ⑥ 정보가 없어서 모르겠다

16-3. 만약 한국 정부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방송물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 보장 규정에 프로그램의 질에 관한 기준을 포함하여 시행하고 있다면, 그 기준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 ① 전혀 적절하지 않다 ___ ② 별로 적절하지 않다 ___ ③ 그저 그렇다
___ ④ 약간 적절하다 ___ ⑤ 매우 적절하다 ___ ⑥ 정보가 없어서 모르겠다
___ ⑦ 그런 걸 시행한 적이 없다

16-4. 만약 한국 정부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방송물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 보장 규정에 프로그램의 질에 관한 기준을 포함하여 시행하고 있다면, 그 기준은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 ① 전혀 충분하지 않다 ___ ② 별로 충분하지 않다 ___ ③ 그저 그렇다
___ ④ 약간 충분하다 ___ ⑤ 매우 충분하다 ___ ⑥ 정보가 없어서 모르겠다
___ ⑦ 그런 걸 시행한 적이 없다

16-5. 만약 한국 정부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방송물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 보장 규정에 정보 제공 기준을 포함하여 시행하고 있다면, 그 기준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 ① 전혀 적절하지 않다 ___ ② 별로 적절하지 않다 ___ ③ 그저 그렇다
___ ④ 약간 적절하다 ___ ⑤ 매우 적절하다 ___ ⑥ 정보가 없어서 모르겠다
___ ⑦ 그런 걸 시행한 적이 없다

16-6. 만약 한국 정부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방송물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 보장 규정에 정보 제공 기준을 포함하여 시행하고 있다면, 그 기준은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 ① 전혀 충분하지 않다 ___ ② 별로 충분하지 않다 ___ ③ 그저 그렇다
___ ④ 약간 충분하다 ___ ⑤ 매우 충분하다 ___ ⑥ 정보가 없어서 모르겠다
___ ⑦ 그런 걸 시행한 적이 없다

16-7. 만약 한국 정부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공공 정보를 읽기 쉽고(Easy Read) 접근 가능한 형식으로 제공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면, 그 조치는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 ① 전혀 적절하지 않다 ___ ② 별로 적절하지 않다 ___ ③ 그저 그렇다
___ ④ 약간 적절하다 ___ ⑤ 매우 적절하다 ___ ⑥ 정보가 없어서 모르겠다
___ ⑦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

16-8. 만약 한국 정부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공공 정보를 읽기 쉽고(Easy Read) 접근 가능한 형식으로 제공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면, 그 조치는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 ① 전혀 충분하지 않다 ___ ② 별로 충분하지 않다 ___ ③ 그저 그렇다
___ ④ 약간 충분하다 ___ ⑤ 매우 충분하다 ___ ⑥ 정보가 없어서 모르겠다
___ ⑦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

16-9. 협약 제21조에 해당하는 최종견해와 쟁점목록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답변하신 이유와 배경, 그리고 기타 평가의견들을 자유롭게 적어주십시오.

()

17. 제23조(가정과 가족에 대한 존중)

구분	해당 조항 관련 내용
최종 견해	44. 위원회는 미혼모를 포함한 장애아동 부모가 장애아동을 가족 안에서 양육하는 것을 지원하고, 장애아동의 가족에 대한 권리와 지역사회 참여할 권리를 다른 아동과 동등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이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종합적인 정책을 이행할 것을 권고한다.
쟁점 목록	23. 장애아동 부모(미혼모 포함)는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제공받고, 해당 장애아동 가족의 권리와 지역사회 참여에 대한 권리를 비장애인 아동과 동등하게 누리고 있는지 포괄적 정책 마련 및 시행여부와 구체적인 조치를 설명하십시오. 장애아동의 친부모와 입양부모를 공정하게 대우하기 위한 계획이 있는지 설명하십시오. 24. 장애인이 결혼할 수 있는 권리와 가족을 구성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설명하십시오.

17-1. 우리나라에 미혼모가 장애아동을 가족 안에서 양육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있다면, 그 법적 근거는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 ① 전혀 적절하지 않다 ___ ② 별로 적절하지 않다 ___ ③ 그저 그렇다
___ ④ 약간 적절하다 ___ ⑤ 매우 적절하다 ___ ⑥ 정보가 없어서 모르겠다
___ ⑦ 그런 법적 근거는 없다

17-2. 우리나라에 미혼모가 장애아동을 가족 안에서 양육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있다면, 그 법적 근거는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 ① 전혀 충분하지 않다 ___ ② 별로 충분하지 않다 ___ ③ 그저 그렇다
___ ④ 약간 충분하다 ___ ⑤ 매우 충분하다 ___ ⑥ 정보가 없어서 모르겠다
___ ⑦ 그런 법적 근거는 없다

17-3. 우리나라에 미혼모가 장애아동을 가족 안에서 양육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 있다면, 그 정책의 이행 정도는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 ① 전혀 적절하지 않다 ___ ② 별로 적절하지 않다 ___ ③ 그저 그렇다
 ___ ④ 약간 적절하다 ___ ⑤ 매우 적절하다 ___ ⑥ 정보가 없어서 모르겠다
 ___ ⑦ 그런 정책은 없다

17-4. 우리나라에 미혼모가 장애아동을 가족 안에서 양육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 있다면, 그 정책의 이행 정도는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 ① 전혀 충분하지 않다 ___ ② 별로 충분하지 않다 ___ ③ 그저 그렇다
 ___ ④ 약간 충분하다 ___ ⑤ 매우 충분하다 ___ ⑥ 정보가 없어서 모르겠다
 ___ ⑦ 그런 정책은 없다

17-5. 우리나라에 장애아 부모가 장애아동을 가족 안에서 양육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있다면, 그 법적 근거는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 ① 전혀 적절하지 않다 ___ ② 별로 적절하지 않다 ___ ③ 그저 그렇다
 ___ ④ 약간 적절하다 ___ ⑤ 매우 적절하다 ___ ⑥ 정보가 없어서 모르겠다
 ___ ⑦ 그런 법적 근거는 없다

17-6. 우리나라에 장애아 부모가 장애아동을 가족 안에서 양육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있다면, 그 법적 근거는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 ① 전혀 충분하지 않다 ___ ② 별로 충분하지 않다 ___ ③ 그저 그렇다
 ___ ④ 약간 충분하다 ___ ⑤ 매우 충분하다 ___ ⑥ 정보가 없어서 모르겠다
 ___ ⑦ 그런 법적 근거는 없다

17-7. 우리나라에 장애아 부모가 장애아동을 가족 안에서 양육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 있다면, 그 정책의 이행 정도는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 ① 전혀 적절하지 않다 ___ ② 별로 적절하지 않다 ___ ③ 그저 그렇다
 ___ ④ 약간 적절하다 ___ ⑤ 매우 적절하다 ___ ⑥ 정보가 없어서 모르겠다
 ___ ⑦ 그런 정책은 없다

17-8. 우리나라에 장애아 부모가 장애아동을 가족 안에서 양육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 있다면, 그 정책의 이행 정도는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 ① 전혀 충분하지 않다 ___ ② 별로 충분하지 않다 ___ ③ 그저 그렇다
 ___ ④ 약간 충분하다 ___ ⑤ 매우 충분하다 ___ ⑥ 정보가 없어서 모르겠다
 ___ ⑦ 그런 정책은 없다

17-9. 우리나라에 장애아동의 가족에 대한 권리와 지역사회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있다면, 그 법적 근거는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 ① 전혀 적절하지 않다 ___ ② 별로 적절하지 않다 ___ ③ 그저 그렇다
 ___ ④ 약간 적절하다 ___ ⑤ 매우 적절하다 ___ ⑥ 정보가 없어서 모르겠다
 ___ ⑦ 그런 법적 근거는 없다

17-10. 우리나라에 장애아동의 가족에 대한 권리와 지역사회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있다면, 그 법적 근거는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 ① 전혀 충분하지 않다 ___ ② 별로 충분하지 않다 ___ ③ 그저 그렇다
 ___ ④ 약간 충분하다 ___ ⑤ 매우 충분하다 ___ ⑥ 정보가 없어서 모르겠다
 ___ ⑦ 그런 법적 근거는 없다

17-11. 우리나라에 장애아동의 가족에 대한 권리와 지역사회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이 있다면, 그 정책의 이행 정도는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 ① 전혀 적절하지 않다 ___ ② 별로 적절하지 않다 ___ ③ 그저 그렇다
 ___ ④ 약간 적절하다 ___ ⑤ 매우 적절하다 ___ ⑥ 정보가 없어서 모르겠다
 ___ ⑦ 그런 정책은 없다

17-12. 우리나라에 장애아동의 가족에 대한 권리와 지역사회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이 있다면, 그 정책의 이행 정도는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 ① 전혀 충분하지 않다 ___ ② 별로 충분하지 않다 ___ ③ 그저 그렇다
 ___ ④ 약간 충분하다 ___ ⑤ 매우 충분하다 ___ ⑥ 정보가 없어서 모르겠다
 ___ ⑦ 그런 정책은 없다

17-13. 우리나라에 장애아동의 친부모와 입양부모를 공평하게 대우하기 위한 계획이 있다면, 그 계획의 이행 정도는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 ① 전혀 적절하지 않다 ___ ② 별로 적절하지 않다 ___ ③ 그저 그렇다
 ___ ④ 약간 적절하다 ___ ⑤ 매우 적절하다 ___ ⑥ 정보가 없어서 모르겠다
 ___ ⑦ 그런 계획은 없다

17-14. 우리나라에 장애아동의 친부모와 입양부모를 공평하게 대우하기 위한 계획이 있다면, 그 계획의 이행 정도는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 ① 전혀 충분하지 않다 ___ ② 별로 충분하지 않다 ___ ③ 그저 그렇다
 ___ ④ 약간 충분하다 ___ ⑤ 매우 충분하다 ___ ⑥ 정보가 없어서 모르겠다
 ___ ⑦ 그런 계획은 없다

17-15. 만약 한국 정부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장애인이 결혼할 수 있는 권리와 가족을 구성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면, 그 조치는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 ① 전혀 적절하지 않다 ___ ② 별로 적절하지 않다 ___ ③ 그저 그렇다
 ___ ④ 약간 적절하다 ___ ⑤ 매우 적절하다 ___ ⑥ 정보가 없어서 모르겠다
 ___ ⑦ 그런 조치는 없다

17-16. 만약 한국 정부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장애인이 결혼할 수 있는 권리와 가족을 구성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면, 그 조치는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 ① 전혀 충분하지 않다 ___ ② 별로 충분하지 않다 ___ ③ 그저 그렇다
 ___ ④ 약간 충분하다 ___ ⑤ 매우 충분하다 ___ ⑥ 정보가 없어서 모르겠다
 ___ ⑦ 그런 조치는 없다

17-17. 협약 제23조에 해당하는 최종견해와 쟁점목록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답변하신 이유와 배경, 그리고 기타 평가의견들을 자유롭게 적어주십시오.

()

18. 제24조(교육)

구분	해당 조항 관련 내용
최종 견해	46. 위원회는 다음을 권고한다. (a) 현행 통합교육정책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를 시행할 것 (b) 접근 가능한 학교 환경의 제공 뿐만 아니라 접근 가능하고 적절하게 수정된 교육자료 및 교육과정, 특히 교실 내 보조공학기기 및 지원 제공을 통해, 학교를 비롯한 교육기관에서 통합교육과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확대할 것 (c) 일반학교의 교사와 관리자를 포함한 교직원에 대한 연수를 강화할 것
쟁점 목록	25. 장애학생이 통합교육을 받을 권리에 대해 다음 각호와 관련한 당사국의 개선사항을 설명하십시오. (a) 현행 장애학생 통합교육 정책의 실효성과 개선 방안에 대해 연구하는가? (b) 교육기관에서는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중인 장애학생의 교육활동 관련하여 학습용 보조기기 지원, 장애유형별 맞춤 교육자료와 교과과정을 제공, 접근성 등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해 교육 기관 환경을 조성하는가? (c) 교육기관의 교직원 (장애통합, 장애인식)교육을 강화한다. (d)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인식 제고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장애학생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고,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한 괴롭힘 또는 폭력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한다. 26. 특수학교 추가 건립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십시오.

18-1. 만약 한국 정부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통합교육 효과성 및 개선방안 연구를 실시하여 결과물이 나왔다면, 그 연구는 적절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 ① 전혀 적절하지 않았다 ___ ② 별로 적절하지 않았다 ___ ③ 그저 그렇다
 ___ ④ 약간 적절했다 ___ ⑤ 매우 적절했다 ___ ⑥ 정보가 없어서 모르겠다
 ___ ⑦ 그런 연구는 없었다

18-2. 만약 한국 정부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통합교육 효과성 및 개선방안 연구를 실시하여 결과물이 나왔다면, 그 연구는 충분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 ① 전혀 충분하지 않았다 ___ ② 별로 충분하지 않았다 ___ ③ 그저 그렇다
 ___ ④ 약간 충분했다 ___ ⑤ 매우 충분했다 ___ ⑥ 정보가 없어서 모르겠다
 ___ ⑦ 그런 연구는 없었다

18-3. 만약 한국 정부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접근가능한 학교 환경, 교육자료 및 교육과정, 보조기 등 통합교육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을 위해 노력하였다면, 그 노력은 적절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 ① 전혀 적절하지 않았다 ___ ② 별로 적절하지 않았다 ___ ③ 그저 그렇다
 ___ ④ 약간 적절했다 ___ ⑤ 매우 적절했다 ___ ⑥ 정보가 없어서 모르겠다
 ___ ⑦ 그런 노력은 없었다

18-4. 만약 한국 정부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접근가능한 학교 환경, 교육자료 및 교육과정, 보조기 등 통합교육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을 위해 노력하였다면, 그 노력은 충분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 ① 전혀 충분하지 않았다 ___ ② 별로 충분하지 않았다 ___ ③ 그저 그렇다
 ___ ④ 약간 충분했다 ___ ⑤ 매우 충분했다 ___ ⑥ 정보가 없어서 모르겠다
 ___ ⑦ 그런 노력은 없었다

18-5. 만약 한국 정부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일반학교의 교사와 관리자를 포함한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하여 장애통합이나 장애인식 등의 교육을 강화하였다면, 그 조치는 적절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 ① 전혀 적절하지 않았다 ___ ② 별로 적절하지 않았다 ___ ③ 그저 그렇다
 ___ ④ 약간 적절했다 ___ ⑤ 매우 적절했다 ___ ⑥ 정보가 없어서 모르겠다
 ___ ⑦ 그런 조치는 없었다

18-6. 만약 한국 정부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일반학교의 교사와 관리자를 포함한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하여 장애통합이나 장애인식 등의 교육을 강화하였다면, 그 조치는 충분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 ① 전혀 충분하지 않았다 ___ ② 별로 충분하지 않았다 ___ ③ 그저 그렇다
 ___ ④ 약간 충분했다 ___ ⑤ 매우 충분했다 ___ ⑥ 정보가 없어서 모르겠다
 ___ ⑦ 그런 조치는 없었다

18-7. 만약 한국 정부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학생 및 학교 교직원 사이에 장애학생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적극적인 인식제고 조치를 취했다면, 그 조치는 적절했다고 생각하십니까?
 ____ ① 전혀 적절하지 않았다 ____ ② 별로 적절하지 않았다 ____ ③ 그저 그렇다
 ____ ④ 약간 적절했다 ____ ⑤ 매우 적절했다 ____ ⑥ 정보가 없어서 모르겠다
 ____ ⑦ 그런 조치는 없었다

18-8. 만약 한국 정부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학생 및 학교 교직원 사이에 장애학생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적극적인 인식제고 조치를 취했다면, 그 조치는 충분했다고 생각하십니까?
 ____ ① 전혀 충분하지 않았다 ____ ② 별로 충분하지 않았다 ____ ③ 그저 그렇다
 ____ ④ 약간 충분했다 ____ ⑤ 매우 충분했다 ____ ⑥ 정보가 없어서 모르겠다
 ____ ⑦ 그런 조치는 없었다

18-9. 만약 한국 정부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장애학생에 대한 괴롭힘 및/혹은 신체적 폭력 사건에서 무관용 정책을 시행했다면, 그 정책은 적절했다고 생각하십니까?
 ____ ① 전혀 적절하지 않았다 ____ ② 별로 적절하지 않았다 ____ ③ 그저 그렇다
 ____ ④ 약간 적절했다 ____ ⑤ 매우 적절했다 ____ ⑥ 정보가 없어서 모르겠다
 ____ ⑦ 그런 정책은 없었다

18-10. 만약 한국 정부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장애학생에 대한 괴롭힘 및/혹은 신체적 폭력 사건에서 무관용 정책을 시행했다면, 그 정책은 충분했다고 생각하십니까?
 ____ ① 전혀 충분하지 않았다 ____ ② 별로 충분하지 않았다 ____ ③ 그저 그렇다
 ____ ④ 약간 충분했다 ____ ⑤ 매우 충분했다 ____ ⑥ 정보가 없어서 모르겠다
 ____ ⑦ 그런 정책은 없었다

18-11. 한국 정부가 통합학교를 늘려가면서 특수학교를 점차 줄여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특수학교들을 늘려가고 있는 것이, 적절한 정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____ ① 전혀 적절하지 않다 ____ ② 별로 적절하지 않다 ____ ③ 그저 그렇다
 ____ ④ 약간 적절하다 ____ ⑤ 매우 적절하다

18-12. 협약 제24조에 해당하는 최종견해와 쟁점목록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답변하신 이유와 배경, 그리고 기타 평가의견들을 자유롭게 적어주십시오.
 ()

19. 제25조(건강)

구분	해당 조항 관련 내용
최종 견해	48.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장애인에게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험 가입을 인정하는「상법」 제732조를 삭제하고, 생명보험에 관한 협약 제25조 마항에 대한 유보를 철회할 것을 권장한다.
쟁점 목록	27. ‘의사 결정 능력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만 장애인의 생명보험 계약(가입)을 인정한 「상법」 제732조의 개정 및 「협약」 제25조 (e)항에 대한 당사국의 유보 입장 철회 여부와 관련한 개선사항을 설명하시오. 의료기관의 접근성 제고를 위한 조치를 설명하시오. 정부에서 현재 장애인 본인부담의 보건 의료 서비스 비용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그 비용을 부담할 계획이 있는지 설명하시오.

19-1. 만약 한국 정부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의료시설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취한 조치가 있다면, 그 조치는 적절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 ① 전혀 적절하지 않았다 ___ ② 별로 적절하지 않았다 ___ ③ 그저 그렇다
 ___ ④ 약간 적절했다 ___ ⑤ 매우 적절했다 ___ ⑥ 정보가 없어서 모르겠다
 ___ ⑦ 그런 조치는 없었다

19-2. 만약 한국 정부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의료시설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취한 조치가 있다면, 그 조치는 충분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 ① 전혀 충분하지 않았다 ___ ② 별로 충분하지 않았다 ___ ③ 그저 그렇다
 ___ ④ 약간 충분했다 ___ ⑤ 매우 충분했다 ___ ⑥ 정보가 없어서 모르겠다
 ___ ⑦ 그런 조치는 없었다

19-3. 만약 한국 정부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장애인 의료서비스에 대한 보조나 보장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했다면, 그 계획은 적절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 ① 전혀 적절하지 않았다 ___ ② 별로 적절하지 않았다 ___ ③ 그저 그렇다
 ___ ④ 약간 적절했다 ___ ⑤ 매우 적절했다 ___ ⑥ 정보가 없어서 모르겠다
 ___ ⑦ 그런 계획은 없었다

19-4. 만약 한국 정부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장애인 의료서비스에 대한 보조나 보장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했다면, 그 계획은 충분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 ① 전혀 충분하지 않았다 ___ ② 별로 충분하지 않았다 ___ ③ 그저 그렇다
 ___ ④ 약간 충분했다 ___ ⑤ 매우 충분했다 ___ ⑥ 정보가 없어서 모르겠다
 ___ ⑦ 그런 계획은 없었다

19-5. 협약 제25조에 해당하는 최종견해와 쟁점목록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답변하신 이유와 배경, 그리고 기타 평가의견들을 자유롭게 적어주십시오.

()

20. 제27조(근로 및 고용)

구분	해당 조항 관련 내용
최종 견해	50.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보충급여제를 도입하여 「최저임금법」에 의해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에게 보상하고, 협약에 따라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장애인단체와 긴밀히 협의하여 보호작업장을 폐쇄하고 대안을 모색할 것을 권장한다. 52.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고용 격차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장애여성의 고용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특히 대한민국이 장애인의무고용제도를 효과적으로 시행하고, 아울러 이 분야에서의 성과 및 결과에 대한 통계를 발간할 것을 권고한다.
쟁점 목록	28. 다음 각 호와 관련한 당사국의 시행 여부와 구체적인 관련 조치를 설명하십시오. (a) 지적 또는 정신장애인의 노동시장 참여를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차별적 법률을 폐지하는가? (b) 「최저임금법」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장애인에게 보상을 제공하는가?(최저임금 적용제외 제도) (c) 장애인 보호작업장 사용을 지양하고 대안을 모색하는가? (d) 장애인 의무고용할당제를 효과적 시행을 위해 장애여성의 채용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가? (e) 장애인의 공공 부문 취업을 보장하는가?

20-1. 만약 한국 정부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보호작업장 폐쇄에 따른 대안을 모색하는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면, 그 조치는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 ① 전혀 적절하지 않다 ___ ② 별로 적절하지 않다 ___ ③ 그저 그렇다
___ ④ 약간 적절하다 ___ ⑤ 매우 적절하다 ___ ⑥ 정보가 없어서 모르겠다
___ ⑦ 그런 조치는 없다

20-2. 만약 한국 정부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보호작업장 폐쇄에 따른 대안을 모색하는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면, 그 조치는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 ① 전혀 충분하지 않다 ___ ② 별로 충분하지 않다 ___ ③ 그저 그렇다
___ ④ 약간 충분하다 ___ ⑤ 매우 충분하다 ___ ⑥ 정보가 없어서 모르겠다
___ ⑦ 그런 조치는 없다

20-3. 만약 한국 정부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고용 격차를 감소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면, 그 조치는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 ① 전혀 적절하지 않다 ___ ② 별로 적절하지 않다 ___ ③ 그저 그렇다
___ ④ 약간 적절하다 ___ ⑤ 매우 적절하다 ___ ⑥ 정보가 없어서 모르겠다
___ ⑦ 그런 조치는 없다

20-4. 만약 한국 정부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고용 격차를 감소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면, 그 조치는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 ① 전혀 충분하지 않다 ___ ② 별로 충분하지 않다 ___ ③ 그저 그렇다
 ___ ④ 약간 충분하다 ___ ⑤ 매우 충분하다 ___ ⑥ 정보가 없어서 모르겠다
 ___ ⑦ 그런 조치는 없다

20-5. 만약 한국 정부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고용 격차를 감소시키기 위한 조치에 있어서 장애여성을 고려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면, 그 조치는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 ① 전혀 적절하지 않다 ___ ② 별로 적절하지 않다 ___ ③ 그저 그렇다
 ___ ④ 약간 적절하다 ___ ⑤ 매우 적절하다 ___ ⑥ 정보가 없어서 모르겠다
 ___ ⑦ 그런 조치는 없다

20-6. 만약 한국 정부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고용 격차를 감소시키기 위한 조치에 있어서 장애여성을 고려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면, 그 조치는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 ① 전혀 충분하지 않다 ___ ② 별로 충분하지 않다 ___ ③ 그저 그렇다
 ___ ④ 약간 충분하다 ___ ⑤ 매우 충분하다 ___ ⑥ 정보가 없어서 모르겠다
 ___ ⑦ 그런 조치는 없다

20-7. 한국정부는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효과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 ① 전혀 효과적이지 않다 ___ ② 별로 효과적이지 않다 ___ ③ 그저 그렇다
 ___ ④ 약간 효과적이다 ___ ⑤ 매우 효과적이다 ___ ⑥ 정보가 없어서 모르겠다

20-8. 한국정부의 장애인 의무고용제 성과 및 결과에 대한 통계는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 ① 전혀 적절하지 않다 ___ ② 별로 적절하지 않다 ___ ③ 그저 그렇다
 ___ ④ 약간 적절하다 ___ ⑤ 매우 적절하다 ___ ⑥ 정보가 없어서 모르겠다

20-9. 한국정부의 장애인 의무고용제 성과 및 결과에 대한 통계는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 ① 전혀 충분하지 않다 ___ ② 별로 충분하지 않다 ___ ③ 그저 그렇다
 ___ ④ 약간 충분하다 ___ ⑤ 매우 충분하다 ___ ⑥ 정보가 없어서 모르겠다

20-10. 만약 한국 정부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장애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와 의무고용할당제도의 효과성 보장 조치를 취하고 있다면, 그 조치는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 ① 전혀 적절하지 않다 ___ ② 별로 적절하지 않다 ___ ③ 그저 그렇다
 ___ ④ 약간 적절하다 ___ ⑤ 매우 적절하다 ___ ⑥ 정보가 없어서 모르겠다
 ___ ⑦ 그런 조치는 없다

20-11. 만약 한국 정부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장애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와 의무고용할당제도의 효과성 보장 조치를 취하고 있다면, 그 조치는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 ① 전혀 충분하지 않다 ___ ② 별로 충분하지 않다 ___ ③ 그저 그렇다
 ___ ④ 약간 충분하다 ___ ⑤ 매우 충분하다 ___ ⑥ 정보가 없어서 모르겠다
 ___ ⑦ 그런 조치는 없다

20-12. 협약 제27조에 해당하는 최종견해와 쟁점목록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답변하신 이유와 배경, 그리고 기타 평가의견들을 자유롭게 적어주십시오.

()

21. 제28조(적절한 생활수준과 사회적 보호)

구분	해당 조항 관련 내용
최종 견해	54.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장애등급제 및 가족 구성원의 소득·재산이 아닌, 장애당사자의 특성·상황·욕구에 따라 최저생계비를 지원할 것을 권고한다.
쟁점 목록	29. 장애수당 및 장애연금 관련 장애소득보장 및 사회보장수급권 관련 정책에 대해 설명하십시오.

21-1. 만약 한국 정부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장애등급이나 가족 구성원의 소득 및 재산으로부터, 장애당사자의 특성·상황·욕구 등으로, 최저생계비 지원 기준을 변경한 조치를 취했다면, 그 조치는 적절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 ① 전혀 적절하지 않았다 ___ ② 별로 적절하지 않았다 ___ ③ 그저 그렇다
 ___ ④ 약간 적절했다 ___ ⑤ 매우 적절했다 ___ ⑥ 정보가 없어서 모르겠다
 ___ ⑦ 그런 조치는 없었다

21-2. 만약 한국 정부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장애등급이나 가족 구성원의 소득 및 재산으로부터, 장애당사자의 특성·상황·욕구 등으로, 최저생계비 지원 기준을 변경한 조치를 취했다면, 그 조치는 충분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 ① 전혀 충분하지 않았다 ___ ② 별로 충분하지 않았다 ___ ③ 그저 그렇다
___ ④ 약간 충분했다 ___ ⑤ 매우 충분했다 ___ ⑥ 정보가 없어서 모르겠다
___ ⑦ 그런 조치는 없었다

21-3. 협약 제28조에 해당하는 최종견해와 쟁점목록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답변하신 이유와 배경, 그리고 기타 평가의견들을 자유롭게 적어주십시오.

()

22. 제29조(정치 및 공적 생활에 대한 참여)

구분	해당 조항 관련 내용
최종 견해	56.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장애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투표를 할 수 있고, 선거 정보가 모든 접근 가능한 형식으로 제공되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또한 대한민국이 선출직에 대한 장애인의 참여를 증진하기 위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또한 대한민국이 투표권 및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조항을 폐지하고, 장애 유형에 관계없이 투표권과 피선거권을 제공할 것을 권고한다.
쟁점 목록	30. 장애인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보장 여부와 이를 위한 구체적 조치를 설명하십시오. 아울러 유권자가 투표시 보조인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지에 대해 설명하십시오.

22-1. 현재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이 선거에 참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 ① 전혀 가능하지 않다 ___ ② 별로 가능하지 않다 ___ ③ 그저 그렇다
___ ④ 약간 가능하다 ___ ⑤ 충분히 가능하다 ___ ⑥ 정보가 없어서 모르겠다

22-2. 한국정부가 장애인의 선거 참여를 가능하도록 하는 조치들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 ① 전혀 적절하지 않다 ___ ② 별로 적절하지 않다 ___ ③ 그저 그렇다
___ ④ 약간 적절하다 ___ ⑤ 매우 적절하다 ___ ⑥ 정보가 없어서 모르겠다

22-3. 한국정부가 장애인의 선거 참여를 가능하도록 하는 조치들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 ① 전혀 충분하지 않다 ___ ② 별로 충분하지 않다 ___ ③ 그저 그렇다
___ ④ 약간 충분하다 ___ ⑤ 매우 충분하다 ___ ⑥ 정보가 없어서 모르겠다

22-4. 한국정부가 장애인의 선거 참여와 관련하여 제공하는 접근가능한 선거정보의 조치들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 ① 전혀 적절하지 않다 ___ ② 별로 적절하지 않다 ___ ③ 그저 그렇다
___ ④ 약간 적절하다 ___ ⑤ 매우 적절하다 ___ ⑥ 정보가 없어서 모르겠다

22-5. 한국정부가 장애인의 선거 참여와 관련하여 제공하는 접근가능한 선거정보의 조치들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 ① 전혀 충분하지 않다 ___ ② 별로 충분하지 않다 ___ ③ 그저 그렇다
___ ④ 약간 충분하다 ___ ⑤ 매우 충분하다 ___ ⑥ 정보가 없어서 모르겠다

22-6. 한국정부가 선거에 있어서 선출직 장애인의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해 취하고 있는 조치들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 ① 전혀 적절하지 않다 ___ ② 별로 적절하지 않다 ___ ③ 그저 그렇다
___ ④ 약간 적절하다 ___ ⑤ 매우 적절하다 ___ ⑥ 정보가 없어서 모르겠다
___ ⑦ 그런 조치는 없다

22-7. 한국정부가 선거에 있어서 선출직 장애인의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해 취하고 있는 조치들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 ① 전혀 충분하지 않다 ___ ② 별로 충분하지 않다 ___ ③ 그저 그렇다
___ ④ 약간 충분하다 ___ ⑤ 매우 충분하다 ___ ⑥ 정보가 없어서 모르겠다
___ ⑦ 그런 조치는 없다

22-8. 한국정부가 선거에 있어서 투표 시설에 대한 모든 유형 장애인들의 완전한 접근성 보장을 위해 취하고 있는 조치들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 ① 전혀 적절하지 않다 ___ ② 별로 적절하지 않다 ___ ③ 그저 그렇다
___ ④ 약간 적절하다 ___ ⑤ 매우 적절하다 ___ ⑥ 정보가 없어서 모르겠다
___ ⑦ 그런 조치는 없다

22-9. 한국정부가 선거에 있어서 투표 시설에 대한 모든 유형 장애인들의 완전한 접근성 보장을 위해 취하고 있는 조치들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 ① 전혀 충분하지 않다 ___ ② 별로 충분하지 않다 ___ ③ 그저 그렇다
___ ④ 약간 충분하다 ___ ⑤ 매우 충분하다 ___ ⑥ 정보가 없어서 모르겠다
___ ⑦ 그런 조치는 없다

22-10. 한국정부가 선거와 관련된 정보 캠페인에 대한 완전한 접근성 보장을 위하여 취한 조치들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 ① 전혀 적절하지 않다 ___ ② 별로 적절하지 않다 ___ ③ 그저 그렇다
 ___ ④ 약간 적절하다 ___ ⑤ 매우 적절하다 ___ ⑥ 정보가 없어서 모르겠다
 ___ ⑦ 그런 조치는 없다

22-11. 한국정부가 선거와 관련된 정보 캠페인에 대한 완전한 접근성 보장을 위하여 취한 조치들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 ① 전혀 충분하지 않다 ___ ② 별로 충분하지 않다 ___ ③ 그저 그렇다
 ___ ④ 약간 충분하다 ___ ⑤ 매우 충분하다 ___ ⑥ 정보가 없어서 모르겠다
 ___ ⑦ 그런 조치는 없다

22-12. 한국정부가 장애인이 투표를 위한 보조인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취한 조치들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 ① 전혀 적절하지 않다 ___ ② 별로 적절하지 않다 ___ ③ 그저 그렇다
 ___ ④ 약간 적절하다 ___ ⑤ 매우 적절하다 ___ ⑥ 정보가 없어서 모르겠다
 ___ ⑦ 그런 조치는 없다

22-13. 한국정부가 장애인이 투표를 위한 보조인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취한 조치들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 ① 전혀 충분하지 않다 ___ ② 별로 충분하지 않다 ___ ③ 그저 그렇다
 ___ ④ 약간 충분하다 ___ ⑤ 매우 충분하다 ___ ⑥ 정보가 없어서 모르겠다
 ___ ⑦ 그런 조치는 없다

22-14. 협약 제29조에 해당하는 최종견해와 쟁점목록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답변하신 이유와 배경, 그리고 기타 평가의견들을 자유롭게 적어주십시오.

()

23. 제30조(문화생활, 레크리에이션, 여가생활 및 체육활동에 대한 참여)

구분	해당 조항 관련 내용
최종 견해	58.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가능한 한 빨리 마라케시 조약을 비준하고 이행하기 위해 적절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권장한다.
쟁점 목록	31. 시각장애인 저작물 접근권 개선을 위한 '마라케시 조약'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당사국이 취한 조치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십시오. 아울러 최근 개최된 동계 올림픽과 패럴림픽, 기타 스포츠 행사에서 장애인을 온전히 통합하고 장애인에 대한 접근성을 온전히 보장하기 위해 당사국이 취한 조치를 설명하십시오.

23-1. 한국정부가 시각장애인 저작물 접근권 개선을 위한 '마라케시 조약'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 ① 전혀 취하고 있지 않다 ___ ② 별로 취하고 있지 않다 ___ ③ 그저 그렇다
___ ④ 약간 취하고 있다 ___ ⑤ 충분히 취하고 있다 ___ ⑥ 정보가 없어서 모르겠다

23-2. 한국정부가 시각장애인 저작물 접근권 개선을 위한 '마라케시 조약'에 따라 취하고 있는 조치들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 ① 전혀 적절하지 않다 ___ ② 별로 적절하지 않다 ___ ③ 그저 그렇다
___ ④ 약간 적절하다 ___ ⑤ 매우 적절하다 ___ ⑥ 정보가 없어서 모르겠다
___ ⑦ 그런 조치는 없다

23-3. 한국정부가 시각장애인 저작물 접근권 개선을 위한 '마라케시 조약'에 따라 취하고 있는 조치들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 ① 전혀 충분하지 않다 ___ ② 별로 충분하지 않다 ___ ③ 그저 그렇다
___ ④ 약간 충분하다 ___ ⑤ 매우 충분하다 ___ ⑥ 정보가 없어서 모르겠다
___ ⑦ 그런 조치는 없다

23-4.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 및 기타 스포츠 이벤트가 장애인들을 완전히 통합하고 그들에게 접근 가능하게 보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한국 정부가 취한 조치들이 적절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 ① 전혀 적절하지 않았다 ___ ② 별로 적절하지 않았다 ___ ③ 그저 그렇다
___ ④ 약간 적절했다 ___ ⑤ 매우 적절했다 ___ ⑥ 정보가 없어서 모르겠다
___ ⑦ 그런 조치는 없었다

23-5.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 및 기타 스포츠 이벤트가 장애인들을 완전히 통합하고 그들에게 접근 가능하게 보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한국 정부가 취한 조치들이 충분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 ① 전혀 충분하지 않았다 ___ ② 별로 충분하지 않았다 ___ ③ 그저 그렇다
___ ④ 약간 충분했다 ___ ⑤ 매우 충분했다 ___ ⑥ 정보가 없어서 모르겠다
___ ⑦ 그런 조치는 없었다

23-6. 협약 제30조에 해당하는 최종견해와 쟁점목록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답변하신 이유와 배경, 그리고 기타 평가의견들을 자유롭게 적어주십시오.

()

24. 제31조(통계와 자료 수집)

구분	해당 조항 관련 내용
최종 견해	60.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성별·연령·장애·거주지·지리적 지역·정책 수혜자를 기준으로 세분화된 자료의 수집·분석·배포를 체계화할 것을 권고하며, 접근 가능한 형식으로 통계를 제공하여 모든 장애인이 자유롭게 통계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한다.
쟁점 목록	32. 장애인 관련 자료의 수집·분석·배포 방식을 체계화하고, 공개된 통계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최신 정보 기준으로 설명하시오.

24-1. 만약 한국 정부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성별·연령·장애·거주지·지리적 지역·정책 수혜자를 기준으로 세분화된 자료의 수집·분석·배포를 체계화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면, 그 조치는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 ① 전혀 적절하지 않다 ___ ② 별로 적절하지 않다 ___ ③ 그저 그렇다
 ___ ④ 약간 적절하다 ___ ⑤ 매우 적절하다 ___ ⑥ 정보가 없어서 모르겠다
 ___ ⑦ 그런 조치는 없다

24-2. 만약 한국 정부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성별·연령·장애·거주지·지리적 지역·정책 수혜자를 기준으로 세분화된 자료의 수집·분석·배포를 체계화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면, 그 조치는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 ① 전혀 충분하지 않다 ___ ② 별로 충분하지 않다 ___ ③ 그저 그렇다
 ___ ④ 약간 충분하다 ___ ⑤ 매우 충분하다 ___ ⑥ 정보가 없어서 모르겠다
 ___ ⑦ 그런 조치는 없다

24-3. 만약 한국 정부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통계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면, 그 조치는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 ① 전혀 적절하지 않다 ___ ② 별로 적절하지 않다 ___ ③ 그저 그렇다
 ___ ④ 약간 적절하다 ___ ⑤ 매우 적절하다 ___ ⑥ 정보가 없어서 모르겠다
 ___ ⑦ 그런 조치는 없다

24-4. 만약 한국 정부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통계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면, 그 조치는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 ① 전혀 충분하지 않다 ___ ② 별로 충분하지 않다 ___ ③ 그저 그렇다
 ___ ④ 약간 충분하다 ___ ⑤ 매우 충분하다 ___ ⑥ 정보가 없어서 모르겠다
 ___ ⑦ 그런 조치는 없다

24-5. 만약 한국 정부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장애 통계에 관한 워싱턴 그룹 방법론에 따라 데이터의 수집, 분석 및 배포를 체계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면, 그 조치는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____ ① 전혀 적절하지 않다 ____ ② 별로 적절하지 않다 ____ ③ 그저 그렇다
 ____ ④ 약간 적절하다 ____ ⑤ 매우 적절하다 ____ ⑥ 정보가 없어서 모르겠다
 ____ ⑦ 그런 조치는 없다

24-6. 만약 한국 정부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장애 통계에 관한 워싱턴 그룹 방법론에 따라 데이터의 수집, 분석 및 배포를 체계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면, 그 조치는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____ ① 전혀 충분하지 않다 ____ ② 별로 충분하지 않다 ____ ③ 그저 그렇다
 ____ ④ 약간 충분하다 ____ ⑤ 매우 충분하다 ____ ⑥ 정보가 없어서 모르겠다
 ____ ⑦ 그런 조치는 없다

24-7. 협약 제31조에 해당하는 최종견해와 쟁점목록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답변하신 이유와 배경, 그리고 기타 평가의견들을 자유롭게 적어주십시오.
 ()

25. 제32조(국제협력)

구분	해당 조항 관련 내용
최종 견해	해당 없음.
쟁점 목록	33. 본 협약 및 아태지역 장애인 권리 실현을 위한 인천전략이 효과적으로 이행되기 위한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2030 의제' 실현을 위해 당사국이 취해온 조치를 설명하십시오.

25-1. 만약 한국 정부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본 협약, 인천전략 및 SDGs의 효과적 이행에 주의를 기울이며, 정부의 모든 국제 개발 프로그램 및 활동이 모든 장애인들에게 통합적이고 접근 가능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들이 있다면, 그 조치들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____ ① 전혀 적절하지 않다 ____ ② 별로 적절하지 않다 ____ ③ 그저 그렇다
 ____ ④ 약간 적절하다 ____ ⑤ 매우 적절하다 ____ ⑥ 정보가 없어서 모르겠다
 ____ ⑦ 그런 조치는 없다

25-2. 만약 한국 정부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본 협약, 인천전략 및 SDGs의 효과적 이행에 주의를 기울이며, 정부의 모든 국제 개발 프로그램 및 활동이 모든 장애인들에게 통합적이고 접근 가능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들이 있다면, 그 조치들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____ ① 전혀 충분하지 않다 ____ ② 별로 충분하지 않다 ____ ③ 그저 그렇다
 ____ ④ 약간 충분하다 ____ ⑤ 매우 충분하다 ____ ⑥ 정보가 없어서 모르겠다
 ____ ⑦ 그런 조치는 없다

25-3. 협약 제32조에 해당하는 쟁점목록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답변하신 이유와 배경, 그리고 기타 평가의견들을 자유롭게 적어주십시오.

()

26. 제33조(국내적 이행 및 감독)

구분	해당 조항 관련 내용
최종 견해	62.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로 하여금 장애인 관련 정책의 효과적인 개발 및 이행이라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충분한 인력과 재정을 제공해 국가인권위원회가 협약의 이행상황을 효과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또한 대한민국이 협약의 이행을 모니터링 하는 데 장애인 및 장애인단체가 완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조항을 채택할 것을 권고한다.
쟁점 목록	34. 다음 각 호를 이행하기 위해 당사국이 취한 조치를 설명하십시오. (a)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가 장애인 정책관련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가? (b) 국가가 국가인권위원회가 협약이행을 효과적으로 감독할 수 있도록 인적, 물적 자원을 충분히 제공하는가? (c) 장애인과 장애인단체가 협약 이행 및 모니터링 과정에서 효과적으로 참여하도록 보장하는가?

26-1. 한국정부의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가 장애인 관련 정책의 효과적인 개발 및 이행이라는 역할을 적절히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 ① 전혀 적절하지 않다 ___ ② 별로 적절하지 않다 ___ ③ 그저 그렇다
___ ④ 약간 적절하다 ___ ⑤ 매우 적절하다 ___ ⑥ 정보가 없어서 모르겠다

26-2. 한국정부의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가 장애인 관련 정책의 효과적인 개발 및 이행이라는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 ① 전혀 충분하지 않다 ___ ② 별로 충분하지 않다 ___ ③ 그저 그렇다
___ ④ 약간 충분하다 ___ ⑤ 매우 충분하다 ___ ⑥ 정보가 없어서 모르겠다

26-3. 한국정부가 협약 모니터링에의 장애인 참여를 위해서 관련법을 적절히 개정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 ① 전혀 적절하지 않았다 ___ ② 별로 적절하지 않았다 ___ ③ 그저 그렇다
___ ④ 약간 적절했다 ___ ⑤ 매우 적절했다 ___ ⑥ 정보가 없어서 모르겠다
___ ⑦ 그런 법 개정은 없었다

26-4. 한국정부가 협약 모니터링에의 장애인 참여를 위해서 관련법을 충분히 개정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 ① 전혀 충분하지 않았다 ___ ② 별로 충분하지 않았다 ___ ③ 그저 그렇다
___ ④ 약간 충분했다 ___ ⑤ 매우 충분했다 ___ ⑥ 정보가 없어서 모르겠다
___ ⑦ 그런 법 개정은 없었다

26-5. 협약 제33조에 해당하는 최종견해와 쟁점목록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답변하신 이유와 배경, 그리고 기타 평가의견들을 자유롭게 적어주십시오.

()

— 장시간에 걸친 성의 있는 응답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장애인권리협약 이행에 관한 실태조사

| 인쇄일 | 2018년 11월 8일
| 발행일 | 2018년 11월 8일
| 발행처 | 국가인권위원회
| 주 소 | 04551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0(저동 1가)
나라키움 저동빌딩
<http://www.humanrights.go.kr>
| 전 화 | 차별시정국 장애차별조사1과 02)2125-9964
| F A X | 02)2125-0924
| 제 작 | 도서출판 한학문화 (02) 313-7593 (代)

ISBN: 978-89-6114-650-0 93360 비매품